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2호 2011. 6

차례

특집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지역질서 연구 - 1870년대를 중심으로

리시주 | 李鴻章의 대일 인식과 외교책략 - 1870년대를 중심으로 13

오카모토 다카시 |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 청일수호조규를 중심으로 63

구선희 | 고종의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 수용 과정 분석 105

오비나타 스미오 | 근대 일본 '대륙정책'의 구조

- 타이완 출병 문제를 중심으로 143

박삼헌 | 근대전환기 일본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

- 1870년대 건백서를 중심으로 183

논문

고민정 |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지역성 연구 227

김재윤 | 동북한 청동기시대 형성과정

- 연해주와 연변 고고자료의 비교를 통해서 281

이상훈 | 羅唐戰爭의 종전배경과 新羅의 역할 333

김태우 | 1948년 미 공군에 의한 독도 폭격의 전개양상과 군사정책적 배경 375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412

Contents

Special Issue East Asian Regional Order in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 Focusing on the 1870s

- Li, Xizhu | Li Hongzhang's Understanding of Japan and His Foreign Strategy
– Centering on the Period of 1870s 13
- Okamoto Takashi | Japan's Annexation of Ryūkyū (Liu-ch'iu)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ast Asian Orde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ino-Japanese Treaty of Amity 63
- Koo, Sunhee | King Kojong's Changing Perception of the Foreign World in
the 1870s 105
- Obinata Sumio | The Structure of the Continental Policy of Modern Japan
– Discussion on the Troops Dispatch to Taiwan 143
- Park, Samhun | How the Japanese “People” Perceived East Asi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 Focusing on the Petitions Submitted
in the 1870s 183

Articles

- Ko, Minjung | Gangmokdoldaemun Pottery Culture of the Early Bronze Age
in the Nam River Basin 227
- Kim, Jaeyoun | The Study of the Bronze Era of Eastern North Korea based
on the Archaeological Data of Primorsky and Yanbian 281
- Yi, Sanghun | Circumstances and Silla's Role that Led to the Conclusion of
the Silla-Tang War 333
- Kim, Taewoo | Military Backgrounds and Progresses of Bombing of
Dokdo Island by the USAF, 1948 375

특집

근대전환기 동아시아 지역질서 연구
- 1870년대를 중심으로



서문

한반도가 속한 동아시아 지역은 오랜 세월을 걸쳐 역사적으로 구성된 독특한 정치적·사회적 경험을 공유해 왔다.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이 공유해 온 이 경험을 흔히 중화질서·천하질서·화이질서·중국적 세계질서 등으로 부른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친숙한 서구의 근대 국제질서와 대단히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국가 사이의 관계도, 그리고 중화질서에서 하나의 행위주체로서 국가가 갖는 의미도, 근대 국민국가 사이의 국제법 질서와는 상당히 달랐다.

1840~1842년 아편전쟁은 서구 제국주의의 물리적 공세가 시작되는 신흥탄이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세계에서 역사적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른바 서세동점으로 집약되는 거대한 물결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중화질서가 현실적으로 붕괴되고 서구의 근대 국제질서로 재편되어가는 과정이었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동아시아 3국은 '예의 관념'에 근거한 중화질서에서 '부국강병'과 '국가평등 관념'에 입각한 근대 국제질서로 동아시아 세계를 재구성해야 하는 세계관적 변동을 겪어야 했다.

아편전쟁 이후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변화가 지니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이 시기에 서양 각국이 주도하는 근대 국민국가 사이의 국제법 질서=만국공법에 바탕을 둔 '조약관계'가 동아시아 지역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역질서='책봉·조공관계'는 이미 그 질서의 중심이었던 청이 쇠퇴하면서 '서양의 충격'에 맞설 수 있는 자기방어 능력을 차츰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이를 대신하는 '조약관계'라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논리가 동아시아 지역에도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둘째, 하지만 '조약관계'의 적용은 어디까지나 서양 각국, 즉 동아시아 지역

의 내부가 아닌 외부와의 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동아시아 지역 내부는 그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다 해도 그동안 실제적으로는 관념적으로는 동아시아 지역질서로 기능해 오던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관계’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된 것 또한 사실이다. 아편전쟁의 패배로 인해 청의 영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한편, 청만이 아니라 일본과 류큐왕국[琉球王國]도 서양 각국과의 ‘조약관계’에 편입되면서 ‘책봉·조공관계’가 동아시아 지역질서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결정적인 변화를 맞이한 것은 1871년에 체결되고 1873년에 비준을 거친 청일수호조규였다. 근대 국민국가들의 국제법 질서인 ‘조약관계’가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 사이에 최초로 맺어진 것이다.

이후 한중일 3국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를 거쳐 1882년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 1883년 조일통상장정으로 귀결되는 근대적 관계 맺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조청상민수륙통상장정과 같은 해에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이 한중일 3국 간에 체결된 ‘조규’ 또는 ‘장정’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조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870년대에 새롭게 시도되는 한중일 3국 간의 관계 맺기는 서양 각국과 맺은 ‘조약’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조규’ 또는 ‘장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한중일 3국의 관계는 기존의 조공체제와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조약’과도 구별되는 ‘조규’라는 용어로 설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한중일 3국의 근대적 관계 맺기가 중화질서에 기초한 ‘조공 책봉관계’에서 만국공법에 기초한 ‘조약관계’로 단선적인 전환을 이룬 것이 아님을 말해준다. 다시 말해서 근대 전환기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1870년대부터 시작된 중화질서와 만국공법 질서의 절충과 동거를 거쳐 완성되었던 것이다. 이 같은 과도기적 현상이 극대화된 1880년대를 유길준은 일찍이 ‘兩截體制’라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그리고 이러한 형식은 청일전쟁 이후 청일 간의 시모노세키조약(1895)과 한중 간의 한청조약(1899)으로 한중일 3국 간에 새로운 ‘조약관계’ 설정이 시도될 때까지 한중일 3국의 국제관계를 규정하였다.

본 특집은 한중일 3국이 서양 각국과 ‘조약관계’를 맺고, 이를 기초로 기존의 ‘책봉·조공관계’를 ‘조약관계’로 재구축하기 시작한 1870년대 한중일 3국의 대외정책과 상호인식의 근대전환기적 성격을 규명한 것이다. 즉 1871년 청일 수호조규 체결, 1873년 일본의 정한론 정변, 1874년 일본의 타이완 침공,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1879년 일본의 류큐 병합 등과 같이 한중일 3국이 서로 관계를 맺으며 발생한 1870년대의 사건들이 기존의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어떻게 변동시켰는지, 한중일 3국의 연구자 5명이 각국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검토한 것이다.

리시주[李細珠] 논문은 1870년대 이홍장의 일본 인식 변화과정과 그에 따른 외교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청일수호조규 체결, 일본의 타이완 침공과 류큐 병합 및 조선의 개항문제와 관련지어 분석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홍장이 중국의 전통적인 ‘중변관계’ 유지와 근대 국제질서 수용 사이에서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분석하고 있다. 단, 1870년대 경험이 이후 1880년대 조선 정책 수립에 영향을 주었음을 언급하면서도, 그 내용은 어디까지나 조선에 대한 전통적 ‘중변관계’ 유지 및 강화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리시주 논문이 중국의 전통적인 ‘중변관계’의 유지보다 일본의 대외팽창적 정책을 1870년대 동아시아 지역의 갈등요소로 파악하는 입장이라면, 이어지는 오카모토 다카시[岡本隆司] 논문은 1870년대에 들어서 청과 일본이 대립하게 되는 이유를, 이 시기의 청이 지니고 있던 전통적인 ‘중변관계’에 기초한 ‘속국 자주’라는 개념에서 찾고 있다. 그 결과 일본의 1870년대의 ‘류큐 처분’ 과정은 청의 입장에서 류큐라는 ‘속국’의 멸망을 의미했기 때문에, 1880년대에 들어서는 ‘속국자주’의 개념이 재편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류큐 사건과 타이완 침공을 일본이 메이지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한 대외침략정책의 구체적인 과정으로 파악하는 리시주 논문과의 차이를 보여준다. 단, 서계문제로 일본과 교섭을 거절하던 조선이 태도를 바꾼 계기를 이홍장의 ‘개국’ 권고에서만 찾고 있다는 점은 리시주의 논문과 동일하다. 이는 1870년대의 조선 내부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고려하지 않는 중국 학계와 일본 학계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구선희 논문은 고종이 전통적 화이관에 토대를 둔 사대·교린 외교로부터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를 수용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고종이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한 것은 결과적으로 조선이 서구 근대 국제법 질서에 들어간 것을 의미할 뿐, 당시 고종의 대외인식은 여전히 화이관에 입각한 교린 외교의 재개 수준에 머물러 있었고, 실질적인 변화는 1878년 두모진 수세 사건과 이후 이어진 조선과 일본의 교섭과정에서 이뤄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고종의 대외인식이 변화는 시점을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로 보는 기존 연구를 비판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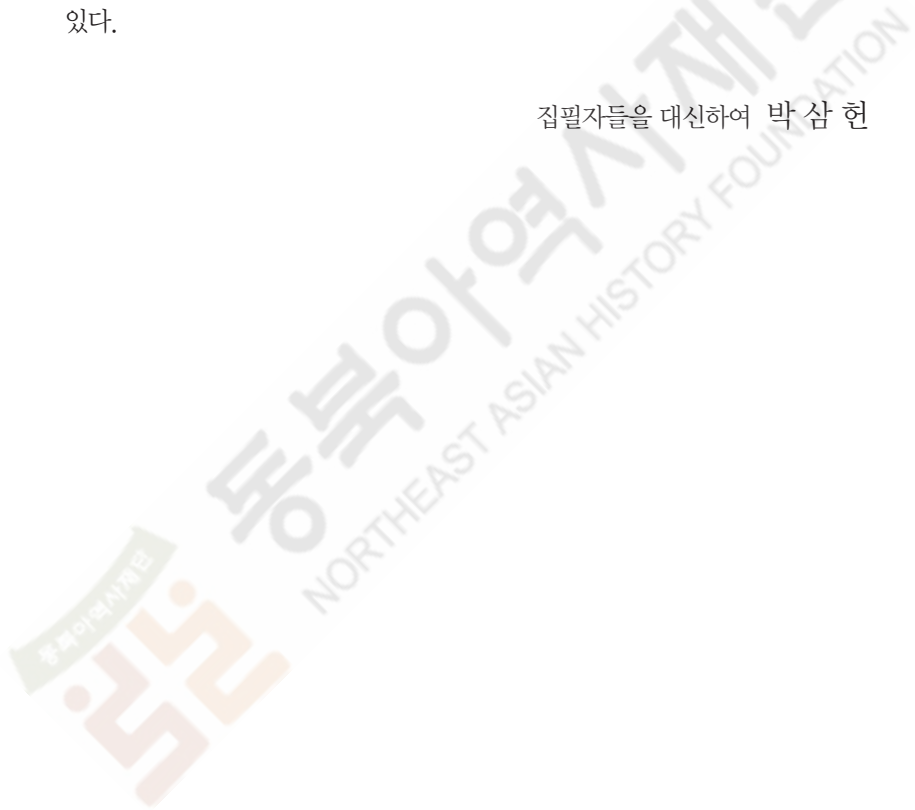
오비나타 스미오[大日方純夫] 논문은 근대 일본 최초의 해외파병이었던 타이완 출병의 정당화 논리를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불평사족의 불만을 국내에 안고 있던 일본 정부가 ‘만국공법’의 논리와 미국의 경험에 의지하여 타이완 ‘번지’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서구열강의 ‘선점’ 논리에 따라 타이완 지배의 영속화를 한때나마 계획했지만, 청의 거부만이 아니라 서구열강의 개입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1870년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청과 일본이라는 요인만이 아니라 서구열강이라는 요인도 고려해야 함을 말해준다.

오비나타 논문이 대륙정책을 수립하는 일본 정부(관)의 움직임을 대상으로 했다면, 박삼헌 논문은 메이지 초기에 발생한 대외사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움직임을 검토한 것이다. 건백서는 메이지 초기에 ‘국민’이 정부에 제출한 국가 정책 제언서이다. 여기에서는 타이완 침공과 강화도사건에 대한 건백서들을 검토한 결과, ‘책봉·조공관계’에 입각하여 조선의 ‘무례’를 지적하던 기존의 논리와 달리, 근대적 영토개념 확립을 정당화하는 만국공법에 입각하여 조선의 ‘불법’을 지적하는 논리가 새롭게 제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국민’이,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전통적인 ‘일본형 화이질서’만이 아니라, ‘일본국’의 ‘자주와 자립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관점에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특집은 1870년대라는 특정한 시기에 발생한 사건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만큼, 논문 5편의 분석 대상이 서로 겹치고 있으며, 때로는

동일한 사료를 분석하면서도 각국의 역사인식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각국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이를 공유하는 데 하나의 목적이 있었던 만큼, 각각의 주제에 대한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책봉·조공관계’에서 ‘조약관계’로 바뀌어가는 전환기적 특성을 한중일 3국이 각기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다고도 할 수 있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박삼현



李鴻章의 대일 인식과 외교책략

- 1870년대를 중심으로 -

리시주 | 李細珠,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I. 머리말: 선행 연구와 문제 도출

청 말기 重臣 이홍장은 중국 근대사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학계의 연구 저술이 방대해 체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찍이 이홍장이 사망하던 해, 梁啓超가 이홍장의 전기인 『中國四十年來大事記』(일명 『李鴻章傳』)¹⁾을 펴내, 이홍장을 “중국 최근 40년 동안 가장 긴요한 인물”이라고 보고, 청 말기 40년 국운 변천의 관점에서 이홍장의 일생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중국 학자로서 대표적인 이홍장 전기는 위안수이[苑書義]의 『李鴻章傳』²⁾과 세스청[謝世誠]의 『李鴻章評傳』³⁾이 있다. 최근 레이이[雷頤]의 『李鴻章與晚清四十年』⁴⁾은

※ 투고일: 2011년 4월 6일, 심사일: 2011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30일.

1) 梁啓超, 1901, 『中國四十年來大事記』, 新民叢報社 光緒 27年(1901) 刻本. 이 밖에 『飲冰室合集』 專集之三, 中華書局(1989), 1~90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苑書義, 1994, 『李鴻章傳』, 人民出版社, 1994년 第1版, 2004년 수정 재판.

3) 謝世誠, 2006, 『李鴻章評傳』, 南京大學出版社.

4) 雷頤, 2008, 『李鴻章與晚清四十年』, 山西人民出版社.

이홍장의 중요한 상주문, 서한, 전보 등을 분석하여 이홍장 일생에서 결정적 사건들을 기술한 흥미로운 책이다. 타이완 학자 가운데 대표적인 이홍장 전기 는 리서우쿵[李守孔]의 『李鴻章傳』⁵⁾이 있다. 이 밖에 재미 중국인 학자 류광징[劉廣京]·주창진[朱昌峻]이 펴낸 『李鴻章評傳－中國近代化的起始』⁶⁾는 이홍장 일생의 제 문제에 관한 미국, 한국, 홍콩, 타이완 학자들의 13편의 논문을 실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홍장 관련 전문서도 많은데, 여기서는 본 과제와 관련된 것들만 간략하게 소개한다. 중국학자 등충린[董叢林]의 『李鴻章的外交生涯』⁷⁾와 타이완 학자 차이동제[蔡東杰]의 『李鴻章與清季中國外交』⁸⁾는 이홍장의 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기술한 책으로, 비교적 종합적이지만 연구의 깊이는 떨어진다. 타이완 학자 왕시[王璽]의 『李鴻章與中日訂約』⁹⁾은 이홍장과 ‘中日修好條規’를 연구한 전문서이다. 이 밖에 근대 중일관계와 조선 문제, 류큐[琉球] 문제에 대한 전문 연구서도 이 글의 주제와 관련이 있다. 왕원성[王芸生]의 『六十年來中國與日本』¹⁰⁾은 중일관계사 자료를 풍부하게 담고 있어, 지금까지도 중요한 참고저서이다. 일본 학자 니시자와 아키오[安岡昭男]의 『明治前期日中關係史研究』¹¹⁾는 메이지 정부 내부 각종 정치세력의 타이완과 류큐문제 관련 발언과 책략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다. 일본 학자 니시사토 기코[西里喜行]의 『清末中琉日關係史研究』¹²⁾는 중국, 류큐, 일본의 삼국관계라는 관점에서 류큐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다루었다. 일본 국적의 중국인 학자 이하라 다쿠슈[伊原澤周]

5) 李守孔, 1985, 『李鴻章傳』, 台北學生書局.

6) 劉廣京·朱昌峻, 1994, 『李鴻章評傳－中國近代化的起始』, 上海古籍出版社, 1994년 영문판, 1995년 중문판.

7) 董叢林, 2008, 『李鴻章的外交生涯』, 團結出版社.

8) 蔡東杰, 2001, 『李鴻章與清季中國外交』, 台北文津出版社.

9) 王璽, 1981, 『李鴻章與中日訂約』, 台北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전문지.

10) 王芸生, 2005, 『六十年來中國與日本』, 三聯書店, 1932년 초판, 1979년 수정 재판, 2005년 신판.

11) 安岡昭男, 胡連成 옮김, 2007, 『明治前期日中關係史研究』, 福建人民出版社.

12) 西里喜行, 胡連成 외 옮김, 2010, 『清末中琉日關係史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의 중국어 저술인 『近代朝鮮の開港：以中美日三國關係爲中心』¹³⁾은 朝日修好條規와 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 이후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타이완 학자 린밍더(林明德)의 『袁世凱與朝鮮』¹⁴⁾은 임오군변부터 청일전쟁 이전까지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 정책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상은 모두 본 과제 연구에 중요한 학술사적 기반이다.

이홍장 외교에 대한 평가는 찬반양론이 분분하다. 재외학자들은 대부분 그의 실무정신을 강조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한국 학자 金基赫은 1874년 타이완 위기 당시 이홍장이 화친 입장을 견지한 것은 당시 중국의 육해군이 일본에 대항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믿었던 ‘실무정신’ 때문으로 “이홍장의 대일 외교정책의 특징이 된 현실주의, 중용 화친 및 극기정신을 반영했다”고 보았다.¹⁵⁾ 미국 국적 중국인 학자 주창진(朱昌峻)은 이홍장을 국가 이권을 팔아먹은 매국노가 아닌, “그는 평생 외국의 의도에 의혹을 품었다. 그는 외국 인과의 교제 속에서 늘 중국의 이익을 보호하려고 했다”, “이홍장은 약소국 외교의 대가로서,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몇몇 상황에서 확고한 입장을 취했고, 불가능할 때에는 최소한의 양보를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홍장이 더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았다.¹⁶⁾ 타이완 학자 차이동제(蔡東杰) 역시 이홍장의 ‘실무적인 외교책략’을 구체적으로 연구하면서, “이홍장에게 멀리 내다 보는 외교적 안목이 부족했다고 할지라도, 그의 실무적이고 비교적 이성적인 사고방식 및 ‘한 푼이라도 얻을 수 있다면 얻는다’는 판단력은 청 조정의 명맥을 연장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¹⁷⁾고 보았다. 중국 학자는 과거 대부분 이홍장을 대표적 매국노로 보고 그의 외교노선은 투항주의라고 여긴 것이다. 일

13) 伊原澤周, 2008, 『近代朝鮮の開港：以中美日三國關係爲中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14) 林明德, 1970, 『袁世凱與朝鮮』, 台北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전문지.

15) 劉廣京 외, 1995, 「李鴻章對日本和朝鮮政策的目的, 1870~1882年」, 『李鴻章評傳』, 183쪽 인용.

16) 劉廣京 외, 1995, 「李鴻章：一個評價」, 『李鴻章評傳』, 341쪽 인용.

17) 蔡東杰, 2001, 앞의 책, 197쪽 인용.

례로 왕원성은 ‘이홍장식 외교’를 실질적으로 ‘투항주의’ 외교라고 보았다.¹⁸⁾ 최근 시대적 변화라는 현실의 영향으로 양무운동에 대한 학계의 평가에 변화가 생기고 있지만, 여전히 왕청린[王承仁]과 류테쥘[劉鐵君]처럼 ‘밖으로 오랑캐와 화친한다’는 이홍장의 외교방침이 ‘투항주의적 색채’를 갖는다고 보는 기존의 관점을 견지하는 학자들도 있다.¹⁹⁾ 또한 후다이충[胡代聰]의 경우 이홍장을 ‘청 말기 굴욕 외교의 대표 인물’로 보고 “자본주의 열강에 환상을 품고 그들의 강대한 역량에 겁먹은 나머지 저항을 비관하는 패배주의적 발상으로 청조 통치 유지와 자신의 지위 보전이라는 입장에서, 열강의 침략과 압박 앞에서 국가 주권과 민족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타협과 굴복에 치중하여 일시적인 안위를 구했기에 심각한 투항주의적 경향을 보였다”²⁰⁾고 그의 외교 기조를 평가했다. 그러나 학계 주류는 이미 이홍장을 중국 근대화의 지도자로 보면서, 그의 외교 사상과 책략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객관적이며 이성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일례로 장위량[章育良]은 이홍장이 ‘화친’의 외교방침을 내놓은 것은 “그가 역사를 종합하고 현실을 직면한 결과물이다. 그의 ‘대내 변법’ 전략과 결부시켜 본다면 화친이란 단지 수단일 뿐이며 변법자강을 위한 안정적 환경 마련에 그 취지가 있었다. [...] 그의 원대한 목표는 중국이 앞으로 세계 강국의 대열에 우뚝 서는 것”²¹⁾이라고 보았다. 세스청은 이홍장의 외교사상과 활동을 실사구시적으로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홍장은 ‘실력 외교론자’로서 피아의 현격한 힘의 격차를 인식하였기에 중국 외교는 외국과의 화친 방침을 취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의 “和戎外交의 실질은 반식민지 반봉건의 통치 질서를 인정하고 현 상황 유지를 피하면서 나아가 성과를 쟁취하려는 것”²²⁾이라고 보았다.

학계의 기존 관련 연구 검토를 기반으로,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1870년대 이홍장의 대일 인식의 기본 내용과 그 변화는 무엇

18) 王芸生, 2005, 앞의 책, 148, 329쪽 인용.

19) 王承仁·劉鐵君, 1998, 『李鴻章思想體系研究』, 166쪽, 武漢大學出版社.

20) 胡代聰, 2002, 「李鴻章外交思想綜論」, 『外交學院學報』, 2002년 第3期.

21) 章育良, 2000, 「李鴻章與中國近代外交述評」, 『湘潭師範學院學報』, 2000년 第2期.

22) 謝世誠, 2006, 앞의 책, 377~379쪽 인용.

인가? 또한 대일 인식을 기반으로 구축된 이홍장의 외교책략은 어떠한 것인가? 이홍장의 이러한 외교책략은 또한 청 정부의 대외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동아시아 질서 유지와 근대 국제질서 편입 사이에서 이홍장의 갈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한 질문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은 앞으로 이홍장과 근대 중국 외교사 및 전통 동아시아 질서의 근대화 전환 제 문제 연구에 유익할 것이다.

II. 중일 ‘수호’와 聯日制西

1871년은 바다를 사이에 둔 이웃나라인 중일 양국이 ‘수호조규’를 맺은 해로, 근대 중일관계의 시작이었다. 당시 중국과 일본이 필요로 한 ‘수호’는, 비록 서로 품고 있는 목적과 태도는 달랐지만 어느 정도는 중일 양국이 근대세계에 강제 편입되는 과정에서 함께 서구열강의 침략에 직면한 결과 나타난 공동의 수요였다고 대체적으로 설명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이홍장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가?

이홍장이 과연 언제 일본인과 접촉을 시작하였는지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적어도 1862년부터 일본인이 이홍장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이홍장도 일본에 주목했다. 대표적인 예로 1862년 이홍장이 상하이에서 淮軍을 이끌고 太平軍과 싸운 공으로 江蘇巡撫로 승진하여 정계에서 두각을 드러낼 당시, 일본 官船 ‘치토세마루[千歲丸]’가 처음으로 상하이를 방문했다. ‘치토세마루’에 탄 일본 관원과 藩士는 당연히 이홍장이라는 승승장구하는 정치 스타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회군 진영을 자주 참관했다.²³⁾ 당시

23) 馮天瑜, 2001, 『“千歲丸”上海行 - 日本人1862年の中國觀察』, 商務印書館, 139~154쪽 참고.

일본인이 이홍장과 그가 이끄는 회군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이홍장은 이들 일본인과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던 것 같다.²⁴⁾ 하지만 주목할 만한 사실은, 최소한 이를 전후하여 이홍장이 이미 일본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1863년 이홍장은 스승인 曾國藩에게 보낸 편지에서 “러시아와 일본은 과거 炮法을 알지 못해 나라가 날로 약해졌다. 그 군신이 몸을 낮추어 영국과 프랑스의 비결을 구하여 총포와 함선을 점차 만들어 쓰게 되니 곧 영국과 프랑스와 자웅을 겨루게 되었다. 中土도 이렇게 하면 백 년 후 오래도록 자립 가능하니, 이에 師門에서 주장하여 이끌기 바란다”²⁵⁾고 했다. 이는 이홍장의 첫 대일 인식이었다.

당시 군사를 이끌고 작전을 벌이던 이홍장은 서양 무기의 우수성, 특히 함선과 대포의 위력을 매우 높이 샀다. 그는 일본이 작은 나라에서 서양의 배와 대포의 이로움을 배워 영국과 프랑스 등 열강과 맞설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거듭 예를 들어 설명했다.

특히 그는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근대 중국, 서양, 일본의 삼자 간 국제관계의 흐름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일본이 지리적으로 서양과는 멀고 중국과는 가깝기에 중국과 서양의 양극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의 자립과 자강 여부에 따라 앞으로 일본이 ‘나의 편이 될지’ 아니면 ‘열강을 본받으리’ 가운데 향배를 직

24) ‘치토세마루’의 수행원 하마마쓰[浜松] 번사 나쿠라 요나토[名倉予何人]가 지은 『官船千歳丸海外日録』에서 “이번 여정에서 얻은 유일한 장점은 李撫軍의 군영이다. 그들은 늘 적군과 대치하기 때문에 그 진영이 실로 태평한 本朝에서는 꿈에서조차 볼 수 없는 것으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정비되어 있다”고 했다(馮天瑜, 2001, 『“千歳丸”上海行』 부록, 435쪽 재인용). 바로 이 나쿠라 요나토(즉 나쿠라 노부아쓰[名倉信敦]) 역시 1870년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가 중국에 와서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할 때 사신당의 수행원이었다. 당시 이홍장은 총리아문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번에 온 다섯 명 가운데 나쿠라 노부아쓰라는 자가 있어, 그전에 몇 년 동안 여러 차례 상하이에 왔다고 하고, 金陵의 敝營에서 관찰한 軍容을 역력히 묘사했다”고 하였다(李鴻章, 2008, 『至總署·論天津教案』(同治 9年 9月 9日), 顧廷龍·戴逸, 『李鴻章全集』 第30冊, 安徽教育出版社, 99쪽). 이를 통해 ‘치토세마루’의 일본인 수행원이 이홍장과 그 회군에 매우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 있지만, 당시 이홍장은 아마도 그들과 직접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5) 李鴻章, 2008, 『上曾中堂』(同治二年三月十七日未刻), 顧廷龍·戴逸, 『李鴻章全集』 第29冊, 安徽教育出版社, 218쪽.

접적으로 결정지를 것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했다.²⁶⁾ 이를 통해서 근대 서양세력의 아시아 침략과 서양문물의 전파라는 배경 속에서 중국이 직면한 千古의 變局을 이홍장이 이미 예감하고, 자립과 자강을 위해 내정과 외교의 개혁을 고민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중국이 통상금지를 푸는 과정에서 일본의 對중국 통상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그는 차라리 대범하게 받아들여 서양에 맞서는 편이 낫다고 보았다. 그는 “일본은 중국과 통상을 하고자 한다. 중국이 이미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으니, 그 遠近과 強弱을 막론하고 똑같이 대해야 하며 거절해도 좋은 예는 없으니, 서양에 적을 더할 뿐”²⁷⁾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홍장의 시야에 들어온 동쪽의 이웃나라 일본은, 처음부터 그가 근대 동아시아와 세계의 국제관계라는 틀을 구축할 때 핵심적인 부분이 되었다.

1870년 텐진에 온 일본 사신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가 청 조정에게 통상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그가 가지고 온, 총리아문에 보내는 외무대신의 편지에서는 “지금 문명화가 대대적으로 진행되어 교제의 도가 날로 성하니 우주 간에 멀고 가까움의 구분이 없다. 우리나라는 근자에 서양 각국과 맹약을 맺어서 서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교류하는데, 가까운 중국의 경우야 말해 무엇하랴. 마땅히 가장 먼저 우호로 교류하고 화친을 맺어야 한다. 오로지 상선만 왕래하고 수교의 예를 시도하지 않으니 큰 결함이 아니겠는가?”고 했다. 통상조약 체결을 원하는 야나기와라의 요구에 총리아문 대신은 상규에 따라 통상할 수 있으니 조약을 맺을 필요는 없다고 우회적으로 거절했다. 그 회신 문서를 보면 “중국과 귀국은 오래도록 우호적으로 교류했으니 교제와 왕래가 하루의 일이 아니다. 귀국이 가까운 이웃인 연고로 자고로 점점 더 정이 두터울 수밖에 없다. 귀국이 상하이에 와서 통상을 자주 하니 이후에도 예전처럼 하면 될 것이며, 서로가 믿는데 굳이 조약을 따로 맺을 필요가 없다. 자고로 믿음이 크면 약속을 하지 않는다지 않는가”²⁸⁾라고 했다. 총리아문의 태도에 야나기와라 일행

26) 「致總理衙門」(同治三年), 『李鴻章全集』 第29冊, 313쪽.

27) 「致應觀察」(同治四年八月二十二日), 『李鴻章全集』 第29冊, 423~424쪽.

28) 『籌辦夷務始末(同治朝)』 卷77, 36~37쪽; 沈雲龍 主編, 1966, 『近代中國史料叢刊』 第62輯, 台北文海出版社, 7134~7136쪽.

은 크게 실망했다.

당시 직례총독으로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홍장은 텐진에서 教案을 처리하고 있었다. 야나기와라는 이홍장을 만나 “예의에 삼가고 말을 공손히 하며 이르기를, 영국, 프랑스, 미국 열강이 나라에 통상을 강제하여 군민이 업신여김을 받아 마음으로는 굴복하지 않으나 홀로 저항하기는 어려워 찬성하는 이가 이에 응하기는 하였지만 반대하는 이는 이를 거절했다. 이 나라와 중국이 가장 가까운 이웃임을 생각하여, 마땅히 우선 통상하여 함께 뜻과 힘을 합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이 서구열강의 침략을 겪고 있고, 이에 ‘혼자 맞서기 어려우므로’ 중국과 ‘뜻과 힘을 합해’ 외세에 맞서고자 하는 의사를 야나기와라가 이홍장에게 보이자, 이홍장은 당시 중국의 처지와 같다는 동병상련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는 또한 ‘以夷制夷’라는 그의 외교 철학에 부합했다. 본래 이홍장은 일본을 경시할 수 없다고 인식하면서 “소국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고 했다. 이에 그는 “일본은 蘇浙에서 겨우 3일 거리에 있고 중화 문자에 정통하며, 그 兵甲이 東島 각국에 비해 강해 지금 연합하여 외부의 도움이 될 만하니, 西인에 기대는 外府가 되게 하지 말라. 장래 통상을 청해 오면 관리를 보내 머물게 하고 우리 상민을 단속하여 연락하고 견제해야 한다”며 일본과 통상 조약을 맺어도 좋다고 총리아문에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그는 “그 조약은 특히 타당하게 논의하여 따로 맺고, 大局에 비해 손색이 있으니 영국, 프랑스, 러시아의 예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된다”²⁹⁾며 일본과 맺는 통상조약은 서구열강과는 구별해야 한다고 각별히 강조했다. 이홍장의 聯日制西 외교책략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홍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태도를 바꾼 총리아문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 윤택을 요청하는 상주문을 조정에 올렸다. 청 조정은 외교체제를 조정하여 三口通商大臣을 폐지하고 기존의 직권을 직례총독이 겸하도록 고쳤다. 이렇게 직례총독 이홍장은 외교 교섭을 주관하는 실질적 권력을 갖게 되었다. 청 조정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이미 동의했지만, 의외로 安徽巡撫 英翰이 상소를 올려

29) 「至總署·論天津教案」(同治九年九月初九日), 『李鴻章全集』第30冊, 99쪽.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청 조정은 일본과의 조약 체결에 이미 동의했음을 감안하여 “거절을 재론할 근거가 없다”고 답하면서, 중국변과 이홍장에게 어떻게 조약을 맺을 것인가 논의해서 상세한 상주문을 올리라고 지시했다.³⁰⁾

이홍장은 총리아문에 편지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일본과의 조약 체결이 연일제서에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가장 요긴한 것은 조약 체결 후 중국이 大員을 파견해 이 나라 京師에 장기간 머물게 하거나, 가까운 나가사키[長崎]에 委員이 머물며 각 항구의 領事를 담당하면, 평소에 그 저의를 엿보고 그와 연락할 수 있다. 장차 정과 의리가 날로 가까워져 의구심이 없어지면, 일단 西國에 변동이 있을 경우 그들과 결탁할 필요 없이 東方과 함께 형세에 대비해도 좋다.³¹⁾

이와 동시에 그는 조정에 상주문을 올려 일본과 중국의 이해관계와 일본과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술했다.

차라리 우호를 요청하는 때에 성의로 상대하여 입약을 허용하여 회유하는 편이 낫다. [...] 일본은 팔꿈치와 겨드랑이처럼 가까이 있어 늘 중토의 우환이다. [...] 그를 가까이 하여 우리가 싸야지, 거절하면 오히려 우리의 적이 된다.³²⁾

이홍장이 일본과의 조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는, 일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일본이 서구열강에 기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그 연일제서의 의도는 매우 분명했다. 물론 이홍장은 일본의 잠재적 위협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연일 책략은 서구열강을 제어하려는 목적 이외에 일본의 침략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30) 『籌辦夷務始末(同治朝)』 卷79, 14쪽; 沈雲龍 主編, 1966, 앞의 책, 7265쪽.

31) 「致總署·議日本換約」(同治九年十一月二十八日), 『李鴻章全集』 第30冊, 148쪽.

32) 「遵議日本通商事宜片」(同治九年十二月初一日), 『李鴻章全集』 第4冊, 216~217쪽.

이홍장은 상주를 올린 이후, 중국번에게 총리아문이 英翰의 상소의 영향으로 “결정을 반복하여” 중일조약 체결에 변동이 생기지 않도록 ‘옹호해 주기를’ 부탁하는 편지를 따로 보냈다.³³⁾ 중국번의 상소는 이홍장과 같은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서양의 예를 본떠 일본과 조약을 맺으면서 단지 利益均沾의 대우는 하지 않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스스로 강대하다 장담하는 이웃이고, 문자가 같은 나라이다. 서양 각국의 예에 따라 그를 대하지 않는다면 그는 앞으로 의구심을 쌓아 도발할 것이다. 臣의 모자란 생각으로는 서양의 예에 따르는 것이 가하다. 그러나 조약에서 서양 각국의 總例에 따라 처리한다는 등의 자기 명시는 불가하며, 특히 나중에 각국에 베푸는 가장 두터운 이익을 一體均沾한다는 등의 명시는 절대 불가하다.³⁴⁾

이처럼 이홍장과 중국번의 거듭된 상주를 받고 청 조정은 이홍장에게 일본과의 조약 협의를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1871년 일본의 사신인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 대장대신이 중국에 도착하자, 청 조정은 이홍장에게 일본 사신과 텐진에서 협상하도록 했다. 당시 일본은 중국과 마찬가지로 서구열강과의 불평등조약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을 통해 근대화의 첫걸음을 뗀 일본은 중일조약 체결 과정에서 서구열강을 본떠 중국에서 불평등한 특권을 확보하려 했다. 소위 “기존 서약의 예를 따르고자 하”므로, 그 핵심은 ‘일체균점’이라는 일방적 최혜국 대우의 확보였다. 이를 간파한 이홍장은 “그 말의 허점을 지적하고 경륜의 힘으로 뒤집으면서 단호한 목소리와 표정으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면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하여, 사신을 비로소 고개 숙이고 따르게 했다. [...] 그 일체균점은 절대 허용할 수 없었다”³⁵⁾고 적고 있다.

33) 「致曾中堂」(同治九年十二月初二日), 『李鴻章全集』第30冊, 152쪽.

34) 曾國藩, 1994, 「預籌日本條約片」(同治十年正月十二日), 『曾國藩全集』第12冊, 岳麓書社, 7205쪽.

35) 「日本議約情形折」(同治十年七月初六日), 「日本約章繕呈底稿折」(同治十年七月

이렇듯 협상 과정에서 이홍장이 심지어 ‘협상 결렬’까지 불사하였으니 얼마나 어려운 협상이었는지 알 수 있다. 이홍장이 이렇게 강경했던 이유는 아직 일본과 서구열강을 같은 무계로 보지 않고, 일본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태도에 기인했다. 그는 중국번에게 보낸 편지에서 “日人이 요상하고 모략을 즐긴다고 하나 西人의 흥맹 포악에는 미치지 못하니, 아마도 안으로 부족함이 있다”³⁶⁾고 했다. 당시의 일본은 분명 아직 힘이 충분하지 못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9월 13일(7월 29일) 이홍장은 다테 무네타리와 중일 ‘修好條規’와 ‘通商章程’을 체결했다.

중일 ‘수호조규’ 체결 이후 그 2조에서 “만약 양국 중 어느 한쪽이 타국으로부터 불공정하게 또는 업신여겨 가벼이 취급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반드시 알려 서로 돕거나 혹은 중재 및 조정하여 우의를 돈독히 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어서, 예상 밖으로 미국, 프랑스 등 서구열강의 의혹을 받았다. 그들은 중국과 일본이 攻守동맹을 체결했다고 생각했다. 세퍼드 주일 미국 대리공사는 이 문서에 대해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 일본 외무대신에게 질의했고, 소에지마는 답신에서 이 조항은 중미 ‘헨진조약’의 내용과 같고 공수동맹의 의미는 결코 없으며 이 조항을 삭제하기 위해 중국에 협상관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³⁷⁾

이후 일본은 조약 수정을 위해 중국에 대표를 보냈는데, 목적은 이 조항의 철회였다. 이홍장은 일본의 행동이 “서인의 환심을 사려고 신의를 저버린다”고 지적했다. 이는 일본과 중국의 ‘수호’와 소위 ‘뜻과 힘을 합해’ 서양에 맞서자는 약속이 결국 미끼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초 이 조항을 넣을 때 이홍장에게는 어느 정도 연일제서의 의도가 있었다. 그는 조정에 올린 상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밝히고 있다.

지난 해 신이 江蘇 臬司 應寶時와 津海關 道陳欽과 함께 조약 초안을

十五日), 『李鴻章全集』 第4冊, 365~368쪽.

36) 「復曾中堂」(同治十年七月初四日), 『李鴻章全集』 第30冊, 276쪽.

37) 王芸生, 2005, 앞의 책 第1卷, 50~52쪽 참고.

만들 당시, 일본이 우리로부터 너무나 가깝다는 점을 고려했다. 무릇 서양이 중화에 와 통상할 때에는 대부분 알타이산, 태평양 및 일본의 요코하마[橫濱]를 거쳐 상하이에 이르니, 일본은 중국의 입구가 된다. 따라서 만약 앞으로 사변이 발생하면 일본이 비록 우리의 편으로 쓰이지는 못할지라도 이 조약으로 견제하여 큰 적을 더하지는 않게 될 것이니, 兵家에서 말하는 이간책이 아닐 수 없다.³⁸⁾

일본이 태도를 바꾸어 조약 수정을 요구하자, 이홍장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1873년 4월 이홍장이 일본 사신 소에지마 다네오미와 텐진에서 중일 '수호조규'와 '통상장정'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중일관계는 정식으로 근대 조약체제에 편입되었다.

이렇듯 중일 '수호'조약 체결 과정에서 이홍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그의 대일 인식은 매우 복잡하였으므로 그의 연일제서의 외교책략 역시 다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먼저, 상술한 바와 같이 이홍장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중일관계를 바라보면서 일본이 중국과 서양의 관계를 조절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보았으며, 중국이 '연일'한다고 해서 '제서'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강력한 적 하나는 줄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홍장은 일본이 메이지유신을 통해 서양을 본받아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일본이 마침내 중국의 후환이 될 것이며 중국은 변법자강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분명히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의논한 조약이 막 성립하였는데 일본이 갑자기 사람을 텐진에 보내 개정을 논의하자니 심히 교활하다. [...] 그 나라 上下가 一心으로 西土에 皈依하여 기계, 총포, 전함, 철도 등 매사에 영국과 미국의 방법을 취하니, 백 년 후에 필시 중국의 후환이 되리라. 허약함이 이에 이르고 강한 이웃이 날로 압박하니,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겠는가.³⁹⁾ 따라서 억지 이유지만, 그 나라가 근자에 남의 지혜를 그대로 받아들여 뒤

38) 「辨駁日使改約折」(同治十一年五月二十八日), 『李鴻章全集』 第5冊, 127쪽.

39) 「復黃子壽太史」(同治十一年四月初八), 『李鴻章全集』 第30冊, 439~440쪽.

에서 총포를 만들고 철도와 광산을 만들고, 서양의 말과 책에서 배워 국채를 빌려 몇 가지 일을 했다. 우리 중토는 총명한 자가 없고 사대부가 모두 쓸모없는 학문에 빠져 부강을 위한 실업을 하지 않으니, 이를 한눈에 알아본 그들이 마음껏 업신여기며 하는 말마다 모두 이치에 맞다. [...] 중국이 앞으로 變法하지 않고 혀와 붓에만 의지하여 그들과 다투다면 오랫동안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⁴⁰⁾

이렇듯 이홍장은 연일제서에 대해 내심 어느 정도 환상을 품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결코 연일제서를 맹신하지는 않았으며 ‘以東制西’라는 방법이 믿음직스럽지 않다고 여겼다. 그는 “이동제서는 본래 충분히 의지할 만하지 못하다. 그가 이미 각국과 통상하면서 그 예에 따라 요청하고 있으니 계속 거절하기 어렵다. [...] 중토가 자강하지 못하면 곳곳이 모두 우리의 적국인데, 東西를 구분하여 무엇하랴”⁴¹⁾라고 했다. 이는 이홍장의 대일 인식이 객관적이었으며, 그의 외교책략 역시 실무적이었음을 보여준다.

Ⅲ. 타이완·류큐 사건을 통해 본 일본의 야심

1874년 중일 ‘수호조규’를 맺은 지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일본은 류큐 표류민이 타이완에서 피살된 사건을 구실로 타이완에 출병했다. 이를 전후하여 류큐 합병에 착수한 일본은 먼저 류큐를 藩으로 고치고 중국에 대한 조공을 강제로 막았으며, 결국 1879년에 류큐를 오키나와 현으로 삼는 ‘廢藩置縣’을 실행하여 완전히 일본 판도에 넣었다. 타이완·류큐 사건은 일본의 대외 침략 확장에 대한 야심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이홍장의 대일 인식은 어떠한

40) 「復孫竹堂觀察」(同治十二年五月二十日), 『李鴻章全集』第30冊, 531쪽.

41) 「復王補帆中丞」(同治十年五月初五日), 『李鴻章全集』第30冊, 229쪽.

가? 그의 외교책략에는 또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이홍장의 대일 인식은 복잡했다. 일본의 타이완 침략 이전, 이홍장은 이미 일본이 중국에 잠재적 위협임을 간파했다. 소에지마 다네오미 일본 외무대신이 중국에 와서 조약을 맺을 당시, 베이징에서 알현을 요청하면서 횡포 무도한 태도를 보였고 특히 야나기와라 사키미쓰 副使는 총리아문 대신에게 류큐 표류민 사건을 질의하는 과정에서 심지어 타이완 ‘生番’에 출병하여 죄를 묻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홍장은 일본의 잠재적 위협을 크게 경계했다. 그는 “타이완 생변 문제는 특히 심상치 않다. 日人이 힘이 작아도 모략은 작지 않으니 가히 아주 가까운 우환이다. 중토가 부강을 도모하지 않으니 지금 소란이 끝날 때가 없다”⁴²⁾며, “소에지마가 원망의 말을 하면서 곧 고별하고 귀국한다고 말하면서, 조선 출병과 타이완 생변 등의 일을 관련시켰다. [...] 왜는 西法을 써 유럽과 함께 나아가면서, 멋대로 행동함이 이토록 예의가 없다. 이 일은 중도에 그만두기 불가능하니 변경의 우환이 언제 가라앉겠는가”⁴³⁾라고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홍장은 여전히 ‘天朝上國’의 허장성세를 믿고 일본이 작은 나라에 불과하기에 중국과 개전할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보았다. 그는 “비록 출병한다고 해도 이토록 작은 나라를 어찌 두려워하겠는가. 唐宋 이전에 일본은 貢獻이 끊이지 않았으며, 元 世祖의 정벌이 대패한 이후 좁은 식견으로 홀로 뽐내왔다. 오늘 그가 비록 서양과 잘 지내지만 아직 조선만 못하는데 어찌 아국을 강압하겠는가”⁴⁴⁾라고 했다. 따라서 이홍장은 일본의 침략을 과소평가했다. 그는 총리아문에 보낸 서한에서, 류큐는 중국의 속국이고 류큐 문제는 중국 내정에 불과하므로 일본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福建 사람인 吳世忠을 통해 그는 타이완 ‘생변’이 남다르게 용맹스럽고 ‘番地’의 산길이 깊고 험해 영국, 미국 등이 누차 군함을 보내 토벌하고자 하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일본은 더욱

42) 「復兩江李雨亭制軍」(同治十二年五月十四日夜), 『李鴻章全集』第30冊, 526쪽.

43) 「復兩江李雨亭制軍」(同治十二年六月初一日夜), 『李鴻章全集』第30冊, 536쪽.

44) 「復孫竹堂觀察」(同治十二年五月二十日), 『李鴻章全集』第30冊, 531쪽. 인용문 가운데 ‘何’자 앞의 십표를 ‘何’자 뒤로 옮겨 수정했다.

힘이 미치지 못해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을 파악하게 되었다.⁴⁵⁾

일본이 출병하기 며칠 전에 이홍장은 각 부처의 보고를 받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본이 방금 조약을 맺고 평소처럼 우호와 알현을 청하고 있는데, 타이완 생변 문제에 대해 먼저 방도도 의논하지도 않고 어찌 갑자기 거병한단 말인가, 경솔히 군대를 일으킨다면 어찌 한마디 알리지도 않는가. 이러한 이치로 추측하건대 확실하지 않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의 내란이 막 가라앉아 그 힘이 아직 멀리 도모하기에는 부족한데, 무력을 쓰고자 한다면 고려보다 먼저가 아니다. 에토 신페이[江藤新平]가 고려 정벌을 청하였지만 윤택하지 않자 난을 일으켰는데, 어찌 원한이 쌓인 弱小한 고려를 버리고 횡포하고 교화되지 않은 생변을 먼저 도모한단 말인가. 생변을 빌려 타이완을 도모한다면 중국이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고, 그러면 일본이 온전히 승리하기 어려워 스스로 헛되어 義를 저버리고 화친을 잃으니,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것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구심이 든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일본이 오지 않는다고 안심하지 말고 스스로 대비하라. 각국이 타이완에 침을 흘린 지 이미 오래이다. 일본 兵政이 점차 강성해져 해안에서 가까운 우환이니, 조만간 正恐을 면하지 못하리라”⁴⁶⁾고 생각하고 복건을 조속히 방비를 하도록 총리아문에 제안했다. 이홍장은 내심 환상을 품고 일본의 타이완 출병 소식의 진실성을 의심하면서도, 잔혹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험악한 국제상황에서 타이완이 위기를 피할 수 없음을 예감했다.

정보가 원활하지 않았으므로 이홍장은 상당히 오랫동안 일본의 타이완 침략 사실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일단 믿고 보자는 태도를 취하여 각 지방에 적극 방비를 제안했다. 이홍장은 총리아문에 보낸 편

45) 「致總署·論日本與台灣朝鮮秘魯交涉」(同治十二年六月十五日), 『李鴻章全集』第30冊, 542쪽 참조.

46) 「致總署·論日本派兵赴台灣」(同治十三年三月十三日), 『李鴻章全集』第31冊, 23쪽.

지에서 두 가지 방어 조치를 제안했다. 하나는 총리아문이 만국공법에 따라 일본을 돕는 자들과 병사를 운송하는 商船이 돌아가도록 주중 미국 공사에게 촉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총리아문에서 福州 船政大臣 沈葆楨에게 복주 장군, 閩浙 總督 등과 상의하여 타이완 수륙 방어 업무를 준비하도록 통보하는 것이었다.⁴⁷⁾

청 조정이 심보정에게 밀지를 내려 타이완 해상 방어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생변' 개발을 하려 한다는 정보를 받고, 이에 대해 이홍장은 “長治久安할 수 있는 勝算이 있으니, 실로 목전만 생각하는 근시안이 아니다”며 찬성했다. 그는 타이완 '蕃地'의 물산이 풍부하여 “각국이 통상 이후 오랫동안 노려왔다. 일본은 그 거리가 특히 가까워 양인보다 먼저 노리고 있으니 침략은 시간문제다. 지금 위무하고 끌어들이 나를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 후환을 어찌 말로 다하겠는가”⁴⁸⁾라고 했다. 그는 항상 일본의 야심을 경계했다.

일본의 타이완 출병을 확인한 후 이홍장은 신의를 저버린 일본의 행위에 매우 분개했다. 그는 欽差大臣 심보정에게 “일본이 1870년부터 사신을 톨진에 보내 조약을 요청한 이후 해마다 자주 찾아와 가장 오랫동안 교제해 왔다. 외교가 부드럽고 예의 바르며 정중하지만, 그 性情은 교활하고 변화무쌍하여 서양인과는 전혀 다르다. [...] 조약을 맺은 지 이제 1년인데, 스스로 먼저 그 예를 어지럽히고 신의를 저버리니, 개돼지만도 못하다”⁴⁹⁾고 했다. 야나기와라 사키미쓰 신임 주중 일본 공사가 베이징에 도착해 국서를 전달하고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홍장은 “네가 우리 강토를 도모하여 맹약을 저버렸는데, 여전히 베이징에 와서 알현을 청하다니 후안무치하구나”⁵⁰⁾라고 말했다. 이홍장은 야나기와라 사키미쓰를 만난 자리에서 “너희들의 기량을 잘 알고 또 그 거짓된 소

47) 「致總署·論日本圖攻台灣」(同治十三年三月二十五日), 『李鴻章全集』第31冊, 28쪽 참조.

48) 「致總署·論布置台灣」(同治十三年四月初二日), 『李鴻章全集』第31冊, 31~32쪽.

49) 「復沈幼丹節帥」(同治十三年四月十八日), 『李鴻章全集』第31冊, 41쪽.

50) 「致總署·論台灣」(同治十三年四月二十一日), 『李鴻章全集』第31冊, 43쪽.

행을 미워하니, 예의에 구애받지 않고 솔직하게 엄한 목소리로 질책”했다. 그는 “생변에서 죽은 자는 류큐인이지 일본인이 아닌데, 일본이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타이완이 중국의 영토이며 류큐는 중국의 번국(屬國)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 함께 일본의 거듭된 신의 없는 행동을 질책하면서, “네가 작년에 겨우 조약을 맺었는데, 올해 거병하여 이토록 번덕스러우니, 당초 조약을 왜 맺었는가”라며 “지금 막 조약을 맺고 국경으로 병사가 쳐들어오니, 너는 우리 중국에 잘못하였고 게다가 나까지 우리 황상과 백성에게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다. 만약 조약을 맺은 각국이 모두 이러하다면 천하에 어찌 큰 난이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통역이 말을 제대로 전하지 않을까봐 이홍장은 “이는 ‘春秋’의 말과 같이, 습격은 강화조약을 맺은 나라가 마땅히 할 행위가 아니니, 속히 만회하여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⁵¹⁾고 탁자 위의 종이에 붓으로 크게 쓰면서 말했다. 비록 이홍장의 말은 위풍당당했지만, 베이징에 와서 총리아문과 담판을 벌이려는 야나기와의라를 설득하여 막지는 못했다.

도대체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총리아문과 야나기와의라 사키미쓰는 거듭된 논쟁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영국 공사 웨이드(Thomas F. Wade) 등이 타이완 통상항구 개방을 제안하면서, “타이완이 통상하면 일본이 탐내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다른 나라도 어찌 갖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고 했다. 총리아문도 그럴 의사가 있었다. 이홍장 역시 찬성하면서 “목전에 피차가 모두 곤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통상만이라도 의결하면 참으로上乘의 文字라. 다행히 타이완이 해외의 먼 지방이니, 한 나라가 오래도록 차지하도록 놔두기보다는 각국이 均沾하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그러나 이홍장은 일본의 “분명한 의도가 땅을 차지하고 소비를 보태는 두 가지에 있으며 통상은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니다”라고 일본이 원하는 바를 예리하게 파악했다. 그리하여 이홍장은 위로금으로 군비를 대체하는 전략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51) 「致總署·述柳原辨難」, 「附與日本公使東使柳原前光鄭永寧問答節略」(同治十三年六月十一日), 『李鴻章全集』第31冊, 67~69쪽. 『李文忠公全集·譯署函稿』卷二를 대조한 결과 첨부 문서 표제 가운데 ‘일본공사’는 편집자가 첨가한 것으로 ‘東使’와 중복되므로 삭제해야 한다.

일본이 인명을 생각한다면, 류큐에서 사고로 죽은 이를 어찌 위로할 것인가를 적절히 의논하며, 또한 일본 병사가 멀리서 온 수고를 생각하여 은혜를 베풀어 상을 내리고 제물을 약간 베풀면, 多寡에 상관없이 앞다투어 귀국할 것이다. 게다가 내 뜻에서 나온 것이니 일본이 조건을 따지지 않을 것이며, 어느 정도 제격으로 城下之盟과 어찌 비하겠는가. 안으로 聖朝의 관용의 도량이 아닐 수 없으며, 밖으로 끊임없이 회유하는 마음을 과시한다.⁵²⁾

실질적으로 이홍장은 배상금으로 타이완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며, 소위 '위로금' 운운은 '천조상국'으로서 중국의 체면을 위한 수식어에 불과했다.

당시 타이완 침략 일본군은 高山族의 완강한 저항과 열대병에 직면하여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진 상황으로, 일본 정부도 조속히 타이완에서 빠져나오기 쉬었으므로,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全權大臣으로 중국에 와서 협상을 벌였다. 오쿠보는 강화를 목적으로 왔지만 막대한 배상금을 챙기고자 했다. 총리아문 대신은 그의 심사를 꿰뚫어 보고 위로금으로 군비를 대신하는 이홍장의 방안을 포기했다.⁵³⁾

예상과 달리 오쿠보는 200만 냥을 요구하였으며, 영국 공사 웨이드가 중간에서 중재하여 결국 총리아문은 50만 냥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피해 난민 위로금 10만 냥과 일본군이 닦은 도로와 지은 가옥 등을 사들이는 값 40만 냥을 포함한 것이었다.⁵⁴⁾ 1874년 10월 중국과 일본은 '北京專條'를 체결하니, 중국이 약속한 은을 지불하고 일본도 타이완에서 철수했다.

타이완 사건은 청 정부에 큰 충격을 주었고, 해상 방어에 관한 대토론이 시작되었다. 이홍장은 동남해역 위기에서 중국이 '수천 년만의 변고'와 '수천 년만의 강적'을 앞에 두고 변법자강해야 함을 깊이 깨닫고, "금일에 이르러 海防을 정돈하고자 하니, 變法과 用人 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 [...] 천하에 뜻 있는

52) 「致總署·論台事歸宿」(同治十三年七月十六日), 『李鴻章全集』第31冊, 84쪽.

53) 「復李雨亭制軍」(同治十三年九月初十日), 『李鴻章全集』第31冊, 106쪽 참조.

54) 『籌辦夷務始末(同治朝)』卷98, 13~15쪽; 沈雲龍 主編, 1966, 앞의 책, 9018~9022쪽.

자들이라면 양무(洋務)에 밝지 않은 자가 없으니, 병사를 훈련하고 기계와 선박을 제조하는 여러 사업으로 점차 精強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성껏 실행하여 세월이 걸리더라도 구제할 수 있다”⁵⁵⁾고 말했다. 총리아문 대신 文祥은 타이완 사건이 비록 해결되었지만 “목전에 일본 방비가 가장 시급하다”며 후환이 심각하다는 상주문을 올렸다. 이홍장은 찬동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본이 舊제도를 고치고 서양의 법을 본따 자강한 이후 그 세력이 날로 커지고 그 뜻이 작지 않으니, 감히 東土를 제패하고자 중국을 멸시하여 타이완을 노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서양은 비록 강해도 여전히 7만 리 밖에 있지만, 일본은 극히 가까우니 우리의 허실을 틈타 중국의 영원한 후환이 될 것이다. 오늘 비록 억지로 규칙을 따르지만 그 마음 깊이 우려를 누적하니, 우리의 풍요한 물산과 인민을 노리면서 우리 兵船과 利器가 아직 갖추어지기 전에 장차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 필시 남의 나라를 탐내 침략할 것이다.⁵⁶⁾

이것은 연일제서의 환상이 깨지면서 일본의 잠재적 침략성을 이홍장이 더 깊이 인식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타이완 출병과 동시에 일본은 ‘류큐 처분’을 준비했다. 류큐는 明·淸 양대에 걸쳐 중국의 조공국이었으며, 나중에 일본의 사쓰마번(薩摩藩)에도 조공을 보내 兩屬 상태가 되었다. 1872년 일본은 멋대로 류큐를 번으로 바꾸었다. 1875년 일본은 다시 류큐가 중국에 조공하지 못하도록 강제로 저지했다. 류큐가 중국에 도움을 구하자, 중국과 일본은 류큐 문제에 대한 교섭을 시작했다.

1878년 중국 초대 주일 공사 何如璋이 ‘조공 저지’ 사건을 이홍장에게 서신으로 알리고 이에 적극적인 태도로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일본은 나라가 작고 빈곤하여, 스스로의 방어에 겨를이 없는데, 어찌 남을 도모할 여유가 있겠는가. [...] 필시 그는 감히 국경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당시 일본이 류큐 문제 때문에 중국과 전쟁을 벌이지는 못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중국

55) 「籌議海防折」(同治十三年十一月初二日), 『李鴻章全集』第6冊, 159, 160쪽.

56) 「籌辦鐵甲兼請遣使片」(同治十三年十一月初二日), 『李鴻章全集』第6冊, 170쪽.

과 일본의 수호조약은 믿음직하지 못하다. 조공이 중단되지 않으면 필히 류큐를 멸할 것이다. 류큐가 망하면 조선으로 향할 것”이라며 일본의 침략 확장의 야심을 분명히 지적했다. 또한 중국은 류큐를 반드시 확보하고 나아가 일본과 개전을 불사하지 않을 경우 변경의 우환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류큐는 타이완에 가까워 우리가 그를 버릴 경우 일인이 郡縣으로 바꾸어 民兵을 훈련하게 되고, 류큐인이 우리가 거절하여 기꺼이 적을 따르게 되면 그들이 모두 노고에 익숙하고 바람과 파도를 건디므로 일본이 강해져 대포와 함선을 준비하여 우리 변방을 어지럽히면, 타이완과 澎 사이에 장래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을 것이다. 타이완 계책의 일환으로 금일의 우환을 관대히 처리하면, 오늘 방치한 우환이 장차 더 깊어질 것이다. 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다투지 않을 수 없다.⁵⁷⁾

이홍장은 류큐의 운명에 매우 동정하고 일본의 침략 행위에 크게 분노하면서 정리상 중국이 다투지 않을 수 없다고 여겼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다지 큰 이익이 없었으므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중국이 인내하여 침묵한다면 일본은 우리가 약하고 겁낸다고 의심하며, 혹은 류큐에서 조선까지 미칠 것이니, 차라리 일찍 그 싹을 눌러 엿보지 못하게 하는 편이 낫다. 금일 일본이 조공을 막으니, 중국이 그와 힘을 겨루지 않을 수 없음이 理이고 情이다. 하지만 근자에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가 아직 없는 것도 일리는 있다. 류큐는 지극히 좁은 땅으로 바다 밖에 홀로 있어 중국에서 멀고 일본에 가깝다. [...] 이웃을 궁핍히 여겨 우환을 구하고자 하나 地勢가 죽히 가로막는다. 중국이 받는 류큐 조공은 본래 큰 이익이 없으니, 그 조공을 받는다고 해서 그 나라를 보전할 수 없으므로 각국이 가볍게 여겼다. 만약 筆舌의 理論에만 의지한다면 지금의 일본의 거동은, 그들이 보낸 서한처럼 방자하고 무뢰하며 미친개와 같으니 우리 영역에 반드시 다가온다고는 할 수 없

57) 「附何子峨來函」(光緒四年四月二十八日), 『李鴻章全集』第32冊, 308쪽.

다. 다시 위력으로 相角하여 소국의 작은 조공을 다투며 허명에 힘쓰기보다는 외세에 맞서 국방을 길러야 하니, 여유가 없을 뿐 아니라 의미도 없다. 내 생각으로는 중국이 일본과 냉정하게 대처하는 편이, ‘의사는 약을 먹지 않는다’는 옛 사람들의 말처럼 순리에 맡기는 것이 아 니겠는가.⁵⁸⁾

얼마 후 총리아문에 보낸 서신에서 이홍장은 “병선을 보내 문책하고 류큐를 반드시 구한다고 약속하여야 한다”는 하여장의 강경책을 부인하고 만국공법을 원용하여 외교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일본이 모든 일에 서양을 따르니, 서구 각국이 이러한 사건을 만나면 공법으로 서로 책임을 묻고, 논의가 성과가 없으면 전쟁이 아니라 재물을 쓰니 전쟁까지 가지 않고 평화를 깨지도 않는다. [...]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다시 말하여 日人이 스스로 이치가 모자람을 알거나 갑자기 藩制를 폐지하고 郡縣으로 감히 바꾸지 못하면, 류큐인이 그 땅을 보존하고 또한 왜구도 무력을 빌리지 않으니, 비록 下策처럼 보이지만 기실 금일에는 규칙인 방법이다.⁵⁹⁾

이홍장의 태도는 청 조정의 결정에 영향을 미쳐, 류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소극적인 대응이 분명 일본이 류큐를 침략하려는 야심을 조장했다. 이홍장의 바람과는 반대로, 결과적으로 일본은 재빨리 류큐에서 폐번치현을 실행했다.

1879년 일본은 류큐 번을 오키나와 현으로 개편했다. 중국 주일 공사 하여장은 즉각 공사관 철수를 요구하였지만 총리아문은 동의하지 않고 “현재 중국 정세가 멀리까지 미치지 못 한다”는 이유로 그에게 일본에 남아 “힘껏 맞서라”면서 앞으로 중국으로 부임할 시기도 다마키[宍戸璣] 신임 일본 공사와 협상

58) 「復何子峨」(光緒四年四月二十九日), 『李鴻章全集』第32冊, 312쪽.

59) 「復總署·密議日本爭琉球事」(光緒四年五月初九日), 『李鴻章全集』第32冊, 320~321쪽.

을 통해 류큐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⁶⁰⁾ 마침 이때 중국을 방문한 그랜트(Ulysses S. Grant) 미국 전임 대통령이 일본으로 건너갈 예정이었다. 이홍장은 그랜트에게 중재를 요청했다.⁶¹⁾ 그랜트의 중재를 통해 일본은 소위 ‘분도개약(分島改約)’을 제시했다. 이것은 류큐제도의 남부인 미야코지마[宮古島]와 야에야마지마[八重山島]를 중국에 귀속시키는 동시에 중일 ‘통상장정’을 수정하여 일본인이 중국 내륙에서 무역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일체균점’이라는 일방적 최혜국대우를 약속하는 것이었다. 일본 사신 다케조에 신이치로[竹添進一]의 설득에 대해 이홍장은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이 류큐를 다투는 것은 본래 없어진 것을 일으키고 끊어진 것을 잇는 것으로, 弱小를 지키기 위한 뜻이지 남의 토지의 이익을 가지려는 마음은 추호도 없다. 귀국이 이를 의심하지 않아 南島를 중국과 나누려 하지만 중국은 감히 받을 수 없다. 남도의 할양이 귀국의 체면을 상한다고 한다면, 할양의 자발성 여부와 상관없이 중국의 체면은 일찍이 귀국이 남김없이 상하게 했는데, 어찌 진실로 화약을 보전하려는 자라 하겠는가.⁶²⁾

그러나 당시 중국은 러시아와伊犁 사태가 시급했기 때문에 이홍장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고 했다.⁶³⁾ 이때 청 조정 내외에서도 일본과 러시아의 결탁을 걱정하는 이들이 많았으므로 속히 류큐 문제를 매듭짓자는 주장이 나왔다. 총리아문 역시 찬동하면서 상소문에서 “지금의 여러 상황을 감안할 때, 중국이 일본을 심하게 거부한다면 일본이 필시 러시아와 더 깊이 결탁하게 된다. 이렇

60) 「總署奏日阻琉球入貢請飭使臣何如璋暫勿歸國折」(光緒五年閏三月初五日), 『清季外交史料』第1冊, 書目文獻出版社, 286쪽.

61) 「復總署·議請美國前總統調處琉球事」(光緒五年四月二十四日), 『李鴻章全集』第32冊, 435쪽 참조.

62) 「附與日本委員竹添進一筆談節略」(光緒六年二月二十五日), 『李鴻章全集』第32冊, 529쪽.

63) 「復總署·論商改俄約兼論球案」(光緒六年七月二十三日), 『李鴻章全集』第32冊, 586쪽 참조.

게 류큐를 보전할 수 있고 러시아를 방비할 수 있다면 나쁜 방법만은 아니다”⁶⁴⁾라고 밝혔다. 그리하여 총리아문과 시시도 다마키 일본 공사는 류큐 문제에 관한 분도개약 초안을 논의했다.

총리아문이 류큐 문제 해결 상소를 올리자 다시 조정 대신이 일제히 반대했다. 특히 清流黨의 陳寶琛과 張之洞은 결론 유보를 청했다. 또한 이홍장도 자신의 생각을 바꿨다. 그 핵심은 류큐 사신 向德宏의 구원 읍소를 통해 류큐 남부의 미야코지마와 야에야마지마 두 섬이 극히 빈곤하여 자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데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류큐 문제 종결 유보를 주장했다. 총리아문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시시도와 이 일을 결정하기 전에 잠시 늦추는 편이 타당하다. 류큐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청하는 이들은 그 곡절을 깊이 알지 못함이라. 러시아가 도발해도 일본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다. 일본은 러시아를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승從이 어렵다. 중국의 힘이 실로 러시아를 이기지 못하면 차라리 러시아의 뜻에 굴복할지언정 일본의 결맹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는가? 지금 의논에 따르면 류큐 국왕이 불복하는데, 某某를 따로 세우더라도 南島가 빼만 앙상하여 자립이 어려워 몇 년 지나지 않아 일본에게 귀속되리라. 만약 중국이 따로 官을 두고 방비한다면 차후의 수고를 더하는 셈이니, 內地 통상으로 실리를 均沾하게 하면 멀리 쓸모없는 荒島에 義를 취함이 어찌 아닌가.⁶⁵⁾

이홍장이 고려한 것은 매우 실무적인 외교전략임을 보여준다. 총리아문의 상소 후, 청 조정은 이홍장에게 조약을 본래 논의한 사람으로서 전반적인 업무를 지휘하여 해결 방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홍장은 당시 중국 외교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하여 러시아가 일본보다 중요하므로 “러시아 문제의 해결 여부는 실로 全局에 관계된다. 러시아 문제가 마무리되면, 일본과 각국이 모두

64) 「總署奏日本廢琉球一案已商議辦結折」(光緒六年九月二十五日), 『清季外交史料』第1冊, 428쪽.

65) 「復總署·請球案緩結」(光緒六年九月十六日), 『李鴻章全集』第32冊, 620쪽.

싸울 마음을 버릴 것이다. 러시아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일본과 각국이 계약을 키울 것이다. 왜를 더 많이 양보시켜 왜가 러시아를 거절하고 우리를 돕도록 하지 못하면 우리가 왜에 잃고 다시 러시아에 잃게 된다. 차라리 러시아에 약간 양보하고 러시아를 빌려 왜를 위협하는 편이 낫다”며, 러시아 문제를 먼저 해결하여 러시아를 빌려 일본을 위협하고자 했다. 류큐 문제에 대해서는 지연책을 써서 러시아 문제가 종결된 이후 다시 거론해도 좋았던 것이다. 만약 러시아 문제가 3개월 안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일본이 조약 교환을 하러 왔을 때 다시 기한 연장을 논의하면 되고, 러시아 문제가 3개월 안에 해결될 경우 일본 조약을 비준하지 않을 생각이었다.⁶⁶⁾

청 조정이 류큐 문제를 질질 끌자 시시도 다마키 일본 공사는 실망하여 귀국했다. 法理적으로는 류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일본은 실질적으로 류큐를 영구히 차지했다.

류큐 사건은 타이완 사건과 마찬가지로 모두 일본의 대외 침략 확장의 구체적인 표현이었다. 이들 사건과 중국의 안위는 긴밀한 관계가 있었으므로, 자강과 해상 방어에 대한 중국 지식인들의 고민을 불러일으켰다. 사실상 이홍장은 늘 이 문제를 고민해 왔다. 타이완과 류큐 사건을 겪으면서 이홍장은 점점 일본의 침략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는 일본이 서양을 본받아 중국에 대해 침략 확장하는 모습을 보고 중국이 강력한 해군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전략적으로 고려할 때 중국에 대한 일본의 위협이 서구열강보다 더 심각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일본을 중국 해군 구축에 가장 중요한 가상의 적으로 파악했다.

일본이 나라가 작고 백성이 가난하지만, 교만하고 참견하기 좋아한다. 나가사키[長崎]는 중국 항구에서 3,4일 거리에 불과하니 멀리 사귀고 가까이 공격한다는 이치를 살필 때, 일본이 품은 침략 의사가 서양 제국보다 크다. 지금 수사 창건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하는 이들은 대부

66) 「妥籌球案折」(光緒六年十月初九日), 『李鴻章全集』第9冊, 199~200쪽.

분 일본을 제어하려는 생각이다.⁶⁷⁾

이처럼 이홍장의 대일 인식이 이미 단순한 외교전략의 층위에서 국방전략의 층위로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IV. 조선 개항과 以西制日防俄

1870년대 중반부터 동아시아 문제는 곧 조선 문제로 집중되었다.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일관계는 항상 조선 문제를 중심 고리로 전개되었다. 당시 러시아와 서구열강도 끼어들면서 조선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을 넘어 국제적 성격이 짙어졌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은 조선 개항을 의미했다. 조선이 중국의 전통적 조공국에서 근대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일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결국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홍장은 당시 조중일 삼자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였는가? 또한 조선의 개방 확대에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는가?

중국과 일본 양국 사이에 있는 한반도는 일본이 대륙으로 확장할 때 전략적 요지로, 지리적으로 중국 동북지역에 대한 천혜의 병풍이었다. 중국을 침략하려고 조선을 겨냥하는 일본의 음모를 일찍이 통찰한 이홍장은 ‘중일수호조규’ 제1조에서 “양국의 所屬邦土는 서로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침략하지 않으며 영원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정하였으니, 그 전략적 방어 목적을 분명히 엿볼 수 있다. 그는 제1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일본이 조선을 노린 지 이미 여러 해이며, 조선은 우리 東土의 울타리

67) 「議復梅啓照條陳折」(光緒六年十二月十一日), 『李鴻章全集』 第9冊, 259~261쪽.

이다. [...] 왜구가 江·浙에서 沿海의 골칫거리이며, 왜의 고려 침략은 멀리 베이징이 근심하는 根本이다. 전에 조규를 맺을 때 소속방토는 침략할 수 없다는 말을 미리 근절하고자 함이다.⁶⁸⁾

그러나 잔혹한 현실은 이홍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으니 종이 위의 약속으로는 일본의 대외 침략 확장의 발걸음을 저지할 수 없었다. 일본은 곧 타이완에 출병하고 류큐를 독식했으며, 다시 침략의 창끝을 조선으로 향했다.

1875년 일본은 雲揚號 사건을 빌미로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를 조선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통상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과 조선이 전통적 宗藩 관계이므로 일본은 다시 사신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중국에 보내 청 정부의 태도를 타진하고자 했다. 이홍장은 일본이 강한 반면 조선이 약한 상황에서 조일 관계가 미묘하므로 중국은 이를 도외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영원히 둘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조선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일본이 딴 마음을 먹도록 하니, 이는 屬國을 박대함이고 천하에 넓지 못함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조선이 일본에 핍박과 침략을 받으면 東三省의 요지가 울타리를 잃게 되니 唇亡齒寒의 근심이 생기며 후환이 커진다”며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이 사신을 보내 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니 중국이 이 기회를 잡아 상대방의 계략을 역이용하여 공격하여 조선 정부에 “작은 분노를 참고 예의로 대하라”며 “일을 마무리하고 백성의 안녕을 도모하는 방법”을 조언했다. 실질적으로 그는 “조선이 일본과 통상 왕래를 원하는지 여부는 스스로의 뜻에 따르며, 본래 중국이 간섭할 수 없다”⁶⁹⁾고 말하며, 이로 인한 일본과의 개전이나 조선에 대한 내정 간섭 모두 원하지 않았다. 또한 이것은 청 정부의 태도이기도 했다.

모리 아리노리가 保定에서 이홍장을 회견할 당시, 양측은 조선 문제에 대

68) 「致總署·論日本與台灣朝鮮秘魯交涉」(同治十二年六月十五日), 『李鴻章全集』第30冊, 542쪽.

69) 「致總署·論倭派使入朝鮮」(光緒元年十二月二十三日), 『李鴻章全集』第31冊, 336~337쪽.

해 논의를 거듭했다. 모리 아리노리의 강온책에 대해 이홍장은 침예하게 맞섰지만 여전히 “일을 마무리하여 백성의 안녕을 도모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했다. 모리 아리노리가 “일본이 고려를 얻으면 무슨 이익이 있는가?” 묻자 이홍장은 “헛되이 우호관계를 해치니 아무 이익이 없다”고 하면서도, 만약 일본이 조선을 치려고 한다면 “러시아가 병사를 보낼 뿐 아니라 중국도 파병하지 않는다고 보장하기 어려우니, 그렇게 되면 전쟁이 일어나 진실로 무익하다”고 답했다. 모리 아리노리는 일본이 잠시 개전하지 않겠으니 총리아문과 상의하여 “타당한 방도를 마련하여 고려를 설득하라”⁷⁰⁾고 이홍장에게 요청했다. 이후 이홍장이 총리아문에 서한을 보내 “예부를 통해 조선이 이 일을 수습하게 주청하여 각별히 돈독함을 보이면서, 위세를 믿고 무력을 사용하려는 그 뜻을 잠시 늦추게 하면 大局에는 더 유익하다”⁷¹⁾고 제안했다. 총리아문은 조선이 자체 처리하고 중국은 관여하지 않는다는 상주문을 올렸다. 이는 중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조선과 직접 교섭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맞는 조치였다.

1876년 2월 일본이 조선에 ‘수호조규’를 강요하였으니, 곧 ‘강화도조약’이었다. 이는 일본이 서구열강을 본떠 대외 식민 확장 과정에서 체결한 최초의 불평등조약으로, 몇 년 동안 쇠국했던 조선은 개항을 강요당했다.

조선이 일본의 개방 압력에 굴복한 것은 중국에게 상서롭지 못한 신호였다. 1879년 일본은 류큐를 공공연히 병합했다. 전임 福建巡撫 丁日昌은 중국 바다 강역에 더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을 예감했다. 그는 일본이 “지금은 회유할 수 있어도 2~3년 안에 남으로 타이완을 침략하거나 북으로 고려를 도모할 것이다. 우리가 서둘러 자강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앞의 파도가 채 가라앉기도 전에 뒤의 파도가 닥칠 것이니, 이에 대응하느라 겨를이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해상 방어 구축 사업을 조목조목 쓴 글에서 정일창은 특히 조선 문제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기술했다.

70) 「附日本使臣森有禮署使鄭永寧來直隸督署內晤談節略」(光緒元年十二月二十八日), 『李鴻章全集』 第31冊, 341~342쪽.

71) 「致總署·述森有禮議朝鮮事」(光緒二年正月初一日), 『李鴻章全集』 第31冊, 349쪽.

이미 고려는 일본과 조약을 맺지 않을 수 없으니, 차라리 서양 각국과 모두 조약을 맺는 편이 낫다. 왜 그러한가? 일본은 고려를 삼키려는 마음이 있지만, 서양은 남의 나라를 멸망시킨 예가 없다. 장래 왜와 고려가 전쟁하면 조약을 맺은 나라가 모두 나서 그 시비를 논할 것이니 일본이 꺼리지 않을 수 없어 제멋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 [...] 만약 서양이 계속 고려와 통상하려 한다면, 사신이 비밀리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권고하고, 고려가 조약을 맺은 나라에 나누어 사람을 파견하도록 권고한다면, 고문 초빙이 끊이지 않게 되고 자연히 禍福을 관여하게 된다. 매사에 무기와 힘을 얻고, 우리도 긴밀하여 여유 있는 쪽에서 부족한 쪽을 보완하니, 살 길을 강구하기에 족하다. 왜와 러시아 두 나라가 모두 삼키려 한다면, 우리는 舍力으로 지킬 것이며 고려와 조약을 맺은 나라에 모두 요청하여 복을 울리며 공격할 수 있으니, 고려가 류큐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될 것이다. 만약 고려가 망하면, 러시아와 왜가 우리의 동삼성에 쇄도할 것이다. 이는 분명 팔꿈치와 겨드랑이의 우환을 넘어 心腹의 병이니, 득실과 무관하여 버린 류큐와는 다르다.⁷²⁾

정일창의 논지는 조선이 이미 일본에 개방되었으므로 다시 서구열강에도 개방하는 편이 낫고, 이렇게 조선에서 동서 열강 사이의 '세력 균형'을 형성하면 일본과 러시아의 조선 침략을 방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중국 東三省 지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깊이 찬동하면서 정일창에게 서한을 통해 “역시 고려와 각국이 조약을 맺어 통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데, 總署가 이렇게 할지 모르겠다. 총리아문이 이름처럼 모든 것을 살피는 관청이 아닌 모든 것을 외면하는 관청이 될까 심히 걱정된다”⁷³⁾고 했다. 이홍장은 총리아문에서 채택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이번에는 기우였다. 총리아문도 정일창의 의견에 찬성하고, 이홍장이 직접 조선과 연락하라는 칙

72) 「前福建巡撫丁日昌呈擬海防應辦事宜十六條清單」(光緒五年), 中國第一歷史檔案館, 錄副奏折, 파일 넘버 03~9383~013, 단축 넘버 671~2561, 국가 청사편찬위원회 인터넷 프로젝트(中華文史網, <http://www.qinghistory.cn>).

73) 「復丁雨生中丞」(光緒五年五月二十日), 『李鴻章全集』第32冊, 447쪽.

령을 내리도록 조정에 상주문을 올렸다.

이홍장은 시국을 가늠해본 뒤 조선 상황이 위급하니 중국이 조선 문제에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조선이 근자에 일본과 교섭하면서 누차 거역했다는 말이 있다. 서양 각 국과도 달아걸고 거부하며 조금도 變通하지 않고 선교사를 여러 차례 구금하는 것을 보니 선입견을 바꾸지 않음을 가히 알겠다. 일본이 그 기만적 힘을 믿고 한가하게 진정하지 않으니, 류큐가 이미 없어지고 조선도 장작더미 밑에 불을 놓은 것처럼 위험하다. 또한 서양 각국이 둘러싸고 노릴 것이니 남의 계책을 빌리지 않을 수 없다.⁷⁴⁾

그는 일본과 러시아 및 서구열강의 압력에 직면하여 조선의 상황이 위급하였으므로, “그 孤立無援을 익히 아는 일본이 틈을 노려 침략한다면 러시아가 응지를 펼 것이고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등 각국이 다시 뭉쳐 그 후를 논할 것이므로, 조선만의 大患이 아니며 중국의 남모르는 근심이기도 하다”며 중국의 국방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한다고 생각했다.

이홍장은 정일창의 의견이 하나같이 “조선을 위한 계책이자 실로 중국을 위한 계책”⁷⁵⁾이라 보았다. 따라서 이홍장은 총리아문의 제안과 조정의 명령을 받아들여, 즉각 조선에서 본래 영의정을 맡고 있던 李裕元과 연락을 취했다. 그는 이유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반도의 험악한 국제환경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조선과 서양 각국의 통상조약 체결로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저지하라고 제안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국이 일본과 조약을 맺지 않을 수 없으니, 통상의 일이 이미 시작되어 각국이 필시 욕심을 낼 것이며, 일본은 진귀한 물건으로 볼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以毒攻毒, 以敵制敵의 계책이 마땅하니, 이를 기회로 차례로 서양 각국과 조약을 맺어서 일본을 견제하는 것이다. 류큐 멸망

74) 「致總署·論勸導朝鮮通商」(光緒五年七月十二日), 『李鴻章全集』第32冊, 472쪽.

75) 「密勸朝鮮通商西國折」(光緒五年七月十四日), 『李鴻章全集』第8冊, 434쪽.

에서 그 실마리가 보였듯이, 일본은 그 기만적 힘을 믿고 잠식 병탄하려는 음모가 있으므로 귀국도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일본이 두려워하는 자가 서양이므로 조선의 힘으로 일본을 제압하기에는 부족하니, 서양과의 통상으로 일본을 제압하기란 충분하다. 서양의 通例는 이유 없이 남의 나라를 빼앗고 멸망시키지 않으니, 각국이 서로 통상하고 公法이 그 사이에 통용된다. [...] 러시아와 거리가 있는 사할린, 綏芬河, 두만강 일대는 모두 귀국과 국경을 접하니 상황이 급박하다. 만약 귀국이 먼저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과 交通하면 일본을 견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러시아의 노림도 막을 수 있으니, 러시아도 필히 곧 통상을 의논할 것이다. [...] 계다가 조약을 맺은 각국이 수시로 사신을 보낼 수 있고 고문을 초빙하면서 정의를 잇게 되니, 평소에 화복을 상관하게 되며 한 나라에 침략이 발생할 경우 조약을 맺은 각국을 불러 모아 시비를 함께 논의하고 공격할 수 있으니, 일본이 두려워 삼가게 된다. 귀국은 멀리 그들과 사귀기에 적합한 道로 매사에 講究하니 강약을 적절히 힘써 조화를 꾀할 수 있다. 일본을 제압하는 방법으로 이보다 나은 것이 없고, 러시아의 책략에 대비하는 방법도 이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⁷⁶⁾

이홍장의 고심 어린 권고는 이유원의 적극적 반응을 얻지 못했다. 이유원은 이홍장의 소위 “이독공독, 이적제적의 계책”에 동의하지 않으며 “지금 적을 제압하려면 내가 먼저 적의 공격을 받고, 독으로 공격하려 한다면 내가 먼저 중독된다. 일단 중독되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데, 적을 제압할 겨를이 있겠냐”⁷⁷⁾고 반론을 제시했다. 이유원의 보수적인 태도에 부딪히자 이홍장도 어쩔 수 없어 “조선이 西人과의 통상을 굳이 거부하니, 중국도 강권하기는 어렵다”⁷⁸⁾고 보았다.

76) 「附鈔函(二件)·(二)光緒五年七月初九日復函」, 『李鴻章全集』 第8冊, 436~437쪽.

77) 「照錄朝鮮原任太師李裕元來函」(光緒 5年 11月 12日 보냄, 6年 2月 초닷새 받음),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2卷, 台北: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399쪽.

78) 「致總署·籌朝鮮」(光緒五年十一月十三日), 『李鴻章全集』 第32冊, 502~503쪽.

당시 서구열강 특히 미국이 조선과 통상조약을 원하고 있었다. 1880년 미국 해군 장령 슈펠트(Robert W. Shufeldt)가 조선의 부산에 도착하여 개항 통상협상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슈펠트는 다시 일본 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주일본 나가사키 중국 영사의 보고를 통해서 슈펠트가 조선과 통상조약 체결을 도모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홍장은 텐진으로 그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홍장은 조정에 상주문을 올려 슈펠트와의 대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보고했다.

듣자 하니 미국이 아직 군대를 동원하여 강제할 뜻은 없다고 하지만, 러시아가 이미 막대한 군량을 들여 병사를 모으고 있으니 중도에 기꺼이 그칠 것 같지 않다. 중화를 도모하지 않는다면 조선을 삼키려 할 것이다.⁷⁹⁾

슈펠트가 미국과 조선의 통상을 도모하였고, 이홍장도 마침 조선과 서양 각국과의 통상을 계획하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의 뜻이 같았다. 특히 슈펠트는 조선과 중국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언급하였으니, 마침 이홍장의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이었다. 이에 그는 조선과 서양 각국의 통상조약을 권고하여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저지해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히게 되었다.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눈 결과 이홍장은 “그 식견을 보아하니 正大하고 기개가 듬직하니, 시끄럽고 오만한 서양인의 습관이 없어 깊이 탄복하게 한다”⁸⁰⁾며 슈펠트의 인상을 아주 좋게 보았다. 이 회견에서 이홍장은 미국과 조선 양국의 조약 체결에 협조할 의사를 보이면서 미국의 힘을 빌려 러일 양국을 견제하고자 기대했다.⁸¹⁾

조선의 전임 영의정 이유원과 의견 소통이 성과가 없자 이홍장은 다시 주일 중국 대사관과 주일 조선 수신사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다. 당시 조선 수신사 金宏集이 일본에 와 주일 중국 대사관 사람들과 빈번하게 접촉하고 있었다.

79) 「妥籌朝鮮武備折」(光緒六年九月初四日), 『李鴻章全集』第9冊, 171쪽.

80) 「復駐扎長崎正理事官員外郎銜內閣擬補中書余」(光緒六年七月二十三日), 『李鴻章全集』第32冊, 585쪽.

81) 伊原澤周, 2008, 앞의 책, 35쪽 참고.

주일 중국 공사 하여장의 의도에 따라 參贊 黃遵憲이 김홍집에게 “현재 조선의 시급한 일 가운데 防俄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방아의 책략은 무엇인가? 중국을 가까이하고 일본과 관계를 맺고 일본과 연합하여 自强을 도모함이다”⁸²⁾라는 내용의 『朝鮮策略』을 건네면서 조선이 외교를 통해서 강대하고 침략적인 러시아를 방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홍집이 귀국하면서 가지고 간 『조선책략』은 한때 조선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면서 보수세력의 강력한 공격을 받았다. 그러나 조선 국왕 고종과 영의정 李最應이 미국과의 수호조약 체결에 찬성하면서 전기가 마련되었다. 이와 동시에 이홍장도 조선 사신 卞元圭를 접견하면서 끈질기게 권고했다. 그는 “러시아와 일본의 음모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서양 각국과 모두 통상해야만 서로 견제하여 홀로 길이 보존한다”⁸³⁾고 생각했다. 하여장이 조선에서 이미 “조정 의견이 바뀌어” “조약을 맺으러 오라고 미국에 권고할 것”이라는 보고 전문을 보내자, 이홍장은 매우 흡족해하며 회신을 통해 “상황이 호전되었으니 잘 되었다”⁸⁴⁾고 답했다. 이에 청 정부 역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 屬藩의 “공문 왕래는 예부 직속”이라는 기존의 제도를 바꾸어, 이후 양무 관련 긴요한 사건은 “북양대신과 출사 일본 대신이 그 나라와 공문을 서로 교환하여 기회를 보아 주도 하라”⁸⁵⁾고 주문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이홍장에게 조선과 서양 각국 교섭을 직접 처리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1881년 초, 조선 사신 李容肅이 헨진에 와서 이홍장을 만나 각국의 수호조약 체결에 관해 가르침을 청했다. 이홍장은 이 기회에 흥금을 터놓고 조목조목 알려주어 그 선입견을 깨고 道員 馬建忠, 鄭藻如 등에 명하여 “목전의 상황과 동서양의 통례를 참작하여 조선과 각국의 통상장정 초안을 대신 마련하고 손

82) 黃遵憲, 2005, 『朝鮮策略』(光緒六年八月), 陳錚, 『黃遵憲全集』 上冊, 中華書局, 251쪽.

83) 「朝鮮通商西國片」(光緒六年九月二十七日), 『李鴻章全集』 第9冊, 191쪽.

84) 「復何使」, 「附駐日本何使由長崎來電」(光緒六年十一月初二日), 『李鴻章全集』 第21冊, 9쪽.

85) 「總署奏朝鮮宜聯絡外交變通舊制折」(光緒七年正月二十五日), 『清季外交史料』 第1冊, 455~456쪽.

실을 방지하고 이익을 취할 계책을 이용숙에게 주어서, 이후 일이 생기면 기만 당하지 않도록 참고하게 하라”⁸⁶⁾고 했다. 7월에 다시 조선 사신 李應浚이 텐진에 도착하자 이홍장은 다시 정조여에게 명하여, 조선 관원을 텐진으로 보내 미국 슈펠트와 조약 체결 문제를 상의하고 이에 기반해 상주문을 올려 大員을 파견해 조약을 맺으라고 적극 권고했다. 조선은 연말에 유학생을 이끌고 온다는 명목으로 領選使 金允植을 텐진까지 보내서 미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준비했다. 청 조정은 이홍장에게 “수시로 기회를 보아 주도하여 적절하게 준비하여 처리하라”⁸⁷⁾고 명했다.

1882년 초, 이홍장은 保定 직례총독 관저에서 김윤식을 접견하고, 양측은 조약 체결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때 미국은 이미 슈펠트를 전권대사로 파견했다. 조선이 장기간 쇄국정책을 취하여 서양국가와의 접촉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영선사 김윤식에게는 조약 협상에 대한 ‘全權’ 증서가 없었다. 따라서 미국 대사와 조약 논의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이홍장은 깨달았다. 얼마 후 김윤식이 다시 보정에 와서 이홍장을 만나 “국왕의 밀지를 받들어 미국 대사와의 상의 속개 주재를 귀 처에서 맡아주고, 귀국의 기무대신에게 조약을 보내니 감정을 부탁한다”⁸⁸⁾고 했다. 이홍장은 김윤식과 조미통상조약 초안을 상세하게 상의했다. 이어 이홍장은 슈펠트와 텐진에서 조미통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을 벌였는데, 양측의 의견이 엇갈린 핵심 부분은 조약 제1조에 “조선은 중국 속방”이라고 밝히기 원하는 이홍장의 요구에 슈펠트가 “절대 따를 수 없다”고 한 것이었다. 이홍장이 양보하여 슈펠트와 타협한 방식은, 조약에 ‘중국 속방’을 명시하지 않되 조선에서 따로 미국 외교부에 각서를 보내 “조선은 오래도록 중국의 藩屬이고 내정과 외교는 늘 그 自主에 맡겼다”고 밝히는 것이었다. 그는 또한 조약 뒷부분에 “光緒 8년”이라는 문구를 삽입해 조선이 “중국

86) 「答復朝鮮所問事宜折」(光緒七年二月初二日), 『李鴻章全集』 第9冊, 303쪽.

87) 「密議朝鮮外交折」(光緒七年十二月初二日), 「附光緒七年十二月上奉 上諭」, 『李鴻章全集』 第9冊, 539, 544쪽.

88) 「致總署·籌議朝鮮與美定約」(光緒八年二月初九日), 『李鴻章全集』 第33冊, 124쪽.

의 正朔을 따른다”⁸⁹⁾는 사실을 밝히도록 요구했다. 두 사람이 조약 초안을 마련한 뒤 조선과 미국의 협상은 조선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홍장은 마진충을 다시 조선으로 보내 조미조약 협상을 도왔다. 같은 해 5월 ‘朝美通商條約’이 체결되었다. 곧이어 영국,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 등도 잇달아 조선과 비슷한 조약을 체결하니, 조선의 문호는 서구열강에게 개방되었다.

주목할 부분은 이홍장이 조선과 미국의 통상조약 체결, 나아가 서구열강에 대한 문호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자신의 以西制日防俄 외교책략을 실현했다는 사실이다.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열강의 힘을 빌려 조선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의 침략을 저지하려고 했고, 그 근본 목적은 중국의 국방 안전에 있었다. 그는 조미통상조약 체결을 준비하면서 조정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조선은 오래도록 外藩에 속하지만 실질은 동 東三省의 울타리이므로, 홀로 바다 밖에 있는 류큐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지금 일본이 류큐를 침략하여 멸망시키고, 프랑스가 다시 월남에 할거하며, 연해 6성은 이미 중국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가장 긴밀한 藩屬은 다름 아닌 조선이다. 일본이 통상을 위협하며 세척을 정하도록 허용하지 않고 억누르고 좌지우지하려는 계책이 심히 음험하고 교활하니 먼저 미국과 적절한 조약을 맺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선이 홀로 서지 못하고 각국의 요구가 끊임 없이 없을 것이다. 동방의 안위는 大局에 달렸으니, 조선과 중국은 주장을 드러내기보다는 길흉을 상판하며, 수시로 돌보면서 각방으로 보호하여 屬土를 보전하는 것이 나의 울타리를 단단히 하는 것이다.⁹⁰⁾

일본이 메이지유신 이후 서구열강을 본떠 점차 대외 침략 확장의 길을 걸으면서, 조선은 일본의 중국 침략에 있어 마지막 울타리가 되었다. 이홍장은

89) 「致總署·論美使議朝約不認中國屬邦」(光緒八年二月二十四日), 「致總署·論美使籌議朝約」(光緒八年三月初三日), 『李鴻章全集』第33冊, 136, 144쪽.

90) 「密議朝鮮外交折」(光緒七年十二月初二日), 『李鴻章全集』第9冊, 540쪽.

이를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였으므로, 조선을 일본과 러시아가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아 중국 동북 국경지역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애썼다.

V. 맺음말: 관련 문제의 논의

1870년대 이홍장의 대일 인식과 외교책략을 살펴보면 사실 관련된 문제가 많다. 이홍장은 개인적으로 전통 종번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고 근대 국제법 질서는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이 양자는 어떠한 관계였는지, 또한 그가 처한 시대와 중국의 국제환경을 감안할 때, 그는 중국, 조선, 일본 및 서구열강의 각종 양자 간 다자 간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등 여러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두 가지 질문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1_ 1870년대 이홍장의 대외사상에 대한 인식

이홍장은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유지와 근대 국제질서의 진입 사이에서 갈등했다. 이것은 전통적 종번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법에 따라 근대 국제질서에도 순응하는 문제인데, 이에 대해 이홍장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살펴보자.

타이완·류큐 사건과 조선 개항 등과 관련하여 이홍장은 강렬한 종번의식을 표출했다. 류큐와 조선은 모두 중국의 번속국이라는 사실은 이홍장에게 의문의 여지가 없었다. 실무적인 외교관인 이홍장의 외교책략은 실리주의적 특징이 뚜렷했다. 그의 입장에서 류큐는 중국에게 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없어도 그만이지만, 조선은 중국의 이익과 관계가 깊으므로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다뤘으므로 더 이상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것

이다.

대의 교섭 과정에서 이홍장이 만국공법을 활용한 대목을 도처에서 찾을 수 있다. 1873년 이홍장은 페루와 중국인 노동자 문제를 협상하면서 만국공법을 활용하여 중국인 노동자 인신매매에 대해 “조사하여 해적을 예에 따라 治罪하라”고 요청했다. “만국공법과 서양의 通例를 빌려 해적을 처리하는 방법을 판례로 남겨 경계로 삼으려 한다. 페루에서 시작해 나중에 스페인, 포르투갈 등이 마카오에서 낭패하여 奸者が 되거나 악해졌으니, 중국도 규정대로 처벌하고자 한다”⁹¹⁾고 주장했다.

1874년 일본이 타이완을 침략하자 이홍장은 일본의 군대 인솔과 운반에 미국인이 협조한 것이 만국공법 위반이라고 보고 만국공법을 준수하여 일본을 지원하는 인력을 철수시키고 상선의 일본 병사 운송 협조를 엄금하도록 미국에 요청했다.⁹²⁾ 1878년 주일 중국 공사 하여장이 청 조정에 일본이 류큐의 ‘조공’을 저지한 사건을 보고하자, 이홍장은 만국공법 활용을 적극 주장하면서 외교 경로로 류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⁹³⁾ 이홍장이 적극적으로 만국공법을 활용했던 사례를 통해서 그가 근대 국제질서 수용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실상 전통 중변관계와 근대 국제질서 사이에는 서로 타협 불가능한 갈등이 있었으며, 이는 이홍장의 대외사상과 외교 실천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었다. 1875년 이홍장이 일본 사신 모리 아리노리와 조선 문제를 논의할 당시, 모리 아리노리가 놀랍게도 和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이홍장은 즉각 만국공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렬히 반박했다.⁹⁴⁾

91) 「致總署·諭威使勸解并擬章四條」(同治十二年十月初五日), 『李鴻章全集』第30冊, 600쪽.

92) 「致總署·論日本圖攻台灣」(同治十三年三月二十五日), 『李鴻章全集』第31冊, 27~28쪽.

93) 「致總署·密議日本爭琉球事」(光緒四年五月初九日), 『李鴻章全集』第32冊, 321쪽.

94) 「附日本使臣森有禮署使鄭永寧來直隸督署內晤談節略」(光緒元年十二月二十八日), 『李鴻章全集』第31冊, 340쪽.

모리는 자신이 보기에 화약이 그다지 用處가 없다고 했다. 양국의 우호는 모두 조약에 의거하는 데 어찌 소용 없다고 하는가라고 답했다. 화약은 통상의 일에 참고할 수 있을 뿐 국가의 擧事에 이르면 누가 강한가만이 고려되니 조약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모리는 말했다. 이에 그는 황당무계하다, 힘에 의지해 약속을 어긴다면 만국공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모리는 만국공법도 쓸 만하지 않다고 했다. 이에 약속을 저버리고 공법을 위반한다면 장차 萬國이 용납하지 않으리라 대답했다.

이어서 조선의 중국 속국 여부에 대한 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모리는 고려와 인도가 똑같이 아시아에 있고 중국의 속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고려는 正朔을 받는데 어찌 속국이 아니냐고 답했다. 모리는 각국이 모두 고려는 조공하여 책봉받은 것에 불과하고, 중국은 그 세금을 거두지도 정치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속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고려가 중국에 속한 지 수천 년임을 누가 모르느냐고 답했다. 화약에서 소속 방토라고 말하고 있는데, 토자는 중국의 각 直省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는 內地로 內屬이므로 세금을 징수하고 정치를 돌본다. 邦자는 고려 등 각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는 外藩으로 外屬이므로 세금징수와 정치는 자국에서 경영하고 처리하니, 대대로 이러하였고 本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데 어찌 속국이 아니라고 하느냐고 답했다.

이홍장은 놀랍게도 중일 ‘수호조규’를 인용하며 屬邦의 함의를 해석했다. 모리 아리노리의 수행원인 데이 에이네이[鄭永寧]가 강화도사건을 언급하자, 이홍장은 다시금 만국공법을 인용하여 반박하였지만, 다음과 같이 모리 아리노리로부터 결정적인 반격을 받았다.

데이 에이네이가 종전에는 사절을 거부하더니 근자에 일본 병선이 고려 해변에 이르러 식수를 구하는데 그가 대포를 쏘아 우리 선박을 상하

게 했다고 말했다. 너희 병선이 고려 海口에 가서 물을 기능한 것이라고 답했다. ‘만국공법’을 보면 해안에서 10리의 땅은 자국의 영토에 속하니, 일본이 통상하지도 않는다면 가서 측량해서는 안 되며 고려가 대포를 쏜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했다. 모리는 중국과 일본은 서국과 ‘만국공법’을 인용할 수 있지만 고려는 조약을 맺지 않았으므로 공법을 인용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비록 그러하다 해도 일본이 측량하러 가서는 안 되었다고 답했다. 일본이 먼저 잘못했으니 고려의 발포도 작은 잘못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일본도 상륙하여 그의 포대를 훼손하고 그의 사람을 살상하였으니 또한 일본의 잘못이다. 고려는 나와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데, 왜 유독 일본만이 그 땅으로 가서 어지럽히는가.

이를 통해 이홍장이 확실히 전통 중변관계 유지와 근대 국제질서 수용 사이에서 갈등하고 충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국공법 활용 측면에서 이홍장은 “어려서 외국에 나가 周流하고 영국 學堂에서 3년 등 지구를 두 바퀴를 돌아서 다시 워싱턴에서 3년 동안 欽差를 지낸” 모리 아리노리를 당해내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적해야 할 부분은, 이홍장이 외국과 교섭할 때 만국공법을 가능한 한 활용하였을 뿐 이를 맹신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 사신 卞元圭가 “일본의 류큐 왕국 침탈은 공법이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자 이홍장은 “공법은 서양과 맺은 것으로 東土에서 반드시 따라 행하지는 않는다”⁹⁵⁾고 대답했다. 오랫동안 양무 사업을 맡으면서 양인과 사권 경험을 통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정한 국제 외교는 실력이 있어야 발언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늘 洋務를 맡으면서 화친과 전쟁의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주저하여 일을 그르친다. 내 소견으로는, 분명히 화친의 정세라도 필히 음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하며, 어떻게든 화친을 속히 성사시켜야 오래 견딘다. 양인은 勢를 논하면서理는 논하지 않으니, 그는 무력으로 압박하는데

95) 「附問答節略」(光緒六年九月二十九日), 『李鴻章全集』第9冊, 193쪽.

내가 필설로 이기고자 한다면 성과를 얻을 수 없다.⁹⁶⁾

따라서 이홍장은 외교를 담당하면서 ‘以夷制夷’와 ‘세력 균형’ 전략을 활용하는 한편, 이러한 전략이 사실상 한계가 있으며 열강이 결국 이용하기에 녹록지 않다는 사실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과 교섭할 당시 그는 “각국이 아직 日人을 확실히 돕지 않고 있지만, 일인이 성과를 차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없으며, 진심으로 나를 돕는 자도 없다”⁹⁷⁾고 했다. 거듭된 좌절과 굴욕을 겪은 이후 그는 다음과 같이 중국이 진흥하려면 핵심은 자강에 있음을 깊이 깨닫기에 이르렀다.

중국이 안으로 닦고 외세를 몰아내며, 병사를 훈련시켜 바다를 방어하고 날로 자강을 도모하면, 조선이 약소하여 감히 멸시하지 못할 뿐 아니라 歐西 대국도 존경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자강의 계책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자립할 수 없다.⁹⁸⁾

중국 유가 경전인 『易經』에 소위 “하늘의 운행이 강건하니, 군자는 쉬지 않고 스스로 자강한다”는 구절이 있는데, 짐작건대 이홍장에게는 ‘自強’이라는 두 글자가 고통스러운 정도로 절실하였으리라.

2_ 1880년대 청의 조선 정책이 지닌 성격과 평가 문제

과연 전통 종번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강화한 것인지 아니면 서구열강을 본따 근대 식민 침략을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홍장의 대외 인식과 외교책략 및 청 정부의 대외 정책에 대한 그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별도의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일본과 한국 학자들은 청이 조선과의 전통

96) 「致總署·論台灣兵事」(同治十三年五月十一日), 『李鴻章全集』第31冊, 57~58쪽.

97) 「致總署·論柳原入京」(同治十三年六月十四日), 『李鴻章全集』第31冊, 72쪽.

98) 「致總署·論維持朝鮮」(光緒六年十一月二十一日), 『李鴻章全集』第32冊, 639쪽.

중번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서구열강의 방식을 본따 조선에 식민 침략을 진행했다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는 이러한 화법에 동의하지 않는다. 몇 가지 역사적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시 조선의 위기가 날로 커지면서 중국 조야에서 제기된 강경한 조선 처리 방안이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어떠한 태도를 취했고 청 조정의 태도는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1880년 이홍장 등이 조선의 주도적 문호 개방 권고에 착수하면서, 이와 동시에 하여장 중국 주일 공사는 더 강경한 조치를 주장했다. 그는 상책과 하책을 제시했다. 상책은 몽골과 티베트의 예에 따라 조선에 駐扎辦事大臣을 두고 “內國의 정치와 外國의 조약을 모두 중국이 맡는 것”이다. 당시 다사다난한 시국으로 이 방법은 금세 실시가 불가능했다. 하책은 러시아가 독점하게 하느니 조선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각국과 통상조약을 맺도록 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므로 청 조정이 관원을 조선에 보내 “대신 조약 체결을 맡거나”, 청 조정이 조서를 내려 “조선 국왕이 타국과 조약을 맺도록 하고, 그 조약의 서두에 조선국이 중국 정부의 명을 받들어 某某國과 조약을 맺기를 원한다고 밝히도록 한다”⁹⁹⁾는 내용이였다.

이에 대해 총리아문과 이홍장은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이홍장은 총리아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

조선이 이전에 일본과 조약을 맺을 때 중국은 방관하면서 완곡하게 권고했을 뿐 그곳에 관원을 보내 주도하지 않았고, 그 조약 안에 중국 정부의 명을 받든다는 어구도 없었다. 지금 서국과 조약을 맺는데 우리 정부의 명을 받든다고 쓰라고 한다면, 조선이 받아들인다 해도 서국에서 받아들일 리가 없다.¹⁰⁰⁾

99) 何如璋, 1972, 「主持朝鮮外交議」(光緒六年十月十六日),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2卷, 440~441쪽.

100) 「復總署·論維持朝鮮」(光緒六年十一月二十一日), 『李鴻章全集』第32冊, 639쪽.

하지만 1882년 조선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중국은 조선에 출병하여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저지하고 조선에 대한 중주권을 강화하여 동북 방어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 이때 청류당의 鄧承修와 張佩綸 등이 조선에 더 강력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工科給事中 등승수는 일본에 군사 위력을 보여 조선 등 藩屬을 지켜야 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은 상주문을 올렸다.

군사를 아는 대신을 따로 파견하여 煙臺에 머물면서 기회를 엿보아 배치한다. 싸우겠다고 분명히 밝힐 필요는 없지만 남북양의 전함을 두터이 東渡의 위세를 보이고 나누어 바다로 나가 순찰하여 밖으로 상민 보호를 명목으로 번갈아가며 출입하여, 항로 조사를 빌려 풍랑을 충분히 파악하고 상황을 둘러보는 것이 적의 요해지를 장악하여 꼼짝 못하게 하는 계책이다. 고려에 주둔하고 있는 吳長慶 수륙 각 군은 잠시 철수를 늦추어 뿔이 된다. 상황이 끝난 후에 류큐 점령과 함부로 강요한 죄를 묻는다. 신의 짐작으로, 일인이 필히 두려워 감히 도발하지 못할 것이다.¹⁰¹⁾

청 조정은 밀지를 내려 이홍장과 張樹聲이 의논하여 상주하라 일렀다. 이홍장과 장수성은 “자강을 위한 구체적인 일로 전함을 증강하는 것이 요체이니, 연대로 옮겨 주둔하는 것은 급하지 않다. 중국의 전함이 쓰기에 족하여 남을 통제할 수 있게 되면 일본이 스스로 따르리라”¹⁰²⁾는 상소문을 올렸다.

翰林院 侍讀 張佩綸은 심지어 조정에 일본 정벌을 비밀리에 도모하자는 계책까지 올렸다. 즉 남북양 대신에게 水師를 훈련시키고 널리 전함을 만들게 하여 타이완과 산둥 두 곳에 병사를 두고 군함을 모아 연해 각 督撫와 수륙 각 군을 속성하여 “일본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자”는 것이었다. 또한 右庶子로 승진한 장패륜은 다시 상주문을 올려 조선 선후 여섯 가지 사무를 아뢰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조선에 통상정책을 처리하기 위한 通商大臣을 보내서

101) 鄧承修, 「請維藩屬疏」(光緒八年八月初二日), 『語冰閣奏議』卷3, 2쪽; 沈雲龍, 1966, 앞의 책, 第12輯, 139~140쪽.

102) 「議復鄧承修駐軍煙臺折」(光緒八年八月十六日), 『李鴻章全集』第10冊, 83쪽.

조선의 외교정책을 관리하는 것이었다. 둘째는 병권 준비로, 중국에서 教習을 파견하여 서양 선박 구매를 맡고 조선 군사를 훈련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倭約을 구제하는 것으로, 조일 ‘제물포조약’은 조선이 일본에 배상금을 주고 일본이 한성에 주둔하도록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북양에 칙령을 내려 조선에 차관 조달을 하지 말고 吳長慶 등에게 일본군을 제압할 방법을 비밀리에 모색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넷째는 병선 구입으로, 거금을 배정해 빠른 함선을 두 세 척 만들어 인천 항구를 수비하도록 칙령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다섯째는 奉天 방어로, 盛京將軍이 旗丁을 뽑아 훈련시켜 提督 宋慶 휘하에 이끌도록 하여 봉천 방비를 강화하라고 칙령을 내린다는 것이었다. 여섯째는 永興 확보로, 조선의 영흥만 방어 방책을 준비하여 러시아의 침략을 방지할 계획을 은밀히 준비한다는 것이었다. 두 차례의 상소문이 올라가자, 청 조정은 모두 이홍장에게 보내 의논하여 상주하도록 했다.¹⁰³⁾

이홍장은 이에 답하는 상주문에서 일본 정벌은 상책이 아니라고 보면서 “일본은 西法을 추종하니 비록 형태만 비슷하다고는 하지만 모든 선박과 대포는 족히 우리와 상대할 만하다. 만약 수천 리의 바다를 건너 반드시 승부를 가려 그를 멸망시키라고 명한다면 감히 자신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東征은 불필요하지만 동정의 뜻은 없어서는 안 된다. 중국 水師 증강은 실로 하루라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여섯 가지 사무에 대해서는 “이미 결정되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아직 하지 못한 일도 있다”고 했다. 통상정책 처리는 금방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병권 준비는 吳長慶이 이미 수행하고 있으며, 외약 구제는 차관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慶軍이 일본군을 제압 가능하며, 병선 구입은 지금으로서는 쉽게 논의할 수 없는 일이지만 봉천 방비는 병선 증파 훈련이 긴요하며, 영흥 확보는 천천히 상의할 것이라고 했다.¹⁰⁴⁾

103) 張佩綸, 「請密定東征之策折」(光緒八年八月十六日), 「條陳朝鮮善后六事折」(光緒八年九月十六日), 『澗于集·奏議』卷2, 59~61, 63~66쪽; 沈雲龍, 1966, 앞의 책 第10輯, 297~301, 305~312쪽.

104) 「議復張佩綸靖藩服折」(光緒八年八月二十二日), 「議復張佩綸條陳六事折」(光緒八年十月初五日), 『李鴻章全集』第10冊, 89, 110~113쪽.

당시 淸軍 조선 주둔 統帥 오장경 막료의 張謇은 동삼성 보호와 조선 통제의 목적에서 조선을 폐하고 郡縣을 두는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한때 주장했다. 그는 오장경에게 조선 善后六策을 제시하면서, 이 가운데 “조선의 경우 漢의 元菟郡과 樂浪郡의 예를 활용해 폐하고 군현을 만들거나 周의 예에 따라 監國을 설치하거나, 혹은 重兵을 주둔시켜 그 海口를 지키고 그 內政을 개혁하거나 또는 스스로 개혁하여 新軍을 훈련시켜 우리 동삼성과 한 편이 되도록 명한다. 일본의 경우 三道 出師하여 류큐를 회복한다”고 제안했다. 오장경이 北洋에 제안하니 “북양은 단호하게 이를 물리쳤다.” 장건이 직접 이홍장에게 글을 올리자 이홍장은 “일이 많아 잠시 논의하지 않고 보류한다”고 했다. 장건이 다시 여러 경로를 거쳐 慈禧太后까지 가자, 자희태후가 軍機處에 자문을 구하고 군기처는 다시 이홍장의 의견을 묻자, 이홍장이 “역시 그를 물리치니” 결국 흐지부지되었다. 1911년이 되어 조선이 일본에 병합된 후 동삼성에 위기가 닥치자 장건은 사람들과 이 일을 거론하면서 여전히 비분강개하면서 이홍장의 어리석음을 질책했다. 그는 “동삼성을 망하게 한 죄는 이홍장에게 있다”¹⁰⁵⁾고 생각했다

1884년 조선 갑신정변 이후 袁世凱는 중국이 이 기세를 몰아 조선에 監國을 설치하여 그 내정과 외교를 대리해야 한다고 이홍장에게 건의했다.¹⁰⁶⁾ 하지만 당시 청불전쟁이 한창이었으므로, 일본과의 관계 악화나 별도의 군대동원을 원하지 않았던 이홍장은 원세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듬해 원세개가 “조선에 주둔하면서 교섭 통상 사업”을 맡았는데 그 명분은 ‘總領事’도 ‘감독’도 아니었다. 물론 원세개가 조선에 주재하며 조선의 내정과 외교를 심하게 간섭했다는 점은 확실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중국의 종주권을 강화하였을 뿐 전통적 종번관계의 틀을 깨지는 않았다.

105) 張謇, 1994, 「爲韓亂事致駐防吳提督孝亭函」(光緒十年), 「爲東三省事復韓國國函」(宣統三年), 『張謇全集』第一卷, 江蘇古籍出版社, 13, 204~205쪽.

106) 「照錄委辦親慶等營會辦朝鮮防務袁丞世凱來稟」(光緒十年 10月 28日 보냄, 11月 9日 받음); 故宮博物院, 1932,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卷6, 北平故宮博物院, 19쪽.

1886년 중국의 영리 주재 공사 劉瑞芬은 심지어 조선을 중국의 行省으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홍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중국이 그 全國을 접수하여 行省으로 바꾸는 것이 상책이다. 다음으로는 영국, 미국, 러시아 제국을 청하여 함께 보호하여 타인이 한 치의 땅도 차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조선을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창출간에 전쟁이 일어나 타인이 뺏어 차지하면 후환이 더욱 말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이홍장은 조선을 중국의 行省으로 바꾸는 上策에 반대하였지만, 영국과 러시아와 연락하여 함께 조선을 보호하는 데에는 찬성했다. 그는 이 뜻을 총리아문에 타진하였지만, 총리아문은 부결하면서 “조선은 우리 藩屬으로 이웃나라의 보호를 구하는 것은 격식에 맞지 않는다”¹⁰⁷⁾고 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상의 여러 방책에 강경한 부분이 적지 않고 심지어 종변관계를 깨트릴 수도 있었지만, 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청의 대조선 정책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한 청 정부는 조선과 1882년 10월 商民水陸貿易章程을 체결했다. 이 무역장정은 서구열강이 조선 정부에 체결을 강요한 조약과는 달랐다. 청과 조선은 전통적 종변관계가 있었고 이는 서구열강이 갖추지 못한 부분이었다. 이 장정은 종변관계와 양국 상민이 서로의 항구에서 상호 무역하는 원칙을 각별히 강조했다. 첫머리에 “조선은 오래도록 藩封으로 典禮에 관하여 정해진 제도가 있으니 재론할 필요가 없다. 다만 현재 각국이 수로로 통항하니 海禁을 속히 열어 양국 상민이 서로 무역하여 함께 이익을 균점해야 한다. 邊界의 互市의 예도 時宜에 맞게 변통해야 한다. 이번에 제정한 수륙무역장정은 중국이 屬邦을 우대하는 뜻으로, 각국과 같은 이득을 일체균점하려는 것이 아니다”¹⁰⁸⁾라고 밝혔다. 이홍장은 총리아문에 보낸 서한을 통해 조약 체결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107) 姚錫光 지음, 李吉奎 정리, 2010, 『東方兵事紀略』, 中華書局, 15쪽.

108) 中朝, 「商民水陸貿易章程」(1882年 10月 1日, 光緒八年八月二十日); 王鐵崖, 1982, 『中外舊約章匯編』 第一冊, 三聯書店, 404~405쪽.

중국과 조선의 통상 건은 사전에 황제의 명을 받아 장정을 논의했다. 먼저 마진충이 조선에 가서 그 정황을 살피고 상세하게 논의한 후에 다시 마진충과 周가 會典과 典故를 대조 비교하고 '만국공법'을 상세히 살폈다. 무릇 속방 무역 왕래의 한계로 각 與國과는 비교 가능하지 않으므로, 수륙무역장정 8개조를 정할 때 안으로는 옛 제도를 변통하고 時宜를 참작하여, 서로가 이익이 되며 속국 교섭의 체통에 어긋나지 않으려 했다.¹⁰⁹⁾

이홍장은 다시 조정에 상소를 올려 “장정의 첫머리에, 이번 장정은 중국이 속방을 우대하는 뜻으로 각국과 같은 이득을 일체균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를 통해 양국이 서로 맺은 약정과 다르니 他國은 이를 선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명분을 밝혔다”¹¹⁰⁾고 설명했다. 이 장정이야말로 청조가 조선과의 중변관계를 강화한 구체적인 증거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조선과 중국의 중변관계가 정식으로 해소되는 법률적 근거는 청일전쟁 이후 1895년에 체결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체결된 시모노세키조약[下關係約]이다. 사실상 1880년대부터 청일전쟁 이전까지 청과 조선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전통적 중변관계의 틀 속에 있었다. 비록 청 정부가 원세개의 조선 주재를 통해 중국의 중주권을 의식적으로 강화했지만, 당시 중국과 조선의 관계는 결코 전통적 중변관계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청조는 조선에 대해 서양식 식민 침략을 진행할 역량도 의도도 없었다.

[번역: 도희진(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109) 「致總署·議朝鮮通商章程」(光緒八年八月二十九日), 『李鴻章全集』第33冊, 168쪽.

110) 「妥議朝鮮通商章程折」(光緒八年八月二十九日), 『李鴻章全集』第10冊, 95쪽.

참고문헌

〈차 자료〉

- 顧廷龍·戴逸 主編, 2008, 『李鴻章全集』, 安徽教育出版社.
- 曾國藩, 1994, 『曾國藩全集』, 嶽麓書社.
- 陳錚 編, 2005, 『黃遵憲全集』, 中華書局.
- 張謇, 1994, 『張謇全集』, 江蘇古籍出版社.
- 姚錫光, 2010, 『東方兵事紀略』, 中華書局.
- 鄧承修, 1966, 『語冰閣奏議』, 臺北文海出版社.
- 張佩綸, 1966, 『澗於集·奏議』, 臺北文海出版社.
- 寶璣 等, 1966, 『籌辦夷務始末(同治朝)』, 臺北文海出版社.
- 王彥威·王亮, 1987, 『清季外交史料』, 書目文獻出版社.
- 王鐵崖 編, 1982, 『中外舊約章彙編』, 三聯書店.
- 故宮博物院 編, 1932,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北平故宮博物院.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臺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中國第一歷史檔案館, 錄副奏摺, 據國家清史編委會網上工程—中華文史網(<http://www.qinghistory.cn>)

〈연구논저〉

- 苑書義, 1994, 『李鴻章傳』, 人民出版社.
- 李守孔, 1985, 『李鴻章傳』, 台北學生書局.
- 謝世誠, 2006, 『李鴻章評傳』, 南京大學出版社.
- 劉廣京·朱昌峻, 1995, 『李鴻章評傳—中國近代化的起始』, 上海古籍出版社.
- 雷頤, 2008, 『李鴻章與晚清四十年』, 山西人民出版社.
- 董叢林, 2008, 『李鴻章的外交生涯』, 團結出版社.
- 蔡東杰, 2001, 『李鴻章與清季中國外交』, 台北文津出版社.
- 王璽, 1981, 『李鴻章與中日訂約』, 台北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專刊.
- 王芸生, 2005, 『六十年來中國與日本』, 三聯書店.
- 馮天瑜, 2001, 『“千歲丸”上海行—日本人1862年的中國觀察』, 商務印書館.
- 西里喜行, 胡連成 等 譯, 2010, 『清末中琉日關係史研究』, 社會科學文獻出版社.

安岡昭男, 胡連成 譯, 2007, 『明治前期日中關係史研究』, 福建人民出版社.

伊原澤周, 2008, 『近代朝鮮の開港 - 以中美日三國關係爲中心』, 社會科學文獻出版社.



[ABSTRACT]

Li Hongzhang's Understanding of Japan and His Foreign Strategy

– Centering on the Period of 1870s –

Li, Xizhu

1870s, a turning point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East Asia, saw Li Hongzhang's crucial role in the change of China–Korea–Japan relations from tradition to modernism. In this period, Li's understanding of Japan was rather complex and his diplomatic strategy dealing with Japan multifaceted. When China concluded a treaty with Japan to promote friendly relations, he looked at China–Japan relations from the angle of geopolitics and intended to unite Japan to resist Western aggression, for he thought that Japan could play an important part in Sino–Western connections. However, when Japan dispatched troops to Taiwan and then annexed the Ryukyu Islands, he came to realize that Japan was growing powerful and prosperous through the Meiji Restoration and by learning from the West. Well aware of Japan's aggressiveness, he had a firm conviction that Japan would eventually invade China and that China could do nothing but strive to become stronger through her own political reform. Meanwhile, in order to accomplish his diplomatic strategy of exploiting Western powers to withstand Japan and guard against Russia, he encouraged Korea to sign a trade contract with the United States and open to Western powers in the hope of standing up against Japanese and Russian aggression with the support of the United

States and Western powers. The fundamental purpose of all his efforts was to maintain the suzerain-vassal relations between China and Korea, especially to secure China's national defense. As he was a down-to-earth diplomat, his thought of dealing with the outside world and his diplomatic strategy immediately influenced the Qing Government's foreign policy and had much effect on the relations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in 1880s and even their relations before the Sino-Japanese War of 1894~1895.

keywords

Li Hongzhang, Unite Japan to Resist Western Aggression, Incident of Taiwan and the Ryukyu Islands, Exploit Western Powers to Withstand Japan and Guard against Russia, Suzerain-vassal Relations.

일본의 류큐 병합과 동아시아 질서의 전환

- 청일수호조규를 중심으로 -

오카모토 다카시 | 岡本隆司, 교토부립대학 문학부 준교수

I. 머리말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이 1871년 청과 ‘청일수호조규’를, 1876년에는 조선과 ‘조일수호조규’를 각각 체결함으로써 동아시아 3국은 ‘조규’에 의한 通交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일본은 조선과의 서계문제와 강화도사건, 청과의 타이완사건과 타이완 출병, 그리고 1879년 ‘류큐처분[琉球處分]’에 이르기까지 메이지유신 이후 동아시아를 무대로 연이은 대립과 분쟁을 일으켰다.

이러한 사건의 경위와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일본사와 동양사 각 분야에서 수없이 많은 양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대부분의 연구는 각 사건의 사실 경과를 개별적으로 다룬 것으로, 1870년대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아 계통적인 시각으로 검토한 연구는 아직까지 거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개별적인 연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은 없었는지,

※ 투고일: 2011년 4월 6일, 심사일: 2011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30일.

또는 거꾸로 1870년대 자체를 하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의 문제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1870년대 초에 체결된 청일수호조규와 청의 입장에 주목했다. ‘류큐처분’으로 귀결되는 1870년대에 일어난 몇 가지 중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그 경과를 검토하고, 이 사건들을 관통하는 요소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각각의 사건에 대한 청의 이해관계가 청일수호조규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1870년대의 역사적인 의의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1_ 청일수호조규의 역할(평가)

청일수호조규에 관해서는 방대한 양의 연구가 존재한다. 그 모두를 일일이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 논점과 시각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큰 작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청 측의 이해관계에 한정하고, 특히 구체적으로는 청일수호조규의 성격을 ‘청일제후’로 규정짓는 논의를 검토하고자 한다.¹⁾

이 논의 자체는 이미 모리타 요시히코[森田吉彦]²⁾와 리 케이쇼[李啓彰], 특히 후자의 연구에서 분명하게 반박·부정되어 이제는 논의가 끝났다고 해도

1) 관련 연구의 양이 많지만, 예를 들어 최근 집대성한 것으로서 西里喜行, 2005, 『清末中琉日關係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284~309쪽 참조. 또한 전기적인 저술에도 국내의 모두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松浦玲, 1987, 『明治の海舟とアジア』, 岩波書店, 122쪽; Edwin Pak-wah Leung, 1994, “Li Hung-chang and Liu-ch’iu(Ryukyu) Controversy, 1871-1881,” Samuel C. Chu & Kwang-Ching Liu, eds., *Li Hung-chang and China’s Early Modernization*, Armonk, etc., pp. 162~175(梁伯華, 「李鴻章和琉球爭端1871-1881年」[美], 劉廣京·朱昌峻編, 陳絳 譯校, 1995, 『李鴻章評傳-中國近代化的起始』, 上海古籍出版社 所收, 198~214쪽 참조).

2) 森田吉彦, 2004, 「幕末維新期の對清政策と日清修好條規-日本・中華帝國・西洋國際社會の三角關係と東アジア秩序の二重性, 1862~1871年」, 『國際政治』第139號; 森田吉彦, 2009, 「日清關係の轉換と日清修好條規」, 岡本隆司·川島真編, 『中國近代外交の胎動』,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좋을 것이다.³⁾ 그러나 두 사람의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은 논점이 있고, 이것은 이 글의 논지와도 크게 관련이 있으므로 다시 확인해 둘 필요성이 있다.

본래 청일수호조규의 내용은 일원적인 것이 아니다. 중국과 일본의 복잡한 당시의 관계가 반영되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각각의 관점에서 쌍방의 이해관계가 부딪친 끝에 이루어진 조약이고 조문이다.⁴⁾

주지하고 있듯이, 이 조약 교섭의 주도권은 청에 있었고, 청은 대부분 미리 준비한 원안대로 조문화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중 이 글과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은 상호불가침을 결정한 제1조와 상호원조에 관한 제2조이다. 논리의 구조상 우선 제2조부터 보도록 하자.

만약 양국 중 어느 한 쪽이 타국으로부터 불공정하게 또는 업신여겨 가
벼이 취급되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반드시 알려 서로 돕거나 혹은
중재 및 조정하여 우의를 돈독히 해야 한다.

청일수호조규를 ‘청일제휴’로 보는 것은 이 조문 때문이다. 즉 이 조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한 견해가 있는 것이다.

원래 이 조문은 양측의 초안에 없었다. 교섭에 임하던 청의 津海關道陳欽이 초안 작성 최종단계에 새롭게 추가한 것이다.⁵⁾ “조문 자체는 일반원칙으로서 우호에 그치는 내용”⁶⁾으로 봐도 좋을 수 있겠지만, 청의 의도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도진흠은 그 의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서양 각국은 서로 친밀하고, 항상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다. 미얀마·
태국·베트남 등 중국의 속국까지도 서양인이 차지하고 있다. 지금 미

3) 李啓彰, 2008, 『近代日中外交の黎明－日清修好條規の締結過程を中心に』, 東京大學大學院 人文社會系研究科提出 博士論文, 특히 225쪽 참조.

4) 그중 영사재판권의 상호승인과 행사의 형식에 관한 최근의 가장 세밀한 연구로는 青山治世, 2010, 「領事裁判權を行使する中國－日清修好條規の領事裁判規定と清朝在日領事による領事裁判事例を中心に」, 『東アジア近代史』第13號 참조.

5) 王璽, 1981, 『李鴻章與中日訂約』,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92쪽.

6) 森田吉彦, 2004, 앞의 논문, 56쪽.

국이 조선과 결전을 벌인 것(=신미양요)은 앞으로 중국이 강해지면 독립의 형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듣자 하니 이번엔 미국은 패전을 당하고 퇴각했다가 재차 출항 명령이 내려졌지만 반대 의견이 많다고 한다. 자그마한 조선조차 두려워하는데, 만일 일본과 연합한다면 동양 각국은 모두 제후하는 형세가 될 것이다. 일단 무슨 일이 발생하면, 가령 이쪽에서 원군을 얻기 어려울지라도 상대의 원조를 끊음으로써 서양인을 제압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일본은 앞서 서양과 수년간 교전을 했을 때, 비록 완패하지는 않았지만 계속되는 兵禍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화의를 맺게 되었다. 이번에 우리에게 사절을 파견해 온 목적은 통상보다는 우리와 믿음[信]과 의[誼]를 다지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은 아무래도 서양인의 침략을 미연에 막아보려는 것으로, 혼자 힘으로는 무리이기 때문에 중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도움을 얻으려는 것이다. 상대방을 기만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성심성의껏 응해도 좋을 것이다. 중국은 땅이 넓고 사람이 많아 손쉽게 부강해질 수 있기에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호의를 가지고 온 만큼 표면상으로는 우대하고 실질적으로는 결속을 돈독히 해 놓으면 될 것이다. 서양인이 이 소식을 듣고 내심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⁷⁾

‘일본과 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제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연합’은 우선 서양이 청을 압력하고 있다는 현상 인식과, “중국과 손잡고 도움을 받으”려는 일본의 우호적인 태도를 전제로, 청은 일본이 제후를 원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제후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른바 ‘연합’이 만일 실시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건에 한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일거양득’이라는 표현이 그간의 사정을 말해 주고 있다. 일본과 ‘제후’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서양인을 제압하는 한 방법’이고, 이것이 성과를 올리려면 일본도 청과 동일하게 서양과 대립해야만 한다. 하지만 이것은 당시 서양과의 관계악화를 피하고 조약개정을 지향하고 있던 일본의 이해에 반하는 것이었다.

7) 同治十年六月十三日, 「致總署文案處函稿」, 佚名輯, 1999, 『晚清洋務運動事類彙鈔』中冊,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510~511쪽.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2조가 서구열강의 의심을 불러일으켜서 일본은 이 조항의 철회를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애초에 일본을 서구열강 측으로부터 떼어내어 서양을 견제하려는 청 측의 의도에서 보면 필연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양측의 응수와 군사동맹이 아니라는 청 측의 보충설명을 거쳐 1873년에 비준 교환이 실현됨으로써 청일의 '연합'과 '제휴'도 거의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것이 되었다.⁸⁾

달리 말하자면, 제2조를 '제휴'로 정의한다면 이것은 청일 각각 본래의 의도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내용이 없는 조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후 청일의 '연합'과 '제휴'를 고려하는 것은 오히려 史實 경과의 이해에 오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어서 제1조를 보도록 하자.

이후 대청제국과 대일본제국은 앞으로 영원히 우호를 강화한다. 또한 양국의 所屬邦土는 서로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침략하지 않으며 영원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이 조문이 형성된 경위나 여기에 담겨진 청 측의 의도는 이미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밝혀져 있다. 대표적인 사료를 확인해 두자.

일본은 조선과 근접하고, 양국의 강약은 『明史紀事本末』를 읽어보면 분명하다. 최근에 들어서 일본은 다시 조선을 노리고 있다고 들었다. 그 야심을 키워서 조선을 병합하게 되면, 우리 평토편[奉天]·지린[吉林]·헤이룽장[黑龍江]은 그 방벽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로이 대책을 세워두어야만 한다. 지금 통교를 청해 왔으니 이에 편승하여 조약을 체결해 둔다면 영구적인 안전은 무리라도 견제의 역할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조선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보기

8) 李啓彰, 2006, 「日清修好條規成立過程の再檢討－明治五年柳原前光の清國派遣問題を中心に」, 『史學雜誌』第115編 第7號.

안 좋으므로 개괄적으로 ‘所屬邦土’로 부르기로 했다.⁹⁾

즉, 이 조문은 조선에 일본이 침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선이라고 치칭하거나 또는 별도의 조항을 만들어서 조선을 언급하는 것이 지나치게 노골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이 된 것이다. 교섭 책임자인 이홍장도 이 조문이 “은밀히 조선 등과 같은 나라를 위해 언급해 놓은 것”으로 “조규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심사숙고한”¹⁰⁾ 문장이라고 보고한 것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이홍장을 비롯한 청 측 당국자는 이전부터 일본의 조선 침공을 경계해 왔다. 그 논거 중 하나는 왜관과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조선 출병이라는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얻은 추론(analogy)이고, 또 하나는 현재 진행 중인 막말유신 일본의 특히 軍備의 서양화와 근대화에 있었다.¹¹⁾ 이것의 직접적인 계기는 1867년 1월, 홍콩 체재 중인 하치노헤이 준슈쿠[八戸順叔]라는 일본인이, 조선 국왕은 5년마다 에도의 ‘大君’, 즉 도쿠가와[徳川] 장군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지만, 현재 이를 오랫동안 하지 않고 있어서 장군이 죄를 묻기 위해 조선에 파병하려 한다는 내용을 신문에 기고한 것이었다. 이른바 하치노헤이 사건[八戸事件]¹²⁾으로, 이를 본 청 당국의 현실적 위기감이 갑자기 강해졌다.

前代 명조 때 倭寇였던 일본은 장쑤[江蘇]와 저장[浙江]의 연안지방을 넓게 유린했을 뿐만 아니라 조선으로도 손을 뻗쳐 매사 우쭐대며 오랫동안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았다. 최근 일본은 영국과 프랑스에 패전하고 화해했다. 그러자 곧장 분발하여 군함 제조를 배우고 각국과 교

9) 同治九年十二月十八日, 李鴻章의總理衙門아て咨文, 署理津海關道陳欽「備稿」, 佚名輯, 1999, 『晚清洋務運動事類彙鈔』上冊,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475쪽; 王璽, 1981, 앞의 책, 51쪽도 참조.

10) 同治十年七月十五日, 「日本約章繕呈底稿摺」, 『李文忠公全集』奏稿 卷18, 49쪽.

11) 가장 이른 이홍장의 사례는 同治三年四月 戊戌의條, 「江蘇巡撫李鴻章原函」, 『籌辦夷務始末』同治朝 卷25, 9~10쪽일 것이다.

12) 그 전말은 예를 들어,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冊, 朝鮮總督府中樞院, 121~128쪽; Kim, Key-Hiuk(金基赫), 1980,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Berkeley, etc., pp. 73~75 참조.

제하고 있는 것은 뭇가를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 만일 영국과 프랑스 등이 조선에 출병한다면 그 목적은 크리스티고 포교와 통상에 불과하다. 이들 국가는 서로를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을 점령하여 토지를 빼앗을 리는 없다. 그러나 일본은 견제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토지를 탐낼 수도 있다. 만일 조선이 일본에게 점령된다면 일본은 중국과 인접하게 되어 커다란 걱정거리가 될 것이다. 일본에게 있어서 포교와 통상은 안중에도 없다. [...] 이처럼 조선이 일본군에게 공격을 받으면 프랑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외환이 될 것이다.¹³⁾

이상은 당시 總理衙門의 상소이다. ‘통상’을 목적으로 하는 영국과 ‘포교’를 목적으로 하는 프랑스보다도 조선을 점령하여 영토화할지도 모르는 일본이 가장 ‘위협’인 것이다. 이러한 日本觀의 소산이 청일수호조약 제1조였다고 말할 수 있다.¹⁴⁾

마침 미국의 함대가 조선을 공격했다. 약 5년 전, 대동강에 침입한 미국 상선을 불태워버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른바 辛未洋擾이다. 이 정보를 입수한 청 당국자는 물론 조선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에 못지않게 우려했던 것은 일본과의 관련이었다.

일본이 예전부터 조선을 삼키려는 것에 대해서 [...] 일본은 서양과 점차 긴밀한 관계를 맺고, 조선과는 이전보다 대립을 심화시켜 왔다. 일본과 서양은 이미 조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선은 단독으로 대항하기 어려울 것이고, 만일 저항한다면 일본은 더욱 조선 근린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 요코하마의 [영자] 신문을 보니, 일본 에도에서 대관[廣澤眞臣]이 사족에게 살해당해서 국내가 혼란스럽고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서양인을 도와 조선을 어떻

13) 同治六年二月十五日, 總理衙門의 附片,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第2卷, 54쪽.

14) 佐々木揚, 2000, 『清末中國における日本觀と西洋觀』, 東京大學出版會, 17~20, 29쪽.

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¹⁵⁾

예전부터 조선 병탄을 노리고 있다는 야심, 최근 들어서 서양 각국과 좋은 관계, 객관적으로 봐서 정확한 인식이었는지 여부를 떠나 이러한 일본의 정황을 종합해 생각해 보면, 일본에 대한 猜疑와 경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조사한 결과 일본이 미국을 ‘뒤에서 도와주고’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물론 그 사실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일본에 대한 걱정을 없앨 수도 없었다.¹⁶⁾ 청 측이 조선의 안전과 관련하여 일본이 서양과 손잡는 것을 얼마나 걱정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상을 고려해 보면 청일수호조규의 제2조도 제1조의 목적과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2조는 서양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으려는 취지로, 이것은 일본과 서양의 결합을 미연에 막으려는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에 대한 경계와 결합이라는, 언뜻 보면 반대인 것 같은 제1조와 제2조는 조선에서 洋擾가 발생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조선에 대한 침공을 막는다는 점에서 整合的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청일수호조규는 한반도의 안전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과 서양에 대한 강한 경계심이 그 근원에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은 마지막까지 그것을 알아챌 수 없었다. 청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직후, 제1조의 “所屬邦土는 藩屬土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었다.¹⁷⁾ 이것이 청 측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듣고, ‘속’ 결과였는지에 대한 진상을 알 수 없다.¹⁸⁾ 확실한 것은 일본이 당초부터 ‘소속방토’에는 속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며, 조선 등 속국의 문제를 전혀

15) 同治十年二月二十一日, 「總署收直隸總督李鴻章函」,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1968, 『中美關係史料 同治朝』下冊, 中國近代史資料彙編, 757쪽.

16) 同治十年三月十五日同封, 「江海關道涂宗瀛來稟」, 「總署收直隸總督李鴻章文」,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1968, 위의 책, 763~764쪽.

17) 外務省編, 1938, 『日本外交文書』第4卷, 日本國際聯合協會, 223쪽.

18) 森田吉彦, 2004, 앞의 논문, 55~56쪽.

고려하지 않고 있었던 점에, 청과의 근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

이상의 경위를 종합해 보면, 일본의 입장에서든 청의 입장에서든 청일수호조규를 ‘청일제휴’로 보는 관점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2_ 타이완 사건

청일수호조규가 조인된 것이 1871년 9월 17일이고, 이로부터 약 2개월 후에 발생한 것이 타이완 사건이다. 그 경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류큐[琉球] 미야코지마[宮古島]의 표류민이 타이완에 표착하고, 같은 해 11월 말에 그중 54명이 타이완의 ‘生蕃’에게 살해된 사건이다.

약 1년 후 메이지유신을 축하하기 위한 류큐왕국의 게이가시[慶賀使]가 도쿄에 도착했을 때, 메이지 정부는 1872년 10월 16일(메이지 5년 9월 14일)에 류큐왕국을 류큐번으로, 국왕 쇼타이[尙泰]를 류큐번왕으로 임명했다. 이로부터 2주 후인 10월 30일에는 류큐의 외교권을 외무성에 이관하였다. 이러한 것들은 본래 타이완 사건과는 무관한 일본 정부의 기존 방침에 따른 조치였다. 외교권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전에 류큐가 맺은 서양과의 조약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류큐의 위치규정이 바뀌는 가운데, 타이완 문제가 외교권 문제와 연관되게 되었다. 이는 메이지 정부가 고용한 외국인, 미국 군인 르젠드르(Charles W. LeGendre)가 건의했던 것으로, 일본 정부의 방침이 되었다.

다음 해 1873년(메이지 6년) 4월부터 6월까지 外務卿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가 청일수호조규의 비준 교환을 위해 특명전권대사로 텐진[天津]과 베이징[北京]을 방문했다. 사절단 일행은 텐진에서 비준서를 교환한 후, 베이징에서 同治帝를 알현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때 타이완 사건과 류큐를 관련짓는 타진과 협의도 이루어졌다.

소에지마는 6월 21일, 수행원 중 일등서기관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를 총리아문에 파견하여 회담을 가졌다. 회담 중에 타이완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여기에서는 어디까지나 의견교환과 문제제기에 머물렀다. 그 상황

은 일본 측 기록에 다음과 같이 남아 있다.

야나기와라 왈, “여기에 조선은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를 오랫동안 왕래 해 왔다. 작년에 조선에서 사건[신미양요를 의미함-인용자]이 발생하기 전, 미국의 駐京公使가 서신을 총리아문에 맡기면서 조선으로 보내 달라 요청했을 때 귀국은 조선을 속국이라고 칭하지만 內政敎諭에는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대답했었는데, 과연 그러한가.”

상대방 왈, “속국이라고 칭하는 것은 舊例를 지키고 책봉·獻貢의 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야나기와라 왈, “그렇다면 조선의 和戰 등도 귀국이 관여할 바가 아닌가?”

상대방 왈, “그렇다.”

야나기와라 왈, “또한 귀국의 타이완은 [...] 귀국의 영토에 속한다. 하지만 귀국은 겨우 섬의 반쪽을 통치하고 그 동부쪽에 있는 土蕃의 땅은 전혀 政權이 미치지 않고 있다. 蕃이 스스로 독립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우리나라 인민이 그 땅에 표류했다가 살해당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장차 使를 보내어 그 죄를 묻고자 한다.”

상대방 왈, “본 대신들은 그저 生蕃이 류큐 국민을 죽였다고 들었지, 아직 귀국 인민과 관계있음을 알지 못한다. 본래 류큐국은 우리나라의 藩屬이기 때문에, 그때 생변으로부터 탈출해 온 류큐민을 우리 관리가 구하여 푸젠[福建]에 인도하였다. 총독이 자애를 베풀어 본국으로 돌려보냈다.”

야나기와라 왈, “우리 정부는 류큐를 소중히 생각한다. 오랫동안 사쓰마의 附屬이었다. 이제 大政을 일신하여 신하가 아닌 인민은 한 명도 없으므로, 장차 撫恤를 베풀고자 한다. 우리 君께서 야만인이 우리 王臣을 해하는 것을 보고서 언제까지고 保民의 권리를 미룰 수는 없다. 류큐인을 우리 國人이라 칭하는데 뭐가 문제이겠는가. 귀국의 관리는 이미 류큐인을 구했다고 말했다. 그 爆殺을 저지른 생변은 어떻게 처리했는가?”

상대방 왈, “이 섬(타이완)의 민은 生·熟 두 종류이다. 예전부터 우리의 王化에 복종하는 자들을 熟蕃이라 칭하고 府縣을 설치하여 통치하였다. 아직 복종하지 않은 자들을 생변이라 하고 이를 ‘化外’로

취급하며 理事를 행하지 않는다. [...] 생변의 暴橫을 제제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政敎가 미치는 바가 아니다.”

야나기와라 왈, “大臣께서 이미 생변의 토지는 政敎가 미치지 않는 곳이라 말했고, 또한 舊來의 증좌도 있으며, 化外 고립의 蕃夷라면, 그저 우리는 독립국이 취하는 조치를 취할 따름이다.”¹⁹⁾

이때 양자 사이에는 합의나 논쟁과 같은 것이 전혀 없었고, 회담 협의도 이것 한 번뿐이었다. 때문에 이것을 “말하기만 하고 듣기만 한 무책임한 대화”라고 평가기도 한다.²⁰⁾ 다만 그런 만큼 쌍방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글을 남겨 놓은 일본 측 대표자 소에지마는 6월 29일 본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냈다.

타이완 생변 처리에 대해서는 이번 달 20일에 야나기와라 대신을 총리 각국사무아문으로 보내어 답판을 짓던 중, 청조 대신으로부터 “토변의 땅은 政敎가 미치지 않는 化外の 民”이라는 답을 들었으며, 별도의 언급 없이 마쳤습니다. 또한 조선국에 대해 청 정부의 正拳이 미치는데 대해서도 물론바, “그저 책봉· 叡眞의 舊例를 循守하는 것으로, 國政에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답했습니다.²¹⁾

이것은 그가 청 측의 회답 중 어디에 주목을 했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조선과 타이완에 대한 청 측의 자세와 전망을 알게 된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즉, 일본 측은, 청에게 타이완의 ‘생변’이 ‘화외의 민’이고, 조선도 ‘관계없다’는 불간섭, 즉 ‘統治外’라는 자세를 밝힌 것으로 본 것이다.

야나기와라의 발언에도 나와 있듯이, 류큐 국민을 일본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본 측의 주장이다. 이것을 타이완의 ‘생변’이 청의 ‘통치외’라는 총리아문의

19) 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 第6卷, 日本國際連合協會, 177~179쪽.

20) 毛利敏彦, 1996, 『台灣出兵 - 大日本帝國の開幕劇』, 中公新書, 55쪽.

21) 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 第6卷, 160쪽.

회답과 함께 보면, 일본인 조난의 책임을 묻는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이 스스로 그 책임을 묻는다는 논리가 될 수 있는 것이다.²²⁾

그렇다면 실제 청의 논리는 어떤 것이었을까. 아쉽게도 위에서 인용한 야나기와라와의 회답을 그대로 기록한 청 측의 사료는 찾아볼 수가 없다. 이듬해 총리아문이 상소한 것 가운데, 당시를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이 있다.

작년 6월에 일본 사신 소에지마 다네오미가 베이징에 왔을 때, 수행원 야나기와라 사키미쓰와 통역관 데이 에이네이[鄭永寧]를 우리 측에 보낸 적이 있다. 그 자리에서 구두로 세 가지를 물었다. 첫째, 마카오는 중국의 관할인가 아니면 포르투갈이 주인인가. 둘째, 조선의 모든 政令은 조선 스스로 자주적으로 정하고 중국은 지금까지 간섭한 적이 없는가. 셋째, 타이완의 생변이 류큐 인민을 살해한 문제로 사람을 생변에 보내어 결판[說話]을 지을 생각이 있는가. 이상의 질문에 대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구두로 하나하나 논했다. 그들이 더 이상 깊이 논의를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질문의 목적까지는 묻기 어려웠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통역관인 데이 에이네이가 “마카오 지방은 무역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장래의 교섭에 대비하기 위해 확인한 것뿐이다. 조선에 대해서는 중국이 중간에서 관계수복을 증개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타이완의 생변에 대해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이후에 만일 일본인이 가게 된다면 마땅한 대우를 해 주었으면 한다고 전하는 것이 목적으로, 무력행사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가 소에지마의 귀국을 배웅했을 때, 다시금 “이후에는 수호조규의 조문에 비추어 양국 소속의 방토는 조금이라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그도 “원하던 바이다”라고 대답했다. 따라서 일본은 지금까지 타이완에 출병한다고 중국에게 말한 적도 없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듯 폭거를 일으킨 것이다. 각국 교제의 관례에 비추어보아도 벗어난 것이다.²³⁾

22) ‘화외’를 국제법상의 ‘주인이 없다[無主]’로 연결시키는 발상과 논리, 그리고 이것이 무력행사로 이어지는 정책형성은 모두 일본 국내 정치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23) 同治一三年三月 辛未の條, 總理衙門の奏摺, 中華書局編輯部, 李書源 整理,

여기에는 일본 측의 기록에서 보이는, ‘화외’를 포함한 총리아문 자신의 구체적인 발언을 신고 있지 않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야나기와라가 굳이 논의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아문 쪽에서도 일본의 의향을 깊이 알아보려 하지 않고 물음에 대하여 지극히 일반적으로만 답했다고 한다. 이것을 일본 측 기사와 비교해 보면, 청 측의 입장에서는 류큐 국민은 ‘일본인’이 아니고 타이완의 생변은 ‘화외의 민’이고, ‘속국’ 조선의 ‘내정교령’에 간섭하지 않는 것은 구태여 서술할 필요도 없는 상식적인 관례였던 것이다.

물론 사후에, 그것도 다른 목적이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그 이해관계에 따라 회담 당시의 대화가 오히려 윤색되거나 감춰졌을 개연성이 높다. 일본 측은 6월 21일 야나기와라 회담에서도, 같은 날 밤 데이 에이네이와 孫士達 회담에서도 반복해서 ‘생변’에 대한 ‘문책’을 언급하며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²⁴⁾ 또 대응한 손사달도 ‘문책’을 전하고, 이를 전해 들은 이홍장도 ‘오만한 일본이 ‘생변과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등 ‘협박’을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²⁵⁾ 무력행사의 가능성이 총리아문에게도 전달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에서 인용한 문장 중 이른바 ‘결판(說話)’은 ‘문책’과 그 뉘앙스가 많이 다르다. 일본 측 기록을 보아서는 “지금까지 타이완에 출병한다고 중국에게 말한 적이 없는데, 지금 갑자기 이렇듯 폭거를 일으킨 것”이라는 중국 측의 서술처럼, 일본이 소에지마 파견 당시와 달리 전면적으로 자세 및 조치를 변화시킨 경위는 事實로서 가능하지 않다.²⁶⁾ 따라서 이는 총리아문이 출병이라는 사태를 맞이하여, 예측 가능했던 사태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본 측 행위의 부당성을 강조했다고 읽는 편이 맞을 것이다.

이러한 作爲가 있었다 하더라도, 류큐·타이완·조선과 관련된 취지가 청

2008, 『籌辦夷務始末』 同治朝 卷93, 中華書局, 25~28쪽.

24) 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 第6卷, 179~180, 207, 209쪽.

25) 同治十二年六月初一日, 「復李雨亭制軍」,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全集』 朋僚函稿 卷13, 文海出版社, 10쪽; 同治十二年六月初一日, 「致兩江制台李·湖廣制台李·江蘇撫台張」, 顧廷龍·戴逸 主編, 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 2008, 『李鴻章全集』 第30冊, 安徽教育出版社, 539쪽.

26) 佐々木揚, 2000, 앞의 책, 56쪽 참조.

측의 상식적인 관례였다는 위치 규정과, 가령 일본 측 기록에 있는 ‘化外’라는 술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해도 일본 측에게 그러한 취지로 대답한 事實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바로 뒤의 문장에서 소에지마에게 청일수호조규 제1조의 규정을 재확인했다고 적고 있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것은 일본 측 기록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에지마가 청 측의 생각대로 승인했다는 사실의 존재는 의심스럽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때 이러한 글을 기록해 놓았을까. 이것이 총리아문의 立論과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 이는 머지않아 타이완 출병으로 인해 청일의 대립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명백해진다.

3_ 타이완 출병과 청일 교섭

‘화외의 민’, 이러한 총리아문의 의사표시를 구실로 일본 정부는 스스로 ‘생변’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대의명분하에 타이완으로 출병했다. 1874년 5월에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가 이끄는 일본군 3,600명이 타이완 남부에 상륙하고, 다음 달에는 ‘생변’의 본거지를 공략하여 군사 활동을 마쳤다. 이 출병의 전말은 거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한다.

다음은 같은 해 1월에 참의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上申하고, 閣議에서 결정된 유명한 ‘타이완 번지 처분요약’이라는 문서의 일부이다.

제1조, 타이완 토번의 부락은 청국 정부의 정권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종래 청국이 간행한 서적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이다. 특히 작년에 前 참의 소에지마 다네오미가 청국에 사자로 갔을 때, 청 관리

27) 조선에 대해 이와 거의 같은 논법의 기록이 총리아문으로 보낸 이홍장의 서간에도 있고(同治十二年四月初七日, 「述副島商論外交」,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全集』 譯署函稿 卷1, 文海出版社, 43~45쪽; 佐々木揚, 2000, 위의 책, 41쪽 참조), 당시 청 측이 무엇보다도 일본 측에게 주장하고 싶었던 사정을 알 수 있다. 대응하는 일본 측 기록(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 第6卷, 138~139쪽)에는 이러한 대화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의 답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인이 없는 토지[無主地]라고 볼 만한 이유가 갖춰져 있다. 따라서 우리의 藩屬인 류큐 인민이 살해당한 것을 보복하는 것은 일본제국 정부의 의무이고, 토번의 公理도 이것을 근거로 한다. 따라서 처분을 실시함에 이르러서는 착실히 土蕃撫民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청국으로부터 한두 가지의 논의가 발생하더라도 무시한다.²⁸⁾

청 ‘관리의 답변’인 ‘화외’를 국제법상의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견해가 이후 일본 측의 기본자세가 된다. 일본은 타이완 출병 초기부터 일관되게 국제법에 논거를 두고 행동하였으며, 이것은 마지막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사태를 야기한 일본의 국내적 계기, 특히 타이완 출병과 국제법의 관계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되었기 때문에,²⁹⁾ 이 또한 상세한 설명은 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본 국내보다 오히려 청일 교섭, 특히 청 측의 자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파악해 두어야 할 논점이다.

청 측은 이 타이완 출병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 하나는, 자신에 대한 이러한 군사 침공을 미연에 저지하지 못한 허술한 방어태세를 재확인했고, 이것이 나중에 海防政策을 시행하고 추진하는 것과 함께 北洋海軍의 건설로 이어지게 된다. 다른 하나는 일본에 대한 경계와 의심이 깊어졌다는 점이다. 전자의 해방 논의와 해군 건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후자에 주목하여 청의 자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1874년 6월 24일 일본을 비난하는 청 황제의 훈령이 내려지고, 다음 달에는 총리아문이 주청 공사 야나기와라 사키미쓰에게 정식으로 항의를 했다. 전 자에는 “일본이 군사 행동을 일으킨 것은 명백히 조약 위반이다”라고 적혀 있

28) 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 第7卷, 日本國際連合協會, 1쪽.

29) 예를 들어 一瀬啓恵, 1995, 「明治初期における台灣出兵政策と國際法の適用」, 『北大史學』 第35號; 後藤新, 2009, 「台灣出兵と國際法－台灣蕃地事務局における戰時國際法の研究を中心として」, 『法學研究』 第82卷 第2號, 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참조.

고,³⁰⁾ 후자에서는 작년 소에지마 다네오미와의 회담을 되새기면서

소에지마 대신과 귀하(=야나기와라)의 귀국을 배웅했을 때, 우리들은 소에지마 대신에게 “이후에는 수호조규의 조문에 비추어 양국 소속의 방토는 조금이라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자, 소에지마 대신이 “원하던 바이다”라고 대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각국의 베이징 주재 공사로부터 일본이 타이완에 출병하여 생변과 교전하려 한다고 연락을 받았다.³¹⁾

라고, 거의 앞에서 언급한 각주 23)의 인용문과 동일한 취지를 주장했다. 황제의 훈령과 총리아문의 항의가 주장하는 바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전자의 구체적인 설명을 후자가 보충하는 논리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타이완 출병은 일본과 청 사이에 체결한 조약인 청일수호조규를 위반했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다. 왜냐하면, 제1조에 “양국의 所屬邦土는 서로 조금도 침략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이것을 비준 교환할 때 소에지마 다네오미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의 ‘소속방토’인 타이완을 무력 침공했기 때문이다.

요컨대 청은 일본과 싸울 자세를 밝힌 것으로, 이렇듯 깊어진 대립을 풀고자 일본 정부는 참의 오쿠보 도시미치를 베이징으로 파견하여 교섭을 하도록 했다.

그러나 교섭은 난항을 겪었다. 오쿠보가 베이징으로 떠난 9월 10일부터 세어보면 다음 달 10월 말까지 2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총리아문과의 회담과 문서를 거듭 주고받으면서도 쌍방은 전혀 양보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렬될 위기도 있었다.

그 경위 자체는 예를 들어 『일본외교문서』를 보면 대략 알 수 있고, 또 그

30) 同治十三年五月 壬子の條, 上諭, 中華書局編輯部, 李書源 整理, 2008, 『籌辦夷務始末』 同治朝 卷94, 中華書局, 9~10쪽.

31) 同治十三年五月 辛未の條, 「給日本國柳原前光照會」, 中華書局編輯部, 李書源 整理, 2008, 위의 책, 32~34쪽.

과정을 상세하게 분석한 연구도 있으므로 하나하나 확인할 필요는 없다.³²⁾ 여기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합의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대립점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러한 교섭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에 있다.

한 예로써, 9월 27일에 일본 측이 제출한 문서와 같은 달 30일에 청 측이 제출한 문서를 보도록 하자. 각각이 서로에 대해 반론하고 있어서 쟁점을 파악하기 쉬울 것이다.

유럽의 고명한 법학자들이 논하는 국제법[公法]에서는 어디를 봐도 政化가 미치지 않는 땅은 屬하는 곳이라 말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이것이 公理이다. 그쪽(=청)은 언제나 『타이완부지[台灣府誌]』라는 서책을 증거로 내세운다. 여기에는 타이완의 생변이 야수와 같이 잔인하고 살인을 즐기는 모습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實地에 비추어보면, 낮에는 약탈하고 밤에는 살인하는데, 이를 체포하여 징벌할 관리도 없다. 이를 政令教化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서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즐기지 않을 테니,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다. 化內에 있는지 化外에 있는지, 政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말고, 법률로 처벌하지 않는 民과 郡縣을 설치하지 않은 토지를 자신의 영역이라고 아무리 말한들 설득력이 있겠는가.³³⁾

일본의 입장은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국제법을 전제로 하면서, 이에 따르면 ‘화외’에 있는, 즉 실질적인 통치를 실시하지 않는 타이완의 ‘생변’은 청국에 ‘속’한 땅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청은 일본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 측은 “타이완의 생변이 원래 중국에 屬한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임”³⁴⁾을 반복하며 일본 출병의 잘못됨을 비난했다.

32) 예를 들어 一瀬啓恵, 1995, 앞의 논문을 참조.

33) 同治十三年九月 庚戌の條, 中華書局編輯部, 李書源 整理, 2008, 『籌辦夷務始末』 同治朝 卷97, 中華書局; 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 第7卷, 242~243쪽.

34) 同治十三年九月 庚戌の條, 「給大久保照覆」, 中華書局編輯部, 李書源 整理, 2008, 위의 책, 53~54쪽; 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 第7卷, 247~248쪽.

이러한 대화를 본 청의 총세무사 로버트 하트(Robert Hart)는 9월 30일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오쿠보노 바텔과 말틴 등의 저술가를 총리아문에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총리아문은 “참으로 고마운 이야기다. 그럼에도 역시 타이완은 우리들의 것이다”라고밖에 말하지 않는다. 일본은 국제법이라는 논점과 관련된 논쟁으로 이끌고 싶고, 일본에는 프랑스인 법률가 르젠드르, 그리고 근거가 되는 많은 서적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인용할 수 있다. 이쪽은 논의를 피하며 “그렇군, 그러나 타이완은 우리의 것”이라고 말할 뿐인 것이 지금의 정확한 상황이다.³⁵⁾

일본 측 기록에도 총리아문 대신 文祥이 “만국공법이란 최근 서양 각국에서 편성된 것으로, 특히 우리 청에 대한 기재는 없다. 따라서 논의에 사용하지 않는다”³⁶⁾고 말했듯이, 청 측이 일부러 국제법의 적용 혹은 그 논의를 피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서양인이나 일본인 등과 같이 국제법이야말로 외교교섭의 전제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청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중시해야 할 것은 청일수호조규였다. 오쿠보노도 청이 “인용하는 청일수호조규는 요컨대 청일 양국이 교제하기 위한 규칙으로, 지금 타이완의 ‘생변’은 중국의 외에 있는 이상 청일수호조규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고,³⁷⁾ 청 측이 청일수호조규를 논거로 하기 때문에 ‘생변’이 ‘중국의 외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국제법이 청일수호조규의 전제로서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했다. 그렇지만 청 측은 이에 납득하지 않았다. “공법의 발취집을 보았지만, 우리나라(청국)와 귀국(일본)은 수호조규를 맺고

35) Vol. 1, Letter No. 114, Hartto Campbell, Z/21, Sept.30, 1874, John K. Fairbank, Katherine F. Bruner & Elizabeth M. Matheson, eds., 1975, *The I. G. in Peking: Letters of Robert Hart, Chinese Maritime Customs 1868-1907*, 2vols., Cambridge, Mass., etc., pp. 180~181.

36) 明治 7年 9月 19日, 「第三回應接」, 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 第7卷, 230쪽.

37) 주 33)과 동일.

있기 때문에, 그저 조규를 준수하고 처치할 따름”이라고 대답했다.³⁸⁾ 일본 측이 주장하는 국제법 기준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청일수호조규에 집착하는 것에는 물론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우선 청일수호조규를 보도록 하자. 위의 인용보다 앞 내용이다.

각국의 ‘소속방토’에 대해 제멋대로 해석하고 猜疑해서는 안 되고, 각국의 ‘정교금령’에 대해서도 옆에서 불만이 있다고 해서 쉽게 힐난해서도 안 된다. [...] 본래 중국에는 각각의 풍습에 따라 법률로 단속하고 각 현을 관할할 것인지의 정령이 다르다. 외국과 교섭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들이 조약에 준거하여 조사하고 처리해야 할 것이다.³⁹⁾

이상이 ‘소속방토’에 대한 각각의 정의이다. 요컨대 ‘소속방토’를 어떻게 다스릴지는 청이 ‘각각 풍습에 따라’ 정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해 타국이 ‘제멋대로’ 또는 ‘옆에서’ ‘시의’하거나 ‘힐난’할 수 없는 것이다. ‘조약에 준거’라고 말하듯이, 청일수호조규 제3조 “양국의 政事·禁令이 서로 다르면, 정사는 그 나라의 자주권을 따라야 한다. 어떤 경우라도 상호간에 모든 代謀·干預를 금지하도록 청원할 수 없다. 금령은 서로 돕고, 각각의 商民을 설유하며, 土人を 유혹하고, 조국의 違犯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원용하여 그 논거를 보강하고 있다.⁴⁰⁾

결국 양측의 쟁점은, 직접적으로는 타이완의 지위와 출병의 정당성이었지만, 보다 원리적으로는 그 논거로 제시되고 있는 청일수호조규와 국제법의 대립이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다가 교섭은 끝났다.

결렬되지 않았던 것은 영국 공사 웨이드(Thomas Francis Wade)의 알선

38) 주 34)와 동일.

39) 주 33)과 동일.

40) 청국 측이 인용한 제3조의 한문원문은 “兩國政事禁令, 應聽己國自主, 不得代謀干預, 不准誘惑土人違犯”이다(주 34)와 동일). 애초에 이 조문을 규정하려던 의도와 목적이 그렇지 않았음은 王璽, 1981, 앞의 책, 83, 86쪽 참조; 森田吉彥, 2004, 앞의 논문, 57쪽 참조.

으로 쌍방이 전쟁만은 피하자고 겨우 타결했기 때문이다. 특히 청 쪽에서 군사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 조난민에 대한 ‘구휼’과 출병에 대한 ‘보상’으로 50만 냥을 지불하는 것으로, 일본의 타이완 출병을 인정하는 형식이 되었다. 또 “일찍이 타이완의 생변이 일본국 속민에게 함부로 해를 가했기 때문”이라고도 함으로써, 류큐의 귀속을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쌍방의 모순이 이것으로 소멸된 것은 아니다. 청일수호조규에 대해 일본은 비협조적 태도를, 청은 依據하는 자세를 이후에도 계속해서 취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청을 국제법에 준거하지 않는 나라라고 보고 불신감을 키웠고, 청은 일본을 조약을 지키지 않고 무분별하게 무력을 쓰는 나라로 일본을 보아 한층 경계심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본래 청일수호조규에 대한 쌍방의 생각 또는 지향하는 바가 다른 것에서 유래한다. 일본 측은 어디까지나 서양식의 국제관계 수립을 목적으로 청일수호조규를 체결하였다. 이것은 서양 각국에 대한 배려가 우선적인 것으로, 앞서 말했듯이 청일 양국 간의 이해에서 유래했던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 전제로 존재했던 것이 서양의 국가 관념이고 국제법이다. 이것이 自他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반해 청에게 조약이란, 그때까지의 대외관계를 수정하여 지속시킨 것에 불과했다. 조약의 구속력으로 상대가 청 자신에게 적대하거나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⁴¹⁾ 일본과 맺은 청일수호조규도 휘튼(Henry Wheaton)의 번역인 『만국공법』도 그 예에 불과하다. 『만국공법』은 서양과 교섭할 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용한 것에 불과하고,⁴²⁾ 이런 의미에서 종전의 조약 또는 청일수호조규와 어떠한 다른 점도 없었다. 조약과 조규를 우선시하거나 전제로 삼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과의 관계와 교섭에

41) 坂野正高, 1970, 「第1章 アヘン戦争後における最惠國待遇の問題」, 『近代中國外交史研究』, 岩波書店, 10~13쪽.

42) 예를 들어 佐藤慎一, 1996, 『近代中國の知識人と文明』, 東京大學出版會, 56~67쪽 참조.

서는 청일수호조규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국제법 등 다른 것은 엄두에 두지 않는 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양적인 국가 관념을 자타에 적용할 이유도 청에게는 없었다. 청에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 ‘속국자주’의 개념과 논리이다. 이미 필자가 밝혔다시피, ‘속국자주’란 1866년과 1871년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조선의 ‘양요’ 때, 청이 對조선 관계를 명문화한 어구이다. 조선은 청의 ‘속국’이지만, 조선의 ‘내정·외교’는 조선의 ‘자주’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소속방토’ 불가침이라는 청일수호조규 제1조도 조선을 엄두에 두고 고안된 것이었다. 이것이 타이완 출병과 타이완의 ‘생번’에게도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조선과 타이완에 공통되는 논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 논리의 핵심은 ‘화외’, 즉 직접 통치하는 영역 밖에 있는 ‘생번’이 청국에 ‘속한다고 간주한다는 점에 있다. 이는 역시 직접 지배하지 않는 ‘자주’의 조선이 청의 ‘속국’이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느 것이든 변방국의 사안은 변방국에게 일임하는 청의 통치원리가 반영된 것으로,⁴³⁾ 위의 인용문으로 말하자면 ‘각각의 풍습에 따른 정령’이 이것에 해당한다. 조선에서는 ‘속국자주’로 표현되었던 것이 타이완의 ‘생번’에서는 ‘화외’라는 표현이 된 것뿐, 그 원리는 동일한 것이다.

아무리 직접 통치가 미치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화외’ 혹은 ‘속국자주’의 논리이고, 청의 입장에

43) 종종 漢人을 ‘직할’로서 ‘직접통치’하고, 내륙아시아의 몽골·티베트·신장은 ‘藩部’로서 ‘간접통치’한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청이 양자에 대하여 각각 다른 통치원리를 나누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 있다. 漢人は 황제 독재의 관료제가 기존의 제도였기 때문에 ‘직할’적인 통치로 된 것뿐, 다른 나라들도 기존의 지배형태와 현지인이 그 사회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내륙아시아와 완전히 동일하다. 필자의 관련 연구로는 岡本隆司, 2009-1, 『屬國と自主のあいだ -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大學出版會, 9쪽; 岡本隆司, 2009-2, 『清末の對外體制と對外關係』, 村田雄二郎 編, 『シリーズ20世紀中國史1 中華世界と近代』, 東京大學出版會, 17~18쪽 참조.

서는 이러한 논리와 원리에 근거하여 청일수호조규 제1조가 성립한 것이었다. 때문에 조선의 ‘속국자주’와 조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4_ 타이완 출병의 파급과 조선 문제

타이완 출병은 청의 대외적인 위기의식을 한층 강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종전의 군비 근대화 움직임을 더욱 가파르게 가속화시켰다. 중앙과 지방의 구분 없이 海防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이리하여 북양해군의 건설이 시작되었다.

명분은 다음과 같았다. 마지못해 일본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군비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군비만 충실히 갖췄다면 “약속을 저버리고 군을 일으킨” 죄를 지은 일본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⁴⁴⁾

‘약속’이란 바로 청일수호조규를 말한다. 따라서 청 측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타이완 출병과 그 교섭의 실패는 어디까지나 군비문제일 뿐, 청일수호조규 및 이에 관한 자신의 條約觀·국내체제·대외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서 타이완 문제로 인해 청일수호조규가 통용되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유효성에는 크게 의심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일본에 대한 경계도 여전히 계속되었다. 청 정부 당국자는 타이완 출병 당시에도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푸저우[福州] 船政局監督 지켈(Prosper Marie Giquel)로부터 일본이 타이완에서 철수한 후 조선에 무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進言을 받자마자 조선 정부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 통보는 “조선 정부에 충격을 주어 排日정책을 포기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된다.”⁴⁵⁾ 즉, 이 권고를 계기로 그때까지 서계문제로 일본과 교섭을 거절하던 조선 정부는 태도를 바꿔서 곧이어 부산에 파견된 이

44) 同治十三年九月 辛酉の條, 總理各國事務恭親王等の奏摺, 中華書局編輯部, 李書源 整理, 2008, 『籌辦夷務始末』同治朝 卷98, 中華書局, 11~16쪽.

45) 田保橋潔, 1940, 앞의 책, 333~342쪽; 佐々木揚, 2000, 앞의 책, 46~47쪽 참조.

사관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와의 교섭에 응한 것이다.

하지만 모리야마 교섭도 진전 없이 곧 압초에 부딪혔다.⁴⁶⁾ 애를 태우던 일본 측은 군함을 이용한 무력시위로 사태를 타개하려 하였다. 즉, 1875년 9월 강화도사건이다.

이것을 계기로 청일 간에 다시 조선 문제에 관한 교섭이 이루어졌다. 일본 정부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에 사절을 보내는 동시에, 특명전권공사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를 베이징으로 파견하여 조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의 동향을 살피게 하는 한편, 난항을 겪고 있는 조일교섭의 타개를 위한 청의 조정을 의뢰하였다.

1876년 초 베이징에 도착한 모리는 우선 총리아문과 거듭 협의를 했다. 이미 알고 있듯이, 총리아문이 교섭에서 시종일관 주장했던 것은 청일수호조규 제1조이다. ‘소속방토’의 불가침 규정에 근거하여 조선에 대한 일본의 무력행사를 지적하고, 나아가 조선은 외교가 자주이기 때문에 청이 조일 간의 조정에는 협력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청일수호조규의 ‘소속방토’ 적용이라는 점에서 여기에서도 타이완 출병과 조선 문제가 동일하다는 것, 게다가 그 유효성을 청 측이 여전히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일본 측 모리 아리노리도 역시 타이완 출병 때와 같이 청일수호조규 제1조의 유효성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모리는 총리아문의 주장 하나하나에 반발하고 실망하며 직예총독 이홍장과의 회견을 희망했다.

다음의 회담 기록은 유명한 사료로, 조일관계사를 다룬 저술에는 반드시 인용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래도 굳이 여기에서 인용하는 것은 이 글의 서술 입장에서 보면 문제의 초점이 종래와는 다르기 때문이고, 또한 회담 기록에는 청일 각각의 텍스트가 존재하지만 지금까지 양쪽의 차이에

46) 그간의 경과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田保橋潔, 1940, 위의 책, 356~390쪽; 石川寬, 1999, 「近代日朝關係と外交儀禮－天皇と朝鮮國王の交際の検討から」, 『史學雜誌』第108編 第1號, 48~49쪽 참조.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계부분에 대해 먼저 한문 텍스트를 인용하도록 한다.

모리 “조선은 인도와 똑같이 아시아에 있는 나라이고, 중국의 속국이라고 볼 수 없다.”

이홍장 “조선은 청의 正朔(역법을 의미함-오희)을 따르고 있는데 어째서 속국이 아닌가?”

모리 “각국은 모두, 조선은 조공을 하고 책봉을 받고 있을 뿐, 중국이 세금을 징수하지도 정치를 관할하지도 않기 때문에 속국이라 생각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홍장 “조선이 수천 년 동안 중국에 속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청일수호조규의 ‘소속방토’라는 문구 중 ‘토’라는 글자는 중국의 각 성을 가리킨다. 이는 內地와 內屬을 말하며 세금을 징수하고 정치를 관할한다. ‘방’이라는 글자는 조선과 같은 나라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外蕃과 外屬이며 세금과 정치는 그 나라에 맡겨 왔다. 이는 청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렇게 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속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인가?”

[…]

테이[鄭] 대리공사가 “모리 씨는, 총리아문이 중국은 조선의 내정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기 때문에 속국이 아니지 않은가라고 의문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다.

이홍장 “조약에 ‘소속방토’라고 명확히 적혀 있다. 만일 이것이 조선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느 나라를 지칭한다는 말인가? 총리아문이 말한 것에는 착오가 없다.”

모리 “조약에는 분명 ‘소속방토’라는 문구가 있지만, 그 의미가 매우 애매하다. 조선은 속국이라고 기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의 신민은 모두 ‘소속방토’가 중국의 18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국’ 안에 조선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홍장 “장래에 조약을 개정할 때에는 ‘소속방토’라는 문구 밑에 ‘18성 및 조선·류큐’라고 써 넣도록 하자.”⁴⁷⁾

47) 光緒元年十二月二十八日, 「日本使臣森有禮署使鄭永寧來署晤談節略」, 吳汝綸編, 1965, 『李文忠公全集』譯署函稿 卷4, 文海出版社, 35, 37쪽.

이어서 일본어 텍스트

모리 “총리아문대신 등이 나에게 조선은 청의 속국이고, 따라서 조약에서 언급한 屬地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홍장 “당연하다. 나는 조선 사건에 관해 아문과 귀공의 수행원 사이에 주고받은 서간의 내용을 잘 모른다. 하지만 아문대신들의 의견과 나의 의견은 같다. 즉, 조선은 청의 屬隸로서, 귀국과 우리의 조약(청일수호조약을 의미함-옮김)에 따라, 귀국을 위해서라도 속국으로 봐야 하는 나라 중 하나이다.”

모리 “조약에서 조선이 귀국의 속국이라고 명시한 조문을 보지 못했다. 이에 반해 우리 정부는 처음부터 조선을 독립불패의 국가로 간주하였고, 실제로 독립국으로 대하고 있다. 무릇 그 어떤 列國은 물론이고, 귀 정부라 하더라도 조선을 속국으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일찍이 귀 정부도 ‘조선에는 그들의 정부가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 내의 업무를 처리한다. 청은 이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다.”

이홍장 “당신의 말처럼 분명히 조선은 독립국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조선의 국왕은 현 황제의 명에 따라 그 자리에 올랐다. 이 때문에 청의 속국이라 하는 것이다.”

모리 “그것은 단순히 貴邦과 조선의 交誼와 관련된 禮式일 뿐이다.”

이홍장 “조선은 실제로 청의 속국이다. 이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모두 잘 알고 있는 바이다.”

[...]

이홍장 “조선에 대해서는 내가 바로 문서 한 통을 총리아문에 보내겠다. 이전에 우리 정부가 그쪽 문서에 답한 것 중에서, 우리 정부가 조약 중 화친을 언급한 조문, 즉 쌍방이 서로의 領地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적용한 것은 조금 경솔했던 것 같다.”

모리 “그 말을 들으니 무척 기쁘다. 모쪼록 귀 정부가 우리 정부의 진의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기를 바란다.”⁴⁸⁾

48) 外務省 編, 1940, 『日本外交文書』 第9卷, 日本國際連合協會, 172, 176쪽.

양쪽의 내용에 차이가 많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회답이 있는 그대로 기록 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된 데에는 주로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둘의 회답이 영어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모리가 영어를 사용하고, 이를 청 측 위원이 통역했을 터인데, 그 통역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쌍방이 고의적으로 스스로에게 유리한 내용을 골라서 기록해 두었을 가능성이다.⁴⁹⁾

인용한 부분의 차이는 아마도 두 번째 이유가 유력하다. 한문 텍스트는 ‘邦’과 ‘土’의 차이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어 텍스트에는 그것이 없다. 거꾸로 일본어 텍스트에서는 조선을 ‘속국’이 아니라는 일본 측 주장만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양쪽 끝부분에 있는 이홍장의 발언에서는 한문 텍스트 쪽이 ‘소속방토’를 ‘18성 및 조선·류큐’로 하자는 것에 반해, 일본어 텍스트는 조선 문제에 ‘쌍방이 서로의 영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적용한 것 자체를 ‘경솔’했다고 적고 있다. 이는 정반대의 해석조차 가능한 문구이다. 즉, 각각의 텍스트가 ‘소속방토’에 대한 자신의 주장만을 싣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어느 쪽이 맞는지의 문제가 아니다. ‘소속방토’의 개념에 대한 쌍방의 해석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바꿔 말하면 청과 일본이 지닌 이해의 실상을 보여준다고도 말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이홍장의 발언이 중요하다. 이것은 청과 일본 양쪽에서 해석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기록에서 전혀 다른 문구가 되어 있다. 하지만 그 공통된 부분은, 청일수호조규 제1조를 현행 그대로 적용해서는 조선 문제에 꼭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이홍장이 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이홍장의 발언은 이전과 동일하게 청일수호조규를 적용하려던 총리아문의 태도와 다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모리 아리노리의 ‘기쁨’을 이끌어낸 이유이기도 할 것이다.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모르지만, 청일수호조규에 대한 의

49) 두 사료의 관계 및 각각의 교정 번역에 대해서는 岡本隆司, 2010, 「日本の朝鮮に對する使節派遣について」, 村田雄二郎 責任編集, 『新編原典中國近代思想史 萬國公法の時代－洋務・變法運動』第2卷, 岩波書店, 36~53쪽 참조. 번역문도 줄역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44, 51쪽 참조.

문이 생기고 이것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정황을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동향은 이 시기에 이미 진행되기 시작한 류큐 문제에서 좀 더 확실해졌다.

5_ '류큐처분'과 그 교섭

1) 何如璋과 이홍장

일본 정부는 1875년 5월에 마쓰다 미치유키[松田道之]를 내무대승에 발탁하여 류큐로 파견했다. 같은 해 7월 류큐에 도착한 마쓰다는 류큐에게 청과의 조공-책봉관계 폐지와 메이지 연호 사용 등의 요구를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류큐 측은 계속해서 저항했고, 그러던 중 조공선 파견이 지체되고 이를 청 측도 알게 되었다.

마침 일본에 상주하는 초대 외교사절로 하여장이 임명·파견되었다. 1877년 말에 부임한 그는 일본 내정을 살피면서 메이지 정부와 교섭에 착수했다. 그는 본국에 강경책을 거듭 진언하고 메이지 정부에게도 강한 자세로 임했다. 이런 자세가 오히려 일본 정부의 태도를 경직시키고 류큐의 폐번치현을 서두르게 만들었다.

이상의 경과는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모두 생략하도록 한다. 여기에서는 하여장이 취한 강경책의 내용과 이에 대한 청 본국의 대응만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기에 청의 자세와 그 변화가 잘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우선 1878년 5월에 하여장이 총리아문으로 보낸 편지를 보도록 하자. 같은 취지의 편지를 북양대신 이홍장에게도 보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요점만 간추려보고자 한다. 우선 하여장이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조공 저지의 중대성이다.

조공의 저지가 계속된다면 류큐는 반드시 망한다. 류큐가 망하게 되면 조선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매일같이 요구해 올 것이다. 그 요구를 들어준다면 나라가 어려워지고, 거절하면 류큐를 양보한다 해도 결국은 변경의 분쟁을 초래할 것이다.

조공 저지가 류큐 멸망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조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공을 저지하는 일본의 목적은 류큐 병합이고 이것을 막으려면 조공을 존속시키는 것밖에 없다는 인식인 것이다.

여기에서 그는 구체적으로 상책·중책·하책을 제시한다. ‘상책’은 무력시위로 류큐에게 조공을 강요하는 것, ‘중책’은 류큐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일본에게 저항하도록 만들고, 청도 무력행사를 마다하지 않는 것, ‘하책’은 무력행사까지는 하지 않고 일관된 교섭으로 일본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만드는 것이다.⁵⁰⁾

이에 대한 이홍장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하여장의 의견과 반대였다.

무력이 아닌 교섭을 하게 되면 바로 전쟁이 발생하지도 않고 평화 국면을 깨지도 않는다. 하여장이 말하는 세 가지 책략 중 ‘군함을 파견하여 류큐를 문책’하는 상책과 ‘반드시 도와준다고 류큐에게 약속’하는 중책은 모두 일을 망치게 되므로 오히려 곤란하다. ‘말을 듣지 않더라도 한 번 더 말을 하면’ 일본도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즉각적인 폐번치현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류큐도 그 토지를 보전할 수 있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처럼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책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이다. [...] 근래 류큐인은 한층 일본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고 있다. 가령 이후에 류큐와의 조공-책봉이 없어도 청에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관대하게 포용해 주면 될 것이다. 다만, 청일수호조규 제1조에 ‘양국의 所屬邦土는 서로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침략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다. 류큐와 같은

50) 「與總署總辦論琉球事書」, 『何少詹文鈔』 卷中, 3~5쪽. 또한 光緒四年四月二十八日到, 「何子襄來函」,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全集』 譯署函稿 卷8, 文海出版社, 2~4쪽 참조. 후자에 관해서는 岡本隆司, 2010, 「琉球問題に關する李鴻章への書簡」, 앞의 책, 165~169쪽 참조.

변방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만, 만일 이 사례가 조선에도 영향을 미치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사후에 소동을 일으켜 후회하는 것보다는 지금 말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것으로 일본의 침략도 조금은 저지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⁵¹⁾

즉, 류큐의 조공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과 일을 크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채택한다면 ‘하책’이라고 말한 것, 즉 교섭으로 설득하는 것을 상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여장과 이홍장의 차이가 두드러지게 되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여기에 주목해 왔다.⁵²⁾ 그렇지만 목표로 하는 바는 서로 다르지 않다. 류큐왕국=속국의 존속인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황인식과 대책방법이 달랐던 것에 불과하다. 즉, 하여장은 조공이 없다면 속국은 망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반해, 이홍장은 조공이 없어도 상관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하여장은 류큐와 일본에게 강경 자세로 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지만, 이홍장은 가능하면 일을 크게 벌이지 않고 방치해 두는 편이 좋다고 보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해야 할 것은 이홍장이 속국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여전히 청일수호조규의 원용을 주장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公法’을 적용하여 각국 공사에 호소한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이 시기에도 우선은 청일수호조규를 적용하려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다.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통찰은 안이했다. 하여장은 1878년 10월 7일 일본이 류큐의 조공을 정지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하지만 그 문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일본 측이 태도를 점차 경직시킨 결과, 다음 해 3월에 廢琉置縣을 단행한다. 다시 말하면 하여장은 이홍장의 말대로 ‘하책’을 시도했으나, 그랬던 만큼 일본이 폐

51) 光緒四年五月九日, 「密議日本爭琉球事」,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全集』 署函稿 卷8, 文海出版社, 1~2쪽.

52) 예를 들어 鈴木智夫, 1992, 『洋務運動の研究——一九世紀後半の中國における工業化と外交の革新についての考察』, 汲古書院, 529~535쪽; 西里喜行, 2005, 앞의 책, 302~305쪽 참조.

류치현을 단행하게 된 것이다.

일본에 대한 하여장의 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 양국은 수호조규를 맺은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더 우호를 다져 왔다. 제1조에는 ‘양국 소속의 방토는 서로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침략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당연히 양국은 이를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이것은 귀국도 알고 있을 것이다. 지금 만약 류큐를 기만하여 침략하고, 멋대로 기존의 약속을 바꾼다면 우리 청만이 아니라 류큐와 조약을 맺고 있는 나라들도 대할 면목이 없을 것이다. 류큐가 작다고는 하나 우리 청을 섬기는 마음은 위아래가 같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계의 통교는 무엇보다도 예를 중시한다. 이렇다 할 이유도 없는데 조약을 폐기하고 小國을 억압하는 것은, 정황을 봐도 공법에 비추어도 세계가 들으면 귀국의 행동에 반대할 것이다.’⁵³⁾

대체적으로 이홍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일수호조규 제1조의 원용과 함께 ‘공법’에 의거한 점이다. 어쩌면 바로 이것이 같은 ‘공법’=국제법의 논리로 류큐를 자국으로 취급하는 일본 측을 자극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어쨌든, 하여장의 말이 일본을 불편하게 만들어서 폐류치현을 서두르게 했다는 사실과 경과는 틀림이 없고, 이 때문에 당시부터 하여장을 비판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⁵⁴⁾

2) 分島·改約 교섭과 조선 문제로의 전개

류큐를 오키나와현[沖繩縣]으로 편입한 ‘류큐처분’은 청국에게 충격이었다. 이

53) 光緒四年九月十二日, 如何璋の寺島宗則外務卿あて照會, 外務省 編, 1949, 『日本外交文書』 第11卷, 日本國際連合協會, 271~272쪽.

54) 대표적인 예가 영불주재 공사의 임기를 마치고 막 귀국한 郭嵩燾의 의견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西里喜行, 2005, 앞의 책, 494~528쪽 참조. 단, 여기에서 류큐 ‘자립’=독립론이라고 총괄하는 것은 다소 검토의 소지가 있다.

홍장도 하여장도 걱정하고 있던 ‘속국’의 멸망이 결국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이 사태를 만회하면서 새로운 위기를 막는 것이 요구되었지만, 눈앞의 사태를 해결할 묘안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등장한 것이 미국의 전 대통령 그랜트(Ulysses Simpson Grant)이다. 세계를 순회 중이던 그랜트는 1879년 5월부터 7월에 걸쳐 중국과 일본을 방문하여 류큐 문제를 둘러싼 양자의 대립을 화해로 이끌기 위한 이른바 分島·改約 교섭을 중개했다.

분도·개약 교섭이란, 류큐의 모든 섬 중에서 미야코[宮古]와 야에야마[八重山]를 청에 할양하고, 그 대신 청일수호조규의 규정을 일본에 유리하도록 개정한다는 일본의 제안과 이를 둘러싼 교섭을 말한다. 청이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은 ‘속국’ 류큐의 부활이었고, 일본 측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청 측도 청일수호조규의 개정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결국 교섭은 난항을 겪었고,⁵⁵⁾ 청일전쟁이 끝날 때까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 과정도 이미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홍장과 그가 조정을 의뢰한 그랜트와의 회담만 검토해 보도록 하자.

더욱이 중국과 일본의 수호조규 제1조 “양국의 所屬邦土는 서로 예의를 가지고 존중하고 침략하지 않으며 영원히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부분을 가리키자, 그랜트는 다시 그 영어 번역문을 자세히 읽었다.

페틱(William N. Pethick) 부영사가 “조약체결 당시에 조선과 류큐 등과 같은 속국을 분명히 적어 놓지 않은 것이 안타깝습니다”라고 말하자, 곧장 “‘방’은 속국이고, ‘토’는 内地를 의미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페틱이 영어로 번역하여 그랜트에게 전달했다.

이에 대해 그랜트는 “류큐는 스스로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자국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멸망시키고 병탄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조공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다루려고 한다면 이치에 맞습니다. 장래에 별도로 특별한 조항을 만들어두어야 합니다”라

55) 교섭 경과를 주로 일본 측에서 본 것으로는 五百旗頭薫, 2009, 『隣國日本の近代化 - 日本の條約改正と清末の日清關係』, 岡本隆司·川島眞 編, 『中國近代外交の胎動』, 東京大學出版會 참조.

고 말했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⁵⁶⁾

이상은 이홍장 측이 기록한 한문 텍스트이다. 그러나 이 회담에는 그랜트를 수행한 저널리스트 영(John Russell Young)이 기록하여 미국 신문에 공표한 영문 기록도 있다. 위의 한문 텍스트와 서로 대조해 보면 해당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다르다.

이홍장은 청일조약에서 한쪽이 상대방의 영토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양국의 약속을 읽고서, “미국과 류큐열도 사이에는 조약이 존재하고, 이것은 미국 정부가 류큐를 독립국으로 상대했음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그런 후에 그랜트에게 이 문제에 관한 국제법의 주의를 촉구하며 “일본의 방식은 다른 열강의 간섭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외국이 예전부터 청에게 적용한 국제법은 무의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랜트는 “정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외교에 속하는 것이다. 미국이 류큐열도를 독립국이라고 인정한 조약을 총독(이홍장)이 적용했다는 사실에 따라, 청은 일본과 교섭할 때에도 류큐를 독립국으로 간주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는가”라고 물었다.

총독은 “확실한 독립국이다. 그러나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류큐는 半 독립국(a semidependent Power)이라고 해야 한다. 청은 류큐의 각 섬들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주장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청국은 그 국내영토의 유지와 동일하게, 연안 방면에서 류큐의 관계를 유지하는 권력의 독립 유지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는 청이 예전부터 각 성이나 속국에게 커다란 권한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에, 황제는 류큐에게도 주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법률과 권리상에서 말하면 그 권한을 넘겨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류큐왕국은 일본이 침입하여 금지시킬 때까지는 언제나 그것을 존중하여 중국

56) 光緒五年四月二十三日, 「與美前總統晤談節略」,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全集』譯署函稿 卷8, 41~43쪽. 인용의 번역문은 岡本隆司, 2010, 「琉球問題に關する李鴻章への書簡」, 앞의 책, 171~172쪽 참조.

에 조공을 해 왔던 것”이라고 답했다.⁵⁷⁾

한문 텍스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기에서 이홍장은 청일수호조규 제1조를 인용하고 있다. 영문 텍스트에서도 이 조문의 언급이 있으므로, 회답에서 이 조문에 대해 언급한 사실은 틀림없다. 이홍장은 한층 자신의 방침에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취급방식이다. 한문 텍스트의 내용은 위에서 본 모리 아리노리와의 필담과 거의 동일하게 ‘방’과 ‘토’의 뜻을 설명한 것이고, 이것을 요약하면 조규 제1조의 함의와 자신의 주장이 제대로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그랜트의 회답은 윤색되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속국’과 ‘방토’라고 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의 국가를 이룬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랜트가 조규 제1조를 고려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영문 텍스트는 이에 대해 “영토를 침략해서는 안 된다(not to invade the territory)”라는 청일수호조규의 조문을 언급했을 뿐이다. 이 조문과 관련한 설명이나 협의의 기술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류큐의 지위가 ‘독립국(an independent Power)’인지 아닌지, 청과 류큐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데 좀 더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 류큐가 ‘독립국’인지의 여부를 알 수 없는 이상, 조규 제1조에서 말하는 ‘영토’까지는 말할 수도 없다는 식의 필치이다. 즉, 이홍장이 언급한 청일수호조규를 그랜트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여장과의 논의, 그랜트와의 회답 및 조정, 분도·개약 교섭을 포함한 ‘류큐처분’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청일수호조규 제1조의 완전한 무효화이다.

애초에 조선에 대한 脅威를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이 조항은 ‘속국자주’의 개념에 근거하면서 일본의 침공을 미연에 막는 수단이었다. 이것이 효력을 발

57) *The New York Herald*, Aug. 16, 1879, cited in *The Papers of Ulysses S. Grant*, John Simon, ed., Ulysses S. Grant Association, Carbondale, Vol. 29, 2008, pp. 164~165.

휘하지 못하고 류큐라는 ‘속국’이 멸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렇게 되자 본래의 목적이자 더 중대한 조선 방면에서 더 이상 청일수호조규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전 푸젠순무[福建巡撫] 丁日昌의 상소문이다.

조선이 어쩔 수 없이 일본과 조약을 맺은 이상, 서양 각국과도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은 조선을 병탄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서양은 타국을 멸망시킨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장래에 만일 일본과 조선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게 되면, 조약을 맺고 있는 각국이 모두 반대하여 일본이 마음대로 횡포를 부릴 수 없게 될 것이다. [...] 만일 일본과 러시아가 (한반도의-인용자) 잠식을 피한다면,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해서 막는 것은 물론, 조선과 조약을 맺고 있는 모든 나라와 협력하여 그 부당함을 알리며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이 류큐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조선은 멸망하고, 조선이 망하면 일본과 러시아가 우리 東三省과 근접하게 된다. 이것은 명백히 배에 갈날을 숨기고 있는 형상으로 우환이 될 것이다. 취하든 버리든 이해에 아무 영향이 없는 류큐와는 차원이 다르다.⁵⁸⁾

여기에서 조선에게 서양 각국과 조약을 맺게 하는 제안이 공식적으로 처음 나왔다. 이것은 또 다른 류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조선 병탄을 막기 위한 방책이기 때문에 그 목적과 기능으로서는 청일수호조규 제1조를 대신하는 것이다. 이 상소문을 계기로 조약교섭을 위한 조선과의 교섭이 진행되었던 것은 알려진 대로이다.⁵⁹⁾

청일수호조규는 어디까지나 對日 양국 간의 약속이었다. 일본의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일본만 상대하면 된다는 생각이 그 전제였다. 그러나 더 이상 이러한 청일수호조규에 기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당시의 인식은 조선에게 조약을 체결시키고 서양 각국을 끌어들여서 적대세력을 견제하려는 것이 지금

58) 光緒五年四月二十五日, 「前福建巡撫丁日昌奏」, 中國史學會 主編, 1961, 『洋務運動』 第2冊, 中國近代史資料叢刊, 上海人民出版社, 394~395쪽.

59) 예를 들어 岡本隆司, 2009-1, 앞의 책, 38~39쪽 참조.

까지의 발상과는 달랐다.

이렇듯 방법이 달라지자, 청일수호조규가 근거로 삼았던 ‘속국자주’의 개념도 어느 정도 개편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새로이 ‘속국자주’를 서양 각국과 조선에게 인식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청 자신도 ‘속국자주’에 대해 재고해야만 했던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주일공사관의 하여장과 황준헌이 작성한 「主持朝鮮外交議」와 『朝鮮策略』의 제안이 등장한다. 알다시피 이러한 제안은, 보다 국제법에 기초한 조선의 새로운 대외관계 구축을 제안한 내용이고,⁶⁰⁾ 현실적으로도 조선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1880년대에 들어서면, 특히 馬建忠이 커다란 역할을 발휘하는 淸韓關係의 재편과 ‘속국자주’의 변용이 일어난다. 이와 함께 동아시아 3국의 관계도 새롭게 전개되기 시작한다.⁶¹⁾

II. 맺음말

청국과 ‘속국’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양국 사이만으로 완결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애초에 류큐 문제가, 예컨대 반드시 조선과 직접 관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타이완 출병이나 ‘류큐처분’이 조선 문제와 관련을 맺게 되는 것은 1870년대부터 시작된 ‘속국’ 개념의 변용을 보여준다.

우선 전제로 확인해 두어야 할 점은 1871년에 체결된 청일수호조규의 위치이다. 이것은 일본의 조선 침공을 막기 위한 목적과 기능을 최우선적으로 한

60) 하여장과 황준헌의 「주지조선외교의」, 『조선책략』에 대해서는 岡本隆司, 2009-1, 앞의 책, 39~42, 48~49, 399쪽 참조. 특히 후자는 岡本隆司, 2010, 「조선책략」, 앞의 책, 176~191쪽 참조.

61) 岡本隆司, 2009-1, 앞의 책, 39쪽 이하 참조.

것으로, 그 근거에는 조선과 류큐 등에 대한 청의 ‘속국’ 개념과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경계심이 있었다.

이러한 청일수호조규가 체결된 직후에 발생한 타이완 사건에 대해, 일본은 1874년에 타이완 출병을 강행한다. 그 출병의 대상이 된 ‘생변’이 청국에 ‘속’하는지 아닌지가 청과 일본 사이에 쟁점이 되었다. 그 후 ‘류큐처분’을 둘러싼 청일교섭을 보아도 양국은 류큐가 청일 어느 쪽에 ‘속’하는지를 근거로 삼아 자신의 논리를 주장했다. ‘屬’을 다룬다는 점에서 청일 쌍방은 타이완에서도 류큐에서도 정면 대립했다.

한쪽에서는 국제법에 준거하여 실효지배야말로 ‘속’의 내실이고, 실효지배 없이 ‘속’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일수호조규 제1조에 의거하여 타이완도 류큐도 ‘소속방토’이기 때문에 일본의 침공과 병합은 불가하다고 했다. 또한 일본은, 속국이니까 일본의 것이라고 하는 반면에 청은 ‘속국’이니까 멸망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즉, ‘속’과 ‘속국’이라는 개념 또는 그 의미 규정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청측이 일관되게 기준으로 삼으려 했던 것이 청일수호조규 제1조이고,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류큐처분’이 ‘속국’의 ‘멸망’을 초래하고, 청일수호조규 제1조의 한계와 파탄을 최종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청은 이를 대신할 조선 방면의 안전보장책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현실 과정에서, 조선과 서양 각국의 조약체결이라는 본국의 방침, 그 방침을 받아들인 주일공사관의 『조선책략』과 「주지조선외교의」와 같은 제안, 그리고 조선에서 추진된 마건충의 조약체결 교섭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나아가서는 종래의 ‘속국자주’ 개념의 전환을 초래했다. 청일수호조규의 기반에 ‘속국자주’가 있었던 이상, 이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해도 좋다. 그 귀추는 이후 동아시아 3국관계의 변용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顧廷龍·戴逸 主編, 國家清史編纂委員會文獻叢刊, 2008, 『李鴻章全集』第30冊, 安徽教育出版社.
- 佚名輯, 1999, 『晚清洋務運動事類彙鈔』上册·中冊, 中華全國圖書館文獻縮微複製中心.
-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全集』朋僚函稿 卷13, 文海出版社.
-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全集』譯署函稿 卷1·卷4·卷8, 文海出版社.
- 外務省 編, 1938, 『日本外交文書』第4卷, 日本國際連合協會.
- 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第6卷, 日本國際連合協會.
- 外務省 編, 1939, 『日本外交文書』第7卷, 日本國際連合協會.
- 外務省 編, 1940, 『日本外交文書』第9卷, 日本國際連合協會.
- 外務省 編, 1949, 『日本外交文書』第11卷, 日本國際連合協會.
- 中國史學會 主編, 1961, 『洋務運動』第2冊, 中國近代史資料叢刊, 上海人民出版社.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68, 『中美關係史料 同治朝』下冊, 中國近代史資料彙編.
-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第2卷.
- 寶璽等纂, 1972, 『籌辦夷務始末』同治朝 卷25·卷93·卷94·卷97·卷98, 台聯國風出版社.
- 溫廷敬 輯, 1925, 『茶陽三家文鈔』, 『何少詹文鈔』卷中.
- John K. Fairbank, Katherine F. Bruner & Elizabeth M. Matheson, eds., 1975, *The I. G. in Peking: Letters of Robert Hart, Chinese Maritime Customs 1868-1907*, 2 vols., Cambridge, Mass., etc., Vol. 1.
- The New York Herald*, Aug. 16, 1879, cited in *The Papers of Ulysses S. Grant*, John Simon, ed., Ulysses S. Grant Association, Carbondale, Vol. 29, 2008.

〈연구논저〉

- 岡本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 近代清韓關係と東アジアの命運』, 名古屋大學出版會.
- 岡本隆司, 2009, 「清末の對外體制と對外關係」, 村田雄二郎 編, 『シリーズ20世紀

- 中國史1 中華世界と近代』, 東京大學出版會。
- 村田雄二郎 責任編集, 2010, 『新編原典中國近代思想史 萬國公法の時代－洋務・變法運動』第2卷, 岩波書店。
- 毛利敏彦, 1996, 『台灣出兵－大日本帝國の開幕劇』, 中公新書。
- 森田吉彦, 2004, 「幕末維新期の對清政策と日清修好條規－日本・中華帝國・西洋國際社會の三角關係と東アジア秩序の二重性, 1862~1871年」, 『國際政治』第139號。
- 森田吉彦, 2009, 「日清關係の轉換と日清修好條規」, 岡本隆司・川島眞 編, 『中國近代外交の胎動』, 東京大學出版會。
- 西里喜行, 2005, 『清末中琉日關係史の研究』, 京都大學學術出版會。
- 石川寬, 1999, 「近代日朝關係と外交儀禮－天皇と朝鮮國王の交際の検討から」, 『史學雜誌』第108編 第1號。
- 鈴木智夫, 1992, 『洋務運動の研究－一九世紀後半の中國における工業化と外交の革新についての考察』, 汲古書院。
- 王璽, 1981, 『李鴻章與中日訂約』,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 李啓彰, 2006, 「日清修好條規成立過程の再検討－明治五年柳原前光の清國派遣問題を中心に」, 『史學雜誌』第115編 第7號。
- 李啓彰, 2008, 『近代日中外交の黎明－日清修好條規の締結過程を中心に』, 東京大學大學院 人文社會系研究科提出 博士論文。
- 田保橋潔, 1940, 『近代日鮮關係の研究』上册, 朝鮮總督府中樞院。
- 佐藤慎一, 1996, 『近代中國の知識人と文明』, 東京大學出版會。
- 佐々木揚, 2000, 『清末中國における日本觀と西洋觀』, 東京大學出版會。
- 青山治世, 2010, 「領事裁判權を行使する中國－日清修好條規の領事裁判規定と清朝在日領事による領事裁判事例を中心に」, 『東アジア近代史』第13號。
- 坂野正高, 1970, 『近代中國外交史研究』, 岩波書店。
- 一瀬啓恵, 1995, 「明治初期における台灣出兵政策と國際法の適用」, 『北大史學』第35號。
- 後藤新, 2009, 「台灣出兵と國際法－台灣蕃地事務局における戰時國際法の研究を中心として」, 『法學研究』慶應義塾大學法學研究會, 第82卷 第2號。
- 松浦玲, 1987, 『明治の海舟とアジア』, 岩波書店。
- 梁伯華, 1995, 「李鴻章和琉球爭端1871-1881年」〔美〕劉廣京・朱昌峻編/陳絳譯校『李鴻章評傳－中國近代化的起始』上海古籍出版社。

- 鈴木智夫, 1992, 『洋務運動の研究——九世紀後半の中國における工業化と外交の革新についての考察』 汲古書院.
- 五百旗頭黨, 2009, 『隣國日本の近代化 - 日本の條約改正と清末の日清關係』 岡本隆司・川島眞 編, 『中國近代外交の胎動』, 東京大學出版會.
- Kim, Key-Hiuk(金基赫), 1980,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Berkeley.
- Edwin Pak-wah Leung(梁伯華), 1994, "Li Hung-chang and Liu-ch'iu(Ryukyu) Controversy, 1871-1881," Samuel C. Chu & Kwang-Ching Liu, eds., *Li Hung-chang and China's Early Modernization*, Armonk, etc.



[ABSTRACT]

Japan's Annexation of Ryūkyū (Liu-ch'iu)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East Asian Order,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Sino-Japanese Treaty of Amity

Okamoto Takashi

The Sino-Japanese treaty of Amity, concluded in 1871, was based on the draft drawn up by the Chinese, and its first article provided that China and Japan should not invade the lands belonging to each other (所屬邦土不可稍侵越). The Ch'ing government aimed at preventing the Japanese from invading the Korean peninsula, because they had regarded Korea, Liu-ch'iu and so on as their dependencies and were weary of a Japan invasion of them.

Soon after the conclusion of the treaty, the Taiwan Affair broke out. In 1874, Japan went on military expedition to attack the Taiwan aborigines (生蕃) who had murdered the Ryūkyūans who washed up ashore on the southern Taiwan coast, and came into antagonism with the Ch'ing government. Their dispute concerned the position of Taiwan aborigines whom the Japanese regarded as independent of the Ch'ing according to international law, but whom the Chinese considered to be their subjects. The Ch'ing authorities criticized the Japanese for an invasion against the provision of the Sino-Japanese treaty, but the Japanese maintained that it was impossible to recognize the subordination of the Taiwan aborigines to the Ch'ing without the latter's effective control of the former. When China and Japan again disputed

the position of Liu-chiu from 1878 to 1879, the same argument was repeated.

These disputes resulted in Japan's annexation of Ryūkyū which the Chinese called the downfall of their tributary state. It also meant that the aim and function of the Sino-Japanese treaty of Amity to prevent the Japanese from invading the dependencies of China were to no avail. It was, therefore, necessary for the Ch'ing government to look for a measure to secure Korea against the Japanese threat in place of the Sino-Japanese treaty. This was Korea's conclusion of treaties with Western powers. Through the negotiation of the Korean-American treaty in 1882, the Chinese changed the concept of "dependency," and this resulted in a transformation of the traditional order between China, Japan and Korea.

keywords

East Asian Order, Sino-Japanese treaty of Amity, Incident of Taiwan and the Ryukyu Islands, Taiwan Expedition of 1874.

고종의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 수용 과정 분석

구선희 | 국사편찬위원회

I. 머리말

1870년대는 조선·청·일본 삼국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인 사대·교린 관계에 놓여 있던 삼국관계가 조선이 서구 근대 국제법이 관철되는 새로운 질서에 최종적으로 편입됨으로써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 시작점의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런 전환의 시기에 조선을 둘러싼 전통적 사대·교린 관계를 활용하는 가운데 서구 근대 국제법 질서를 수용한 조선의 국왕이 고종이었다.

지금까지 고종의 1870년대 대외인식과 관련한 연구는 대개 1870년대 조선이 斥和에서 벗어나 문호개방으로 나가는 것을 전제로 고종의 친정을 전후로 한 시기를 대상으로 했다.¹⁾ 그리고 고종 친정 전후의 대외인식 변화를 3시기로

※ 투고일: 2011년 4월 6일, 심사일: 2011년 5월 30일, 게재 확정일: 2011년 6월 2일.

1) 이에 관한 대표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안외순, 1996, 「고종의 초기(1864-1873) 대외인식 변화와 친정(親政)-견청회환사(遣淸回還使) 소견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2; 장영숙, 1997, 「고종의 대외인식전환 연구(1863~1881)」, 『상명사학』 5; 안종철, 1998, 「친정전후 고종의 대외관과 대일정책」, 『한국사론』 40; 김세

나누어 고찰하는 경향이 있다.²⁾ 기왕의 연구에 나타난 이 3기의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기는 1864~1865년으로 趙大妃의 섭정기간에 해당된다. 이 시기에 고종은 서양에 관해 피상적인 인식만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청의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 온 燕行史(=遣淸使)와의 소견 과정에서 사행단과 주고받은 서양의 행적에 대한 문답이 전부였다. 서양에 대한 피상적 인식은 고종뿐만이 아니라 당시 사행단 또한 마찬가지였다.

제2기는 1866~1871년 시기로 조대비의 수렴청정이 끝나고 고종이 혼자서 回還使들을 소견하던 때이다. 고종의 대외적 관심사는 앞 시기와 비교해 청 황제에 대한 충성적 안부가 사라졌다는 것뿐 전과 동일했다. 서양을 비롯한 국제 정세에 대한 고종의 질문은 전혀 없었다. 견청사신이 유일하게 대외정세를 알 수 있는 공식 통로였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소견 내용은 일국의 국왕과 사신의 대화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이고 소략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1871년까지는 고종의 대외인식은 대원군의 쇄국정책과 궤를 같이한다는 점이다.

제3기는 1872~1873년의 시기이다. 통호라는 것은 조공이 아니라는 고종과 연행사절의 대화에서 보이듯이 기존의 주종적 대외질서관이 아니라 국가간 평등한 대외질서의 존재에 대해 고종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이 시기에 고종은 국제질서상의 힘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기 시작했다는 것이 기존 연구의 일반적 의견이다.

고종의 일본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제국주의 대열에 가담한 일본을 왜 양일체적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고, 1875년경 일본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왜양 분리적인 시각으로 바뀌었다는 연구가 있다.³⁾ 또한 고종 친정 후 전개되는 개

은, 2000, 「고종초기(1864년~1873년)의 經筵」, 『진단학보』 89; 김성혜, 2009, 「재위전기(1864-1876) 고종의 강연과 그 실태」, 『사학연구』 93, 한국사학회; 김형수, 2001, 「고종의 친정과 개국정책연구-1873년~1876년」, 『이대사원』 33·34합집.

2) 대표적으로 안외순, 1996, 위의 논문 참조.

3) 장영숙, 1997, 위의 논문 참조.

항정책은 고종 스스로의 주체적 의식 변화의 결과였다고 한다.⁴⁾

그런데 선행 연구는 1870년대 고종의 대외인식 변화가 국내외 정책과 대외 인식이 조응하면서 궁극적으로 질적 변화를 가져오기에 이르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종이 전통적 사대·교린 외교를 추구하다가 서구 근대 국제법적 관계를 수용하게 된 것이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에 이르러서였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1870년대 고종이 전통적 화이관에 토대한 사대·교린 외교로부터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를 수용하는 질적 변화 단계로 나아가는 과정을 국내외 정책 추진과 대외인식과의 상관관계에 주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게 되기까지 대외관계를 국내정책에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밝힐 것이다. 그다음 친정체제의 안정적 구축에 필요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교린 외교의 재개라는 명분을 이용, 강화도조약을 체결했음을 살피고자 한다. 끝으로 고종이 전통적 화이관에 기반한 사대·교린 외교로부터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의 수용으로 나감으로써 대외인식의 질적 변화를 갖게 된 시점은 1876년 강화도조약 체결부터가 아니라 1878년 두모진 수세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의 마찰을 풀어내는 과정에서였음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187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보다 더 긴밀하게 엮히는 조·청·일 삼국관계와 고종의 국내외 정책이 조응하는 속에서 고종의 대외인식 또한 질적 전환을 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880년대 초반부터 고종이 대외통상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그 밑바탕에 1870년대의 경험이 있었음도 밝혀질 것이다.

이 글을 구성하는 데 지금까지 연구들에서 활용한 『승정원일기』, 『일성록』, 『고종실록』 등의 한국 측 자료와 함께 『淸季中日韓關係史料』, 『淸光緒朝中日交涉史料』, 『李文忠公全集』, 『日本外交文書』, 『朝鮮外交事務書』 등 중국과 일본의 외교문서와 개인 자료도 활용하고자 한다.

4) 안외순, 1996, 앞의 논문, 257쪽.

II. 친정 선포와 사대 외교 활용

고종의 친정 선포는 청과의 사대 외교를 직·간접적으로 충분히 활용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고종은 열두 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10년 만인 1873년 11월에 직접 통치를 하게 되었다. 고종은 1863년 즉위한 후 실권을 위임받기 위해 강학에 주력하면서 근 10년을 준비했다. 고종 재위 후 10여 년간의 강연 실태를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조대비와 대원군이 섭정함으로써 고종이 강연을 통해 군주 역량과 독자적인 사고체계를 갖는 데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⁵⁾고 한다. 고종은 10여 년의 강연 시기를 거치는 동안 민생안정과 지방행정, 그리고 인재등용, 조종계승과 군신관계, 연행사의 보고를 통한 대외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고종은 청에 사신으로 갔다 온 연행사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대외 문제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했고, 그 과정에서 대외인식의 폭을 넓혀나갔다.

1871년 3월 연행사로 갔다 온 姜滂과 대화할 때까지만 해도 대외문제에 관한 고종의 관심사는 별반 드러나지 않았다. 강노와의 대화에서 고종은 이미 청에 서양인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청에 서양인이 많은가를 물었다. 그리고 청에서 보내온 자문에 의거해 미국이 조선으로 온다는 말의 진위가 어떤가를 물었다. 강노는 청의 예부 관원들로부터 미국 배가 조선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 들었지만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대답했다.⁶⁾ 고종과 강노의 대화에서 미국 배가 조선에 올 것이라는 말은 李鴻章의 보고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1871년 청의 北洋大臣 이홍장은 1866년 미국 상선 제너럴 서먼호가 조선

5) 주 1) 참조.

6) 『승정원일기』 고종 8년 3월 22일(이후에는 한글맞춤법 규정에 근거하여 연, 월, 일을 ‘.’으로 대치함). 이 글의 본문에 제시된 날짜는 이 시기 조선이 사용했던 음력으로 통일시켰다. 일본의 경우 1873년부터 양력을 사용했는데, 일본 자료를 인용할 경우 본문에서는 날짜를 음력으로 변환했고, 특별한 경우(양력)이라 덧붙였다.

에 통상을 요구하다 거절당함으로써 일어난 서면호 사건의 조사와 조선과의 통상을 위해 조선으로 향하는 미국 함대와 함께 일본 병선이 출동하기로 약속되었고, 만약 조선과 통상 교섭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력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정보를 들었다고 청의 總署에 보고했다. 이와 함께 이홍장은 오래 전부터 조선을 침략할 의도를 갖고 있는 일본이 서구제국과 연합할 경우 조선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달았다.⁷⁾ 이홍장의 이 같은 보고 후 1871년 4월 미국과 일본의 연합함대가 아니라 미국 함대가 조선을 침입하여 辛未洋擾가 일어났다.

미국의 조선 침입에 대해 고종은 수천 년 예의를 지켜온 나라로서 개나 양 같은 무리와 서로 강화할 수 없으니 설령 몇 년 동안 서로 대치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끊어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만약 '강화'라는 단어를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매국의 법을 시행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고종은 서양 선박이 교역을 구실로 소란을 피우는 것은 조선 내부에 내응하는 무리가 있기 때문이며 이 내응 세력을 邪徒라고 했다. 외국과 더불어 한 번 통상하게 되면 邪學이 더욱 성하여 공자의 도가 장차 폐지될 것이기 때문에 사학의 무리는 모조리 섬멸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⁸⁾

1871년 신미양요 이후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기까지 그의 대외적 관심은 친정 선포를 위한 준비로 모아졌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시 고종의 국제정세에 대한 유일한 정보망이었던 견청사절단과의 대화에서 보면 신미양요 이후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와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지만⁹⁾ 친정 선포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친정 선포에 원용될 대화가 잦아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 고종은 전통적인 유학의 예교 관념을 갖고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다. 고종의 대외관이 척사위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조선 정부 관

7)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 문서번호 127, 168쪽, 同治 10. 2. 21.; 『李文忠公(鴻章)全集』 譯署函稿 卷1, 「條列五事」 13~14쪽, 동치 10. 2. 20.

8) 『승정원일기』 고종 8, 4, 20.

9) 고종의 대외정세에 대한 관심은 신미양요 이후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안의순, 1996, 앞의 논문.

료들도 공통적으로 드러내고 있던 공론이기도 했다. 그래서 고종은 청이 서구 제국과 어려움 없이 교통할 수 있는 것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전통적인 시대·교린 질서를 생각한다면 청이 서구제국과 대등한 관계로 교섭을 하는 것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다. 1871년 4월 경연 중에 고종은 청의 서양과의 통교에 대해 청 황제의 숙부인 恭親王이 서양인들을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 대신의 설명을 들었다. 이에 대한 고종의 반응은 공친왕이 황제와 어떤 관계인가였고, 이어 황제의 친숙부임을 알게 되었다.¹⁰⁾

고종은 1872년 4월 청으로부터 돌아온 사신을 통해 공친왕에 대한 정보를 더욱 많이 얻게 되었다. 고종은 연행사절의 서장관으로 갔다 온 朴鳳彬과의 대화에서 공친왕과 관련해 몇 가지 견해를 내놓았다. 그는 공친왕은 황제의 숙부로서 서양 오랑캐를 금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교역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다고 했다. 또한 공친왕이 서양의 오랑캐를 불러들여 국가를 좀먹게 했는데, 청의 臣民들 중에 분하고 원통해하는 사람이 없는가 물었다. 그리고 공친왕은 황제의 숙부로서 국가를 위하지 않고 외적을 불러들여 국가를 어지럽히고 있으니 그 사람됨이 선하지 못하다고도 했다.¹¹⁾

이 같은 의견 개진 후에 고종이 청의 인심이 어떠한가 묻자 박봉빈은 공친왕이 몇 년간 권세를 부린 이래로 백성들이 도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만약 황제가 직접 정치를 하게 된다면 저절로 회복이 되어 소생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고종의 의중을 파악한 때문이었는지 박봉빈은 청 정부 관료들 중에 재능 있는 자가 있는가라는 고종의 질의에 공친왕과 관련하여 답변하고 있다. 즉 공친왕이 권력을 휘두른 이후 청 조정에서 인망을 가진 자는 거의 물러나 현재 정부 관료 중에는 그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나 황제가 직접 정치를 처리하게 된 후에는 재주와 능력이 있는 선비들이 쓰이게 될 것이라 한다는 것이었다.¹²⁾ 고종의 사신과의 문답에서 공친왕에 대한 비판은 조선 정부

10) 『승정원일기』 고종 8. 4. 17.

11) 『승정원일기』 고종 9. 4. 30.

12) 위와 같음.

에서 거론되는 대원군에 대한 비판과 견주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조선의 대원군은 청의 공친왕과 마찬가지로 왕을 섭정하는 위치에 있었고, 대원군 또한 강압적인 정치로 비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1868년 司憲府 掌書 崔益鉉은 토목공사와 과도한 세금 징수를 중지하고 當百錢을 없애며 한양의 都城門稅를 즉각 없애라는 등의 내용으로 상소를 했다. 최익현은 백성들을 파멸시키는 요인인 과도한 세금 부과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고종은 최익현의 나라에 대한 애정과 임금에 대한 걱정을 칭찬했다.¹³⁾ 이것은 고종이 대원군이 시행한 정책에 대한 비판에 공감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토목 역사나 도성문세를 폐지하지는 않았다. 이후 최익현은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1873년 10월 다시 상소를 했다. 이때는 청 동치제의 친정 소식이 조선에 전해진 뒤였다.

청 동치제의 친정 소식이 조선에 공식적으로 통보된 것은 1872년 12월 ‘皇上親政’에 관한 淸 禮部의 咨文에 따라서였다.¹⁴⁾ 그리고 같은 해 12월 26일 고종은 進賀兼謝恩正使 朴珪壽와의 대화에서 동치제의 친정이 임박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고종이 청의 민심을 묻자 박규수는 물가가 폭등하여 비록 고생하고 있었지만 민심은 거의 모두가 안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내년 정월에 황상이 친정하기를 여론이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다.¹⁵⁾ 이어서 고종은 그가 갖고 있던 小中華 관념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듯한 질문을 했다.

고종은 박규수에게 漢人들은 지금까지도 명나라를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박규수는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안색과 말투에서 가릴래야 가리지 못하는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고종은 李鴻藻가 漢人인가를 물었다. 이홍조는 동치제의 스승으로서 공친왕 등이 주도하던 양무운동을 가리켜 ‘以夷變夏’한다고 반대하던 인물이었다.¹⁶⁾ 고종은 서양과 적극적 통교를 주장하던 만주인 공친왕에 반기를 들었던 한인 이홍조 등의 주장에 기대어 자신이 갖고 있

13) 『고종실록』 고종 5. 10. 10.

14) 『일성록』 고종 9. 12. 16.

15) 『승정원일기』 고종 9. 12. 26.

16) 신승하, 1990, 『중국근대사』, 대명출판사, 235쪽.

던 ‘소중화’ 의식을 점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고종은 척사위정이라는 대외관을 정부대신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上國인 청 황제의 친정을 근거로 자신의 친정 분위기를 조성해갔다.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자는 움직임도 때맞추어 일어났다. 1872년 12월 청으로부터 동치제 친정에 관한 자문이 도착함과 동시에 李最應 등 宗臣들은 고종이 즉위한 지 9년 동안 훌륭한 은택이 백성들에게 흠뻑 스며들었고, 모든 덕행이 세상에 고루 퍼졌다고 하면서 尊號를 올리겠다고 상소했다. 이에 이어 조선 정부 대신들은 총동원되어 존호를 올리겠다고 청했다.¹⁷⁾ 고종은 존호 진헌을 사양한다는 대답을 했지만 결국 존호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존호를 올리는 일은 군왕에 대한 일종의 頌德 행사로서 동양적 군주체제에서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중요한 것이었다.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는 일은 고종의 위치를 부상시켜 친정의 여건을 조성시키고자 한 것이었다.¹⁸⁾

이처럼 대내적으로 고종 친정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감에 따라 고종의 왕권 행사와 이에 따른 대내외적 관심도 증대되었다. 1873년 4월 견청사절단과의 대화에서 고종은 몽고, 러시아, 인도 등의 나라에 대해 위치와 국력, 국토 면적 등을 질의하면서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체모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리고 청이 서양인들에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 청의 군비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를 물었다.¹⁹⁾ 1873년 1월부터 청 동치제의 친정이 시작되었는데도 청에 있는 서양인의 동태가 여전히 궁금했던 것이다.

사신으로 갔다 온 閔泳穆은 청나라 사람으로부터 들었다는 전제하에 청의 병력만 가지고 서양을 몰아낼 경우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인데, 지금 청 황제가 친정을 통해 힘써 다스리고 있으므로 먼저 근본을 견고히 한다면 자연히 제압하여 굴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종은 근본을 잘 다스린다면 군비가 많을 필요가 없다는 말로 응수했다.²⁰⁾ 이런 고종의 모습에서

17) 『승정원일기』 고종 9. 12. 16.

18) 최병욱, 2000,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98쪽.

19) 『승정원일기』 고종 10. 4. 9.

20) 위와 같음.

마치 고종이 직접 통치자로 나설 때 유교적 德治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된다.

1873년 8월 고종은 건청사신과의 문답에서 서구제국이 청에 조공을 하는가 물었다. 이에 대해 서양이 청과 通好하는 것은 조공과는 다른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²¹⁾ 그리고 이어진 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 대한 대화를 통해 고종은 청과 서구제국의 관계가 조선과 청의 관계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이 같은 고종의 세계정세에 대한 지식은 조선에 외압으로 다가오는 서구 세력에 대한 구체성이 결여된 초보적 수준에 불과했다.

이때의 대화에서 고종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조선의 척사위정에 대해 청을 비롯한 청에 들어와 있는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였다. 고종의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은 모든 나라가 척사위정을 하는 조선을 경외하거나 흠모한다는 것이었다. 사신 중 한 사람이었던 趙宇熙는 청 사대부들과 교류하면서 안 것인데, 그들은 조선의 척사위정을 깊이 경모하는 반면 당당한 천자의 나라인 청이 서양 세력에 얽매어 국교를 맺음으로써 엄격하게 배척하지 못하는 것에 개탄하고 있다고 고종에게 전했다.²²⁾ 이후 고종의 화이관에 입각한 ‘소중화’ 의식은 경연에서 행한 강관 박규수와와의 대화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1873년 9월 고종은 강관 박규수에게 “중국에서 아직까지 명나라를 생각하고 있는 것은 필시 초기에 (명-필자) 원나라의 어지러움을 제거했고 청나라 사람들이 그 뒤를 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게는 실로 잇기 어려운 은혜가 있다. 가령 中華에 명나라를 이어 일어나는 天子가 있다면 인심이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조선 이외에는 衣冠의 나라가 없는가라는 고종의 질문에 동석해 있던 洪淳穆은 乾淨한 지역은 오직 조선뿐이라고 거들었다.²³⁾ 고종은 명나라를 잇는 ‘중화’의 나라 조선의 통치자가 되기로 작정하고 있었다. 더구나 고종이 친정을 선포하기 직전 사대의 대상인 청 황제의 친정은

21) 『승정원일기』 고종 10. 8. 13.

22) 위와 같음.

23) 『승정원일기』 고종 10. 9. 10.

자신의 친정 선포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었다. 결국 고종은 청과의 사대 외교를 그 자신의 친정을 선포하는 데 십분 활용했던 것이다.

Ⅲ. 교린 외교 재개와 강화도조약 체결

고종은 친정을 선포하기 전 청을 둘러싼 국제정세-청 내부의 정치상황, 서양과 일본의 동향 등 -에 관해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외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둘러싼 조선 정계의 公論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공론화된 조선의 대외정책은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서구제국과 일본의 외압에 척사위정을 내세우며 굳게 문을 닫고 있는 것이었다.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후 대외정책에 변화를 보인 것은 일본과의 관계에서였다. 고종은 단절되어 있던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 이를 친정 기반을 다지는 데 활용했다. 그리고 이어 무력시위를 하며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일본에 고종은 유화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고종이 일본에 문호를 개방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선이 서구 근대 국제법 체제로의 편입을 의미하지만, 고종의 대외인식은 여전히 화이관에 입각한 교린 외교의 재개에 머물러 있었다.

고종이 일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청일수호조약 체결을 전후한 시기라고 생각된다. 1870년 가을 일본은 청으로부터 구미열강들의 특권을 얻고, 청과의 대등관계 실현을 목적으로 청에 청·일 조약을 요구했다. 청 정부는 북양대신 이홍장을 전권대표로 임명하고 일본과의 조약 초안을 작성하게 했다. 1871년 7월 청일조약은 청의 초안대로 체결되었다. 청의 초안에서 중심 내용은 최혜국조관의 제거, 일본과 구미제국의 동맹 방지, 외교관과 영사의 파견 및 일본 상인의 청국 내지 통상 금지였다. 청 측은 지금까지 청이 구미제국

과 맺은 조약과 청일조약을 구별하려는 의도대로 조약을 체결했다.²⁴⁾ 당시 일본과의 조약체결에 대해 청 내부에 반대의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홍장은 자강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을 청의 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일본과의 조약체결을 성사시켰다.

청일조약 체결 소식이 고종에게 전해진 것은 청에 파견되었던 사행을 통해서였다. 1872년 4월 4일 사신의 귀국 보고를 통해 고종은 청과 일본이 대등하게 조약을 체결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고종은 일본이 청에 신하로서 복종하는 나라가 아니므로 청일조약 체결 후에도 일본이 청에 신하로 칭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고도 들었다.²⁵⁾ 그리고 같은 사행단으로서 뒤늦게 도착한 書狀官 朴鳳彬과 4월 30일 대화를 하는 중에 고종은 일본은 본래 청의 臣服이 아닌데 어찌하여 청이 막지 못하고 일본과 通貨를 약속했는지 물었다. 그러자 박봉빈은 작년 7, 8월 사이에 洋夷가 일본과 함께 와서 교역을 청함에 부득이하여 청이 허락을 한 것이라고 대답하면서 일본은 전부터 중국의 正朔을 받지 않았음을 고종에게 상기시켰다.²⁶⁾ 청일조약 체결 소식은 고종에게 조선과 청의 관계,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생각하게 했을 것이다. 더구나 조선은 왜관을 통해서 대마도와 교린 외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당시 단절된 상태에 있었다.

일본은 1868년 明治維新 이후, 1871년 7월에 행정개혁을 단행하여 이전까지 지방 통치를 담당했던 藩을 폐지하고 지방 통치기관을 중앙 정부가 통제하는 府와 縣으로 일원화했다. 이 廢藩置縣을 기회로 일본 외무성은 對馬藩으로부터 조선과의 외교 사무를 접수하고 1872년에는 그때까지 조선과의 교섭 창구였던 부산 草梁의 일본인 거주지 倭館을 외무성 관할로 옮겼다. 이것으로 수세기 동안 對馬가 담당해온 조·일 외교가 일본 외무성 소관으로 되었다. 그러나 조선은 1869년 ‘書契’ 문제를 들어 이 조치를 인정하지 않았고, 조·일 관

24) 信夫清三郎, 1974, 『日本外交史』 I, 毎日新聞社, 84쪽.

25) 『승정원일기』 고종 9. 4. 4.

26) 『승정원일기』 고종 9. 4. 30.

계는 단절된 채 교섭의 진전이 없었다.

고종은 일본의 동태를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었다. 1873년 9월 3일 재해로 인해 慰諭使로 파견되었다 돌아온 金奎軾을 소견하는 과정에서 고종은 倭館이 있는 東萊를 가보았는가를 물으면서 왜관의 일인들의 동태를 파악하려 애썼다. 그리고 견정사절로부터 들은 것을 기억하며 일본에 내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는지를 물었다.²⁷⁾ 고종이 이때 말한 일본의 내란 여부는 명치유신 이후 체제개혁에 따른 갈등을 밖으로 돌려 해결하고자 하는 征韓論이 일어나 이에 대한 의견 대립이 첨예했던 일본의 사정에서 나온 소문이었다.

서계 접수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조·일 관계는 고종이 친정체제 기반을 다져가는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되었다. 고종은 경상감사에 俞致善, 동래부사에 朴齊寬, 훈도에 玄昔運 등을 임명함으로써 대원군 집정 아래 통상 거부 태도를 보이고 있던 관료들을 교체했다. 그리고 동래부사 박제관을 소견하는 과정에서 동래는 일본과 접경하는 지역이므로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명하고, 조·일 관계 경색으로 동래부에서 왜관에 넘겨주어야 할 米·木·布가 적체되어 있는 것을 빌미로 농간을 부리는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강력히 다스릴 것을 주문했다. 고종의 왜관에 대한 관심은 1874년 2월과 3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암행어사를 파견할 때²⁸⁾ 경상좌도 암행어사 朴定陽에게 동래부 왜관의 동태와 일본인의 동향을 파악하라는 特旨를 부여할 정도로 높았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고종이 생각한 일본과의 관계는 서구 근대 국제법질서에 입각한 대등 조약의 체결이라기보다는 전통적 사대·교린 질서 아래서의 교린 외교의 재개를 지향했던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왜냐하면 1874년 3월 30일 견정사신 鄭健朝와의 대화에서 고종은 여전히 조선을 ‘中華’를 잇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의중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소견 과정에서 고종은 일본 사신과 서양 5개국 사신이 함께 청 황제를 만났다는 소식을 전해

27) 『승정원일기』 고종 10. 9. 3.

28) 이 시기 암행어사 파견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다음의 글을 참조. 한철호, 1998, 「고종 친정 초(1874) 암행어사 파견과 그 활동-지방관 정치를 중심으로」, 『史學志』 31.

듣고 청의 기강이 전에 비해 해이해져 외국에 나약함을 보인 것이라고 평가했다.²⁹⁾

정건조의 보고대로 당시 청과 조약을 체결한 각국 외교단은 청 황제에게 직접 신임장을 奉扈하겠다는 의사를 청 정부에 표명했다. 그러나 청 정부는 내면적으로는 中華意識에 기인했지만 겉으로는 황태후가 수렴청정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거절해왔다. 그러나 동치제가 친정을 시작한 후에 핑계할 말이 없어 접견을 허락했다. 각국 외교관은 동치제를 접견할 때 전통적으로 청 황제에게 하던 跪拜를 하지 않고 서서 3揖만을 했다.³⁰⁾ 청의 전통적 중화의식이 또 다른 방면에서 무너진 사건이었다. 이를 고종은 기강이 해이해져 외국에 나약함을 보인 것이라고 평한 것이었다.

고종은 청을 둘러싼 전통적 중화질서가 붕괴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 직면했지만 여전히 청의 官人들이 아직도 명나라를 그리워하는지,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皇壇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그리고 청 황제가 친정한 뒤로 반드시 洋人を 물리칠 것이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은 '邪學'에 빠진 무리가 청 내부에 있기 때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고종은 유학의 예교를 충실하게 실현하는 왕이 될 것을 다짐하는 태도를 보였다.³¹⁾ 그러나 고종은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를 듣건대 외부세계와 단절하여 조선을 고립무원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일본과의 전통적 교린 외교 재개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고종이 일본과의 교린 외교를 재개하고자 한 것은 척사위정이 공론으로 되어 있던 조선 내부의 사정을 감안할 때 전통적으로 교린 외교 대상이었던 일본이므로 위험부담이 적었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고종의 교린 외교 재개의 지는 새로 임명된 동래부사 朴齊寬의 태도에서 읽을 수 있다. 박제관은 동래부에 부임하자 이전의 동래부사가 막았던 서양 목면의 상거래를 금할 뜻이 없음

29) 『승정원일기』 고종 11, 3, 30.

30) 信夫清三郎, 1974, 앞의 책, 90쪽.

31) 『승정원일기』 고종 11, 3, 30.

을 밝히고 이를 속박하는 병사에게 杖刑을 내릴 것을 명했다. 그리고 조선과 일본의 교제는 宗氏의 주선에 따라 종전의 例格으로 이루어진다면 조정할 뜻이 있음을 내비쳤다.³²⁾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당시 일본 측은 조선이 일본과 교제를 끊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맹약을 강구하지 않고 있을 뿐이라 생각했다. 실제로 일본 측은 고종 친정 이전에는 조선이 일본을 경멸하는 태도가 보였는데, 변혁(고종 친정을 의미-필자) 이래 일본인을 온화하게 대한다고 느꼈다.³³⁾ 그리하여 왜관에 파견된 일본 외무성 六等出仕 森山茂는 조선 정부가 오랫동안 버려서 돌아보지 않았던 舊交를 재개할 것 같으니 무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평화적으로 교섭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국에 보고하기도 했다.³⁴⁾

그런데 이즈음 청 정부로부터 조선 정부에 일본의 대만 점령 소식이 전해졌다. 대만 사건은 1871년 유구 표류인들이 대만인들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빌미로 1874년 4월 일본이 대만을 침공하고 보상을 요구한 사건이었다. 청 정부는 이 사실을 1874년 6월 3일자로 조선 정부에 알리면서 일본이 미국·프랑스와 결탁하여 한국을 침략할지도 모르며, 대만에 주둔한 군사를 조선으로 출동시킬지 모른다는 소문을 전했다. 그와 더불어 조선 정부가 조선 침략을 위한 일본·미국 그리고 프랑스의 연합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프랑스와 통상조약을 맺어 일본의 침략을 저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³⁵⁾ 일본의 대만 침공은 고종

32) 『朝鮮事務書』 27책, 「森山再渡韓途次嚴原ヨリ報告」 중 “浦瀨裕ヨリ韓地ノ景況ヲ森山茂二陳ルノ書”, 明治 7. 6. 2.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디지털고문헌실 근대한일외교자료(<http://simin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listSMLMain.do>). 이 시기 조선인의 대일인식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윤소영, 2003, 「1870년 전후 조선의 對日認識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5.

33) 『朝鮮事務書』 27책, 「森山再渡韓途次嚴原ヨリ報告(二)」 중 “荒川德滋ヨリ韓地ノ景況ヲ森山茂二陳ル書”, 明治 7. 6. 2.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디지털고문헌실 근대한일외교자료(<http://simin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listSMLMain.do>).

34) 『朝鮮事務書』 27책, 「六月二十一日森山茂ヨリ來信」 중 “宗大丞渡韓ノ好機會ナル旨ヲ陳ル書”, 明治 7. 6. 21.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디지털고문헌실 근대한일외교자료(<http://simin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listSMLMain.do>).

35) 『龍湖閑錄』 4, 316쪽.

을 비롯한 조선 정부 관료들에게 충격이었을 것이다. 대만은 조선이 사대를 하며 의지하는 청의 영토였기 때문이다.

고종은 건청사신으로부터 통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프랑스가 월남을 공격했다는 것을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또한 고종은 청보다도 넓은 영토를 갖고 있는 러시아와 몽고의 강성함에 대해서도 들었고, 청에 들어와 있는 서구인들을 몰아내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청의 형편에 대해서도 사신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다.³⁶⁾ 그런데 청의 영토인 대만을 일본이 침공했다는 소식을 접했으니 고종이 조선의 안위에 대해 심각하게 재고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청으로부터 일본의 대만 침공을 전해 들은 후 고종은 조선 정부 관료들과 대비책을 의논했다. 6월 25일 회의³⁷⁾에서 영의정 李裕元은 청으로부터 온 자문에 대해, 청의 총리아문이 조선에 소식을 알려주면 되었지 통상 등의 얘기를 해서 마치 공갈과 유혹을 하듯 한다고 못마땅해했다. 上國의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무기를 준비하고 변경을 엄수하는 일을 늦추면 안 되고, 준비를 하되 쓰는 일이 없으면 더욱 다행한 일이라고 했다. 우의정 박규수는 이번 북경 자문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고, 청이 저 나라들이 준동할 기미를 염려해서 급속히 통기한 것이니 마땅히 먼저 방비를 해야 하는데, 용병을 위해서 재물과 식량을 저축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이고 이 외 제반 軍務를 일일이 점검해서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종은 박규수가 북경에 사절로 갔을 때 洋夷가 조선을 칠 기미가 있음을 들었는지 물었다. 이때 박규수는 고종에게 서구제국의 통상과 일본의 실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서양 각국은 오로지 交易商販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바다로 나가는 商船은 모두 그 나라 文簿에 왕래 출입이 기록되고, 그 화물을 세어 세금을 거두어 국가의 재산으로 한다. 이것이 그들이 자랑하는 富强之道이다. 中外 각국은 통상하지 않는 나라가 없는데, 유독 우리 나라와 通貨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36) 『일성록』 고종 11. 3. 30.

37) 『일성록』 고종 11. 6. 25.; 『승정원일기』 고종 11. 6. 25.

나라가 해를 거듭해 조선에 드나들며 일을 만드는 것은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서양 각국이 일본과 통상한 것은 백 년 전부터이다. 일본 사람들도 邪教을 배척했는데, 그중 가장 비분강개한 자들은 학문이 있는 선비들로서 斥邪의 논리를 세운 자가 많았다. 어떤 까닭인지 근년 이래 일본에서는 소위 關伯이 제거되고 皇으로 불려지는 자가 국정을 총괄하는데, 名正言順하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 실상인즉 그 임금이 邪教에 빠져 洋夷가 이를 돕고 있는 형세이다. 그래서 일본이 洋夷를 따라 함께 청에 교역을 요청했고, 청 또한 이를 허락했다. 지금에 이르러 洋과 일본은 한 덩어리가 되었으니 洋夷의 간사스럽고 교묘함이 극에 이르렀다 하겠다.³⁸⁾

박규수의 위와 같은 설명은 조선에 통상을 요구했던 서구제국과 일본의 드러난 실상을 간명하게 밝힌 것으로 박규수의 대외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실상을 들어 알고 있던 고종이나 그를 보필하던 영의정 이유원, 우의정 박규수는 서구제국과 통상할 마음은 없었다. 그러므로 근본적인 대책은 조선 내부에서 통상을 요구하는 나라들과 和應하는 雜類가 없도록 오로지 邪學을 통렬히 금하는 것이었다.³⁹⁾ 이에 따라 청에서 온 자문에 대한 회답에서 조선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는 ‘稱兵妄動’하지 않도록, 또한 프랑스와 미국에 대해서는 조약체결을 요구하지 않도록 권고해줄 것을 청 정부에 요청했다.⁴⁰⁾

일본의 대만 침공 사실을 전해 들은 후 고종과 뜻을 같이하던 영의정 이유원과 우의정 박규수 등은 일본과의 교린 외교 재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했다. 1874년 6월 29일 영의정 이유원은 다음과 같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괄하고 책임자 문책을 건의했다.⁴¹⁾ 즉, 조선은 일본과 왕래한 지 300년이나 되었지만 분쟁이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갑자기 3년 동안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 까닭을 모르고 있다. 한 訓導의 말만 믿고 그가 하는 대로 내버려두니 公私로 농간

38) 위와 같음.

39) 위와 같음. 『승정원일기』 고종 11. 6. 25.

40) 『籌辦夷務始末』 同治朝, 卷97, 15~17쪽; 『同文彙考』 4, 3744~3745쪽.

41) 『고종실록』 고종 11. 6. 29.; 『일성록』 고종 11. 6. 29.

질을 하고, 別差가 왜관에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었다. 그러니 부산의 前 訓導 安東峻을 처벌하고 別定 渡海官을 파견하여 대마도의 동태를 탐지하여 오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대해 고종은 자신도 그들의 실정을 탐지할 사람을 보내려고 한 지 오래되었다고 응수했다.⁴²⁾

이에 더하여 우의정 박규수는 일본의 書契에서 ‘皇’, ‘勅’이라고 한 것은 그들 자신을 높여서 부른 것이지 결코 조선에서 그렇게 불러달라는 요구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대마도주의 작위를 전과 달리 부르는 것은 그가 兼任으로 벼슬을 더 받을 수도 있는 만큼 괴이할 것이 없다고 했다. 그러니 일본의 서계를 거절한 지 여러 해가 되었으므로 나쁜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고, 아울러 안동준을 처벌해야 한다고 이유원에 이어 재차 의견을 피력했다.⁴³⁾ 그 결과 일본과의 경색 국면을 초래했다는 이유로 前 훈도 안동준은 8월 29일 처형되었고, 동래부사 鄭顯德은 7월 3일 유배되었다. 이들의 처벌은 고종이 대원군의 대외정책인 斥和論을 폐기하고 일본과의 국교를 재개할 것임을 대외적으로 보이게 하는 면도 있었다.

이에 더하여 군영대장 趙寧夏는 서신으로 일본과 舊交를 회복하고 싶다는 뜻을 당시 왜관에 와 있던 일본 외무성 出仕 森山茂에게 보냈는데, 森山茂는 이 서신을 받았다고 8월 14일(양력 9월 24일) 본국에 보고했다.⁴⁴⁾ 1874년 8월 9일 고종은 일본이 서계를 고쳐 갖고 오면 받아들여지는 이유원의 견해를 받아들였다.⁴⁵⁾ 그리고 9월 20일의 경연에서 이유원은 일본인들이 서계 가운데 ‘天子’라는 두 글자를 조선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이라면 굳이 쓰지 않겠지만, ‘皇’자와 ‘大’자의 경우는 본래부터 일본에서 일컫던 것이니 고치기 어렵다고 한

42) 『고종실록』 위와 같음.

43) 위와 같음.

44) 『朝鮮事務書』 29책, 「朝鮮國左將軍從二品趙寧夏來書(九月二十四日接到)」,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디지털고문헌실 근대한일외교자료(<http://siminlib.koreanhistory.or.kr/dirservice/listSMLMain.do>); 日本外交文書』 7, 문서번호 218 (附屬書一).

45) 『일성록』 고종 11. 8. 9.

다는 동래 훈도의 말을 고종에게 전했다.⁴⁶⁾ 고종은 이에 대해 별반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고종은 서계의 수납 방식에 대해서는 예전 절차, 즉 왜관 훈도를 통해 동래부사를 거쳐 조선 정부에 전달되는 통로를 지킬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옛 방식을 무시하겠다고 하여 조선 정부는 동래부사가 직접 동래부에 들어가 음식을 차려 두고 서계를 받는 것으로 정리했다. 그리고 고종은 일본인이 火輪船을 타고 온 것에 대해서도 먼저 문제삼지 말 것을 당부했다. 원래 고종은 일본이 화륜선을 사용하는 것을 양기와 내통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부정적이었다.⁴⁷⁾ 그럼에도 이를 문제삼지 말라고 한 것은 고종이 일본과의 경색 국면을 빨리 타개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宴饗日에 일본인들이 양식 大禮服을 착용할 것이라는 등 연향 의식을 기왕에 하던 방식과는 다르게 할 것이라고 조선에 통고함으로써⁴⁸⁾ 일본과의 접촉에 진전이 없었다. 서계 접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지자 고종은 박규수, 이유원 등을 포함한 시원임대신들을 참석시켜 회의를 열었다.

1875년 5월 10일 열린 고종과 시원임대신들의 회의에서 판중추부사 박규수와 좌의정 이최응 등은 서계를 접수하는 데 찬성을 표시했고, 영도녕부사 金炳學과 우의정 金炳國 등은 반대했다.⁴⁹⁾ 이 회의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자 5월 25일 고종은 서계를 받아들여 연향할 때 예복은 舊禮를 따르라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 결정을 내렸다.⁵⁰⁾ 이에 일본과 다시 협의했으나 일본은 양복 착용 등 연향 의식에 대한 종전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⁵¹⁾ 당시 일본은 조선과의 협상을 진전시킬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⁵²⁾ 그리고 일본은 군함을 파견하여 무력시위를 하고 1875년 8월 영종진에 포격을 가했

46) 『일성록』 고종 11. 9. 20.

47) 『승정원일기』 고종 12. 2. 5.

48) 『승정원일기』 고종 12. 3. 4.

49) 『승정원일기』 고종 12. 5. 10.

50) 『승정원일기』 고종 12. 5. 25.

51) 『승정원일기』 고종 12. 7. 9., 8. 6.

52) 안종철, 1998, 「친정전후 고종의 대외관과 대일정책」, 『한국사론』 40, 152쪽.

다.⁵³⁾ 이로써 고종과 이유원·박규수 등이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다.

고종과 이유원은 서계 접수 문제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일본과의 무력 충돌을 우려하고 있었다. 고종은 일본에서 전부터 ‘皇’ 號를 칭하고 ‘大日本’ 이라고 말했는데 上國은 어찌하여 그대로 두고 따지지 않았는지 의아해했다. 이유원은 上國은 일본이 멀리 있는 나라라고 해서 그대로 버려두었을 것이라 대답했다. 이유원은 북경에도 일본인들이 버티고 있어 아직까지 어지러운 것을 보면 우리나라도 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각 영의 돈과 곡식이 거덜난 형편에서 만일 예기치 못한 일이 있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막아낼지 걱정스럽다고 고종에게 말했다.⁵⁴⁾ 고종과 이유원의 대화에서 볼 때 일본과의 수교를 추진하는 이유 중에 일본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조선의 방어 능력으로는 이를 막아내기 어려운 사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박규수가 대원군에게 일본과의 국교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때도 중요하게 제기했던 문제였다.

1874년 말, 박규수는 서계 접수를 반대하던 세력의 대표자격인 대원군에게 일본의 서계 접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박규수는 서계 접수를 하지 않아 일본의 원망이 쌓여 있는 상태이므로 舊好를 회복해서 일본을 적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⁵⁾ 1875년 4월(양력)과 5월(양력) 일본 군함이 부산항에 들어와 무력시위를 하고 돌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자 박규수는 대원군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 일본의 서계 접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현재 화륜선에 병사를 태우고 사절 보호라는 명분으로 조선에 내항했지만 이것은 조선에 위협하기 위한 것이라 지적했다. 만약 일본이 발포한 다음에 서계를 접수하고자 하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무력행사를 하기 전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⁶⁾

박규수의 지적대로 서계 접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일본은 군함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이후 고종은 일본의 서계를 즉각 받아들일 것을

53) 『승정원일기』 고종 12. 8. 24.

54) 『일성록』 고종 11. 9. 20.

55) 『林珪壽全集』 下, 答上大院君(甲戌), 753~754쪽.

56) 『林珪壽全集』 下, 答上大院君(乙亥 五月), 758쪽.

지시했다.⁵⁷⁾ 그러나 일본은 1874년 청에 공사관을 개설하고, 조선에 사신을 파견할 것이라고 청에 알리는 등 청과 조선의 사대관계를 경계하며⁵⁸⁾ 조선에 수호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고종은 서양이 아닌 일본과는 화친을 재개할 수 있다 [與倭續好匪洋伊和⁵⁹⁾]는 논리로 일본과의 수호조약 체결을 반대하는 세력을 누르고 1876년 일본과 '修好條規'를 체결함으로써 문호를 개방했다.

수호조규를 체결할 때 양측이 모두 '重修舊好'를 내세웠지만 일본과 조선의 입장은 달랐다. 일본은 미국과의 조약체결에서 경험한 불평등조약을 흉내 내어 조선과의 조약체결에서 그대로 재현했다. 그러나 조선은 그때까지 추진하고 있던 교린 외교의 재개라는 연장선에서 일본과 조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고종은 친정 이후 여전히 척사위정이라는 화이관에 입각해 일본과의 교린 외교 재개를 위해 노력했지만, 서구 근대 국제법에 근거한 세계체제의 재편이라는 소용돌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IV. 豆毛鎭 수세 사건과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 수용

고종은 1876년 일본과 조약체결을 함으로써 重修舊好라는 교린 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고종의 교린 외교 재개 논리는 일본과의 수호를 반대하던 세력을 무마시키는 국내용은 될 수 있었으나 그것으로 당시 조선을 둘러싼 국제정세에 맞설 수는 없었다. 조약체결 당사국인 일본은 이미 서구 근대 국제법 질서에 들어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중이었고, 같은 국제질서

57) 『승정원일기』 고종 12, 11, 15.

58) 信夫清三郎, 1974, 앞의 책, 99쪽.

59) 『일성록』 고종 13, 1, 28.

아래에서 새로운 관계 맺기로 조선을 끌어들이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전권대신은 조선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기 전 협상을 할 때 조약 체결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기를, 두 나라 관계가 그간에 막혔던 것은 바로 조례가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조약을 체결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章程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나라 사이의 교류가 다시 끊어질 일은 없게 될 것이며, 또 이것은 모두 만국공법=서구 근대 국제법에서도 없앨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⁶⁰⁾고 했다. 일본은 조선과 만국공법이 관철되는 조약체결을 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정을 두고 지금까지 강화도조약 체결에 대한 평가에서 당시 조선이 국제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일본에게 유리하고 조선에 불리한 약정을 맺게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강화도조약 체결이 결과적으로 일본에 유리하게 되었지만, 당시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 대신들이 교린 외교의 재개라는 관점에서 일본과의 조약체결에 임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들이 처한 역사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⁶¹⁾ 즉 당시 고종은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교린 외교로 규정짓고 있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시기 그의 대외인식을 고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강화도조약 체결 이후에도 고종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교린국이었다. 따라서 강화도조약의 내용이 서구 근대 국제법을 기준으로 하면 불평등한 내용이 많았지만 전통적인 일본과의 교린관계에서 고찰한다면 특별히 고종과 조선 정부 대신들이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었다. 강화도조약 중 대표적인 불평등한 내용으로 꼽히는 제2관의 경우 조선 측은 일본이 제안한 駐劄使節 파견을 종전의 통신사 파견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했다. 다만 과거의 통신사와 다른 점은 사행에서 禮幣를 모두 없애고, 일본에 가면 숙식비를 자비부담해야 한다는 점

60) 『고종실록』 고종 13. 1. 20.

61) 1876년 조일조약의 형식과 내용이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조선과 일본, 그리고 청 사이에 행해지던 관행과 연속성이 있음을 밝힌 글로 다음을 참조. 이근관, 2004, 「조일수호조규(1876)의 재평가-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점으로 부터」, 『서울국제법연구』 11-1.

만 다르다고 생각했다.⁶²⁾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절을 조선에 상주시키고자 하는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치외법권을 규정했다는 제10관도 조선 측은 전통적으로 왜관에서 행해진 관례대로 인식했다. 왜관에 거주하던 일본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보면 대마도 측에 그 권리가 있었다. 따라서 왜관에서는 사실상 영사재판권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⁶³⁾ 제10관의 편무성에 대해 말하자면, 조약체결 당시 고종과 조선 정부 관료는 오직 일본하고만 교린의 우의로 통교하고 다른 나라들과 통호하여 조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었다.⁶⁴⁾ 따라서 조선인의 해외 거주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의 편무성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화도조약 내용에 대해 고종과 조선 정부 관료들이 별다른 저항감을 갖지 않고 수용할 수 있었다.

한편 고종은 1876년 7월 6일 체결된 조일수호조규부록⁶⁵⁾에 근거해 일본에 부산을 개항했다. 고종은 300년이나 이어져 온 개항 지역이기 때문에 부산을 개항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은 왜관 지역을 부두와 함께 조차하고 일본인 거류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1876년 12월 17일 釜山口租界條約⁶⁶⁾이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처음에 나오는 구절은 “조선국 경상도 동래부 소관 초량항의 한 구역은 예로부터 일본국 관리와 백성이 거류하는 땅이다.……그 밖의 택지, 도로, 개천은 모두 일본국 정부에 귀속시켜 보호하여 수리하고, 선장은 조선국 정부에서 수리하고 보수한다.……”⁶⁷⁾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에서 ‘초량항의 한 구역’은 초량 왜관을 말한다. 그런데 왜관은 옛날부터 조선에서 빌려 사용해 온 토지였는데, 이 조약에는 빌려 사용했다는 문구가 없다. 또한 왜관의 택지, 도로, 개천을 모두 일본국 정부에 귀속

62) 강화도조약 체결 후 고종과 담당자인 신헌과의 대화 참조. 申樞 지음, 김종학 옮김, 2010, 『심행일기』, 푸른역사, 309쪽.

63) 이근관, 2004, 앞의 글, 73~74쪽.

64) 申樞 지음, 김종학 옮김, 2010, 앞의 책, 198, 241쪽.

65) 『고종실록』 고종 13, 7, 6.

66) 일본에서는 “釜山港居留地借入約書”라고 함.

67) 『고종실록』 고종 13, 12, 17.

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조약체결을 담당했던 당시 동래부사 洪祐昌은 역사적 사실과 다른 문구에 대한 수정 요청도 하지 않았고, 초량 지역은 이미 일본에 빌려주었으니 도로 같은 것은 일본이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였다.⁶⁸⁾ 홍우창은 왜관 지역이 일본에 빌려준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조약의 자구를 세심하게 따져 묻는 데 소홀했다. 일본은 이 조약을 근거로 초량 왜관 지역을 일반거류지가 아닌 한층 주권침해 정도가 심한 특별거류지로 만들었다.⁶⁹⁾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 관료가 일본과의 통상을 구래의 왜관무역의 복귀로 인식한 결과였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다.

1876년 7월 조일수호조규부록과 함께 체결한 무역규칙[통상장정]에서 조선은 제7칙에서 港稅만을 규정했다. 같은 날 서한 왕복의 형식으로 일본은 일본 해관이 조선의 수출입물품에 대해 수년간 수출입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일본 정부가 결정했다고 알렸다. 그리고 해관에 대해 “해관을 설치하고 세액을 정하여 양국 인민에게 약속하고 징수하는 바 이를 公稅로 한다. 예외로 進口船公稅의 一則이 있다”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조선 측 대표인 講修官 趙寅熙는 화물출입에 대해 수년간 면세하는 것을 特許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시행할 것을 약속하는 답변을 보냈다.⁷⁰⁾

해관 창설에 대해서는 이후 고종이 동래부사를 역임한 홍우창과 면담할 때 거론되고 있다. 고종이 해관 창설 이유에 대해 묻자 홍우창은 해관 설치의 조선과 일본 선박이 왕래할 때 수색하고 세금을 걷기 위한 장소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收稅와 관련하여 일본 배는 어느 정도 세액을 정했는데, 조선의 배에 대해서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다고 보고했다.⁷¹⁾ 進口船稅 외에 수출입

68) 초량 왜관 폐쇄와 일본 조계화 과정에 대한 글은 다음을 참조. 장순순, 2004, 「초량 왜관의 폐쇄와 일본 조계화 과정」, 『일본사상』 7.

69) 일본이 초량 지역을 특별거류지로 설정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信夫清三郎, 1974, 『日本外交史(1853~1972)』 I, 毎日新聞社, 101~102쪽.

70) 김경태, 1972, 「개항직후의 관세권 회복문제 - 「부산해관 수세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사연구』 8, 695~196쪽.

71) 『승정원일기』 고종 14. 8. 4.

화물에 대한 수세 문제는 1878년 7월 경상좌도 암행어사 李萬植의 보고에 의해 거론되었다.

이만식은 왜인들이 거주하는 곳에 조선 상인들이 끊임없이 왕래하고 있으니 재화가 가고 오는 데 정해진 세를 내는 것은 마땅하므로 이에 의거해 각각의 물건에 대해 세액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⁷²⁾ 이후 고종은 부산이 개항한 지 여러 해가 되었는데, 부산의 경우는 灣府가 1년에 3회 무역하는 것에 비해 장기간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출입하는 화물을 참작해서 세목을 정해 책자를 만들어 동래부에 내려 보내야 한다는 의정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⁷³⁾ 이 명령을 받은 동래부사 尹致和는 9월부터 해관수세를 거행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조계지인 왜관 지역에서 북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인 豆毛鎭에 해관을 설치하고 일본 조계지로의 출입 상품에 관세를 징수했는데, 대상은 조선 상인이었다.⁷⁴⁾ 조선은 당시 일본과 별도로 관세를 협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기왕의 왜관무역 시기의 관행대로 조선 상인을 대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 한 것이었다.⁷⁵⁾

조선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일본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고, 급기야 일본 대리공사가 해관 철폐를 요구하기 위해 군함을 타고 조선에 당도하기에 이르렀다. 두모진 해관세 징수는 조선 상인에게만 실시한 불완전한 수세였다. 그럼에도 일본 측은 무역이 거의 폐절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며 停稅를 요구했고,⁷⁶⁾ 이에 고종은 수세를 잠시 정지하도록 명했다. 두모진 수세 사건은 사대 교린 관계에서 국경무역인 開市에서의 商稅를 의도했던 것임은 위에 제시된 의정부의 수세 건의에서도 알 수 있다.⁷⁷⁾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

72) 『승정원일기』 고종 15. 7. 19.

73) 『승정원일기』 고종 15. 8. 10.

74) 부정애, 1973, 「조선해관의 창설경위」, 『한국사론』 1, 256쪽.

75) 두모진 수세사건의 배경과 조일교섭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박한민, 2009, 「두모진 수세사건의 배경과 조일교섭」,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6) 『倭使日記』 戊寅 11. 26. 到付.

77) 이와 같은 견해는 다음의 글을 참조, 연갑수, 1993,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106쪽.

관료들은 두모진 수세 사건을 통해 重修舊好에 의한 일본과의 교린관계 재개라는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관세에 대한 협정이 필요함을 인식했다.

일본은 1879년 5월 두모진 수세 사건의 과실을 인정하는 대가로 조선 정부에 일곱 가지 안건[別東七件書⁷⁸⁾]을 제출하면서 수락할 것을 강요했다.⁷⁹⁾ 일곱 가지 안건을 요약하면 ① 양국 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金銀 화폐를 주조할 것, ② 조선인이 일본 배를 고용하여 다른 항구로 화물을 운송할 때 편의를 도모할 것, ③ 조선인이 일본에 가서 무역이나 유학을 원할 때에는 이를 허락할 것, ④ 開市日에 일본인의 行商을 허락할 것, ⑤ 本草·鑛山·地質 등에 관한 학술 연구를 위해 조선 내지 통행을 허락할 것, ⑥ 大邱 互市를 시행할 것, ⑦ 燈臺·浮漂 등을 설치할 것 등이었다. 이것은 조선 안에서 제한 없는 교역을 피하기 위한 제안이었다. 더구나 일본은 두모진 수세 사건을 계기로 조선이 세칙과 세액에 관해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에 대한 대안까지 마련하여 조선 정부에 세칙을 상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⁸⁰⁾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수출입물품에 면세조치를 취한지 數年이 되어 징세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세칙과 세액을 협상할 뜻을 알렸다.⁸¹⁾

조선 정부는 세칙세액을 비롯한 당면문제 4건[議約四件⁸²⁾]을 의정할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 議約四件을 요약하면, ① 세칙세액을 지금 의정할 것, ② 미곡 수출 금지, ③ 此國 범죄자가 彼國의 各處로 도망하면 此國 관원의 조사 의

78) 『同文彙考』 4, 附編, 通商 — 「代理公使呈別東七件書」; 『일본외교문서』 12, 문서번호 124 「花房公使京城談判ノ次第上申ノ件」(附屬書 1) 「花房代理公使ヨリ來信ノ大意」 明治 12年 9月.

79)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부정애, 앞의 논문, 박한민, 앞의 논문.

80) 일본 대리공사 花房義質은 별간7건서 외에 港口稅目議定을 요청하는 일본 정부 서한을 조선 정부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同文彙考』 4, 附編, 通商 — 「代理公使請港口稅目議定其政府書」 참조; 『일본외교문서』 12, 문서번호 124 「花房公使京城談判ノ次第上申ノ件」(附屬書 1) 「花房代理公使ヨリ來信ノ大意」 明治 12年 9月 참조.

81) 『同文彙考』 4, 附編, 通商 — 「禮曹判書答書」 5月.

82) 『同文彙考』 4, 附編, 通商 — 「講修官與代理公使議約四件錄紙」 6月.

뢰를 거쳐 彼國官이 즉시 법을 만들어 조사하여 잡아 넘길 것, ④ 다른 나라 사람이 일본 배에 타고 조선 항구로 오는 것을 일본 정부는 금지할 것 등이었다. 네 가지 안건 중 세척세액 의정 외 3건은 조선 정부가 강화도조약 체결 때부터 줄곧 요구했던 사안이었다.

1879년 7월 6일(양력 8월 23일) 일본과의 세척협상에서 조선 정부는 새로이 원산항을 개항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원산항에서의 세척을 논의하려고 했지만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 조선 정부는 이때의 경험으로 일본과 세척협상을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1880년 제2차 수신사를 파견하게 된 것도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이 시기 일본과의 세척협상을 통해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 관료들은 교린 외교 재개라는 그들의 대외인식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이 일본과 관세협정을 벌이고 있을 때 청의 북양대신 이홍장으로부터 領中樞府事 이유원에게 서한⁸³⁾이 도착했다. 서한이 도착한 시기는 1879년 7월 9일이었다. 이 서한에서 이홍장은 대외통상을 권유하면서 만약 관세를 정하면 나라의 경비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도 있으며 상업에 익숙하면 무기구입도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관세에 대해 조언했다. 그러나 이홍장의 서한은 조선 정부가 일본과 관세협정을 일차로 벌인 이후, 즉 3일 후에 도착했다. 따라서 이홍장의 조언 이전에 조선 정부는 이미 일본과 관세협상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⁴⁾ 이를 보면 고종을 비롯한 조선 정부 관료들은 개항 이후 끊임없이 대외 정보를 습득하면서 변화하는 대외인식과 함께 조선 내부의 필요성에 따라 서구 근대 국제법을 수용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을 열어나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일본과의 교린관계를 폐기할 때가 되었고, 또한 청과의 사대관계도 재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다. 그 결과 1880년에 청에 통상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청과의 사대관계에 대한 고종의 의문은 문호개방 이후 견청사신들과의 대

83) 『龍湖閒錄』 4, 433~436쪽.

84) 이런 견해를 처음 제시한 글로 다음을 참조, 박한민, 앞의 논문, 41~42쪽.

화에서 보인다.⁸⁵⁾ 1876년 9월 견청사신의 귀국보고로 청에서 서양인의 세력이 치성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청 皇城 안의 좋은 집은 다 서양인들이 차지하고 황홀하게 치장하고 있다는 보고에 고종은 중국 재상들의 집은 여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그러다가 청이 서구제국의 세력하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청에 들어와 있는 서구 세력 중 어느 나라가 장성한가에 대한 고종의 물음에 사신 중 한 사람이었던 민중묵은 영국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나이 어린 청 황제가 장성하여 정치를 잘하게 되면 서구 세력을 물리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고종을 안심시켰다. 그러자 고종은 죽은 동치제는 나이가 장성했는데도 어찌 서구 세력을 제어하지 못했는가고 쓴웃음을 지었다. 고종은 청에 대해 행해지는 서구 세력의 강압을 보면서 청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동시에 조선의 자강과 그에 따른 武備가 필요함을 느꼈다.

고종이 친정 이후 대외방비책으로 신식무기에 구체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맺을 즈음이었다. 1875년 일본의 군함 운양호의 공격을 받아 영종진의 방어 군사들이 지리멸렬한 후 고종과의 정기 접견에서 좌의정 이최응은 패인은 군사 통솔의 무능에 있다고 주장했다.⁸⁶⁾ 우의정 김병국은 내수외양의 근본은 학문에 진력하는 데 있다고 진언했다.⁸⁷⁾ 당시 조선 정부 관료들은 무기의 열세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고종은 1876년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후 조약 체결 담당자였던 申樞과 대화하면서 신식무기에 관심을 표명했다. 신헌은 일본의 무기가 우수함을 역설했고, 일본 측이 무기제조에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신헌은 우리 무기와 국방체계의 허술함을 피력했다.⁸⁸⁾ 고종은 1876년 6월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온 金綺秀를 접견할 때도 일본의 무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

85) 『승정원일기』 고종 13. 9. 24.

86) 『일성록』 고종 12. 8. 29.

87) 위와 같음.

88) 申樞 지음, 김종학 옮김, 2010, 앞의 책, 309~313쪽.

명하며 물었다.⁸⁹⁾ 이 같은 강병책에 대한 강구의 결과 1876년 9월 청에 무비자강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⁹⁰⁾

고종이 무비자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된 것은 일본과의 수교 과정에서였고, 일본으로부터 기계 제작의 지도를 언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아닌 청에 무비자강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은 조선의 내부 사정 때문이었다. 당시 조선은 척사론자들의 척사상소가 끊이지 않았고 왜양일체 논리가 만연했기 때문에 고종이 신식무기를 구입하거나 제조하려 해도 서양이나 일본이 아닌 청에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척사론자들은 신무기 도입보다는 기존의 군사체계의 범주에서 軍政을 재정비하는 방식의 군비강화를 주장하고 있었다.

고종은 척사론자들과는 달리 군비강화를 위해 근대적인 신무기 도입을 생각하고 있었다. 1879년 8월 하순 고종은 製器鍊軍事에 대한 논의를 위해 齎咨官 李容肅을 청에 특파했다.⁹¹⁾ 고종이 이용숙을 청으로 보내기 전 청의 이홍장은 이유원에게 보낸 서한⁹²⁾을 통해 조선의 무비자강책을 중용하고 있었다. 이홍장이 조선 정부에 무비자강책을 권유한 데는 청의 조선 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청은 러시아와 伊犁還付 교섭이 진행되고 있었고, 일본의 琉球 병합 사건이 일어나 러시아와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고조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위기의식도 있어 결국 청은 자국의 울타리인 조선의 안전을 위해 1879년 7월 4일 조선에 서구제국과의 입약·통상을 권도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⁹³⁾ 청의 이런 결정은 1879년 3월 일본의 유구 병합이 화이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다. 이홍장은 이유원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일본이 갑자기

89) 『修信使記錄』全, 「修信使日記」 권1, 129~135쪽.

90) 吳汝綸 編, 1965, 『李文忠公(鴻章)全集』 朋僚函稿 卷16, 「復游子岱太守」, 광서 2, 9, 3.

91) 『清季中日韓關係史料』 2, 문서번호 327, 394~396쪽, 광서 5, 11, 15.

92) 『龍湖閑錄』 4, 433~436쪽.

93)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 권1, 문서번호 34, 32쪽, 광서 5, 7, 4.

군함을 출동시켜 유구를 병합했으니 일본의 침략에 조선도 경계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고종이 무비자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때, 일본의 유구 병합 소식을 접하자 강병에 대한 고종의 욕구는 더 커졌고, 이와 함께 청과의 사대 외교에 대한 반성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었다. 1880년 고종이 對淸 통상 요청을 비롯하여 앞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 청에 자문을 구하는 ‘請示節略’⁹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은 비로소 대외관계에서 통상을 확대하고 대내적으로 개화자강정책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었다.⁹⁵⁾ 이것은 1870년대 고종의 대외인식 변화의 귀결점이었다고, 나아가 사대 교린 외교의 폐지와 서구 근대 국제법의 수용의 대외적 천명을 의미했다.

V. 맺음말

고종의 대외인식은 그의 국내의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동시에 고종 자신이 그의 대외인식을 활용하여 국내의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또한 그의 대외인식은 국내외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형성되기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1870년대라는 10년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고종의 대외인식 변화는 국내외적 조건이 변함에 따라 단계별로 그 변화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1870년대 고종이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인 화이관에서 근대 서구 국제법적 대외관계를 수용하는 과정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고종은 친정을 선포하기 전 청을 둘러싼 국제정세-청 내부의 정치상황,

94) 『淸季中日韓關係史料』 2, 문서번호 353-(6), 475~480쪽, 광서 7. 2. 3.

95) 이 같은 고종의 대청인식 변화와 1880년 ‘청시절략과 그에 따른 고종의 개화정책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해안, 25~64쪽.

서양과 일본의 동향 등-에 관해 遣淸使臣들로부터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고종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외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변화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를 둘러싼 조선 정계의 公論을 무시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당시 공론화된 조선의 대외정책은 조선의 문을 두드리는 서구제국과 일본의 외압에 척사위정을 내세우며 문을 닫고 있는 것이었다.

고종 친정 선포 전후 그의 대외인식은 여전히 화이관에 입각한 사대 외교의 추구였다. 그러나 대내적으로 고종은 사대 외교를 충분히 이용했다. 그는 사대 외교를 통해 얻은 정보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 즉 청 동치제의 친정 소식과 황제를 둘러싼 의례 등을 자신의 친정을 선포하고 친정기반 강화에 활용한 것이었다. 사대의 대상인 청 황제의 친정은 자신의 친정 선포를 정당화시켜줄 수 있었다. 그리고 강압적 정치로 비판을 받고 있던 대원군에 맞서 청나라 사람들도 흠모한다는 조선의 척사위정 분위기에 순응하며 유교적 덕치를 실현하는 왕이 되고자 했다.

고종이 친정을 선포한 후 대외정책에 변화를 보인 것은 일본과의 관계에서였다. 고종은 書契 접수 문제로 단절되어 있던 일본과 관계 개선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는 대원군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대내적으로 친정체제 안정화를 꾀하기도 했다. 고종의 일본과의 교린 외교 재개 의지는 무력시위를 하며 문호개방을 요구하는 일본의 외압에 희석되기도 했으나 그는 일본의 포함 외교에 유화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일본과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했다. 고종이 일본에 문호를 개방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조선이 서구 근대 국제법 질서에 들어간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당시 고종의 대외인식은 여전히 화이관에 입각한 교린 외교의 재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고종이 실질적으로 서구 근대 국제법적 대외관계를 수용하게 된 것은 1878년 두모진 수세 사건과 이후 이어진 조선과 일본의 교섭과정에서였다. 1878년 두모진 수세 사건은 조선이 일본과의 관계를 교린 외교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고종은 두모진 사건의 사후 처리와 기타 일본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벌인 조·일 교섭 과정에서 얻은 경험에서 강화도

조약 체결의 의미, 즉 서구 근대 국제법 체제에서 말하는 조약 체결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고종은 1870년대 끝 시점에서 조선의 대외관계에서 통상 확대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1880년부터 표면화되기 시작하는 고종의 대외통상정책은 이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高宗實錄』, 『同文彙考』, 『朴珪壽全集』, 『承政院日記』, 『沁行日記』, 『龍湖閒錄』,
『日省錄』
『李文忠公(鴻章)全集』, 『籌辦夷務始末』, 『清季中日韓關係史料』, 『清光緒朝中日交
涉史料』
『倭使日記』, 『日本外交文書』, 『朝鮮外交事務書』

<2차 자료>

- 김상규, 1996, 「고종의 대외인식과 외교정책」, 『한국사 시민강좌』 19, 일조각.
구선희, 1999, 『한국근대 대청정책사 연구』, 혜안.
권석봉, 1986, 『청말 대조선정책사 연구』, 일조각.
권혁수, 2007,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혜안.
김경태, 1972, 「개항직후의 관세권 회복문제 - 「부산해관 수세사건」을 중심으로」, 『한
국사연구』 8, 한국사연구회.
김기혁, 1991, 「강화도조약의 역사적 배경과 국제적 환경」, 『국사논총』 25.
김민규, 2002,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청일수호조규(1871년) - 「조규체제」의
생성」, 『대동문화연구』 41,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김민규, 2003,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조선 - 「조규체제」의 성립과 와해」,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의 국제환경과 민족문화』, 경인문화사.
김병우, 2001, 「고종의 친정체제 형성기 정치세력의 동향」, 『대구사학』 63, 대구사학회.
김성혜, 2009, 「고종 친정초기 차대(次對)를 통해 본 국정운영(1874-1876)」, 『이화사
학연구』 38, 이화사학연구소.
김성혜, 2009, 「고종 재위 전기 강관의 구성(1864-1876)」, 『한국문화』 46,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한국문화).
김성혜, 2009, 「재위전기(1864-1876) 고종의 강연과 그 실태」, 『사학연구』 93, 한국사
학회.
김성혜, 2010, 「고종 친정 직후 정치적 기반 형성과 그 특징(1874~1876)」, 『한국근현
대사연구』 52, 한국근현대사학회.
김세은, 2000, 「고종초기(1864년~1873년)의 經筵」, 『진단학보』 89, 진단학회.

- 김수암, 2003, 「1870년대 조선의 대일관: 교린질서와 만국공법질서의 충돌」,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1.
- 김형수, 2001, 「고종의 친정과 개국정책연구-1873년~1876년」, 『이대사원』 33 : 34합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 박한민, 2009, 「두모진 수세사건의 배경과 조일교섭」,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모, 2004, 「세도정치기(1800~1863) 조선의 대외정책 연구」, 『국제정치논총』 44-4.
- 부정애, 1973, 「조선해관의 창설경위」, 『한국사론』 1,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신승하, 1990, 『증국근대사』, 대명출판사.
- 안외순, 1996, 「개항전 조·일관계와 대일정책-1864~1873년을 중심으로」, 『동방학』 2,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 안외순, 1996, 「고종의 초기(1864-1873) 대외인식 변화와 친정-遣淸回還使 召見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0-2, 한국정치학회.
- 안종철, 1998, 「친정전후 고종의 대외관과 대일정책」, 『한국사론』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연갑수, 1993,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894년 농민전쟁연구 3』, 역사비평사.
- 윤소영, 2003, 「1870년 전후 조선의 대일인식과 정책」, 『한국근현대사연구』 25, 한국근현대사학회.
- 윤소영, 2003, 「조일수호조규의 역사적 위치」, 『한일관계사연구』 18, 한일관계사연구회.
- 은정태, 1998, 「고종친정 이후 정치체제 개혁과 정치세력의 동향」, 『한국사론』 40,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 이근관, 2004, 「조일수호조규(1876)의 재평가-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관점으로 부터」, 『서울국제법연구』 11-1, 서울국제법연구원.
- 장순순, 2004, 「초량예관의 폐쇄와 일본 조계화 과정」, 『일본사상』 7, 한국일본사상사학회.
- 장영숙, 1997, 「고종의 대외인식전환 연구(1863~1881)」, 『상명사학』 5, 상명사학회.
- 장영숙, 2008, 「고종의 정권운영과 민씨척족의 정치적 역할」, 『정신문화연구』 31-3, 한국학중앙연구원.
- 장영숙, 2009, 「『內下冊子目錄』을 통해 본 고종의 개화관련 서적 수집 실상과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58,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장영숙, 2010, 『고종의 정치사상과 정치개혁론』, 선인.

- 조병한, 2004, 「海防 體制와 1870년대 李鴻章의 洋務運動」, 『동양사학연구』 88, 동양사학회.
- 조병한, 2006, 「19세기 서구적 세계체제와 동북아질서 재편」, 역사학회 편, 『전쟁과 동북아의 국제질서』, 일조각.
- 최병욱, 2000, 『개화기의 군사정책연구』, 경인문화사.
- 한우근, 1968, 「개항당시 위기의식과 개화사상」, 『한국사연구』 2, 한국사연구회.
- 한철호, 1998, 「고종 친정 초(1874) 압행어사 파견과 그 활동 - 지방관 징치를 중심으로」, 『사학지』 31, 단국사학회.
- 岩方久彦, 2007, 「1876년 수신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27, 한일관계사학회.
- 장팅푸 지음, 김기주·김원수 옮김, 1991, 『청일한외교관계사』, 민족문화사.
- 岡木隆司, 2004, 『屬國と自主のあいだ』, 名古屋大學出版會.
- 孔繫敏, 2002, 「晚清對韓政策的演變與教訓」, 『北京聯合大學學報』 3.
- 白新良, 2002, 『中朝關係史』, 世界智識出版社.
- 濱下武志, 1993, 『朝貢システムと近代アジア』, 岩波書店.
- 三好千春, 1990, 「兩次アヘン戰爭を事大關係の動搖」,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7.
- 原田環, 1984, 「十九世紀の朝鮮における對外的危機意識」,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1.
- 佐々木揚, 1985. 12, 「同治年間後期における清朝洋務派の日本論 - 李鴻章の場合を中心として」, 『東洋史研究』 44(3), 東洋史研究會.
- 川島眞, 2004, 『中國近代外交の形成』, 名古屋大學出版會.
- 坂野正高, 1973, 『近代中國政治外交史』, 東京大學出版會.
- 彭澤周, 1969, 『明治初期日韓清關係の研究』, 塙書房.

[ABSTRACT]

King Kojong's Changing Perception of the Foreign World in the 1870s

Koo, Sunhee

Existing research has elucidated that the changes in King *Kojong's* perception of the foreign world formed the background of the proclamation of the King's direct rule and his open-door policy. Moreover, the research describes the King's changing perception as a unilinear change in which the King gave up the Sino-centric perception of the world and accepted the modern international laws of the West. However, over the course of 1870s, the King's perception underwent a series of changes.

Before the proclamation of his own direct rule, King *Kojong* learned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Sino-centric international situation, Qing Dynasty's internal political situation, and the political movements of Japan and the West from his convoys in the Qing Dynasty. Though it is not easy to analyze the character of the King's changing perception of the world specifically, if there were some changes, the King still would not ignore opinions from his court. The official foreign policy of the time was to keep the door closed against Japan and Western powers with the idea of *Wijeongcheogsa* (衛正斥邪, protecting the right, repelling evil).

But King *Kojong* sufficiently used a subservient diplomatic policy on domestic issues. The King made use of the information acquired by this

subservient diplomacy: the news that the Qing Emperor Tong zhi started direct governing was the basis of King *Kojong*'s proclamation of direct rule. Since the Emperor had significant authority, the news justified the King's trial of direct rule. While Prince *Daewon* was being criticized for his oppressive politics, King *Kojong* tried to realize the moral excellence of Confucianism and to maintain the foreign policy of *Wijeongcheogsa*, which was respected even by Chinese people. So it is possible to say that the King still had the Sino-centric perception of the foreign world when he declared the beginning of direct rule.

It was after the proclamation of King *Kojong*'s direct rule that the diplomatic policy against Japan changed. The king tried to secure his rule by removing Prince *Daewon* and his followers, who were in opposition to improving relations with Japan, relations which had been broken off because of a problem with a diplomatic document. Though King *Kojong*'s will to mend relations with Japan was weakened by Japan's attempt to force the open-door policy, the King coped with Japan's intimidation with an appeasement policy and he created the *Kanghwa* treaty with Japan. The fact that the King opened the door to Japan seems to signify that the Joseon Dynasty entered the order of modern international laws. Still, King *Kojong*'s perception of the foreign world was based on the Sino-centric idea and he was merely trying to mend relations with a neighboring country.

It was after the *Dumojin* incident of 1878 and the succeeding negotiations with Japan that King *Kojong* actually comprehended the significance of foreign relations based on the modern international laws. The incident can be a good example which shows that Joseon was still responding to Japan with the old idea of a good-neighbor policy. The experience *Kojong* acquired from the incident and negotiations with

Japan enabled him to understand the significance of a treaty, like the *Kanghwa* treaty, in the order of modern international laws. He realized that having a treaty with a foreign country means that any problems concerning the treaty should be solved by negotiations with the country. And, at the end of the 1870s, King *Kojong* felt the need to expand trade rel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keywords

King *Kojong*, Sino-centric perception, direct rule, *Kanghwa* treaty, *Dumojin* incident, modern international laws, *Wijeongcheogsa*

근대 일본 '대륙정책'의 구조

- 타이완 출병 문제를 중심으로 -

오비나타 스미오 | 大日方純夫, 와세다대학 문학학술원 교수

I. 문제의 소재

본 논문은 메이지 초기 '대륙정책'의 구상을 검토하고, 이것이 어떠한 국제정치와 국내정치의 구조에 규정받은 것이었는지 검증하려는 것이다. 직접적으로는 타이완 출병 문제를 중심으로 메이지 초기 일본의 대륙정책을 검토하고자 한다.

메이지유신 이후 청일전쟁에 이르는 근대 일본 성립기의 외교노선에 대해서는 일관된 팽창성을 강조하는 나카즈카 아키라[中塚明] 등의 견해가 통설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¹⁾ 이에 대해 최근 다카하시 히데나오[高橋秀直] 등이 청일전쟁 이전의 일본이 취한 대외진로의 다양한 가능성을 검증하고,²⁾ 나카즈카 등의 통설적인 이해에 비판을 하며 견해의 수정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나카즈카 등이 주장하는 일관된 팽창성도, 이에 대한 다카하시 등의 비판도

※ 투고일: 2011년 4월 6일, 심사일: 2011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30일.

1) 中塚明, 1968, 『日清戦争の研究』, 青木書店.

2) 高橋秀直, 1995, 『日清戦争への道』, 東京創元社.

모두 조선 정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중국 그 자체에 대한 팽창정책의 유무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륙정책이라는 차원에서 타이완을 다루는 것에는 분명히 위화감이 있을 것이다. 타이완은 대륙 그 자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타이완은 조선에서 대륙으로 팽창하려는 북진론이 아니라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남진론의 거점이었다. 그러나 야스오카 아키오[安岡昭男]는 “북방정책·조선 교섭·류큐 귀속·타이완 출병·오가사와라 섬[小笠原島] 회수 등 일련의 문제를 메이지 정부가 초기에 당면했던 영토 확정과 대륙정책의 과제로 들 수 있다”며, 타이완 출병을 대륙정책에 포함시키고 있다.³⁾ 따라서 본 논문의 주안은 타이완 출병을 분석함으로써 대륙정책 그 자체를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완 출병이 대륙정책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즉 ‘타이완’과 ‘대륙’의 ‘거리’를 기능해 보는 데 있다.

1874년 5월, 일본군은 타이완으로 출병했다. 근대 일본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해외파병이다. 이것은 중일관계에서 최초의 긴장국면이고, 당시의 동아시아 정세, 직접적으로는 류큐와 타이완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관계, 나아가 이를 둘러싼 서구열강의 상황을 응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문제에 교착된 대외구상과 대외노선을 적출하고 분석하는 것은 대외관계사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타이완 출병에 관한 연구사적 논쟁점은 당초 출병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류큐 문제와 타이완 침공·대륙정책의 관련성), 소에지마[副島] 외교와 오쿠보[大久保] 외교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연속인지 단절인지), 타이완 출병을 둘러싼 국제관계(서구열강과의 관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지 등이다. 가쓰다 마사하루[勝田政治]의 연구를 참조하면서,⁴⁾ 그 논점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타이완 출병에 관한 통설적인 위치를 점하는 논점은 출병 전년(1873)

3) 安岡昭男, 1998, 『明治前期大陸政策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4) 勝田政治, 2001, 「大久保利通と台灣出兵」, 『國土館大學文學部 人文學會紀要』 34.

에 정한론을 주장한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등과 실제로 타이완 출병을 일으킨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설이다. 이 논점의 기본틀은 도야마 시게키[遠山茂樹]가 “정한론 분열 이후 불과 반년 만에 오쿠보가 주도한 타이완 정벌은 정한파의 전철을 밟은 것에 다름 아니다”⁵⁾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만들어졌다. 나가이 히데오[永井秀夫]는 “征台는 征韓과 이질적인 것이 아니다”, “소규모이지만 同質의 外征으로 선택되었다”고 말하고 있다.⁶⁾ 타이완 출병에 대한 가장 상세한 연구라 할 수 있는 이시이 다카시[石井孝]의 『메이지초기의 일본과 동아시아』에서도 루스[留守] 정부와 오쿠보의 동질성을 주장했다.⁷⁾ 오쿠보가 실시한 타이완 출병은 루스 정부의 타이완 출병론이나 정한론과 같은 불평사족 대책이고, 출병에는 타이완을 영유(식민지화)할 의도가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노부 세이자부로[信夫清三郎]는 루스 정부와 오쿠보 정권의 차이를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했다.⁸⁾ 오쿠보는 출병목적을 ‘보복’에 한정함으로써, ‘蕃地處分’을 르젠드르(Charles W. Le Gendre)와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가 계획한 식민지 경영까지는 진행시키지 않았으므로, 오쿠보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가 소에지마의 정책을 바꿨다고 주장한다. 이에치카 요시키[家近良樹]는 루스 정부의 소에지마 출병론은 타이완의 영유와 식민지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지만, 오쿠보의 의도는 영유를 부정하는 ‘討蕃撫民’론에 있었다면서 오쿠마·사이고와 오쿠보의 차이를 지적했다.⁹⁾ 즉 시노부와는 달리 오쿠마와 오쿠보를 하나로 묶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쿠마와 사이고의 연속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또한 모리 도시히코[毛利敏彦]의 『타이완출병』은, 소에지마 노선과 오쿠

5) 遠山茂樹, 1950, 「征韓論・自由民權論・封建論」, 『歴史學研究』 143/145.

6) 永井秀夫, 1975, 「統一國家の成立」, 『岩波講座 日本歴史14 近代1』, 岩波書店.

7) 石井孝, 1982, 「第一章 日本軍台灣侵攻をめぐる國際情勢」,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堂.

8) 信夫清三郎, 1978, 『日本政治史Ⅱ 明治維新』, 南窓社.

9) 家近良樹, 1983, 「『台灣出兵』方針の轉換と長州派の反對運動」, 『史學雜誌』 92-11.

보 노선의 공통성을 비판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설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있지만, 비판하는 지점은 전혀 다르다. 즉 오키보가 소에지마의 외교우선노선을 군사우선노선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이다.¹⁰⁾

한편, 타이완 출병 문제를 분석한 것은 아니지만, 외교 주체와 對淸 정책의 관계라는 점에서 고카제 히데마사[小風秀雅]의 지적은 흥미롭다.¹¹⁾ 고카제는 소에지마와 오키보는 대아시아 외교에 대한 태도가 명확히 다르다고 지적한다. 즉 “책봉체제의 논리를 원용하여 청과의 충돌을 회피하면서도 청을 이용하여 조선과 류큐 문제를 해결하려던” 소에지마에 비해, 오키보는 “화이질서와 대결하며 근대 국제법 논리에 입각하여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한론과 타이완 출병론이 제기된 시기의 외무경은 소에지마이고, 그다음 외무경은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이지 오키보가 아니다. 따라서 외교정책이라는 점에서는 소에지마와 데라시마의 관계를 문제삼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누즈카 다카아키[犬塚孝明]는 오키보와 오키마가 함께 서명한 ‘타이완번지처분요략[台灣番地處分要略]’이 소에지마의 강경책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봄으로써 소에지마와 오키보의 연속설을 취하면서도, 이에 대해 데라시마는 “시종일관 타이완 출병이 不可하다며 청국과의 외교교섭을 우선하는 條理論을 주장했다”고 지적한다.¹²⁾ 고토 신[後藤新]도 오키보 정권의 타이완 출병계획과 류큐 문제에 대해, 외무경 데라시마 무네노리가 소에지마 외교에 비판적이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³⁾

한편, 루스 정부와 소에지마 외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 일치를 전제로 했던 지금까지의 논의와 달리 내부적인 대항관계를 지적하는 견해도 나타나고 있다. 즉, 죠 코[張虎]는 뒤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소에지마 외교의 군사

10) 毛利敏彦, 1996, 『台灣出兵』, 中公新書.

11) 小風秀雅, 2001, 「華夷秩序と日本外交」,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12) 犬塚孝明, 1993, 「明治初期外交指導者の對外認識－副島種臣と寺島宗則を中心に」, 『國際政治』 102.

13) 後藤新, 2007, 「台灣出兵と琉球處分」, 『法學政治學論究』 72.

적·해외팽창주의적 성격을 강조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루스 정부의 주류가 소에지마의 외교론과 정면으로 대립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⁴⁾

이상과 같이 타이완 출병과 타이완 영유의 관계에서, 소에지마 다네오미가 타이완을 영유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모리[毛利]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그중 소에지마 외교의 레벨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죠 코가 “타이완 획득만이 아니라 조선에 대한 군사적 진출(정환)과 장차 중국 본토의 식민지 획득도 시야에 넣은, 지극히 강경한 군사적 색채가 강한 해외팽창주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타이완 문제는 대륙정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타이완 출병에서 식민지화의 의도를 찾아보려는 견해도 등장하고 있다.¹⁵⁾ 이때 주요 분석대상은 타이완 출병과 밀접하게 관련된 르젠드르의 계획과 구상이다.

당연히 타이완 출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청일 양국이고, 여기에는 타이완 귀속문제와 류큐 귀속 문제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정책 구상과 실행에는 서양 측의 동향이 관련되어 있으며, 지금까지의 연구도 이 점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구리하라 준[栗原純]은 외무경 소에지마 다네오미의 외교 교섭, 그리고 여기에 영향을 준 미국 공사 드롱(DeLong)과 르젠드르의 관계 및 열강의 동향을 증시한 오쿠보 등의 판단과 미국 공사 빙엄(John A. Bingham)의 외교노선의 전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¹⁶⁾ 또한 이시이 다카시[石井孝]도 앞에서 인용한 저서에서, 소에지마 외무경의 타이완 정책과 미국 공사 드롱과 르젠드르의 관여를 강조하고, 타이완 원정계획에 대한 파크스(Harry Smith Parkes)와 신임 미국 공사 빙엄의 외압 등 타이완 침공에 대한 국제적인 파문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타이완 출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대륙정책과 서구열강이 지녔던 동아시아 구상의 관계를 검토해

14) 張虎, 2001, 「副島對清外交の檢討」,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15) Eskildsen, Robert Alan, 2001, 「明治七年台灣出兵の植民地的側面」,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16) 栗原純, 1978, 「台灣事件(1871~1874年)」, 『史學雜誌』 87-9.

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병을 정당화한 논리와 서구 국제질서의 관계에 주목하면서, 타이완 출병을 둘러싼 일본의 對淸 정책의 귀추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II. 소에지마 외교와 르젠드르의 구상

1871년 11월(메이지 4년 10월, 이하 메이지 5년까지 괄호 안에 구력 표기), 류큐의 나하(那覇)에서 출항한 미야코지마(宮古島)의 배가 조난을 당하고, 12월(11월)에 탑승 중이던 69명이 타이완 남단에 표착하여 66명이 상륙했다(상륙시 3명은 익사) 원주민의 습격으로 54명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872년 7월(6월),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이 가고시마현(鹿兒島縣)으로 전해졌다. 8월 31일(7월 28일), 가고시마현 參事 오야마 쓰나요시(大山綱良)는 정부의 군함을 빌려서 ‘問罪’를 하기 위한 군사행동을 일으키고 싶다는 上書を 정부에 제출했다.¹⁷⁾ 이것은 9월 16일(8월 14일) 가고시마현의 사자를 통해 외무령 소에지마 다네오미에게 전해졌다. 10월 16일(9월 14일) 천황은 류큐 국왕의 사절을 접견하고, 국왕 쇼타이(尙泰)를 류큐 藩王에 임명하여 화족으로 삼는 조치를 취했다. 사쓰마에 ‘附庸’되어 있던 류큐의 특수한 처지를 부정하고 류큐 변왕을 천황 밑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10월 25일(9월 23일) 미국 공사 드룽은 소에지마를 방문하여 회담을 갖고, 르젠드르가 타이완에서 올린 업적을 소개하면서 마침 르젠드르가 요코하마에 와 있다고 전했다.¹⁸⁾ 이때 드룽은 소에지마에게 타이완은 청의 관할이지만 政습이 미치지 않아 ‘공중에 떠 있는 것[浮きもの]’이라고 말하고, ‘공중에 떠 있

17) 舊陸海軍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R34, 「台灣事件輯録一」.

18) 外務省 編, 1955, 『日本外交文書』七, 日本外交文書頒布會, 5~8쪽.

는 것'은 '갖는 사람이 임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즉 주인 없는 땅[無主地]은 선점하는 나라가 자국의 영토로 편입해도 된다는 당시의 국제법상의 견해를 시사한 것이다.

소에지마는 10월 26일(9월 24일) 요코하마로 가서 르젠드르와 회담을 가졌고,¹⁹⁾ 10월 28일(9월 26일)에도 회담을 가졌다.²⁰⁾ 회담할 때 르젠드르는 청이 '호루마사[ホルマサ, 타이완을 의미함]'를 타국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아시아 중 일본이 차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위해 미흡하나마 돕겠다고 제안했다. 이리하여 타이완 문제에 몰두하는 소에지마를 도와서 르젠드르는 실제 대책을 입안해 나아갔다.

아마도 11월 2일쯤 正院에 제출된 외무성 의견과 관련된 것이 르젠드르의 '第一覺書'이다.²¹⁾ 각서의 주어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我政府]'이고, 여기에서 르젠드르는 '李氏'로 등장하고 있다. 각서에는 타이완에서 발생했던 미국인 살해사건을 둘러싼 '이씨'와 '우리 정부'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에서 제시된 '우리 정부'의 견해는 소에지마의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각서'의 주안점은 '全權大臣'이 '중국 정부'와 교섭할 때의 교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중국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일본이 직접 타이완에 가서 '牧丹人'을 징벌하고 이들을 '開化'로 이끄는 것에 '이치[理]', 즉 정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정부'에게 요구해야만 하는지를 '민국공법'에 입각하여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리가 전개되고 있다.

● 大洋 가운데 '외로운 섬 하나'가 있고, 여기에 '야만'이 살고 있는데, 이것을 '문명인'이 발견한 경우에는 스스로 '주인[主宰]'이 되어 '야만인'을 '개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이 '蕃民'이 '개화'를 싫어하고 '교화'에 불복하며 다른 '국민의 해'가 된다면, 이들을 쫓아내고 '개화의 民'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은 영국이 오스

19) 外務省 編, 1955, 위의 책, 8~13쪽.

20) 外務省 編, 1955, 위의 책, 13~15쪽.

21) 早稲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1958, 『大隈文書』一, 早稲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17~26쪽.

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를, 미국이 캘리포니아 등에서 했던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이 ‘각서’는 ‘서양인’이 ‘식민’을 하려 하지 않고, 중국 정부도 ‘이 땅’을 가지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나라’가 영유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付記에 따르면, ‘第二覺書’는 11월 15일(10월 15일)에 기고되었고, 대청 교섭이 순조롭지 못했을 경우의 대처법을 적고 있다.²²⁾ 중국 정부가 반드시 타이완을 일본에게 넘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타이완의 양도를 거절할 경우 타이완의 일부를 점령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使節을 베이징으로 파견하기 전에 병사 8,000명을 미야코지마에 주둔시키고,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군함 등이 청의 남부 해안과 타이완 부근을 왕래하고 순시하도록 한다. 위협이 효과가 없어 전쟁이 시작되었을 경우에는 신속히 섬의 서부 해안을 점령한다. 이르기 위해서는 호코지마[澎湖島]로 군함을 파견하여 해군기지를 설치하고 수도 타이완부[台灣府, 타이난[台南]을 의미함]를 비롯한 요지를 공략하여 인민을 지배한다. 타이완을 평정한 후에는 병사를 아모이[廈門]로 진군하여 점령하고 중국 정부를 압박하여 화해하고 전쟁 비용을 요구한다. 이처럼 지극히 강경한 군사력 행사책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어서 작성되었다고 생각되는 ‘第三覺書’에는 타이완 남부를 점거한 후 어떻게 통치를 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²³⁾ 병영을 설치하는 방법, ‘生番’에 대한 교육방법, 거주지역에 따른 ‘생번’ 대응과 회유책까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외무성과 소에지마의 강경책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는 강한 비판이 있었다. 大藏大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는 大藏少輔(三等出仕) 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가 11월 26일(10월 26일)에 기초한 의견서를 산조 사네토 미[三條實美]에게 제출했다. 여기에서 이노우에는 ‘문죄의 의무’를 명분삼아 ‘略地の 계획’을 획책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월 9일(11월 9일) 정부는 각의를 열어서 청으로의 사절 파견과 교섭시의

22)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1958, 위의 책, 26~31쪽.

23)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1958, 위의 책, 31~33쪽.

원칙을 내정했다. 그리고 12월 19일(11월 19일), 소에지마에게 청국 파견의 칙명이 내려졌다. 청일수호조규의 비준교환과 청 황제의 결혼 및 親政 개시에 대한 축하 전달이 공식적인 파견 이유였다. 파견의 진짜 목적은 1873년 1월 6일, 산조가 서구 순회 중인 이와쿠라[岩倉]에게 보낸 서간에서 밝히고 있듯이, '류큐 인민'의 '暴殺'에 관한 '담판'이었으며, 이는 '감추고 드러내지 않도록' 되어 있었다.²⁴⁾ 1873년 1월 12일자로 이와쿠라에게 보낸 오히라 시게미[大原重實]의 서간도 '표면'적인 이유와 별도로 '류큐인 살해사건'을 담판짓는 것이 '숨겨진 뜻'이라고 전하고 있다. 오히라 시게미는 소에지마의 구상을 다음과 같이 이와쿠라에게 전했다.²⁵⁾

외무청은 이것을 일본이 '아시아에 위세를 떨치는 기회'로 삼으려 한다. 왜냐하면 타이완은 '아시아의 목젖'이라 할 수 있는 곳이자, 토지와 산물도 풍요롭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도 이 섬을 '탈내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만일 타이완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그들'이 얻게 되었을 때의 득실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번에 거사를 일으키려는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일본이 병력으로 타이완을 정벌하는 것을 청이 허용하지 않을 경우이다. 또한 타이완과의 전쟁은 '우리나라 병사의 實地 훈련 중 '일부분'이지만, 청과의 교전은 걱정스럽다. 아직 병사들의 훈련이 충분하지 않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하다. 그러나 외무청은 이런 점들을 모두 염두에 두고 '단호히 결심'하여 1월 하순에는 출발할 각오이다.

요컨대 오히라는 위기감을 가지고 당면한 정세를 이와쿠라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다.

소에지마의 뜻에 따라 르젠드르가 기초했다고 생각되는 '第四覺書'에는 더욱 노골적인 동아시아 구상이 제시되어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²⁶⁾

24) 日本史籍協會 編, 1931, 『岩倉具視關係文書』五, 210~211쪽.

25) 日本史籍協會 編, 1931, 위의 책, 218~219쪽.

26)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 「大隈文書」A4424.

각국이 '威權'을 '東方'으로 뻗칠 경우, 북쪽으로는 조선, 남쪽으로는 호코지마[澎湖島]와 타이완을 점거하게 된다. 따라서 일본은 만일 청 정부가 류큐인 살해사건에 대해 만족스러운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신속히 타이완과 호코지마를 점거해야 한다. 청이 각국과 황제 알현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이다. 베이징으로 사절을 파견하여 류큐인 살해에 대해 교섭을 시작하고, '方略' 또는 '兵力'으로 두 섬을 점령해야 한다. 지리적으로 조선·타이완·호코지마가 '일본 제국의 內地'인 것은 분명하다. 일본이 한반도를 영유할 수 있다면, 황해까지 세력을 펼칠 수 있게 되어 동해를 우리 것으로 만들고 러시아 등의 나라가 한반도를 점령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다. 조선은 무역만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으로도 '필수적인 요충지'이고, '아시아 북방 제1의 요지'이다. 조선을 영유한다면 '사방으로 위세를 떨치는 것'이 자유로워져서 조선·호코지마·타이완을 합병하고 '노쇠하여 망해가는 중국'을 '끌어안는 자세'를 만들게 된다. 일본의 토지와 조선·류큐·타이완의 모든 섬이 '고리 모양'을 이루고, 이것이 '동방문명의 先陣'이 되어 '중국 제국'을 포위하고, 중국인이 개화된 일본의 영향을 받는다면 중국 전체는 '문명지역'이 된다. 이리하여 중국이 변혁된다면 두 帝國을 합병하여 '황제 한 명의 통치로 귀속되는 것도 상상할 수 있으며, 도쿄는 '신 제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장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과대망상적인 소에지마의 아시아 팽창구상에 대해 태정관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질문을 했다.²⁷⁾ ① 청 정부가 타이완의 '생민(生民)'은 자국의 일부이고, 이곳은 중국의 正權이 미치는 곳이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② 청 정부가 타이완의 '생변'에는 정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③ 청 정부가 '생변'을 처리하겠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④ 청 정부가 '류큐민'을 처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외무성 측의 회답은 르젠드르가 기초한 '第五覺書'이다.²⁸⁾ ①의

27) 舊陸海軍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R34, 「台灣事件輯錄一」; 張虎, 2001, 앞의 논문 참조.

28) 舊陸海軍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R34, 「台灣事件輯錄一」; 張虎, 2001, 위의 논문

경우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타이완 생변'의 토지는 '현재 주인이 없는 땅'과 같다. '야만인'이 살고 있는 곳에 '문명국 사람'이 가서 그들을 가르쳐 '문명인'으로 만드는 것은 '만국공법'이 허가하는 바이다. ②의 경우, 일본이 '蕃地'를 점령하는 것은 서양인이 이 땅을 점령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이 땅을 점령한다면 정치상의 득실에서 중국과 일본의 차이는 없다. 경제적으로는 중국만 이익을 얻을 것이다. 중국이 지배하고 있는 북서부 항구에서 무역이 활발해질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호코지마 등에 선박을 정박할 수 있는 항구의 제공을 요청하고 '생변' 토벌에 필요한 군사비와 植民費 등의 지拂을 요청한다. ③의 경우, 지금까지의 경험상 청 정부의 발언은 신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청 정부를 설득한다. ④의 경우, 서양 각국 公使의 동의를 얻어 중국 정부에게 요청한다. '생변'에 대한 일본의 처리는 인디언에 대한 미국의 처리,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에 대한 영국의 처리와 동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의 '제5각서'와는 별도로 작성된 또 다른 '제5각서'²⁹⁾에는 청으로 사절을 파견할 때의 대책을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경우는 '매우 미심쩍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오만하게 국권이 미치는 바가 의심스럽다는 것'을 일깨우며, 중국에서 간행된 서적과 원주민 首長과의 약속 서면(르젠드르가 주고받은 것)으로 이것을 부정한다. '高山'에 사는 '인민'은 '독립된 생변'이기 때문에 미국이 했던 바와 같이 직접 '생민'과 교섭해도 문제는 없다.

두 번째 경우는 미국의 선례에 따라 즉시 '생변'과 직접 교섭한다. '생변'의 거주지인 타이완 동쪽 해안에는 좋은 항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지배하는 서북부에 일본이 상륙하여 짐을 풀 만한 곳을 제공하도록 요청한다. '생변'의 땅으로 일본인 이민을 계획한다.

르젠드르라는 브레인을 얻은 소에지마의 외교노선은 강경했다. 2월 17일

참조.

29) 「大隈文書」A4425, 早稲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1958, 앞의 책, 34~40쪽.

소에지마는 오쿠마에게 “타이완 半島만이라면 舌上만으로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섬 전체라면 岳戈(전쟁을 의미함-오키나이)에 이르지도 모른다. 하지만 반도를 얻는다면 4~5년 정도에 섬 전체도 설상으로 얻을 수 있다. 이번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된다”고 서간을 보냈다.³⁰⁾ 여기에서 ‘반도’란 원주민 거주지역, ‘설상’이란 외교 교섭을 의미한다. 외교 교섭으로 원주민 거주지역의 영유권을 얻을 수 있고, ‘섬 전체’에 대해서는 청과의 전쟁도 각오해야 하지만, ‘반도’를 얻는다면 ‘섬 전체’를 외교 교섭으로 얻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1873년 2월 27일, 소에지마는 다시 특명전권대사에 임명되었다. 外務大丞 야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와 르젠드르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으며, 야나기와라는 28일에 먼저 출발했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내부에서는 소에지마의 파견에 대한 강한 반대가 있었다. 다음은 오쿠마 시게노부에게 보낸 이노우에 가오루의 3월 1일자 서간의 내용이다.³¹⁾

‘호루마사[ホルマサ, 타이완을 의미함] 1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에서 시시각각 논의가 발생하여 지방을 단속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의혹도 많은 가운데 ‘외국의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가마저 잘못된 ‘일대 중대사’이기 때문에, 분발하여 충분히 막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 발생할 것이다. 소에지마의 사절이 일을 그르치면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소에지마를 그대로 묶어두고 다른 인물을 파견하는 편이 좋다.

이렇듯 이노우에는 다시금 소에지마를 사절로 파견하는 것에 반대하고, 그 대신 무쓰 무네미쓰[陸奥宗光]를 추천했다.

그러나 결국 3월 9일 소에지마에게 다음과 같은 위임사항이 전달되었다.
① 청 정부가 타이완 全島를 소속지로 삼고, 답판을 받아들여 그 처리를 할 경우는 충분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한다. 즉 죄인 처벌, 피해자 유족에게 보상

30) 日本史籍協會 編, 1933, 『大隈重信關係文書』 二, 33쪽.

31)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위의 책, 37쪽.

금 지급, 단속을 통한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② 청 정부의 正權이 미치지 않는, 즉 소속지가 아니라며 담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천황에게 처리를 맡긴다. ③ 청 정부가 타이완 전도를 屬地로 삼고 이런저런 구실을 둘러대며 담판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청 정부가 정권을 상실했다고 주장하고 '생변인의 무도하고 포악한 죄'를 물은 후, 이에 불복한다면 그다음 처리는 천황의 뜻에 맡긴다. 이러한 지시를 받은 소에지마 일행은 3월 12일 군함을 타고 청으로 출발했다. 수행원은 히라이 유키마사[平井希昌] 서기관, 데이 에이네이[鄭永寧] 서기관, 외무성 고문 르젠드르 등이었다.

4월 20일 텐진[天津]에 도착한 소에지마 등은 30일에 조약의 비준서를 교환했다. 그 후 소에지마 등은 5월 7일 베이징에 도착하여 총리아문과 황제의 알현문제를 교섭했다. 그러나 알현문제를 둘러싼 교섭은 난항을 겪었고, 6월 20일 소에지마는 황제와의 알현을 사퇴하고 귀국한다고 통보했다.

이러는 동안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6월 9일 소에지마를 방문한 영국 공사 웨이드(Thomas F. Wade)가 만일 청 정부가 타이완은 자국의 '屬下'이고, 청의 '정권'이 미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³²⁾ 이에 대해 소에지마는 청이 그런 '권한'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증거가 있다. 즉 청은 '생변의 땅'에 관리를 파견한 적이 없고 청의 지도에는 '생변의 지명'이 기재된 것이 없다는 것과 함께, 미국인이 '번인'과 싸웠을 때 청 측의 대응을 예로 들었다.

6월 21일 소에지마는 副使 야나기와라 사키미쓰와 외무소속 데이 에이네이를 청 측 總嚮로 보내서 '타이완 생변사건'을 교섭하도록 했다.³³⁾ 야나기와라는 폭살을 한 '생변'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청 측에 추궁하였다. 이에 청 측은 타이완에는 '王化'에 복종한 '熟蕃'과 아직 복종하지 않은 '생변'이 있으며, '생변'은 '化外'이기 때문에 통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생변'의 횡포를 제어하지 않는 것은 청의 '政教'가 미치지 않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야나기와라는 '정교가 미치지 않은 곳'이자 '化外孤立의 蕃夷'이기 때문에 일본

32) 外務省 編, 1955, 앞의 책, 171쪽.

33) 外務省 編, 1955, 위의 책, 177~179쪽.

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날 교섭 당시 야나기와라는 이후에도 ‘생변’이 타국의 표류민을 살해하는 것이 계속되고, 이 때문에 다른 나라가 타이완을 점거하게 된다면 베트남의 프랑스령, 광둥[廣東]의 마카오와 홍콩, 러시아가 헤이룽강[黑龍江] 일대에서 일본의 ‘北蝦(훗카이도를 의미함-옴긴이)’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일본은 ‘남쪽 바다’에 ‘하나의 우환’을 갖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5월 25일 총리아문에서 교섭할 때 소에지마가 말했던 인식과 공통된 것이다.³⁴⁾

한편 6월 29일 소에지마는 각국 공사들보다 먼저 황제 알현을 실현시키고, 7월 3일 베이징을 출발했다. 텐진을 경유하여 도착한 것은 25일이었다. 타이완의 ‘생변’은 ‘화외의 민’이라는 언질을 ‘최대의 성과’로 올리고, 소에지마는 그 임무를 마친 것이다.

8월에 르젠드르는 소에지마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타이완 출병과 이민계획을 제기했다.³⁵⁾ 서양 각국의 사례에 따라 육해군을 앞세워 이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죄수를 이민시켜 원주민과 교역시킨다면, 이들이 ‘土人’의 ‘선생’이 되어 빠르게 ‘개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그리고 ‘생변의 땅’은 무척 비옥하기 때문에 ‘식민’하여 ‘일본제국’이 ‘병합’한다면 유익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영국은 이러한 방법으로 오스트레일리아를 ‘식민’하였고, 그 결과 현재 오스트레일리아는 세계 ‘최대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했다.

소에지마와 야나기와라 등은 ‘北蝦地’가 대외적 분쟁거리의 초점이라고 보았는데, 마침 6월 하순, 같은 해 4월에 가라후토[樺太, 사할린을 의미함-옴긴이] 크슌코탄(Kushunkotan)에서 발생한 러시아 병사의 폭행사건이 현지로부터 태정관으로 보고되었다.³⁶⁾ 소에지마 등이 귀국하기 이전인 7월 12일, 가바야마 스케노리[樺山資紀]는 사이고 다카모리와 쓰구미치 형제에게 보낸 서간에서, 러시아가 청의 변경영토를 ‘잠식’하고 있으므로 조심해야 할 것은 ‘러시

34) 外務省 編, 1955, 위의 책, 149쪽.

35) 舊陸海軍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 R34, 「台灣事件輯錄二」.

36) 毛利敏彦, 1996, 앞의 책, 97쪽.

야이고 타이완 등은 이제 '枝葉'적이라며 가라후토 대책이야말로 시급한 과제라고 적었다.³⁷⁾ 타이완 문제보다 가라후토 대책이야말로 긴급한 과제가 된 것이다.

1873년 10월 정변으로 사이고 다카모리가 사퇴하고, 25일에 소에지마도에 토 신페이[江藤新平]·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고토 쇼지로[後藤象二郎]와 함께 참의를 사퇴했다. 28일 외무경에는 주영 공사였던 데라시마 무네노리가 임명되었다. 27일 오쿠보는 이와쿠라에게 데라시마의 외무경 취임을 알리고 '가라후토 사건 평의'가 중요하다는 서간을 보냈다.³⁸⁾ 크순코탄 사건의 처리와 러일의 국경확정교섭이 당면한 중심적 과제였던 것이다.

III. 오쿠보 정권과 '번지처분' 방침

그렇다면 타이완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 12월 20일 오쿠보는 귀국한 청의 시찰인을 자택으로 불러서 자세히 듣고 이것저것 물어봤다는 서간을 이와쿠라에게 보냈다.³⁹⁾ 이에 대해 같은 날 이와쿠라는 그들을 불러서 현장의 '情實'을 듣고 정부에 채용하면 어떨지 제안하고 있다.⁴⁰⁾ 또한 같은 날 다른 서간에는 귀국한 '청국 시찰원'을 만났다면, 후쿠시마 레이스케[福島禮助]라는 히젠인[肥前人]이 타이완의 사정을 알고 있는 자이므로 만나보는 것이 어떠냐고 전했다.⁴¹⁾

이와쿠라가 언급하고 있는 후쿠시마 레이스케는 사가현[佐賀縣] 사족 후쿠

37) 毛利敏彦, 1996, 위의 책, 88쪽.

38) 日本史籍協會 編, 1928, 『大久保利通文書』 五, 118쪽.

39) 日本史籍協會 編, 1928, 위의 책, 227쪽.

40) 日本史籍協會 編, 1928, 위의 책, 232~233쪽.

41) 日本史籍協會 編, 1931, 앞의 책, 403쪽.

시마 구세이[福島九成]이다. 그는 1871년에 정부 파견 유학생으로 다른 일행과 함께 청으로 건너가, 타이완과 푸젠성[福建省] 지방에서 지리와 軍備 등을 탐색하고 연구했던 인물이다. 11월에 그는 외무성에게 장문의 ‘청과 타이완에 대한 건백서’를 제출했다.⁴²⁾ 외무성은 12월 5일 이 건백서를 이와쿠라에게 보냈다. 건백서에서 후쿠시마는 ‘討蕃’의 감행을 주장했다. 후쿠시마는 타이완의 원주민을 ‘남쪽 일부에 불과한’ 생변, ‘동쪽의 대부분’을 차지한 土蕃, 그리고 熟蕃 세 종류로 나누고, 이 중 생변과 토변에 대한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쿠시마에게 중요한 것은 오히려 토변 대책이었다. 생변에 대한 군사행동은 ‘兇徒의 죄를 묻고 위엄을 세우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토변에 대한 撫育은 ‘섬 전체를 점하여 훗날의 富를 이루는 바’이기 때문이다. ‘討蕃’의 ‘좋은 기회’를 이용하여 군사행동을 일으켜 생변을 ‘撫恤’하고 토변을 ‘다스리’도록 한다. 그리고 이후 ‘兩蕃을 동시에 처분’하여 점차 교화를 진행시키면, ‘절호의 기회’가 생겨서 마침내 ‘청의 땅’을 병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생변 토변에는 군함 1척, 육군 1대대, 수송선 1척으로 충분하다. 土蕃은 ‘巨商’에게 명하여 처분하면 된다. 이렇듯 후쿠시마는 군사행동보다 경제건설을 중시했다.⁴³⁾

그러나 당면한 대외문제의 초점은 앞서 말했듯이 가라후토 문제였다. 타이완 문제가 다시 부상되는 경위에 대해 가쓰다 마사하루는 1873년 말부터 1874년 1월 초에 걸쳐, 司法省 警保寮 사카모토 스미히로[坂元純熙]와 고쿠분 우료[國分友諒] 등이 사이고 다카모리의 복직과 征韓 단행을 산조에게 강요하자, 산조가 정한을 거부하고 그 대신 타이완 출병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⁴⁴⁾ 또 고바야시 다카오[小林隆夫]는 1월 중순까지 원정 대상은 타이완이 아니라 조선이었다고 주장한다.⁴⁵⁾

1874년 1월 17일, 산조는 오쿠마에게 내일 ‘타이완 사건’을 評議하므로, 전

42) 内田修道·牧原憲夫 編, 1990, 『明治建白書集成』二, 筑摩書房, 801~809쪽.

43) 石井孝, 1982, 앞의 책, 38쪽.

44) 勝田政治, 2001, 앞의 논문.

45) 小林隆夫, 1994, 「台灣事件と琉球處分(Ⅰ)」, 『政治經濟史學』 340.

외무경의 '담판 경위'를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는 서간을 보냈다.⁴⁶⁾ 1월 18일 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각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오후 보는 소에지마를 방문하여 구로다[黒田]·사카모토[坂元]와 관련된 '가라후토 재판처리'에 대해 상담했다.⁴⁷⁾ 또한 1월 17일과 26일에는 소에지마로부터 '중국 담판의 순서'를 들었다.⁴⁸⁾

1월 26일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三條實美]는 오키보 도시미치와 오키마 시게노부에게 타이완 문제와 조선 문제에 대한 '내부조사'를 명했다.⁴⁹⁾ 명령을 받은 오키마는 소에지마 사절단의 수행원이었던 데이 에이네이와 야나기와라 사키미쓰에게 타이완 문제 처리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1월 29일 데이와 야나기와라는 함께 '타이완처분요략[台灣處分要略]'을 제출했다.⁵⁰⁾ 이것은 제1조에서 "류큐 인민이 살해당한 것을 보복하고 그 땅을 점거하고 영유해야 한다"는, 타이완에 대한 '보복'만이 아니라 영유해야 한다는 방침을 주장했다. 게다가 제5조에서는 '和好'를 주제로 삼되 '실력'을 앞세우고 '辨說'을 뒤로 하면 "류큐를 평정하고 타이완을 취한다." 그리고 청과 '화'의를 유지하는 '長策'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지만 오히려 쉽다고 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타이완 영유책을 협의하고 실행하기 위해서 '타이완 사무국' 설립을 제안했다.

1월 30일 오키보는 오키마·야나기와라·데이가 동석한 가운데 르젠드르를 불러서 '타이완 사정'을 청취했다.⁵¹⁾ 2월 1일에는 오키보의 집에 오키마·야나기와라·데이가 모여서 타이완 문제를 토의했다.⁵²⁾ 다음 날 2일 오키보는

46) 早稻田大學大學史資料センター 編, 2010, 『大隈重信關係文書』 六, みすず書房, 111쪽.

47) 日本史籍協會 編, 1927, 『大久保利通日記』 二, 231쪽.

48)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위의 책, 234쪽.

49)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위의 책, 234쪽.

50) 舊陸海軍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R34, 「台灣事件輯録二」.

51)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앞의 책, 235쪽.

52)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위의 책, 235쪽.

외무성을 방문하여 르젠드르와 상담하고,⁵³⁾ 6일에는 이와쿠라의 집에 참의 일동이 모여 ‘타이완 1건’을 상담하고 대략적인 결정을 보았다.⁵⁴⁾

이날 각의에 제출되어 결정된 것이 오쿠마와 오쿠보가 함께 작성한 ‘타이완 번지처분요략’이다.⁵⁵⁾ 이 ‘요략’은 ① ‘토번’에 대한 군사행동, ② 이 문제를 둘러싼 청과의 대응방법, ③ 군사행동을 계기로 타이완 ‘숙번의 땅’에 대한 조사 등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①에 대해서 제1조는 ‘타이완 토번의 부락’은 청 정부의 政權이 미치지 않는 지역이고, 이것은 지금까지 청이 간행해 온 서적을 보아도 분명하다. 특히 작년에 前 참의 소에지마를 청으로 파견했을 때, 청 측 관리의 대답을 보아도 확실하다. 따라서 ‘주인 없는 땅’으로 볼 만한 道理가 갖추어져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의 ‘蕃屬’인 류큐의 인민이 살해된 것에 대한 보복은 ‘일본제국 정부의 ‘의무’이고, ‘討蕃 公理’의 기본이 여기에 있다. 따라서 ‘처분’에 대해서는 ‘착실한 討蕃·撫民의 역할’ 완수를 ‘주된 것’으로 삼고, 이에 관한 논의가 발생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것’으로 삼아야 한다.

이하 제2조부터 제4조에서는 청과의 교섭이 발생한 경우의 대응책(②)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조와 제3조에서는 류큐의 일본 소속을 주장하고 청 측의 兩屬說에는 응하지 말 것, 제4조는 청 측이 타이완 출병에 항의할 경우 ‘蕃地’에는 청의 政權이 미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거부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제5조부터 제7조는 ①과 ②의 관계에 대한 대응책이다. 제5조에서는 ‘토번의 땅’이 ‘주인 없는 땅’이긴 하지만, ‘청의 版圖(영토를 의미함-옴긴이)’와 섞인 지역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푸젠성에 속하는 타이완 항구(타이난[台南] 서쪽의 안평항[安平港])에 領事를 설치하고 후쿠시마 구세이를 영사로 임명하여 외교사무를 보도록 제안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영

53)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위의 책, 236쪽.

54)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위의 책, 237쪽.

55)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앞의 책, 247쪽.

사는 군사행동에는 관여하지 않고 군사행동에 해당하는 것에는 응접(외교 교섭)에 관여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양자의 '分界'를 명확히 할 것을 제기하면서, 이것은 '和好'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제7조에서는 군사행동을 할 때 '큰 항구'인 푸젠성의 福州港이 아니라 타이완항과 淡水港을 '要地'로 삼는 것은 중국 측의 嫌忌를 피하는 것, 즉 쓸데없이 자극하지 않으려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제8조와 제9조에서는 ③에 대해 제한한다. 즉, 후쿠시마·고다마[尻玉]·나리도미[成富] 등 6인을 먼저 파견하여 '숙번지'로 들어가 토지의 형태를 알아보고 '토인'을 '회유하여 안심'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장차 '생분을 처분'할 때 그 결과를 활용하려는 것이다.

가쓰다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타이완처분요략'을 원안으로 하여 가감·수정한 것으로, 가장 많이 수정된 부분은 제1조의 '據有해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것이었다. 또한 제5조의 '타이완을 취한다'는 영유론, 제6조의 '타이완 사무국' 설립도 尙文이 삭제되었다. 오쿠보와 오쿠마의 案은 출병 목적을 '土蕃撫民'으로 한정함으로써, 청과의 분규가 예상되는 타이완 식민지화 방침을 명확히 부정한 것이다. 대신에 제8조와 제9조에는 새로운 2항이 추가되었는데, 이것은 출병하기 전에 6명을 타이완으로 파견하여 '토지 형세'를 '정탐'하고 상륙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제4조에서는 청이 항의했을 경우, '호의를 가지고 말'하여 '조화를 잃지' 않도록 하는 등 철저히 평화적으로 교섭할 것을 제시했다. 청과의 분규에 대비하여 타이완에 영사를 두지만 '호의를 보호'하고 '호의를 유지'한다는 평화적 방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던 것이다.⁵⁶⁾

● 2월 6일 이와쿠라는 오쿠보에게 타이완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다음은 '문죄'를 노린 人選이 급선무라고 쓰고, 가고시마현 사람 중 누가 적임자인지 검토를 요청했다. 그리고 '야만인'을 '撫育'하여 일본의 '屬地'로 삼을지의 여부는 재차 심사·평가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군사행동을 부정하고 대국적인 견지를 가져야 한다고 요청했다.⁵⁷⁾

56) 勝田政治, 2001, 앞의 논문.

57) 立教大學日本史研究室 編, 1965, 『大久保利通關係文書』一, 吉川弘文館, 328쪽.

2월에 후쿠시마 구세이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오쿠마에게 제출했던 것으로 여겨짐).⁵⁸⁾ 아마도 각의가 결정된 이후일 것이다. 타이완 출병을 전제로 하면서, 이에 앞서 해 둘 것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오쿠보와 오쿠마의 의견서도, 제8조에서 후쿠시마 외 6명을 우선 타이완에 파견하여 토지와 형세를 정탐하고 ‘토인’을 회유하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각의결정 직후, 우대신 이와쿠라 도모미도 “일찍이 후쿠시마가 말했던 대로 반드시 쉽게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타이완을 일본령으로 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말했다. 후쿠시마는 4월에 타이완번지사무도독참모[台灣番地事務都督參謀]에 임명되고, 푸저우[福州] 사무 담당 영사도 겸임하여 아모이에 머물게 된다.

2월 25일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에게 ‘生蕃處分取調’가 위임되었다. 2월 28일 이와쿠라는 오쿠보에게 사가[佐賀]의 난이 미친 각지의 상황을 보고함과 동시에, ‘러시아 사절, 조선 탐색, 타이완 출장 등’에 대해서는 평의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타이완의 義’에 대해서는 ‘출병’, 즉 군사행동이기에 때문에 ‘현재의 상태’를 고려하여 조금 보류하는 편이 좋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⁵⁹⁾ 그러나 사가의 난은 2월 28일 반란 측의 괴멸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새로이 타이완 대책을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3월 13일 르젠드르는 오쿠마에게 각서를 제출하여 타이완 원정방법에 관한 전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⁶⁰⁾

타이완의 ‘토인’ 중 ‘복종’하는 자는 회유하고 저항하는 자는 탄압하여, 최종적으로는 모든 ‘토인’을 개화시킨다. 그러나 ‘중국인’이나 다른 외국인이 ‘질투’하여 방해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다. 원정의 ‘진짜 목적’은 ‘토인’이 관할하는 지역을 일본으로 병합하는 것이지만, 표면상으로는 단순히 죄를 묻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해야 한다. 정복 이후에는 타이완의 平靜을 유지하기 위해 개화국이 접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여,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58) 牧原憲夫 編, 1986, 『明治建白書集成』三, 筑摩書房, 163~164쪽.

59) 日本史籍協會 編, 1931, 앞의 책, 514쪽.

60)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1958, 앞의 책, 41~47쪽.

‘蕃地’를 일본에 병합하는 것을公示해야 한다.

르젠드르는 이러한 계획에 기초하여 3월 말까지 원정군을 출발시키고 11월 까지 정복을 완료하여 1875년 1월 1일까지는 ‘번지’를 병합하는 타이완 정복계획을 제시했다.

3월 23일 산조는 오쿠마에게 사이고가 희망하고 있는 ‘타이완 관련’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지만, 동일인물이 다시 신청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심사숙고한 후 결정하고 싶다고 전했다.⁶¹⁾ 28일에는 ‘타이완 처분’에 관한 서류 중 ‘殖民略地之事’는 지금까지의 평의에도 결의에도 없는 내용이라고 썼다. ‘죄를 묻는다’는 점에서 모두가 합의했기 때문에 ‘略地’라고 한다면 다시 평의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⁶²⁾

3월 29일 이와쿠라는 앞으로 무척 주의해야 할 것은 ‘타이완 1건’의 親勅(천황의 명령 - 율건이)과 위임장이고, 이는 ‘일대 중대사’라는 내용의 서간을 오쿠마에게 보냈다.⁶³⁾ 31일에는 산조가 오쿠마에게 ‘타이완 사건에 대한 천황의 위임 조항’이 급하므로, 서둘러 내일이라도 陸軍大輔가 제출하도록 지시를 내렸으면 좋겠다는 서간을 보냈다.⁶⁴⁾ 한편 같은 날 르젠드르는 쓰구미치에게 구체적으로 출병=점령계획서를 제출했다.

이러한 가운데 3월에 오쿠마·데라시마·사이고·야나기와라는 오쿠마의 집에서 협의하고, ‘번지처분 목적 13조’를 결정했다.⁶⁵⁾

4월 2일 열린 각의에서 타이완 출병이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4월 4일 육군 중장 사이고 쓰구미치가 타이완번지사무도독[台灣番地事務都督]에 임명되어 병사 3,600명을 이끌고 타이완으로 출병하도록 명받았다. 사이고에 대한

61) 早稲田大學大學史資料センター 編, 2010, 앞의 책, 111쪽.

62) 早稲田大學大學史資料センター 編, 2010, 위의 책, 112쪽.

63) 早稲田大學大學史資料センター 編, 2005, 『大隈重信關係文書』二, みすず書房, 40쪽.

64) 早稲田大學大學史資料センター 編, 2010, 앞의 책, 113쪽.

65)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앞의 책, 285~287쪽.

위임장과 特諭狀이 발행되었다.⁶⁶⁾ 특유장의 第二款은 “鎮定 이후 점차 토인을 유도하여 개화시키고, 마침내 토인과 일본 정부 사이에 유익한 사업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第九款에서는 “이곳에 별도로 사무국을 설치하여 모든 명령과 포고 등을 발령한다”는, 영유론의 구체적인 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第七款에서는 르젠드르가 사이고를 ‘輔翼’하도록 되어 있다.

4월 4일 타이완번지사무국[台灣番地事務局]이 설치되고, 5일에는 오쿠마 시게노부가 장관에 임명되었다. 같은 날 오쿠보는 산조에게 보낸 편지에서, 지금이 ‘타이완을 征討’하기 좋은 시기라는 견해를 전했다.⁶⁷⁾

4월 9일 사이고는 나가사키[長崎]로 출발하고, 4월 15일 오쿠보는 사가[佐賀]에서 사이고와 회담을 가졌다.

IV. 영미의 개입과 파병 강행

4월에 들어서 영국 공사 파크스는 르젠드르 등의 정보와 獻策으로 작성된 타이완 원정계획을 알게 되자, 異論을 제기하기 시작했다.⁶⁸⁾ 4월 2일 데라시마 외무경과의 회견을 통해 이 계획의 개요를 알게 된 파크스는 중국과의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고, 각 개항장에 주재하는 영국 영사들에게 일본 측의 輸送船 고용 움직임에 감시하도록 명하고, 또한 중국 정부의 양해 없이 영국 선박이 일본군의 병사와 군수물자를 운송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경고를 각 영사에게 보냈다. 일본의 타이완 원정은 중국을 자극하여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66) 岩倉公舊蹟保存會, 1906, 『岩倉公實記』 下, 皇后宮職, 131~133쪽.

67) 日本史籍協會 編, 1928, 앞의 책, 456쪽.

68) 石井孝, 1982, 앞의 책, 48~53쪽.

생각한 것이다.

4월 10일 데라시마와 회담을 한 후, 파크스는 11일에 주청 영국 공사 웨이드에게 일본군의 원정계획에 관한 정보를 보내고 중국 측의 의향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13일 데라시마에게 일본의 출병을 중국이 적대적이라고 본다면 이 원정에 참가한 영국인은 모두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산조가 오쿠마에게 보낸 4월 14일자 서간에는, '타이완 처분'에 대해 각국 공사들로부터 외무성에 문의가 있다고 적혀 있다.⁶⁹⁾ 또한 이와쿠라에게 보낸 15일자 서간에는 '타이완 殖民 건'이 매우 어려울 것 같으며, 불안과 걱정을 다음과 같이 전달했다.

위임장을 고친다 해도 '實地의 움직임'이 이미 '식민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도둑의 처분'은 분명 '식민의 형태'로 될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된다면 각국과의 관계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 귀찮거나 지극히 곤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⁷⁰⁾

이렇듯 산조는 외국세력의 동향을 상정하면서 심각하게 사태를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 대한 강경책을 시사해 왔던 미국 공사 드롱을 대신하여 전년 9월에 빙엄이 새로 취임했다. 마침 『재팬 데일리 헤럴드(Japan Daily Herald)』 4월 17일자 논설에는 일본의 원정계획이 보도되었다. 이에 빙엄은 18일 외무소보 우에노 가케노리[上野景範]에게 미국 정부는 타이완이 중국 영토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일본의 타이완 원정에 미국의 선박과 시민이 참가하는 것은 국제법 위반이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했다. 더욱이 빙엄은 데라시마 외무경과도 회견하여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이고, 중국이 일본의 파병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일본의 파병은 전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선박과 시민을 타이완 원정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통보했다.

69) 早稲田大學大學史資料センター 編, 2010, 앞의 책, 113쪽.

70) 日本史籍協會 編, 1931, 『岩倉具視關係文書』 六, 41쪽.

영국에 이어서 미국으로부터도 통보와 항의를 받은 일본 측은 4월 19일 대신과 참의가 모여 협의한 결과, 중국 정부의 의향을 확인할 때까지 원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나가사키에 있는 오쿠마에게 사이고 도독의 출발을 연기하도록 명했다. 산조는 오쿠마에게, 타이완 출병은 전적으로 르젠드르에게 의뢰하고 특히 외국관계에 대해서는 그에게 위임해 왔지만, 르젠드르 등의 타이완 도항이 금지된 이상 ‘이번 거사’는 성공할 수 없다. 또한 각국은 타이완을 중국의 영토로 간주하고 있고 중국의 동의 없이 출병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에, ‘거사’의 성공이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청 정부와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원정계획을 중지시킬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했다.

테라시마는 이 결정에 따라, 빙엄에게 중국 정부의 동의와 승인 없이 원정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조치를 취했다고 전하고, 파크스에게도 사정을 설명했다.

4월 25일 산조의 편지가 나가사키의 오쿠마에게 전달되었다. 오쿠마가 이를 사이고에게 전달했지만, 사이고는 이를 거부하고 설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때 사이고는 만일 원정을 연기한다면 사족들의 불만이 터져서 그禍가 사가의 난에 비할 바가 아닐 것이라며, 굳이 말린다면 정부의 지시를 어기는 ‘역적[賊徒]’이 되어 출병을 단행할 결심이었다고 한다.⁷¹⁾

한편 4월 24일 사가에서 돌아온 오쿠보는 27일에 나가사키 현지로 가서 이 ‘국난(國難)’을 처리하고 싶다고 말했다.⁷²⁾ 오쿠보는 5월 3일 나가사키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미 4월 27일 사이고의 뜻을 받아들인 아모이 영사 후쿠시마 구세이는 200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나가사키를 출발했다. 여기에는 미국인 고용자 카셀과 왓슨이 동행했다. 오쿠보가 도착하기 전인 5월 2일에는 다니 다테 키[谷干城]와 아카마쓰 노리요시[赤松則良]가 이끄는 천여 명의 병사를 태운 군함도 나가사키를 떠났다.

나가사키에 도착한 오쿠보는 5월 4일 오쿠마를 방문하여 ‘생변처분’에 대해

71) 宮内廳, 1969, 『明治天皇紀』三, 吉川弘文館, 245쪽.

72) 宮内廳, 1969, 위의 책, 263쪽.

협의하고, 서둘러 사이고를 출장보내고 야나기와라를 급히 파견하는 등의 수순과, 오쿠보가 르젠드르와 함께 귀경할 것 등을 결정했다.⁷³⁾

5월 4일 오쿠보는 오쿠마·사이고와 협의하고, ① 카셀과 왓슨은 엇갈려 떠났기 때문에, 사이고 도독이 도착할 때까지 그대로 대기하도록 전보를 보낼 것, ② 사이고가 도착한 이후 카셀과 왓슨을 해고하고 급히 돌려보낼 것, ③ 르젠드르는 빨리 돌려보낼 것, ④ '생변처분' 이후 '홍포한 행위'를 그만두고 일본 측의 요구가 존중될 때까지는 방어에 필요한 인원수를 남겨 둘 것, ⑤ '생변처분'에 관해 만일 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고용된 영국인 등을 파면하고 그 선박을 돌려줄 것 등 5항목을 결정하고 함께 서명했다.⁷⁴⁾

이렇게 사이고에게 내려진 특유장에 적혀 있던 식민지 정책은 사라지고, 출병 이후의 조치는 홍포한 행위를 그만두고 일본 측의 요구가 존중될 때까지 방어에 필요한 인원수를 남겨두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오쿠보·오쿠마·사이고 3명의 행동에 대해서도 ① 야나기와라 공사를 급히 보내도록 도쿄에 전보를 부칠 것, ② 사이고는 조속히 타이완으로 출발할 것, ③ 오쿠마는 야나기와라 공사의 나가사키 도착을 기다려 취지를 설명하고 협의할 것, ④ 오쿠보는 5월 5일 출항하여 실지의 현황에 따라 대응한 상황을 보고할 것, ⑤ 이상의 결정을 실행하기 어렵게 되었을 때에는 오쿠보 이하가 그 책임을 질 것 등 다섯 가지를 합의하고 함께 서명했다.⁷⁵⁾

5월 15일 나가사키에서 귀경한 오쿠보는 즉시 正院에 복명서를 제출하고, 19일에 야나기와라 공사의 출발을 결정했다. 산조에게 보낸 복명서에서 오쿠보는 더 이상 청은 물론이고 외국교제상 무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생변처분'에 착수하여 순서에 따라 목적을 이루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적었다.⁷⁶⁾ 이처럼 '곤란한 중대사'가 발생한 때, 외국과의 교제상 문제가 생겨서 '국가의 대난'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73) 宮内廳, 1969, 위의 책, 266쪽.

74)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앞의 책, 311~312쪽.

75)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위의 책, 312~313쪽.

76) 日本史籍協會 編, 1928, 앞의 책, 503쪽.

한편, 사이고는 5월 17일 타이완으로 출발하여, 22일 타이완 남단부에 상륙한 후 6월 4일 이곳을 군사적으로 제압하였다. 그리고 7일 다니 다테키와 육군소장 가바야마 스케노리를 일본에 파견하여 그 경과를 보고함과 동시에 식민지 정책에 착수할 것을 알렸다.⁷⁷⁾ 즉, ‘처분’ ‘사업’은 거의 끝났으므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지방에 집중하여 영원한 기초를 개척’하려는 것이었다. 다니 등은 6월 23일 도쿄에 도착하여 타이완 현지의 상황을 보고했다.⁷⁸⁾ 사이고는 오쿠마에게 보낼 7일자 서간을 다니에게 맡기고, 25일 오쿠마는 이것을 산조에게 보냈다(나중에 설명함).⁷⁹⁾

또한 야나기와라 공사는 르젠드르와 상담한 이후 5월 19일 청으로 출발하여 28일 상하이에 도착했다. 31일 江南 총독대리 應寶時와 회담을 가졌다. 이때 應은 타이완 출병이 청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철수할 것을 주장했다.

5월 2일 주청 영국 공사 웨이드가 주일 영국 공사 파크스에게 보낸 전보가 도착했다. 청 측이 일본의 타이완 원정에 대해 모른다는 것과 타이완 ‘번지’는 중국에 속한다고 말한 것을 전한 것이다. 그리고 5일, 웨이드는 일본군 병사와 군수품을 실은 영국함이 社寮·타이완·중국 본토의 항구에서 출항하는 것을 금하는 지시를 내렸다. 또 같은 날 웨이드는 데라시마 외무경에게 서신을 보내 타이완 ‘번지’에 관한 청 측의 견해를 전하고, 8일에는 데라시마와의 회담에서 병사를 태운 배가 푸젠으로 출항한 것을 문제삼았다. 5월 17일 미국 공사 빙엄도 청 정부의 견해를 들은 후, 일본의 타이완 침공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했다.

5월 23일, 전날 타이완에 상륙한 사이고 도독에게 청 閩浙 총독 李鶴年の 11일자 문서가 건네졌다.⁸⁰⁾ 이 문서는 우선 ‘만국공법’을 인용하면서 타이완은 중국의 영토이고 ‘생번’은 중국에 ‘예속’되어 중국 ‘율법’의 관할하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총리아문을 무시하고 출병한 것은 ‘만국공법’ 위반

77)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앞의 책, 349~353쪽.

78)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위의 책, 387쪽.

79)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위의 책, 396쪽.

80) 外務省 編, 1955, 앞의 책, 77~79쪽.

이고, 청일수호조규 제1조와 제3조에도 위반된다고 항의하며 사이고에게 철병과 귀국을 요구했다.

한편 6월 4일에는 청의 총리아문이 보낸 조회문서가 외무성에 도착했다.⁸¹⁾ 5월 11일자인 이 문서는 타이완의 토지가 '중국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협의도 하지 않고 출병한 일본 측의 조치를 추궁한 것이었다. 여기에는 분명히 타이완의 '生蕃人 등'에게는 법률이 미치지 않고 군현도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예는 다른 '중국 변경 지방'에도 있다고 적혀 있다.

6월 18일 파크스는 데라시마와 회견을 갖고 청 정부의 항의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⁸²⁾ 파크스는 청 정부로부터 받은 문서에 대해 물었고, 이에 대해 데라시마는 청 정부가 그 땅을 빼앗길까 걱정하고 있는 듯하지만 일본은 그러한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 파크스는 그렇다면 '땅을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면 어째서 출병했는지 데라시마를 압박했다. 데라시마는 '박해'를 가한 '죄'를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함이라고 대답했다. '야만의 땅'에 대해 징벌을 가하여 '굴복'시키고 '改心'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데라시마는 장기간에 걸친 군사 지배는 '불가능'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징벌한 후에는 청 정부와 교섭하여 이후의 단속을 요청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파크스는 납득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과 교전하여 땅을 빼앗아 병사를 두어 지키려는 것 아니었느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데라시마는 물론 '아니'라고 답했지만, 파크스는 타이완을 '힘으로 빼앗'으면 청과 교전하게 되고, 청은 일본 정부에게 '만국공법'에 근거하여 신속히 철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등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청 정부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군을 타국 영토에 보내는 것은 명백히 전쟁이고, 공식적으로 각국 공사에게 알리지 않고 '私的'으로 출병한 것은 '문명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정부는 종종 '만국공법'을 인용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건은 명백히 '만국공법' 위반이다. 타국에 3천의 대군을 보낸다면 필시 전쟁이 발생한다. 귀국

81) 外務省 編, 1955, 위의 책, 72~75쪽.

82) 外務省 編, 1955, 위의 책, 125~127쪽.

이 이러한 거동을 청 정부에게 한다면, 타국이 귀 정부를 향해 똑같은 일을 벌여도 이익을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타국의 군사 3천 명이 훗카이도로 온다면 귀국은 어떠하겠는가?

파크스는 회담 마지막에 일본이 만국공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6월 18일 오쿠마는 부아소나드(Boissonade)에게 르젠드르 의견서의 재조사를 요청했다. 6월 25일, 부아소나드는 오쿠마에게 그 개요를 다음과 같이 회답했다.⁸³⁾

기본적으로 중국은 번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고, 과거에 식민지화하려 했던 사실도 없다. 르젠드르가 번지를 주인 없는 땅이라 한 역사적인 근거는 분명히 맞지만, 실제 문제는 법률론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번지는 중국령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만일 번지를 일본이 점령하려 한다면 중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을 위해 방해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부아소나드의 의견에 대해 이시이[石井]는 타이완의 ‘번지’가 완전히 중국의 영역 바깥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르젠드르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⁸⁴⁾ 한편 6월 26일 르젠드르도 오쿠마의 질문에 답하여 각서를 제출했다.⁸⁵⁾

6월 28일 오쿠마는 25일에 제출된 사이고의 보고를 받고, 이후 취할 구체적인 대응을 산조에게 요청했다.⁸⁶⁾ 사이고는 이후 ‘칙유 제2관’에 따라 ‘토인’을 ‘개화’로 ‘유도’한 후 ‘유익한 사업’을 시작할 것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니를 귀국시킨 것은 이러한 앞으로의 대응책을 지시받기 위해서였기 때문이었다. 오쿠마는 1월에 ‘번지처분조사’를 명을 받았을 때 제출한 ‘要略’에서 ‘撫民을 주된

83)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1958, 앞의 책, 49~69쪽.

84) 石井孝, 1982, 앞의 책, 100쪽.

85)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 「大隈文書」A4429.

86)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앞의 책, 396~399쪽.

것'으로 한다는 의미는 '칙유 제2관'과 완전히 동일한 취지이고, 평정한 후에는 '개화로 유도하여 야만의 惡俗을 변경하고, 영원히 동화시켜 良民으로 만드는 것'에 착수하는 전망을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상하이에서 보내온 야나기와라 공사의 보고를 보면, '번지 출병'에 대해 청 정부가 異論을 약하게 제기하는 것에 만족하고, '토인 유도 등'에 대해 답판짓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키마는 청 측 명분에 휘둘리고 있는 야나기와라의 교섭에 강한 불만을 보이면서 정부의 태도를 다시금 명확히 해둘 것을 요구했다.

게다가 오키마는 추신에서 '번지처분'이 '義務盛舉'임을 분명히 하면서 '만국공법'에 반하지 않다는 르젠드르의 '여러 논문과 저술'이 완성되고, 부아소나드로부터의 회답도 가까운 시일 내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부언했다. 외교 교섭에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이론적 무장을 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이다.

V. 임전태세와 오키보 파견

일본이 강행한 군사행동에 대한 청 측의 반발과 출병의 근거를 뒤흔드는 파크스의 태도에 직면하게 되자, 7월 초부터 타이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일본 정부 안에서도 집중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7월 2일에는 부아소나드와 르젠드르가 천황을 알현하고 '번지처분'에 대한 '질문'에 답했다.⁸⁷⁾

7월 5일 르젠드르는 태정관 회의를 대비하여 오키마에게 각서를 제출했다.⁸⁸⁾ 이것은 청에게 끝까지 '번지'의 영유를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배상금을 받고 일단 점령한 땅을 청에게 반환할 것인지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 것이었

87)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앞의 책, 284쪽.

88)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 「大隈文書」A4430.

다. 즉, 본래 남부 타이완의 ‘번지’는 청의 영토라 할 만한 권한이 없고, 현재 일본이 공격하여 점령했기 때문에 일본에게 보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전자는 타이완 ‘번지’를 영유를 위한 길이다. 이에 비해 점령지를 청에게 반환하는 대신 특별한 약정을 통해서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교섭한다는 후자는 출병목적이 ‘問罪’와 재발방지에 불과한 것이 된다.

7월 6일 산조의 저택에서 오쿠보노 아мага타[山縣]가 육군 장교들에게 앞으로의 전망을 묻도록 제안하였다.⁸⁹⁾ 7월 7일 각의에서 제기된 분규 내용에 대해 산조는 “전쟁으로 결정되면 쉽게 넘어가지 못할 紛議도 일어날 것이다. 또한 조속히 철병하게 되면 국내가 조용하지 않을 것이다. 일단 蕃地 처분이 끝나면 신속히 철수할 것을 표명한 후 그대로 번지에 駐留하면, 그동안에 야나기와라 공사의 담판의 상황도 알 수 있을 것”⁹⁰⁾이라면서, ‘양다리를 걸치는 조치’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7월 8일 아мага타 육군경이 장교들의 평의 결과를 정부에 보고했다.⁹¹⁾ 아мага타로부터 의견을 들은 육군 장교 중 쓰다 이즈루[津田出]·야마다 아키요시[山田顯義]·미우라 고로[三浦梧樓]·이다 유즈루[井田讓]·소가 스케노리[曾我祐準]는 軍備 부족을 이유로 避戰論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노즈 시즈오[野津鎮雄]·다나다 마사아키[種田政明]는 준비가 불충분하더라도 전투가 발생하면 대국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 없다며 開戰論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아мага타는 장교·병사의 훈련과 기계 등의 장비가 불충분하고, ‘내지 방어 방책 등’도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청과의 개전론을 부정하였다.⁹²⁾ 이시이[石井]가 지적하듯이, 避戰論을 선택한 조슈[長州] 출신 장교들에 비해 사쓰마[薩摩] 출신 장교들은 강경론을 선택했다.⁹³⁾

그러나 아мага타의 의견과 달리 이날 정부는 청일 開戰을 결정했다. 결정

89)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앞의 책, 286쪽.

90) 日本史籍協會 編, 1931, 앞의 책, 164쪽.

91)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앞의 책, 286쪽.

92)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1958, 앞의 책, 75~77쪽.

93) 石井孝, 1982, 앞의 책, 102쪽.

의 취지는 7월 9일 산조 태정대신 명의로 육군경과 해군경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부지시에 나타나 있다.⁹⁴⁾

청에 공사 파견을 명하여 되도록 양국의 화친을 깨지 않도록 담판을 짓지만, 청 측이 불화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에 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 육군과 해군은 창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다.

7월 9일, 오쿠마가 6월 28일자로 제출했던 문의에 대한 회답이 내려졌다. '都督이 문의한 것의 취지는 '위임했던 대로' 할 것, 공사 담판의 취지는 勅旨를 尊奉할 것, 단 '특유 제2관'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별도로 문의하도록 하는 것이었다.⁹⁵⁾

이미 7월 2일, 청에 있는 야나기와라 공사는 배상금을 받고 청에게 번지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甲案과, 번지를 영구히 점령하는 乙案을 정부에 제출하고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⁹⁶⁾ 7월 16일 이와쿠라는 야나기와라에게 갑안과 을안을 모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⁹⁷⁾ 또한 출병은 일본의 당연한 '의무'이고, 사후처리는 청이 담당하는 선에서 베이징 정부와 합의가 성립할 것 같은 것, 그리고 타이완 소유문제에 대해서도 쌍방이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을 기뻐했다. 또한 이와쿠라는 다음과 같이 '내밀'한 추가서신을 첨부하고 있다.

아카마쓰와 후쿠시마가 야나기와라에게 가고, 다니와 가바야마는 귀국했다. 이후 정부에서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둘러싸고 연일 회의가 열렸지만 제의한 바대로 결정되었다. 르젠드르는 물론이고 '고용한 미국인과 프랑스인 법률가'에게 '百方'으로 알아보게 하여 '條理는 틀림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무엇보다도 청 측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어쩔 수 없이 '필사 항전'하도록 결정했다.

94) 外務省 編, 1955, 앞의 책, 150~551쪽.

95)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앞의 책, 399쪽.

96)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 『大隈文書』A219.

97) 日本史籍協會 編, 1931, 『岩倉具視關係文書』六, 171~172쪽.

이렇듯 이와쿠라는 정부 결정의 배후 사정을 설명하고, 이것이 밖으로 새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주의를 주었다.

청 측과 우선 외교 교섭을 진행한다는 기본방침에 따라, 야나기와라 공사에 대한訓수와 답판할 때 명심해야 할 11개조가 만들어졌다.⁹⁸⁾ 훈령은 우선 ‘台蕃의 흉포·慘虐’을 토벌하는 것은 ‘우리 民’을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동양 항해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자 ‘만국 人民’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이 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정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행동했다는 것으로, 이는 서양 각국에 대한 어쩔이다. 그리고 이미 토벌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이 땅은 청 정부가 이미 ‘化外’=관할 밖이라고 했기 때문에 일본이 점령하여 교화하고자 한다는 것이고, “관을 설치하고 병사를 두어 政을 펼치고 刑을 실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의무’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본이 이 땅에 있는 것에 청 정부가 의심과 불안을 느낀다면 이 땅 전체를 청에게 주어도 좋으며, 다만 청이 안전 확보에 책임을 지고, 일본이 입은 피해와 부담에 대한 배상조치를 해야 하는 것을 그 조건으로 내세웠다.

7월 8일의 정부 결정은 야나기와라 공사가 청과 교섭을 하는 가운데 전쟁태세를 준비한다는 것이었지만, 오쿠보는 사태의 중대함을 깨닫고 스스로 대청 교섭에 임하기 위해 청으로 가기를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내외 위급 국가 국난의 가을’을 맞이하여 분발하고 노력을 다하도록 천황이 칙어를 내려서 유사시에 대비하는 체재를 갖출 것도 요청했다.⁹⁹⁾ 전쟁에 대비하여 밤낮으로 분발하고 노력하여 ‘軍國의 政’을 실시해야만 한다. 오쿠보는 이렇게 주장함과 동시에, 참의를 청으로 보낼 것과 새로운 참의를 임할 것도 제의했다. 청 파견 참의가 될 생각이었던 오쿠보에게 이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참의는 자신의 부재를 상정한 보강책이었다.

7월 26일 오쿠보는 이와쿠라에게 다시 청국행을 요청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30일에 오쿠보의 청국행이 내정되었다. 오쿠보의 파견에는 약간의 반대가

98) 外務省 編, 1955, 앞의 책, 155~157쪽.

99) 日本史籍協會 編, 1928, 『大久保利通文書』 六, 20~21쪽.

있었다. 하지만 오키보로는 '충분히 전망이 있다'며 '결국 승복'시켰다.¹⁰⁰⁾

그렇다면 왜 오키보로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청국행을 반복해서 원했던 것일까. 7월 27일 번지사무국 장관인 오키마는 대신과 참의에게 청은 軍備가 마무리되는 대로 타이완의 일본군을 틀림없이 추격할 것이기 때문에, 그 태세가 완비되기 전에 조속히 개전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¹⁰¹⁾ 그리고 '密議條件'으로 대처해야 할 과제를 24가지에 걸쳐 열거했다. 청과 대적할 각오도 해야 하는 국면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타이완 출병이라는 부분적·국지적인 차원과는 군사력 발동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7월 28일 오키마는 대신과 참의에게 '해외출병 의견'을 제출했다.¹⁰²⁾ 야나기와라의 교섭은 전망이 매우 어두우므로 '전쟁을 결정'하고 청의 군비가 갖춰지기 전에 즉각 '해외출병'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7월 29일에는 타이완의 사이고에게 개전결의를 알렸다.¹⁰³⁾ 군비가 갖춘 다음에 전쟁을 시작한다는 야마가타 육군경의 '지론'으로는 시기를 놓치지 때문에 '신속하고 급진'적인 협의와 결정을 요구한 것이다.

8월 1일 오키보로를 정식으로 전권대사에 임명하고 타이완 문제를 교섭하기 위해 청으로 파견하는 것이 결정되었다. 8월 2일, 담판이 결렬된 경우에 '和戰을 결정하는 권리', 청에 있는 일본의 문관과 무관을 '지휘·進退하는 권리' 등이 오키보에게 위임되었다. 이렇듯 오키보로는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8월 6일 중국으로 출발했다.

9월 10일 베이징에 도착한 오키보로는 14일부터 총리아문에서 청 측과 교섭을 시작했다. 그러나 교섭은 계속 난항을 겪었고, 10월에 들어서 사태가 긴박해졌다. 청 측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10월 24일 오키보로는 청 측에 귀국을 통보하기에 이른다. 그러나 이날 영국의 주청 공사가 조정안을 오키보에게 제시하고, 이를 기초로 10월 31일 타이완 문제에 대한 청일 양국 간에 互

100) 日本史籍協會 編, 1927, 앞의 책, 292~293쪽.

101)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 「大隈文書」A165.

102)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 「大隈文書」A166.

103) 日本史籍協會 編, 1933, 앞의 책, 418~419쪽.

換條款(보상 50만 엔)과 互換憑單이 베이징에서 조인되었다(일본 국내에 포고는 11월 17일). 호환조관은 그 前文에서 ‘타이완 생변’이 ‘일본국 屬民들’에게 해를 가했기 때문에 일본은 책임추궁을 하기 위해 출병했다고 전제한 다음, 본문에서는 ‘保民義舉’라는 일본 측의 주장을 청 측이 인정할 것, 청은 ‘번지’에서의 조난자와 그 유족에게 ‘撫恤金’을 지급할 것, 일본군이 ‘번지’에 설치한 도로와 건물은 청 측이 유상으로 넘겨받을 것 등이 정해졌다.

11월 1일 오쿠보는 베이징을 떠났다. 귀국 도중인 16일, 오쿠보는 타이완에 들러서 사이고를 만나 철병을 결정한 다음, 26일에 귀국했다. 한때 오쿠보는 辭意를 하려고도 했다지만, 그를 비롯한 정부 당국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일련의 사태를 종결지었다. 12월 3일, 철병이 시작되었다. 이로써 근대 일본 최초의 해외파병은 일단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VI. 맺음말

타이완 출병은 두말할 것도 없이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 행사이고, 파병 대상은 타이완의 ‘번지’이다. 그러나 그 내실은 對淸 정책 그 자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게다가 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관계 속에서 대외적인 군사행동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필요했다. 정당화 논리는 당시 서구세계의 국제질서인 ‘만국공법’의 논리를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인 ‘華夷’ 논리와 접합시키는 가운데 구축되었다. ‘선점’ 이론과 ‘화외의 땅’ 발언의 연결이 타이완 ‘번지’ 정책의 기본이 되었다.

당초 대청 외교의 당사자였던 소에지마의 외교노선은 르젠드르의 강력한 뒷받침에 따라서 성립했다. 게다가 여기에는 ‘장대’한 대륙팽창의 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중국대륙과 일본열도를 연동시켜 서구열강의 아시아 진출을 논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을 반전시킨 대륙팽

창의 논리도 포함하고 있었다.

소에지마 대신 등장한 오키와 오쿠마의 노선은 '팽창'의 대상을 타이완에 국한시켰지만, 이 노선의 특징은 르젠드르만이 아니라 후쿠시마 구세이 등 일본인 '전문가'를 등용했던 것에 있다. 군사행동을 단순한 징벌과 제재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기반으로 삼아 타이완 통치의 기회를 잡으려 했기 때문이다.

출병과 철병은 서로 맞물려 있다. 군사행동이 목적을 달성하면 되돌아와야 한다. 징벌과 제재가 정당성의 근거라면 징벌과 제재가 종료된 시점에서 철수해야만 하는 것이다. 징벌이 종료된 이후에도 군사파병을 계속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유가 필요하다. 통상 이럴 때 제기되는 것은 재발방지를 위해 머문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발방지의 근본적 보장은 '야만'을 '문명'화하는 것, 즉 '번지'의 개조에서 찾아진다. 정당화를 보강하기 위해 동원된 것은 당시 국제법에서 제기된 '先占' 이론이고, 서구열강의 경우가 선례였다. 여기에는 '선배'가 내세운 명분으로 '선배'가 했던 것을 흉내내면 국제사회에서는 문제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이르기 위해서는 '선배'로부터 많이 배워야 한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르젠드르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럴듯한 논리와 수법은 좀 더 강력한 다른 '선배'로부터 부정당하면 끝이 난다. 르젠드르의 '가르침'이 파크스의 비판에 직면하고, 당시 미국 본국으로부터도 소외되었을 때 그 '제자'인 일본 정부의 당국자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다. '만국공법'을 방패로 한 정당화의 논리는 '만국공법'을 적용했던 당사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것이 1874년 4~6월의 정치와 외교 국면이다. 르젠드르에게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좀 더 강력한 '도우미'인 부아소나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일본이 타이완 '번지'에 대해 군사력을 발동할 때 준비한 정당성의 근거는 징벌과 제재이고, 그 전제에는 '번지'에 청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본래, 군사행동의 대상은 타이완 현지, 그중에서도 '번지'로 국한된 지역을 상정한 것이었고, 이렇듯 대상을 제한하게 만든 것은 청 측의 '화외' 발언이었다. '화외'의 옳고 그름이 논리적 차원에서 그쳤었다면 이것은 외교 교섭의 범위 안에서 수습된다. 그러나 일단 '화외'가 부정되고 이것이 실질

적인 통치권을 둘러싼 대립으로 전환된다면, 군사력 발동의 대상은 거대한 청그 자체로 되어버린다. 즉, 타이완 출병이 청일전쟁으로 轉化되는 것이다. 청의 강경자세가 뚜렷해진 1874년 6~7월의 정치와 외교 국면이 여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배상금을 받고 철수하는 노선이 모색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청 전쟁을 상정한 군사력 발동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의 행방은 대청 교섭의 성공 여부에 달려 있었다. 7월 말, 이러한 중대 국면에 직면한 일본 정치권력의 중추가 선택한 것은 정권의 중심인물인 오키보 자신이 청으로 가는 것이었다.

타이완 출병을 구성했던 것은 ‘야만’에 대한 ‘문명’ 측의 징벌과 撫育이라는 발전단계론에 입각한 종적 계열의 논리와, ‘번지’ 통치를 둘러싼 청과 일본의 對抗이라는 공간지배에 관한 횡적 계열의 논리였다. 일본의 당국자는 불평사족의 불만을 국내에 안고 있으면서 ‘민국공법’의 논리와 미국의 경험에 의지하여 타이완 ‘번지’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발휘’함과 동시에, 서구열강의 ‘선점’ 논리와 식민지 경영의 경험을 배워서 타이완의 ‘주인 없는 땅’에 대한 지배의 영속화를 한때나마 계획했다. 그러나 이것은 서구열강의 개입과 청의 거부로 破綻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청이라는 요인만이 아니라 서구열강이라는 요인의 전환이 불가결했던 것이다.

[번역: 홍미화(전문번역가)]

참고문헌

〈1차 자료〉

- 舊陸海軍文書マイクロフィルムR34, 「台灣事件輯録一」·「台灣事件輯録二」.
 宮內廳, 1969, 『明治天皇紀』三, 吉川弘文館.
 內田修道·牧原憲夫 編, 1990, 『明治建白書集成』二, 筑摩書房.
 牧原憲夫 編, 1986, 『明治建白書集成』三, 筑摩書房.
 岩倉公舊蹟保存會, 1906, 『岩倉公實記』下, 皇后宮職.
 外務省 編, 1955, 『日本外交文書』七, 日本外交文書頒布會.
 日本史籍協會 編, 1927, 『大久保利通日記』二.
 日本史籍協會 編, 1928, 『大久保利通文書』五.
 日本史籍協會 編, 1928, 『大久保利通文書』六.
 日本史籍協會 編, 1931, 『岩倉具視關係文書』五.
 日本史籍協會 編, 1931, 『岩倉具視關係文書』六.
 日本史籍協會 編, 1933, 『大隈重信關係文書』二.
 立教大學日本史研究室 編, 1965, 『大久保利通關係文書』一, 吉川弘文館.
 早稻田大學大學史資料センター 編, 2005, 『大隈重信關係文書』二, みずず書房.
 早稻田大學大學史資料センター 編, 2010, 『大隈重信關係文書』六, みずず書房.
 早稻田大學圖書館所藏, 「大隈文書」A165·A166·A219·A4424·A4425·A4429·A4430.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編, 1958, 『大隈文書』一, 早稻田大學社會科學研究所.

〈연구논저〉

- 家近良樹, 1983, 「『台灣出兵』方針の轉換と長州派の反對運動」, 『史學雜誌』92-11.
 高橋秀直, 1995, 『日清戰爭への道』, 東京創元社.
 勝田政治, 2001, 「大久保利通と台灣出兵」, 『國士館大學文學部 人文學會紀要』34.
 毛利敏彦, 1996, 『台灣出兵』, 中公新書.
 石井孝, 1982,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堂.
 小林隆夫, 1994, 「台灣事件と琉球處分(Ⅰ)」, 『政治經濟史學』340.
 小風秀雅, 2001, 「華夷秩序と日本外交」,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 信夫清三郎, 1978, 『日本政治史Ⅱ 明治維新』, 南窓社.
- 安岡昭男, 1998, 『明治前期大陸政策史の研究』, 法政大學出版局.
- 永井秀夫, 1975, 「統一國家の成立」, 『岩波講座 日本歴史14 近代1』, 岩波書店.
- 栗原純, 1978, 「台灣事件(1871~1874年)」, 『史學雜誌』 87-9.
- 張虎, 2001, 「副島對清外交の檢討」,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 中塚明, 1968, 『日清戰爭の研究』, 青木書店.
- 太塚孝明, 1993, 「明治初期外交指導者の對外認識-副島種臣と寺島宗則を中心に」, 『國際政治』 102.
- 後藤新, 2007, 「台灣出兵と琉球處分」, 『法學政治學論究』 72.
- Eskildsen, Robert Alan, 2001, 「明治七年台灣出兵の植民地的側面」,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アジア』, 吉川弘文館.

[ABSTRACT]

The Structure of the Continental Policy of Modern Japan

- Discussion on the Troops Dispatch to Taiwan -

Obinata Sumio

This paper gives consideration to the continental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 in the early Meiji Era and studies the structures of international and domestic politics behind the policy with the troops dispatch to Taiwan as the main topic. The process from summer 1872, when the troops dispatch was proposed, to spring 1874, when the troops were actually sent, and summer 1874, when the Japanese government held talks with the Qing dynasty, was analyzed after issues about the sending troops to Taiwan were sorted out. The focus of this analysis was to reveal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in charge of diplomacy and their ideas, and the dynamics among countries when the ideas took form as a tangible policy. They combined the logic of international law which was also the international order of the Western Europe at that time and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order of the East Asia to come up with a theory to justify the invasion. Taneomi Soejima who was in charge of diplomacy with Qing in an early stage was strongly supported by an American named Le Gendre and Soejima's diplomacy policy contained a "grand" design to expand into the continent. Toshimichi Okubo and Shigenobu Okuma who replaced Soejima limited the "expansion" to Taiwan, and a point to notice here is that they appointed a Japanese "expert" to the position. They intended to do more than

punishment or sanctions against the military action and utilize it as an opportunity to reign over Taiwan. However, the plan to send troops to Taiwan faced criticism from diplomats of Britain and the United States, which drove the Japanese officials into a corner. Furthermore, the legitimacy of the invasion was rejected by Qing and the situation could turn into a war between Japan and the dynasty. The Japanese officials, based on the logic of international law and experiences of the U.S., once attempted to perpetuate the reign over the region which had not been controlled by the dynasty while “showing pride” of the nation by a military movement. But the intervention of western powers and the rejection from the Qing dynasty forced this attempt to fail.

keywords

Taneomi Soezima, Toshimichi Okubo, Li Hongzhang, Incident of Taiwan and the Ryukyu Islands, Taiwan Expedition of 1874.

근대전환기 일본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

- 1870년대 건백서를 중심으로 -

박삼헌 |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부교수

I. 머리말

1840~1842년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청이 서양 각국과 불평등한 '조약관계'를 맺은 이후, 일본과 류큐왕국[琉球王國]¹⁾도 서양 각국과의 '조약관계'에 편입되고, 청이 병인양요(1866)와 신미양요(1871)에서 조선에 대한 불간섭정책을 펼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질서로서의 '책봉·조공관계'는 그 기능을 상실해 갔다.²⁾

이런 의미에서 1871년에 체결되고 1873년에 비준을 거친 청일수호조규는

※ 투고일: 2011년 4월 6일, 심사일: 2011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30일.

1) 1609년 사쓰마번[薩摩藩]은 막부의 허가를 받아 류큐왕국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주종관계를 성립시켰다. 이후 류큐왕국은 명과 사쓰마번 양쪽에 속하는 독특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하지만 류큐왕국은 미일화친조약 체결에 성공한 페리와 1854년 7월 통상조약을 맺었으며, 이후에도 1855년에 프랑스, 1859년에 네덜란드와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1872년에 일본 정부가 류큐왕국을 류큐번으로 설치하기까지 류큐왕국은 적어도 서양 각국으로부터 국가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紙屋敦之, 2003, 『日本史リブレット43 琉球と日本・中國』, 山川出版社 참조.

2)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당시 청의 조선정책에 대해서는 권혁수, 2007,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참조.

아편전쟁 못지않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 사이에 처음으로 평등한 ‘조약관계’를 맺음으로써, 앞으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가 기존의 ‘책봉·조공관계’와는 다르게 전개될 것임을 가시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후 1873년에 발생한 일본 정부 내부의 征韓 논쟁에 이은 강화도사건과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1871년 류큐문제의 대두와 1874년 일본의 타이완 침공³⁾ 및 1879년 일본의 류큐 병합 등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동을 야기한 일련의 사건들이 1870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표 1〉 참조). 그 결과 청일 전쟁 이후 청일 간의 시모노세키조약(1895)과 한중 간의 한청조약(1899)으로 한중일 3국 간에 새로운 관계설정이 시도될 때까지,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만국공법에 기초한 청·일, 조·일의 ‘조약관계’와, 중화질서에 기초한 조·청의 ‘책봉·조공관계’가 공존하였다.⁴⁾

이처럼 1871년 청일수호조규 체결로 시작하여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거쳐 1879년 일본의 류큐 병합으로 이어지는 1870년대는 동아시아의 지역

3) 일본에서는 보통 1874년 당시에 사용했던 ‘타이완 출병’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당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한 ‘타이완 출병’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그 침략성을 반영시키기 위해 ‘타이완 침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일본 연구자 중에서도 이시이 다카시[石井孝]가 ‘일본군 타이완 침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石井孝, 1983, 『第1章 日本軍台灣侵攻をめぐる國際情勢』,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堂 참조.

4) 최근 한국 학계와 일본 학계의 일각에서는 청일수호조규와 조일수호조규 모두 ‘조약’이 아니라 ‘조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1870년대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조공과 조약에 따른 이분법적 도식으로만 설명하지 않고 과도기적 형태인 ‘조규체제’라 규정하며 근대전환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국 학계의 연구 성과로는 김민규, 2002a,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청일수호조규(1871년) - ‘조규체제’의 생성」, 『대동문화연구』 제41집; 김민규, 2002b,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조선 - ‘조규체제’의 성립과 와해」,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의 국제환경과 민족문화』, 경인문화사; 김민규, 2006, 「조규? 조약!」, 『역사비평』 75 등이 있다. 일본 학계의 최근 연구로는 川島眞·服部龍二編, 2007, 『東アジア國際政治史』, 名古屋大學出版會; 三谷博·竝木頼壽·月脚達彦編, 2009, 『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 19世紀編』, 東京大學出版會; 和田春樹·後藤乾一·木畑洋一·山室信一·趙景達·中野聰·川島眞編, 2010, 『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通史1 東アジア世界の近代』, 岩波書店 등이 있다.

질서가 내부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여기에는 일본이 모든 사안에 공통분모로 등장한다.

이 글에서는 일본 정부가 청·조선·류큐왕국에게 새로운 관계 설정을 밀어붙인 결과, '책봉·조공관계'와 '조약관계'가 공존하기 시작한 1870년대 동아시아 지역질서 속에서 일본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이 국가 차원의 외교·군사 정책과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며 변화했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동을 야기한 일련의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1870년대의 건백서이다.

근대 국민국가는 자국과 타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국경과 함께, 그 속에서 생활을 영위하며 국가적 과제를 '자발적'으로 떠안는 '국민'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건백서는 종래의 연구들이 주로 분석한 신문·잡지의 기사 및 논설이나 개별 사상가·정치가의 논저들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⁵⁾ 물론 건백서든 신문·잡지의 기사든 아직 국회가 개설되지 않았던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양쪽 모두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개진이다. 하지만 신문·잡지의 기사 및 논설 등이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행위에 머무는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건백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가정책에 조언 및 제언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문·잡지의 논설 및 기사와 달리 건백서는 국가정책에 적극적으로 발언하고 개입하려 했던, 이제 막 형성

5) 근대 일본의 대외인식에 관한 종래 연구는 너무도 많다. 그중 芝原拓自, 1988, 「對外觀とナショナリズム」,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編, 『日本近代思想大系 12 對外觀』, 岩波書店은 근대 일본의 대외인식을 알 수 있는 기초사료와 그 해제를 겸한 해설로서,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문헌이다. 한편 근대 일본의 '서양 인식'에 대해서는 주로 서양과 일본의 양자 구도 속에서 근대 일본의 만국공법 수용과정이 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학계의 주요 연구로는 大久保利謙, 1962, 「解説」, 『西周全集』 第二卷, 宗高書房; 田岡良一, 1972, 「西周助『万国公法』」, 『國際法外交雜誌』 71卷1號; 井上勝生, 1991, 「解題『万国公法』」, 田中彰 編, 『日本近代思想大系1 開國』, 岩波書店; 田中彰, 1992, 「第8章『万国公法』と世界」, 『日本の歴史15 開國と倒幕』, 集英社; 丸山眞男·加藤周一, 1998, 『翻譯と日本の近代』, 岩波書店, 1998(임성모 역,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安岡昭男, 1999, 「日本における万国公法の受容と運用」, 『東アジア近代史』 第2號 등이 있다.

되기 시작한 ‘국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재료이다. 더군다나 1870년 대에는 건백서가 『日新眞事誌』나 『新聞雜誌』 등과 같이 당시 유력한 신문에 게재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건백서는 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론을 조성하는 수단으로서도 유효하여, 하나의 건백서가 또 다른 건백서를 만들어내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건백서에 관한 연구는 시바타 가즈오[柴田和夫]의 서지적 특성 분석과 마키하라 노리오[牧原憲夫]의 내용 분석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⁶⁾ 이 중에서 건백서가 가장 많이 제출된 1874년을 중심으로 ‘국민’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건백서의 다양한 내용들을 분석한 마키하라의 연구는 이 글 작성에 많은 참고가 되었다. 특히 1870년에 조일국교 교섭을 담당했던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가 1874년 2월에 ‘征韓 불가’ 등을 주장하며 제출한 건백서를 분석한 부분은 많은 참고가 되었다.⁷⁾ 단, 마키하라가 ‘強盜國’=국권주의를 비판하며 ‘정한 불가’라는 소국주의를 제시한 요시오카의 조선 인식에 주목한 것이라면, 이 글은 이 시기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제기된 ‘征臺論’과 ‘征韓論’의 상호연관 속에서 형성되는 근대전환기 일본 ‘국민’의 동아시아 인식에 주목하고자 한다.

1_ 근대 일본 국가체제 성립과 건백서의 역할

1867년 12월 9일⁸⁾ 왕정복고 쿠데타에 성공한 신정부는 막부지지파와 보신[戊

6) 柴田和夫, 1974, 「國立公文書館所藏明治初期建白書について」, 『北の丸』 2號; 牧原憲夫, 1990, 『明治七年の大論争—建白書から見た近代國家と民衆』, 日本經濟評論社.

7) 1874년 2월, 北條縣平民 吉岡弘毅, 「建議(教法自由, 告諭處設置, 征韓不可, 民選小議院設置等ノ議)」,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 編, 1986, 『明治建白書集成』 第三卷, 筑摩書房, 126~137쪽. 牧原憲夫, 1990, 위의 책 「第6章 天下國家から各箇各別へ」 참조.

8) 양력으로는 1868년 1월 3일이다. 일본 정부는 양력을 도입한 메이지[明治] 5년 11월 9일(양력 1872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공식문서의 일자 표기를 음력에서 양력으로 바꾸었다. 이 글도 이에 준하여 일자표기를 한다.

辰] 전쟁을 치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御一新'을 슬로건 삼아 천황을 정점으로 한 국가체제 만들기를 시작하였다. 같은 해 3월 14일 발표된 '5개조 서문'은 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 내용은 "① 널리 회의를 일으켜 万機公論에 따라 결정한다. ② 上下 합심하여 활발하게 經綸을 편다. ③ 문무백관으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각기 그 뜻을 이루고 불만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舊來의 陋習을 타파하고 천하의 公道를 따른다. ⑤ 지식을 세계에서 구하고 皇國의 기반을 굳건히 다진다"이다.

이것은 막부 말기 이래 입헌정치론의 한 형태로 제기되어 온 公議政體論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발표 형식은 왕정복고라는 제정일치의 이념에 어울리는 神道式으로 거행함으로써 천황의 神權性을 강조하는 것이었다.⁹⁾ 여기에는 이제 막 시작된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가 한편으로는 국가권력의 정통성을 천황의 초월적인 권위로 실현하는 天皇親政에 두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천황이 아직 '幼沖의 천황'¹⁰⁾에 불과하여 정통성 확보에 불충분함이 있었기 때문에 公議輿論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

일단 '공론'을 제1조로 선언한 신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중 하나가 1868년 2월부터 신정부의 기관지로 간행되기 시작한 『太政官日誌』이다.¹¹⁾ 처음에 『태정관일지』는 佐幕派 계열 신문에 대항하기 위해서 간행되었다. 하지만 보신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상하귀천의 구별 없이 政道の 흐름筋]을 만들어서 그 뜻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고 그 條理를 踐行하

9) 大久保利謙, 1986, 「五ヶ條の誓文に關する一考察」, 『大久保利謙歴史著作集1 明治維新の政治過程』, 吉川弘文館, 60쪽.

10) 多田好問 編, 1906, 『岩倉公實記』中卷, 岩倉公舊蹟保存會, 159쪽.

11) 메이지 초년에 사용된 '태정관'이라는 용어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첫째는 1867년 12월 9일 '왕정복고 대호령'에서 그 설치가 선언된 이래 1885년 12월 22일 내각제가 설치되기까지 18년간 존재한 중앙정부기구를 통칭하는 태정관이고, 둘째는 1869년 7월 8일 '職員令'에서 神祇官과 함께 설치된 최고행정기구를 의미하는 태정관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삼현, 2010, 「메이지초년 태정관문서의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편, 『독도·울릉도 연구-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127쪽 참조.

도록 하는 것¹²⁾이라는 발행취지에 맞게, 점차 막부를 대신하는 신정부의 존재만이 아니라 신정부가 발표한 법령들도 알리는, 현재의 『官報』와 같은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¹³⁾

이후 신정부는 『태정관일지』만이 아니라 『文部省日誌』¹⁴⁾ 등과 같은 각 省의 기관지도 ‘官版’으로 발행하였다. 『문부성일지』는 교육과 관련된 법령은 물론이고 당시의 교육제도가 처한 상황과 이에 대응하는 문부성의 정책방향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사들을 실었다.¹⁵⁾ 이 외에도 『開拓使日誌』,¹⁶⁾ 『司法省日誌』¹⁷⁾ 등이 ‘관판’으로 간행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1870년대 중반까지 간행되었다.

이처럼 『태정관일지』 등이 신정부가 추진하는 ‘문명개화’ 정책을 ‘상하귀천의 구별’ 없는 ‘국민’에게 전달하려는 것이었다면, ‘메야스바코[目安箱]’ 설치신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었다.¹⁸⁾ ‘메야스바코’는 에도[江戶] 막부의 최고재판소인 評定所 앞에 놓여 있던, 일종의 신문고와 같은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피지배신분인 ‘農工商’이 지배신분인 ‘士’에게 자신의 고충이나 訴願을 적어서 넣을 수는 있어도, ‘사’=영주나 장군의 ‘政事’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요컨대 ‘메야스바코’는 봉건적 신분관계를

12) 慶應四年戊辰四月, 「太政官日誌出版ノ事」, 『太政官日誌』第九, 橋本博 編, 1932, 1966 복각, 『改訂 維新日誌』第一卷, 名著刊行會, 16쪽.

13) 1868년에 신정부는 이 외에도 『江城日誌』·『鎮台日誌』·『鎮將府日誌』·『行在所日誌』 등과 같은 官版 일지를 간행하였다.

14) 1871년 7월 14일 폐번치현 이후 설치된 문부성이 1872년 9월에 창간한 ‘官報’이다. 하지만 1873년 3월 말부터 1877년 연말까지 『文部省雜誌』(나중에 『教育雜誌』로 개칭)와 『文部省報告』의 간행으로 일시 중지되었다가 1878년 1월부터 다시 간행되어 1882년 말까지 이어졌다.

15) 「一 解題 - 『文部省日誌』に關する研究」, 佐藤秀夫 編, 1981, 『明治前期文部省刊行誌集成 別卷, 解題・總目次・索引・一覽』, 歴史文獻, 10쪽.

16) 홋카이도[北海道] 개척을 위해 설치된 개척사가 1869년 5월부터 1877년 12월까지 발행한 ‘관보’이다.

17) 사법성이 1873년 1월부터 1876년 5월까지 발행한 ‘관보’이다.

18) 1868년 2월 24일, 太政官布達 第106號, 內閣官報局 編, 1887, 1974 복각, 『法令全書』第一卷, 原書房, 50쪽.

기초로 하는 '愛民'을 실천하는 장치인 것이다.

그럼에도 메야스바코는 신정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서 한 동안 유효하게 기능하였다. 1869년 3월 7일, 신정부가 각 藩의 공문을 수렴하기 위해 도쿄[東京]에 설치한 公議所 앞에 “널리 公議를 취하고, 국법을 세우려는 趣意가 있으므로 의견이 있는 자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여기(=메야스바코)에 넣도록 하라”¹⁹⁾는 다테후타[立札, 방문을 써 붙여 세운 팻말]가 세워져 있었다. '메야스바코'는 신정부가 '상하귀천의 구별' 없이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우선적으로 생각해낼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애민'적 성격을 지니는 '메야스바코'가 '상하귀천의 구별' 없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으로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는지, 신정부는 5일 후인 2월 28일에 願·伺·届 등 모든 문서를 辨事役所로 제출하도록 다시 포달하고 있다.²⁰⁾ 이어서 1869년 3월 12일에는 메이지천황의 도쿄 再幸에 맞춰서 “草莽·귀천에 이르기까지 그 뜻하는 바를 건언(建言)”²¹⁾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접수하는 待詔局을 설치하였다. 여기에서는 '건언'의 내용에 따라 '건언' 제출자와 '건언' 내용과 관련된 '官員'이 '議論'하는 자리도 마련되었다.²²⁾ 이어서 5월 9일에는 '건언'의 처리방식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이번에 待詔局을 설치하여 초망과 귀천에 이르기까지 그 뜻하는 바를 獻言하도록 하였다. 이에 중대한 사안은 上裁를 거쳐 取捨를 정한다. 하지만 府縣에서 가부를 결정할 만한 정도의 사안은 일단 대조국의 검

19) 1869년 3월, 『公議所日誌』第一, 明治文化研究會編, 1955 복각, 『明治文化全集 第一卷 憲政編』, 日本評論社, 12쪽. 공의소는 각 번의 대표자 227명이 모여서 국정의 현안을 논의하는 장소로 설치된 신정부의 議事機關이다. 하지만 '공의 중시=서구화'라는 평가를 받으며 신정부 내에서 '공의소 무용론'이 제기된 결과, 같은 해 7월 8일 '직원령'에 따라서 集議院으로 개편되었다.

20) 1868년 2월 28일, 太政官布達 第121號, 內閣官報局編, 1887, 1974 복각, 앞의 『法令全書』第一卷, 53쪽.

21) 1869년 3월 12일, 行政官布達 第273號, 內閣官報局編, 1887, 1974 복각, 『法令全書』第二卷, 原書房, 123쪽.

22) 1869년 3월 17일, 辨事布達 第290號, 內閣官報局編, 1887, 1974 복각, 위의 책, 127쪽.

토를 거쳐 대조국의 날인을 받은 후, 해당 官이나 부현을 통해서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²³⁾

이처럼 신정부는 ‘건언’을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토했다는 증거로 ‘날인’을 찍어서 제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는 쌍방향적 소통을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⁴⁾

한편 1869년 6월 17일 메이지천황은 사쓰마[薩摩]·조슈[長州]·도사[土佐]·히젠[肥前] 등 4개 藩主를 포함한 262명의 번주들이 그때까지 제출한 판적봉환의 청원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7월 8일 정부조직을 ‘직원령’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공의소 대신 集議院이 설치되면서 대조국의 건백서 접수·심사 업무는 집의원으로 이관되었다.²⁵⁾ 10월에 집의원은 상세한 ‘건백서취급규칙’²⁶⁾을 제정하고, 이를 정부가 관관으로 발행하는 『集議院日誌』에 게재하였다. 이것은 건백서 접수·처리 업무가 비로소 명확한 규정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를 널리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건백서 접수에 대한 신정부의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음을 말해준다.²⁷⁾

하지만 그럼에도 <표 2>를 보면 1868년 119건, 1869년 101건이었던 건백서

23) 1869년 5월 9일, 行政官布告 第430號, 內閣官報局 編, 1887, 1974 복각, 위의 책, 169쪽.

24) 물론 이것이 제도적으로 얼마나 충실하게 실행되었는지는 불확실하다. 하지만 『메이지건백서집성[明治建白書集成]』 전권에 실려 있는 건백서에는 마지막 부분에 ‘처리’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 제도가 어느 정도는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25) 집의원은 공의소와 달리 독자적인 議案 제출권이 없고, 단지 태정관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내려온 의안을 심의하기만 하는 자문기관이었다. 11월에 개원했다가 불과 3개월 만에 폐쇄되었고, 1870년 6월에 다시 개원했다가 9월 8일 폐원한 이후 두 번 다시 열리지 않았다. 집의원에 대해서는 山崎有恒, 1993, 『『公議』抽出機構の形成と崩壊』, 伊藤隆 編, 『日本近代史の再構築』, 山川出版社, 70쪽 참조.

26) 1869년 10월, 『集議院日誌』 第四, 明治文化研究會 編, 1955 복각, 앞의 책, 183~184쪽.

27) 『집의원일지』는 1869년에 5회, 1870년에 5회 간행되었으며, 마지막 기사는 1870년 윤10월까지이다.

제출이 1870년에 57건, 1871년에 46건으로 그 수가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1869년에 발생한 극심한 흉년을 하나의 이유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1867년 이후 전국적으로 흉작이 계속되었지만, 특히 1869년은 홍수와 냉해가 겹치면서 그 도가 훨씬 심했기 때문에, 가을 이후부터 年貢半減을 요구하는 농민 봉기가 전국적으로 증가하였다.²⁸⁾ 즉 이 시기에는 “貧民을 8州로 이주시키고 불모의 땅을 개척하도록 하여 窮勢를 구휼하는 策”²⁹⁾과 같은 건백서보다는, 연공반감을 요구하는 직접적인 봉기를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국민’의 절박한 상황이 배경에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1871년 7월 14일 단행된 廢藩置縣은 근대 일본의 국가체제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각 번과 그들의 무장력이 정부정책의 실현을 보증했던 폐번치현 이전과 달리, 각 번이 폐지된 이상 이제 지조개정·징병령·학제 등과 같은 중앙집권적 개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승인 또는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게 된 것이다.

폐번치현 직후, 신정부는 기존의 좌·우대신, 대납언 등을 폐지하고 새롭게 正院·左院·右院으로 구성된 태정관 3원제로 중앙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이때 집의원이 좌원의 소속으로 되면서 건백서 접수와 심사업무는 자연스럽게 좌원으로 이관되었다. 좌원의 주된 업무는 “議員이 諸立法에 관해 議하는 곳”, 즉 입법기관이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議事의 章程 및 本院의 개폐는 모두 태정관의 特裁”에 따라야 하며, “議員의 選舉免黜은 正院의 審判”에 따라 제한을 받았으므로, 순수한 입법기관이라기보다 正院의 立法部로 위치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³⁰⁾

28) 青木虹二, 1967, 『明治農民騷擾の年次的研究』, 新生社, 38~41쪽 참조.

29) 1870년 1월, 土族荒木濟三郎, 「貧民ヲ八州へ移シ不毛ノ地ヲ開拓シテ窮世ヲ救恤」,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内田修道 編, 2000, 『明治建白書集成』 第一卷, 筑摩書房, 365~365쪽.

30) 박삼현, 2004, 「명치초년에 있어서 地方官會議의 성격」, 『日本言語文化』 第25輯, 76쪽.

그렇다면 좌원은 건백서를 어떻게 접수하고 처리하였을까.

1872년 2월 20일 집의원은 集議所로 그 명칭을 바꾸었다. 이는 집의원이 좌원과 동일한 ‘院’의 규모로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였다.³¹⁾ 이후 좌원은 “건언을 접수하여 衆庶言語의 洞開”를 보여주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건백서의 접수규칙을 개정하였다가,³²⁾ 마침내 1873년 6월 24일에는 집의소를 폐지하고 건백서 접수와 심사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었다. 물론 같은 해 11월에 발생한 정한론 정변을 전후한 시기에 일시적으로 좌원의 권한이 축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1874년 2월 개정에서는 다시 議定官으로서 正院을 보좌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내부조직도 내무과·외무과·재무과·병무과·법제과·제업과 등 6개 과로 재편되면서 입법권한을 한층 강화시켰다.³³⁾ 더군다나 이때 당시 좌원은 ‘하원을 대신하는 지방관회의’의 개최를 열성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던 만큼,³⁴⁾ 좌원이 건백서 접수와 처리 업무를 전담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 시기에 건백서라는 형태로 ‘국민참정’을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말해준다. 당시 좌원의 2등서기관이었던 호소카와 히로세[細川廣世]는 좌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본원은 위로 政府를 보좌하고 아래로 인민을 提起하는 그 중간에서 公明정대한 衆議를 펼친다. 정부의 失體가 있으면 이를 바르게 하고, 인민이 오해하는 바가 있으면 이를 說諭하여 압제와 속박의 폐해가 없도록 하는 것을 要務로 삼는다.³⁵⁾

31) 1872년 2월 20일, 「集議院ヲ改メ集議所ト稱ス」, 日本史籍協會 編, 1987, 『太政官沿革志』 四, 東京大學出版會, 309~310쪽.

32) 日本史籍協會 編, 1987, 위의 책, 314, 320~321쪽.

33) 1874년 2월 14일, 太政官布達 番外竝無號, 內閣官報局 編, 1889, 1975 복각, 『法令全書』 第七ノ一卷, 原書房, 401~403쪽.

34) 박삼현, 2006, 「1874년 지방관회의의 준비와 左院의 역할」, 『일본학보』 제69집, 490~491쪽 참조.

35) 1874년 3월, 左院二等書記官 細川廣世, 「匿名投書ヲ禁スルノ議」,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 編, 1986, 『明治建白書集成』 第三卷, 筑摩書房, 232쪽.

여기에서는 정한론 정변을 계기로 하야한 前 參議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 등이 좌원에 '민선의원설립건백서'³⁶⁾를 제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有司專制'가 아님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좌원이 '정부'와 '인민'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일종의 사명감과도 같은 것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각종 건백서의 접수 규칙은 내부규정이므로, 公表할 필요가 없다는 正院의 지적이 있었음에도,³⁷⁾ 좌원은 종종 건백서를 신문에 게재하기도 하는 등 건백서를 통한 '국민'과의 소통을 도모하였다.

이처럼 좌원이 '言路洞開'의 자세를 취했던 만큼, 건백서를 제출하기 위해 가업을 내던지고 도쿄로 올라오는 '상하귀천의 구별' 없는 '국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御一新 정부에 대한 기대와, 국가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국민'의 강한 열망이 만들어낸 전국적인 현상이었다.³⁸⁾

〈표 2〉를 보면, 좌원이 건백서를 접수·처리하기 시작한 1872년부터 건백서 제출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1874년에 정점을 이루고, 그 여세가 1875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자유민권운동의 고양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수많은 건백서의 내용을 보면, 대내적으로는 천황의 월급을 제정하라는 것에서부터 讒謗律과 신문조례법 등과 같은 국내 정책에 대한 비판, 대외적으로는 청과의 무역진흥책을 논하거나 征濶論·征韓論을 주장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이것은 건백서가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적인 차원의 訴願과 歎願의 기능을 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국가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서가 타인을 욕보이거나 죄를 무고하는 등에 그쳐, 그 이익 없음은 물론이고 言路를 열어 下情을

36)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 編, 1986, 위의 책, 22~24쪽.

37) 1873년 11월, 「諸建白書悉皆本院へ差出へキ旨御布告相成度伺」, 國立公文書館所藏, 『公文錄』, 2A-9-公757-0485.

38) 牧原憲夫, 1990, 앞의 책, 4쪽. 마키하라는 나가노현[長野縣]의 상인 이치가와 마타조[市川又三]의 경우를 사례로 들고 있다.

듣는다는 趣意”³⁹⁾로부터 멀어진 ‘메야스바코’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⁴⁰⁾

이상과 같이 좌원은 건백서를 통해서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국정 참여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백서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참여’의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이와 같은 ‘메야스바코’에서 건백서로의 이행은 국가정책을 둘러싼 ‘상하귀천의 구별’ 없는 ‘국민’들의 활동, 즉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려는 능동적인 ‘국민’의 탄생을 보여준다. ‘메야스바코’가 위로부터 ‘애민’을 표상하는 장치였다면, 건백서는 아래로부터 ‘愛國’을 표상하는 장치였던 것이다. 하지만 원로원이 설치되면서 건백서의 성격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875년 4월 14일 발표된 ‘점차 입헌정체수립의 조서’에 따라서 元老院은 좌원을 대신하는 입법 준비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건백서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좌원의 업무는 원로원으로 이관되었고, 이것은 1890년 10월 30일 제국의회 개설로 원로원이 폐지될 때까지 이어졌다. 그렇다면 원로원의 건백서 정책은 어떠했을까.

우선 1876년 1월 15일 원로원은 ‘건백서 제출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제1조, 건백서는 입법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면 원로원에서 접수하지 않는다. 만약 잘못해서 다른 사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 처분한다.

제2조, 건백서는 그 본관·신분·성명·연령·직업·주소를 적고, 그 성명 아래에 날인을 하거나 서명을 하며, 그 표지에는 건백서의 대의를 적은 正副 2통을 반드시 제출할 것.

제3조, 건백서는 외국 문자가 아니라 보통 문자로 작성할 것. 만약 외

39) 1873년 4월 30일, 「目安箱開建ノ建言」에 대한 內務課의 【處理二】.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內田修道·牧原憲夫 編, 1990, 『明治建白書集成』 第二卷, 筑摩書房, 593쪽.

40) 1873년 6월 10일, 太政官布告 第199號, 內閣官報局 編, 1887, 1974 복각, 『法令全書』 第六ノ一卷, 原書房, 219쪽.

국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때에는 번역할 것.

제4조, 건백서는 국가를 위해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지 願書類가 아니다. 따라서 원서류의 경우는 그 취하고 버림을 본인에게 전하지 않는다.⁴¹⁾

이처럼 원로원이 입법과 관련된 건백서 이외에는 받지 않겠다고 한 결과, 건백서 제출수는 1876년 68건, 1877년 34건, 1878년 15건, 1879년 86건으로 급격하게 줄었다(〈표 2〉 참조). 그리고 그 내용도 개별적 성향이 강한 '원서류'는 거의 사라졌으며, 1877년에 발발한 서남전쟁 때문에 시사평론적인 내용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1880년 3월 17일, 2府 22縣 8만 7천여 명의 總代 114명이 國會期成同盟會를 결성하고, 4월 12일 '國會開設建言書'⁴²⁾를 원로원에 제출한 이후, 국회개설을 '청원'하는 건백서가 급증하였다(〈표 2〉 참조). 정치성이 강한 건백서가 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1881년 10월에 정부가 국회개설에 관한 조서를 발표한 이후 정치성이 강한 건백서는 거의 사라지고, 대신 국회개설을 전제로 한 언론·출판·집회의 자유를 주장하거나, 마쓰카타[松方] 재정에서 추진된 증세정책에 대해 감세 또는 조세제도의 검토를 주장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의 건백서가 주로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상과 같이 1875년을 전후로 '국민'들의 국정 참여가 활발하게 권장되고, 이를 기초로 건백서가 적극적으로 제출되던 시기는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의 내부질서가 본격적으로 동요하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일본 '국민'이 1873년 정한론 정변, 1874년 타이완 침공, 1875년 강화도사건 등 연이어 발생하는 대외문제를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이 시기에 제출된 건백서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41) 1876년 1월 15일, 「建白書差出方心得」, 戸田十畝, 1887, 『明治建白沿革史』, 顔五堂 수록, 29~30쪽.

42)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茂木陽一·鶴卷孝雄 編, 1996, 『明治建白書集成』 第五卷, 筑摩書房, 805~807쪽.

2_ 1870년대 '건백서'의 동아시아 인식

건백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제출자들의 특징을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메이지건백서집성』 전9권에는 이제 막 탄생한 '국민'들이 사족과 평민의 구별 없이 당시의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생활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건백서가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그 제출자를 살펴보면 신정부의 官員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메이지건백서집성』을 편찬하는 과정에서 건백서 접수기관인 집의원·좌원·원로원에 제출된 것만이 아니라, 각 都府縣廳, 각 현립도서관, 문서관, 관련 개인소장 등의 건백서도 수집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⁴³⁾

하지만 이 글에서는 건백서 중에서 관원이 제출한 것을 제외하고 士族과 평민이 제출한 것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 글이 건백서를 분석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것이 '万機公論에 따라 결정한다'는 근대 일본 국가체제의 방침을 '국민'들이 실천한 기록들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이를 충족하는 건백서는 당연히 '官'이 아니라 '民'의 입장에서 제출된 것이기 때문이다.⁴⁴⁾

〈표 3〉은 1871년부터 1880년까지 제출된 건백서 중에서 대외문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 첫 번째 특징은 전체 건백서 중에서 대외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이다. 제일 많이 제출된 1874년이 전체 545건 중 53건으로 9.7%에 불과하고, 그다음으로 많은 1875년도 256건 중 19건으로 7.4%에 불과하며, 이 외에는 1건도 없거나(1876~1878) 있다고 해도 그 비중이 3%를 넘지 못한다. 물론 1876년 이후의 경우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43) 자료집 구성에 대해서는 각권에 실려 있는 色川大吉·我倍政男, 『明治建白書集成』 刊行にあたって, i 쪽 참조.

44) 건백서를 제출한 자들 중 상당수가 '사족'이라는 점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이라는 동일성 안에서 실제로는 분화되어 있는 계층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별도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건백서 제출자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자유민권운동이 초기에는 사족 민권이 중심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호농 민권으로 변화했듯이, 건백서 제출자도 사족에서 평민(주로 농민)으로 유사한 변화를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같이 좌원 대신 원로원이 설치되면서 건백서의 내용을 입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시킨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좌원이 건백서 제출을 장려했던 시기, 즉 타이완 침공이 실시된 1874년과 강화도사건이 발생한 1875년이 모두 10% 이하이고, 신정부 내부에서 정한론 정변이 발생한 1873년조차 그 비중이 2%도 되지 않을 정도로 대외문제와 관련된 건백서는 매우 적다. 이것은 1871년 폐번치현 이후 학제, 태양력 채용, 징병령, 지조개정 등 근대적 국가 체제 만들기와 관련된 법령들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국민'의 관심이 대외문제보다 상대적으로 국내문제에 집중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두 번째 특징은 그럼에도 대외문제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이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1868년 8월에 제출된 '外夷'=서양과의 교제에 관한 건백서를 제외하고는 조선·청·가라후토[樺太, 지금의 사할린]와 관련된 러시아·타이완·류큐왕국 등 모두 동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것은 1870년대 대외문제가 주로 동아시아 지역을 배경으로 발생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특징은 제출자의 구성에서 점차 官보다 民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외문제는 철저한 보안을 요하는 이른바 '국가비밀'에 속하는 것이기에 때문에, 정보를 입수하기 쉽고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위치에 있는 '관원'의 의견 제출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1873년에 관과 민이 3:3이었던 비율은 1874년에 16:37로, 1875년에 5:14로 민의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상대적으로 정보 입수와 정책 수립과는 거리가 있던 민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좌원의 처리 내용이 하나의 실마리를 제공해준다.

시라카와현[白川縣] 사족 나가에 고스케[長江剛介]의 건백서 2통을 審閱한 결과, 그 논지가 迂闊妄誕하여 채택할 내용을 찾아볼 수 없지만, 필시 忠實·愛國의 情으로 작성한 그 뜻을 가상히 여겨 本院(좌원을 의미함)에 보관해 놓고자 한다.⁴⁵⁾

45) 1874년 10월 15일, 【處理1】,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茂木陽一 編,

이것은 1874년 10월 13일에 시라카와현 사족 나가에 고스케가 제출한 ‘상서(청국정토 의견[淸國征討之議])’에 대한 좌원의 처리 내용이다. 여기에서는 건백서의 내용이 빈약하지만 제출자의 ‘충실·애국의 정’만은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제출된 대외문제에 관한 민의 건백서가 실효성이라는 事實(fact)의 측면이 아니라 ‘愛國之情’이나 ‘憂國之情’⁴⁶⁾이라는 心(mental)의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말해준다. 바꿔 말하면 민의 입장에서는 대외문제에 관한 건백서야말로 ‘국민’으로서의 ‘애국지정’이나 ‘우국지정’, 즉 애국심을 드러내는 최적의 수단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1871년부터 1880년까지 제출된 대외문제 관련 건백서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이제부터는 건백서가 가장 많이 제출된 1874년과 1875년을 중심으로, 여기에 나타난 ‘국민’의 ‘애국지정’·‘우국지정’과 동아시아 인식이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1874년 타이완 침공과 건백서

1871년 10월 타이완에서 발생한 류큐인 조난사건을 발단으로 하는 1874년 타이완 침공은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실시한 최초의 해외파병이다. 따라서 종래 연구에서는 타이완 침공을 아시아 각국에 대한 근대 일본의 팽창주의적 대륙정책의 출발점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 과정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류큐왕국을 일본에 귀속시키고 타이완 ‘生蕃’을 ‘化外’로 본다는 청 정부의 발언을 빌미로 삼아 타이완을 ‘無主地’로 규정하여 출병한 후, 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게 되자 청과 전쟁도 불사할 것을 결정하며 청을 압박하다가 결국 영국의 중재로 배상금을 받아내며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국가주권에 기초하는

1988, 『明治建白書集成』第四卷, 筑摩書房, 50쪽, <표 3>에서 1874년 건백서 번호 (387)이다.

46) 1874년 4월 23일, 【處理】,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 編, 1986, 앞의 책, 303쪽. 이것은 1874년 4월 22일, 磐前縣士族 佐藤政武, 「建言書(韓國處分之議)」에 대한 좌원의 처리내용이다. <표 3>에서 1874년 건백서 번호 (141)이다.

만국공법을 '힘의 논리'로 해석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처음 적용한 사례로 평가 받는다.⁴⁷⁾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본 정부의 타이완 침공에 대해 당시의 '국민'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

1874년 2월 6일 閣議에서 타이완 침공이 결정된 후, 4월 9일 타이완번지사 무도독[台灣番地事務都督]에 임명된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는 타이완으로 출발하기 위해 나가사키로 향했다. 하지만 같은 달 19일 타이완 침공이 일시 중지되었다가, 5월 4일 다시 침공이 결정되고 나서 사이고 일행은 타이완으로 출발하였다. 사이고 일행이 타이완에 상륙한 것은 5월 22일이다.

건백서 중 관의 입장에서 타이완 문제를 언급한 것은 청에 유학 중이던 사가현[佐賀縣] 사족 후쿠시마 규세이[福島九成]가 1873년 8월에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제출한 건백서이다.⁴⁸⁾ 이에 비해 민의 입장에서 타이완 문

47) 주요 연구로는 許世楷, 1965, 「台灣事件(1871~1874年)」, 日本國際政治學會 編, 『日本外交史の諸問題』Ⅱ, 有斐閣; 栗原純, 1978, 「台灣事件(一八七一~一八七四年)－琉球政策の轉機としての台灣出兵」, 『史學雜誌』第87編 第9號; 家近良樹, 1983, 「『台灣出兵』方針の轉換と長州派の反對運動」, 『史學雜誌』第92編 第11號; 石井孝, 1983, 「第1章 日本軍台灣侵攻をめぐる國際情勢」,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堂; 川畑惠, 1990, 「台灣出兵についての一考察」, 『沖繩文化研究』第16號; 張啓雄, 1992, 「日清互換條約において琉球の歸屬は決定されたか—一八七四年の台灣事件に關する日清交渉の再檢討」, 『沖繩文化研究』第19號; 小林隆夫, 1994, 「台灣事件と琉球處分1—ルジャンドルの役割再考」, 『政治經濟史學』第340號; 小林隆夫, 1994, 「台灣事件と琉球處分2—ルジャンドルの役割再考」, 『政治經濟史學』第341號; 一瀬啓恵, 1995, 「明治初期における台灣出兵政策と國際法の適用」, 『北大史學』第35號; 毛利敏彦, 1996, 『台灣出兵』, 中公新書; 後藤新, 2005, 「明治7年台灣出兵の一考察—台灣蕃地事務局を中心として」, 『法學政治學論究』第60號; 瀨縷厚, 2005, 「台灣出兵の位置と帝國日本の成立—萬國公法秩序への算入と日本軍國主義化の起點」, 『植民地文化研究』4; 土屋禮子, 2005, 「明治七年台灣出兵の報道について」, 明治維新史學會 編, 『明治維新と文化』, 吉川弘文館; 後藤新, 2007, 「台灣出兵と琉球處分—琉球藩の内務省移管を中心として」, 『法學政治學論究』第72號 등이 있다. 타이완 침공의 경과에 대해서는 이들 연구를 통해서 대부분 밝혀져 있다.

48) 1873년 8월, 佐賀縣士族(淸國留學生) 福島九成, 「淸國台灣事情ノ議」,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内田修道·牧原憲夫 編, 1990, 앞의 책, 801~803쪽, <표 3>에서 1873년 건백서 번호 (198)이다. 후쿠시마는 1871년부터 1873년까지 청에서 유

제가 언급되기 시작하는 것은 각의에서 타이완 침공이 결정되고, 4월 4일 타이완번지사사무도독이 설치된 이후이다.

그 첫 번째는 4월 7일에 제출된 아오모리현[靑森縣] 사족 나가오 요시쓰라[長尾義連]의 건백서이다. 여기에서 나가오는 다음과 같이 정부의 타이완 침공을 비판하고 있다.⁴⁹⁾

어리석은 臣이 時弊에 관한 어리석은 建論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타이완 問罪의 거사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여 이에 대해 논하고자 합니다. 첫째, 안[內]이 아직 일정하지 않으니 거사를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필시 물의를 일으켜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없게 만드니 타이완을 정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조선의 죄와 타이완의 죄 중 어느 쪽이 크겠습니까. 우리 國使를 능멸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음은 류큐인을 暴殺한 것과 동일하게 논할 수 없습니다. 크고 심각함을 뒤로 하고 내외의 구별을 바로하지 않으면 緩急과 本末의 적당함을 언지 못하여 義를 명확히 할 수 없습니다. [...] 넷째, 孤島 타이완의 야만 민중은 200만에 불과하여 아직 나라[國]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조선의 크고 강함을 피하고 작고 약한 것에 武를 보이는 것은 졸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릇 병사를 일으키는 것은 거액을 낭비하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익을 찾을 수 없으니 헛되이 국력을 피폐하게 만드는 가벼운 행동에 대한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 단연코 이번 거사를 중지하고 오로지 근래의 우려를 다스려서, 민과 상이 바라는 열국의 인민일치 協습의 기틀을 세우고, 완급과 본말을 바로 하여 우선 죽을 힘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조선에 집중하고, 남은 위력을 타이완 징벌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밑줄은 인용자)

이것은 각의에서 타이완 침공이 결정되었을 당시, 정한론 정변에서 外征에

학한 후, 1874년 타이완 침공 당시 타이완번지사사무도독 참모와 아모이[廈門] 영사를 겸임하였다.

49) 1874년 4월 7일, 靑森縣士族(東京府寄留) 長尾義連, 「建白(廟堂ノ弊害ヲ矯正シ 台灣ヲ伐ヘカラサル等之議)」,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 編, 1986, 앞의 책, 271쪽. <표 3>에서 1874년 건백서 번호 (124)이다.

반대했던 내각이 이제 와서 출병을 결정하면 '인심의 비난'을 면치 못한다며 반대했던 기도 다카요시[木戸孝允]의 의견과 동일한 논리라 할 수 있다.⁵⁰⁾ 즉 타이완 침공=征臺論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황국'을 능멸한 '조선의 죄'가 더 크다는 명분론에 입각하여 정부의 타이완 침공을 '졸렬'하다고 비판하고, 오히려 타이완이 아니라 조선을 침공해야 한다는 征韓論의 변형인 것이다.

이처럼 명분론에 입각하여 정부의 타이완 침공을 비판하는 논리는 타이완 침공을 반대하는 다른 건백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⁵¹⁾ 그 대부분은 '삼한정벌'의 신화를 근거로 조선을 조공국으로 보고 일본 국서의 수리를 거부하는 '무례'한 조선을 응징해야 한다는, '日本型 華夷意識'⁵²⁾에 기초한 '존왕론'이었다. 그 결과 이러한 논리는 정부가 타이완 침공을 결행한 만국공법의 논리, 즉 전통적 동아시아 지역질서 속에서 청과 사쓰마에 兩屬되어 있던 류큐왕국이 일본의 영토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타이완 '생변'을 '화외'로 본다는 청 정부의 발언이 타이완은 '無主地(청의 영토가 아니라는 것)'이고 국제법에서 '무주지'는 '先占'이 인정된다는 논리와 그 내용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처럼 '일본형 화이의식'에 기초한 '존왕론'은 청과의 교섭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7월 9일 정부가 청과 개전도 불사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이후, '황국의 존망'을 눈앞에 두고서 '의용병'으로 자원하거나 현금을 내겠다는 '우국

50) 日本史籍協會 編, 1967 복각, 『木戸孝允日記』 3, 東京大學出版會, 27쪽.

51) <표 3>에서 1874년 건백서 번호 (147), (233), (240), (267) 등이 있다. 이 외에 外征이 아니라 內政이 급선무라는 입장에서 정부의 타이완 침공을 반대하고 의회 건립을 주장한 건백서도 있다(167, 270).

52) '일본형 화이의식'은 '武威의 나라를 중핵으로 하는 尊大의 국제질서관'으로,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중반에 걸쳐 일본열도의 통일과정에 따른 질서재편과 명·청 교체라는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재편이 맞물려 만들어진 개념이다. 하지만 이케다 사토시[池田敏]에 따르면, '일본형 화이의식'은 17세기 이후 '무위'의 의례화 과정 속에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가 막부 말기의 洋夷운동을 통해서 다시 기능하기 시작하였고, 1870년대에 들어서 천황제 국가의 통제하에 '민중' 차원에서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池田敏, 2010, 「二. 日本型華夷意識」, 荒野泰典·村井章介·石井正敏 編, 『日本の對外關係6 近世的世界の成熟』, 吉川弘文館, 188~189쪽 참조.

의 同志'들의 건백서로 이어졌다.⁵³⁾

하지만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타이완 침공의 명분으로 삼았던 만국공범에 대해 언급하는 건백서도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9월 10일 제출된 시라카와현[白川縣]의 住職 사다 가이세키[佐田介石]의 건백서는 정부의 타이완 침공에 명분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征灣은 본래 류큐인 살해에서 시작되었다. 류큐인은 본래 청의 正朔(연호)을 받들고 책봉을 받은 지 오래이기 때문에 청의 屬國임은 이견의 여지가 없다. 때문에 류큐인 살해의 죄는 우리나라가 물을 것이 아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재작년에(류큐국왕을) 藩王에 책봉한 것을 이유로 청에게 말하면, 청 역시 류큐가 “우리의 책봉을 받은 지 오래되어서 우리 管下에 있다는 것을 귀국(=일본)도 아는 바이다. [...] 현재 베이징에는 류큐에서 파견된 在番인이 있다”며 우리나라를 책망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류큐가) 우리의 屬地임을 증명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것(=번왕 책봉)을 증거로 제시하며 류큐인이 귀국(=청)에게 거짓을 말하고 맘대로 귀국(=청)으로부터 책봉을 받았다고 한들, “(류큐가) 맘대로 그랬다는 것은 만국공범에 비취 보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냐”고 청이 대응하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러한 류큐에게 藩號를 수여한 것은 류큐인이 원해서인지, 아니면 일본이 강제로 한 것인지 청이 엄정히 질문하였을 때, 만약 청의 추궁에 못 이겨서 일본이 억지로 속여서 그런 것이라고 류큐인이 자수하면, 우리나라가 청의 屬地를 강탈한 것이 되어서, 征灣의 명분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청의 속지를 강탈한 죄를 면하기 어렵다(괄호 안 추가 설명은 인용자, 이하 동일).⁵⁴⁾

53) <표 3>에서 1874년 건백서 번호 (316), (326), (442), (525), (533), (545) 등이 있다.

54) 1874년 9월 10일, 白川縣 住職 佐田介石, 「建白(清國不可討之議)」,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 編, 1986, 앞의 책, 877쪽. <표 3>에서 1873년 건백서 번호 (332)이다. 승려인 사다 가이세키는 메이지 전기의 대표적인 국수주의자로서 국산장려와 외래품 배척을 주장하였다. 그중 램프 망국론이 유명하며, 이 외에도 철도 망국론, 牛乳大害論, 태양력 배척 등을 주장하며 愛國社·保國社 등과 같은 국산품 애용결사를 조직하였다. 日本歴史學會 編, 1981, 『明治維新人名辭典』, 吉川弘文館, 453~454쪽 참조.

여기에서는 정부가 만국공법에 근거하여 타이완 침공을 정당화했던 명분, 즉 류큐왕국은 일본의 '屬地'이므로 류큐인 보호는 자국민 보호라는 것에 대해, 역사적으로 류큐는 청의 책봉을 받는 '屬國'이므로 오히려 청이 만국공법에 근거하여 일본을 추궁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征灣'의 명분 없음을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청의 '책봉'을 근거로 류큐왕국을 청의 '속국', 즉 청의 영토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동아시아의 전통적 지역질서 = '책봉 · 조공관계'를 그대로 만국공법의 영토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책봉 · 조공관계'에서는 청과 의례상의 상하관계를 맺는다 해도 실제로는 청의 내정간섭을 전혀 받지 않았던 '속국'에 대해, 만국공법에 기초한 '영토'라는 개념을 적용하여 서양근대의 '속국'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다의 논리는, 류큐왕국이 사쓰마에 '隸屬'되어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일본 정부가 1872년 9월 14일 류큐번을 설치하고, 같은 달 28일 류큐번의 '각국과의 교제사무'를 의무성으로 이관하는 등 류큐왕국의 '兩屬'을 해소하고 근대적인 '속지' = 자국 영토로 만들려던 논리와 비교했을 때, 그 주체가 청이라는 것만 다를 뿐 동일한 논리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청 또한 일본의 타이완 침공 이후 1876년 11월에 류큐번에게 진공을 독촉하고,⁵⁵⁾ 1879년 4월 일본 정부가 류큐번을 폐하고 오키나와현[沖繩縣]을 설치하자 이를 승인하기 어렵다며 항의하는 등 마지막까지 류큐왕국과의 '책봉 · 조공관계'를 유지하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또한 오키나와현 설치 이후 일본이 류큐 諸島 중 미야코[宮古] · 야에야마[八重山]만 청에게 할양하는 대신 쌍무적인 최혜국대우 조항을 요구했을 때, 청이 그 교섭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양보하지 않았던 것은 '속국' 류큐왕국의 부활이었다.⁵⁶⁾ 이런 점에서 일본의

55) 1876년 11월 27일, 「清國から琉球藩への進貢督促狀」, 松田道之 編, 『琉球處分』 上卷, 横山學 責任編集, 1980, 『琉球所屬問題關係資料』 第6卷 琉球處分 上 · 中, 本邦書籍 수록, 390~393쪽.

56) 吉澤誠一郎, 2010, 『シリーズ中國近現代史① 清朝と近代世界 19世紀』, 岩波新書, 123쪽 참조. 청의 이홍장은 미야코 · 야에야마에 류큐왕국을 재흥시키려고 생

타이완 침공 이후 류큐에 대한 청의 입장 또한 단순히 ‘책봉·조공관계’에 입각한 ‘속지’ 개념에 머무는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청의 움직임이 일본과 동일하게 류큐왕국을 ‘속지’=자국 영토로 전환시키려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하지만 일본의 타이완 침공을 계기로 청에게는 영토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토 ‘안전’의 문제가 제기되었다고 할 수 있다.⁵⁷⁾ 이것은 아편전쟁 이후 서구열강이 가했던 위협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적어도 청의 입장에서는 ‘宗主國’과 ‘속국’이라는 ‘책봉·조공관계’를 통해 유지되어 오던 영토의 ‘안전’이 ‘속국’ 류큐왕국의 멸망으로 인해 동아시아 내부로부터 위협받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남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속국’ 베트남과 동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속국’ 조선의 존재는 청의 영토 ‘안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전의 청은 1873년 2차 사이공조약⁵⁸⁾과 1876년 조일수호조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879년에 ‘속국’ 류큐왕국이 일본 영토로 된 이후 1800년대에 들어서 청은, 베트남에 대해서는 프랑스와 전쟁을 하고 조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내정·외정 간섭과 함께 일본과 전면적인 대립을 하기 시작하였다. 베트남과 조선을 ‘속국’으로 유지하려는 이유가 근대적 국가개념의 자국 영토 ‘확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국 영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연장선상에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다.

각하였다. 하지만 류큐왕에 상정되어 있던 망명한 류큐왕족이 이들 섬만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하다며 분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청 내부에서 분할안에 반대 의견이 많아서 결국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청은 일본과의 외교교섭을 하는 자리에서 류큐의 귀속문제를 계속 언급하였다.

57) 岡本隆司, 「屬國/保護と自主-琉球・ベトナム・朝鮮」, 和田春樹・後藤乾一・木畑洋一・山室信一・趙景達・中野聰・川島眞 編, 2010, 앞의 책, 162쪽 참조.

58) 1862년 1차 사이공조약에 이어서 프랑스와 베트남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조약. 이 조약에 따라 프랑스는 베트남의 주권과 독립을 인정하는 대신, 베트남은 통킹만 일대의 세 항구를 개항했으며 프랑스 선박들은 베트남 항구에 자유롭게 정박할 수 있는 허가권을 받았다. 통상을 위해 홍하강을 개방하고 코친차이나의 6省去에 대한 프랑스의 주권을 인정해 주었다. 유인선, 2002,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85~287쪽 참조.

이런 의미에서 일본의 타이완 침공을 비판하면서 청이 '책봉·조공관계'의 '속국'을 만국공법에 기초한 자국 영토의 '안전' 확보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 필연적으로 일본과 대립할 수밖에 없음을 예견한 사다의 논리는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근대전환기적 특성을 예리하게 간파한 것이었다.

2) 1875년 강화도사건과 건백서

1875년 9월 20일 일본 군함 운요호[雲揚號]는 조선 해안을 탐측 연구하기 위해 왔다고 핑계를 대고 강화도 앞바다에 불법으로 침투하였다가 해안 경비를 서던 조선 수군의 방어적 공격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함포공격을 가하고 영종진에 상륙하여 조선 수군을 공격하고 퇴각하였다. 이른바 강화도사건이 발발한 것이다. 일본은 이 사건의 책임을 조선에 물으며 수교통상을 강요하였고, 그 결과 이듬해인 1876년 2월 26일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었다. 22년 전 미국의 페리가 일본을 개국시키기 위해 사용한 '함포외교'의 방식을 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킨 것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결과적으로 강화도사건은 일본이 개국과정에서 형성된 '굴욕'의 기억을 단번에 보상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일본 '국민'들은 강화도사건을 어떻게 인식하였을까.

강화도사건이 발생한 이후, 10월 3일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태정관 布達을 공포하였다.

이번에 우리 운요함[雲揚艦]이 조선국 동남해안을 廻艦한 후 서해안에서 支那(청을 의미함) 牛莊邊으로 향해하던 중 9월 20일 조선국 강화도 근처를 통행하다가 조선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砲發을 당했다. 이에 상륙하여 그 이유를 물어보려는데 조선국의 포발이 점점 늘어나 어쩔 수 없이 운요함도 발포하였다. 다음 날에는 상륙하여 포대를 점령하고 병기를 빼앗았다. 이 과정에서 우리 水夫(해군을 의미함) 2명이 부상을 당했고, (현재) 나가사키[長崎]로 회함한다는 전보가 있었으므로,

이를 포달하는 바이다.⁵⁹⁾

이 포달문은 10월 5일 ‘官令’으로 각 신문에 게재되었다.⁶⁰⁾ 일본 정부가 강화도사건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각 신문들은 다시 정한론과 非戰論으로 나뉘어 서로 논쟁을 시작하였다. 『유빈호치신문[郵便報知新聞]』·『도쿄니치니치신문[東京日日新聞]』·『초야신문[朝野新聞]』이 비전론을 주장한 데 비해, 『도쿄아케보노신문[東京曙新聞]』·『요코하마마이니치신문[横浜毎日新聞]』은 정한론을 주장하였다.⁶¹⁾ 비전론은 민권론과 내치우선의 입장에서 反정한론을 주장하였고, 정한론은 불평사족 대책과 자국의 명예회복을 위해 정한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²⁾

이렇듯 신문의 경우에는 정한론과 비전론의 논쟁이 있었지만, 건백서의 경우에는 오로지 정한론만 제출되었다.⁶³⁾ 제출 시기는 정부가 앞의 포달을 공포한 10월 한 달 동안 집중적이었으며, 제출자는 대부분 사족이다. 이것은 건백서 제출자들이 이른바 ‘정한파 壯士’임을 말해준다. ‘정한파 장사’들 대부분은 이미 ‘일본형 화의의식’에 기초한 ‘존왕론’의 관점에서 정부의 타이완 침공을 비판하는 건백서를 제출했던 자들과 동일한 인물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의 주장은 征臺論 대신에 제시되었던 정한론과 동일한 논리를 근저에 깔고 있다.⁶⁴⁾ 기

59) 1875년 10월 3일, 太政官布達 番外, 內閣官報局 編, 1890, 1975 복각, 『法令全書』 第八ノ一卷, 原書房, 864쪽.

60) 1875년 10월 5일, 『讀賣新聞』 朝刊, 1쪽.

61) 「1. 江華島事件を論ず(郵便報知新聞) 解題」, 芝原拓自, 1988, 앞의 책, 321쪽 참조.

62) 芝原拓自, 1988, 위의 책, 510~511쪽 참조.

63) <표 3>에서 1875년 건백서 번호 (209), (213), (216), (217), (218), (225), (228), (240), (247), (253), (256)이다.

64) 정부의 타이완 침공을 비판하면서 직접적으로 정한론을 제시한 건백서로는 1874년 4월 22일, 磐前縣士族 佐藤政武, 「建言書(韓國處分之議)」, 色川大吉·我部政男監修, 牧原憲夫 編, 1986, 앞의 책, 301쪽이 있다. <표 3>에서 1874년 건백서 번호 (141)이다. 여기에서는 “朝廷의 뜻이 征韓을 결정하지 않는 것은 타이완이 우리 류큐선을 살육한 것과 조선이 우리 天使를 거부한 것 중 어느 쪽의 죄가 무겁고 가버

본적으로 여기에는 “小邦인 조선이 우리 上國을 輕侮”하는 ‘무례’를 범하고 있다는 조선 멸시관이 근거에 호르고 있는 것이다.⁶⁵⁾

하지만 강화도사건을 계기로 기존의 조선 멸시관은 이전에 국서를 거부당했을 때와 그 내용을 약간 달리한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한의 논리가 제시되고 있다.

조선은 원래 우리의 속국이다. 그런데 근래에는 조공을 끊고 우리 國使를 여러 차례 능멸하더니 이번엔 暴擧를 일으켰다. [...] 조선이 무지몽매하여 천지의 公道를 알지 못하고 오늘의 失體에 빠졌다. [...] 바라건대 廟堂(조정을 의미함)은 공의를 존중하여 신속히 使節을 파견하고, 이로써 조선의 暴慢과 不正을 규탄하고 乾坤의 公道를 실천하여 부디 속국의 명분을 잃지 않도록 한다. [...] 본래 천지의 公道에 입각하여 조치한다는 것은 만국공법을 적용하는 것이다.⁶⁶⁾

여기에서는 ‘일본형 화이질서’에 기초하여 조선을 ‘원래 우리의 속국’으로 규정하면서도, ‘이번의 폭거’=강화도사건에 대해서는 ‘천지의公道’=만국공법을 알지 못하여 일으킨 것이므로 ‘조선의 폭만과 부정을 규탄하고 건곤의公道’를 실천하기 위한 征韓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로 하여금 자주와 자립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천황폐하의 머리 위로 무한의 汚辱을 떨어뜨리는 것”⁶⁷⁾이라는 격한 반응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으로부터 생각지도 못한 砲發

은지, 그 죄가 가벼운 타이완을 정벌하고 그 죄가 무거운 조선을 정벌하지 않는 것은 사람들이 겁을 먹었다고 말한다”며 정부의 征台論을 비판하고 있다. 이 외에도 1874년 건백서 번호 (188), (233) 등이 있다.

65) 1875년 10월 9일, 石川縣士族 島田幸一 외 4명, 「請征韓ノ建議」,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茂木陽一 編, 1988, 앞의 책, 931쪽. <표 3>에서 1875년 건백서 번호 (213)이다.

66) 1875년 10월 28일, 岡山縣士族 森澤德夫, 「征韓ノ議」,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茂木陽一 編, 1988, 위의 책, 949~950쪽. 밑줄은 인용자. <표 3>에서 1875년 건백서 번호 (225)이다.

67) 1875년 10월 10일, 白川縣士族 有馬源內 외 3명, 「征韓先鋒ヲ乞フ議」,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茂木陽一 編, 1988, 위의 책, 936쪽. 강조는 인용자. <표 3>에서 1875년 건백서 번호 (216)이다.

을 당했다’는 사실은 만국공법에 의거하여 일본 국가의 ‘자주와 자립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에 속하는 것이지, 더 이상 ‘일본형 화이질서’에 입각한 ‘무례’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가 강화도사건을 계기로 만국공법에 기초한 배상문제를 제시하며 조선과 일본의 국교 교섭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강화도사건에 대한 ‘민’의 건백서는 여전히 ‘일본형 화이질서’에 입각한 조선 멸시론을 유지하면서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조일수호조규의 방향성 또한 的確하게 제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II.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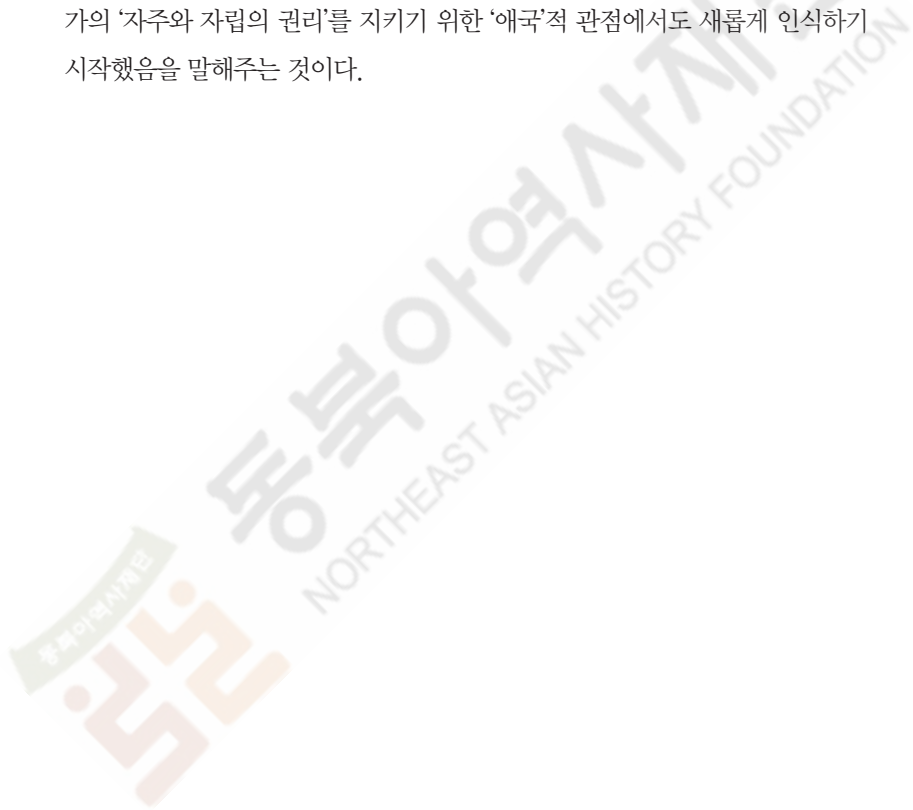
이상, 1870년대에 제출된 건백서를 대상으로 하여 근대전환기의 일본 ‘국민’이 어떻게 동아시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알아보았다.

우선 근대 일본 국가체제 성립기의 건백서가 지니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건백서는 ‘공의여론’을 자신의 정당성 중 하나로 선언한 신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로 마련한 것이었다. 둘째, 좌원의 건백서 정책은 다양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국정 참여를 권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건백서는 적극적으로 ‘국정’에 개입하려는 능동적인 ‘국민’의 탄생을 보여주는데, 아래로부터 ‘愛國’을 표상하는 장치가 되었다. 그 결과 건백서는 정부의 입장에서든 ‘국민’의 입장에서든 ‘국민참정’의 유력한 수단으로 기능하면서 1875년까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셋째, 하지만 좌원 대신 설치된 원로원이 1876년에 입법과 관련된 건백서 이외에는 받지 않겠다는 규정을 제정한 결과, 국회 개설 청원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1880년까지 건백서 제출 수는 격감하였다.

한편 1875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는 1873년 정한론 정변, 1874년 타이완 침

공, 1875년 강화도사건 등이 연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민'의 건백서가 다수 제출되었다. 여기에서는 '책봉·조공관계'에 입각하여 조선의 '무례'를 지적하던 기존의 논리와 다른, 근대적 영토개념 확립을 정당화하는 만국공법에 입각하여 조선의 '불법'을 지적하는 논리가 새롭게 제시되었다. 이것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일본 '국민'이, 조선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일본의 관계를 전통적인 '일본형 화이질서'만이 아니라, 일본 국가의 '자주와 자립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관점에서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표 1〉 1870년대 주요 사건 연표(1872년까지는 음력 표기)

1868년 12월 19일	사쓰마번[對馬藩] 家老 히구치 데쓰시로[樋口鐵四郎]가 부산에 도착하여 신정부 성립 통고서 제출, 조선은 접수 거부(서계논쟁 시작)
1869년 3월 7일	도쿄[東京]에 公議所 설치
3월 12일	도쿄성[東京城]에 待詔局 설치
5월 18일	보신전쟁[戊辰戰爭] 종결
6월 17일	판적봉환
6월 24일	러시아가 가라후토[樺太, сахалин]의 하코도마리[函泊]를 점령하고 병영과 진지 구축
12월 3일	기도 다카요시[木戶孝允]를 청·조 전권대사로 임명
12월 24일	外務大丞 마루야마 사쿠라[丸山作樂], 가라후토 하코도마리에서 러일관계 조정 교섭
1870년 2월 13일	가라후토 개척사 설치
2월 14일	외무경 사와 노부요시[澤宣嘉], 미 공사 데롱에게 가라후토 국경문제 알선 요청
2월 22일	외무성 출사 사다 하쿠보[佐田白芽] 부산 초량공관 도착(국서 접수 교섭, 조선 응하지 않음)
5월 28일	공의소 대신 集議院 설치
6월 29일	外務省 權大丞 아나기와라 사키미쓰[柳原前光]에게 수교 교섭을 위한 청국 파견 명령
8월 9일	아나기와라 사절단 상해로 출발, 9월 4일 텐진[天津] 도착
9월 18일	요시오카 고키[吉岡弘毅]의 조선 파견(11월 3일, 부산 초량왜관 도착)
1871년 3월 22일	外務省 權大丞 마루야마 사쿠라[丸山作樂] 征韓 음모로 구금
4월 27일	대장경 다테 무네타라[伊達宗城]를 흠차전권대사로 조약교섭을 위해 청으로 파견결정(5월 17일 출발, 6월 7일 텐진 도착)
5월 10일	외무성, 청일공수동맹 체결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는 성명 발표
7월 14일	폐번치현
29일	이즈하라 번지사 소 시게마사[宗重正]를 외무대승에 임명 텐진에서 청일수호조규·통상장정·해관세칙 조인, 조규 제2조 문제화 (1873년 4월 30일 비준서 교환)
10월 18일	타이완[台灣]에서 류큐인[琉球人] 조난사건 발생
1872년 5월 23일	메이지 천황 西國巡幸 (7월 12일 귀경)

1872년	5월 28일	조선 초량 공관사무를 소[宗] 씨로부터 이관하여 외무성의 소관으로 삼음
	30일	大藏大輔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의 '류큐처분[琉球處分]' 건의서
	6월 7일	류큐인 생존자 나하[那覇] 귀환
	7월 28일	가고시마현[鹿兒島縣] 縣參事 오야마 쓰나요시[大山綱良] 征台 주장
	8월 3일	학제 발포
	18일	외무대승 하나부사 요시토모[花房義實] 일행 조선 파견(森山茂 · 廣津弘信)
	9월 14일	류큐사신 도쿄 도착, 류큐번왕[琉球藩王]을 華族에 임명
	16일	하나부사 일행 왜관 도착, 왜관 불법 점거(22일 철수)
	28일	류큐번[琉球藩]의 '각국과의 교제사무'를 외무성으로 이관
	11월 9일	태양력 채용
28일	징병령 발포	
1873년	3월 13일	특명전권대사 소에지마 다네오미[副島種臣]가 청일수호조규 비준 교환과 同治帝 친정을 경하하기 위해 북경으로 출발(7월 26일 소에지마 귀국)
	4월 30일	텐진에서 이홍장 등 청 측 대표와 조규비준서 교환(5월 7일 北京 도착) (황제 알현 예의를 둘러싼 의견대립)
	5월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의 가라후토[樺太] 포기 건의
	6월 21일	청의 총리아문에서 타이완[台灣] · 류큐[琉球] 문제 거론
	29일	특명전권대사 소에지마 三揖의 예로 청국 황제 알현, 국서 제출
	7월 28일	지조개정 조례 포고
	8월 3일	參議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 각의에서 정한을 결정하라는 의견서 제출
	17일	각의에서 사이고의 조선 파견 결정
	10월 15일	각의에서 다시 사이고의 조선 파견 결정
	17일	기도, 오쿠보, 오쿠마, 오키 등 사이고 파견을 반대하며 사표 제출
	24일	조선 파견 무기 연기, 사이고 사직
	25일	소에지마, 고토 쇼지로, 이타가키, 에토 신페 등 사직
	10월 28일	외무경 데라지마 무넨노리[寺島宗則](~1879년 9월 10일)
12월 3일	러시아 임시대리공사 하나부사 취임(12월 9일 출발)	
1874년	1월 12일	에노모토 다케아키[榎本武揚] 해군 중장 및 러시아 전권공사 임명 (결정은 10일)
	14일	정한파 高知縣 土族 다케이치 구마키치[武市熊吉] 등이 이와쿠라 [岩倉]를 피격
	17일	민선의원설립건백서 제출

1874년	1월 21일	러시아 임시대리공사 우라로스키가 치시마[千島]·가라후토[樺太] 교환을 외무경 데라지마에게 제의
	2월 4일	에토 심페이[江藤新平] 등 사가[佐賀]에서 반란(3월 1일 반란진압)
	6일	타이완 침공 각의 결정
	4월 4일	타이완번지사무도독[台灣番地事務都督] 설치
	9일	사이고 쓰구미치[西郷從道]를 타이완번지사무도독에 임명, 타이완으로 출발
	19일	타이완 침공 중지 결정. 나가사키[長崎]에서 사이고 쓰구미치가 강력히 반발
	5월 4일	타이완 침공 다시 결정(5월 17일 나가사키 출발, 22일 타이완 상륙)
	6월 4일	청의 총리아문으로부터 영토침범이라는 통보를 받음
	10일	에노모토 다케이키 페테르부르크 도착
	7월 9일	태정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하여 청과의 개전도 불사할 것을 결정
	12일	류큐번의 관할을 외무성에서 내무성으로 이관
	8월 1일	전권변리대신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가 타이완 문제 교섭을 위해 청으로 파견 결정 (8월 6일 도쿄 출발, 9월 10일 北京 도착)
	9월 14일	오쿠보가 恭親王과 타이완 문제 교섭 개시
	10월 31일	타이완 문제 타결(日淸兩國間交換條款及互換馮章 조인)
	11월 13일	타이완 파견 군대 철수 명령
	14일	주러 공사 에노모토의 러일국경 획정교섭 시작(~1875년 3월 24일)
	26일	오쿠보 도시미치 등 청에서 귀국
1875년	2월 11일	오사카회의
	22일	立志社, 각지의 자유민권 政社에 호소, 애국당 결성
	4월 14일	점차 입헌정체를 수립한다는 조서 발표
	5월 7일	'樺太千島交換條約及び付屬文書' 조인(8월 22일 비준서 교환)
	25일	군함 운요호[雲揚號] 부산에 입항(조선 방문 중인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의 교섭원조와 조선 위협을 위해)
	6월 28일	참방률·신문지조례 제정
	9월 20일	강화도사건 발생
	12월 9일	개척장관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淸隆]를 특명전권변리대신에 임명하여 조선에 파견
	27일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 조선 파견 결정(1876년 1월 6일 도쿄 출발)
1876년	2월 26일	조일수호조규 조인(3월 22일 비준서 교환)
	5월 17일	류큐번의 재판관·경찰권을 내무성 소속으로 함.
	10월 24일	神風連의 난 발생
	28일	오기[荻]의 난 발생

1876년 12월 19일	미에현[三重縣] 伊勢暴動 * 1875년부터 1876년에 걸쳐 사족 민권파의 급진적인 정치평론 잡지 다수 발행됨
1877년 1월 4일	지조 감면 조서 발표
30일	서남전쟁 발발(~9월 24일 서남전쟁 종결)
6월 12일	정부, 立志社 총대 가타오카 겐키치[片岡健吉]의 국회개설 건백서 각하
1879년 3월 11일	류큐번왕에게 폐번치현 통보, 번왕의 도쿄 거주 명령
4월 4일	류큐번[琉球藩]을 폐하고 오키나와현[沖縄縣]을 설치
5월 20일	청국 공사, 류큐의 폐번치현은 승인하기 어렵다며 항의
27일	외무경 테라지마는 내정 간섭이라며 거부
7월 3일	류큐 귀속문제에 대한 청일 간 조정을 위해 미 대통령 그랜트 일본 방문 * 전국적으로 政談 연설회가 활발하게 개최됨
1880년 3월 15일	애국사 제4회 대회 개최(3월 17일 국회기성동맹 결성, 국회개설청원서 제출)
10월 21일	駐淸公使 시시도[宍戸], 청과 류큐 분할·최혜국대우에 관한 조약안 議定
11월 11일	이홍장, 조약반대를 청 황제에게 上奏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표 2〉 1870년대 연도별 건백서 제출 수

연월	개수	연월	개수	연월	개수	연월	개수	연월	개수
1868년 ⑨	1월 1	1873년 ②	1월 30	1878년	1월 0	1883년 ⑦	1월 9	1888년	1월 12
	2월 2		2월 37	2월 2	2월 8		2월 6		
	3월 2		3월 26	3월 0	3월 11		3월 4		
	4월 8		4월 30	4월 0	4월 12		4월 0		
	5월 24		5월 36	5월 0	5월 11		5월 3		
	6월 5		6월 10	6월 0	6월 13		6월 1		
	7월 18		7월 12	7월 0	7월 6		7월 2		
	8월 11		8월 19	8월 5	8월 9		8월 0		
	9월 17		9월 14	9월 1	9월 3		9월 0		
	10월 10		10월 33	10월 1	10월 9		10월 0		
	11월 11		11월 36	11월 2	11월 13		11월 0		
	12월 5		12월 33	12월 2	12월 19		12월 1		
	불명 5		불명 16	불명 2	불명 4		불명 4		
합계 119	합계 332	합계 15	합계 127	합계 33					
1869년	1월 3	1874년 ①	1월 42	1879년	1월 2	1884년 ⑧	1월 8	1889년	1월 1
	2월 8		2월 33		2월 4		2월 14		2월 2
	3월 12		3월 42		3월 9		3월 8		3월 2
	4월 7		4월 43		4월 4		4월 11		4월 4
	5월 15		5월 31		5월 4		5월 8		5월 3
	6월 14		6월 37		6월 2		6월 3		6월 0
	7월 5		7월 32		7월 4		7월 8		7월 4
	8월 5		8월 59		8월 3		8월 14		8월 13
	9월 6		9월 48		9월 4		9월 14		9월 16
	10월 3		10월 60		10월 2		10월 8		10월 19
	11월 3		11월 47		11월 17		11월 10		11월 10
	12월 6		12월 50		12월 28		12월 15		12월 4
	불명 14		불명 21		불명 3		불명 2		불명 9
합계 101	합계 545	합계 86	합계 123	합계 87					

1870년	1월	2	1875년 ③	1월	11	1880년 ⑤	1월	35	1885년 ⑩	1월	15	1890년	1월	4
	2월	2		2월	9		2월	19		2월	19		2월	4
	3월	2		3월	14		3월	14		3월	8		3월	2
	4월	8		4월	25		4월	18		4월	6		4월	5
	5월	5		5월	33		5월	9		5월	9		5월	3
	6월	2		6월	46		6월	13		6월	20		6월	3
	7월	7		7월	20		7월	17		7월	10		7월	7
	8월	4		8월	15		8월	11		8월	5		8월	2
	9월	10		9월	29		9월	15		9월	6		9월	2
	10월	2		10월	31		10월	19		10월	5		10월	2
	11월	6		11월	15		11월	24		11월	5		11월	1
	12월	5		12월	4		12월	20		12월	2		12월	1
	불명	2		불명	4		불명	3		불명	3		불명	2
합계	57	합계	256	합계	217	합계	113	합계	38					
1871년	1월	5	1876년	1월	4	1881년	1월	7	1886년	1월	4	* 대상은 1890년 제국의회가 개설 되기까지이다. * 제출수 상위 10 ① 1874년 ② 1873년 ③ 1875년 ④ 1872년 ⑤ 1880년 ⑥ 1882년 ⑦ 1883년 ⑧ 1884년 ⑨ 1868년 ⑩ 1885년		
	2월	2		2월	7		2월	5		2월	3			
	3월	4		3월	8		3월	11		3월	2			
	4월	7		4월	4		4월	1		4월	3			
	5월	0		5월	4		5월	7		5월	0			
	6월	3		6월	5		6월	5		6월	0			
	7월	4		7월	3		7월	6		7월	0			
	8월	5		8월	3		8월	5		8월	1			
	9월	6		9월	4		9월	13		9월	0			
	10월	0		10월	8		10월	20		10월	0			
	11월	4		11월	7		11월	9		11월	0			
	12월	4		12월	10		12월	10		12월	3			
	불명	2		불명	1		불명	2		불명	3			
합계	46	합계	68	합계	101	합계	19							
1872년 ④	1월	7	1877년	1월	8	1882년 ⑥	1월	15	1887년	1월	0			
	2월	15		2월	2		2월	10		2월	3			

1872년 ④	3월	14	1877년	3월	4	1882년 ⑥	3월	15	1887년	3월	3
	4월	13		4월	4		4월	12		4월	1
	5월	18		5월	2		5월	17		5월	1
	6월	20		6월	5		6월	13		6월	1
	7월	19		7월	3		7월	10		7월	1
	8월	20		8월	2		8월	11		8월	3
	9월	26		9월	1		9월	18		9월	9
	10월	28		10월	0		10월	3		10월	10
	11월	37		11월	2		11월	6		11월	23
	12월	0		12월	0		12월	14		12월	13
	불명	6		불명	1		불명	4		불명	6
	합계	223		합계	34		합계	148		합계	74

〈표 3〉 1870년대에 제출된 대외문제 관련 건백서

연도(비율)	제출일 및 제출자	내용
1868년 (3/119, 2.5%)	(6) 閏 4월 6일, (對馬侍從) (69) 8월, (美濃國十津川仕處土市園正藏) (106) 11월, (熊本縣) 嘉悅市之進 등 16명	朝鮮國交際之儀 外表御交際之儀他十一箇條建言 國威發揚に關する建白書
1869년 (1/101, 1%)	(96) 불명, 古賀十郎	攘夷決行ニ付建言
1872년 (2/223, 1.3%)	(109) 8월 3일, 美々津縣士族 (東京府寄留) 乾滿昭 (223) 불명 島恒晁	朝鮮國ノ條奉建言 時務建言書
1873년 (6/332, 1.8%)	(15) 1월, 東京府商 市川農夫也 (198) 8월, 佐賀縣士族(清國留學生) 福島九成 (227) 10월 17일, 茨城縣大屬 大沼涉 (237) 10월 29일, 茨城縣參事 關新平, 同縣權參事 小關敬直 (238) 10월 30일, 長崎縣士族 岩崎吉郎, 同(東京府寄留) 岩崎田實也 (279) 11월, 宮崎縣士族神官 乾滿昭	朝鮮國ノ景況ヲ憂ヒ徵兵令ヲ議ス 清國台灣事情ノ議 露國問罪出兵ノ議 樺太州ノ儀ニ付建白 韓國處分之議 朝鮮國ノ條奉建言
1874년 (53/545, 9.7%)	(4) 1월 11일, 外務省七等出仕 森山茂 (16) 1월 20일, 開拓使五等出仕 西村貞陽 (44) 2월 3일, 宮城縣士族(東京府寄留, 文部省八等出仕) 大槻文彦 (49) 2월 9일, 白川縣士族 宮崎眞郷, 森川尙村, 池松豊記 (56) 2월, 北條縣平民 吉岡弘毅 (57) 2월 21일, 福岡縣士族同志 (69) 2월, 青森縣出仕 矢附蘇修 (76) 3월 2일, 靜岡縣士族 伴野盛發 (77) 3월 4일, 敦賀縣士族 (任職兼中講義) 島津義禎 (111) 3월, (長崎縣士族) 岩崎田實也 (113) 3월, 外務省七等出仕 森山茂 (124) 4월 7일, 青森縣士族(東京府寄留) 長尾義連 (126) 4월 8일, 左院三等議官 宮島誠一郎 외 6명 (132) 4월 13일, 岩手縣士族 長澤勇次郎 (141) 4월 22일, 磐前縣士族 佐藤政武 (147) 4월 25일, 石川縣士族 草薙尙志, 陸義猶 등 19명 (148) 4월, 左院三等議官 宮島誠一郎 외 5명 (150) 4월, 左院五等議官 馬屋原彰	朝鮮國交通維持之方法ニ付上申候 征韓ノ議 樺太島ノ議建言 建言(征韓之議) 建議(征韓不可等ノ議) 佐賀縣征韓黨ノ表情ヲ問フヘキノ議 九州鎮撫, 台灣朝鮮出兵ノ議 建言書(西陲暴動處置之議) 建言(暴舉之賊徒處分之議) 韓國說諭ノ議 琉球藩改革之議 建白(廟堂ノ弊害ヲ矯正シ台灣ヲ仗 ヘカラサル等之議) 台灣處分之議演舌書 上[台灣從軍ノ議] 建言書(韓國處分之議) 聞止台灣之舉之說論其得失議 上(台灣處分之議) 台灣策一道

(167) 5월, 置賜縣士族 宇加地新八	建言書(台灣不可伏竝議院ヲ設ル之議)
(188) 5월, 新川縣平民屠商 (東京府寄留) 正村弥市	富強及征韓之議
(207) 6월 23일, 蕃地事務局 大藏少丞 岩橋輶輔, 外務少丞 平井希昌	[台灣處分ノ議]
(233) 7월 5일 高知縣士族(陸軍士官學校生徒) 弘田貫二郎, 廣瀨爲興	建言一通[兵備を更張する等の議]
(240) 7월 10일, 高知縣士族(東京府寄留) 弘田貫二郎, 廣瀨爲興	建言[日清ノ和戰ヲ決ス可キ等ノ議]
(254) 7월 29일, 栃木縣(東京府寄留) 正七位 大屋祐義	建白(政體及征韓之再議)
(267) 8월 9일, 岡山縣士族 關新吾, 小松原英太郎, 山脇巍 등 9명	呈左院諸公閣下書[台灣事件兵裁有害ノ議]
(270) 8월, 置賜縣士族 宇賀地新八	建言[議院創立, 支那交際等ノ議]
(298) 8월 19일, 千葉縣農(東京府寄留) 布治歸一郎	(淸國和解之議)
(316) 8월, 敦賀縣士族(大坂府寄留) 脇屋至誠	時務鄙見(支那征討之議)
(324) 9월 9일, 左院御用掛 兒玉淳一郎	上啓(支那交際之議)
(326) 9월 9일, 栃木縣士族 星野磋玖磨, 木呂子退藏(212명 惣代)	建白(支那交戰之議)
(332) 9월 10일, 白川縣 住職 佐田介石	建白(淸國不可討之議)
(335) 9월 13일, 新川縣平民(東京府寄留) 正村弥市	(舉士族支那可伐之議)
(359) 9월, 高知縣士族 岡部隼太, 黒田兆亮	[日淸開戰及ビ憲法確立ノ議]
(365) 9월, 佐賀縣士族 馬渡作二郎	方今台灣ノ事件ニ付淸國ト對接スル方略如何ヲ陳スル略說
(373) 10월 5일, 兵學寮十五等出仕 宮田仲秀	[官吏ヲ黜陟シ淸國ノ狀況ヲ周知スヘキノ議]
(374) 10월 5일, 千葉縣平民 小倉和平	建言(外征ヲ緩ニシ國力ヲ養ウ之議)
(378) 10월 8일, 度會縣士族(東京府寄留) 權中教正 浦田長民, 鳥取縣士族(東京府寄留) 權少教正 勝田靜男	(淸國ノ軍務御親裁之議)
(384) 10월 10일, 白川縣士族(東京府寄留) 長江剛介	上書(和戰之議)
(387) 10월 13일, 白川縣士族(東京府寄留) 長江剛介	上書(淸國征討之議)
(388) 10월 13일 茨城縣士族 手塚壽雄	支那一件建白書
(393) 10월, 白川縣士族(東京府寄留) 長江剛介	(和戰之再議)
(398) 10월 19일, 千葉縣士族(東京府寄留) 名倉信敦	(淸國交際上之議)
(408) 10월, 左院等外一等出仕 三浦成弁, 同十四等出仕 早田勝倫	上(支那處分之議)
(410) 10월 24일, 千葉縣小學校員 依田千柄	建白書(支那和戰之議)
(424) 10월, 大坂府士族 秋山武安	(支那和戰及軍隊ヲ設クル之議)
(435) 11월 4일, 開拓使 松尾源太郎, 新田大助 등 31명	[淸國從軍ノ議]
(439) 11월 7일, 千葉縣士族(東京府寄留) 名倉信敦	戰備之略議

	(442) 11월, 廣島縣平民(陸軍兵學校生徒) 井上穎雄 (455) 11월 18일, 東京府平民 横瀬文彦 (525) 불명 <石川縣土族> 藤寛正 등 54명 (531) 불명 秋田縣官員 内村 (533) 불명 浜松縣土族 田中安國 (545) 불명 長沼良之助	支那事件ニ付子先建白 征台始末ニ付建言 [清國從軍ノ議] [日清間ノ事情ヲ公告スベキノ議] [支那事件ニ付獻金ノ議] [清國從軍ノ議]
1875년 (19/256, 7.4%)	(12) 2월 2일, 栃木縣土族 大屋祐義 (13) 2월 7일, 陸軍少尉 内山定吾 (171) 8월, 長崎縣土族 岩崎吉郎 외 5명 (188) 9월 18일, 栃木縣土族 大屋祐義 (205) 10월 3일, 佐賀縣權中屬 小島正一 외 2명 (206) 10월 5일, 佐賀縣中屬 島義之 (209) 10월 7일, 栃木縣土族 大屋祐義 (213) 10월 9일, 石川縣土族 島田幸一 외 4명 (216) 10월 10일, 白川縣土族 有馬源内 외 3명 (217) 10월 12일, 白川縣土族 松浦新吉郎 (218) 10월 12일, 秋田縣土族 遠山角助 (225) 10월 28일, 岡山縣土族 森澤徳夫 (228) 10월, 長崎縣土族總代 岩崎田實也 외 30여 명 (232) 10월, 陸軍大尉 横田乘 (240) 11월 13일, 愛知縣 小崎吉郎 (247) 11월 30일, 新川縣土族 立石包正 (249) 12월 5일, 陸軍少將 谷干城 (253) 불명, 佐賀縣土族 稲垣速見 (256) 불명, 栃木縣土族 大屋祐義	建白(征台ノ役等ノ議) (朝鮮ノ無禮ヲ責ムルノ議) 建言(朝鮮國處分ノ議) [征韓ノ議建白] 朝鮮國問罪ノ儀ニ付建議 征韓之儀ニ付建議 建白(征韓ノ議) 請征韓ノ建議 (征韓先鋒ヲ乞フ議) 上書(征韓ノ議) 全國ヲシテ五州ノ時務ニ奮勵セシム ヘキ建言 (征韓ノ議) 韓地之事ニ付願書 同志ニ代リ征韓竝從軍ノ議ヲ建言ス 征韓建言 [征韓ノ議] (朝鮮問罪ニ付建議) 上(征韓ノ議) [征韓ノ議ニ付板垣退助ヘ忠告]
1879년 (1/86, 1.2%)	(22) 5월 12일, 長崎縣土族 (岡山縣寄留) 岩崎吉郎	朝鮮國エ招魂祭場ヲ御設立アラント トヲ建言スル書
1880년 (1/217, 0.5%)	(181) 11월 20일, 在天津領事 竹添進一郎	[琉球處分一件ニ付意見書]

- 주1) 『明治建白書集成』 第一卷, 第二卷, 第三卷, 第四卷, 第五卷, 第六卷을 참고로 작성하였다.
 주2) 제출일과 제출자의 번호 ()는 『明治建白書集成』의 연도별 사료번호이다.
 주3) 밑줄은 官員의 신분으로 제출된 건백서이다. 단, 外務權少丞을 역임한 요시오가 고키[吉岡弘毅]와 1870년 청일수호조규 예비교섭에 수행했던 나쿠라 노부이쓰[名倉信毅]와 같이 건백서를 제출할 당시는 퇴직한 상태일 경우에는 민이 제출한 건백서로 계산하였다.

참고문헌

〈차 사료〉

-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内田修道 編, 2000, 『明治建白書集成』 第一卷, 筑摩書房.
-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内田修道·牧原憲夫 編, 1990, 『明治建白書集成』 第二卷, 筑摩書房.
-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 編, 1986, 『明治建白書集成』 第三卷, 筑摩書房.
-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牧原憲夫·茂木陽一 編, 1988, 『明治建白書集成』 第四卷, 筑摩書房.
-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茂木陽一·鶴卷孝雄 編, 1996, 『明治建白書集成』 第五卷, 筑摩書房.
- 色川大吉·我部政男 監修, 鶴卷孝雄 編, 1987, 『明治建白書集成』 第六卷, 筑摩書房.
- 松田道之 編, 『琉球處分』 上卷, 横山學 責任編集, 1980, 『琉球所屬問題關係資料』 第6卷 琉球處分 上·中, 本邦書籍 수록.
- 芝原拓自·猪飼隆明·池田正博 編, 1988, 『日本近代思想大系12 對外觀』, 岩波書店.

〈연구논저〉

- 권혁수, 2007,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 해안.
- 김민규, 2002,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청일수호조규(1871년) - '조규체제'의 생성」, 『대동문화연구』 제41집.
- 김민규, 2002, 「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용과 조선 - '조규체제'의 성립과 와해」, 한국사연구회 편, 『한국사의 국제환경과 민족문화』, 경인문화사.
- 김민규, 2006, 「조규? 조약!」, 『역사비평』 75.
- 박삼헌, 2004, 「명치초년에 있어서 地方官會議의 성격」, 『日本言語文化』 第25輯.
- 박삼헌, 2006, 「1874년 지방관회의 준비와 左院의 역할」, 『일본학보』 제69집.
- 박삼헌, 2010, 「메이지초년 태정관문서의 역사적 성격」, 동북아역사재단 편, 『독도·울릉도 연구 - 역사·고고·지리학적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 吉澤誠一郎, 2010, 『シリーズ中國近現代史① 清朝と近代世界 19世紀』, 岩波新書.
- 牧原憲夫, 1990, 『明治七年の大論争 - 建白書から見た近代國家と民衆』, 日本經濟評論社.
- 三谷博·竝木頼壽·月脚達彦 編, 2009, 『大人のための近現代史 19世紀編』, 東京大

學出版會.

石井孝, 1983, 『明治初期の日本と東アジア』, 有隣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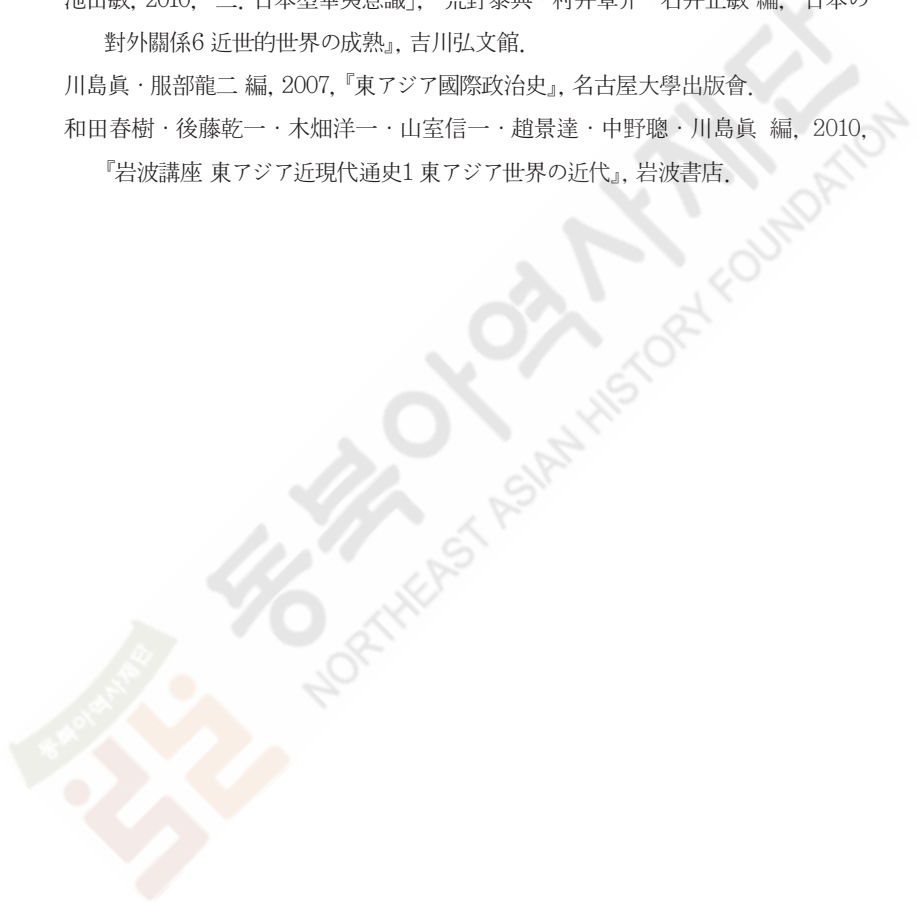
柴田和夫, 1974, 「國立公文書館所藏明治初期建白書について」, 『北の丸』2號.

紙屋敦之, 2003, 『日本史リブレット43 琉球と日本・中國』, 山川出版社.

池田敏, 2010, 「二, 日本型華夷意識」, 荒野泰典・村井章介・石井正敏 編, 『日本の對外關係6 近世的世界の成熟』, 吉川弘文館.

川島眞・服部龍二 編, 2007, 『東アジア國際政治史』, 名古屋大學出版會.

和田春樹・後藤乾一・木畑洋一・山室信一・趙景達・中野聰・川島眞 編, 2010, 『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通史1 東アジア世界の近代』, 岩波書店.



[ABSTRACT]

How the Japanese “People” Perceived East Asia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to Modern Era
– Focusing on the Petitions Submitted in the 1870s –

Park, Samhun

In this paper, the traditional East Asian region “*Chaekbong-Chogong*(冊封·朝貢) relation” and new “Treaty relations” was filed in 1870 to begin to coexist *Kenpakusyo*(建白書) be a turning point in modern Japanese “people” in East Asia and how By analyzing what was recognized.

First, the formative period of modern Japanese national system that has characterized *Kenpakusyo* are as follows.

One, *Kenpakusyo* is, “*kougiyoron*(公議輿論)” as one of the new government declared in his justification, was an institutional apparatus was provided to prove this.

Two, *Kenpakusyo* is, *Sain*(左院) policy for the various “people” was to promote active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is process *Kenpakusyo* is an active “citizen” show me the birth, from below, “patriotic” now represent a device. As a result, *Kenpakusyo* from the government’s position, “national” from the standpoint of “public vote” was popular until 1875, while acting as a powerful tool.

Three, but instead placed on *Sain* instead of *Genrouin*(元老院) petition and related documents will result in 1876 enacted a provision that will be accepted until the movement spread nationwide in 1880 Congress established the petition was submitted less *Kenpakusyo*.

To around the year 1875 as the “people” are working actively participate in state affairs, according to this *kenpankusyo* period was submitted to positively, *Seikanron-seihen*(征韓論政變) of 1873, Taiwan expedition of 1874, Kanghwa Island incident of 1875 While continuing to occur, but was upset when the internal order in East Asia be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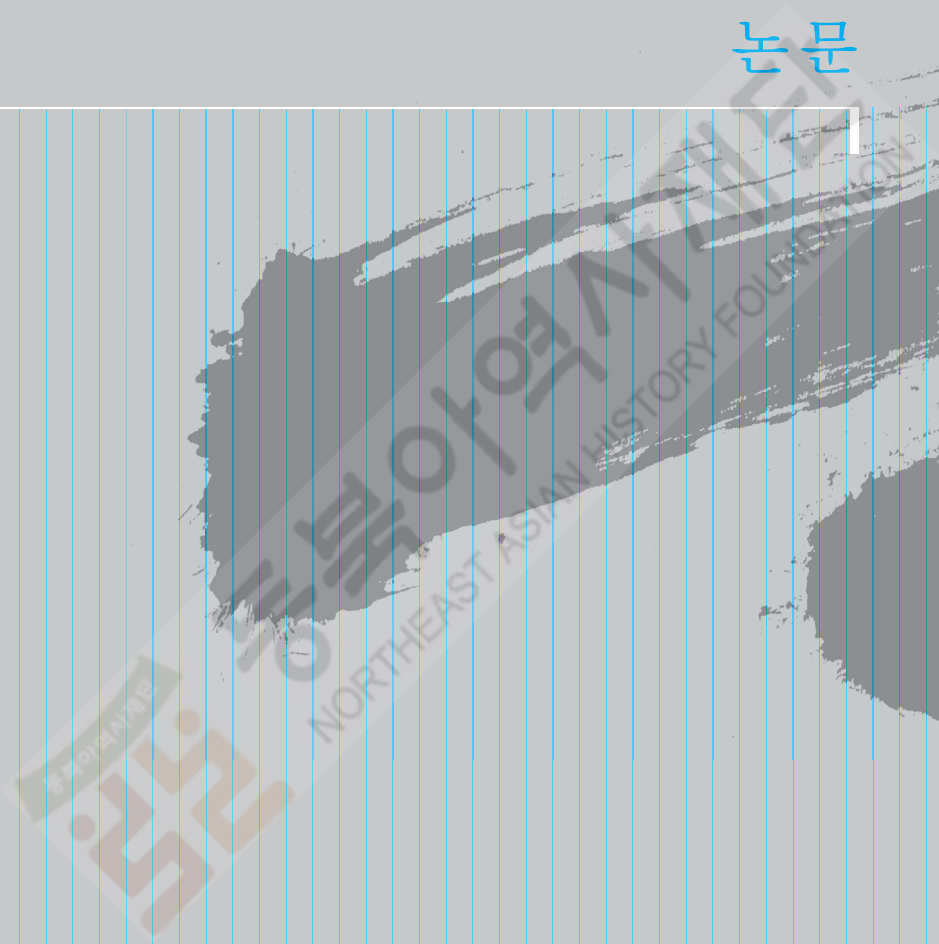
The year Taiwan expedition of 1874, Kanghwa Island incident of 1875 of the year presented their opinions on “the people” written specifically for the analysis of the petition, here is a “*Nihongata-kaitituzyo*(日本型華夷秩序).” based on the recognition and East Asia, “*Chaekbong-Chogong* relation.” Turn of the traits had recognized the coexistence of modern East Asia based on international law to justify the establishment of a modern concept to resolve the territory.

keywords

the Transitional period of modern, Taiwan expedition of 1874, Kanghwa Island incident of 1875, *Kenpakusyo*(建白書), Early period of Meiji, international Law

논문

1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지역성 연구

고민정 |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조사연구원

I. 머리말

한반도 남부지역의 즐문토기시대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이행기에는 주거지의 구조와 형태, 토기의 제작기법, 문양, 기종구성 등에서 이전 시기와는 구별되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과도기적 양상에 대해 즐문토기적 요소를 가진 각목돌대문토기를 바탕으로 청동기시대 조기가 설정(이상길, 1999; 안재호, 2000)된 이래, 편년 및 계통과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각목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공열문계토기에 대한 계통과 시기 설정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동기시대 초기 설정의 근거는 경기도 하남 미사리 유적에서 즐문토기적 요소를 지닌 원저토기와 각목돌대문토기가 동일주거지 내에서 공반,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 단순주거지의 탄소연대가 전기의 상한으로 알려진 3000 B.P.를 넘고,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각목돌대문토기만을 반출하는 주거지가 전

※ 투고일: 2011년 3월 30일, 심사일: 2011년 5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1년 6월 2일.

국적으로 분포한다는 점으로 요약된다(김장석, 2008: 96-97). 한반도 남부지역의 무문토기문화의 성립은 각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남강유역과 영남 내륙지역에서는 토기와 석기 모두에서 서북한적 요소와 동북한적 요소의 영향이 혼재하는 가운데, 재지적 전통도 함께 작용하여 무문토기문화가 성립하였다고 이해되고 있다(배진성, 2007: 75).

이 글에서는 다수의 각목돌대문토기 주거지가 확인된 남강유역의 최근 자료를 중심으로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단계설정과 편년 및 지역 간 병행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주거구조와 각목돌대문토기의 속성 및 이와 공반되는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공열문계토기에 대해 검토하고, 탄소연대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편년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한다.

II. 유적의 입지와 주거구조

청동기시대의 유적은 주로 하천변의 평지나 낮은 구릉상에 입지해 있으며, 이는 취락형태와 생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입지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으며(정징원, 1991; 後藤直, 1995; 안재호, 2000), 이 중 청동기시대 조·전기 유적의 입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안재호이다. 그는 한반도 중부 이남의 농경사회를 유적의 입지와 석부의 형식에 따라 평지형 취락의 전작, 산지형의 화전경작, 구릉형의 수전작이라는 3유형으로 분류한 바 있다. 특히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미사리 유적과 대평리 유적의 취락입지는 주로 평지형 취락으로 발경작 중심의 농경생활을 영위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았다(안재호, 2000: 49-51). 기존 조·전기 무문토기문화를 논하면서 형식분류, 편년, 계보 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유적의 입지에 대한 논의는 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듯하다. 유적의 입지

는 주거구조를 포함한 취락형태와 생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한반도 조·전기 무문토기문화를 논하는 데에 기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다. 산청 소남리, 진주 대평리·상촌리 등 남강유역의 유적들은 남강을 통해 형성된 넓은 범람원상의 자연제방에 입지하며, 배후에는 낮은 구릉지가 발달해 있다. 청동기시대 취락은 자연제방을 따라 분포해 있으며, 자연제방 사이에 발달한 배후저지는 주로 경작지로 이용되었다. 하남 미사리유적도 이러한 범람원의 자연제방상에 입지하며, 금릉 송죽리유적은 하안 단구상에 입지해 있다.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로 평면형태와 내부의 노지시설을 바탕으로 분류와 변화과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안재호(2000)는 돌대문토기 출토 주거지를 ‘미사리식주거지’로 명명하고, 중서부지역의 주거지 변화양상을 평면형태는 방형→장방형으로, 노지는 석상위석식→토광위석식→수혈식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¹⁾ 김재운(2003: 46-48)은 주거지의 평면과 노지의 형태에 따라 중서부지방과 남부지방의 주거지를 분석하였는데, 평면형태에서 중서부지방은 방형, 남부지방은 장방형으로 양 지역이 평면형태에서 지역적 특징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주거지와 노지의 상관관계에서 남부지방의 각목돌대문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위석식 혹은 수혈식노지를 가진 주거지로 이는 가락동식주거지라고 하고 있다. 이후 천선행(2005: 89)은 주거지 평면형태와 노지를 통해 분류하였는데, 남강유역권에서는 평면 방형의 주거지가 없고, 남강유역권의 장방형 판석부위석식노지는 청동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중서부지역에서는 평면 방형의 주거지에 원형의 노지를 갖추고 있다고 하면서 압록강 중상류와 연결시켰다. 그리고 남강유역에서 노지의 형태가 원형과 장방형이 함께 확인되는 것을

1) 이러한 변화양상을 남강유역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토광위석식은 실제로 토광을 판 형태가 아니므로 그냥 위석식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발굴조사 현장에서 노지의 단면 조사시에 관찰한 결과, 토광을 판 형태가 아닌 평지에 혹은 오히려 바닥면보다 높게 해서 둘레에 돌을 둘러싼 형태이며, 위석 내부에는 소토 등이 가득 차 있어서 주거지 바닥면보다 항상 높게 노출되는 양상이다.

호서지역과의 지역적 교류에 따른 것으로 파악하고, 중서부지역이 남강유역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남강유역의 주거지의 분류 속성으로는 규모, 평면형태, 노지형태, 초석열(혹은 주공열), 단시설, 저장공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규모는 다양한 형태가 조사된 어은 1지구의 보고서가 미간이므로 아직 정확한 양상을 알기는 어렵지만, 배치도상에서 볼 때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된다(〈도면 1〉). 규모는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소형은 길이 4~6m, 중형은 10~15m, 대형은 18m 이상으로 어은 1지구 110호 주거지는 길이가 25m가량 된다. 평면형태는 방형과 장방형으로 양분된다. 노지형태는 타원형(A)와 장방형(B), 노지구조는 판석부위석식노지(1)와 위석식노지(2)로 구분되며, 1기 혹은 2기가 설치되었다. 이외에 주거지 상면상에 노지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무시설식(C)도 있다. 또한 주거지 양 장축에는 초석열 혹은 주공열이 설치된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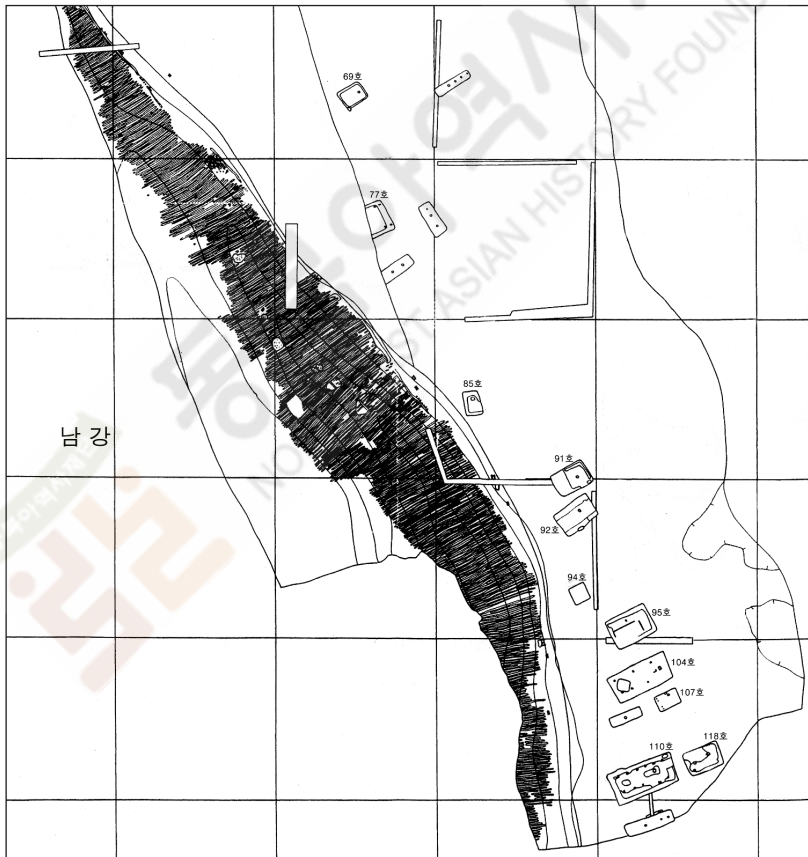
〈표 1〉 남강유역 주거지 분류 속성표

유적	분류속성	규모			평면형태		노지구조와 형태				초석열	주공열	단시설	저장공
		소형	중형	대형	방형	장방형	A1	B1	B2	C				
옥방 5지구	C-3호		○			○		○			○			
	D-1호		○			○				○		○		
	D-2호	○				○	○							
상촌리 D지구	B-2호		○					○						
	B-10호		○					○	(2)					
상촌리 A지구	2호							○						
상촌리 B지구	2지구1호							○			○			
어은 1지구	69호	○			○						?			
	77호		○			○							○	
	85호	○				○							○	
	91호		○			○								
	92호		○			○	○						○	

	94호	○			○			○					
	95호		○		○								○
	104호			○	○		○	○		○			?
	107호	○			○								
	110호			○	○		○	○		○			○
	118호		○		○		○						○
본촌리	나-3호		?		○					○	○		
무촌리	1호		?		○					○			
평거 3-1지구	청12호		○		○			○ (2)		○			○
	청11호		○		○			?					○
	청7호			○	○		○			○	○	○	
	청5호		○		○			○					○
	청4호		○		○		○				○	○	○
	청3호		○		○			○					○
	청2호		○		○			○					○
평거 3-2지구	1호		○							○ (2)		○	○
	2호		○		○		○				○		○
	3호		○		○					○			
	4호		○		○			○					○
가호동	6호		○		○			○	○	○		○	○
	15호			○	○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강유역의 주거지의 규모는 대부분 중형 주거지이다. 평면형태가 방형인 것은 모두 소형 주거지로 어은 1지구와 옥방 5지구, 진주 평거 3-2지구 유적에서 확인된다. 대형 주거지는 어은 1지구 104호·110호 주거지, 가호동 15호 주거지가 이에 해당된다. 노지의 형태는 장방형의 판석부위석식노지가 다수이며 주로 1기가 설치되어 있고, 대형 주거지에서는 판석부위석식노지+위석식노지 혹은 위석식노지+무시설식노지 2기가 설

치되어 있다. 초석열은 판석부위석식노지와 위석식노지가 함께 설치된 주거지에서서도 확인되나, 주로 판석부위석식노지가 설치된 주거지에서 확인된다. 하지만 중서부지역의 경우에는 위석식노지에 초석이 설치되어 있다. 이는 남강유역의 주거구조를 둔산식주거지-예를 들면 옥방 5지구 C-3호 주거지-로 이해(이형원, 2002: 25)하는 등 중서부지역과의 관련성으로 보는 기존의 견해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둔산식주거지의 경우에는 시기가 내려올수록 점점 세장해지는 특징이 있는 반면에, 남강유역의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주거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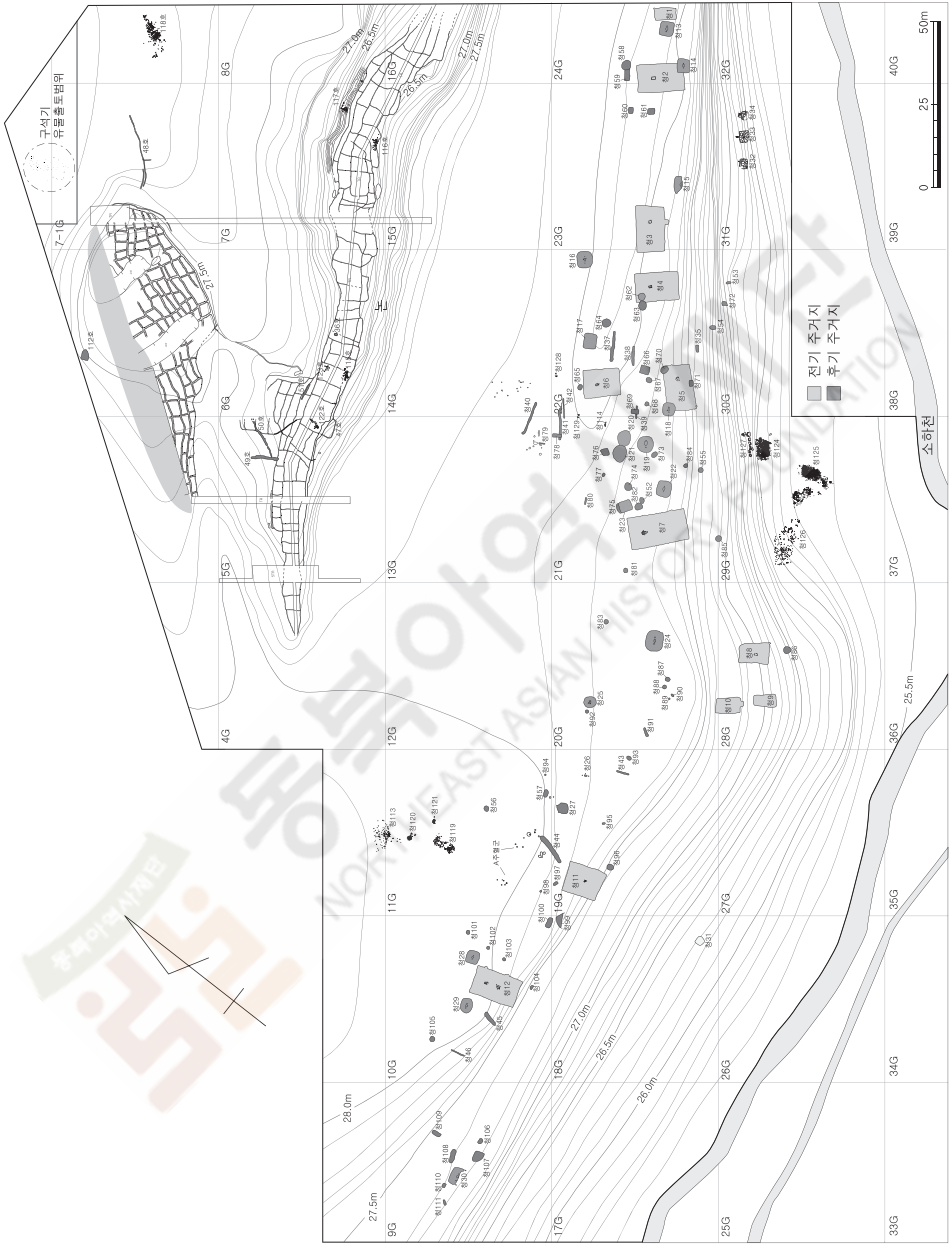


〈도면 1〉 진주 대평리 어은 1지구 유적 유구배치도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

계속 장방형을 유지하면서 규모가 커지는 특징이 있다고 생각된다. 판석부위 석식노지와 초석열은 서북한지역의 주거구조와 바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계보나 편년문제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단시설은 다수의 주거지에서 나타나는데, 주거지의 양 장벽에 혹은 사방을 돌아가면서 설치되어 있으며, 높이가 5~10cm 내외로 매우 얇게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단시설은 압록강유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두만강유역과 흥성 유적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김재운, 2003: 34), 흥성유적의 단시설은 좁고 높게 되어 있어 남강유역의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저장공은 평거 3-1지구 청4호 주거지와 평거 3-2지구 1호·2호·4호 주거지, 가호동 1호 주거지에서 확인된다. 특히 평거 3-1지구 청4호 주거지에서는 주거지의 남동쪽 모서리 부근에 저장공 내에 대형의 호형토기가 반쯤 묻힌 채로 출토되었으며, 이러한 양상은 어은 1지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천선행(2005: 88-89)은 남강유역권에서는 평면 방형의 주거지가 없고, 남강유역권의 장방형 판석부위석식노지는 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남강유역에서 평면 원형과 장방형의 노지가 함께 확인되는 것을 호서지역과의 지역적 교류를 통해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중서부지역이 남강유역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중서부지역의 주거지가 평면 방형이고, 노지 형태에서도 원형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압록강 중상류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시기적으로도 중서부지역이 이르다고 보는 것이다. 한편, 한 주거지 내에서 판석부위석식노지와 위석식노지가 함께 출토되는 양상에 대해서도 가락동식토기문화와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관계로 파악하고 있다(김재운, 2003: 45).

하지만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강유역에서는 주거지의 형태가 평면 방형과 장방형이 모두 확인되고 있다. 방형주거지의 경우에는 어은 1지구 69호·94호, 평거 3-2지구 3호·4호와 같이 규모가 모두 소형이다. 압록강 중류역의 공귀리와 심귀리유적의 주거지들은 평면형태가 완전 정방형이라기보다는 장방형에 가까운 방형으로 길이는 6~8m 정도의 소형 주거지이다. 특히 어은 1지구 94호 주거지는 평면 방형에 장방형 판석부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



〈도면 2〉 진주 평거 3-1지구 유적 청동기시대 유구배치도

지이다. 공귀리 유적 Ⅳ호 주거지에서는 장방형 판석부위석식노지가 확인되고, Ⅱ호와 Ⅴ호 주거지에서는 장방형 위석식노지가 확인된다.²⁾ 공귀리 유적 Ⅲ호 주거지에서는 장축 양쪽에 주초석도 확인된다.

이러한 주거지 형태는 심귀리 유적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³⁾ 배진성(2007)의 편년에 따라 조기~전기전반으로 편년되는 심귀리 1호 주거지는 평면 방형에 양쪽에 초석열이 설치되었으며, 한쪽에 치우진 장방형의 판석부위석식노지가 한쪽에 치우쳐서 확인된다. 또한 전기전반~후반으로 편년되는 심귀리 2호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에 장방형 판석부위석식노지와 초석열이 확인되며, 북벽쪽에 단시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⁴⁾ 자강도 시중군 로남리 간평 유적의 주거지에서는 2기의 노지가 설치되어 있는데, 어은 1지구 110호 주거지에서와 같이 1기는 장방형 판석부위석식노지, 나머지 1기는 장방형 위석식노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다.

이상으로 남강유역에서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는 평면 장방형·방형주거지, 판석부위석식노지, 위석식노지, 초석, 단시설, 저장공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서북한지역의 주거지 형태와 유사성을 띠고 있다. 따라서 미사리유적의 평면 방형에 타원형 판석부위석식노지를 갖춘 주거지가 반드시 전형이라고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남강유역의 주거지의 평면형태가 장방형을 띠고 단시설 등이 확인되는 것을 지역차 혹은 시간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데(이형원, 2002: 19), 이는 지역차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배진성(2007: 92-94)이 조기 무문토기의 논의에서 조기부터 지역성과 다양성을 이야기하였듯이, 주거구조도 반드시 미사리 유적의 주거지가 전형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각 지역마다 환경과 지형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으로 이해해

2) 만약 공귀리 유적 Ⅳ호와 Ⅴ호 주거지가 배진성(2007)이 편년한 것처럼 공귀리 Ⅱ기(청동기시대 전기전반~후반)에 해당된다면, 남강유역의 주거지도 늦은 시기에 편년된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3) 남한의 각목돌대문주거지와 심귀리 유적의 유사성은 이미 논의된 바 있다(안재호, 2000).

4) 주거지 평면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단면도에서 단시설이 확인된다.

야 한다. 왜냐하면 기본 플랜과 석조 노지를 갖고 있다는 점은 전국적으로 같은 양상이기 때문이다.

Ⅲ.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

1_ 각목돌대문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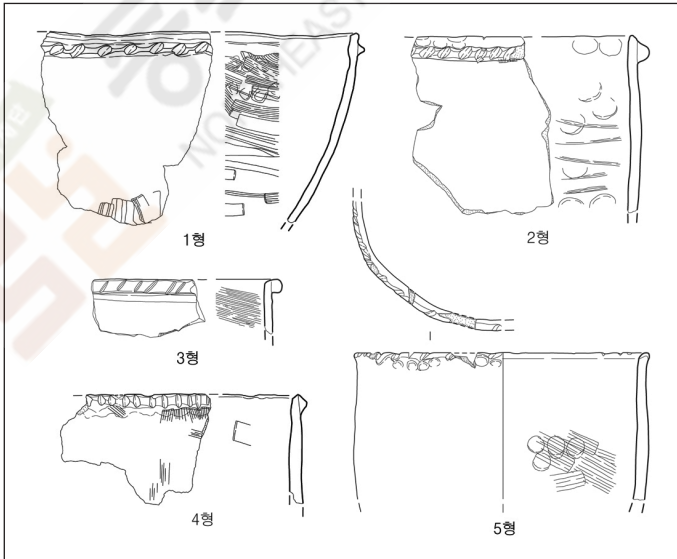
조기 무문토기의 기종은 심발, 천발, 호, 적색마연대부토기로 대표된다. 토기 문양은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이중구연, 이중구연거치문, 절상돌대문+구순 각목문이 있다(배진성, 2007: 72). 각목돌대문토기의 분류속성으로는 포탄형과 장동형의 기형, 크기의 대소, 돌대의 위치, 각목의 형태와 시문방법, 기면조정방법, 점토대의 접합법 등이 있다(藤尾慎一郎, 2002). 여기에서 시간성을 반영하는 속성으로는 기형, 구연단 형태, 돌대의 위치, 각목의 형태와 시문방법을 들 수 있다(김재운, 2003; 천선행, 2005). 기형면에서는 포탄형에서 장동형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藤尾慎一郎, 2002; 김재운, 2003), 대개는 함께 출토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선 아우라지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기형 중에는 동최대경이 넓은 옹형의 형태를 띠는 토기들이 있는데, 이는 압록강 상류역의 공귀리·심귀리유적 출토품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배진성, 2007: 75). 이러한 형태의 토기는 흥천 외삼포리유적에서도 다수 확인되며, 심귀리 유적이나 세죽리, 구룡강유적 등에서 볼 때, 이른 시기부터 출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연단의 형태는 편평한 것이 주를 이루지만, 둥근 것도 확인된다. 옥방 5지구 D-1호·D-2호·D-9호 주거지와 상촌리 D지구 B-2호·B-10호 주거지에서는 구연단이 편평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둥근 것도 고루 나타나는 데 비해, 사천 본촌리 나-3호 주거지에서는 대부분 둥근 형태가 나타난다.

돌대의 위치와 각목방법은 돌대문토기의 속성 중에 시간성을 가장 많이 내

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돌대의 위치에 대해서는 구연단에서 일정 간격 떨어진 것에서 →가까이 부착된 것으로, 각목폭은 폭이 넓고 깊은 것에서 →좁고 얇은 것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는 것(천선행, 2005)이 일반적인 양상이다.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남강유역의 각목돌대문토기를 돌대위치와 각목방법을 중심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각목돌대문토기의 분류〉

- 1형: 구연단에서 0.5~1.0cm 정도 떨어져 돌대 부착. 돌대 단면 제형. 각목의 폭이 넓은 것.
- 2형: 구연단 가까이에 돌대 부착. 돌대 단면 제형. 각목의 폭이 넓은 것.
- 3형: 구연단에 바로 붙여 돌대 부착. 돌대 단면 장방형. 각목의 폭이 좁은 것.
- 4형: 구연단에 바로 붙여 돌대를 부착하였으나, 돌대의 흔적이 희미함(퇴화돌대). 구순 외측이나, 구연단과 이어지는 돌대의 상단부에 각목한 것.
- 5형: 구연단 내면은 ‘<’자상으로 되어 있고, 구순부 외측 모서리에 각목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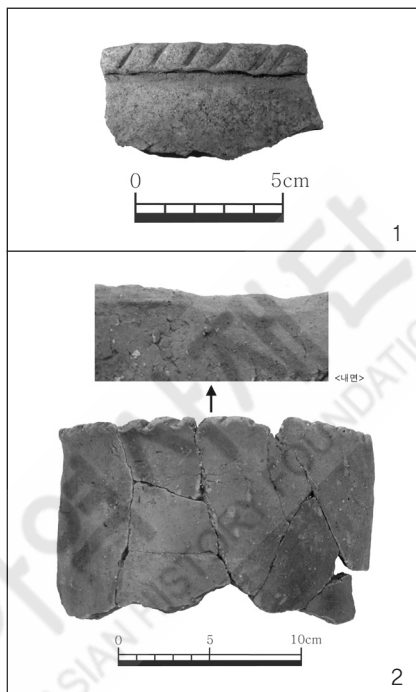


〈도면 3〉 각목돌대문토기의 분류

1형은 전형적인 각목돌대문토기의 형태이다. 2형과 3형의 차이는 2형 돌대의 단면이 1형과 같이 제형인 반면, 3형은 돌대의 단면이 장방형의 형태로 각목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다. 2형은 1형과 같이 폭이 넓고 깊게 되어 있는 반면, 3형은 폭이 좁고 얇게 되어 있어(〈사진 1-1〉), 이중구연토기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중구연은 안에서 밖으로 점토를 말아올려서 부착하여 점토띠 하단부를 기면에 부착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으며, 돌대문은 점토띠를 따로 제작하여 기면에 부착하였는데, 점토띠 하단부를 기면에 완전히 부착한 것으로 차이가 있다. 한편, 4형의 각목문은 퇴화된 돌대의 상단에 치우쳐서 각목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 형식인 5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진주 평거 3-1 지구 유적 출토 토기에서 이러한 변화가 잘 관찰된다. 5형은 구연단 내면은 ‘<’ 자상으로 되어 있고 구연단 외측 모서리 부분에 각목된 것(〈사진 1-2〉)으로 구순각목문토기와는 구별된다. 이는 최근 김현식과 안재호가 지적한 것으로 금산 수당리 6호 주거지 출토 구순각목문토기를 예로 들고 있다. 이 토기는 구순부가 뾰족하며 구연 내측이 내경하는 경사를 가지고 있는데, 구순부의 외측에 각목이 새겨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김현식은 금산 수당리 6호 주거지, 김천 송죽리유적, 사천 본촌리 나3호 주거지 출토 토기를 통해, 각목돌대문과 구순각목문의 ‘연결고리’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는 ‘각목돌대문토기→송죽리 61호·4호, 본촌리 나3호→수당리 6호→구순각목문’으로 배열을 상정하였다(김현식, 2008: 13). 안재호는 금산 수당리 6호 주거지 출토 토기를 남한지역에서 최초로 나타난 구순각목문이라고 평가하고 이는 각목돌대가 점차 구순부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돌대문토기의 최종 퇴화형으로 간주하고 싶다고 하였다(안재호, 2009: 52). 필자도 이에 찬동하며, 이러한 토기 형식은 평거 3-1지구 유적에서도 출토되었고, 기존 연구에서 각목돌대문토기 혹은 이중구연토기와 공반되어 구순각목문토기로 다루었던 토기 중에도 이러한 형식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필자가 분류한 4형의 토기 중에서 돌대의 상단부에 치우쳐서 각목을 시문하던 것이 이러한 형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재호(2009: 52)는 이러한 돌대문토기의 형식학적 이해관계를 토대로 ‘돌대가 일주하는 돌대문토기→긴 절상돌대문토기→짧은 절상돌대문토기→

뉴상돌대문', 그리고 김재운(2003)의 연구처럼 '구연하단 돌대의 돌대문토기→구연상단 돌대의 돌대문토기→구순외측 돌대의 돌대문토기→구순각목문토기'로의 양방향의 전개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그는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본촌리 유적의 예로 볼 때, 돌대문토기가 남부지역에서는 전기후반에도 존속하는 등 다양하다고 하였으며, 용산동 유적처럼 파수상 절상돌대문의 시기에 가락동계토기가 출현하여 전기전반의 시작으로, 구순각목문 출현시점이 전기후반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사진 1) 각목돌대문토기 3형(1)·5형(2)

위와 같은 퇴화돌대문토기에서 구순각목문으로의 변화에는 동의하지만, 시기설정이 문제가 된다. 구순각목문 출현시점을 전기후반으로 설정한다면, 가락동유형 I기(이형원 분류)에 해당하는 둔산 1호 주거지와 내곡동 주거지 출토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연대가 전기후반에 편년되어 버린다. 그리고 후술하겠지만, 평거 3-1지구 유적의 탄소연대 측정치를 감안할 때, 전기후반의 연대가 기원전 12세기까지 올라가는 결과가 되어버린다. 이는 각목돌대문토기의 존속연대를 전기후반까지 너무 길게 보는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되며, 늦어도 각목돌대문토기의 하한을 전기전반까지는 올려보아야 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한편, 천선행(2007: 63)은 김재운이 분류한 돌대의 속성분류기준이 불분명함을 지적하고,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사선문과 각목돌대문토기의 각목 간에는 시문방법상의 공통성이 인정되므로, 시문방법만으로 각목돌대문토기와 이

중구연단사선문토기를 구별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였다. 김재운이 분류한 돌대의 속성 중에 김재운 분류 Ⅲ형식(이중구연화)과 Ⅳ형식(이중구연이 얇은 것)은 돌대문토기와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언급하겠지만, 다수의 유물이 출토된 평저 3-1지구 유적에서는 필자가 분류한 각목돌대문 3·4형과 이중구연토기는 각목문(혹은 단사선문) 시문방법과 구연부 제작방법에서 뚜렷하게 차이가 확인된다.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볼 때, 필자가 분류한 각목돌대문토기 3형은 1·2형과 비교할 때, 전형적인 돌대의 단면형태와 각목 시문방법에서 2형보다는 늦은 시기에 해당되고, 4형도 돌대의 형태가 퇴화된 형태이므로 늦은 시기로 판단된다. 하지만 각목 시문 부위에서 3형은 1·2형과 같이 돌대의 정면에 시문한 것과는 달리 4형은 돌대의 상측면에 비스듬하게 시문되어 있는데, 이는 5형의 구순부 외측 모서리에 각목된 토기와 연결선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절상돌대문토기는 각목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예가 다수 확인된다. 금산 수당리유적 6호 주거지에서는 절상돌대문토기와 구순각목문토기, 누상돌대문토기가 공반되었는데, 이에 대해 박순발은 ‘각목돌대문토기 단순기’=‘미사리유형’→‘각목돌대문토기+절상돌대문토기’→‘절상돌대문토기’=‘가락동유형’→‘절상돌대문토기+공열토기’로 변천한다고 설명하였다(박순발, 2002). 한편 미사리 출토 절상돌대문토기는 각목돌대문토기와 태토가 동일하고,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절상돌대문토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천선형, 2005). 절상돌대문토기는 공열문토기, 구순각목문토기와 공반되기도 하고 가락동식토기와도 공반되나, 압록강 하류역 신암리 Ⅱ기에서는 돌대문과 절상돌대가 조기부터 함께 출토된다.

남강유역에서 출토되는 절상돌대문토기는 종류가 비교적 다양하다. 길이에 따라서 긴 절상돌대문토기와 짧은 절상돌대문토기로 구분되고, 각목 여부에 따라서 각목된 것과 무각목된 것으로 구분된다. 또한 돌대가 구연단에서 일정 간격 떨어져서 부착된 것과 구연단 가까이 부착된 것으로도 구분된다. 앞서 설명한 대로 안재호(2009)는 긴 절상돌대문에서 짧은 절상돌대문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는데, 두 가지 형태가 함께 공반되기도 하며, 각목된 것과 무각목

된 것도 함께 공반된다. 또한 한 주거지 내에서 각목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와도 공반된다.

2_ 이중구연토기

김병섭(2003)은 무문의 이중구연토기와 이중구연거치문토기 등을 낙동강유역 양식의 이중구연토기로 설정하고, 신석기 말기의 이중구연토기와의 관련성을 언급하였다. 미야모토 가즈오[宮本一夫, 2004: 59]와 안재호·천선행(2004: 71·96)도 이러한 신석기 말기의 이중구연토기와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하지만 하인수(2006)는 초기 이중구연토기와 이중구연거치문토기는 말기 즐문토기와는 무관하며, 그 계통에 대해 요동반도~서북지역이나 혹은 팽이형 토기문화에서 찾고 있다. 또한 그는 상촌리 이중구연토기도 울리식토기와는 무관하며 요동지역 이중구연토기의 영향으로 보았다. 이에 대해 배진성(2007)은 요동반도~압록강 하류역의 팽이형토기문화와 남부 초기무문토기는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고, 이중구연의 속성과 지역적 한정성 등을 통해 상촌리식토기의 이중구연과 초기의 이중구연거치문토기의 계통을 울리식토기에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남부지역 말기 즐문토기와 초기 무문토기의 이중구연 단면 형태는 장방형에 가깝지만, 요동지역은 하단이 불룩한 형태인 것을 통해 볼 때, 요동반도의 고려채유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천선행, 2005; 배진성, 2007). 결국 미사리유적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요동계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출토되고, 대평리 유적에서는 재지계의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는 양상은 외래계 요소와 재지계 즐문토기의 요소를 계승한 결과로 파악하고 있다(배진성, 2007). 한편, 김현식(2008: 4·5)은 이중구연토기를 초기의 요소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각목돌대문토기와 함께 서북한지역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장석(2008)은 압록강 중상류의 공귀리·심귀리 유적에서의 각목돌대문토기 단순기가 불명확하며, 이는 요동지역과 동북지역에서도 동일한 양상이라고 하였다. 서북한지역에서 압록강 중상류의 각목돌대문토기와 청천강유역의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북한 편년에서 시기차이가 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

하고 있다. 이후 김병섭(2009: 12)은 배진성의 논의대로 이중구연부 계층치에서 신석기 말기의 울리식토기와 일맥상통한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이중구연거치문토기에서 이중구연과 거치문은 별개의 요소가 결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는 상촌리 D지구 B-10호 주거지 출토 각목돌대문토기에 거치문이 결합되고, 진주 가호동 6호 주거지에서는 거치문토기, 상촌리식이중구연토기, 가락동식토기, 내면 사이부토기가 세트로 출토되는 것을 예로 들어, 거치문이 독립된 문양요소로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요동~압록강유역과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다.

남강유역에서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이중구연토기는 단순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사선문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 상촌리식이중구연토기, 가락동식토기, 퇴화이중구연토기로 구분할 수 있다.

각 주거지별로 출토 토기의 공반관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2〉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유물 공반양상

유적	출토유물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이중구연			상촌리식	공열문계	흔암리식	유무상파수	
		1형	2형	3형	4형	5형	각목	무각목	단순	단사선문	거치문					
옥방 5지구	C-3호						○	○								○
	D-1호	○	○?													
	D-2호	○	○													
	D-9호	○	○													
상촌리 D지구	B-2호	○											○			
	B-10호	○	○												?	
어은 1지구	77호						○				○					○
	95호	?					?				○	○				
	107호	○	○											?		
	118호	○											○			
본촌리	나-3호		○	○	○								○		?	

무촌리	1호				○									
평거 3-1 지구	청12호		○											○
	청7호	○	○		○	○	○		○	○				○
	청5호			○					○	○?	○		○	
	청4호	○	○		○		○		○	○				○
	청3호		○		○	○		○	○	○				○
	청2호						○		○					
평거 3-2 지구	1호								○?					
	2호	○?												
	4호	○?												

평거 3-1지구 유적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주거지에서 각목돌대문토기(혹은 절상돌대문토기)와 함께 이중구연토기가 다수 출토된다. 주로 단순이중구연토기,⁵⁾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가 공반되며 형태도 비교적 다양하다. 먼저 단순이중구연토기의 경우에는 점토피의 두께와 폭에 따라 3형식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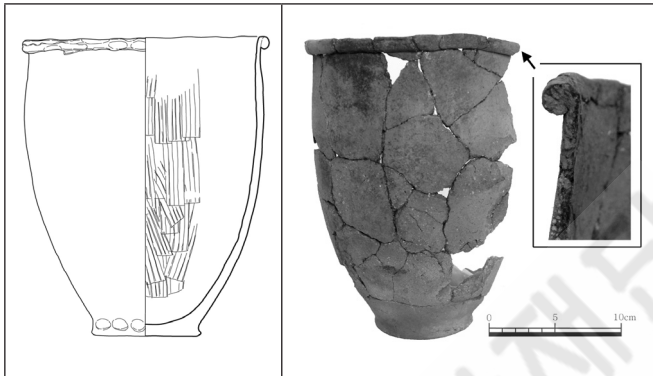
〈이중구연토기의 분류〉

A형: 점토피 폭이 0.6cm 내외로 좁고, 형태가 고르지 않으며 두께도 0.2cm 정도로 얇은 형태.

B형: 점토피 폭이 1.0~1.5cm로 넓고, 점토피의 두께가 0.4cm 내외로 두꺼운 형태.

C형: 이중구연이 뚜렷하지 않고 구연부가 두툼하게 된 퇴화이중구연 형태.

5) 단순이중구연토기는 상촌리식토기와는 다르다. 상촌리식이중구연토기는 가락동식토기와는 다른 계통으로 재지 즐문토기의 영향이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전기의 이른 단계로 파악하고(안재호, 2001), 또한 마연토기이면서 이중구연 단면형태와 평탄한 구순부가 올리식토기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한다(배진성, 2003). 이러한 상촌리식 이중구연토기는 이중구연의 폭이 길면서 하단부가 뚜렷하게 단이 진 형태로, 어은 1지구 95호와 가호동 6호 주거지 출토 토기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면 4〉 평거 3-1지구 청3호 주거지 출토 이중구연토기

점토띠 단면은 대개 장방형이나, 평거 3-1지구 청3호 주거지 출토 토기처럼 원형점토대토기와 같이 단면 원형을 띠는 것도 있다(〈도면 4〉). 대개 구연단은 뾰족하거나 둥근 편이며, 간혹 편평한 것도 확인된다. 그리고 A형에서는 단사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B형에서는 단사선문이나 거치문이 시문되어 있다. A형에서는 단사선문(a)이 상부에서 하부로 사방향으로 그은 형태로 점토띠 범위를 벗어나 강하게 시문되어 있는 반면에, B형에서는 단사선문(a)이 폭이 좁고 가늘게 시문되었으며, 거의 점토띠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거치문(b)은 단사선문보다 폭이 넓은 도구로 눌러서 시문하였으며, 점토띠 하단부를 강하게 누르거나 그은 흔적이 관찰된다. 점토띠 형태에 따라 단사선문 시문방법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 평거 3-1지구 유적의 주거지에서는 대부분 단순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되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는 청3호·청4호·청5호·청7호 주거지에서 출토된다. 이중구연거치문토기는 청5호 주거지에서만 확인되는데, 단순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공반된다. 또한 청3호와 청7호 주거지에서는 각목돌대문 5형과 공반된다. 어은 1지구 95호 출토 이중구연거치문토기는 평거 3-1지구 유적 출토 이중구연거치문토기에 비해 이중구연의 폭이 2cm 이상으로 다소 넓은 편이다. 또한 이중구연 하단부의 점토가 구연부와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지는 않는 것 같다. 이는 함께 공반된 단순 이중구연토기편도 점토띠 폭

이 3cm 정도로 넓어 상촌리식 이중구연토기로 볼 수 있다. 평거 3-1지구 유적 출토 토기는 어은 1지구 77호 출토 이중구연거치문토기와 같이 구연부와 이중구연 하단부의 구분이 뚜렷하게 되어 있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조기의 이중구연거치문토기에 대해서 올리식토기와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다. 올리유적의 토기는 구연단이 면을 가지며 전형적인 이중구연토기의 단면 역삼각형을 이루는 반면에, 오진리유적의 토기는 구연부 상단의 점토대가 그대로 이중구연부를 형성하고, 구연단 또한 둥글거나 뾰족한 형태로, 이는 청동기시대 이중구연사선문토기와 동일한 형태이므로 외부로부터 유입된 새로운 요소라고 보았다(천선행, 2007: 21). 평거 3-1지구 유적 출토 단순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사선문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는 일부 구연단이 면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구연단이 둥글게 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오진리 유적과 같이 신석기 말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요소는 청동기시대 초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무문토기 요소가 확인되지 않고 출토양상도 산발적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평거 3-1지구 유적의 예를 통해서 볼 때,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주거지에서 출토되며, 태토면에서도 공반되는 각목돌대문토기나 절상돌대문토기 등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이를 단순히 병행관계가 아닌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문화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기무문토기 단계부터 다양한 형태의 토기가 성립한다는 여러 견해와 함께 최근 공열문토기(돌류문·(반)관통공열)도 초기부터 성립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김병섭, 2009: 9-10). 그 예로 강릉 교동 1호 주거지의 거치문+반관통공열문토기, 밀양 살내 유적의 구순각목+이중구연+관통공열문토기, 구순각목+이중구연+거치문+관통공열문토기, 옥방 5지구 C-3호의 이중구연+단사선+관통공열문토기 및 절상돌대문토기와 관통공열문토기 공반, 상촌리 D지구 B-10호 주거지의 돌대문토기와 관통공열문토기 및 돌류문토기 공반, 상촌리 시굴주거지에서 이중구연토기와 돌류문토기의 공반 등 초기에 해당하는 공열토기 사례를 들고 있다. 이를 통해 각목돌대문과 이중구연 요소가 조기의 주류인 문양이며, 수적 열세인 공열문은 조기의 비주류 문양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조기의 토기양상에 대해 절상돌대를 포함한 각목돌대문토기, 가락동식 이중구연토기, 상촌리식이중구연토기, 거치문이중구연토기, 공열문토기로 정리하였다. 필자도 각목돌대문토기의 형식 변화에 따라 이들 토기를 조기에 설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남강유역에서는 이중구연토기와 이중구연거치문토기, 공열문토기의 대부분이 늦은 형식의 각목돌대문토기와 공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남강유역에서 공열문계토기가 출토된 유적은 앞서 서술한 옥방 5지구 C-3호 주거지, 상촌리 D지구 B-10호 주거지, 상촌리 시굴주거지, 진주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 진주 평거 3-2지구 1호 주거지에서 출토예가 있다.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공열문계토기는 반관통공열문토기(내→외)(〈도면 12-12〉)와 단사선문+(반)관통공열문토기(내→외)(〈도면 12-13〉)로 단순이중구연토기(A형), 이중구연거치문토기, 각목돌대문토기(3형)와 공반출토된다. 진주 평거 3-2지구 1호 주거지에서는 이중구연토기와 공열문토기가 공반출토된다(경남문화재연구원, 2008). 김병섭(2009)이 제시한대로 상촌리 D지구 B-10호 출토 공열문토기는 다소 빠를 수도 있으며, 청동기시대 전기의 각 유적마다 공열문토기의 편년에 시기차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삼동식토기가 출토된 유적 중 이른 탄소연대를 보이는 유적이 주로 경기 남부에서 보이고, 즐문토기와 연결될 수 있는 토기가 단편적이거나 중서부해안 일대에서 보이는 점, 경기도 일대의 몇몇 유적에서 다량의 즐문토기편이 청동기시대 주거지 바닥면에서 출토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역삼동식토기의 남한 내 자생설도 가능할 것(김장석, 2008: 109)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진주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 출토 공열문계토기는 각목돌대문 3형과 공반되고, 또한 나머지 한 점은 단사선문이 함께 시문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에서는 늦은 시기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IV.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단계설정

이 장에서는 먼저 남강유역의 각목돌대문토기 출토 주거지에 대한 기존의 편년을 검토하고, 앞에서 분석한 유구와 유물의 공반관계를 통해 단계설정을 하고자 한다. 각목돌대문토기문화를 청동기시대 조기로 설정한 관점과는 달리, 송만영(2001)은 대구 시지동 유적에서 각목돌대문토기와 구순각목문, 단사선문, 이중구연토기 등의 가락동식토기가 공반된 것을 통해, 각목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문화를 함께 전기전반으로 상정하였다. 박순발(2002)은 각목돌대문과 절상돌대문의 관계에 대해서 각목돌대문+절상돌대문: 황석리 → 절상돌대문: 소남리 142호, 수당리 6호 → 절상돌대+공열문: 옥방 5지구 C-3호 주거지 순으로 변화한다고 하여, 절상돌대문이 늦은 시기까지 출토된다고 보고 있다. 후지오 신이치로[藤尾慎一郎, 2002]는 미사리, 황석리B, 본촌리 유적 출토 토기의 속성분석을 토대로 어은·미사리 → 본촌리·황석리·옥현 순으로 단계를 설정하였다. 이후 안재호(2002·2006)는 영남지역 청동기시대를 주거지와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석축, 석검, 석도 등의 공반관계를 토대로 하여 형식학적 관점을 통해서 편년을 시도하였다. 미사리식주거지(석상위석식노지)와 각목돌대문토기 단독기만을 조기로 설정하였으며, 조기에 출현한 각

(안재호(2002·2006)의 영남지역 편년안 중에서)

단계	주거지	무문토기	적색마연토기	석축	석검	석도
조기	미사리식 (석상위석식노지)	돌대문		短身무경식		
전기	전반 둔산-용암유형 (석상위석식, 토광위석식노지)	돌대문·절상 돌대문, 역삼동 계, 가락동계	무문토기형 출현	長身무경식 이단경식		장방형 어형
	후반 관산리식 (토광식노지)	돌대문·혼암 리계, 역삼동계 (황강유역)	전형의 출현	長身무경식 平根일단경식	이단병식	

목돌대문토기가 절상돌대문토기로 분화하면서 전기후반까지 존속하여 일본의 야요이 초기의 각목돌대문과 연결하고자 하였다(안재호, 2009: 38). 초기와 전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대전 용산동 4지구 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이중구연 하단부에 사선문이 시문되고 구연 상단에 길이 3.3cm의 절상돌대가 부착된 토기를 예로 들어, 이 토기는 호서지역 제 I 기(안재호·천선행, 2004)에 해당하는 특징이므로 가락동계토기의 가장 이른 토기 형식은 절상돌대문과 동시기이므로, 이런 의미에서 절상돌대문에 앞서는 각목돌대문토기는 초기로 설정하여도 좋다고 하였다(안재호, 2009: 51).

김재운(2003)은 각목돌대문토기의 속성분석과 형식분류, 공반유물을 통해 남한지역의 각목돌대문토기 유적을 3기로 편년하였다. Ⅲ기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가 혼암리식토기·가락동식토기가 공반되는 단계로 파악하면서 이들 토기 양식을 각목돌대문토기 이후에 성립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사리 A-1호 주거지는 판석부위석식노지와 위석식노지가 결합된 것을 통해 가락동식주거지와와의 관련성을 논하면서 늦은 단계로 편년하였다. 또한 청주 용정동 Ⅱ-7호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가 조합되고, 익산 영등동 I-3호에서는 절상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가 공반, 옥방 5지구 C-3호에서는 절상돌대문토기와 단사선문에 공열이 시문된 혼암리형토기가 출토, 본촌리

〈김재운 편년(2003)〉

	남강유역	타지역	각목돌대문토기 특징	공반유물
I 기	상촌리 D-2호, 어은 1지구?		신석기유물 공반단계. 포탄형, 구연단 편평, 단면제형의 돌대가 구연단에서 떨어져서 부착	신석기후기 토기, 단면 삼각형방추차, 양측면 잘린 장방형석도, 매부리형석기
Ⅱ 기	상촌리, 옥방 5지구	미사리, 황석리 B	순수 각목돌대문토기단계. 장동형(U형), 돌대 형태 다양	
Ⅲ 기	본촌리나-3호, 무촌리 1호	용산동, 용암동, 미사리 A-1호	타 무문토기와 공반단계. 기형-동최대경이 동상 위에 위치. 각목의 새김은 작고 불규칙적, 직립	이중구연화된 각목돌대문토기와 공열 토기 공반

나-3호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혼암리식토기가 공반되는 양상을 통해 늦은 단계로 편년하였다. 또한 Ⅲ기의 토기를 이중구연화된 각목돌대문토기로 보고, 각목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주거지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주거구조에서도 설명하였듯이 미사리 A-1호 주거지와 같이 판석 부위석식노지와 위석식노지의 결합은 어은 1지구 104호·110호 주거지에서도 확인되는데, 서북한지역의 각목돌대문주거지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이를 가락동식주거지와 연관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또한 옥방 5지구 C-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단사선문에 공열이 시문된 혼암리형토기는 김재윤(2003: 47)에 따르면, 일반적인 혼암리식토기와는 다른 것으로, 점토대가 구연단에서 약간 떨어져 돌대처럼 붙어 있으며, 그 위에 단사선문이 시문되었고, 단사선문 아래에는 공열문이 시문된 것이다.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도면 12-13〉)는 옥방 5지구 C-3호 주거지 출토 공열문 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 출토 토기에는 퇴화된 돌대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공열문 바로 위에 단사선문이 시문된 형태로 차후 비교 검토가 요구된다.⁶⁾

천선행(2005)은 돌대거리, 돌대의 단면형태, 돌대 폭, 구연단 형태 등 여러 가지 돌대문 속성과 기종분류, 주거지의 구조적 특성변화를 통해서 남강유역의 각목돌대문토기를 초기에서 전기 I기~Ⅲ기까지 편년하고, 공반유물과 타 문양도 함께 편년하였다. 안재호(2002·2006)와 같이 미사리식주거지와 각목돌대문토기 단독기만을 초기로 설정하였다. 그는 무문토기 초기양상에 대해 돌대문단독기 / 즐문토기 내 무각목돌대문, 공열문, 돌유문, 거치문 공반 / 무문토기 내에서 신석기 말기의 이중구연, 거치문과 같은 즐문토기적 요소 잔존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한편, 옥방 5지구 D-9호, 상촌리 D지구 B-2호·10호,

6) 안재호는 옥방 5지구 C-3호 장방형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를 혼암리계토기로 보고, 절상돌대문토기와 공반하므로 용산동 4지구 5호 주거지보다 늦은 양상으로 파악하며, 이는 절상돌대문토기의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였다. 따라서 한반도 남한지역 내에서의 돌대문토기는 획기에서 초기로 편년되어도 좋고 전기에서 야 가락동계·혼암리계토기가 출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안재호, 2009: 51).

〈천선행 편년(2007)〉

	각목돌대문·절상돌대문토기 출토 유적	타문양토기 출토 유적	특징
조기	옥방 5지구 D-2호 어은 1지구 118호		돌대문토기 단독기 즐문토기 공반 미사리식주거지
전기 I 기	상촌리 D지구 B-2호·10호 옥방 5지구 D-9호 소남리 142호 어은 1지구 95호	산청 사월리 11호	이중구연사선문, 공열토기 공반
전기 II 기	옥방 5지구 D-1호 옥방 5지구 C-3호	산청 사월리 3호 옥방 5지구 C-4호	가락동식주거지 늦은 형식의 절상돌대문토 기?
전기 III 기	본촌리 나-3호	어은 2지구 2호	장동형의 기형. 돌대가 구 연에 접합. 혼암리식토기와 의 공반

어은 1지구 92호·95호·104호·110호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 이외에 이중구연사선문토기와 공열문토기가 공반되며, 어은 1지구 95호 출토 이중구연거치문토기를 호서지역의 공동 13호 주거지 출토품과 동일한 형식으로 파악하여 호서지역 전기 I 기와 같은 시기에 편년하였다.⁷⁾ 상촌리 D지구 B-2호는 각목돌대문토기만이 출토되고, B-10호는 공열문토기와 공반되므로 상촌리 D지구 B-2호·10호보다 약간 빠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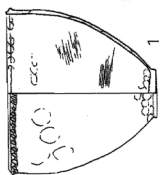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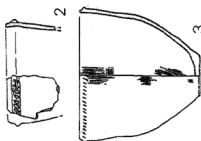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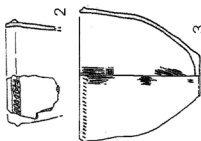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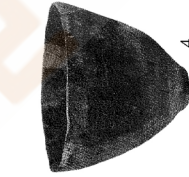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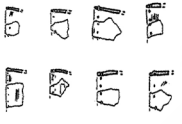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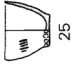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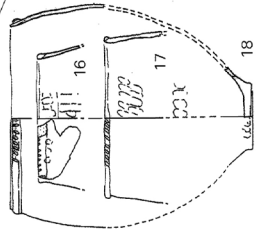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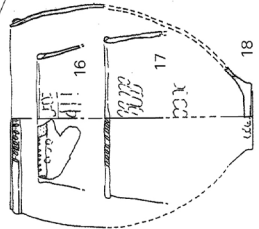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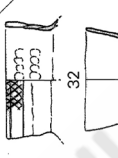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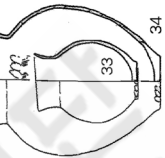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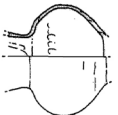
또한 천선행(2005: 72)은 옥방 5지구 D-2호와 어은 1지구 118호 주거지에서 즐문토기가 공반하고 각목돌대문토기가 단독으로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미사리 유적과 유사한 양상이지만, 태토와 저부가 미사리 유적과 달리 완전히 무문토기화하여 조기라고 해도 미사리 유적보다는 약간 늦은 시점에 해당하는

7) 공동 13호 출토 이중구연거치문토기는 이중구연 하단부가 뚜렷하게 단이 쳐서 구분되는 반면에, 어은 1지구 출토 이중구연거치문토기는 이중구연 폭이 넓고 하단부가 다소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이 토기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필자의 관점으로는 어은 1지구 118호 출토 토기의 경우 태도가 즐문토기 태도와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전기의 무문토기에 비해 태도가 사실성이 강한 편이고 구연단도 즐문토기처럼 편평하게 처리된 형태이다. 또한 미사리 유적 출토 토기의 경우 각목돌대문토기의 저부가 원저인 것은 아니며, 공반유물 속에 즐문토기 저부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각목돌대문토기가 처음 정착할 당시부터 지역성을 고려한다면, 재지계 토기와 접촉되는 상황에서 미사리유적과 남강유역의 토기상에 차이점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시간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촌리 나-3호 출토 각목돌대문토기는 남강유역에서 가장 늦은 형태로 보고, 공반하는 혼암리식토기도 이중구연의 경계가 애매하며, 사선문은 구연과 동체부에 걸쳐서 시문된 남부지역권 사선문 분류에서 IV기(안재호·천선행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강유역 전기 Ⅲ기로 편년하고 있다(천선행, 2005: 72). 이에 대해 최근 김병섭은 본촌리 나-3호 주거지 출토 유물 인용사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혼암리식토기는 내부 매몰토에 혼입된 유물로 추정되므로, 이 주거지에 소속시킬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각목돌대문토기 출토 유적 중에서 혼암리식토기가 공반된 예는 본촌리유적 하나에 불과한 매우 희소한 예이며, 보고서도 간행되지 않은 사례가 주 근거가 되어 일반적 편년기준으로 이용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촌리 나-3호 주거지 연대를 전기 후반이 아닌 초기까지 올려볼 수도 있고, 돌대문토기의 존속기간에 대한 문제와 횡대구획문의 출현시기에 대해 기존에 제시된 견해는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김병섭, 2009: 16-17).

필자는 앞 장에서 기 보고된 유적과 최근에 조사된 남강유역의 여러 유적에 대해 주거구조와 출토 유물의 공반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이를 토대로 하여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주거지를 다음과 같이 4개의 유형(A군~D군)으로 분류하였다. A군은 평면 방형과 장방형의 소형 주거지에 판석부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이다. 옥방 5지구 D-2호, 어은 1지구 94호·107호 주거지가 이에 해당되며, 이 외에 어은

時期	刻目突帶文	筋狀突帶文	他文様	淺鉢	壺	赤色磨研土器
早期		()	상동리DX구 2호: 1 상동리DX구10호: 2 소남리142호: 4 옥암5가PC-3호: 10~12 옥암5가PC-4호: 15 옥암5가PD-1호: 8~9 옥암5가PD-3호: 8~9 이천5가PD3호: 5 이천5가PD4호: 6 이천5가PD5호: 14, 14 본촌리DX구3호: 16~19			()
前期 I 期	 				()	 
前期 II 期	 	  		()		()
前期 III 期	 	()	 	  		

(도면 5) 남강유역 각목동대문토기 외 공반유물(천선행, 2005: 77~78)

1지구 69호·85호 주거지도 이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B군은 평면 장방형의 중형 주거지에 타원형·장방형의 판석부위석식노지, 장방형의 위석식노지, 초석열, 주공열, 단시설, 저장공 등이 확인되며, 각목돌대문토기 1·2형이 출토된다. 옥방 5지구 D-1호, 상촌리 D지구 B-2호, 어은 1지구 118호, 평거 3-1지구 청12호 주거지, 평거 3-2지구 2호 주거지가 이 유형에 해당된다. 옥방 5지구 D-1호 주거지는 양 장축에 주혈이 있고 노지는 무시설식으로 조사되었는데, 보고서 평면도상의 노지형태를 보면 소토부분이 위로 볼록하게 되어 있어 일반 수혈식 노지와는 차이가 있다.⁸⁾

C군은 중형의 장방형주거지에 판석부위석식노지 혹은 위석식노지, 단시설, 주공열, 저장공 등이 설치되어 있고 각목돌대문토기와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거치문토기가 출토된다. 평거 3-1지구 청3호·청7호 주거지에서는 1·2형과 4·5형의 각목돌대문토기와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되며, 청2호 주거지에서는 절상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된다. 청4호 주거지에서는 1·2형과 4형의 각목돌대문토기와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가 공반된다. 청11호 주거지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와 유두상과수부토기가 출토되는데, 판석부위석식노지의 형태로 보아 이 유형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노지는 불분명하지만 어은 1지구 77호·95호 주거지도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 D군은 중형의 장방형주거지에 판석부위석식노지 혹은 위석식노지, 수혈식노지가 설치되어 있고 초석열과 단시설도 확인된다. 각목돌대문토기, 절상돌대문토기와 더불어 공열문계토기가 출토되는 상촌리 D지구 B-10호, 옥방 5지구 C-3호, 본촌리 나-3호 주거지, 무촌리 1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또한 3형의 각목돌대문토기, 공열문계토기와 함께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거치문토기가 출토되는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가 이에 해당된다.

위에서 분류한 유형을 바탕으로 남강유역의 각목돌대문토기문화 단계를

8) 이는 노지에 사용되었던 돌이 후대에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평거 3-1지구 청3호 주거지 조사시에 처음에 노지가 있던 부분에 소토범위가 확인되어 주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장방형으로 노지 둘레에 돌을 세웠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4단계로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계는 A군 주거지와 어은 1지구 69호·85호, 옥방 5지구 D-9호 유구가 포함되며, 판석부위석식노지가 있는 소형의 방형·장방형주거지가 해당된다. 남강유역에 각목돌대문토기문화가 형성되는 단계로 주거지 내에서 각목돌대문토기 1형과 즐문토기가 공반된다. 어은 1지구에서 각목돌대문토기 주거지 주변에 신석기 말기의 야외노지가 함께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어느 정도 공존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단계는 B군 주거지와 D군의 상촌리 D지구 B-10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중형의 장방형주거지에 판석부위석식노지(타원형·장방형), 위석식노지(장방형), 초석열, 주공열, 단시설, 저장공이 확인된다. 각목돌대문 1·2형이 주로 출토되고 상촌리 D지구 B-10호 주거지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공열문계가 공반된다. 이 단계까지 청동기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1단계는 청동기시대 초기의 이른 시기에, 2단계는 청동기시대 초기의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 어은 1지구 118호 주거지를 1단계의 옥방 5지구 D-2호 주거지와 같은 단계로 편년하기도 하지만(천선행, 2005), 주거지의 규모면에서 1단계와 구분하였다. 또한 2단계의 주거 구조면에서 석상위석식노지와 초석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가락동식주거지와와의 관련성으로 파악(안재호, 2002; 김재운, 2003; 천선행, 2005)하여 전기에 편년하고 있지만,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북한지역에서 이미 석상위석식노지와 판석부위석식노지가 공존하고 초석열도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가락동식주거지와와의 관련성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3단계는 C군의 평거 3-1지구 청4호·청2호·청3호 주거지, D군의 옥방 5지구 C-3호 주거지가 해당된다. 그리고 어은 1지구 77호·95호 주거지도 이 단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형의 장방형주거지에 주로 위석식노지가 설치되나, 평거 3-1지구 청4호 주거지에는 판석부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각목돌대문 1·2형,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공반 출토된다. 4단계는 C군의 평거 3-1지구 청7호·청11호 주거지, D군의 본촌리 나-3호, 무촌리 1호,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 평거 3-2지구 1호 주거지가 이에 해당된다. 중형의 장방형주거지에 위석식노지 혹은 수혈식노지가 설치되고 초석열, 단시설이 있다. 각목돌대문 1·2·3형과 각목돌

대문 4·5형이 공반된다. 특히 본촌리 나-3호 주거지에서는 돌대가 구연에 접하는 2형이 다수 확인되고, 각목돌대문 5형(구순외측모서리각목문토기)도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이 단계에 해당된다.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이중구연토기와 거치문토기가 출토되며, 공열문계토기 중에 단사선문과 공열문이 결합된 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볼 때, 이 단계에 포함된다. 4단계는 본촌리 나-3호 주거지를 바탕으로 하여 기존의 편년안에 따르면, 전기 Ⅲ기(천선행, 2005)에 해당하지만, 같은 4단계에 속하는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의 탄소연대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할 때, 전기 Ⅲ기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단계설정

	유구	주거구조	출토 토기
1단계	A군(옥방 5지구 D-2호, 어은 1지구 94호·107호), 어은 1지구 69호·85호, 옥방 5지구 D-9호	방형·장방형의 소형주거지. 판석부위석식노지(타원형·장방형)	각목돌대문 1형
2단계	B군(옥방 5지구 D-1호, 상촌리 D지구 B-2호, 어은 1지구 118호, 평거 3-1지구 청12호, 평거 3-2지구 2호), D군(상촌리 D지구 B-10호)	중형의 장방형주거지. 판석부위석식노지(타원형·장방형), 위석식노지(장방형), 초석열, 주공열, 단시설, 저장공	각목돌대문 1·2형, 공열문계
3단계	C군(평거 3-1지구 청2호·청3호·청4호), D군(옥방 5지구 C-3호), 어은 1지구 77호·95호	중형의 장방형주거지. 판석부위석식노지, 위석식노지, 단시설, 주공열, 저장공	각목돌대문 3·4형, 절상돌대문, 이중구연, 거치문, 공열문계
4단계	C군(평거 3-1지구 청11호·청7호), D군(본촌리 나-3호, 무촌리 1호, 평거 3-1지구 청5호), 평거 3-2지구 1호	중형의 장방형주거지. 위석식노지, 초석열, 주공열, 단시설	각목돌대문 4·5형, 절상돌대문, 이중구연, 거치문, 공열문계

V. 편년과 지역 간 병행관계

남강유역의 각목돌대문토기문화는 4단계로 구분된다. 이는 각목돌대문토기의 속성변화와 공반유물, 주거구조와 관련하여 구분한 것이며, 이하에서는 절대연대 자료를 참고하여 편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 단계 주거지의 탄소연대 측정치가 몇 예가 없어 상한과 하한에 대해 논의하기에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조사된 평거 3-1지구 유적에서 탄소연대 자료가 추가됨으로써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절대연대 및 공반유물과의 관계, 전기무문토기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편년된 자료를 통해서 남한지역의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된 타 유적과의 병행관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조기설정에 관해, 천선행(2007: 24)은 각목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 즐문토기와 일정 정도 공존하는 것이 실연대상 확인되고, 전기무문토기 또한 각목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의 연대와 확연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어, 각목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를 연대적으로도 전기와 분리하여 조기로 설정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각목돌대문토기문화 단독기의 조기설정 문제에 대해, 김장석(2008: 107)은 여러 가지 절대연대 자료를 통한 상한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목돌대문토기와 역삼동식·혼암리식·가락동식 토기 간에 시간적인 차이를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남하시점이나 발생시점에서 각 토기가 약간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 고고학적으로 시기가 구분되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는 북한지역에서도 압록강, 청천강 일대의 여러 주거유적은 단일한 물질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점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압록강 중상류 일대에서는 각목돌대문토기와 공귀리식토기가, 청천강 일대에는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가, 대동강 일대에서는 각형토기가 분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김장석, 2008: 108).

신석기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에 남한 각지에서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요소가 공존하고 있었음은 여러 연구자를 통해 제시된 바 있다. 김장석(2008)의 논의대로 지역에 따라 각목돌대문토기와 역삼동식·혼암리식·가락동식토기의 형성시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이들 간에 시간차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각목돌대문토기만을 따로 떼어내어 조기로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여러 가지 토기, 석기, 주거구조 등 물질자료에서는 이전 시기와는 구분되고 또한 가락동식·혼암리식·역삼동식토기문화와는 차별되는 그러한 요소들이 각목돌대문토기문화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그중 한 가지는 신석기~청동기시대 전환되는 시점에 기존의 전기무문토기 제 요소보다 각목돌대문토기문화 요소가 북한과 남한 각지에서 더 많이 간취된다는 것이다. 물론 전기무문토기 제 요소 중에도 신석기시대 말기의 요소와 공반양상도 확인되지만, 각목돌대문토기문화에는 이러한 공반양상과 토기 태토나 제작기법 등에서 더 많은 요소가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조기의 설정은 가능하다고 본다. 천선행은 남강유역 유적의 절대연대 측정치는 조기로 편년되는 옥방 5지구 D-2호는 3230 ± 30 B.P., 3180 ± 60 B.P.이고, 전기로 편년되는 상촌리 D지구 B-2호는 3030 ± 50 B.P., 상촌리 D지구 B-10호 3010 ± 50 B.P.로 대체로 각목돌대문토기 단독기보다는 약간 늦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어은 1지구는 2850 ± 60 B.P., 2830 ± 60 B.P.로 단독기와 차이가 나지만 전기 이후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청동기시대 조기의 연대는 각목돌대문토기 단독기와 조기와 병행한다고 생각하는 이중구연토기의 수가리단계의 연대를 고려하면, 상한은 3200 B.P.를 전후한 시기로, 하한은 전기무문토기가 출현하는 2900 B.P.를 전후한 시기로 연대 폭을 설정하고 있다(천선행, 2007: 24-25).

다음 <표 4>는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방사성탄소연대 일람표이다. 탄소연대 자료에 따르면 각목돌대문토기 1단계에 해당하는 옥방 5지구 D-2호는 3230 ± 30 B.P.의 연대가 산출되어 기존의 견해와 같이 상한은 3200 B.P.(B.C. 16~15)를 전후한 시기로 보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절대연대 자료가 불충분하여 어은 1지구의 2850 ± 60 B.P.와 2830 ± 60 B.P.에

〈표 4〉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 단계의 방사성탄소연대 일람표

유구명		14C연대 (yrBP±1σ)	Calib Bev 5.0.1 (Intcal04.14C)				비고
			1sigma		2sigma		
대평리 옥방5	D-2호 주거지	3230±30	1522-1487	54%	1538-1431	91%	
대평리 옥방5	D-2호 주거지	3180±60	1516-1406	100%	1609-1369	94%	
상촌리 D	2호 주거지	3030±50	1386-1256	87%	1411-1152	96%	
상촌리 D	10호 주거지	3010±50	1319-1194	78%	1409-1114	99%	
평거 3-1지구	청12호 주거지	3015±30	1316-1254	63%	1386-1191	95%	목탄
평거 3-1지구	청11호 주거지	3010±25	1313-1252	69%	1322-1191	81%	돌대문토기 부착탄화물
평거 3-1지구	청11호 주거지	2980±25	1264-1192	78%	1306-1125	100%	목탄
평거 3-1지구	청11호 주거지	2970±25	1260-1227	34%	1300-1118	100%	목탄
평거 3-1지구	청11호 주거지	2995±25	1298-1208	93%	1316-1129	97%	목탄
평거 3-1지구	청4호 주거지	2950±25	1213-1126	90%	1262-1110	91%	목탄
평거 3-1지구	청4호 주거지	2930±25	1195-1140	52%	1217-1041	93%	목탄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	2935±25	1211-1112	91%	1219-1048	91%	목탄
평거 3-1지구	청5호 주거지	2945±25	1213-1122	92%	1221-1055	86%	목탄
대평리 어은1		2850±60	1090-967	72%	1212-892	97%	
대평리 어은1		2830±60	1056-906	94%	1132-836	96%	

* 보정연대는 비교의 일관성을 위하여 CALIB Radiocarbon Calibration(Version 5.0.2html)을 사용하여 직접 산출하였음.

비해 옥방 5지구 D-2호와 상촌리 D지구 B-2호와 B-10호의 연대가 너무 높게 나와 신뢰성이 없다고 보기도 하였다(천선행, 2005: 79). 하지만 평거 3-1지구 유적에서 각목돌대문토기 단계 주거지의 탄소연대가 산출됨으로써 어느 정도 이들 유적 간에 간극을 메울 수 있게 되었다. 어은 1지구 유적과의 차이는 다소 있지만,⁹⁾ 오히려 상촌리 D지구 B-2호·10호와 평거 3-1지구 유적 간에

9) 어은 1지구 유적의 절대연대 자료가 개별주거지의 특정 자료이므로, 유적 전체를 대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는 유물조합상으로 볼 때에 연대가 잘 연결되는 것 같다.

각목돌대문토기 2단계에 해당되는 상촌리 D지구 B-2호와 B-10호, 평거 3-1지구 청12호 주거지는 각목돌대문 2형이 출토되고, 상촌리 D지구 B-10호에서는 공열문계토기가 공반되어 남강유역에서 빠른 시기의 공열문토기로 볼 수 있다. 퇴화된 각목돌대문토기가 아직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이 단계까지 조기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는 1단계에 비해 주거지의 규모가 다소 커지고 내부구조도 다양해지며, 각목돌대문토기 형태에서도 구연부 가까이 돌대가 접합되는 등의 변화가 있어 1단계보다 다소 늦어 보이지만 조기로 편년 가능하다.

3단계에 해당하는 평거 3-1지구 청4호 주거지는 각목돌대문 4형(퇴화형)이 출토되고, 절상돌대문토기,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등이 공반된다. 물론 이중구연과 거치문은 조기로 소급될 가능성도 있으나, 3단계에서 각목돌대문 4형과 공반되는 양상으로 볼 때 남강유역에서는 전기전반(안재호·천선행 분류 전기 I기)에 편년되는 것으로 보인다. 4단계에서는 각목돌대문 5형(구순외측모서리각목문토기)이 출토되며, 이중구연토기와 거치문토기, 공열문계토기가 공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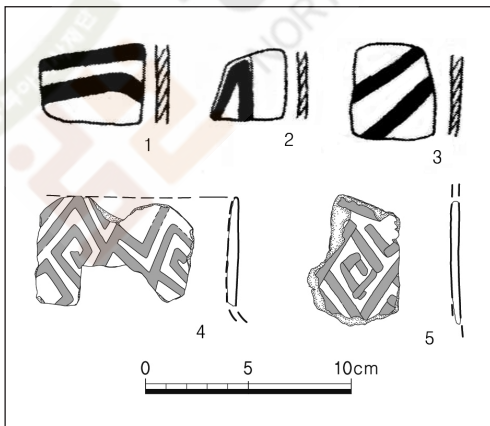
〈표 5〉는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지역 간 병행관계를 나타낸 표이다(천선행, 2005: 71). 이는 토기문양 속성과 형식에 따른 편년으로 남한지역의 청동기시대 전기는 I기~Ⅲ기로 구분하고, 남강유역은 I기~Ⅳ기로 세분하고 있다. 밀양 살내유적에서 출토된 이중구연거치문토기는 전기 I기와 Ⅱ기에 편년하고, 특히 가락동식토기를 혼암리식토기보다 이른 것으로 파악하여 남강유역에서 혼암리식토기의 출현을 전기 Ⅲ기(사월리 3호, 옥방 5지구 C-4호)에 편년하였다(안재호·천선행, 2004). 이러한 전기의 편년을 토대로 각목돌대문토기문화를 편년하는 데에 각목돌대문토기와 혼암리식토기(공열문계?)가 공반 출토된 유적을 전기후반에 설정하고 있다. 혼암리식토기의 연대에서 탄소연대 자료를 근거로 가락동식토기와 역삼동식토기의 발생 및 확산의 다음 시대(전기후반)에 위치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견해(김장석, 2001)도 있으며, 절대연대 자료와 함께 살펴보면 3단계의 자료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혼암

〈표 5〉 청동기시대 조·전기의 지역 간 병행관계(천선행, 2005)

중서부지역권		I 기	II 기	III 기	
남강유역권		I 기	II 기	III 기	IV 기
호서지역권		I 기	II 기	III 기	
	조기	전기 I기	전기 II기	전기 III기	

리식토기의 출토상황이 불분명하므로(김병섭, 2009), 전기후반까지 내려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단계는 3단계보다는 늦은 전기전반(안재호·천선행 분류 전기 II기)에 편년한다. 또한 앞의 절대연대 자료는 각목돌대문토기의 하한이 전기 무문토기 출현시점인 2900 B.P.를 전후한 시기에 설정(천선행, 2007: 24-25)된다는 것에서도 부합하므로 전기 무문토기 출현시점인 전기전반에 편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주 평거 3-1지구 청3호·청4호 주거지에서는 채색토기가 출토되었는데, 청3호 주거지 출토 토기는 호형토기의 경부편으로 태토는 세사립이 포함된 고운 점토이며, 기벽은 적색마연토기와 같이 매우 얇은 편이다. 이 토기는 외면에 채색으로 ‘雷文’을 표현하였는데, 태토와 채색기법 등에서 청4호 주거지 출토 토기도 이와 유사하다. 이처럼 ‘뇌문’이 시문된 토기는 서북지역의



〈도면 6〉 신암리 유적 2기층(1~3)과 평거 3-1지구 청3호(4)·청4호(5) 주거지 출토 채색토기

신암리유적 2기층에서 확인되는데, 문양 시문방법에서 평거 3-1지구 유적 출토 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도면 5〉). ‘뇌문’토기는 압록강하류역의 신암리 유적 1기층에서부터 확인이 되지만 시문방법에서 차이가 있다. 신암리 유적 1기층에서 출토된 토기는 호형토기의 동체부

에 다른 문양과 함께 뇌문을 침선으로 새긴 형태이며, 신암리유적 2기층에서 출토된 토기는 소성한 후에 미색과 붉은색, 황적색, 토색으로 채색한 것으로 문양은 뇌문토기 종류에 속하며, 이러한 특징으로 보아 요동반도 일대에서 알려진 것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배진성의 편년에 따르면(배진성, 2009: 20), 압록강하류역의 신암리 2기는 조기~전기전반에 해당하며, 신암리 제4지점 3문화층(신암리 2기)에서 이중구연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절상돌대문, 각목돌대문, 횡침선+점열문토기가 출토된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절대연대 자료와 함께 남강유역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하한이 전기전반에 편년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김장석(2008: 109)의 논의대로 남한 내 각목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의 출현, 혼암리식토기의 등장은 하나의 과정으로 설명되어야 하며, 고고학적인 설명 안에서 시점상으로 차이를 두기가 곤란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남강유역에서 각목돌대문토기문화가 형성될 시점에는 가락동식토기나 혼암리식토기보다 각목돌대문토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중구연과 거치문토기, 공열문토기는 각목돌대문토기 속성에서 퇴화된 형태의

〈표 6〉 한반도 각목돌대문토기 출토 유적의 상대편년(천선행, 2005)

지역 시기	중서부지역권		호서지역권	남강유역권			
	미사리	황석리	수당리·영동동	옥방5지구	어은1지구	상촌리	본촌리
무문토기 시대 조기	■			■	■	■	
전기 I기		■		■	■	■	
전기 II기		■		■	■	■	
전기 III기			■		■		■

것과 주로 공반되는 양상으로 볼 때에 각목돌대문토기보다는 다소 늦게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표 6>과 같이 천선행(2007: 79)의 논지대로 미사리유적과 남강유역의 일부 주거지만을 조기로 설정할 경우, 이를 과연 조기라는 하나의 문화기로 설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그 시대 하나의 문화기로 설정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출현과 성립시키는 다르더라도 오히려 문화기의 연대 폭을 넓혀 그 문화기 내에서 편년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퇴화된 형태의 물질문화가 아니라면 적어도 그 시기 내에 포함시켜 분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각목돌대문토기문화는 퇴화된 형태가 아니라면 조기 내에 편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전기 무문토기문화-가락동식·역삼동식·혼암리식-가 활발히 전개되는 전기후반까지 존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는 가락동식주거지와 역삼동식·혼암리식주거지에서 각목돌대문토기가 출토되어 전기후반에 편년되는 것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주거형태까지 전기후반까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중서부지역권의 경우 미사리→황석리 유적으로의 시간차는 인정되지만, 황석리 유적을 전기까지 내려볼 이유는 없다고 본다. 태토면에서 이미 무문토기 단계로 접어든 것이 확실하고, 미사리 유적과 각목돌대문토기 형태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전기의 이른 시기에 편년된다고 하였는데(천선행, 2005: 72), 이는 오히려 미사리 유적과 유사하고 타 전기무문토기와의 공반이 없다면 조기에 편년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태토면에서 이미 무문토기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오히려 미사리 유적 출토 토기는 태토면에서 신석기~청동기시대의 과도기적 양상으로 보아야 하고, 황석리 유적은 확실히 청동기시대 양상이므로 조기에 편년 가능하다.

이 외에 한강유역권에서 최근 보고된 자료 중에 흥천 외삼포리 유적 3호 주거지와 5호 주거지를 살펴보자(강원문화재연구소, 2008). 3호 주거지는 평면(장)방형의 소형 주거지로 위석식노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초석이 확인된다. 내부에서는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토기, 삼각만입석축이 출토되고 내부 퇴적층에서 공열문토기편과 즐문토기편이 공반되었다. 5호 주거지는 평면 방형의 소

형 주거지로 위석식노지와 초석이 확인된다. 출토 유물은 각목돌대문, 절상돌대문, 이중구연거치문과 적색마연토기, 즐문토기, 삼각만입석촉, 이단병식석검 병부편이 출토되었다. 한편 정선 아우라지유적 1·3·4·5호 주거지에 장방형의 위석식노지가 설치된 것을 통해, 활석을 이용한 노지형태는 호서지역의 가락동유형과 유사하고, 동일한 주거형태의 3호 주거지에서 공열토기가 공반되는 것을 통해 전기의 이른 시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천선행, 2007: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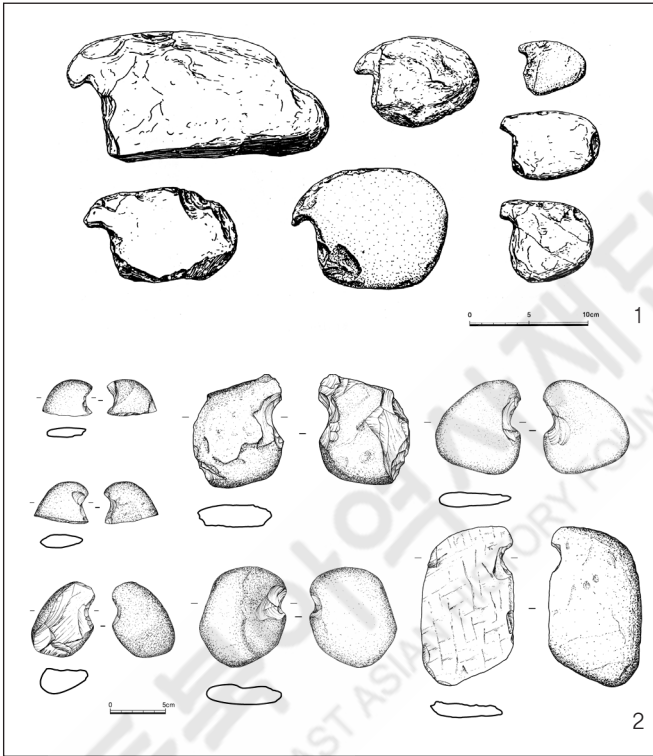
철원 외삼포리 3호 주거지는 3080 ± 60 B.P., 5호 주거지는 3120 ± 80 B.P.의 연대가 산출되어, 남강유역의 옥방 5지구와 상촌리유적의 연대와 유사하다. 3호 주거지는 내부 매물토상에서 공열토기가 출토되고, 5호 주거지는 이중구연거치문과 적색마연토기, 이단병식석검 병부편 등이 출토되어 천선행의 편년에 따르면 전기의 이른 시기에 편년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주거지 형태가 방형의 소형이고 위석식노지와 초석열도 이미 초기부터 확인되며, 각목돌대문토기가 1·2형에 속하는 것과 탄소연대 수치를 고려해 보면, 초기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정선 아우라지 유적은 각목돌대문토기의 속성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노지형태와 공열문토기가 공반되는 것만으로 청동기시대 전기로 설정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호서지역의 용정동 II-7호와 영등동 I-3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각목돌대문토기, 절상돌대문토기와 가락동식토기의 공반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면, 주거구조는 기본적으로 세장방형의 형태를 띠는 가락동식주거지-둔산식주거지-로 판단된다. 이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대형의 장방형주거지로 변하는 각목돌대문주거지와는 달리 가락동식, 역삼동식·혼암리식주거지는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대형의 세장방형주거지로 변화하는 양상에 비추어보면, 이는 가락동유형에 해당하는 주거지에 돌대문요소가 포함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들 유적에서 이중구연사선문, 이중구연거치문과 구순각목문이 함께 시문되는 양상은 각목돌대문 5형(구순외측모서리각목문토기)과 관련시키면 전기 II기(전기전반)에 구순각목문이 출현한 양상으로 볼 때, 가락동유형 II기(이형원[2002] 분류) 혹은 전기 II기~전기 III기에 편년된다.

위에서 살펴본 물질문화의 속성과 절대연대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남한지

역의 각목돌대문토기문화는 청동기시대 초기에서 전기전반에 편년된다. 초기 무문토기의 계통에 대해서 기존에는 크게 압록강유역설(안재호, 2000; 배진성, 2003; 천선행, 2005)과 두만강유역설(김재운, 2004; 강인욱, 2005)로 양분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새로운 문양과 기종 구성에서 살펴볼 때 서북한과 동북한 지역 모두에서 구해진다고 이해되고 있다(배진성, 2007). 그에 따르면, 초기 무문토기문화는 서북계라는 주류 속에서 동북계와 재지계 요소도 가미되어 새로운 토기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또한 무문토기문화 출현에는 서북계 > 동북계 ≥ 재지계 순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영동·영남지역의 적색마연대부토기, 심발형토기 등은 두만강요소라 보고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 남강유역에서 출토되는 매부리형석기와 장방형석도 등도 동북한 지역의 요소로 볼 수 있다.

초기 무문토기문화의 계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이 매부리형석기이다. 김재운(2003: 72-73)은 각목돌대문토기와 그 외 공반유물 및 상촌리 D지구 B-2호 주거지 출토 매부리형석기를 예로 들어 동북지방과의 관련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동북지방의 매부리형석기는 부리 부분만을 가공하여 홈을 낸 형태로, 상촌리 D지구 B-2호 주거지 출토 석기와는 형태면에서 동북지방의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이상길의 언급한 것처럼 동북지방의 매부리형석기와 남강유역에서 전기 말~후기에 출토되는 반원형의 부리형석기는 상단을 제외한 거의 모든 부분을 타격하여 날을 세운 형태로 제작이나 기능면에서 다른 것임은 분명하다(이상길, 1998: 253-254). 하지만, 평거 3-1지구 유적에서 각목돌대문토기와 함께 출토된 매부리형석기는 부리부분만을 가공한 형태로 동북지방의 것과 매우 흡사하며(〈도면 6〉), 또한 다수가 출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천선행이 지적한 대로 매부리형석기가 동북지방을 중심으로 확인되지만, 실질적으로 돌대문토기가 출토되는 서포항유적에는 없으므로 돌대문토기와 매부리형석기가 동시에 공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천선행 2005: 85-86), 평거 3-1지구 유적의 예로 볼 때, 돌대문토기와 매부리형석기는 동시에 공반 출토된 것이 명확하며, 초기 무문토기문화 형성에 동북지방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면 7〉 매부리형석기-회령 오동 2호 주거지(1), 평거 3-1지구 청4호 주거지(2)

어은 1지구 118호 주거지 출토 적색마연토기에 대해서, 천선행은 전기 이후의 적색마연토기와는 다르고, 한강유역에서 각목돌대문토기의 단독기의 경우, 적색마연토기 공반예가 없으므로 남강유역의 적색마연토기를 돌대문토기문화기에 귀속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였다(천선행, 2007: 14). 이는 한강유역의 미사리유적을 돌대문토기문화의 전형으로 생각하고 적색마연토기 출토예가 없는 점을 중요한 요소로 보기 때문에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살펴본 부리형석기와 장방형석도 등 동북지방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적색마연토기도 돌대문토기문화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북한지역에서도 돌대문 단순기는 찾기 어렵고, 또한 남한 내에서도 미사리유적이든 남강유역이든 기본적인 주거구조나 토기문화에서 다양성이 포함되어

〈표 7〉 서북지역의 편년과 그 병행관계(배진성 2009: 20)

압록강하류역		압록강중류역	청천강유역		남한
신암리3-1			당산상층		조기
신암리Ⅱ	古	심귀리·공귀리Ⅰ	세죽리Ⅱ ₁ ·구룡강Ⅰ		
	新				전기전반
신암리Ⅲ	심귀리·공귀리Ⅱ	세죽리Ⅱ ₂	구룡강Ⅱ ₁	전기후반 후기	
미송리Ⅱ ₁			구룡강Ⅱ ₂		
미송리Ⅱ ₂		세죽리Ⅱ ₃ ·구룡강Ⅲ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형이 아니라고 해서 시기가 늦고 혹은 그 문화기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곤란하다. 한편, 배진성은 중앙박물관 소장 두만강유역 무문토기는 ‘지두상 돌대문토기’로 기형과 제작방법이 남한의 것과 다르므로 두만강 기원설은 맞지 않고, 돌대 부착 수법은 서북지역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절상돌대문은 압록강유역에서, 말기 즐문토기의 다른 계통의 토기는 요동지역의 영향으로 파악하고, 남한 초기 무문토기 계통은 요동~압록강유역에서 구해진다고 하였다(배진성, 2007).

이처럼 동북계와 재지계 요소가 일부 가미되면서 서북계의 주류 속에서 형성된 남한지역의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하한은 전기전반에 각목돌대문요소가 소멸하는 서북한지역의 압록강중하류역과 청천강유역과 같은 양상으로 파악된다. 서북한지역의 편년과 남한과의 대비는 배진성의 연구(2007·2009)를 참고하면,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록강하류역의 신암리Ⅱ기는 초기~전기전반에 해당하며, 신암리 제4지점 3문화층(신암리Ⅱ기)에서 이중구연토기가 다수 출토되고, 절상돌대문, 각목돌대문, 횡침선+점열문토기가 출토된다. 이후 신암리Ⅲ기에 이르러서는 돌대문토기가 출토되지 않고, 이중구연요소만 남아 있고 미송리형토기가 출토되기 시작한다. 압록강중류역의 심귀리·공귀리Ⅰ기에서는 돌대문과 이중구연요소가 확인되나, 전기전반~후반에 해당하는 심귀리·공귀리Ⅱ기에서는 돌대문요소가 사라지고 이중구연요소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청천강유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산 상층에서부터 확인되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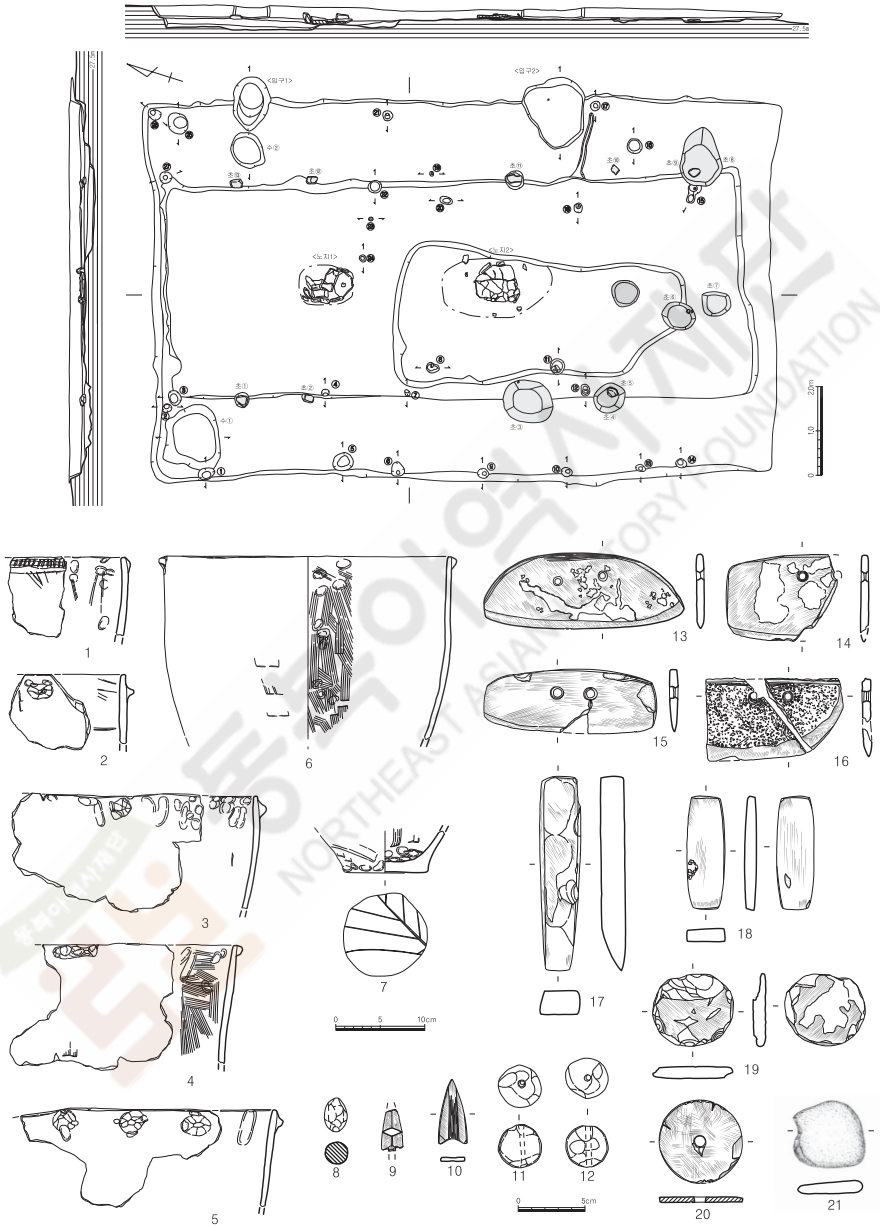
돌대문과 절상돌대문요소가 전기후반에 해당하는 구룡강Ⅱ기에는 돌대문요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압록강~청천강유역에서는 나카무라 다이ске[中村大介]의 논의(2008: 57)에서도 요령식동검 출현 직전까지 돌대문토기가 존속하고 이중구연토기와도 공반하게 되며, 이는 남한의 전기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¹⁰⁾ 이러한 편년과 비추어볼 때, 남한지역의 각목돌대문토기문화도 전기전반의 이른 시기까지 전개되다가 전기전반의 늦은 시기에는 가락동식, 역삼동식·혼암리식 토기문화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전개되는 과정에 밀려 소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Ⅵ.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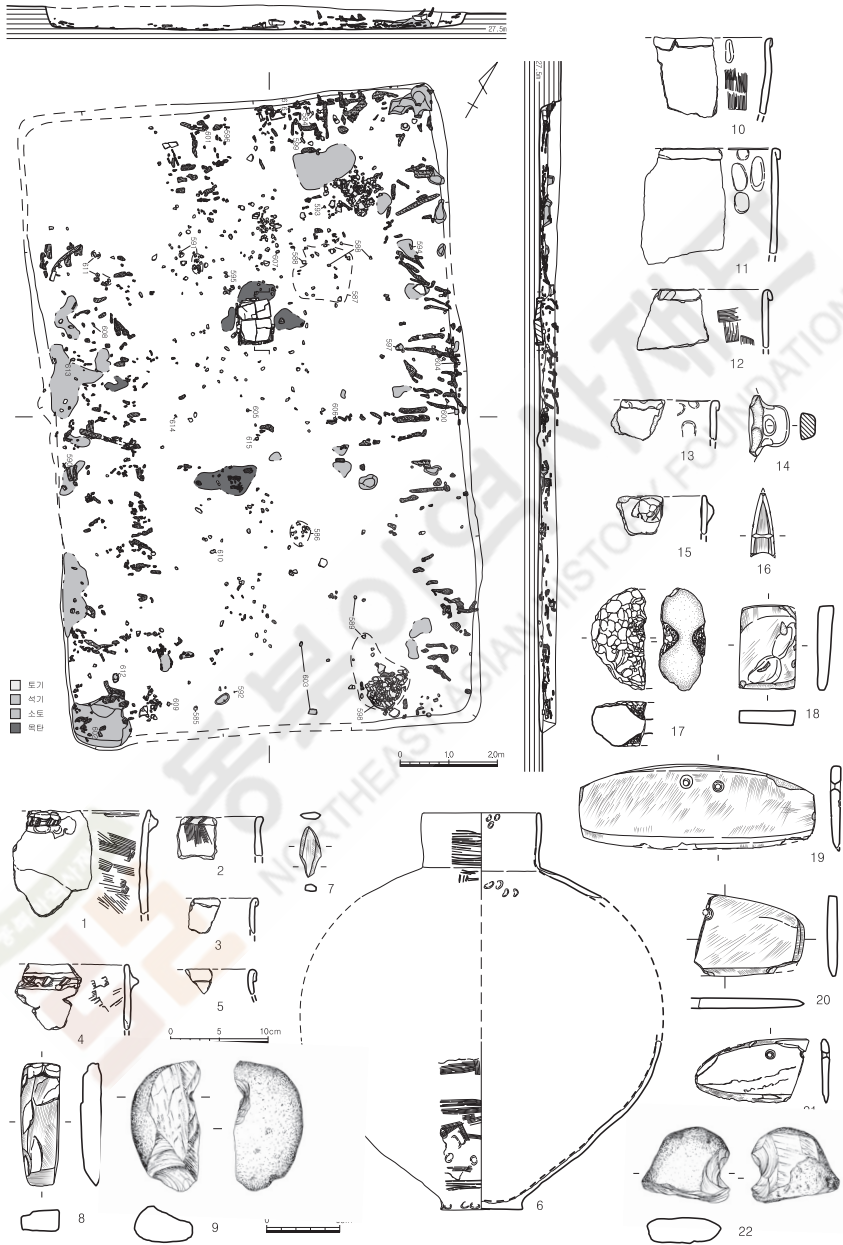
각목돌대문토기문화는 한강유역과 남강유역, 호서지역 등 한반도 남부지역 각지에서 다발적으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적인 주거구조와 토기조합상은 유사하며, 차이점은 각 지역의 입지와 환경에 따른 지역성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반유물도 재지계와의 관련성으로 각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강유역의 미사리 유적을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전형으로 생각하여 타 유적과의 병행관계나 편년에 이용하는 것은 잘못된 논리라고 생각된다. 각 지역별로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전형을 찾아내고 이에 따라 단계설정과 편년을 한 후에 병행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10) 이는 2009년도 청동기학회 토기분과에서 천선행이 지적한 것처럼, 각목돌대문토기 4단계 중 본촌리 나-3호 주거지의 연대를 초기(혹은 전기전반)까지 올려볼 경우, 요령식동검과 본촌리 나-3호 출토 횡대구획문토기 등의 연대가 문제점으로 될 지도 모른다. 본촌리 나-3호 출토 횡대구획문토기가 신암리Ⅲ기와 병행하는 상마석A지점과 병행하는 것으로 볼 때, 신암리Ⅲ기는 전기전반~전기후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필자도 이에 대해서는 북한지역의 편년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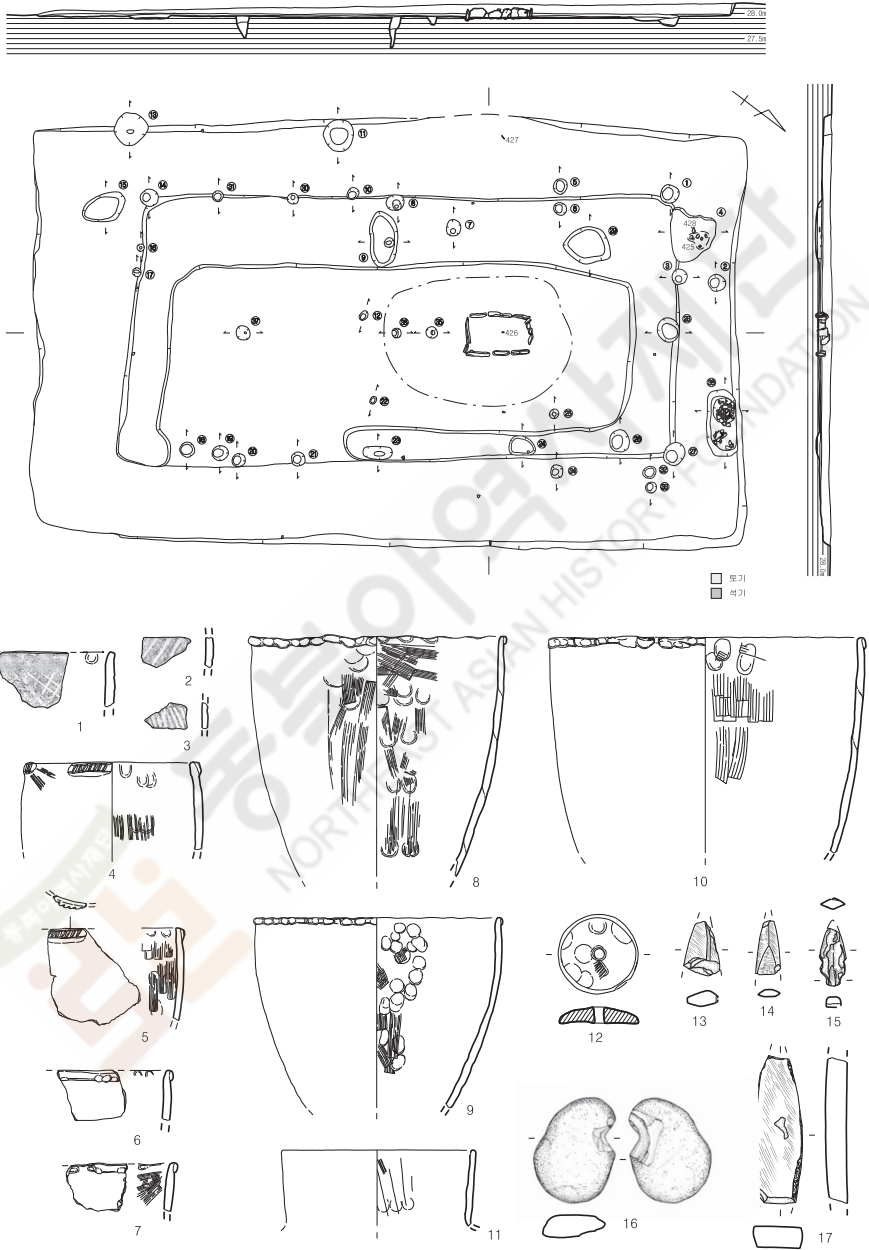
남강유역의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전개과정은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와 2단계는 청동기시대 초기에 해당되는 시기로 설정하며, 소형의 (장)방형주거지와 중형의 장방형주거지에서 각목돌대문 1·2형이 출토된다. 1단계에는 즐문토기가 공반되고 2단계에는 공열문계토기가 출현한다. 3·4단계에 이르러 각목돌대문토기와 이중구연, 거치문, 공열문계 요소가 다수 공반하는데, 3단계에는 각목돌대문 3·4형이, 4단계에는 각목돌대문 5형(구순외측모서리각목문토기)이 출현하여 그 시기차를 상정할 수 있다. 남강유역의 각목돌대문토기문화의 하한은 3·4단계에 해당하는 절대연대 자료가 전기 무문토기의 출현 시점인 2900 B.P.를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므로, 청동기시대 전기전반에 편년된다. 또한 남강유역의 무문토기문화 성립기의 계통은 서북계(주거구조, 각목돌대문토기, 채색토기)라는 주류 속에서 동북계(적색마연토기, 부리형석기, 장방형석도)와 재지계요소(이중구연, 거치문)도 가미되어 새로운 토기문화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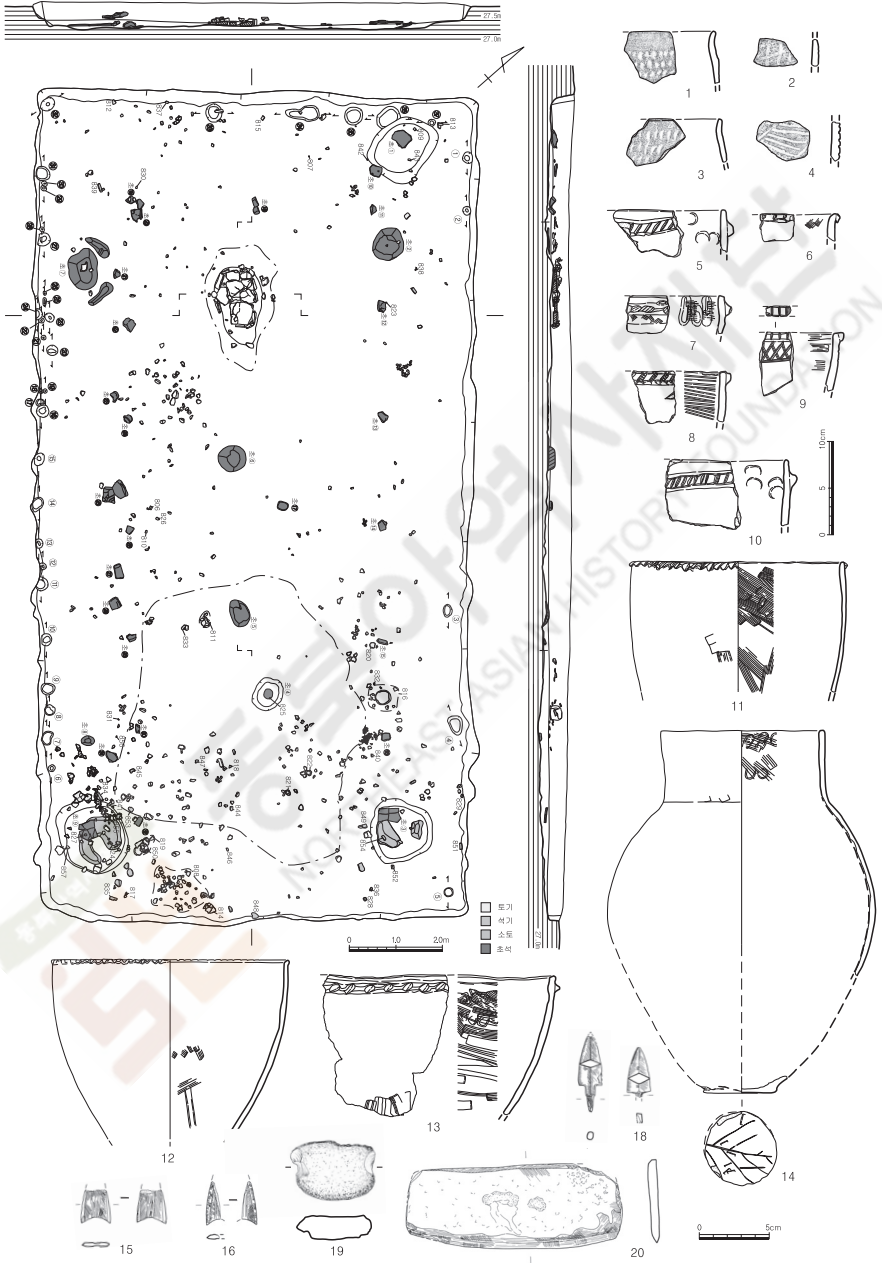
〈도면 8〉 진주 평거 3-1지구 청2호 주거지(1/120)와 출토 유물(1~7: 1/6, 8~21: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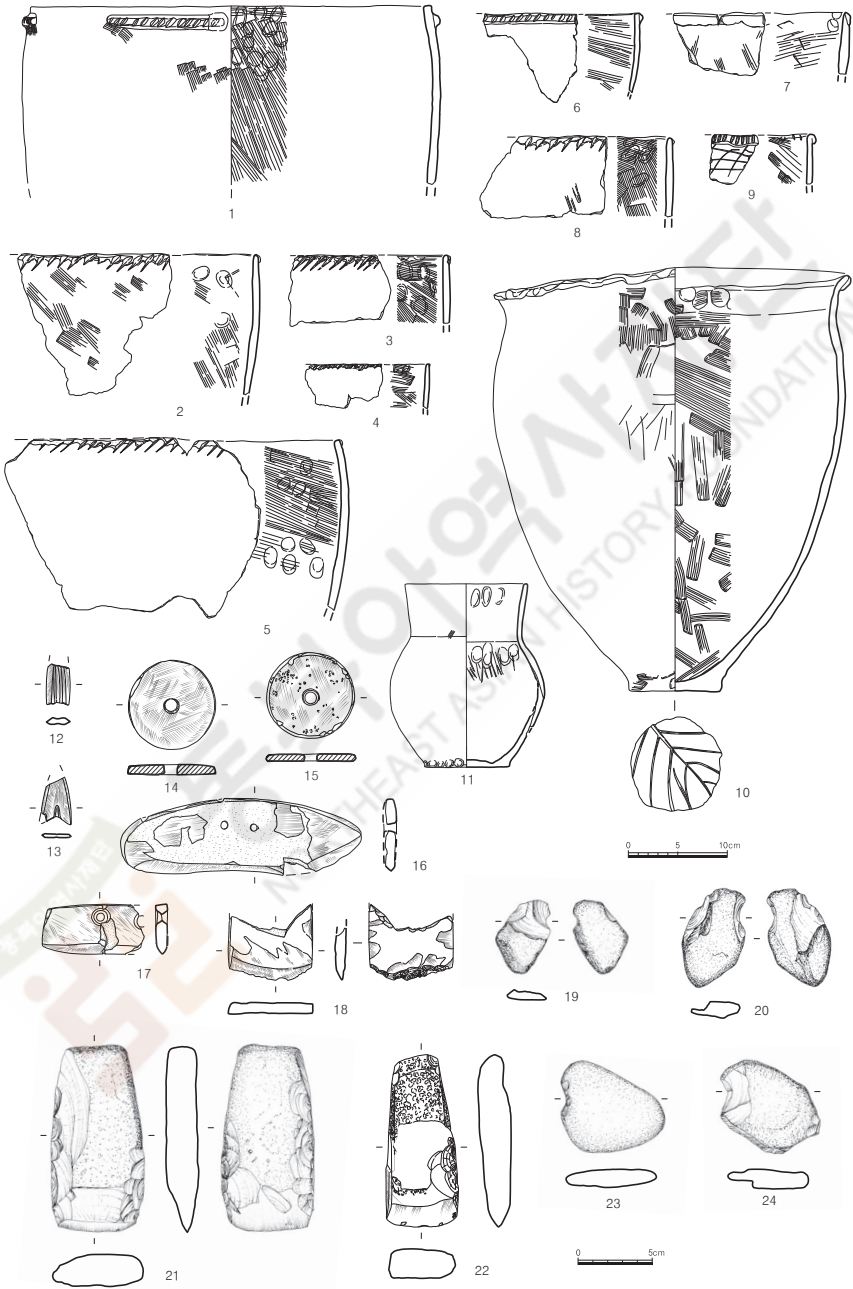
〈도면 9〉 진주 평거 3-1지구 청4호 주거지(1/120)와 주거지 바닥(1~5: 1/6, 6: 1/10, 7~9: 1/4) 및 상부(10~15: 1/6, 16~22: 1/4) 출토 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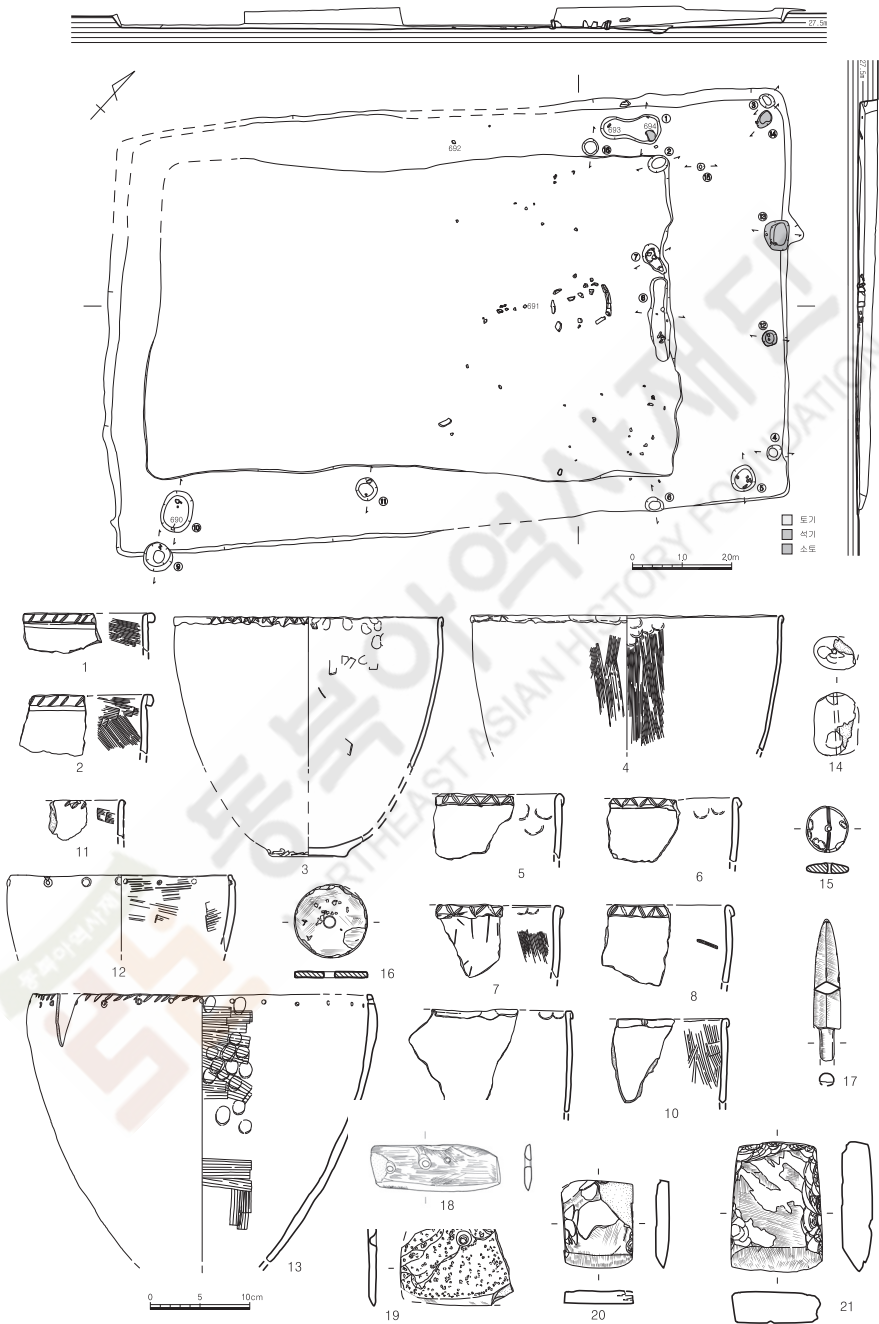
〈도면 10〉 진주 평거 3-1지구 청2호 주거지(1/120)와 출토 유물(1~11: 1/6, 12~17: 1/4)



〈도면 11〉 진주 평거 3-지구 청7호 주거지(1/120)와 상부 출토 유물
(1~13: 1/6, 14~20: 1/4)



〈도면 12〉 진주 평거 3-1지구 창7호 주거지 바닥 출토 유물(1~11: 1/6, 12~24: 1/4)



〈도면 13〉 진주 평거 3-지구 청5호 주거지(1/120)와 출토 유물
 (1·2·5~13: 1/6, 3·4: 1/8, 14~21: 1/4)

참고문헌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5, 「정선 아우라지 유적」, 정선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부지 시굴조사 지도위원회의 자료.
- 江原文化財研究所, 2008, 『洪川 外三浦里 遺蹟』.
- 강인옥, 2005, 「한반도 동북한지역 청동기문화의 지역성과 편년 - 토기의 변천을 중심으로」, 『江原地域의 靑銅器文化』, 2005년 추계 학술대회, 江原考古學會.
- 강인옥, 2009, 「토기를 중심으로 본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의 전기~중기의 문화변천」, 『한국청동기학회 토기분과 제1회 워크숍 발표자료』.
- 강중광, 1979, 「신암리원시유적 제4지점에 대하여」, 『역사과학』 2.
- 建國大學校博物館, 2001, 『晋州 上村里 3~8號 支石墓 및 先史遺蹟』.
- 慶南文化財研究院, 2008, 「晋州 平居 3宅地 開發事業地區內 遺蹟 發掘調査(Ⅱ地區) 3次 現場說明會 資料」.
- 慶南發展研究院, 2007, 「晋州 平居洞 遺蹟」, 진주 평거 3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I 구역) 내 문화유적 추가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
- 高麗大學校博物館, 1994, 『溪沙里』 第5卷.
- 국립김해박물관, 2005, 『전환기의 선사토기』.
- 국립김해박물관, 2006, 『轉換期의 先史土器 資料集』.
- 金炳燮, 2003, 「韓半島 中南部地域 前期 無文土器에 대한 一考察 - 二重口緣土器를 中心으로」, 慶尙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金炳燮, 2009, 「남한지역 조·전기 무문토기 편년 및 북한지역과의 병행관계」, 『韓國靑銅器學報』 4號, 한국청동기학회.
- 김영우, 1964, 「세죽리 유적 발굴 중간 보고(2)」, 『고고민속』 4.
- 김용간, 1959, 「강계시 공귀리 원시 유적 발굴 보고」, 『유적발굴보고』 6.
- 김용간·리순진, 1966, 「1965년도 신암리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 3.
- 김용간 외, 1972, 「서포항원시유적 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4)』.
- 김장석, 2008, 「청동기시대 초기설정론 재고」, 『한국고고학보』 69.
- 金材胤, 2003, 「韓半島 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김현식, 2008, 「남한 청동기시대 초기-전기 文化史的 意味」, 『考古廣場』 2, 釜山考古學研究會.

- 東西文物研究院, 2009, 『진주 가호지구택지개발사업부지 내 유적』, 발굴조사 2차 지도위원회 및 현장설명회 자료집.
- 동아대학교박물관, 1999, 『남강유역 문화유적 발굴도록』.
- 리순진, 1965, 「신암리유적발굴중간보고」, 『고고민속』 3호.
- 朴淳發, 2002, 「錦山 水塘里 靑銅器時代 聚落의 時間的 位置」, 『錦山 水塘里遺蹟』, 忠南大學校 百濟研究所.
- 裴眞晷,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 裴眞晷, 2007, 『無文土器文化의 成立과 階層社會』, 서경문화사.
- 사회과학원출판사, 1960, 「회령 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제7집.
- 서울大學校博物館, 1994, 『漢沙里』 第4卷.
- 석광준·김송현·김재용, 2003, 『강안리, 고연리, 구룡강유적발굴보고』, 백산자료원.
- 석광준·차달만, 1997, 「구룡강유적에 대해서」, 『조선고고연구』 1997-4호.
- 선문대학교박물관, 2001, 『진주 대평리 옥방 5지구 선사유적』.
- 송만영, 2001, 「南韓地方 農耕文化形成期 聚落의 構造와 變化」, 『한국농경문화의 형성』, 제25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발표요지.
- 安在皓, 2000, 「韓國 農耕社會의 成立」, 『韓國考古學報』 43.
- 安在皓, 2002, 「赤色磨研土器의 出現과 松菊里式土器」, 『韓國 農耕文化의 形成』, 학연문화사.
- 安在皓, 2006, 「靑銅器時代 聚落研究」, 釜山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 安在皓, 2009, 「남한 청동기시대 연구의 성과와 과제」, 『동북아 청동기문화 조사연구의 성과와 과제』, 학연문화사.
- 安在皓, 2010, 「韓半島 靑銅器時代文化의 起源과 傳播」, 『靑銅器時代의 蔚山太和江文化』, 울산문화재단연구원 개원10주년 기념논문집, 울산문화재단연구원.
- 安在皓·千羨幸, 2004, 「前期無文土器의 文樣編年と地域相」 『福岡大學考古學論集 - 小田富士雄先生退任記念』.
- 안춘배, 1999, 「산청 소남리 취락유적」,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영남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제3회 합동고고학대회.
- 이상길, 1998, 「無文土器時代의 生活儀禮」, 『환호취락과 농경사회의 형성』, 영남고고학회 구주고고학회 제3회 합동고고학대회.
- 이상길, 1999,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선사유적」, 『남강선사문화세미나요지』.
- 李亨源, 2002, 「韓國 靑銅器時代 前期 中部地域 無文土器 編年 研究」, 忠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鄭登元, 1991, 「初期農耕遺蹟의 立地環境」, 『日韓交渉의 考古學－彌生時代片』, 六興出版.
- 정찬영, 1983, 「심귀리집자리」, 『유적발굴보고』 13.
- 차달만, 1992, 「당산유적 옷문화층 질그릇갓춤새의 특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 차달만, 1993, 「당산유적 옷문화층 질그릇갓춤새의 특징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4.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韓國考古學報』 57.
- 千羨幸, 2007, 「無文土器時代의 早期設定과 時間的 範圍」, 『韓國青銅器學報』, 創刊號.
- 하인수, 2006, 「末期 櫛文土器의 成立과 展開」, 『韓國新石器研究』 第12號, 韓國新石器學會.
- 宮本一夫, 2004, 「北部九州と朝鮮半島南海岸地域の先史時代交流再考」, 『福岡大學考古學論集－小田富士雄先生退任記念』.
- 藤尾慎一郎, 2002, 「朝鮮半島の「突帶文土器」」, 『韓半島考古學論叢』, ずさわ書店.
- 中村大介, 2008,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編年과 年代」, 『韓國考古學報』 68.
- 後藤直, 1995, 「朝鮮半島原始時代農耕集落의 立地」, 『第四紀研究』 第33卷 第5號, 日本第四紀學會.

[ABSTRACT]

Gangmokdoldaemun Pottery Culture of the Early Bronze Age in the Nam River Basin

Ko, Minjung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between the Neolithic Age and the Bronze Age in the South Korea, emerged social and economic features different from those of former period such as the structure and shape of housing, producing skills and patterns of pottery, agricultural activities, and so on. With regard to such transitional characteristics, there have been various studies on chronology and lineage since the early period of the Bronze Age based on the features of Gakmokdoldaemun pottery.

There is a new point of view that emerged recently about the system of the Early Mumun Pottery cultures in the Bronze Age. This claims that the establishment of the Mumun Pottery cultures in the South Korea depended on each region, and that the timing of appearance was also different. Gakmokdoldaemun pottery cultures are similar to those in Han river basin, Nam river basin, and Hoseo area in terms of basic housing system, pottery, and stone complex statues. However, the differences should be regarded as regional features in relation to the local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s. Thus, it may be a wrong idea that Misari sites in Han river basin are a type of Gakmokdoldaemun cultures and thus they could be adopted to calculate the relations with other sites and chronology. It would be appropriate to find the typical example of Gakmokdoldaemun cultures in each region, set the stages,

and estimate the chronology before the relations can be examined.

This study involves analysis on new data on Nam river basin as well as existing achievements. As a result, it turned out that Gakmokdoldaemun pottery cultures in Nam river basin are divided into four different types based on the structure of residential areas and related sites, and that they underwent four different steps of changes. The first and second steps are related to the early period of the Bronze Age, during which some features of Gakmokdoldaemun pottery and Gongyeolmun pottery types were overlapped. The third and fourth steps are related to the First Half part of the Bronze Age, during which many elements of Gakmokdoldaemun pottery, dual Guyeon pottery, Geochimun pottery, and Gongyeolmun types were overlapped. The data regarding the first and second steps show that the early period of Gakmokdoldaemun pottery cultures in Nam river basin falls on around 3200 B.P. The absolute chronological data related to the third and fourth steps concentrate on around 2900 B.P. when the First Half part Mumun pottery appeared.

It is thought that the late period of Gakmokdoldaemun pottery cultures is related to the mid-downstream of Amrok river and Cheongcheon river basin in the Northwest part of Korea where the elements of Gakmokdoldaemun pottery were disappearing generally in the early Mumun period. Besides, the system of Mumun pottery cultures of Nam river basin in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formed a new pottery cultures mainly with the Northwest Korea system (residential structure, Gakmokdoldaemun pottery) and additionally with the Northeast Korea system (Jeoksaekmayeon pottery, beak-shaped stoneware, rectangle stone knife), and local production system elements (dual Guyeon pottery, Geochimun pottery).

keywords

Nam River Basin, Gakmokdoldaemun Pottery, Dual Gueon Pottery, Geochimun Pottery, Gongyeolmun Pottery, Early Bronze Age, Chronology, Lineage



동북한 청동기시대 형성과정

- 연해주와 연변 고고자료의 비교를 통해서 -

김재운 | 부경대학교 강사

I. 머리말

남한의 선사고고학에서 동북한의 청동기시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남한 공열문토기의 계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李白圭, 1974; 이청규, 1988). 그 후, 새롭게 남한의 청동기시대 '조기'(안재호, 2000)를 설정할 수 있었던 '각목돌대문토기'의 등장은 동북한 지역(김재운, 2004)뿐만 아니라 요동반도와 압록강유역 등을 고찰하게 되었으며(배진성, 2004·2007b; 천선행, 2005), 이러한 연구들은 청동유물뿐만 아니라 토기 자료로도 한반도 청동기시대 고고학 연구영역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발단이 되었다.

이러한 고고학적 연구영역은 지역마다 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동북한의 신석기 후기는 두만강 내륙, 연해주 해안가와 연해주 내륙, 목단강유역까지 관련이 깊은 것으로 논의되었고(김재운, 2009), 하나의 문화지역 혹은 문화권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투고일: 2011년 3월 30일, 심사일: 2011년 5월 19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31일.

이 지역의 신석기 후기는 대체적으로 3500 B.P.까지로 그 이후가 되면 청동기시대가 되는데, 중국 연변에서는 흥성문화(吉林省文物研究所 외, 1998), 러시아 연해주에서는 마르가리토프카 문화(가르코빅, 1967; 안드레예바, 1970), 동북한에서는 호곡 2기(황기덕, 1975), 호곡 1기 혹은 서포항 5기(大貫靜夫, 1996; 배진성, 2003; 김재운, 2004; 千羨幸, 2005)로 대표된다. 이들 문화에 속하는 토기는 흥성문화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로, 구연부가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 등으로 장식되고, 동북한의 토기들도 이중구연 혹은 공열문 등으로 구연부가 장식되고 동체부는 무문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공통적인 고고자료들이 출토되고 있지만, 각 국가들의 고고문화 혹은 고고학 연구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해 이 시대의 시작 문제에 대한 인식은 공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의 차이 혹은 문제점 등은 연구동향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토기를 비교·고찰해서, 동북한 청동기시대 형성기를 구체화해 보도록 하겠다.

II. 연구동향과 문제제기

1_ 연구동향

1) 북한

북한의 청동기시대 연구는 철기시대와 더불어 광복 후 '脫식민지사관'을 목적으로 '금석병용기'를 탈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연구된 분야로 북한 선사고학의 가장 중심이 된다. 이러한 목적으로 발굴 조사된 오동 유적, 범의구석 유적, 초도 유적 등은 청동기시대 연구의 기준이 되는 자료이다.

〈표 1〉 동북한의 청동기시대 연구경향

신석기시대	청동기 전기		청동기 후기		
	오동 1층 → 범의구석 2기 → 초도		→ 오동 2층(4호) → 오동 3층(5호) 범의구석 3기 → 범의구석 4기	황기덕 1970	
기원전 3000	기원전 2000년기			기원전 1000년기	
	전반 초	전반후	후반	전반	
	범의구석 1기	서포항청동 1 → 오동 1층	→ 범의구석 2기 → 초도	→ 오동 2·3층 → 범의구석 4기 범의구석 3기	황기덕 1975
호곡 1	서포항청동 1 → 오동 1층	범의구석 2기 → 초도		황기덕 1984	

그중 범의구석 유적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와 흑색마연토기는 동북한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를 구분하는 기본자료로서 편년의 틀을 마련하였다. 뿐만 아니라 범의구석 출토의 적색마연토기 형식에 따라서 그 이전에 조사된 오동 유적과 서포항 유적 등도 재조명할 수 있었다. 즉, 범의구석 2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색마연토기가 등장해서 이 단계는 청동기시대로 판단되었고, 오동 1기와 초도 1기 중에서 전자에서 출토된 적색마연토기가 범의구석 1층에 가까운 것으로 생각되어 오동 1기가 범의구석 2층보다 앞선 것으로 생각되었다(황기덕, 1970, 〈표 1〉). 서포항 유적 보고 후(1972)에는 서포항 유적 6기의 적색마연토기는 신석기시대 후기 범의구석 1기 토기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어, 서포항 유적의 6기가 동북한의 청동기시대 가장 이른 단계로 생각되었다. 그 절대 연대는 압록강과 비교해서 범의구석 1층이 신석기시대 말기로 압록강의 쌍타자 제1문화기와 병행해서 기원전 2000년기 전반 초, 범의구석 2층은 기원전 2000년기 후반으로 생각되었다(황기덕, 1975, 〈표 1〉).

이러한 편년관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 새로운 자료는 더 이상 연구되지 못하고, 신석기시대 연대와 함께 청동기시대의 연대를 소급하는 경향이 뚜렷해진다(김재윤, 2009). 압록강유역과 요동반도의 청동기시대가 기원전 2000년기에 이미 시작되는 것에 주목해서, 지역 차이는 있지만 동북한에서도 기원전 3000년기에 이미 신석기시대가 끝나고 기원전 2000년기 전반에 이미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며, 서포항 유적의 청동기시대 1기(6층)가 그 시점에 해당된다고 보았다(황기덕, 1984, 〈표 1〉).

2) 남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한의 청동기시대 유적이 대량으로 늘어가면서 그 계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북한의 청동기시대 토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남한의 공열문토기 혹은 각목돌대문토기의 계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자료로써 동북한의 유적들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동북한 청동기시대의 시작은 돌류문토기 혹은 돌대문토기가 그 표지가 된다는 판단 아래 그 이전까지 신석기시대로 생각되었던 호곡 1기와 서포항 5기가 청동기시대에 시작이 된다(大貫靜夫, 1996; 김재운, 2003; 배진성, 2003; 千羨幸, 2005; 姜仁旭, 2007)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동북한에서 청동기시대 시작에 대한 개념이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점은 동북한의 청동기시대 시작의 표지유물을 적색마연토기로 보고 있는 점과 차이가 있다.

최근에는 1930년대 조사되었던 송평동, 비파도, 서수라, 삼상봉, 동관동, 봉의 유적의 유물들이 새로이 보고되어, 부족한 동북한의 자료를 보충하고 재고찰하였다(국립김해박물관, 2005; 裴眞晟, 2007). 그러나 정확하게 발굴 경위나 문화층 등을 알 수 없는 점은 이들 자료의 한계로서,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3) 러시아

연해주의 청동기시대 연구의 가장 큰 논점은 ‘청동기시대’란 용어와 이 시대의 시작 문화로 알려진 마르가리토프카 문화를 신석기시대 후기인지 청동기시대로 볼 것인지 하는 것이다.

이 시대를 지칭하는 용어는 청동기시대 혹은 古金屬器時代이다. 연해주의 청동기시대는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제로 청동기시대의 기간은 아주 짧고, 청동유물의 종류와 양에서 동북아시아의 다른 지역과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청동기시대’라는 시대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어 ‘고금속기시대’라는 용어로 대신하고 있다(브로단스키, 1985; 주쉬호프스카

야, 1996; 안쉬나, 2001; Kluyev, N. A., Yanshina, O.V., 2002). 이것은 청동기시대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금속기시대의 개념 아래 청동기시대·철기시대와 고금속기시대의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데, 개별시대는 고금속기시대 내에서 시간을 구별한다.

이 지역 청동기시대 시작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로 생각되었는데(가르코빅, 1967; 안드레바, 1970), 최근 신석기시대 만기로 보고자 하는 시각들이 형성되었다(안쉬나·클류에프, 2005).

마르가리토프카 문화를 청동기시대 시작으로 구분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문화의 토기와 석제품이다. 토기는 구연부에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와 마연된 것이 특징이다. 석제품은 마제석검과 등근 원판형 석제품(〈그림 9-10~12〉) 등으로 신석기시대와는 차이가 있어 청동기시대로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토기 특징은 이를 후속하는 청동기시대 문화인 리도프카, 시니가이 문화 등에서도 나타나므로 이 문화의 큰 특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안쉬나, 2004). 또한 그로티 유적의 석검은 이 토기와 함께 이 문화를 분리한 큰 이유가 되었지만(가르코빅, 1967) 이 유적 외에는 석검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화를 뒷받침하는 보편적인 물질적인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여러 가지 형태의 타제석촉들이 여러 유적들에서 확인되어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특징적인 석기로 보았다(안쉬나·클류에프, 2005). 또한 청동유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안쉬나, 2001), 이 문화의 절대연대가 신석기시대의 유적과 일부 겹치는 점(Cassidy et al., 2005) 등이 문화가 청동기시대가 아닌 신석기시대로 보려는 큰 논거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청동기시대의 시작 문화는 마르가리토프카 문화가 아닌 아누치노-시니가이-수보로보 문화(안쉬나, 2001)로 보려는 한 시각이 형성되었다(안쉬나·클류에프, 2005).

아누치노-시니가이-수보로보 문화는 종전의 청동기시대 리도프카(다코프, 1989), 시니가이(브로단스키 외, 1984), 아누치노(브로단스키, 1996b) 등의 여러 문화가 실제로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의 청동기시대 문화라는 것은 토기의 제작방법과 형식화, 층서 등이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즉, 리도프카 문화

와 시니가이 문화를 분리하는 기준이 되었던 리도프카 1 유적과 시니가이 A 유적은 층서적인 문제가 제기되었고, 실제적으로 상기한 유적의 토기는 돌대 혹은 이중구연의 무문토기로서 아누치누, 시니가이, 리도프카 문화가 별다른 문화로 분리될 만큼 제작방법이나 형식학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석기 조성에 따라서 동부 유형과 서부 유형으로 나누어진다(안쉬나·클류에프, 2005).

이 문화는 아누치노-수보로보 문화(주쉬호프스카야, 1996)로도 불리는데, 실제로는 아누치노-시니가이-수보로보 문화와 같은 성격이다.

이들 문화의 절대연대는 북한에서 요동반도와 압록강의 연대와 비교하는 것과는 달리 유적에서 직접 얻은 것이다. 마르가리토프카의 연대는 대체적으로 3600~3400 B.P.에 해당된다. 아누치노-시니가이-리도프카 문화는 대체적으로 3000~2500 B.P.에 해당된다(〈표 9〉·〈표 10〉).

4) 중국 길림

두만강유역의 선사시대 연구는 다른 중국 동북지방의 선사시대 연구에 비해서 부진한 편이다. 1940년대 일인학자의 연길 소영자의 발굴로 시작된 이 지역의 연구는 1980년대까지 별다른 연구는 없이, 이 동북지방의 고고문화 중에서 두만강유역의 독자성에 대해서 언급되었지만(修柱臣, 1961; 劉振華, 1982) 고고자료의 한계 등으로 정확한 구분은 힘들었다.

그 이후 성립된 ‘단결문화’는 이 지역 선사연구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연구에서 두만강을 비롯한 수분하·목단강의 청동기시대가 처음으로 구체화되었는데, 유정이가 달린 토기가 표지인 류정동 유형을 분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유형에서 단결문화로 발전한 것으로 보았다(林沄, 1985).

1990년대는 흥성 유적이 발굴되면서 두만강 내륙의 청동기시대 문화가 류정동 유형 이전에 흥성 유형 혹은 문화가 존재함을 밝혀내었다(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2002). 이 유적은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층서를 이루는 유적으로 청동기시대뿐만 아니라 신석기시대

〈표 2〉 연구대상 지역의 청동기시대 편년

국가	러시아	동북한	남한		중국
연구자	가르코빅, 1967 얀쉬나 외, 2005	황기덕, 1984	姜仁旭, 2007	裴眞晟, 2007	宋玉彬, 2002 賈 姍, 2006
지역	연해주남부		두만강 하류		두만강 내륙
시간	연해주남부		두만강 하류		두만강 내륙
4000 B.P.	신석기 말기		법의구석 1기	증문 말기	홍성문화
3600 3400	전	서포항 청동기1 오동1	신석기 말기=전환기	법의구석 I 석회장 하층 오동1-홍성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전기		
후	?	법의구석 2 초도	중기	법의구석 II 법의구석 III ?	
		아누치노-리토프카 -수보로보 문화	오동 2·3기층 법의구석 3층 법의구석 4층	후기	
2500	전	↓ 알콥스키	철기시대		

의 정황까지 알 수 있게 되어 그 중요성이 크다. 청동기시대 층에서 출토된 토기는 무문토기에, 구연부에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이 부착된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토기는 홍성문화(吉林省文物研究所 외, 1998)로 명명되어서, 두만강 내륙의 가장 이른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보고 있다.

2. 문제제기와 연구방향 제시

〈표 2〉는 세 국경 내에서 청동기시대 연구결과를 나타낸 것인데, 편년연구가 그 중심이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최근 남한의 청동기시대 시작 해석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동북한에 대한 편년연구가 활발하다. 특히 동북한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목단강유역의 유적도 두만강유역의 유적에 포함하였다(裴眞晟, 2007). 동북한의 청동기시대를 전환기와 전·중·후기의 시기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姜仁旭, 2007), 남한의 청동기시대와 관련을 더욱 구체화하는 가운데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그 연구지역에 대한 청동기시대의 문제를 해결하

기보다는 남한 실정에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대상 지역은 삼국경으로 나눠지고 있어서, 언어장벽 혹은 연구자료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점, 고고학에 대한 접근방법 등 때문에 비록 같은 문화지역이지만 서로 상충되거나 공통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부터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는 ‘고고문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나 북한 학계와 남한 학계는 유적의 순서를 세우는 것이 가장 중점이 된다. 기본적으로 유적의 특징이 된다고 판단되는 유물의 형식을 기준으로 유적을 서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학자들이 그 유적의 ‘특징’이 된다고 생각하는 유물을 선별하게 되고, 그 유물의 형식에 따라서 유적의 순서는 바뀌게 된다(김재운, 2009).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적을 단순하게 서열하는 방법보다는 고고문화 개념을 도입(崔種圭, 2008; 김재운, 2009)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서로 다른 연구 환경에서 연구된 고고자료를 이용하는데 더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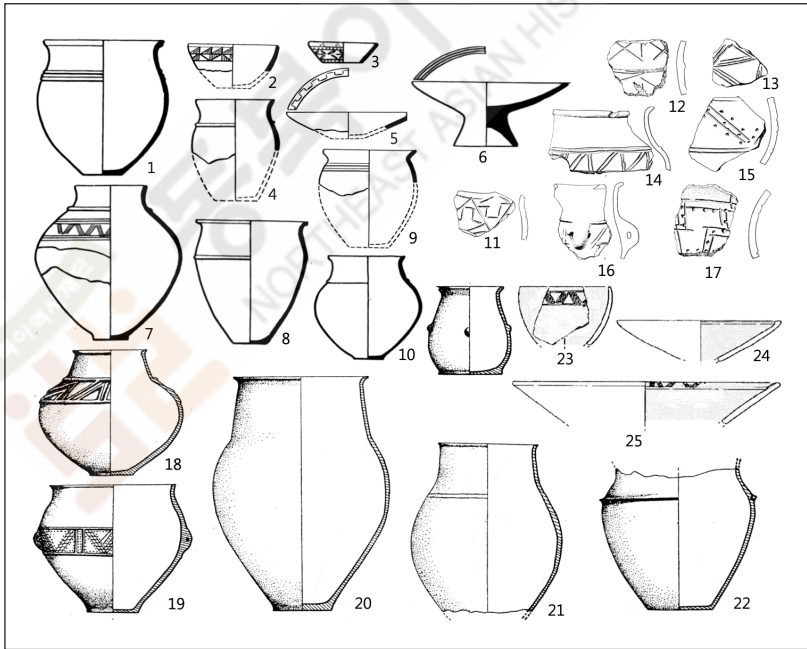
동북한의 고고자료가 주변과 비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동일한 문화지역이었던 것뿐만 아니라, 북한 고고자료의 부족 때문이기도 하다. 초도의 붉은 간토기층은 청동기시대 이른 시기의 것으로 생각되었다(황기덕, 1970; 姜仁旭, 2007). 그러나 초도 유적은 호곡 유적의 발굴 후, 청동기시대 편년의 틀이 세워지면서 제외되었다. 두만강 청동기시대의 시작단계로 초도 1기를 분류하다가(황기덕, 1970), 호곡 보고서에서 새로이 청동기시대 발전양상을 전개하면서 ‘초도 유적의 상대연대에 대해서는 새로이 연구할 필요가 있으나’ 전개과정에서 배제하였다(황기덕, 1975).¹⁾

초도 유적의 1기가 청동기시대 시작단계로 판단된 것은 적색마연토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특히 고배형 토기가 많이 확인되고, 꼭지손잡이 그릇, 나무그루손잡이 토기 등이 많이 확인된다. 초도 유적의 분기에 대해서는 크로우노프

1)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는 연해주에서 안콥스키 유적이 많이 조사·출간되는 시기로 인접한 지역의 연구성과로 인해서 초도 유적에 대한 시간적 위치를 수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카 문화층과 안콥스키 문화 등에서 언급(姜仁旭, 2007; 김재운, 2008)되었다.

그러나 여러 논고(황기덕, 1970, 그림)에서 제시된 초도의 청동기시대 적색 마연토기는 기형과 토기의 문양 등으로 보아 서포항과 호곡의 청동기시대 적색 마연토기와는 차이가 많기 때문에 연해주의 안콥스키 문화의 토기일 가능성이 많다. 적색마연토기는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에서 주요한 특징이다가 다시 안콥스키 문화인 초기 철기문화가 되면 주요한 표지유물로 등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초도 1기가 청동기시대 가장 이른 시기로 편년된 당시는(황기덕, 1970) 동북한에 안콥스키 문화의 자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적색마연토기를 단순히 청동기시대로 분리했다가 다시 재고(황기덕, 1975)했을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유물로 송평동 유적의 고배형 적색마연토기(裴眞晟, 2007)가 있다(〈그림 1-24·25〉). 이러한 기형의 적색마연토기는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와 흥성문화



〈그림 1〉 안콥스키 문화 토기와 초도·송평동 유적의 토기

(1·3·7~10, 말라야 파두쉐치카 유적; 2·4~6·9, 슬라반카 유적; 11~17, 피산느이 유적;

18~22, 초도 유적; 23~25; 송평동 유적, 축척부동)

에서는 없는 것이지만, 안콥스키 문화의 적색마연토기로는 아주 특징적인 유물(김재운, 2008)이다.

따라서 초도 유적은 토기, 석기, 청동단추 등으로 보아 류정동 유형, 안콥스키 문화, 크로우노프카 문화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²⁾ 송평동 유적에도 청동기 문화층 외에 안콥스키 문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것은 유물의 검토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북한의 청동기시대 형성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주변지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점은 이 지역이 비록 같은 문화권을 이루고 있지만 삼국경이 가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차이이다. 즉, 연구방법의 차이뿐만 아니라 청동기시대의 시작 표지유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북한은 적색마연토기가 기본적으로었으나 최근 돌렬문토기(大貫靜夫, 1996), (각목)돌대문토기(배진성, 2003; 김재운, 2004; 千羨幸, 2005) 등도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중국 길림의 흥성문화는 돌대문 혹은 이중구연토기, 연해주의 마르가리토프카 문화는 각목돌대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가 지표가 된다. 하지만 세 국경의 토기 자료들이 서로 비교되지 못해서 각목돌대문토기와 적색마연토기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점이 중요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국가 간의 청동기시대의 시작 관점에 대한 입장의 차이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동북한에서는 적색마연토기가 청동기시대의 지표유물이 되었고, 이러한 토기는 신석기시대 후기부터 발전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두만강유역 청동기시대는 ‘계승성’이라는 결론을 내게 되었다(황기덕, 1970).

그러나 연해주의 청동기시대는 청동유물의 분석(콘코바, 1989)으로 연해주의 청동유물들은 ‘카라숙’의 계열로서 청동기시대가 기본적으로 ‘이주’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 지역의 빠른 철기시대의 시작 등은 이러한 입장을 더욱 강

2) 초도 유적의 신석기시대 층으로 분리된 유물(姜仁旭, 2007)은 구연부가 외반된 점과 문양 형태 등으로 보아서 두만강유역의 신석기 후기 유물이 아닌 안콥스키 토기의 문양이 시문될 것일 가능성이 있다.

하게 부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청동유물의 계보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돌대문토기는 신석기시대 유물과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만, 아누치노-시니가이-수보로보 문화의 토기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문화적 표지로 보지 않았다(안쉬나, 2004). 반면에 청동기시대의 지표유물은 청동검을 모방한 석검으로서, 이러한 석검과 청동유물이 본격적으로 출토되는 아누치노-시니가이-수보로보 문화부터가 청동기시대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안쉬나·클류에프,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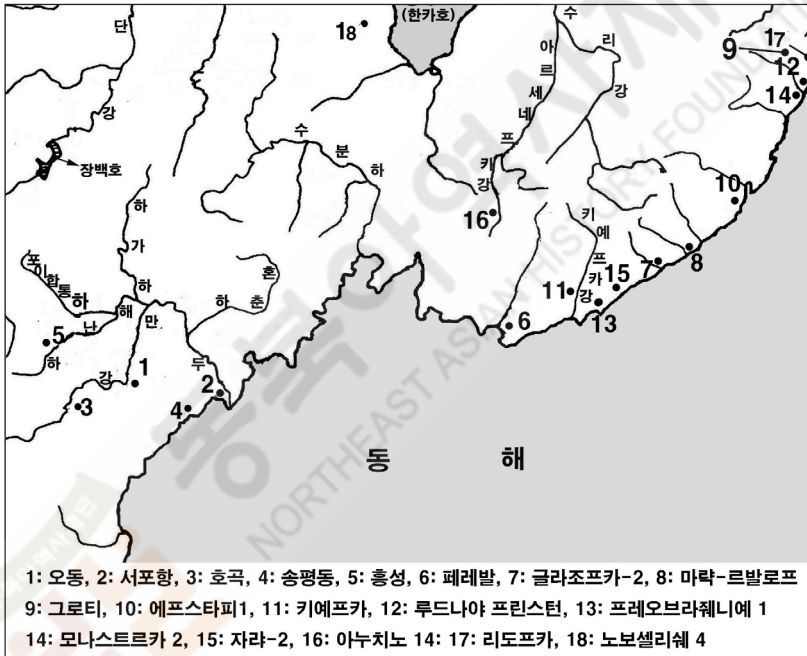
즉, 이러한 청동기시대 형성 이유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같은 문화지역이지만 결과적으로 청동기시대 시작의 지표유물이 동북한과 러시아는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일한 문화지역 내의 서로 다른 청동기시대 시작의 변환계기 혹은 계통적 성격을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동북한 유적들의 고고문화 외에 전환기의 개념을 도입해보고자 한다. 이 지역에 대한 전환기 개념은 이미 고찰되었으나(姜仁旭, 2007) 신석기 말기에 전환기를 포함 혹은 동일하게 보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였고, 고고문화와 함께 도입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제기를 해결하기 위한 고고자료로서 토기를 대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토기는 가장 그 문화를 잘 대표하는 물질자료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연구대상 지역에서 각국마다 차이가 있는 표지유물을 비교 고찰한다면 각 문화의 차이점, 혹은 문화 설정 여부도 판단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 시기는 동북한은 범의구석 1기, 오통 1~3기, 송평동 일부, 서포항 5~7기, 길림은 흥성문화, 연해주는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이다.

Ⅲ. 자료 검토

이 글의 대상 유적들은 발굴조사, 시굴 등 다양하게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대체적인 정황은 표로 나타내었다. 그중에서 유구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적들은 따로 고찰하겠다(〈표 3〉).



〈그림 2〉 대상 유적(〈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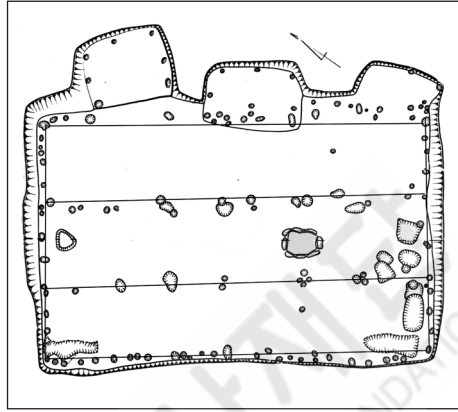
1_ 주거지

1) 오동

두만강의 지류인 회령천 하안 단구대에 위치한다.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철

기시대까지 8기의 주거지가 중복을 이루고 형성되었다. 유물로 보아 신석기시대 층도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거지 내에서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된 주거지는 청동기시대와 철기시대에 해당된다.

유적의 크기는 추정되지 않았으나, 하안 단구대에 설치된 주거 유적인 호곡 유적으로 보아서 발굴된 면적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있다.



〈그림 3〉 오동 8호 주거지

1호, 7호, 3호 주거지는 잔존상태가 불량하다. 그 외에 주거지 평면형태를 알 수 있는 주거지 중에서는 5호 주거지만 방형, 무시설식으로 다른 주거지들과 차이가 있다. 그 외 주거지는 장방형 평면형태, 위석식 노지, 4열 배치의 기둥구멍 등이 특징이다(〈표 3〉).

6호 주거지에는 구들이 설치되었는데, 웅기 송평과 나진 초도에도 이러한 시설물이 확인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젓꼭지형 파수가 달린 토기와 철부가 출토되고, 주거지의 크기와 노지 시설 등으로 보아서 다른 주거지와는 시대차이가 크고, 가장 늦은 철기시대라고 보고 있다.

주거지의 중복관계는 8호 주거지는 4호와 2호 주거지와 중복관계를 이루고, 4호 주거지는 5호 주거지와 중복, 2호 주거지는 5호 주거지와 중복을 이룬다. 보고에서는 8호→2호→4호→5호 순으로 층서를 이루는 것으로 기술되었고, 1호와 7호는 주거지의 유물로 보아 2호 주거지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과학원출판사, 1960).

〈표 3〉 대상 유적

국경	유적명	유적입지	조사 연도	조사 성격	시대	성격	참고문헌	
북한	1	오동	하안대지	1954 1955	발굴	신석기시대~ 철기시대	주거지	과학원출판사, 1960
	2	서포항	해안가	1960 1964	발굴	구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주거지	김용간·서국태, 1962
	3	호곡	하안대지	1959 1961	발굴	신석기시대~ 철기시대	주거지	황기덕, 1975
	4	송평동	해안가	1927 1928	발굴	신석기시대~ 철기시대		藤田亮策, 1930 國立金海博物館, 2005
중국	5	홍성	언덕 위	1986 1987	발굴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주거지	길림성문물고고연구소·연 변자치박물관, 2001
러시아	6	페레발	언덕 위	1966 1972 1978	발굴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주거	메드베제프, 2000
	7	글라조프 카-2	하안대지	1990	발굴	청동기시대	주거지	클류에프·안쉬나, 1994
	8	마랏 르발로프	하안대지	1959 1960	발굴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문화층 발굴	오클라드니코프, 1964 안드레예프, 1960
	9	그로티	동굴	1963 1967	발굴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문화층 발굴	안드레예바, 1963 가르코빅, 1973
	10	에프스타 피 1	해안단구	1958 1959 1966	발굴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문화층	안드레예프·안드레예바, 1958 가르코빅, 1969
	11	키예프카	하안대지	1976 1979~ 1981	발굴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시대	문화층 주거지	주쉬호프스카야, 1976 보스트레초프·주쉬호프스 카야, 1979
	12	루드나야 프린스턴	해안단구	1953 1955	발굴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주거지 문화층	디코프, 1992
	13	프레오브 라췌니예	언덕 위	2002 2005	발굴	청동기시대	주거지	슬렙초프, 2005

2) 호곡 유적

호곡 유적은 1~6기로 신석기시대 후기에서 철기시대까지 형성되었다. 1기는 신석기 유물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석기시대 후기로, 2기와 3기는 적색마연토기와 갈색무문토기로서 청동기시대, 4기·5기는 검정마연토기와 6기의 나무 그루터기형 손잡이 토기와 철제 유물이 확인되어 4~6기는 철기시대로 편년되었다(황기덕, 1972).

그러나 호곡 1기는 호곡 1호의 적색마연토기로 인해서 호곡 1기를 청동기시대(大貫靜夫, 1996; 안재호, 2003; 김재운, 2004; 천선행, 2005; 裴眞晟, 2007)로 보거나, 호곡 1호의 공열문토기는 신석기 말기, 1호의 적색마연토기는 청동기시대로 판단하기도 한다(姜仁旭, 2007, <그림 2>). 하지만 호곡 1기 전체를 신석기시대 혹은 청동기시대로 판단하기보다는 신석기시대 유물이 출토되는 주거지(41호, 12호, 9호, 25호)와 적색마연토기 및 공열문토기가 출토되는 주거지(1호)로 나누어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김재운, 2007·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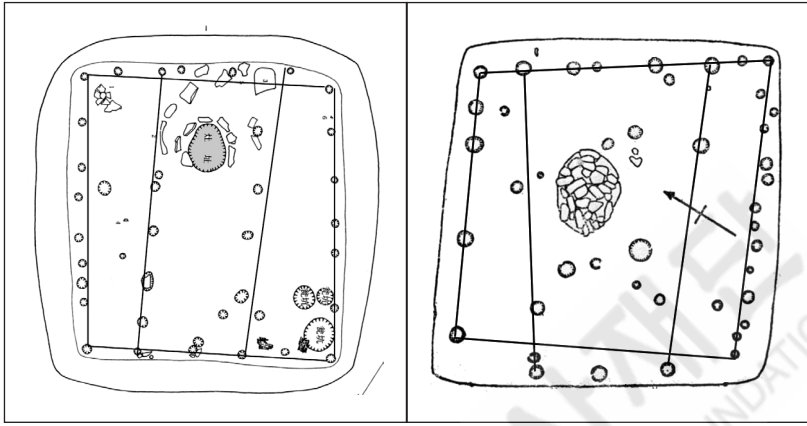
따라서 이 글과 관련된 단계는 1기의 1호 주거지로 생각된다. 호곡 2기와 3기가 모두 류정동 유형으로 규정되었다(姜仁旭, 2007).

호곡 1호는 잔존상태가 좋지 않지만 잔존한 평면형태와 크기로 보아 장방형이다. 2기의 주거지는 모두 장방형으로 20호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평면 크기가 비슷하다. 그 외의 노지, 기둥구멍 배치 등 2기 주거지의 특징은 모두 비슷하다(<표 4>).

3) 흥성 유적

유적은 320m 가량의 언덕 위에 위치한다.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형성된 대규모 주거 유적이다.

신석기시대로 보고된 주거지는 모두 8기이고,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2기이다. 주거지는 중복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모두 3기로 보고되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평면형태, 크기, 노지, 기둥구멍의 배치 등



〈그림 4〉 흥성 87AF 15호 주거지와 서포항 24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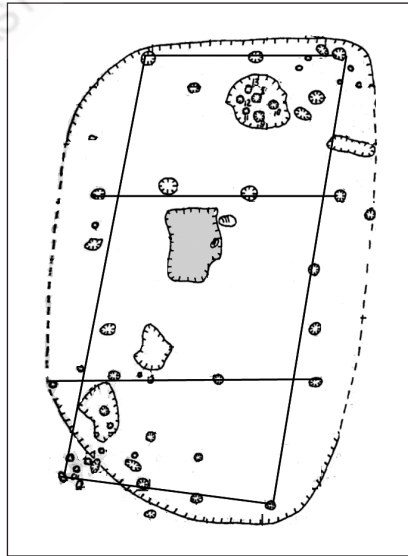
은 거의 일치해서 분기에 따른 주거지의 변천은 관찰되지 않는다.

4)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주거지

프레오브라췌니에 1 유적의 주거지는 내부에 노지가 없고 규모가 아주 작은 것으로 보아 주거지가 아니거나 계절성 주거지로 발굴자는 보고 있다(슬랩초프, 2005).

글라조프카-2 유적의 주거지는 장방형 평면형태, 무시철식 노지, 4열 배치의 특징이다. 주거지 장축방향의 벽면은 낭떠러지로 인해서 정확하지 못하다.

루드나야 프린스턴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긴 기간 동안 형성된 곳이다. 그중 1호,



〈그림 5〉 글라조프카-2 주거지

〈표 4〉 주거지 특징

유적	형태	평면 크기		노지				기둥구멍		비고	
		m	m ²	형태	위치	크기(cm)	수	수	위치		
오 동	1호	?	?	?	위석식노지	동남	?	1	주거지 가장자리		
	2호	장방형	9.15×6.1	56	원형-위석식 노지	동남		?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심-4열		
	3호	?	?	?	?	?	?	?			
	4호	장방형	4.1×3.2	22	위석식노지	중앙	?	?	?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심	
	5호	방형	5.2×4.5	24	무시설식	북벽	70	1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심-4열		
	6호	장방형	9.6×5.4	52	부뚜막		남벽		없음		
	7호						?				
	8호	장방형	8.4×6.5	55	장방형-위석 식노지	동남	?			동벽감실	
호곡	1호	장방형?	(4.5×?)	?	?	?	?	?			
서 포 항	7호	장방형	6.2×6.0	37.2	원형-위석식 노지	남벽	140×140	1	?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심-4열	
	5호	장방형	4.8×3.6	17.3	원형-부석식	서벽	100×100	1	2	서벽 모서리	
	6호	장방형	5×4	20	원형-부석식	북벽	80×80	1	?	?	
	1호	장방형	3.7×3.4	12.6	방형-부석식	중앙	20×130	1	?	주거지 바닥 기 둥구멍多	
	4호	장방형	5.8×5.4	31.3	원형-무시설 식	서남	50×50	1	?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앙-4열	
	10호	장방형	5.2×3.6	19	원형-부석식	북벽	60×60	1	?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앙-4열	
	24호	장방형	3.8×3.6	13.7	원형-부석식	중앙	15×15	1	?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앙-4열	
홍 성	87BF5	장방형	6.2×4.2	26.04	타원형-무시 설식	북	40×60	1	6	주거지 모서리와 중앙	
	87BF3	장방형	6.15×4.8	29.5	타원형-무시 설식	동			69		
	87AF13	장방형	7×5.8	40.6	타원형-무시 설식	서	90×70	1	57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앙-4열	화재난 주거지
	87AF15	장방형	4.8×4.5	26.88	타원형-위석 식	동	80×60	1	39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앙-4열	주거지 북동모 서리에 토기를 파묻음

	87AF6	장방형	7.1×5.55	39.4	타원형-무시 설식	중앙	70×70	1	7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앙-4열	
					타원형-무시 설식		70×60	1			
	86F1	장방형	5.2×4.5	23.4	타원형-무시 설식	서	90×65	1	12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앙-4열	
페레발	1	방형	8×8	64	무시설식	북벽	100×110	1	?	?	주거지 남서 모서리 저장혈
글라조 프카2	1	장방형	8.5×5	43	장방형-무시 설식	남벽	130 ×90	1	?	주거지 가장자리 와 중심-4열	바닥에 저장혈
마락 르발 로프	1	장방형	?	?	무시설식	?	?	2	?		
루드나	1	부정형	주거지아님						?		
야프 린스텐	7	장방형	4×3	12	무시설식	중앙		1	?		
	8	장방형	6.2×5.7	35.4	무시설식	남벽	69×100	?			
프레 오브라	1	방형	4×4	16	없음	?					주거지 외부에 저장혈
쾨니예	2	방형	4×4	16	없음	?					

7호, 8호는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가 확인된 주거지로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 1호 유구는 평면형태가 부정확하고, 주혈과 노지 등이 없으며, 평면 크기가 아주 작은 것으로 보아서 주거지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주거지는 주거지 내부의 모서리 혹은 주거지 외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저장혈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인데(슬랩초프, 2005), 오동 8호 주거지도 이러한 특징이 보인다. 흥성 유적에서 저장혈은 확인되지 않으나, 주거지 모서리에 토기를 파묻은 것 등은 저장혈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한, 중국, 러시아 유적들의 주거지 평면형태는 장방형이고, 노지는 무시설식인 점이 대체적이다. 노지는 오동의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무시설식이고, 주거지 중앙이 아닌 벽면쪽으로 기울어지도록 설치된다. 기둥구멍의 배치는 주거지 가장자리와 주거지 중앙을 지나는 4열 배치로 공통적이다. 서포항

상층 문화 3유형에서 장방형 주거지가 등장하지만(김재윤, 2009) 청동기시대가 되어서야 대체적인 주거지 평면형태가 장방형이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2_ 토기

앞서 연구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대상 시기의 대표적인 유물은 돌대문 토기와 적색마연토기이다. 이 토기 자료를 기본으로 해서 대상 유적들을 분석하겠다.

러시아 유적은 주거지 1~2기가 발굴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유적 내의 주거지 간에 시기차이를 보이는 곳은 거의 없다. 그러나 오동 유적, 서포항 유적, 송평동 유적, 흥성 유적 등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주거지는 특징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토기 자료의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다.

연구대상 시대의 토기는 구연부, 동체부, 저부 등의 조합을 통해서 형식을 설정할 수 있다. 주거지 내의 유물들은 여러 형식이 공반되기 때문에 모든 형식의 토기를 순서배열하기는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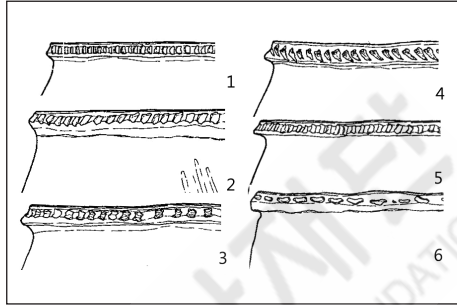
따라서 비슷한 형식들이 조합되는 주거지 혹은 유적을 묶어서 유형을 설정한다면 국경에 따라서 인식을 달리하고 있는 편년문제에 좀 더 접근하기가 쉬울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유물의 조합을 통한 유형 설정은 남한의 무문토기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것이지만, 연구대상 지역에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다. 이를 적용해서 분석한다면 남한 청동기시대의 편년과도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유형 분석은 주변지역에 이른 청동기시대가 흥성문화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로 규정된 것과도 비교 가능하고 동북한의 청동기시대에도 고고문화 설정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 형식설정

본 연구대상 시기의 토기는 호형 혹은 웅형 토기(I)와 발형 토기(II)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발형 토기의 구연부는 아무것도 장식되지 않는 홑구연도 있지만 그중 이중, 돌대문 혹은 공열문 등으로 장식된 구연이 대부분이다.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 위에는 여러 가지 시문도구로 찍은 것이 많다.



〈그림 6〉 프레오브라췌니에 1 토기 구연부(1/3)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이중구연 토기 혹은 돌대문토기는 구연부를 접은 것보다는 점토피를 구연단 가까이 덧붙이는 것이 대부분인데, 부착되는 위치에 따라서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 위에는 여러 가지 도구로 시문되는데, 끝이 납작한 막대, 끝이 둥근 것, 끝이 둥글면서 삼치구인 것 등 아주 다양하다(〈그림 6〉).

서포항 5기의 돌대문토기에도 각목한 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도구로 다

〈표 5〉 토기의 속성

	기형			저부					
	1.	2.		ㄱ.	ㄴ.	ㄷ.			
구연부	a. 직립	b. 내만	c. 외반	가. 이중구연	나. 돌대문	다. 공열문			
동체부	A.	B.	C.	D.	E.	F.	G.	H.	I.

양하게 시문된 것으로 기술되었다. 송평동 유적의 청동기시대 토기의 구연부도 각목 돌대문, 지두 돌대문, 이중구연 등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裴眞晟, 2007). 반면에 홍성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의 구연부는 모두 도구로 눈금을 새기듯이刻目を 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호곡과 송평동 출토의 공열문토기는 점토띠를 부착해서 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연 내부 혹은 외부에서 끝이 둥근 시문구로 기벽을 반 관통해 구연부만 시문해서, 구연부가 다른 부분보다 돌보이게 장식된다는 점에서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와 같이 구연부를 장식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토기의 동체부는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지는 장동형(A), 거의 구형에 가까운 것(B), 편타원형(C), 편타원형이면서 동체부에 돌대가 부착되는 것(D), 전체적으로 장동형이지만 동최대경 아래는 기벽이 움푹하게 들어가는 것(E), 동최대경이 기고의 상단에 위치하면서 동최대경 아래의 기벽이 편평하지 않고 움푹하게 들어간 것(F), 동최대경이 기고의 상단에 위치하고 동최대경 아래 기벽이 편평하게 들어가서 마름모형을 이루는 것(G)으로 관찰해 볼 수 있다.

저부는 평저(ㄱ)이거나, 바깥에서 보면 평저이지만 안쪽이 움푹 들어간 안굽(S), 굽다리(ㄷ) 혹은 굽이 약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ㄹ) 등으로 나누어 볼 수

〈표 6〉 호형토기의 형식

I1(2cB ㄱ)	I2(2c나C ㄱ)	I3(2c나D ㄷ)	I4(2cD ㄱ)	I5(2cF ㄱ)		
II1(2cA ㄱ)	II2(2cE ㄱ)	II3(2dA ㄱ)	III1(2c가G ㄱ)	III2(2c가C ㄱ)	III3(2c가C ㄱ)	
IV1(2c가B ㄱ)	IV2(2cB ㄱ)	IV3(2c가B ㄱ)	IV4(2cB ㄱ)	IV5(2c가B ㄱ)	IV6(2c가B ㄷ)	IV7(2aB ㄷ)

있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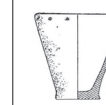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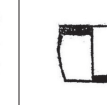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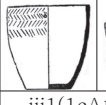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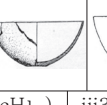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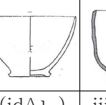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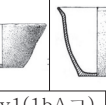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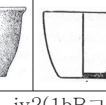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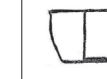


호형토기는 이러한 속성들로 설정되어 18개의 형식으로 나누어진다. 구연부가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 등으로 장식되는 토기는 I2·I3, III1~III3, IV1~3, IV5, IV6인데, 호형토기에는 공열문이 없다. III1, III2, III3, IV5는 돌대문토기이면서 적색마연된 것이다. IV7, II은 순수한 적색마연토기이다(〈표 6〉).

발형토기는 20개의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 i1~i6, iii3의 구연부는 이중구연, 돌대문, 공열문 등으로 장식된 것이다. 그중 i2는 이중구연토기이면서 적색마연된 것이다. 이 외에 ii10, iii, ii6, ii8, iii1, ii2, iii1, iii2는 적색마연토기이다.

송평동의 청동기시대 유물은 대체적으로 구연부가 장식된 토기만 알려졌지만, 송평동 유적에 온돌이 있는 주거지가 확인된 점 등(藤田亮策, 1930)이 알려진 것으로 보아서 유적은 신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상당히 긴 기간 존속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중에서 송평동의 V1기형은 경부가 긴 적색마연토기(〈그림 16-12〉)인데, 서포항 7기의 10호 출토유물과 유사하다. 그러나 서포항 7기에는 이미 이중구연토기 등이 없어진 단계이므로 다른 송평동의 이중구연토기(송평동 청동기1)와는 구별해서 송평동 청동기 2기로 나누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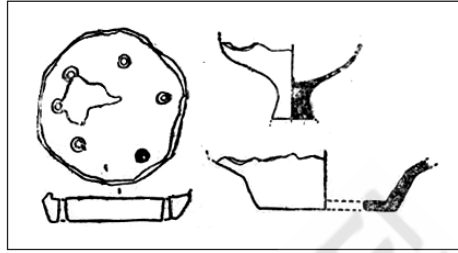
서포항 유적의 6기와 7기는 도면으로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가 많이 확인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 구연부 형태도 다양한 것으

〈표 7〉 발형토기의 형식

i1(1dHㄷ)	i2(1dAㄷ)	i3(1eAㄷ)	i4(1dAㄴ)	i5(1fHㄷ)	i6(1dAㄱ)		
							
ii1(1aAㄱ)	ii2(1aCㄱ)	ii3(1aBㄱ)	ii4(1aBㄷ)	ii5(1aAㄷ)	ii6(1aHㄱ)	ii7(1cHㄱ)	ii8(1aHㄷ)
							
iii1(1cAㄷ)	iii2(1cHㄴ)	iii3(1dAㄴ)	iii4(1cAㄱ)	iv1(1bAㄱ)	iv2(1bBㄱ)		
							

로 구연단도 여러 가지 시문구로 시문되었다.

서포항 7기 유물 중에서 주거지 24호에서는 시루가 출토된 것으로 기술되었다. 이 토기는 류정동 유형 혹은 크로우노프카 문화가 되어야 확인(김



〈그림 7〉 서포항 7-2기(1/6)

재윤, 2008)되는 것으로 청동기시대 늦은 단계 혹은 철기시대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24호 주거지(〈그림 4〉)는 장방형 주거지, 기둥구멍의 4열 배치, 노지 등으로 보아서 류정동 유형의 주거지 혹은 크로우노프카 문화의 주거지(김재윤, 2008)와는 차이가 크고 흥성 유적의 청동기시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주거지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유물은 24호의 것인지는 모호하고, 서포항 7기에는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되는 단계(7-1)와 시루 등이 출토되는 단계(7-2)로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동의 8호에서는 갈색토기, 1·2호에서는 적색마연토기(채색토기)와 갈색토기가 공반되고, 4호에서는 갈색토기, 5호는 마연토기, 6호는 유정이가 달린 토기가 출토된다고 기술되었다. 그런데 오동 유적의 채색토기는 적색마연토기이고, 마연토기는 갈색토기 중에서 기벽이 매끈하게 마연된 것을 일컫는다(과학원출판사, 1960).

그렇다면 8호에는 적색마연토기(채색토기)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보고서에서 채색토기로 표기된 도면은 1호와 2호의 것일 가능성이 많다(〈그림 14-21~32〉). 한편 이 적색마연토기(채색토기)와 공반된 갈색토기는 정확하게 도면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4호에서도 갈색토기가 출토되지만 정확한 기형이나 특징은 기술하지 않고 있어서, 그 이전의 주거지 출토 갈색토기와 구분해서 기술하지 않았다. 그러나 호곡 보고서에서는 오동 4호의 갈색토기는 갈색의 마연그릇으로, 5호의 마연토기는 검정마연토기로 파악하고 있다(황기덕, 1975). 따라서 8호, 1호, 2호, 7호와 4호의 갈색토기는 다른 것으로 생각된다.

〈표 8〉 오동 유적의 청동기시대 분기

오동 신석기 층		
오동 청동기 1기	1·2·7호, 8호	적색마연, 이중구연
오동 청동기 2기	4호	이중구연

제시된 도면 중에는 갈색토기로 기술된 이중구연토기(〈그림 14-34~47〉)가 있다.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와 서포항 6기에 적색마연토기와 이중구연토기들이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이들 이중구연토기는 적색마연토기(채색토기)와 공반되거나 혹은 그 이전의 8호 유물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8호와 1·2·7호의 갈색토기를 구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를 같은 단계로 보아서 이들 주거지를 오동 청동기 1기로 보고, 4호 주거지의 갈색마연토기는 오동 청동기시대 2기로 나눌 수 있다.

〈표 9〉 대상 유적의 토기

유적	형식	개수	그림 번호	형식	개수	그림 번호	유적	형식	개수	그림 번호	형식	개수	그림 번호	
홍성AF4	ii2	1	그림 11-2	IV2	1	그림 11-7	피레발	iii1	2	그림 9-2728				
홍성AF4	ii6	1	그림 11-3	IV3	2	그림 11-4-5	피레발	ii5	1	그림 9-22				
홍성AF2	ii6	1	그림 11-1				피레발	ii1	1	그림 9-21	IV5	3	그림 9-23-24-26	
홍성AF12				IV1	1	그림 11-8	프레오브라췌니예1	i2	1	그림 9-2	III2	7	그림 9-1-4-5~8	
홍성BF4	ii1	2	그림 11-11				프레오브라췌니예1				III3	1	그림 9-9	
홍성BF4	ii6	3	그림 11-9-10-11				그로티				IV5	5	그림 10-1~5	
홍성AF15	ii5	1	그림 11-18	IV1	1	그림 11-21	키예프카	i6	1	그림 9-31	III3	1	그림 9-30	
홍성AF15	ii6	1	그림 11-20				키예프카				IV5	1	그림 9-29	
홍성AF15	ii7	1	그림 11-19				서포항7호	iii1	1	그림 14-9				
홍성AF7	ii6	1	그림 11-14	IV6	1	그림 11-13		i4	1	그림 14-10				
홍성AF7	ii7	1	그림 11-15	V2	1	그림 11-16		i6	1	그림 14-8				
홍성AF7	i2	1	그림 11-17					iii4	1	그림 14-6				
홍성BF14				IV1	1			ii?	1	그림 14-7				

홍성AF9	i1	2	그림 11-23-33	IV2	1	그림 11-22	서포항2호	ii6	1	그림 14-14	IV2	1	그림 14-15
홍성AF9	i6	1	그림 11-32	IV4	1	그림 11-28	서포항2호	ii2	1	그림 14-11			
홍성AF9	ii7	2	그림 11-24-34	I2			서포항2호	ii5	1	그림 14-12			
홍성AF9	iv2	1					서포항5호	ii3	1	그림 14-13			
홍성AF6	i1	3	그림 11-40~42	IV5	1	그림 8-37	서포항5호	ii6	1	그림 14-16			
홍성AF6	ii6	3	그림 11-35-36-38				서포항14호	ii8	1	그림 14-17			
홍성BF3	i1	3	그림 12-25-27-28				6기 퇴적	ii2	1	그림 14-19			
홍성BF3	ii6	1	그림 11-26	III	1	그림 13-18	6기퇴적	i4	1	그림 14-20			
홍성BF3	ii4	1	그림 11-24	II3	2	그림 13-19	6기퇴적	ii3	1	그림 14-18			
홍성BF3	iv2	1	그림 11-23	IV1	2	그림 13-17 그림 13-29	서포항4호	iii	1	그림 16-3			
홍성BF3				IV4	1	그림 9-22	서포항4호	ii2	1	그림 16-4			
홍성BF1	ii6	2	그림 13-1-2	II	2		서포항10호	ii2	1	그림 16-2	IV7	1	그림 16-1
홍성BF1	ii8	1					서포7기퇴적	ii3	1	그림 16-8	II	1	그림 16-9
홍성AF13	i1	4	그림 12-6-12-17-18	IV4	2	그림 12-14-15	서포7기퇴적	ii8	1	그림 16-11			
홍성AF13	ii6	1	그림 12-9	IV5	2	그림 12-13-21	서포7기퇴적	ii2	1	그림 16-6			
홍성AF13	ii7	1	그림 12-7	IV2	1	그림 12-10	서포7기퇴적	ii1	1	그림 16-5			
홍성AF13	iv2	1	그림 12-11	IV6	2	그림 12-20	오동청동1	i1	2+	그림 11-42-47	IV2	5	
홍성F1	i1	2	그림 13-11	III	1	그림 13-13	오동청동1	ii3	?				
홍성F1				II3	1	그림 13-14	오동청동1	ii4	?				
홍성F1				IV1	3	그림 13-5-7-12	오동청동1	ii6	?				
홍성F1				IV4	1	그림 13-6	오동4호	i1	3	그림 17-4-6-11	I5	1	그림 17-9
홍성F1				IV6	1	그림 13-8	오동4호	ii5	2	그림 17-1-5	IV5	1	그림 17-13
글리조프카2	i1	1	그림 10-6	III1	1	그림 10-7	오동4호	ii6	1	그림 17-2	IV6	1	그림 17-10
루드나야1호	ii7	1	그림 10-9				오동4호	iii1	1	그림 17-12	III	2	그림 17-7-8
루드나야7호	i3	3	그림 10-11-14-15				오동4호	iv1	1	그림 17-3			
루드나야7호	iii1	4	그림 10-10-12-16-21				송평청동1	i4	1	그림 15-1	I?	?	그림 15-3
루드나야8호	i1	1	그림 10-18				송평청동1	ii2	1	그림 15-9			
루드나야8호	i3	1	그림 10-22				송평청동1	iii1	4	그림 15-14-18-19			
루드나야8호	iii1	2	그림 10-23				송평청동1	i1	2	그림 15-10			

마락-르발로 프	i6	2	그림 9-20	IV5	5	그림 9-15· 16·17~19	송평청동2				IV7	1	그림 16-12
마락-르발로 프				III3	2	그림 9-13·14	호곡1호	i5	1	그림 14-2			
							호곡1호	iii2	2	그림 14-4·5			
							호곡1호	ii4	1	그림 14-3			

IV. 동북한 문화지역 청동기시대 형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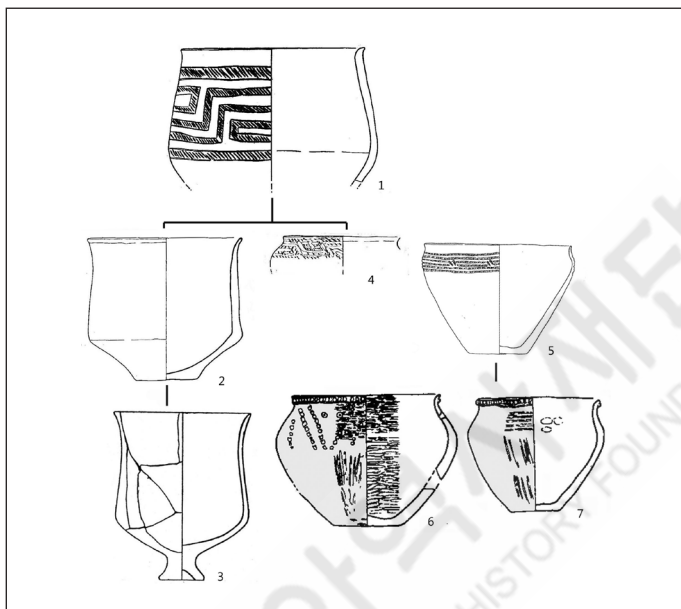
1_ 동북한 적색마연토기의 계보

호곡 1호의 적색마연토기는 동북한에서 현재까지 最古의 형식으로 생각되었다. 이 기형은 굽다리가 붙은 것으로 신부와 각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부는 동최대경에서 급격하게 꺾이고, 그 아래는 뿔처럼 형성되고, 그 아래 굽다리가 부착된 것이다(〈그림 8-3〉).

보이스만-2 유적의 자이사노프카 늦은 유형(〈그림 8-2〉)에서도 비슷한 유물이 확인되는데, 굽다리가 없는 점을 제외하면 호곡 1호와 거의 유사한 적색마연토기이다. 실전에 따르면, 이 토기는 동최대경을 중심으로 상단과 하단이 따로 제작되어서 접합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호곡 1호의 적색마연토기도 그러한 것으로 신부의 상단과 하단, 각부가 따로 만들어져서 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적색마연토기의 신부는 자이사노프카 1의 뇌문토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이 뇌문토기는 구연부가 외반하고, 동최대경이 하단부에 있으며 적색마연되었다³⁾(김재운, 2007). 적색마연된 뇌문토기는 자이사노프카 1유적의 토

3) 자이사노프카 1 유물은 현재 노보시베르스크의 고고학연구소와 모스크바의 국립박



〈그림 8〉 적색마연토기의 변천

(1, 자이사노프카 1; 2, 보이스만 2 자이사노프카 늦은 유형; 4·5, 아누치노 14; 6·7, 프레오브라췌니에 1, 3번 외 필자실측)

기뿐만 아니라 서포항의 뇌문토기 중에도 ‘청동기시대 토기처럼 붉은색으로 마연되었다’는 것으로 기술된 점으로 보아 뇌문토기 중에 일부는 적색마연된 것으로 생각된다(김용간·서국태, 1972).

또한 마르가리토프카 문화(프레오브라췌니에 1)의 적색마연토기(〈그림 8-6·7〉)도 뇌문토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이사노프카 1의 뇌문토기는 아누치노 14 유적의 동최대경이 동체부 상단에 있는 뇌문토기(〈그림 8-4〉)로 형식 변화한다(김재윤, 2007). 이 토기와 공반되는 유물 중에는 구연부가 외반하고, 동최대경이 동체부 상단에 있으며 동최대경 아래는 기벽이 매

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그중 전자의 유물은 필자가 실견해서 논문(김재윤, 2007)에 공간되었다. 필자의 실견에 따르면 붉은 적색마연된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안드레예프가 이 유적을 발표할 당시에도 ‘뇌문토기 중에는 붉은 칠이 남아 있다’고 기술되었다(안드레예프, 1957).

끈한 기형(〈그림 8-5〉)이 있는데, 기벽박리가 심하지만 부분적으로 마연된 흔적이 남아 있다.

따라서 프레오브라췌니에 1의 적색마연토기는 아누치노 14의 토기에서 문양이 소멸되고, 구연부가 이중구연으로 변화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서, 호곡 1호의 적색마연토기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적색마연토기는 신석기 후기의 뇌문토기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뇌문토기의 기형이 한 계열은 대부분로, 다른 계열은 호형의 이중구연된 적색마연토기로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그림 8〉).

그렇다면 호곡 1호와 프레오브라췌니에 1 유적의 적색마연토기는 같은 시기로 판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유물의 선행형식(〈그림 8-2·4·5〉)은 침선문 토기와 공반되는 비슷한 시기의 것(김재윤, 2007)이기 때문이다.

호곡 1호에는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는 없지만 공열문 토기와 공반되고 같은 유형으로 생각되는 서포항 5기는 이러한 토기들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송평동 청동기시대 유물에는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 토기와 공열문이 한 토기에 시문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연부를 장식하는 토기는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와 공열문토기가 선후관계를 나타내기는 힘들다고 생각된다.

구연부가 장식되는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는 서포항 상층 문화의 3유형(김재윤, 2009), 연해주의 자이사노프카 문화부터 신석기 문양이 새겨진 즐문 돌대문토기가(김재윤 외, 2006) 확인된다. 이러한 토기의 기형은 대체적으로 발형토기여서,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적색마연된 무문양 이중구연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기형은 흥성문화의 무문발형의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 토기나 송평동 유적의 청동기시대 구연부 장식문양 토기, 오동 청동기 1기의 토기로 발전되는 것으로 보인다.

2_ 동북한 청동기시대 문화 설정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토기는 이중구연+적색마연토기 혹은 이중구연토기가

〈표 10〉 관련된 문화의 토기형식 비교

홍성문화		오동 청동기 문화				마리리토프카 문화			
		이중 +적색	이중	적색		이중 +적색	이중 혹은 돌대	그 외	
1 유형	호곡 1호		i5	iii2	ii4	골라조프카	i1	III1	
	서포항 7·9호		ii, i6		iii3, iii1	프레오			
	송평동 청동1	i1	i4, i2, i1		iii1	브라켄1			
	오동 청동1		i1, i2, i3	ii3, ii4, ii6, IV2		베레발	III2, IV5	iii1, ii5, ii6	
	서포 2호		(i1)	ii2	ii5, ii6, IV2	마락	III3, IV5 i6		
	서포 5호		(i1)	ii3, ii6		그로티	IV5		
	서포 14호		(i?)		ii8	키예프카	III3, IV5		
	서포 6기재		i1	ii2, ii3, i4					
	4호		(i1)		ii1, ii2		i1	III1	
	2 유형	10호		(i1)	ii2, IV7		루드나야	i3	
77기재			i1	ii3, ii8, II	IV2, IV1, ii2, iii1	야	i3, i1	iii1	
송평 청동2				IV7		8호			
오동 청동2 (4호)			i1, i2, i3, i5, IV5, IV6	i5, ii6, iii1, iv1		아누치노 유적			
3 유형	AF2	ii6							
	AF4 B	ii2, ii6, IV2, IV3							
	AF12 IV1								
	AF9	i1, i6, i2, IV1							
	BF4 i1	IV4, ii7, iv2							
	AF7 IV6, i2	ii1, ii6							
AF7 IV6, i2	ii6, ii7, IV4								
AF5 IV1	ii5, ii6, ii7								
AF7 IV6, i2	ii6, ii7, IV4								
BF1	ii6, ii8, II								
AF3	i1, i4, IV5, IV6								
BF3	i1, iii3, i2, i4								
F1	i4, ii2, ii3, IV1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유적은 글라조프카 2, 프레오브라췌니에 1, 피레발, 마랏-르발로프, 그로티, 키예프카 등으로 유적들은 대체적으로 거의 유사한 토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같은 시기로 생각되며,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에서 1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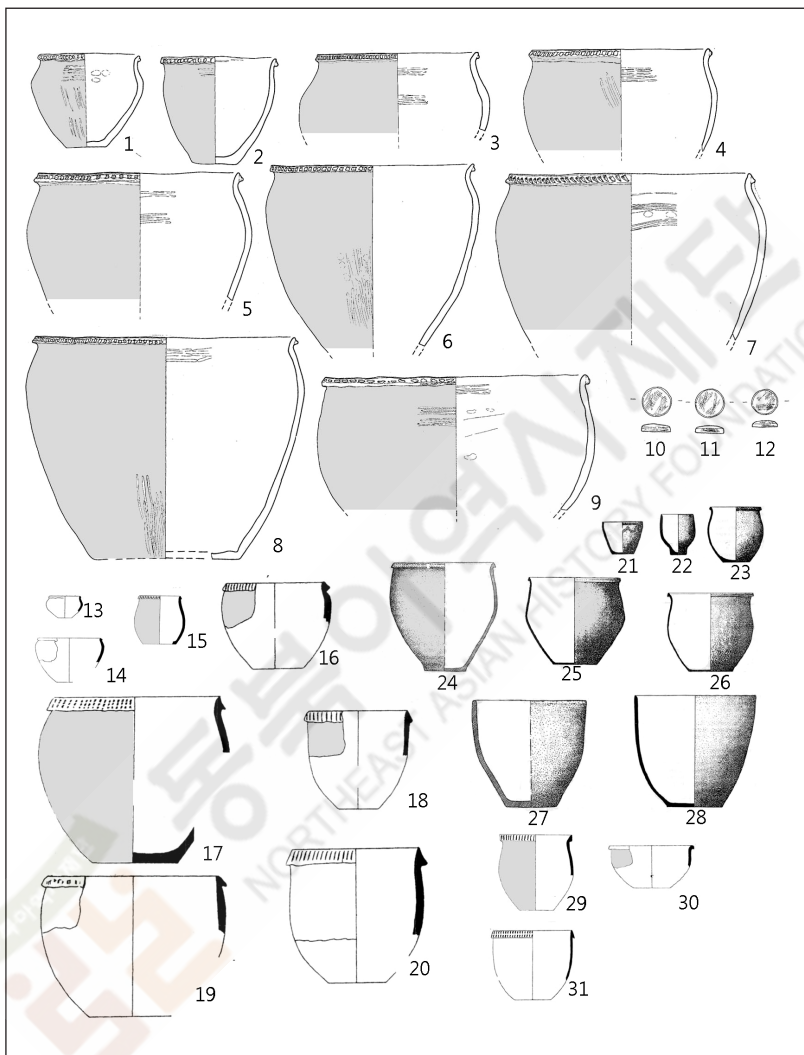
반면에 루드나야 프린스턴의 1호, 7호, 8호, 에프스타피 1(〈그림 10-24·25〉)에서는 이중구연 적색마연토기는 확인되지 않고,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만 확인되는데, 이러한 점은 흥성문화의 2기 토기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며(〈그림 11〉) 1유형과는 다른 2유형으로 볼 수 있다.

청동기시대 흥성문화에서는 이중구연과 돌대문토기만 확인된다. 이 문화는 주거지의 중복으로 3기로 나누어졌다. 그러나 본 유적의 주거지 중복관계는 애매한 부분이 많다. 특히 유물 간에서는 1기와 2기 사이에 크게 토기형식의 구분이 되지 않고 다만 3기가 되면 대형 토기들이 등장하고 있는 점이 크게 구분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흥성문화 1기와 2기를 구분하지 않고 흥성문화 1유형으로(〈그림 11〉), 3기를 흥성문화 2유형(〈그림 12·13〉)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동북한의 유적들은 유적 간의 선후관계만 연구되었고, 문화에 대한 설정은 없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변지역의 유적들이 문화로 설정되어서 설명되고 있고 이러한 문화들과의 비교고찰을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동북한의 호곡 1호, 서포항 5기, 서포항 6기, 송평동 청동 1기, 오동 청동 1기는 발형의 이중구연토기(ii1)와 잔발(ii1, ii3, ii4, ii6, ii9)이 주류를 이루며, 모두 이중구연+적색마연 토기, 이중구연, 적색마연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의 유형(동북한 1유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14·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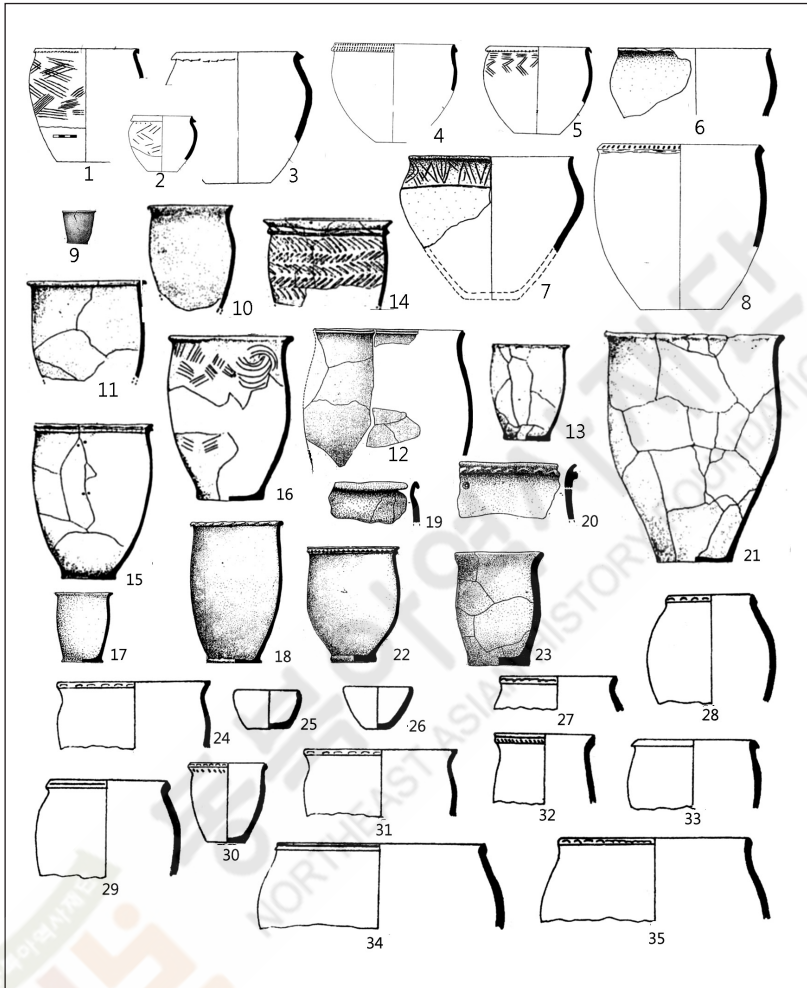
서포항 7-1기와 송평동 2기는 이중구연, 적색마연토기는 남아 있지만 이중구연+적색마연은 없어진다. 동북한 1유형에서 보이던 대부분이 없어지고 긴 경부가 달린 호형의 적색마연토기가 새로 등장하고, 서포항 6기와 층서를 이루어 시간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유형으로 설정하고자 한다(〈그림 16〉).



〈그림 9〉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1유형

(1/6- 1~12, 프레오브라첸니예 1; 13~20, 마락 르발로프; 21~28, 피레발; 29~31, 키예프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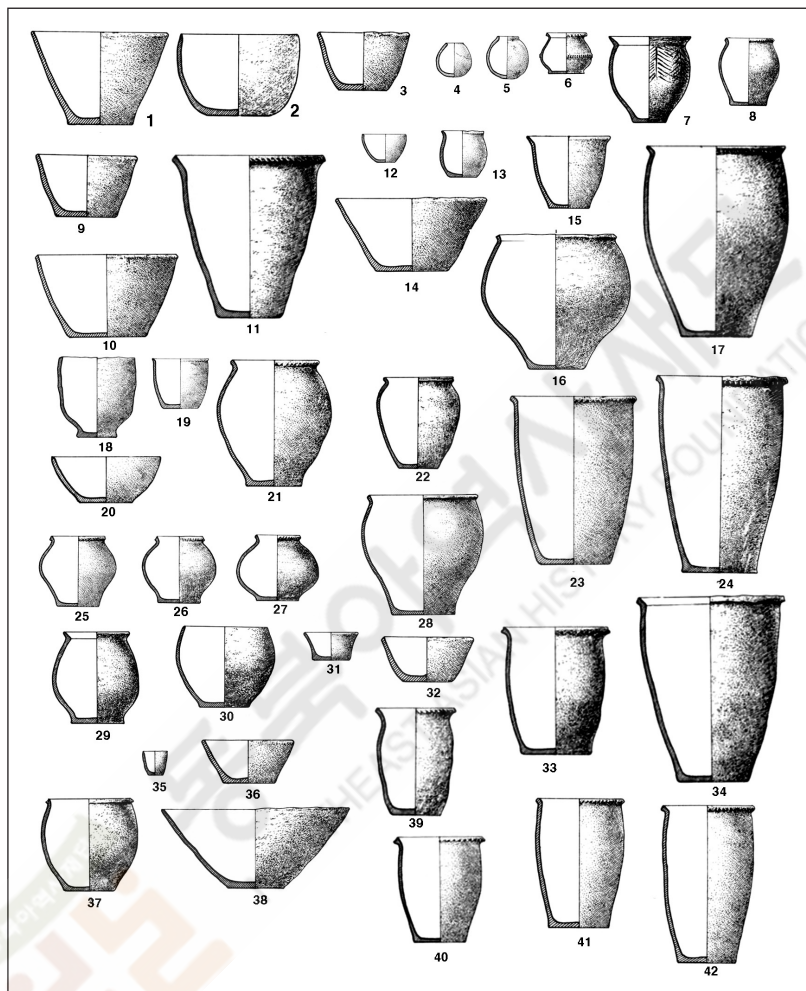
그리고 루드나야 프린스틴 청동기시대 유적과 에피스타피 1 유적 등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2유형은 흥성문화의 1유형과 오동 4호는 발형의 이중구연 토기와 돌대문토기뿐만 아니라, 저부가 매우 작은 대형의 옹형토기(III)가 출토



〈그림 10〉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1유형
 (1/6~1~5, 그로타; 7~9, 글라조프카 2)과 2유형(1/6~ 10~23, 루드나야 프리스틴;
 24~35, 에프스타피 1)

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흥성문화의 3기와 유사하다. 동북한의 2유형과 비교해서 볼 때 적색마연토기가 없어지고 이중구연토기만 확인되어 3유형으로 보고자 한다(〈그림 17〉).

동북한의 1~2유형은 이중구연+적색마연, 적색마연, 이중구연이라는 특징에서 보면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1~2유형, 동북한 3유형은 대형의 이중구연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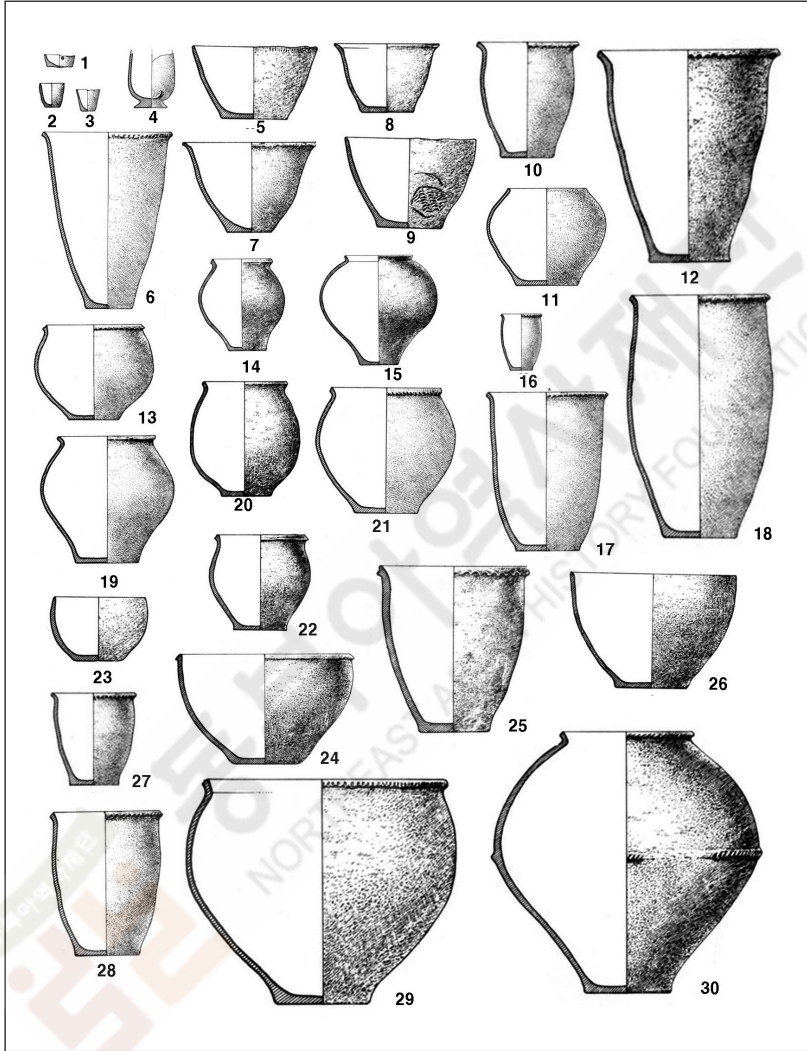


〈그림 11〉 흥성문화 1유형

(12, 1/12; 그 외 1/6- 1, AF2; 2~7, AF4; 8, AF12; 9~12, BF4; 13~17, AF7; 18~21, AF15; 22~34, AF9; 35~42, AF6)

존재한다는 점에서 흥성문화의 2유형과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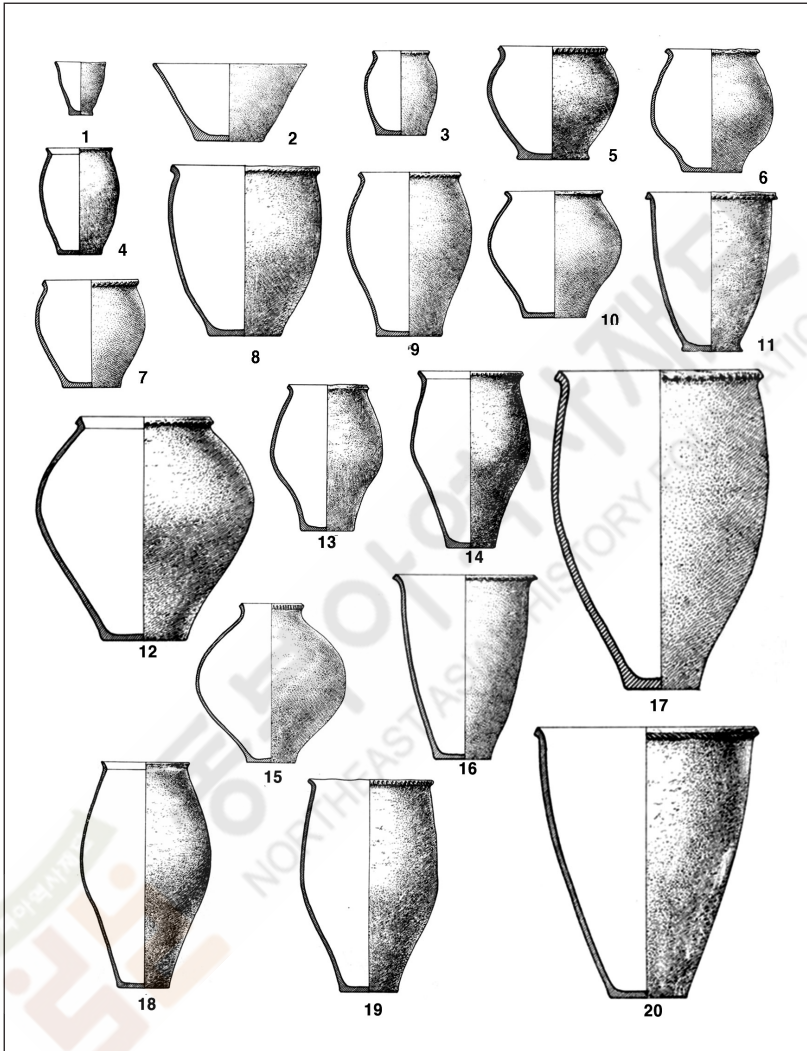
마르가리토포카 문화와 흥성문화는 두만강유역의 내륙과 연해주에서 청동기시대의 시작에 해당하는 문화이고, 구연부를 장식한다는 공통적인 제작기법을 보이고 있다. 루드나야 프린스턴 청동기시대 유적, 에피스타피 1과 같이 마



〈그림 12〉 흥성문화 2유형-1

(6·15, 1/12 그 외 1/6- 1~6, F2; 7~21, AF13; 22~30, BF3)

르가리토프카 문화 중에서는 흥성문화의 특징을 나타내는 곳도 있고, 오동 유적과 한 유적에서 시기를 달리하여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와 흥성문화가 시기를 달리하여 보이는 곳도 있기 때문에 별개의 문화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오동



〈그림 13〉 흥성문화 2유형-2

(13·16~18, 1/12; 그 외 1/6-1·2, BF1; 3~14, F1; 15~20, BF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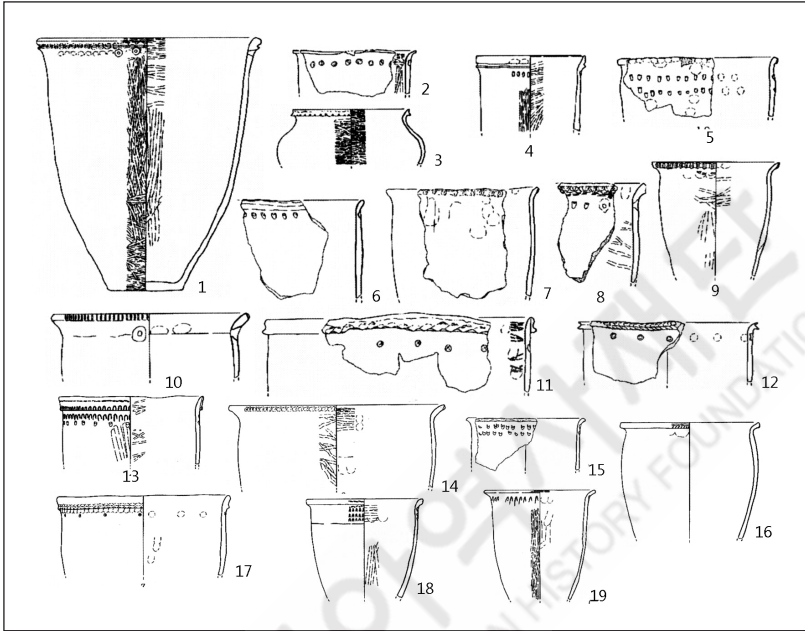
유적에서도 8호, 1·2·7호 등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특징을 보이는 주거지가 흥성문화의 특징을 보이는 4호 주거지보다 앞서 설치된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그림 14〉 오동 청동기 문화 1유형-1

(1/6- 1~5, 호곡 1호; 6~8, 서포항 7호; 9~10, 서포항 9호; 11~12, 14~15, 서포항 2호; 13·16, 서포항 5호; 17, 서포항 14호; 18~20, 서포항 6기 퇴적층; 21~47, 오동 청동기 1기)

앞서 살펴본 주거지의 특징에서도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흥성문화, 오동 청동기 문화의 주거지들이 장방형, 기둥구멍 4열 배치, 중앙에서 약간 치우쳐진 노지의 위치 등은 공통적이다. 오동 주거지와 서포항 청동기층 주거지, 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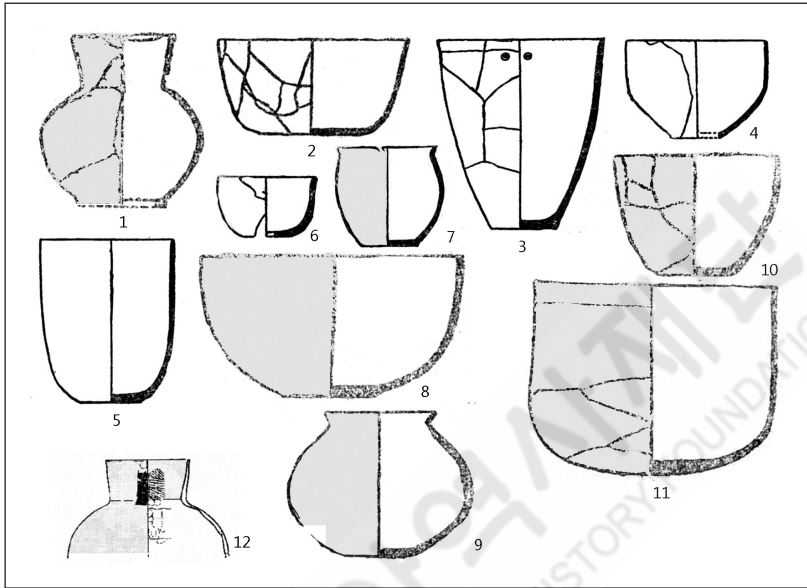


〈그림 15〉 오동 청동기 문화 1유형-2
(1/6-1~19; 송평동 청동기 1)

성 주거지 1기는 위석식 혹은 부석식노지이지만, 그 외는 모두 무시설식노지이다(표 4).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절대연대는 신석기 후기의 3500 B.P.(김재운, 2009)에 이어지고 있어 3500~3300 B.P. 정도에 해당된다. 흥성문화의 절대연대는 3개가 알려져 있는데, 이룬 두 절대연대는 신석기시대로 알려진 연대(4800±140 B.P, 4615±150 B.P.)와도 겹치기 때문에 청동기시대로 보기는 힘들고, 가장 늦은 연대만이 흥성문화가 속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마르가리토프카 문화는 적색마연+이중구연, 이중구연토기 등의 특징을 보이며, 구연부가 장식된 토기가 주요한 특징으로 알려진 흥성문화보다는 이른 시기에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흥성문화가 위치한 두만강유역의 내륙에서는 3500~3200 B.P. 사이가 공백이 된다. 하지만 두 문화의 이전인 신석기 후기는 자이사노프카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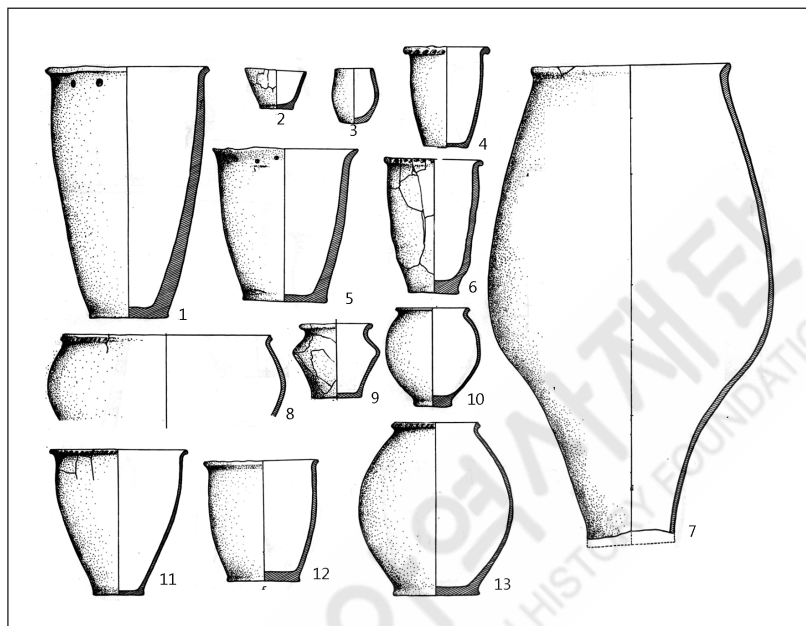
〈그림 16〉 오동 청동기 문화 2유형

(1/6- 1~2, 서포항 10호; 3~4, 서포항 4호; 5~11, 서포항 7기 퇴적층; 12, 송평동 청동기 2)

화, 서포항 상층 문화, 금곡-홍성문화로 대표되는데, 이들 문화는 서로 같은 성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김재운, 2009), 뚜렷하게 두만강 내륙에서 청동기 시대가 늦게 형성된다는 근거는 없다. 다만 이러한 점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동일한 신석기 후기문화를 나타내던 지역에서 서로 차이를 보이며 청동기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도 있다.

반면에 두만강 내륙의 홍성문화 유적은 한 곳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른 시기의 유적이 더 조사되어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특징을 보이는 토기가 이곳에서도 출토된다면 청동기시대의 개시에 대한 지역성은 근거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조사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현재로서는 마르가리토프카 문화가 홍성문화보다는 이른 시기에 시작되고 있으며,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2유형, 동북한 2유형, 홍성문화 2기가 되면 이 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는 비슷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7) 오동 청동기 문화 3유형
(1/6- 1~13; 오동 4호)

동북한의 1~3유형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토기 형식에서는 차이가 있지만,⁴⁾ 이중구연(돌대문토기), 적색마연토기가 출토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1~3유형은 시간적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특징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들은 하나의 문화로 규정할 수 있다. 해당되는 유적들 중에서 서포항 유적은 신석기시대가 중심이 되며, 이미 서포항 상·하층(김재운, 2009a)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하지 않다. 호곡 유적은 1기의 1호를 제외하고는 2기부터는 류정동 유형(姜仁旭, 2007)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4) 동북한 1~3유형은 1950~1970년대 북한 유적들로서 대체적으로 완형토기를 위주로 보고되어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기형에서 차이가 보이는 점은 충분히 인지될 것으로 생각되며,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 적색마연토기라는 토기 제작방법에 더 중점을 두었다.

이 글의 해당시기와는 거리가 멀다. 송평동 유적은 현재 일부만(배진성, 2007; 국립김해박물관, 2005) 알려져 있으며 전체를 알 수 없다.

반면에 오동 유적은 신석기시대와 철기시대 주거지를 제외하고, 오동 청동기 1기(8호, 1·2·7호)와 오동 청동기 2기(4호)로 나누어지는데, 전자는 적색마연, 이중구연, 적색마연+이중구연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와 후자는 흥성문화와 유사하다. 현존하는 유적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동북한 청동기시대의 고고문화는 ‘오동 청동기 문화’로 설정할 수 있다.

오동 청동기 문화의 1유형은 적색마연+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토기, 적색마연토기라는 특징을 보이는데,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1유형의 특징과 같다. 또한 앞서 살핀대로, 호곡 1호의 적색마연된 대부발과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호형 적색마연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는 신석기 후기의 뇌문토기에서 계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두 문화의 시작 시점은 거의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생각된다.

오동 청동기 문화 1유형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1유형의 연대와 일치하는 것으로 3500 B.P.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동 청동기 문화 2유형은 이중구연 혹은 적색마연토기라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징과 기형은 흥성문화 1유형, 마르가리토프카 2유형과 유사하다. 따라서 오동 청동기 문화 2유형과 마르가리토프카 2유형은 흥성문화가 속하는

〈표 11〉 동북한 청동기시대 문화의 병행관계

지역 연대	두만강 내륙	동북한	연해주
3500	?	오동 청동기 문화	마르가리토프카
3300	1유형: 이중	1유형: 이중+적색, 이중, 적색	1유형: 이중+적색, 이중
3100	이중, 대형	2유형: 이중, 적색	2유형: 이중
3000	류정동 유형	3유형: 이중, 대형	아누치노-리토프카-수보로보 문화
2700		?	안롭스키 문화
2500	철기 단결문화		철기

3300 B.P.를 참고할 수 있다.

오동 청동기 3유형과 홍성문화 2유형은 대형의 이중구연토기가 등장한다

〈표 12〉 관련된 문화의 절대연대

마르가리토 프카 문화	글라조프카-2	3605 ± 35(AA 37114)	J.Cassidy 외, 2003
		3580 ± 40(UCR-3773)	J.Cassidy 외, 2003
	에프스타피-올렉 1	3615 ± 80(ГИИ 6948)	J.Cassidy 외, 2003
	프레오브라췌니예 1	3510 ± 70(Bera-172568)	J.Cassidy 외, 2003
	자라-3	3570 ± 80(Bera-133846)	J.Cassidy 외, 2003
		3520 ± 40(Bera-172570)	J.Cassidy 외, 2003
		3540 ± 70(Bera-172573)	J.Cassidy 외, 2003
	모나스트르카-3	3420 ± 40(ГИИ-10218)	다코프, 1999
		3340 ± 40(ГИИ-10219)	
3400 ± 40(ГИИ-10220)			
아누치노- 리도프카- 수보로보 문화	수보로보-6	2960 ± 90(ГИИ-7234)	쿠즈민 외, 2003
		2935 ± 50(СОАН-3023)	
		2320 ± 55(СОАН-3022)	
		2540 ± 40(AA-36623)	
	아누치노-14 청동기시대	2640 ± 55(СОАН-4491)	Klyuev, 2001
	노보셀리췌-4 중간층	2980 ± 50(ГИИ-6951)	얀쉬나 외, 2004
시니가이 A 상층	2875 ± 45(СОАН-1540)	브로단스키, 1996a	
	2820 ± 55(СОАН-1541)		
홍성문화	홍성 유적 87AF7	3785 ± 140	延邊博物館·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홍성 유적 87BF3	3885 ± 115	
	홍성 유적 86F1	3260 ± 150	
류정동 유형	柳庭洞 1호	3160 ± 90	宋玉彬, 2002
	迎花村南山	3125 ± 145	吉林省圖琿鐵路考古發掘隊, 1993
	金谷水库南山	2780 ± 120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5

는 점에서 상통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유적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가 있었던 지역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오동 청동기 문화 3유형의 상한은 홍성문화 연대와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연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연해주에서 마르가리토프카 문화를 후행하는 아누치노-리토프카-수보로보 문화는 대체적으로 3000 B.P.에 시작하고 있고, 두만강 내륙에서 홍성문화 다음의 류정동 문화는 3100 B.P.의 연대가 있기 때문에 오동 청동기 문화는 3000 B.P.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V. 맺음말

이 글의 연구대상 지역의 청동기시대는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홍성문화, 오동 청동기 문화 등으로 대표되는 고고문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홍성문화, 오동 청동기 문화는 토기 특징에서 신석기적인 요소는 거의 벗어나고, 새로운 제작기법 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해주의 청동기시대는 청동유물의 분석에서 카라숙의 영향 아래에서 형성되었다는 기본적인 인식과 이 문화에서 청동유물의 부재 등이 이 문화를 신석기시대로 보게 하는 시각을 형성하게 되었다(안쉬나·클류에프, 2005).

하지만 토기에서 본다면 적색마연토기와 함께 무문의 이중구연 혹은 돌대문토기 등이 주요한 특징으로 분명히 신석기시대와는 차이가 있다. 또한 일부 유적 등(그로티)에서 보이는 석검 등은 신석기시대를 분명히 벗어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적색마연토기는 신석기시대 후기 뇌문토기부터 이어져온 것이고,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홍성문화, 오동 청동기 문화 등에서는 신석기시대 문양이 일부 남아 있는 토기 등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동기시대가 '이주'되어서 시작된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논고된 바와 같이 신석기시대로부터 점이적(姜仁旭, 2007)으로 '계승'(황기덕, 1970)된 것으로 생각된다.

연해주에서 청동유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아누치노-리도프카-수보로보 문화로서 청동泡 등이 대표적이다. 중국 길림은 서단산 문화에서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기는 하지만, 이 문화의 범위가 威虎嶺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의 대상 지역인 두만강 내륙의 류정동 유형에서는 비파형 동검은 출토되지 않고 청동포, 청동扣만이 확인된다.

또한 이 지역은 대상 지역은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는 요서, 요동반도, 한반도 남부보다 이른 시기에 철기시대가 시작되고 있으며, 빈약한 청동유물 때문에 고금속기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이 글 대상의 삼국에 다 사용할 수 있는지는 류정동 유형의 하한과 연해주의 청동기시대 하한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다만 비파형 동검이 출토되지 않는 점, 비교적 짧은 청동기시대라는 특징을 보이는 이 지역의 전체 청동기시대의 시기구분은 시작-전개-발전-소멸과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청동유물이 발생하기 이전과 이후, 크게 두 부분으로 구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서 빈약하지만 청동유물이 출토되는 시기가 본격적인 청동기시대라면, 그 이전에 신석기시대로부터의 점이적인 발전을 보이고, 신석기시대와는 확실하게 다른 새로운 제작기법을 보이는 토기가 하나의 문화를 이루며, 300~400년간 지속되는 '전환기=조기'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해당되는 고고문화는 마르가리토프카 문화, 흥성문화, 오동 청동기 문화로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어〉

- 姜仁旭, 2007, 「두만강 유역 청동기시대 문화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 『韓國考古學報』 62.
- 과학원출판사, 1960, 『회령오동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7집.
- 國立金海博物館, 2005, 『전환기의 선사토기』.
- 김용간·서국태, 1972, 「서포항원시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4.
- 김재운, 2004, 「韓半島刻目突帶文土器의 編年과 系譜」, 『한국상고사학보』 46.
- 김재운, 2007, 「한반도 동북지역 뇌문토기의 변천과정」, 『文化財』 40.
- 김재운, 2008, 「동북한과 중국 연변지구의 초기 철기시대 문화」, 『고고학으로 본 옥저 문화』.
- 김재운, 2009, 「서포항 유적의 신석기시대 편년 재고」, 『韓國考古學報』 71.
- 金材胤·Kolomiets·Kyptih, 2006, 「동북한 신석기 만기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 양상」, 『석헌정장원정년퇴임기념논총』.
- 도유호·정백운, 1956, 「라진초도 원시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 1.
- 배진성, 2003, 「無文土器의 成立과 系統」, 『嶺南考古學』 32.
- 배진성, 2005, 「검단리유형의 성립」, 『한국상고사학보』 48.
- 배진성, 2007, 「豆滿江 無文土器의 實狀」, 『嶺南考古學報』 42.
- 안재호, 2000, 「한국농경사회의 성립」, 『한국고고학보』 44.
- 안재호, 2003, 「赤色磨研土器의 出現과 松菊里式土器」, 『韓國農耕文化의 形成』, 한국고고학회.
- 李白圭, 1974, 「京畿道 出土 無文土器·磨製石器」, 『고고학』 3.
- 이청규, 1988, 「남한지방 무문토기문화의 전개와 공렬토기문화의 위치」, 『한국상고사학보』 1.
- 千羨幸, 2005, 「한반도 돌대문토기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고학보』 57.
- 千羨幸, 2008, 「무문토기시대의 조기설정과 시간적범위」, 『한국청동기학보』 1.
- 崔種圭, 2008, 「考古學文化 實踐」, 『考古學探究』 4.
- 황기덕, 1970, 「두만강유역의 청동기시대문화」, 『고고민속논문집』 2.
- 황기덕, 1975, 「무산벌의구석 유적발굴보고」, 『고고민속논문집』 6.
- 황기덕, 1984, 『조선의 청동기시대』, 사회과학출판사.

〈일본어〉

- 大貫靜夫, 1996, 「欣岩里類型土器の系譜論をめぐって」, 『東北アジアの考古學第二 (槿域)』.
- 藤田亮策, 1930, 「櫛文文様土器の分布就きて」, 『靑丘學叢』 2.
- Kluyev-N.A., Yanshina O. V., 2002, 「靑銅器時代の沿海洲(ロシア極東)-現狀における問題點」, 『東北アジアにおける先史文化の比較考古學的研究』.

〈중국어〉

- 吉林省文物研究所·緣邊朝鮮族自治博物館·和龍縣文物保管所, 1998, 「吉林省和龍縣興城遺址發掘簡保」, 『北方文物』 1998-1.
- 修柱臣, 1961, 「東北原始文化的分布與分期」, 『考古』 10期.
- 延邊博物館·吉林省文物考古研究所, 2002, 『和龍興城一新石器及靑銅時代遺址發掘報告』.
- 劉振華, 1982, 「吉林省原始文化中的几種新石器時代遺存」, 『博物館研究』 創刊號.
- 宋玉彬, 2002, 「圖們江流域靑銅時代的幾個問題」, 『北方文物』 4期.
- 林滢, 1985, 「論團結文化」, 『北方文物』 創刊號.
- 吉林省圖琿鐵路考古發掘隊, 1993, 「吉林琿春市迎花南山遺址, 墓葬發掘」, 『考古』 1993-8.
- 延邊朝鮮族自治州博物館, 1985, 「金谷水庫南山遺址試掘簡報」, 『博物館研究』 1985-3.

〈러시아어〉

- Андреев, Г.И., Андреева, Ж.В., 1959,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ях Прибрежного отряд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й экспедиции в Лазовском, Ольгинском и Хасанском районах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в 1958 г.* (안드레예프·안드레예바, 1959, 『1958년 연해주의 라조, 올가, 핫산지구의 극동 탐사대 고고조사결과 보고서』).
- Андреева Ж.В., 1960, *Некоторые вопросы культур южного Приморья III-I тысячелетий до н.э.*
- Андреева Ж.В., 1963, *Архе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на южном и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Приморья в 1960г.*

- Андреева Ж.В., 1970, Древнее Приморье (железный век)(안드레바, 1970, 『연해주의 철기시대』).
- Бродянский Д.Л., 1985, Вопросы методики; стратиграфия, типология, систематизац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ая периодизация, *Проблемы тихоокеанской археологии*(브로단스키, 1985, 「연구방법론: 층위학, 형식학과 고고학의 편년」).
- Бродянский Д.Л., 1996а, Культурная многозначность и хронологические параллели(по материалам археологии Приморья), *записки общества и изучения Амурского края*(브로단스키, 1996а, 「연해주 고고학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편년문제」).
- Бродянский Д.Л., 1996б, Анучинская культура, *Освоение Северной Пашифики*(브로단스키, 1996б, 「아누치노 문화」).
- Бродянский Д.Л., Дьяков В.И., 1984, Приморье у рубежа эр(브로단스키, 디코프, 1984, 『연해주의 고대』).
- Вострецов Ю.Е., Жущиховская И.С., 1985, Раскопки жилищ кроновской культуры на поселении Киевка в Приморье(보스트레초프, 1985, 「연해주 끼에프까 유적 발굴」).
- Гарковик А.В., 1967, Новая группа памятников Восточного Приморья(III-II тыс. н.э.)(가르코빅, 1967, 「연해주 동부의 새로운 유적 그룹」).
- Гарковик А.В., 1969, Интересный памятник Приморья: [Поселение Евстафий -1](가르코빅, 1969, 「연해주의 흥미로운 유적 - 에프스타피 1」).
- Гарковик А.В., 1973, Поселение с гротами у подножья Синих Скал(가르코빅, 1973, 「시니예 스칼라이 계곡 아래의 동굴유적」).
- Дьяков В.И., 1989, Приморье в Эпоху Бронзы(дя코프, 1989, 『연해주의 청동기시대』).
- Дьяков В.И., 1992, *Многослойное поселение Рудная Пристань и периодизация неолитических культур Приморья*(디코프, 1992, 『연해주의 루드나야 프린스틴 유적과 신석기 문화의 편년』).
- Дьяков В.И., 1999, Периодизация древних культур Приморья: (палеолит эпоха бронзы). Дисс. в виде научного доклада... докт. ист. наук(디코프, 1999, 『연해주 선사문화 편년』).
- Жущиховская И.С., 1976, Отчет об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работах на поселении

- Киевка Лазовского рай она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1976г(주쉬호프스카야, 1976, 『연해주 라조지구의 키에프카 유적조사』).
- Жушщховская И.С., 1996, Древнее гончарство юг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оссии(истор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Автореф. дис. д-ра ист. наук(주쉬호프스카야, 1996, 『러시아극동의 고대 토기제작사』, 국가박사학위논문).
- Клюев Н.А., Яншина О.В., 1994, Новые материалы по эпохе палеометалла в Приморья(поселение Глазовка-2), *Вопросы археологии, истор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클류에프 · 안쉬나, 1994, 「연해주 고금속기시대의 새로운 유적 - 글라조프카 2」).
- Клюев Н.А., Слепцов И.Ю., 2001, Раскопки поселения Анучино-14 в Приморье в 1999 году, *Шеста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молодых историков*(클류에프 외, 2001, 「아누치노-14 유적의 발굴보고」).
- Конькова Л.В., 1989, Бронзо литей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на юге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ССР(콘코바, 1989, 『소련 남극동의 청동 제작』).
- Кузмин Я.В., Коломиец С.А., Орлова Л.А., Сулержицкий Л.Д., Болдин В.И., Никитин Ю.Г., 2003, Хронология культур Палеометалла и средневековья Приморья(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쿠즈민 외, 2003, 「연해주의 고금속기시대와 중세시대 절대연대」).
- Окладников А.П., 1964, Древнее поселение в Пхусун, Материалы по истории Стбтрии(오클라드니코프, 1964, 「푸수훈 만의 고대 유적」).
- Слепцов И.Ю., 2005, Жилище маргартовской культуры(по материалам пале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селения Преображение 1), *Социогенез в Северной Евразии: Сборник научных трудов*(슬레프초프, 2005, 「마르가리토프카 문화의 주거지」).
- Медведев В.Е., 2000, Поселение Перевал на юге Приморья, *История и археолог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 70-летию Э.В. Шавкунова*(메드베제프, 2000, 「연해주 남부의 피레발 유적」).
- Яншина О.В., 2001, *Финальный неолит-бронзовый век Приморья. Систематизация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памятников*; Автореф. дис... канд. ист. наук(안쉬나, 2001, 『연해주의 신석기 말기와 청동기시대』, 박사학위논문).
- Яншина О.В., 2004, *Проблема выделения бронзового века в Приморье*(안쉬

나, 2004, 『연해주의 청동기 분리』).

Яншина О.В., Клюев Н.А., 2005, Поздний неолит и ранний палеометалл Приморья: критерии выделения и характеристика археолог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Открытия, проблемы, гипотезы -Владивосток*(안쉬나·클류에프, 2005, 「연해주 신석기 후기와 고금속기시대 전기의 고고유형 분리와 특징」, 『러시아 극동의 선사와 중세』).

〈영어〉

Cassidy, J., Kononenko, N., Sleptsov, I., Ponkratova, I., 2005, On the Margarita Archaeological Culture: Bronze age or Final Neolithic?, *Проблемы археологии и палеэкологии Сибирской, Восточной 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Новосибирск*.

[ABSTRACT]

The Study of the Bronze Era of Eastern North Korea based on the Archaeological Data of Primorsky and Yanbian

Kim, Jaeyoun

Eastern North Korea entered the Bronze era at the end of 3500 B.P. While the Xingsheng and Margarinovka cultures represent the Bronze era of Yanbian and Primorsky respectively, the second period of Hogok or, the firth Hogok and the fifth period of Seopohang are the representative cultures of the Bronze era of eastern North Korea.

The Margarinovka culture is divided into the first and second assemblag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ceramics. The Xingsheng culture has been reported as the third assemblage. But this study re-defines the first and second phases as the first assemblage, and the third phase which saw the appearance of large ceramics as the second assemblage.

1 dwelling of Hogok, the fifth and sixth phases of Seopohang, the firth bronze period of Songpyedong and the firth bronze period of Odong are characterized by two-folded rims of bolws. And all of them share the same features of two-folded rims + red burnished ceramics, two-folded rims and red burnished , which can be identified as a specific assemblage (the first assemblage of eastern North Korea).

The 7-1 phase of Seophohang and the second phase of Songpyedong consist of two-folded rims and red burnished pottery but witnessed the disappearance of of two-folded rims + red burnished ceramics. The

phases are defined as the second assemblage since around this time red burnished pot appears and there seem to be difference of periods from the sixth period of Seophohang.

The 4 dwelling of Odong is considered as the third assemblage in that it features not only two-folded and banded around rims of bowls ceramics but also large ceramics whose bottom is much smaller compared to its body.

The site of Odong is divided into the first phase of the Bronze era of Odong (dwelling 8, 1, 2, 7), and the second phase of the Bronze era of Odong (dwelling 4). The first phase is similar with the Margarinovka culture while the second phase share similar features with the Xingsheng culture.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sites, the archaeological culture of the Bronze era of eastern North Korea can be identified as 'the Bronze culture of Odong'.

Although the red burnished ceramics of the Bronze culture of Odong and Margarinovka culture have different form of ceramics, the two cultures appear to have begun around the same time and their Bronze cultures consider to have succeeded the Neolithic era since they share the same origin of pottery with lighting design ceramics of the late Neolithic 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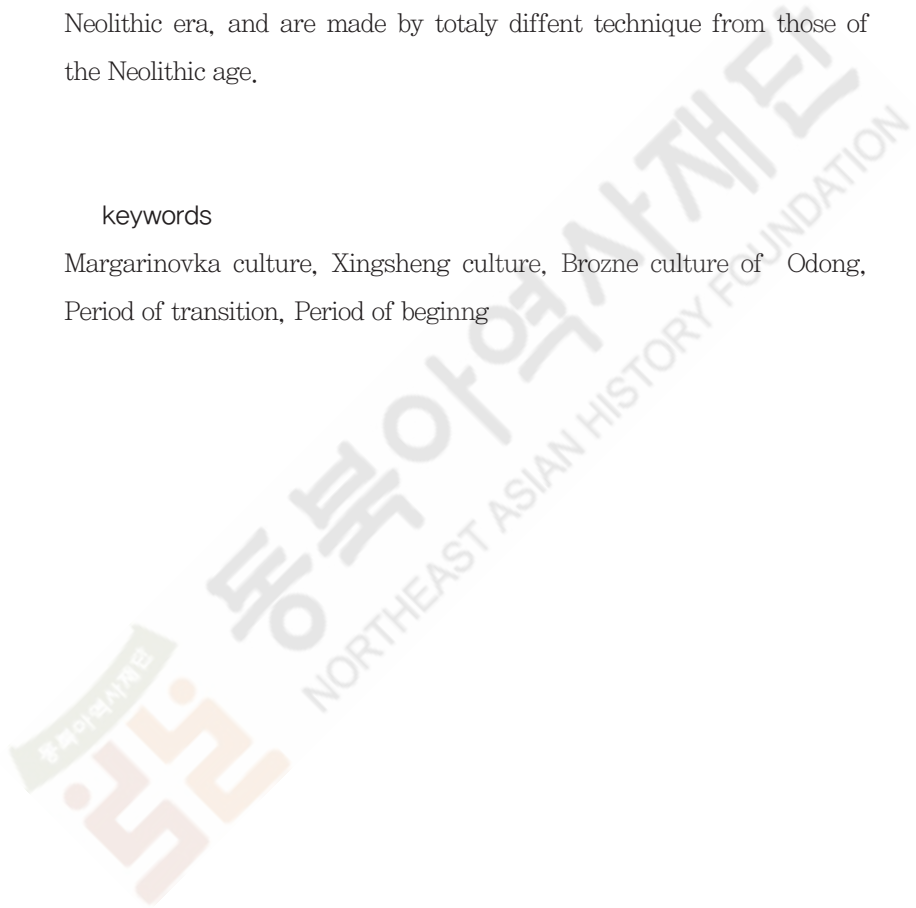
The first assemblage of the Bronze culture of Odong seems to have begun in the same chronology of 3500 B.P. with the Margarinovka culture. Considering the chronology of the Anuchino-Sinigaye-Soborobo culture (3000 B.P.) and of the Liutingtong assemblage (3100 B.P.), its chronological period is no earlier than 3000 B.P.

In addition, unlike the Bronze ages of other regions of eastern North Korea, this site does not show Liaoning bronze dagger and its Bronze period is relatively short. However, if the time that the excavated

Bronze remains belong to marks the beginning of the Bronze age, it is fair to say that it is “the period of transition = the period of beginng” that lasted from 300 to 400 years. The period is defined by a particular type of ceramics that are much developed compared to those of the Neolithic era, and are made by totaly diffent technique from those of the Neolithic age.

keywords

Margarinovka culture, Xingsheng culture, Brozne culture of Odong, Period of transition, Period of beginng



羅唐戰爭의 종전배경과 新羅의 역할

이상훈 | 경북대학교 강사

I. 머리말

나당전쟁은 675년 9월 買肖城 전투를 고비로 일단락된다. 『三國史記』의 기록에 따르면, 매소성에 주둔하던 唐軍은 20만 명에 달하였으며, 말갈족 출신 李謹行이 인솔한 것으로 되어 있다.¹⁾ 그리고 신라군은 매소성 전투에서 당군의 戰馬 3만여 필을 노획하고, 이후 전투에서 18번을 싸워 모두 이기고 6,000여 명을 목베었다고 한다.

국내학계에서는 매소성 전투가 나당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고, 반면 당은 매소성 전투의 패배 결과 안동도호부를 요동으로 이동시킬 수밖에 없었으며, 결국 당의 한반도 지배야욕은 좌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²⁾

※ 투고일: 2011년 3월 29일, 심사일: 2011년 5월 18일, 게재 확정일: 2011년 5월 31일.

1) 『삼국사기』 권7, 문무왕 15년, 9월조.

2) 매소성 전투의 승리를 강조하는 연구는 대표적으로 李鍾學, 1982, 「新羅三國統一의 軍事史的 考察」, 『軍史』 8; 閔德植, 1989,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 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0; 安國承, 1997, 「買肖城 研究」, 『경기향토사학』 2; 徐仁

즉 매소성 전투는 나당전쟁의 결정적 교전으로, 당군은 이 전투에서 대패하였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학계에서는 매소성 전투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와 전혀 다르다. 당으로서는 당시 서북의 吐蕃(티베트)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동북의 한반도는 放棄되었다는 것이다.³⁾ 즉 당의 군사전략의 중심이 동북에서 서북으로 대전환되었으며,⁴⁾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매소성 전투가 발생하였으므로 매소성 전투에 대한 이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⁵⁾

근자에 국내학자 徐榮教는 이러한 국외학계의 견해를 수용하고, 국제정세의 변동 속에서 나당전쟁을 조망하고자 하여, 나당전쟁을 인식하는 데 있어 시야의 확대를 가져왔다.⁶⁾ 서영교는 나당전쟁의 종결은 매소성 전투 승리의 산물이 아니며, 당이 토번에 대한 총공세를 취하기 위해 한반도의 말갈병을 西域으로 이동시킨 결과, 즉 국제적 상황이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다고

漢, 1999, 『羅唐戰爭史』, 國防軍事研究所; 李昊榮, 2001,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張學根, 2001, 「新羅의 征服地 支配防禦戰略-對唐戰爭을 中心으로」, 『軍史』 41 등이 있다. 한편 신라의 승리보다는 신라의 생존 자체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견해도 있다. 李相勳, 2007,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3) 나당전쟁과 관련된 국외의 대표적인 연구는 池內宏, 1960a,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 上世2, 東京: 吉川弘文館; 高明士, 1983, 「從天下秩序看古代的中韓關係」, 『中韓關係史論文集』, 臺北: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黃約瑟, 1997,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北京: 中華書局; 韓昇, 1999, 「論新羅的獨立」, 『歐亞學刊』 1; 王小甫, 2000, 「唐朝與新羅關係史論」, 『唐研究』 6,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등이 있으며, 拜根興, 2003a,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가 좋은 참고가 된다.

4) 이와 관련된 한국 측 연구로는 李相勳, 2006, 「羅唐戰爭期 唐의 軍事戰略 變化」, 『歷史教育論集』 37 참조.

5) 拜根興은 토번 세력의 확장으로 인해 서북 변경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자, 당 조정은 한반도에 있던 당군을 급히 서쪽으로 이동시켰으며, 이근행이 이끌던 말갈족 위주의 당군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매소성 전투는 바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후퇴하려는 당군과 퇴로를 차단하려는 신라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라고 강조한다. 拜根興, 2003b, 「羅唐戰爭研究中的幾個問題」,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拜根興, 2010, 「唐과 新羅關係에 關한 問題 再研究-羅唐戰爭을 中心으로」, 『7世紀 東亞細亞의 新羅』(第4回 新羅學國際學術大會 發表集), 慶州市·新羅文化遺產研究院.

6) 徐榮教, 2006a,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이문화사.

한다.⁷⁾ 그리고 676년 당이 토번의 내분을 이용하여 총반격을 가하는데, 한반도에 있던 말갈병 주력을 동원했던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⁸⁾ 최근 중국 학자 拜根興은 이러한 서영교의 견해가 韓·中 사료를 매우 중시하는 한편, 시야를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로까지 확대시켜 상당히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⁹⁾

한반도 방기론을 주장하는 국외학계와 국내의 일부 견해를 정리하면, 나당 전쟁기간에 토번이 강성해져 당의 군사전략이 서북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주둔하던 말갈병 주력이 이근행을 따라 토번전에 투입되었으며, 따라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한 매소성 전투는 철수전에 지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한반도는 방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체계는 매소성 전투를 지휘한 이근행이 말갈족 출신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주둔하던 당군의 주력을 말갈병으로 보고,¹⁰⁾ 蕃將인 이근행이 676년에 토번전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들 말갈병이 이근행을 따라 이동하였다¹¹⁾고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다.

당시 국제정세를 고려하지 않고, 신라의 자주성만 강조하는 입장은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당이 토번을 중시했기 때문에 나당전쟁이 終戰되었다고 단순하게 보는 것도 신라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는 또 다른 한계일 수밖에 없다. 필자도 670년대 당의 군사전략이 토번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과 당이 신라와의 전쟁보다는 토번과의

7) 徐榮教, 2000a, 「九誓幢 완성 배경에 대한 新考察 - 羅唐戰爭의 餘震」, 『韓國古代史研究』 18, 235쪽.

8) 徐榮教, 2002a,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 20~22쪽.

9) 拜根興, 2010, 앞의 논문, 84쪽.

10) 일찍이 末松保和는 9서당을 구성한 말갈은 이근행이 이끌고 온 20만 명의 말갈병 가운데 매소성 전투에서 포로가 되거나 잔류한 자들이라고 추정하곤 하였다(末松保和, 1954, 『新羅史의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354~355쪽). 이기동은 나당전쟁기 이근행이 이끌던 병력을 순수한 말갈병으로 보고 있으며(李基東, 1984, 「新羅下代の 湟江鎮」,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212쪽), 서영교는 '말갈군단 20만'이라고 표현하였으며(徐榮教, 2006a, 앞의 책, 102쪽), 민덕식도 매소성 전투에 투입된 병력은 말갈병이 대부분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하였다(민덕식, 1998, 「賈肖城址考」, 『孫寶基博士停年紀念考古人類學論叢』, 知識産業社, 668쪽).

11) 徐榮教, 2006a, 앞의 책; 拜根興, 2003a, 앞의 책.

전쟁에 더욱 주력했던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당전쟁의 終戰背景을 좀 더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당전쟁기에 투입된 당군의 병력 구성, 말갈병과 이근행의 관계, 당의 군사전략 변화와 對토번 원정군의 편성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이러한 나당전쟁의 종전배경 문제가 어떻게 논의 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나당전쟁기에 투입된 당군의 주력이 과연 靺鞨騎兵이었는지를 확인하고, 이근행이 토번 전선으로 이동함에 따라 한반도 주둔 당군의 대부분이 이근행을 따라 실제 이동하였는지를 밝히고자 한다.¹²⁾ 즉 나당전쟁기 당군의 동향을 통해, 나당전쟁이 단순히 말갈병의 이동에 따라 종결된 상황이었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당전쟁의 종전배경과 신라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보다 선명해질 것이다.

II. 나당전쟁의 終戰背景 논의

나당전쟁과 관련하여 본격적인 검토를 시도한 사람은 일제시기 일본 학자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와 이케우치 히로시[池内宏]이다. 쓰다 소키치(1915)는 백제·고구려 故地는 당 본토에서 거리가 멀어 교통이 불편하고 유민들이 복종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허점을 신라가 이용해 ‘併呑’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삼국사기』에 신라가 승리한 것으로 기록된 매소성 전투는 신빙할 수 없다고 하였다.¹³⁾ 이케우치 히로시(1930)는 나당전쟁을 신라와 당이라는 국가 대 국가

12) 나당전쟁 과정에서 당군의 보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에 대한 신라군의 戰備는 또 어떻게 충당되었는지 등등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밝혀둔다.

13) 津田左右吉, 1915, 「唐羅交戰地理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津田左右吉, 1964, 『津田左右吉全集』, 東京: 岩波書店.

간의 전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신라의 욕심으로 인해 당이 정벌을 단행한 것으로 인식하였다.¹⁴⁾ 즉 검모잠의 ‘反亂’을 지원했던 신라가 당이 차지하고 있던 백제고지를 ‘侵略’하였기 때문에, 당이 이에 대한 조치로서 신라를 ‘征伐’하게 되었으며, 이후 안동도호부가 요동으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는 ‘放棄’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안동도호부가 요동으로 이전하게 되는 배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학자 陳寅恪(1941)은 吐蕃(티베트)의 발호로 인해 당의 서북지역이 위급해지자 동북지역을 경영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당은 동북지역에 대해 소극적인 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반도를 放棄하게 되었다고 하였다.¹⁵⁾ 이러한 쓰다 소키치 · 이케우치 히로시와 陳寅恪의 관점은 이후 일본과 중국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로 자리매김하였고,¹⁶⁾ 서구 학계에서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나당전쟁을 이해하였다.¹⁷⁾ 정리하면 국외 학계의 입장은 고구려 멸망 후 신라가 백제고지를 ‘침략’하자 당이 신라를 ‘정벌’하면서 전쟁은 시작되었고,¹⁸⁾ 토번의 발호로 인해 당이 신라를 ‘방기’하자 전쟁은 종결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 방기론’의 기저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사관이 깔려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滿鮮史學은 만주지역의 역사인 만주사와 ‘조선반도’의 역사인 조선사를 합해서 만들어진 용어로, 만주와 ‘조선반도’를 하나의 역사단위로

14) 池内宏, 1930,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地理歴史研究報告』 12; 池内宏, 1960b, 『滿鮮史研究』 上世2, 東京: 吉川弘文館. 池内宏은 ‘新羅의百濟故地占有と之に對する唐の處置’ · ‘唐の新羅征伐’ · ‘唐の半島放棄’라는 장 제목을 사용하고 있다.

15) 陳寅恪, 1941,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稿』, 上海: 商務印書館; 陳寅恪, 2004, 『隋唐制度淵源略論稿 唐代政治史述論稿』, 北京: 三聯書店, 345~346쪽.

16) 高明士, 1983, 앞의 논문.

17)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Kao-tsung and the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p. 284~285.

18) 고구려 멸망 후 신라가 다시 亂을 일으키자 당이 정벌하여 한반도를 완전히 평정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李方晨, 1981, 『中國通史』 下, 臺北: 三民書局, 470쪽.

인식하였다.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가 1905년 처음 주장하였는데, 일제의 만주 진출을 앞두고 창안된 역사인식이었다. 1932년 만주국 건국 이후 일제가 만주지역을 완전히 장악한 뒤에는 ‘滿蒙史’와 ‘東亞史’로 변화되었고, 다시 남태평양으로 진출하자 ‘大東亞史’로 확대되었다.¹⁹⁾

쓰다 소키치와 이케우치 히로시는 대표적인 滿鮮史學者로서, 고구려 부흥 운동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한편, 신라의 唐에 대한 활동은 상당히 축소 혹은 왜곡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滿鮮史觀에서는 만주사와 조선사가 동등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만주사가 규정적·중심적이고, 조선사는 그에 부속적·종속적 지위를 가지게 된다. 즉 ‘半島’는 대륙과 해양의 중간지점에 완성되지 않은 지역이며,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미숙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 대륙의 중국과 해양의 일본이라는 두 強國 사이에 끼어 있어서 강고한 독립국을 만들 수 없으며, 항상 강국의 눈치를 보는 사대주의를 통해 국가를 유지하였다고 이해된다.²⁰⁾ 따라서 한국 고대국가의 역사는 만주세력의 南進과 일본세력의 北進 속에서 부수적으로 존재한 역사로 간주되는 것이다.²¹⁾ 이는 한국사를 타율성론에 입각하여 서술함으로써 한국의 자주성·주체성을 없애고자 한 의도라고 할 수 있다.²²⁾

중국 학자가 일제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따라 한국사를 인식한 것은 근대 중화주의의 강화와 더불어 일어난 특이한 변화 중에 하나이다. 王桐齡(1922)은 漢·唐의 ‘정벌’을 강조하여 중국세력의 南進 구도로 파악함으로써,²³⁾ 任那를 거점으로 하는 일본세력의 北進과 아울러 中日並進 구도라는 근대 중국의 한국사 인식체계를 수립하였다. 이러한 한국사의 인식체계인 中日

19) 박찬홍, 2007,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韓國史學報』 29, 9쪽. 이러한 滿鮮史의 중심인물인 白鳥庫吉은 滿鐵에 滿鮮地理歷史調查室을 설치하여 많은 후학을 양성하였는데, 津田左右吉과 池內宏은 그의 門下이다.

20) 박찬홍, 2007, 위의 논문, 31~32쪽 참조.

21) 김정현, 2010, 「20세기 中國의 韓國史 서술과 일본의 植民史觀」, 『中國學報』 61, 351쪽.

22) 박걸순, 2004, 『植民地 시기의 歷史學과 歷史認識』, 景仁文化社, 128쪽.

23) 王桐齡, 1922, 『東洋史』, 上海: 商務印書館.

竝進 구도는 동경제국대학에서 식민사를 체계화한 하야시 다이스케[林泰輔]에게서 나온 것이다. 하야시 다이스케는 메이지시기 일본에 유학한 王桐齡의 스승이며, 하야시 다이스케의 『朝鮮通史』(1912)는 黃炎培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

王桐齡은 일본의 식민사학을 현지에서 정통으로 배워온 핵심인물로 中日竝進의 한국사 인식구도를 중국 학계와 교육계에 정착시킨 장본인이며, 黃炎培는 그 보급자라 할 수 있다.²⁴⁾ 黃炎培(1929)는 일제의 식민사관을 아무런 비판이나 검증 없이 그대로 수용하였는데,²⁵⁾ 이는 중화사관과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오히려 상호 상승작용하면서 결합되었다고 한다.²⁶⁾ 양자는 상호간에 논리적 친화관계를 바탕으로 필요에 따라 서로 차용하면서 상호 전화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²⁷⁾ 비록 陳寅恪이 이러한 1920년대 왕동령·황염배의 역사인식과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史觀은 陳寅恪이 한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²⁸⁾

그렇기 때문에 나당전쟁을 바라보는 中日 학계의 관점은 신라와 당 사이에 발생한 전투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전쟁의 개시 및 종결의 배경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만선사관에 따르면 '반도'의 신라는 '만주'의 고구려보다 열세여야 하고, 중화사관에 따르면 고구려를 멸망시킨 唐이라는 세계제국에 의해 반도의 소국이 '정벌'당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입장에서는 고구려보다 '열등'한 신라가 당시 최강대국 당에 승리한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게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나당전쟁 후 안동도호부가 요동으로 이동하고, 당의

24) 김정현, 2010, 앞의 논문, 352쪽.

25) 黃炎培, 1929, 『朝鮮』, 上海: 商務印書館.

26) 유용태, 2006, 「중국인의 '남조선 한성': 20세기 중화주의」, 『환호축의 경종: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167~168쪽.

27) 김정현, 2010, 앞의 논문, 353쪽.

28) 한편 Latourette(1951)는 백강구 전투(663)에서 일본군이 당군에게 패함으로써 일본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며, 당 고종시기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당과 연합했기 때문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Kenneth Scott Latourette, *THE CHINESE Their History and Cultur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51, pp. 184~185.

세력이 한반도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은 신라의 역할보다는 토번의 발호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설명해야 자연스러운 것이 된다.

Ⅲ. 당군의 편성과 李謹行

1_ 당군의 구성과 兵員

나당전쟁에는 唐의 적지 않은 병력이 수년간에 걸쳐 투입되었다. 670년 3월 薛烏儒 · 高延武의 연합군이 요동으로 선제공격을 가하고 고구려 부흥운동이 격화되자, 당은 그해 4월 高侃 · 李謹行의 東州道 · 燕山道行軍의 4만 명을 편성하여 참전시킨다. 『삼국사기』에는 고간의 唐軍 1만 명과 이근행의 蕃兵 3만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나당전쟁기에 참전한 당군의 규모를 이 4만명으로 한정해 보는 견해도 있다.²⁹⁾ 그러나 실제 나당전쟁에는 이보다 더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던 같다. 『삼국사기』의 기록을 바탕으로 나당전쟁에 참여한 당군의 구성과 이들이 치른 전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을 참조하면서 나당전쟁기에 신라와 맞서 싸운 당군을 시기별로 분류해 보자.

첫째, 나당전쟁이 본격화되기 전에 안동도호부 산하의 병력과 다투는 시기이다. 670년 3월 설오유 · 고연무의 연합군이 전격적으로 압록강을 건너, 4월에 말갈병 및 당군과 오골성 전투를 수행하였다.³⁰⁾ 그런데 고간과 이근행은 670년 4월에 검모잠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기 위해 동주도행군

29) 閔德植, 1989, 앞의 논문; 李昊榮, 2001, 앞의 책.

30)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

〈표 1〉 나당전쟁기 당군의 구성과 전투유형

시기	전투장소		당군구성	전투유형	수군협조
670. 3~4	오골성	요녕성 봉황성	말갈·당병	*야전	
671. 1	설구성	미상 ³¹⁾	말갈	성전	○
671. 6	석성	충남 석성	당병	성전	○
671. 10	西海	미상	漕船	수전	○
672. 8	한시성	황해 평양 인근	당병·말갈	성전	
	마읍성	황해 평양 인근	당병·말갈	성전	
	백수성인근	황해 재령	당병·말갈	*야전	
	석문	황해 서흥	당병·말갈	*야전	
673. 9	호로하	경기 임진강	당병·말갈·거란	*야전·하전	○
	왕봉하	경기 한강	당병·말갈·거란	*야전·하전	○
673. 冬	우잠성	황해 금천	당병	성전	
	대양성	강원 금강	거란·말갈	성전	
	동자성	경기 김포	거란·말갈	성전	○
675. 2	칠중성	경기 적성	유인귀군	성전	
675. 9	천성	경기 교하	설인귀군	성전	○
	매소성	경기 양주	이근행군	성전	
	아달성	강원 철원	말갈	성전	
	칠중성	경기 적성	당병·거란·말갈	성전	
	적목성	강원 회양	말갈	성전	
	석현성	미상 ³²⁾	당병	성전	
676. 7	도림성	강원 통천	당병	성전	
676. 11	기벌포	충남 서천	설인귀군	수전	○

31) 설구성을 함경남도 안변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삼국사기』 671년 기사를 참조해 보면, 신라군이 백제고지로 진격하여 웅진 남쪽에서 싸운 후 말갈병이 설구성을 공격하였고, 말갈병이 패하자 다시 당군이 백제고지로 지원군을 보내고자 하였으며, 이에 신라는 서해의 옹포를 지키게 하였다. 그러므로 일련의 전투들은 모두 백제고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설구성은 웅진 인근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과 연산도행군으로 편성되었다.³³⁾ 그러므로 670년 3월에 이미 皆敦壤에서 기다리고 있던 말갈병을 670년 4월에 편성되기 시작한 이근행의 행군과 동일시 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이들은 안동도호부 영역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당군으로 판단된다.³⁴⁾ 그리고 671년 1월에 백제고지의 舌口城을 공격한 말갈병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시 당의 백제 주둔군은 이미 궤멸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되므로,³⁵⁾ 설구성을 공격한 말갈병은 당 주둔군이 아니라 백제고지로 새롭게 투입된 병력으로 보아야 한다.³⁶⁾ 670년 4월에 편성된 고간·이근행의 부대는 육로를 통해 요동을 거쳐 671년 하반기에야 한반도 북부로 진군하였기 때문에, 671년 1월에 투입된 말갈병은 고간·이근행의 행군과는 다른 부대임을 알 수 있다. 이는 670년 3월에서 4월까지 오골성 전투를 수행하던 말갈병이 백제고지로 다시 투입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670년 3~4월에 오골성에서 전투를 벌인 말갈병·당군과 671년 1월 설구성에 등장하는 말갈병은 안동도호부 산하의 병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671년 6월에 백제고지로 당의 웅진도독부 구원군이 투입되는 시기이다. 670년 신라가 백제고지를 공격하자 웅진도독부는 당에게 구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의 웅진도독부 구원군이 도착하여 671년 6월에 신라와 백제고지에

32) 석현성은 경기도 개풍 혹은 황해도 곡산으로 비정되기도 하는데, 석현성은 관미성과 함께 한강 이북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거점으로서 임진강과 한강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李相勳, 2007, 앞의 논문, 23쪽 참조.

33) 『新唐書』 卷3, 高宗本紀3, 咸亨元年(670), “四月……高麗尊長鉗牟岑反, 寇邊, 左監門衛大將軍高備爲東州道行軍總管, 右領軍衛大將軍李謹行爲燕山道行軍總管, 以伐之.”

34) 이상훈, 2010, 「羅唐戰爭의 開戰과 薛烏儒 部隊」, 『歷史教育論集』 45, 264쪽.

35) 660년 백제와 668년 고구려 멸망 후 주둔한 당군 규모가 2만 명 내외였던 점을 감안해 보면, 670년 신라의 공격으로 확인된 사망자만 9,000명에 이르고, 수많은 전마·병장기들을 탈취당하였으며, 이듬해 당의 백제 구원군이 도착하기 전까지 어떠한 군사활동이 전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당시 당의 백제 주둔군은 궤멸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된다.

36) 이에 관해서는 李相勳, 2008a, 「羅唐戰爭期 伎伐浦 戰鬪와 薛仁貴」, 『大丘史學』 90, 49~55쪽 참조.

서 石城 전투를 벌였다.³⁷⁾ 이를 지휘한 장수는 670년 서북전선에서 大非川 전투를 치른 설인귀로 671년에 계림도행군총관에 임명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上關)縣令郭君墓誌銘」에 따르면,³⁸⁾ 郭行節은 咸亨 2년(671)에 ‘鷄林道判官’ 겸 ‘知子營總管’으로 임명되어, 押運使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풍랑으로 인해 배가 부서져 익사하였다고 한다.³⁹⁾ 이를 통해 볼 때 해로로 투입된 이 웅진도독부 구원군은 고간·이근행의 동주도·연산도행군과 구분되는 또 다른 행군인 계림도행군이었음을 알 수 있다.⁴⁰⁾ 그리고 『삼국사기』 문무왕 11년(671) 겨울의 기사에는 신라군이 당의 漕船을 공격했던 일시·포로명·규모 그리고 논공행상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⁴¹⁾ 문무왕 12년(672) 9월의 기사와 비교해 보면,⁴²⁾ 당시 신라가 억류하고 있던 포로 가운데에는 鉗耳大侯(兵船郎將)·王芸(萊州司馬)·王益(本烈州長史) 등 당군과 禰軍(熊津都督府司馬)·法聰(曾山司馬) 등 백제 유민이 포함되어 있던 사실이 확인된다.⁴³⁾ 이들

37) 당의 웅진도독부 구원군 파견과 석성 전투에 대해서는 李相勳, 2008a, 위의 논문, 11~17쪽 참조.

38) 吳鋼 主編, 2006, 『全唐文補遺』 第5輯, 西安: 三秦出版社. 군사적 목적으로 신라를 내왕한 唐人들의 묘지명에 대해서는 권덕영, 2008,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韓國史研究』 142, 54~61쪽이 좋은 참고가 된다.

39) 『全唐文補遺』 「(上關)縣令郭君墓誌銘并書」, “君諱□□志該, 太原人也……軍將等以公早習戎昭, 夙閑韜略, 遂表公爲鷄林道判官·兼知子營總管. 又奏公爲押運使. 於是揚舡巨海, 鼓棹遼川, 風起濤驚, 船壞而溺, 形沉水府, 神往修文. 其化迹之時, 卽唐咸亨二年之歲也.” 한편 『唐代墓誌彙編』 「大周故泉州龍溪縣令郭君墓誌銘并序」에는 “君諱行節□□該, 太原人也”라고 되어 있어, 묘지 주인이 광행 절임을 알 수 있다. 권덕영, 2008, 위의 논문, 56쪽 참조.

40) 李相勳, 2008a, 앞의 논문, 14~15쪽.

4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겨울 10월 6일, 唐나라 漕船 70여 척을 공격하여, 郎將 鉗耳大侯와 士卒 100여 명을 사로잡았다. 물에 빠져 죽은 자는 이 루 셀 수 없었다. 이 전투에서 級漚 當千의 공로가 제일이었으므로, 沙滄의 직위를 주었다.”

42)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 “9월, 얼마 전 百濟가 唐나라에 가서 호소하고 군사를 빌려 우리를 침략하자, 왕은 事勢가 급박하여 황제에게 알리지 않고 출병하여 이를 토벌하였다. 이 때문에 唐 조정에 죄를 지었으므로, 마침내 級漚 原川·奈麻 邊山과 억류했던 兵船郎將 鉗耳大侯·萊州司馬 王藝·本烈州長史 王益·熊州都督府司馬 禰軍·曾山司馬 法聰과 軍士 170명을 唐으로 보낸다.”

43) 禰軍은 670년 7월 신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억류되었는데(『삼국사기』 권6,

의 직함을 통해 볼 때, 671년 10월 신라군에게 습격당했던 당의 漕船(輸送船)은 당 본국(산둥반도)에서 출항하여 백제고지(웅진도독부)로 투입되었던 것으로 판단되며,⁴⁴⁾ 이들도 역시 고간·이근행의 행군과는 다른 병력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672년 8월부터 고간·이근행의 행군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시기이다. 고간·이근행의 행군은 원래 670년 4월 고구려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편성되어, 671년 7월에 요동의安市城에서 고구려 부흥군을 진압하고, 671년 9월에서야 평양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고간과 이근행의 행군은 동시에 편성되었지만, 안시성의 고구려 부흥군 진압에 나타나는 장수는 고간 1명으로 기록되어 있다.⁴⁵⁾ 그리고 『삼국사기』 671년 기사를 보면 고간 등 4만 명이 평양에 이르러, 도랑을 파고 보루를 구축한 후⁴⁶⁾ 帶方을 공격하였다고 되어 있어,⁴⁷⁾ 672년의 공세와는 달리 상당히 방어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삼국사기』 672년 기사에는 장수와 병력이 고간 1만 명과 이근행 3만 명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으며, 8營을 세워 주둔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⁴⁸⁾

신라본기, 문무왕 10년), 672년 9월 신라가 사죄사와 함께 당으로 송환할 때까지 신라에 억류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사이 풀려난 후 재차 포로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아무튼 禰軍은 665년 9월에 郭務儆과 함께 渡日한 적이 있으며(『日本書紀』 卷27, 天智 4年 9月), 당시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중요한 인물임에는 틀림없다. 이와 관련하여 李道學은 웅진도독부의 백제계 관료인 禰軍과 法聰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바 있다. 李道學, 1987, 「熊津都督府의 支配 조직과 對日本政策」, 『白山學報』 34 참조.

44) 한편 山東에서 출발한 선단이 황해도 장산곶을 거쳐 경기만을 渡海하는 과정에서 격파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강경구, 2007, 『신라의 북방 영토와 김유신』, 학연문화사, 302쪽), 이들 선단이 경기만에서 공격을 받았는지 백제고지에서 공격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목적지가 백제고지였다는 점은 확실하다.

45) 『資治通鑑』 卷202, 咸亨 2年, “秋七月乙未, 高侃破高麗餘衆於安市城.”

46) 평원이 넓게 펼쳐져 있고 의지할 지형지물이 없을 경우 中軍을 중심으로 하여 方營을 만들고, 지형지물이 있을 경우는 배후에 험지를 끼고 적방향으로 半圓形으로 만든다. 中國軍事史編寫組, 1991, 『中國軍事史』 第6卷(兵壘), 北京: 解放軍出版社, 172~173쪽.

47)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 “九月, 唐將軍高侃等, 率蕃兵四萬到平壤, 深溝高壘侵帶方.”

4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 “秋七月, 唐將高侃率兵一萬, 李謹行率兵

이를 종합해 볼 때 고간의 행군은 안시성의 고구려 부흥군을 진압 후 선발대로서 평양으로 먼저 이동하고, 이근행의 행군은 안시성 주변과 요동 일대의 잔존 세력에 대한 진압을 마무리지은 후 평양으로 이동한 느낌이 강하다.⁴⁹⁾

넷째, 673년에 이르러 고간·이근행의 행군병력 외에 거란병이 추가되는 시기이다. 673년부터는 당군과 말갈병 이외에 거란병이 추가되고 있는데,⁵⁰⁾ 이는 새로운 병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禰寔進墓誌銘」을 보면,⁵¹⁾ 백제의 좌평이었던 예식진은 672년 5월 산동의 萊州 黃縣에서 사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唐故朝散大夫雍州華原縣令楊府君墓誌銘」에 따르면,⁵²⁾ 화음현 출신 楊福延도 함형 3년(672)에 ‘雞林道行軍長史’에 임명되어 신라로 향했으나, 도중에 병이 들어 당으로 되돌아갔고 그해 11월에 사망했다고 한다.⁵³⁾ 또한 「賈隱及妻合祔墓誌」에 따르면,⁵⁴⁾ 낙양 출신 賈隱은 辰韓이 당의 명을 거스르자, ‘雞林道行軍兵曹’와 ‘檢校子營總管’에 임명되었

三萬，一時至平壤，作八營留屯。”

49) 672년 7월 이후 요동에서 고구려 부흥군의 움직임이 전혀 포착되지 않는 점과 672년 7월 당군이 ‘一時’에 평양에 이르렀다고 표현된 점으로 보아, 고간과 이근행의 행군 전원이 평양에 도착해 주둔한 시점은 672년 7월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즉 671년 9월은 당군의 선발대가 평양에 도착한 시점이며, 672년 7월은 전 행군이 평양에 도착한 시점으로 여겨진다.

5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3년 9월, “당의 군사가 말갈·거란 군사와 함께 북쪽 변경을 침범하였다”; 同書, 문무왕 15년 2월, “당의 군사가 거란·말갈 군사와 함께 침략해 온다는 말을 듣고 九軍을 내어 그것에 대비하였다”; 同書, 문무왕 13년 9월, “당의 군사가 거란·말갈 군사와 함께 와서 칠증성을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51) 金榮官, 2007, 「百濟遺民 禰寔進 墓誌 소개」, 『新羅史學報』 10 참조.

52) 吳鋼 主編, 2006, 『全唐文補遺』 千唐誌齋新藏專輯, 西安: 三秦出版社.

53) 「唐故朝散大夫雍州華原縣令楊府君墓誌銘」, “公諱福延, 字□□, 弘農華陰人也……咸亨三年, 有詔以公爲雞林道行軍長史. 過裝首路, 美疹彌留, 優詔追還, 俄纏大慚, 以其年十三日, 歸終於華陰縣之私第, 春秋六十有四”; 권덕영은 양복연이 고간·이근행 행군의 일원으로 신라 전선에 참여하였다고 지적한 바 있다(권덕영, 2008, 앞의 논문, 54~55쪽). 그러나 671년에 이미 설인귀의 계림도행군이 편성된 적이 있으며, 양복연은 고간·이근행의 연산도·동주도 행군명과는 다른 ‘雞林道行軍長史’에 임명되었으므로, 양복연을 고간·이근행 행군의 일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54) 吳鋼 主編, 2006, 앞의 책.

다고 한다.⁵⁵⁾ 이런 점에서 당이 672년에 산둥반도에 병력을 집결시켜 출병하려던 움직임은 확실히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⁵⁶⁾ 이들 병력이 673년에 실제 한반도로 추가투입되었던 것 같다. 따라서 672년의 石門 전투까지는 고간·이근행의 당군과 말갈병이 사서상에 나타나지만, 673년의 공세에는 말갈병 외에 거란을 비롯한 또 다른 병력이 추가되고 있다.

다섯째, 675년에 유인궤 주도로 편성된 鷄林道大行軍이 투입되는 시기이다. 674년 1월 유인궤는 계림도행군대총관에 임명된다. 행군대총관의 경우 행군총관들을 거느리게 되는데, 아마 유인궤는 고간·이근행·설인궤⁵⁷⁾ 등의 행군총관을 총괄하는 한반도 원정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674년 1월에 편성이 계획되어 이듬해 투입된 계림도행군의 목적은 '鷄林'의 정벌 즉 신라 본토 공격의 임무를 띠고 있었다. 통상 1개 行軍의 경우 수천~3만 명 정도로 편성되는데, 표준 행군인원은 2만 명이며 1개 행군의 장수는 행군총관으로 임명되고 복수의 행군을 거느리는 장수는 행군대총관으로 임명된다.⁵⁸⁾ 확인가능한 행군총관은 고간·이근행·설인궤 등이므로 3개의 행군병력과, 여기에 유인궤가 행군대총관으로서 이끌던 병력 수만을 더하면, 한반도 전선에 투입된 당군은 10만 명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⁵⁹⁾

55) 「賈隱及妻合祔墓誌」, “君諱隱, 洛陽人也……及辰韓逆命, 放資運策, 起家補鷄林道兵曹。又檢校子營總管”; 가은이 구체적으로 언제 신라 전선에 참여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림도행군은 671년에 설인궤가 한 번, 674년에 유인궤가 또 한 번 편성했으므로, 나당전쟁기간이었음은 확실하다 하겠다.

56) 拜根興, 2008, 「百濟와 唐 관계에 관련한 두 문제-웅진 도독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묘지명에 관하여」, 『百濟研究』 47, 71쪽 참조.

57) 제미슨은 설인궤의 한반도 전선 복귀시점을 671년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존 C. 제미슨, 1969, 「羅唐 同盟의 瓦解-韓中 記事 聚合의 比較」, 『歷史學報』 44, pp. 3~4), 高明士는 이 시기의 설인궤를 안동도호 겸 행군총관으로 보고 있다(高明士(金敬恩 역), 1999, 「隋唐 사신의 赴倭 및 그 禮儀 문제」, 『百濟研究』 30, 147쪽). 그런데 설인궤는 671년 이후에 또다시 한반도로 투입되어, 675년의 천성 전투와 676년의 기벌포 전투를 치른 후, 상주로 유배되는 형에 처해진다(李相勳, 2008a, 앞의 논문 참조).

58) 당의 행군대총관에 관해서는 孫繼民, 1995, 『唐代行軍制度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1995, 141~145쪽 참조.

59) 670년 편성된 고간·이근행은 동주도·연산도행군총관으로 병력이 4만 명이며,

정리하면 고간·이근행의 행군은 蕃兵 위주일 수 있으나, 이후 계림도행군을 비롯한 여러 부대들에는 당 본국의 주력병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 추가된 병력들은 어디에서 동원되었을까.

A-① 고장군(고간)의 漢騎와 이근행의 蕃兵, 吳·楚 지방의 水軍과 幽州·并州의 사나운 군사(惡少)가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 배를 나란히 하고 내려가, 험한 곳에 의지하여 요새를 쌓고 (왕의)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짓는다면, 이는 왕에게 있어서 고칠 수 없는 가슴속 깊은 병(膏肓)이 될 것입니다.⁶⁰⁾

A-② 11월 壬申에 改元하고 천하를 赦하였다. 庚寅에 이경현을 중서령으로 삼았다. 11월 戊午에 來恒을 하남도대사로, 薛元超를 하북도대사로, 상서좌승 언릉 사람 崔知悌·국자사업 鄭祖玄을 강남도대사로 삼아, 道를 나누어 순무하였다.⁶¹⁾

A-①은 671년 唐將 설인귀가 신라 문무왕에게 보낸 서신의 일부인데, 나당전쟁에 투입된 당군의 병력 구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고간·이근행이 이끄는 병력과 함대를 보유한 오·초 지방의 수군 그리고 유주·병주의 추가 병력으로 한반도 원정군이 구성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⁶²⁾

이와 관련하여 당은 나당전쟁이 종료되는 시점인 676년 11월에 改元 및 大赦를 실시하고, 다음 달인 12월에 내항·설원초·최지제 등을 河南道·河北

671년 투입된 설인귀는 계림도행군총관으로 정확한 병력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2만 명 정도를 거느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674년에 편성된 유인귀는 행군총관이 아니라 행군대총관으로서, 다수의 행군을 거느렸으므로 최소 4만 명 이상의 병력을 인솔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나당전쟁에 투입된 당군의 규모는 최소 10만 명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산해 볼 수 있다. 李相勳, 2007,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103쪽.

60)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1년(671), 「薛仁貴書」.

61) 『自治通鑑』 卷202, 唐紀18, 儀鳳元年, “十一月壬申, 改元, 赦天下. 庚寅, 以李敬玄爲中書令. 十二月戊午, 以來恒爲河南道大使, 薛元超爲河北道大使, 尚書左丞鄴陵崔知悌國子司業鄭祖玄爲江南道大使, 分道巡撫.”

62) 李相勳, 2007, 앞의 논문, 102쪽.

道와 江南道로 보내 민심을 수습케 하고 있다(A-②). 676년 12월 자연재해나 반란 등 별다른 이변이 없던 하남·하북·강남도에 재상급 인사로 하여금 돌연 巡撫케 하고 있는 것이다. 재상급 인사들로 여러 곳을 동시에 순무하는 것은 당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이 시기는 676년 윤3월 토번의 대규모 당 內地 침입 후⁶³⁾ 8월에 또다시 토번의 침입이 있던 시기였으므로,⁶⁴⁾ 하남·하북·강남도보다는 직접 피해를 입은 隴右道와 劍南道를 순무해야 자연스러울 것이다. 물론 토번에 대처하기 위해 하남·하북·강남도의 병력을 동원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듬해 토번전에는 關內道와 河東道 병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⁶⁵⁾ 이와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A-①에 나타나듯이 나당전쟁 당시 한반도에 투입되었던 당군은 당·말갈·거란의 혼성군이었다. 고간·이근행의 병력과 유주·병주의 병력은 주로 하북도에서 충원되었고, 오·초의 수군은 강남도에서 동원되었으며, 이들의 수송과 군수물자를 담당한 곳은 산둥 일대 즉 하남도였다. 이러한 3道는 A-②에서 당이 676년 12월에 실시한 순무지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설인귀서」에서 언급한 병력동원이 하남·하북·강남도에서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 피해가 상당했음을 시사한다.⁶⁶⁾ 그렇다고 한다면 675년 9월 매소성에 주둔하고 있던 대규모의 당군은 중국 동부지역에서 투입된 혼성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나당전쟁에는 변병은 물론이거니와 당군의 주력이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63) 『舊唐書』卷5, 高宗本紀, 上元 3年, “閏(3)月……吐蕃入寇鄯廊河芳等州……洛州牧周王顯爲洮州道行軍元帥, 領工部尚書劉審禮等十二摠管, 并州都督相王輪爲涼州道行軍元帥, 領左衛大將軍契苾何力等軍, 以討吐蕃. 二王竟不行.”

64) 『自治通鑑』卷202, 儀鳳元年, “秋八月, 乙未, 吐蕃寇疊州.”

65) 『舊唐書』卷5, 高宗本紀(下), 儀鳳 2年, “十二月, 乙卯, 勅關內, 河東諸州召募勇敢, 以討吐蕃.”

66) 이에 대해서는 李相勳, 2008b, 「羅唐戰爭期 唐의 兵力 運用과 前後 收拾策」, 『中國史研究』55, 65~71쪽 참조.

2_ 말갈의 兵種과 이근행의 위상

670년 4월에 편성된 고간·이근행의 행군이 한반도로 남하하면서, 670년대 초반 황해도 일대에서 신라군과의 격전이 벌어진다. 특히 672년 石門 전투로 인해 신라는 전술의 변화가 발생하는데, 이 시기 이후 공세에서 수세로 전환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석문 전투와 이와 관련된 기병에 관해 본격적으로 검토한 서영교는 말갈병을 주력으로 하는 유목기병의 대거 출현으로 신라군은 야전에서 실패하고, 요충지 방어 위주로 전략이 변화하였다고 한다.⁶⁷⁾ 그리고 보병 위주의 당군과 기병 위주의 말갈이 합쳐진 蕃漢 혼성군의 위력은 대단하여, 陣法을 훈련받은 漢人과 기마술에 뛰어난 蕃人이 절묘하게 결합된 막강한 당군을 신라가 정규전에서 당해낼 수 없으며, 평지에서 정면대결할 경우 승산이 없다고 한다. 또한 산성을 중심으로 벌어진 산악전에 익숙한 신라로서는 당의 기병을 기병으로 대처하는 데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열세였음에 틀림없으며,⁶⁸⁾ 이에 신라는 황해도·경기도 평야지대에 대규모로 출현한 당·말갈 기병을 막아내기 위해 장창보병⁶⁹⁾을 조직했다고 보고 있다.⁷⁰⁾ 정리하면 나당전쟁기에 신라군이 싸웠던 실질적인 대상은 당군이라기보다 당에 이끌려 온 말갈·거란병이며, 이들 대부분은 말갈 기병이라는 것이다.⁷¹⁾

석문 전투 이후 수성전·소규모 전투 위주로 전투양상이 바뀌고 있고, 석문 전투로 인해 신라의 전략전술이 전체적으로 볼 때 수세로 전환되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나당전쟁기에 나당 간에 벌어진 전투양상을 보면, 과연 신라

67) 徐榮教, 2002b, 「나당전쟁기 石門전투」, 『東國史學』 38; 徐榮教, 2006a, 앞의 책.

68) 徐榮教, 2000b, 「新羅 河西停 軍官組織에 대하여 - 6~7세기를 중심으로」, 『新羅文化』 17·18, 118쪽.

69) 徐榮教, 1998, 「新羅 長槍幢에 대한 新考察」, 『慶州史學』 17; 徐榮教, 2010, 「新羅 黑衣長槍末步幢」, 『軍史』 74.

70) 徐榮教, 2001, 「新羅 白衿摺幢에 대하여」, 『慶州史學』 20, 99쪽.

71) 안국승도 673년부터의 당군 편성은 말갈병이 주력으로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병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安國承, 1997, 앞의 논문, 267쪽.

군이 당군과의 전투에 절대적인 열세였는지, 당군의 주력을 말갈 기병으로밖에 볼 수 없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제 대규모 유목기병의 쇠도가 신라의 전술 변화의 동인이 되었는지와 한반도로 투입된 당군의 주력이 말갈 기병이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B-① 3월에 사찬 薛烏儒가 고구려 태대형 高延武와 함께 각기 정예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압록강을 건너 屋骨△△△에 이르렀는데, 말갈 병들이 먼저 狹敦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름 4월 4일에 마주 싸워 우리 군사가 크게 이겨, 목베어 죽인 숫자를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었다. 당군이 계속 이르렀으므로, 우리 군사는 물러나 白城에서 지켰다.⁷²⁾

B-② 8월에 당군이 한시성과 마음성을 공격하여 이기고, 군사를 白水城으로부터 500보쯤 떨어진 곳까지 전진시켜 군영을 설치하였다. 우리 군사와 고구려 군사가 맞아 싸워 수천 명을 목베었다. 고간 등이 후퇴하자 石門까지 뒤쫓아가 싸웠는데, 우리 군사가 패하여 대아찬 효천, 사찬 의문·산세, 아찬 농신·두선, 일길찬 안나함·양신 등이 죽었다.⁷³⁾

B-①은 670년 3월에 설오유·고연무의 2만 연합군이 압록강을 건너 요동으로 선제공격한 내용이다. 2만 연합군이 4월에 마주 싸운 당군은 말갈병이며, 이 오골성 전투에서 말갈병은 상당한 타격을 입은 듯하다. 이후 당군이 지속적으로 충원되자, 연합군은 물러나 白城을 지키게 된다. 오골성 전투에서 신라군이 말갈병과 직접 전투를 벌여 승리를 거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B-②는 672년 석문 전투가 발생하기 직전 백수성 인근에서 신라·고구려유민 연합군이 당군과 마주 싸운 내용이다. 백수성 인근 전투에 투입된 당군은 고간·이근행의 행군병력이며, 말갈병이 주력이다. 이 전투는 城戰이 아니라 野戰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도 신라군은 승리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승리 이후 신라군은

72) 『삼국사기』 권6, 신라본기, 문무왕 10년.

73)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2년.

석문 전투에서 당군에게 패배하게 된다. 석문 전투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다음의 사료를 보자.

C-① 당군이 말갈병과 함께 石門 들에 주둔하니, 왕이 장군 의복·춘장 등을 보내 방어케 하였는데, (이들은) 帶方의 들에 군영을 설치하였다. ② 이때 장창당만이 따로 주둔하다가 당나라 군사 3,000여 명을 만나 그들을 잡아서 대장군의 진영으로 보냈다. 이에 여러 幢에서 함께 말하기를 “장창당이 홀로 진을 쳤다가 성공하였으니 반드시 후한 상을 얻을 것이다. 우리들이 모여 있는 것은 한갓 수고로울 뿐이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각각 자기 군대를 갈라 분산하였다. ③ 당군이 말갈병과 함께 (우리 군사들이) 미처 진을 치지 아니한 틈을 타서 공격하니 우리 군사가 크게 패하여 장군 효천과 의문 등이 죽었다. ④ 유신의 아들 원술이 裨將이었는데 또한 싸워 죽으려고 하므로, 그를 보좌하는 담릉이 말리며……그만 죽지 못하고, 上將軍을 따라 蕪荑嶺으로 나오니 당군이 뒤를 추격하였다.⁷⁴⁾

C는 석문 전투의 진행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앞서 백수성 인근 전투에서 승리한 신라군은 당군을 추격하였고, 당군은 석문 들에 주둔하였다(C-①). 그런데 진영을 달리하고 있던 장창당이 당군 3,000명을 포로로 잡아, 그 외부대들은 그 공을 시기하여 진영을 분산하였다(C-②). 그 틈을 타 당군과 말갈병이 공격하였고, 신라군은 대패하기에 이른다(C-③). 즉 석문 전투의 패배 원인은 당군과 말갈병의 파상공격에 따른 외부요인이 아니라, 신라군 내부의 공명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B와 C 사료를 통해 볼 때, 신라군이 말갈병을 비롯한 당군과의 접전에서 결코 약한 것이 아니었으며, 야전 즉 평지전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점을 잘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록 석문 전투에서 신라군이 막대한 전력 손실을 입고, 전략과 전술이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신라군이 당군과의 정규전 혹은 정면전투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견해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74) 『삼국사기』 권43, 김유신전(하).

그리고 『삼국사기』는 당의 공격주체를 당·말갈·거란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석문 전투에서 패배한 신라군을 추격하는 것은 ‘말갈병’이 아니라 ‘당군’이다(C-③). 말갈병의 주력이 기병이라면, ‘보병’ 위주의 당군이 아니라 ‘기병’ 위주의 말갈병이 추격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이는 「설인귀서」에 고간의 ‘漢騎’와 이근행의 ‘蕃兵’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⁷⁵⁾ 당군의 주력은 기병이며 번병은 오히려 보병적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료를 살펴보자.

D-① 왕이 대이찬 徹川 등을 보내 병선 100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지키게 하였다. 당군이 말갈·거란병과 함께 북쪽 변경을 침범하여 왔는데, 무릇 9번 싸워 우리 군사가 이겨 2,000여 명을 목베었고, 당군 중 瓠瀘(임진강)와 王逢(한강) 두 강에 빠져 죽은 자는 이루 셀 수 없었다. 겨울에 당군이 고구려의 牛峇城을 공격하여 항복시켰고, 거란·말갈병은 大楊城과 童子城을 공격하여 멸하였다.⁷⁶⁾

D-② 상원 2년(675) 2월에 유인귀는 그 무리(신라)를 칠중성에서 깨트리고, 말갈병으로 하여금 바다로 나아가 (신라의) 南境을 경략하게 하여, 목베고 포로로 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⁷⁷⁾

D-③ 말갈이 아달성에 침입하여 노략질을 하자 성주 소나가 맞아 싸우다 죽었다. 말갈이 또 적목성을 에워싸 멸하였다.⁷⁸⁾

D-①은 673년 당군의 공세를 전하는 내용이다. 이케우치 히로시는 673년 9월 당의 공세에 앞서 철천이 수군을 이끌고 서해로 진수하였고, 이후 신라군과 당군의 전투가 임진강과 한강 하류 일대에서 이루어진 점을 통해, 이때의 말갈·거란병을 수군으로 파악한 바 있다.⁷⁹⁾ 일반적으로 호로하는 임진강에,

75) III장의 사료 A-① 참조.

76)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3년.

77) 『新唐書』 卷220, 東夷 新羅傳, “上元二年二月, 仁軌破其眾於七重城, 以靺鞨兵浮海略南境, 斬獲甚眾.”

78)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5년.

79) 池内宏, 1960a, 앞의 논문, 473쪽.

왕봉하는 한강에 비정되는데, 강을 도하하거나 하류를 통해 상륙하는 데 당 수군의 협조가 뒷받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⁸⁰⁾ 그리고 호로·왕봉하 전투 이후 말갈병이 동자성(경기 김포)을 함락시키는데, 동자성은 한강 하류에 위치하기 때문에 도보로 도하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므로 상륙전이 감행되었을 것이다.

아울러 675년 2월에 유인궤는 칠중성 전투 후에 말갈병으로 하여금 ‘바다로 나아가(浮海)’ 신라의 南境을 공격케 하였다(D-②). 남쪽 경계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전선이 임진강선에 형성된 점을 감안해 보면 한강 하류 일대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다를 통해 공격한 것으로 보아, 이는 말갈병의 상륙전임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말갈병이 나당전쟁기에 적지 않은 상륙전을 감행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⁸¹⁾ 물론 기병이 상륙전을 수행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나 적지에 상륙을 감행하고 성전을 수행하기에는 지형적인 특성상 기병보다 보병이 유리하다.

이후에도 말갈병은 아달성·적목성을 공격하였는데(D-③), 이 말갈을 당군의 공세와 무관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⁸²⁾ 그러나 이 말갈병의 공세는 광주산맥 이북 지역을 장악하려는 당군의 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⁸³⁾ 이 지역은 강원도 내륙으로 말갈병의 주력이 기병이라면 기동하기가 곤란하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城戰이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말갈병의 兵種이 기병 위주가 아니었음을 방증하는 사례 중에 하나라고 판단된다. 물론 나당전쟁기에 투입된 말갈병은 기병과 보병이 모두 존재하였겠지만, D와 같은

80) 제해권 없이 소부대의 기습상륙은 일시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으나 대규모의 상륙 작전은 성공하기 어려우므로(李鐘學, 1995, 「廣開土大王碑文과 海上上陸作戰」, 『海洋戰略』 87, 21쪽), 이 시기 적지 않은 당 수군이 동원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81) 중국 육군의 分進合擊 전술은 지리적인 조건이 허락할 때 수군과의 연합작전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시켰으며, 한반도 침입은 대체로 수륙군 합동으로 분진합격 전술이 반복 사용되었다. 張學根, 1999, 「隋·唐의 海上侵略과 高句麗의 對應策」, 『STRATEGY 21』 2-2, 32쪽.

82) 閔德植, 1989, 앞의 논문, 352쪽.

83) 李相勳, 2007, 앞의 논문, 24~26쪽.

사례에서 볼 때 말갈병을 단순히 기병 위주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말갈은 유목세력 하에 있던 部가 있는 반면 흑수말갈처럼 보병전에 뛰어난 部도 있었으며,⁸⁴⁾ 실제 여러 곳에 흩어져 거주하였다.⁸⁵⁾

따라서 나당전쟁기에 당군에게 부용되어온 말갈병에 대해서는 보다 심화된 검토가 필요하다. 말갈은 여러 部로 나누어 있었으며, 이들이 수행한 전투 유형을 통해 보았을 때, 단순히 기병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곤란하다. 아울러 이러한 유목기병을 비롯한 당군에 대해 신라군이 반드시 약하지도 않았으며,⁸⁶⁾ 오히려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앞서 살펴보았듯이 당군은 중국 동부지역에서 동원된 혼성군이었으며, 674년에는 유인궤의 계림도대행군이 편성되어, 주로 성전을 수행하며 상륙전도 감행하였다.⁸⁷⁾ 이러한 한반도 주둔군을 유인궤 귀국 후, 이근행이 대신하여 이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간·이근행의 행군병력 외에 여러 兵員으로 구성되어, 성전 위주로 전투를 수행하던 당군을 말갈족 출신 이근행이 인솔하게 되었다고 해서, 말갈 기병이 주력이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한편 이근행은 말갈족 출신이므로, 말갈족을 대표하는 ‘蕃將’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일면 자연스럽다. 이를 바탕으로 나당전쟁에 투입되었던 말갈병이 말갈족 출신 이근행을 따라 토번 전선으로 이동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되기

84) 서영교, 2006b, 「羅唐戰爭期 唐邊方軍의 來襲과 李謹行」, 『東國史學』 42, 28쪽.

85) 말갈의 거주지에 관한 최근 연구는 金樂起, 2010, 「6~7세기 靺鞨 諸部의 내부 구성과 거주지」, 『고구려발해연구』 36이 있으며, 말갈 7부에 관한 연구는 신석열, 2010, 「중국정사의 말갈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고구려발해연구』 37이 참고가 되며, 말갈 전반에 관한 연구성과로는 조이욱, 2010, 「한국고대사의 주변: 말갈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濇知論叢』 24를 참조.

86) 허중권은 673년 9월까지 성전의 비중이 낮은 것은 당이 신라의 전투력을 과소평가하여 전장을 성 이외에서 구했던 것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許重權, 1995, 「新羅統一戰爭史의 軍事學의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5~206쪽.

87) Ⅲ장의 <표 1>을 참조해서 보면, 673년 9월까지의 야전과 성전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부터는 기벌포 전투를 제외하고 모두 성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 671년 설구성·석성 전투는 수군의 협조를 받아 말갈병과 당군이 백제고지로 투입된 상황이며, 675년 천성 전투는 경기만에 인접한 성을 직접 상륙하여 공격한 전투이다.

도 하였다.⁸⁸⁾ 그러나 여기에는 이근행의 장수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맹점이 있다. 즉 이근행이 말갈족 출신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갈 번장으로 인식하고, 번장이 이동하였으니 그를 따르는 대부분의 병력들이 같이 이동하였다는 이해방식이다. 만약 이근행이 말갈의 번장이 아니라면 그를 따르는 병력 규모가 크지 않을 것이며, 나아가 말갈병 주력이 이근행을 따라 토번 전선으로 이동하였다는 것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근행의 장수로서의 성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다니구치 데쓰야[谷口哲也]는 680년을 전후하여 각 부락의 번병을 이끌고 行軍에 참여하던 ‘부족장 타입’의 번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 바 있다.⁸⁹⁾ 馬馳는 번장을 당에 귀부해서 활동하던 ‘在地蕃將’과 현지에 남아서 당에 협력한 ‘在蕃蕃將’으로 구분하였다.⁹⁰⁾ 한편 章羣은 당에 귀부해 활동하던 번장을 구분하여 ‘客將’이라 하고, 객장은 이미 당의 행정체계에 흡수되어 행군 편성시에는 원래의 부족과 무관하다고 보고 있다.⁹¹⁾

이근행의 家僮이 수천 명에 이르고 그 妻도 전투에 참여하였으며⁹²⁾ 나당전쟁시 직접 말갈병을 이끌었지만, 그를 말갈부족의 尊帥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章羣은 621년 말갈존수 돌지계가 內附하여 당 고조의 정벌전에 투입되었지만, 나당전쟁에 투입된 그의 아들 이근행은 실제상 객장이라고 한다.⁹³⁾ 즉 이근행이 말갈족을 대표하는 존수로서의 경향성이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직접 귀부한 돌지계와는 다른 것이다. 존수는 번장이 되어 부락병을 이끌고 전투에 참여하였는데, 이러한 번장들은 중국 문화에 동화되어 상당수가 漢化되었

88) 대표적인 견해로 서영교, 2006a, 『羅唐戰爭史 研究』와 拜根興, 2003a,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이다.

89) 谷口哲也, 1978, 「唐代前半期蕃將」, 『史朋』 9; 金浩東, 1993,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58쪽 참조.

90) 馬馳, 1990, 『唐代蕃將』, 西安: 三秦出版社.

91) 章羣, 1986, 『唐代蕃將研究』,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92) 『資治通鑑』 卷202, 咸亨 4年(673), “閏五月……燕山道總管右領軍大將軍李謹行大破高麗叛者於瓠蘆河之西,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時謹行妻劉氏留伐奴城, 高麗引鞬鞞攻之, 劉氏擐甲帥衆守成.”

93) 章羣, 1986, 앞의 책, 235쪽.

다. 특히 河北을 중심으로 많은 한화가 이루어졌으며, 당 세력의 확대와 더불어 이들의 行軍 내로의 편입도 증가하였다.⁹⁴⁾ 변장의 한화는 거주지와 葬地의 京師化, 민족의식과 심리상태의 한화, 성명의 한화 등으로 나타난다.⁹⁵⁾ 돌지계는 이미 당 태종대에 ‘李’씨 성을 하사받았고, 이에 돌지계의 아들은 李謹行이다. 그리고 돌지계의 原籍地는 營州이나 新籍地는 幽州 昌平縣으로 변경되었다.⁹⁶⁾ 돌지계는 자기 휘하의 부족을 이끌고 유주로 이주하였는데, 영주가 한족과 동북민족이 혼재한 지역인 반면, 유주는 한족지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종합해 볼 때 이근행의 성과 거주지가 이미 한화되었던 점, 한반도 투입 전 영주도독을 역임했던 점, 사후 장안의 乾陵에 매장되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이근행은 당의 군사체계에 흡수된 客將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근행이 말갈족을 이끄는 蕃將으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말갈병이 나온다고 하여 그것을 이근행이 통수하였다고 단정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⁹⁷⁾

IV. 신라의 방어와 종전

신라는 675년 9월 매소성 전투에서 이근행이 이끄는 당의 大軍에게서 戰馬 3만여 필을 노획하고, 이후 18차례의 전투를 거쳐 6,000여 명을 목베는 전과를 거

94) 孫繼民, 1995, 앞의 책, 111~119쪽.

95) 馬馳, 1990, 앞의 책, 206~224쪽.

96) 『新唐書』 卷110, 李謹行傳, “李謹行, 靺鞨人. 父突地稽, 部尊長也. 隋末, 率其屬千餘內附, 居營州……劉黑闥叛, 突地稽身到定州, 上書秦王, 請節度, 以戰功封耆國公, 徙部居昌平……謹行偉容貌, 勇蓋軍中, 累遷營州都督, 家僮至數千, 以財自雄, 夷人畏之……上元三年, 破吐蕃于青海, 璽書勞勉, 封燕國公. 卒, 贈幽州都督, 陪葬乾陵.”

97) 이근행의 客將化에 관한 부분은 李相勳, 2007, 앞의 논문, 12~13쪽에서 상당 부분을 인용하였다.

둔다. 매소성 전투로 인해 당군의 공세는 저지되고, 신라는 나당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된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당군의 한반도 철수와 긴박한 서북(토번)의 정세를 분리시켜 보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고 한다.⁹⁸⁾ 즉 매소성 전투를 주도한 이근행이 676년 초 서북 변경에서 對토번전에 활약하고 있으므로, 시간상으로 볼 때 이근행은 매소성 전투가 발생한 675년 9월 말에 서북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매소성 전투에 대한 이해는 재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당군의 철수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나당전쟁의 종전에 대해 한반도 방기론자들은 그 핵심적인 근거로 말갈족 출신 이근행이 676년 토번 전선에 등장하는 점을 들고 있다. 나당전쟁에 투입된 당군의 주력은 말갈병이며, 이 말갈병을 이끌던 자가 바로 이근행이므로, 이근행의 토번 전선 투입은 한반도 방기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당전쟁에는 말갈병이 주력으로 투입되었다기보다, 중국 동부의 하북도·하남도·강남도의 병력이 투입되는 가운데 그 일부로서 말갈병이 속해 있었다. 그리고 이근행은 말갈족을 대표하는 蕃將이라기보다는 당의 행정 체계에 흡수된 客將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근행이 토번으로 이동했다고 하여 말갈병 다수가 그를 따라 이동했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근행이 676년 어느 시점에 토번 전선으로 투입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① 아들 근행은 용모가 빼어나고 무력이 뛰어났다. 인덕연간(664~666)에 영주도독을 역임하였고 그 부락 家童이 수천 명이었으며 재력이 풍부하여 夷人들이 꺼려하였다. ② 여러 차례 우령군대장군에 제수되었으며 積石道경략대사가 되었다. 토번의 論欽陵 등이 무리 10만 명을 이끌고 湟中으로 침입하자, 근행의 병사들은 떨나무를 모으며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 적이 이른 것을 듣고서 마침내 기를 세우고 북을 치며 문을 열고 그들을 기다렸다. 토번은 북병이 있을까 의심하여 결국

98) 拜根興, 2002, 「“羅唐戰爭” 研究 中の 몇 가지 問題」, 『中國學報』 16; 拜根興, 2003b, 앞의 논문; 拜根興, 2010, 앞의 논문.

감히 나아가지 못하였다. ③ 상원 3년(676)에 또 토번의 수만 무리를 靑海에서 깨트렸다.⁹⁹⁾

E에 나타나는 積石·湟中·靑海는 모두 당의 서북 변경을 나타내는 말로서, 이근행이 토번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E-②와 E-③의 시기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이근행이 E-②에 보이는 積石道經略大使¹⁰⁰⁾에 上元年間(674~676)에 임명되었다면, E-③에 ‘上元三年’에 ‘又’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근행은 상원 2년(675)에 이미 安東鎮撫大使에 임명되어 있었기 때문이다.¹⁰¹⁾ 또한 E-②와 E-③이 상원연간에 발생한 것이라면 E-②에 ‘上元年間’이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E-③의 ‘上元三年’은 생략해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②와 E-③은 다른 연간에 발생했던 사건임을 알 수 있으며, 이근행은 상원연간 이전에 적석도경략대사에 임명되었고, 상원 2년(675)에 安東鎮撫大使에 제수되었다가 상원 3년(676)에 다시 토번 전선으로 가게 된 것이다.

한반도 방기론자들은 이근행이 토번 전선으로 투입된 시기를 676년 윤3월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676년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기록이 F이다.

F-① 윤(3)월 토번이 鄯州·廊州·河州·芳州 등을 침입하였다. 조칙으로 左監門衛中郎將 令狐智通으로 하여금 興州·鳳州 등의 군대

99) 『舊唐書』卷199, 靺鞨傳, “子謹行, 偉貌, 武力絕人. 麟德中, 歷遷營州都督. 其部落家僮數千人, 以財力雄邊, 爲夷人所憚. 累拜右領軍大將軍, 爲積石道經略大使. 吐蕃論欽陵等率眾十萬人入寇湟中, 謹行兵士樵採, 素不設備, 忽聞賊至, 遂建旗伐鼓, 開門以待之. 吐蕃疑有伏兵, 竟不敢進. 上元三年, 又破吐蕃數萬眾於靑海.”

100) 이와 관련하여 정관 9년(635) 후군집이 적석도행군총관으로 임명된 적이 있으나 시기적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근행은 670년 연산도행군총관으로 임명되어, 675년 안동진무대사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한반도 전선에 있었으므로, 이근행이 적석도경략대사에 임명된 시기는 660년대 후반이 아닐까 추정된다.

101)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 문무왕 15년 2월 참조. 이와 관련하여 배근홍은 ‘鷄林道經略使’의 印章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며, 이근행은 675년에 계림도경략사가 되어 鎮撫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拜根興, 2010, 앞의 논문, 80~82쪽.

를 일으켜 토번을 방어토록 하였다.……② 洛州牧 周王 顯을 洮州道行軍元帥로 삼아 工部尙書 劉審禮 등 12총관을 거느리게 하고, 并州 都督 相王 輪을 涼州道行軍元帥로 삼아 將左衛大將軍 契苾何力 등을 거느리게 하여, 토번을 토벌케 하였다. 두 왕 모두 행군하지 않았다. ③ 가을 8월……토번이 疊州를 침입하였다.¹⁰²⁾

676년 윤3월 당은 토번의 공세에 대해 2王을 행군원수로 임명하여 대원정군 편성을 계획한다. Twitchett는 676년 대원정군의 편성을, 토번왕 만손만첸의 죽음으로 인해 그 계승문제를 둘러싼 내란이 발생하자, 당 고종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토번을 공격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⁰³⁾ 서영교도 이에 동조하며, 만손만첸이 사망하기 1년 전(675)부터 시작된 궁정내부의 권력암투, 羊同의 반란 등은 당 고종의 입장에서는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¹⁰⁴⁾ 그리고 676년 윤3월 당이 토번의 내분을 이용하여 총반격을 가하는데, 한반도에 있던 말갈병 주력을 동원했던 것이 확실하며,¹⁰⁵⁾ 이들의 이동시기는 바로 매소성 전투가 발생한 675년 9월이라고 한다.

이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토번의 내분을 이용해 당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대원정군을 편성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말갈병 주력이 토번 전선으로 이동하였으며, 한반도에 투입되었던 말갈병이 676년 윤3월 토번 전선에 도착하려면 최소 수개월은 소요되므로, 675년 9월경에는 이동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675년 9월에 발생한 매소성 전투는 이동하는 당군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신라군 사이에 벌어진 철수전이며,

102) 『資治通鑑』 卷202, 儀鳳 元年(676), “閏月, 吐蕃寇鄯廊河芳等州, 敕左監門衛中郎將令狐智通發興鳳等州兵以禦之……以洛州牧周王顯爲洮州道行軍元帥, 將工部尙書劉審禮等十二摠管, 并州大都督相王輪爲涼州道行軍元帥, 將左衛大將軍契苾何力等, 以討吐蕃, 二王皆不行……秋八月……吐蕃寇疊州.”

103)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1979, 앞의 논문, p. 286.

104) 서영교, 2006a, 앞의 책, 101쪽.

105) 徐榮教, 2002a, 앞의 논문, 20~22쪽.

신라가 상대한 것은 당의 주력이 아니라 後軍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⁰⁶⁾

먼저, 매소성 전투를 철수전이라고 보는 견해를 검토해 보자. 철수작전은 최소한의 병력으로 최적의 장소에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켜 최대한의 병력을 보존하여 최단시간 내에 후방으로 보내는 작전이다.¹⁰⁷⁾ 이 철수작전에 입각해 당군의 철수를 본다면 당군의 철수작전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력 병력을 이용하여 가장 중요한 성인 칠중성과 석현성을 공격하였고, 또 철수 방향과는 거리가 먼 아달성·적목성 방향(강원도)으로 병력을 분파하였으며, 18번에 걸친 접전으로 6,000명 이상의 병력 손실을 입었던 것이다. 즉 주력 병력과 분견대의 운용에 실패했고, 철수시간을 지체하여 막대한 병력 손실을 입은 점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매소성 전투는 전략이 전환되어 당군이 철수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¹⁰⁸⁾

다음으로, 당이 토번의 내분을 이용하여 대규모 공세를 취하기 위해 한반도 주둔군을 이동시켰다는 견해를 검토해 보자. 분명 당은 676년 윤3월 왕 2명을 행군원수로 삼아 토번에 대한 대행군을 편성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일환으로 한반도 주둔군이 이근행을 따라 토번 전선으로 이동하였다고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과연 당군이 토번에 대한 공격을 사전에 계획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 당이 사전에 공격을 계획했다고 한다면, 675년 9월에 이근행이 한반도에서 철수하여 676년 윤3월에 토번 전선으로 투입되는 상황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의 사전 공격 계획이 없었다고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즉 사전 공격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한반도 주

106) 배근홍은 토번 세력의 동침으로 당 서북 변경지역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자, 당 조정은 급박한 정세 하에 멀리 한반도에 있는 당군을 서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이근행이 이끈 말갈족 위주의 당군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매소성에 주둔하고 있던 당군은 전략을 바꿀 수밖에 없었으며, 매소성 전투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후퇴하려는 당군과 퇴로를 차단하려는 신라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라고 보는 게 마땅하다고 한다. 拜根興, 2010, 앞의 논문, 85쪽.

107) 철수 작전은 주력 부대의 후방 이동을 위하여 야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하며, 손실을 최소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金光石 편, 1998, 『用兵術語研究』, 兵學社, 628~629쪽 참조.

108) 李相勳, 2007, 앞의 논문, 117쪽.

둔군 사령관(이근행)이 임의대로 병력을 이동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F-①을 보면 토번이 서북변경을 침입하자, 대원정군을 편성하기에 앞서 영호지통으로 하여금 먼저 나아가 수비하도록 하고 있다. 즉 당이 토번에 대해 공세를 취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번의 침입을 받아 일단 방어한 후 다시 공세를 위해 대규모 원정군을 편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⁹⁾ 그리고 F-②에 나타나는 상왕 윤이 임명되어 있던 并州는 당의 10道 가운데 하북도에 속한다. 이 并州는 『삼국사기』의 「설인귀서」에 나타나듯이,¹¹⁰⁾ 나당전쟁기 신라 전선에 병력을 투입시키던 곳이다. 상왕 윤이 676년 윤3월 이전까지 병주도독으로서 나당전쟁에 관여된 임무를 수행하다가, 이 시기에 이르러 토번 전선으로 이동하게 되었음을 추지할 수 있다. 즉 상왕 윤이 동북전선에서 서북전선으로 이동한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당의 군사전략의 중심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당의 군사전략 중심이 동북에서 서북으로 전환되는 시기는 구체적으로 676년 윤3월 이후이다. 이때 토번의 당 內地 공격으로 인해 감목장 상실 · 교통로 단절 · 군사력 약화는 물론 수도 장안까지 위협에 노출되자, 당은 군사전략을 바꾸었던 것이다.¹¹¹⁾ 그러므로 나당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매소성 전투가 발생한 675년 9월은 당이 공세를 지속하던 시기에 해당한다.¹¹²⁾ 따라서 매소성 전투가 발생한 675년 9월은 당이 철수를 하고 있던 상황이 아니었으며, 당이 토번을 공격하기 위해 사전에 한반도 주둔군을 이동시켰다고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이근행이 토번 전선으로 이동하게 된 시기는 언제일까. 676년 윤 3월에 당의 군사전략이 변화되어 대행군이 편성되므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 시기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주왕 현에게 12총관이 배속되었고, 상왕

109) 이상훈, 2006, 앞의 논문, 353~354쪽.

110) Ⅲ장의 사료 A-① 참조.

111)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이상훈, 2006, 앞의 논문 참조.

112) 중국 하남성 石窟寺의 石刻에는 “不可思議(宜)清信女王婆爲兒宋元慶東行, 願得平安, 敬造觀音一驅了, 上元三年三月日”이라는 佛像題記가 있는데, 상원 3년(676) 3월에 당군이 아직 한반도에 참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拜根興, 2002, 앞의 논문, 255쪽의 주 29.

윤에게 제필하력 등의 장수들이 배속된 것으로 볼 때, 한반도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이근행은 상왕 윤의 양주도행군에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676년 윤3월 이후 토변을 공격하기 위한 당의 대행군 편성계획이 하달되고, 이에 매소성 전투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한반도 주둔군도 철수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근행이 토변 전선에서 활약하게 되는 시기는 676년 상반기를 지난 하반기 무렵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근행을 따라 어느 정도의 병력이 토변 전선으로 투입되었는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근행이 서역으로 이끌고 간 당 변방군은 적어도 토변군을 상대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¹¹³⁾ 이때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던 상당수의 병력도 서역으로 이동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¹⁴⁾ 이를 검토하기 위해 668년 고구려 멸망 후 안동도호에 제수되었던 설인귀가 670년 4월에 토변 전선으로 투입될 때, 이에 따른 안동도호부의 병력이동에 대해 확인해 보자.

설인귀의 邏娑道行軍은 670년 4월에 편성되어, 3개월 후인 7월에 대비천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¹¹⁵⁾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사료 B-①을 다시 보면, 오골성 전투는 670년 3~4월에 발생하였으며, 여기에 투입된 나·려 연합군은 2만 명이다. 당의 안동도호부의 주둔 인원이 2만 명임을 감안하면, 신라가 그에 상응하는 병력을 요동으로 파견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한반도 주둔 병력들이 대부분 설인귀를 따라 토변 전선에 투입되었다면, 초전에서 승리했던 나·려 연합군이 당군의 물량공세에 밀려 물러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압록강을 도하한 2만 명이 오래지 않아, 당군의 계속된 투입으로 인해 白城으로 밀려나는 점에서, 당군은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주둔하고 있던 병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668년 고구려 멸망 이후 주둔하던 2만 명의 일부로

113) 서영교, 2006a, 앞의 책, 288쪽.

114) 서영교, 2006a, 앞의 책, 『羅唐戰爭史 研究』, 95쪽.

115) 『舊唐書』卷5, 高宗本紀5, 總章 3年(670), “夏四月, 吐蕃寇陷白州等十八州, 又與于闐合衆襲龜茲撥換城, 陷之. 罷安西四鎮……以右威衛大將軍薛仁貴爲邏娑道行軍大總管, 右衛員外大將軍阿史那道真, 左衛將軍郭待封爲副, 領兵五萬以擊吐蕃.”

서, 669년 신성으로 이동된 안동도호부를 중심으로 요동에 주둔하던 병력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670년 4월 설인귀를 따라 토번 전선으로 투입된 안동도호부의 주둔 병력은 그리 많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¹⁶⁾ 설인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미 객장화되었던 이근행의 토번 전선 투입상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즉 장수가 전선을 이동할 때, 이전에 배속되었던 병력은 대부분이 장수를 따라 이동하지 않았으며, 일부 주둔 병력을 제외하고는 당으로 귀국하여 해체되는 수순을 밟았을 것이다.

한편 당에 귀부하여 고·당 전쟁에 동원된 蕃將은 14개의 부류가 있으며,¹¹⁷⁾ 당 전체적으로 볼 때는 대체로 18개의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¹¹⁸⁾ 이러한 10여 부류 가운데 나당전쟁에 동원된 부족은 말갈과 거란 단 2부족이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방의 대표적인 유목세력인 돌궐·철륵·사타·회흘 등은 고·당 전쟁에는 동원되었지만, 나당전쟁에는 투입되지 않았다. 당은 기본적으로 전쟁지역과 가까운 변병을 동원하는데, 나당전쟁에는 신라와 가까운 중국 동부의 하남도·하북도·강남도의 병력을 위주로 운용하였다. 다시 말해 당의 동북방에 위치한 말갈·거란만 나당전쟁에 투입되고, 서북방의 변병들은 동원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북방의 말갈·거란이 서북방의 토번 전선으로 이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나당전쟁의 결정적 전투였던 매소성 전투가 일어난 675년 9월과 이근행이 토번 전선에 투입된 676년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이근행은 676년 토번 전선에 등장하지만, 그 시기는 당의 군사전략이 변화한 676년 윤3월 이후로 추정되며, 이미 객장화된 이근행을 따라 이동한 병력도 그리 많지 않았음을

116) 노태돈은 안동도호부의 2만 명이 모두 唐將 설인귀를 따라 서역으로 투입된 것이 아니며, 토번이 적어도 나당전쟁의 개진과는 구체적 관계가 없다고 하였다.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43쪽.

117) 고·당 전쟁에 투입된 蕃將에 관해서는 姜維東, 2003, 「唐羅戰爭中的蕃將」, 『長春師範大學院學報』 2002-3 참조.

118) 章羣, 1986, 앞의 책, 36쪽.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675년 9월에 발생한 매소성 전투는 당이 공세를 지속하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물론 당이 상대적으로 신라 전선보다 토번 전선을 중시했던 것은 인정된다. 당의 입장에서 토번의 군사적 위협은 신라와의 전투보다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행동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다. 매소성 전투에서 신라가 당에 대해 대승을 거두었고, 당군은 대패하였다고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당시 공세를 지속하던 최강대국 당을 지원세력도 없던 신라가 적극적으로 막아내며, 당의 한반도 지배 의도를 좌절시켰다는 점이 중요한 것이다.

675년 9월 매소성 전투 이후, 다음 해인 676년 2월에 평양에 있던 안동도 호부가 요동고성으로 옮겨지고, 웅진도독부가 다시 건안고성에 설치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¹¹⁹⁾ 이러한 동북의 정세 하에서 서북의 토번이 676년 윤3월에 대대적으로 당의 內地를 공격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당의 군사전략이 서북을 중심으로 전환되자, 676년 11월에 기벌포 전투¹²⁰⁾를 마지막으로 당군의 한반도에서의 활동은 중단되고 만다.

그런데 나당전쟁이 끝나고 오래지 않아 양국은 ‘宗藩’관계를 다시 수립했을 뿐만 아니라, 당과 주변 민족 국가의 종번관계에서 모범을 보이기도 했기 때문에, 나당 양국이 모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¹²¹⁾ 실제 신라는 나당 간의 종번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으며, 나당전쟁 과정에서도 조

119) 『濱治通鑑』卷202, 高宗 儀鳳 元年(676), “二月, 甲戌, 徙安東都護府于遼東故城, 先是有華人任安東官者, 悉罷之. 徙熊津都督府于建安故城, 其百濟戶口先徙於徐·兗等州者, 皆置于建安.”

120) 기벌포 전투는 당의 군사전략이 이미 전환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의 대규모 상륙작전이나 단순 도발작전으로 보기보다는 백제고지의 당 잔류군·백제 유민·반신라 인사 등을 철수시키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내용은 李相勳, 2008a, 앞의 논문 참조.

121) 拜根興, 2010, 앞의 논문, 88~89쪽; 韓昇도 나당전쟁의 결과를 당은 평양 이남의 땅을 신라가 차지하도록 묵인하고, 신라는 당에 신복하며 당의 영도적 위치에 도전하지 않는다는 선에서 합의를 본 것이라 하였다. 韓昇, 2009, 『東亞世界形成史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74쪽.

공·책봉의 외교 시스템은 붕괴되지 않았다. 그러나 비록 조공·책봉제도가 종주국과 번국이라는 상하 위계질서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념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서로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나름대로의 합리적 국제관계였다.¹²²⁾ 따라서 나당 간에 중번관계가 다시 수립되어, 신라가 당의 세계 질서를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당전쟁의 결과가 양자 모두의 승리라고 보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¹²³⁾

당의 목적은 한반도와 만주를 장악해 당의 기미지배를 완성하는 것이었고, 신라의 목적은 실질적 무력으로 평양 이남의 영토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당이 나당전쟁 이후에도 명목상 신라왕을 ‘계림도독’으로 삼았기 때문에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대규모 원정군을 투입하고서도 허울밖에 없는 명목만 얻었을 뿐, 실질적인 영향력 행사를 할 수 없었다. 반면 신라는 백제고지와 고구려고지 남부를 실질적으로 영토화하여, 그 목표로 하던 바를 이루었다.¹²⁴⁾

당은 태종 이래 고종에 이르기까지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장악하기 위해 오랜 심혈을 기울인 노력과 성과들을 포기해야 했지만, 신라는 속적이었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한반도의 대체적인 통일을 실현하였다. 당 왕조가 한반도에서 물러난 것은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 토번의 강성에 따른 위급함 때문이었지만, 그 직접적인 원인은 신라와의 전쟁으로 인한 실패였던 것이다.¹²⁵⁾ 나당전쟁 후 당은 이러한 결과에 만족할 수 없었기

122) 권덕영, 2006, 「羅唐交涉史에서의 朝貢과 冊封」,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272쪽.

123) 신라는 강대국에 맞서 생존을 위하여 부단히 외교전략을 모색하였고, 결국 한반도를 통일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劉海霞, 2009, 「七世紀中葉新羅對唐外交策略之嬗變」, 『博物館研究(歷史研究)』 108, 48쪽.

124) 최근 이러한 관점에서 발간된 일본의 植田喜兵成智, 2009, 「百濟·高句麗滅亡後の新羅·唐關係－羅唐戰爭を中心に」, 早稻田大學 碩士學位論文이 주목된다.

125) 金錦子, 2008, 「論七世紀中後期唐朝與新羅關係演變及對東北亞政局的影響」, 『延邊大學學報』 41-6, 138쪽; 한편 재미슨은 670년대 중국 측 사료가 오히려 한국 측 사료보다 불완전한 것은 당이 수십 년에 걸쳐 노력한 것이 일시적인 승리에 그치고, 한반도에서 다시 물러나게 되는 유감과 분통함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한

때문에,¹²⁶⁾ 비록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678년 재차 신라 정벌을 계획하였던 것이다.¹²⁷⁾

V. 맺음말

나당전쟁의 종전배경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나당전쟁에는 고간·이근행의 행군병력 4만 명 이외에, 설인귀의 계림도행군을 비롯하여 유인귀의 계림도대행군까지 투입되었기 때문에, 이들 병력을 더하면 최소 10만 명 이상이 투입되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둘째, 나당전쟁에 투입된 당군은 말갈병 위주가 아니라, 당의 하남도·하북도·강남도에서 동원된 당의 주력부대들이었으며, 나당전쟁 이후 이곳에 순무사가 파견될 정도로 상당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말갈은 여러 궤로 나뉘어 광범위한 곳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말갈병의 주력을 단순히 기병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나당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들은 상륙전과 성전에 많이 투입된 점에서 보병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신라군은 당군과의 오골성 전투와 백수성 인근 전투에서 당군과 접전하여 먼저 승리하였다. 이후 전력부족이나 전술착오로 인해 후퇴하거나 패

바 있다. 존 C. 재미슨, 1969, 앞의 논문.

126) 劉矩·姜維東은 당 고종이 재차 신라 정벌을 계획한 것은 당시 당 왕조가 나당전쟁을 수치로 여겨 이를 설욕하고자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劉矩·姜維東, 2006, 『唐征高句麗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287쪽.

127) 『濱治通鑑』卷202, 儀鳳 3年(678) 9月, “上將發兵討新羅, 侍中張文瓘臥疾在家, 自輿入見, 諫曰, ‘今吐蕃爲寇, 方發兵西討, 新羅雖雲不順, 未嘗犯邊, 若又東征, 臣恐公私不堪其弊’, 上乃止.”

하였으므로, 신라군의 전투력이 당군에 비해 절대적 약세였다고 할 수 없다.

다섯째, 매소성 전투를 지휘한 이근행은 아버지 돌지계와는 달리, 이미 한화되어 당의 행정체계에 흡수된 객장으로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이근행을 따라 움직이는 말갈병은 그리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으며, 이근행이 토번 전선에 투입되었다고 하여 한반도 주둔군 대부분이 이동하였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섯째, 당이 토번에 대한 대원정군의 편성을 계획하는 것은 676년 윤3월 토번의 공격을 받은 이후이므로, 사전에 한반도 주둔 당군을 철수시킨다는 논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근행은 675년 9월 한반도에서 철수하여 토번 전선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 676년 하반기에 토번 전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일곱째, 당의 군사전략은 676년 윤3월에 서북 중심으로 전환되는데, 나당 전쟁의 분수령이 되는 매소성 전투가 발생한 675년 9월은 당이 공세를 지속하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이때 당군의 행동을 단순한 철수전으로 볼 수는 없으며, 신라가 당군의 공세를 막아내었던 것은 확실하다고 하겠다.

여덟째, 나당전쟁이 종전되는 배경은 토번의 강성에 따른 당의 군사전략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나당전쟁에서 신라가 대승을 거두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신라는 최강대국 당의 파상공세를 막아내며 목표를 이루었고, 당은 수십 년간 지속해 온 동북지역에 대한 제패를 포기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사료〉

『三國史記』, 『三國遺事』, 『舊唐書』, 『新唐書』, 『濱治通鑑』, 『全唐文補遺』, 『唐代墓誌彙編』

〈단행본〉

- 강경구, 2007, 『신라의 북방 영토와 김유신』, 학연문화사.
- 金光石 편, 1998, 『用兵術語研究』, 兵學社.
- 노태돈, 2009, 『삼국통일전쟁사』, 서울대학교출판부.
- 박길순, 2004, 『植民地 시기의 歷史學과 歷史認識』, 景仁文化社.
- 徐榮教, 2006, 『羅唐戰爭史 研究』, 아세아문화사.
- 徐仁漢, 1999, 『羅唐戰爭史』, 國防軍事研究所.
- 李基東, 1984,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郎徒』, 一潮閣.
- 李昊榮, 2001, 『新羅三國統合과 麗·濟敗亡原因研究』, 서경문화사.
- 馬馳, 1990, 『唐代蕃將』, 西安: 三秦出版社.
- 末松保和, 1954, 『新羅史の諸問題』, 東京: 東洋文庫.
- 拜根興, 2003,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孫繼民, 1995, 『唐代行軍制度研究』, 臺北: 文津出版社.
- 王桐齡, 1922, 『東洋史』, 上海: 商務印書館.
- 劉炬·姜維東, 2006, 『唐征高句麗史』, 長春: 吉林人民出版社.
- 李方晨, 1981, 『中國通史』下, 臺北: 三民書局.
- 章羣, 1986, 『唐代蕃將研究』, 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 中國軍事史編寫組, 1991, 『中國軍事史』第6卷(兵壘), 北京: 解放軍出版社.
- 韓昇, 2009, 『東亞世界形成史論』, 上海: 復旦大學出版社.
- 黃炎培, 1929, 『朝鮮』, 上海: 商務印書館.

〈논문〉

- 高明士, 金敬恩 역, 1999, 「隋唐 사신의 赴倭 및 그 禮儀 문제」, 『百濟研究』 30.
- 권덕영, 2006, 「羅唐交涉史에서의 朝貢과 冊封」,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고구려연구재단.

- 권덕영, 2008, 「新羅 관련 唐 金石文의 기초적 검토」, 『韓國史研究』 142.
- 金樂起, 2010, 「6~7세기 靺鞨 諸部の 내부 구성과 거주지」, 『고구려발해연구』 36.
- 金壽泰, 1993, 「文武王」, 『韓國史 市民講座』 13.
- 金榮官, 2007, 「百濟遺民 禰寔進 墓誌 소개」, 『新羅史學報』 10.
- 김정현, 2010, 「20세기 中國의 韓國史 서술과 일본의 植民史觀」, 『中國學報』 61.
- 金浩東, 1993,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游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 盧泰敦, 1997, 「對唐戰爭期(669-676) 新羅의 對外關係와 軍事活動」, 『軍史』 34.
- 閔徳植, 1989, 「羅唐戰爭에 관한 考察 - 買肖城 전투를 중심으로」, 『史學研究』 40.
- 민덕식, 1998, 「買肖城址考」, 『孫寶基博士停年紀念考古人類學論叢』, 知識産業社.
- 박찬홍, 2007, 「滿鮮史觀에서의 한국고대사 인식 연구」, 『韓國史學報』 29.
- 拜根興, 2002, 「“羅唐戰爭” 研究 中の 몇 가지 問題」, 『中國學報』 16.
- 拜根興, 2008, 「百濟와 唐 관계에 關한 二 問題 - 翁津 도독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 묘지명에 關하여」, 『百濟研究』 47.
- 拜根興, 2010, 「唐과 新羅關係에 關한 問題 再研究 - 羅唐戰爭을 中心으로」, 『7世紀 東亞細亞의 新羅』(第4回 新羅學國際學術大會 發表集), 慶州市·新羅文化遺產研究院.
- 徐榮教, 1998, 「新羅 長槍幢에 對한 新考察」, 『慶州史學』 17.
- 徐榮教, 2000, 「九誓幢 완성 배경에 對한 新考察 - 羅唐戰爭의 餘震」, 『韓國古代史研究』 18.
- 徐榮教, 2000, 「新羅 河西停 軍官組織에 對하여 - 6~7세기를 中心으로」, 『新羅文化』 17·18.
- 徐榮教, 2001, 「新羅 白衿誓幢에 對하여」, 『慶州史學』 20.
- 徐榮教, 2002, 「나당전쟁기 石門전투」, 『東國史學』 38.
- 徐榮教, 2002, 「羅唐戰爭과 吐蕃」, 『東洋史學研究』 79.
- 서영교, 2006, 「羅唐戰爭期 唐邊方軍의 來襲과 李謹行」, 『東國史學』 42.
- 徐榮教, 2010, 「新羅 黑衣長槍末步幢」, 『軍史』 74.
- 신석열, 2010, 「중국정사의 말갈7부와 삼국사기의 말갈」, 『고구려발해연구』 37.
- 安國承, 1997, 「買肖城 研究」, 『경기향토사학』 2.
- 유용태, 2006, 「중국인의 ‘남조선 한성’: 20세기 중화주의」, 『환호속의 경종: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 李道學, 1987, 「熊津都督府의 支配 조직과 對日本政策」, 『白山學報』 34.

- 이상훈, 2006, 「羅唐戰爭期 唐의 軍事戰略 變化」, 『歷史教育論集』 37.
- 李相勳, 2007, 「唐의 軍事戰略을 통해 본 羅唐戰爭期の 買肖城 戰鬪」, 『新羅文化』 29.
- 李相勳, 2008, 「羅唐戰爭期 伎伐浦 戰鬪와 薛仁貴」, 『大丘史學』 90, 2008.
- 李相勳, 2008, 「羅唐戰爭期 唐의 兵力 運用과 前後 收拾策」, 『中國史研究』 55.
- 이상훈, 2010, 「羅唐戰爭의 開戰과 薛烏儒 部隊」, 『歷史教育論集』 45.
- 이상훈, 2011, 「羅唐戰爭期 文豆婁 秘法과 海戰」, 『新羅文化』 37.
- 李鍾學, 1982, 「新羅三國統一의 軍事史的 考察」, 『軍史』 8.
- 李鐘學, 1995, 「廣開土大王碑文과 海上上陸作戰」, 『海洋戰略』 87.
- 張學根, 1999, 「隋·唐의 海上侵略과 高句麗의 對應策」, 『STRATEGY 21』 2-2.
- 張學根, 2001, 「新羅의 征服地 支配防禦戰略－對唐戰爭을 中心으로」, 『軍史』 41.
- 조이욱, 2010, 「한국고대사의 주변: 말갈에 대한 연구현황과 과제」, 『溫知論叢』 24.
- 존 C. 재미슨, 1969, 「羅唐 同盟의 瓦解－韓中 記事 聚合의 比較」, 『歷史學報』 44.
- 許重權, 1995, 「新羅 統一戰爭史의 軍事學的 研究」, 韓國敎員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姜維東, 2003, 「唐麗戰爭中的蕃將」, 『長春師範大學院學報』 2002-3.
- 高明士, 1983, 「從天下秩序看古代的 中韓關係」, 『中韓關係史論文集』, 臺北: 中華民國韓國研究學會.
- 金錦子, 2008, 「論七世紀中後期唐朝與新羅關係演變及對東北亞政局的影響」, 『延邊大學學報』 41-6.
- 王小甫, 2000, 「唐朝與新羅關係史論」, 『唐研究』 6,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 劉海霞, 2009, 「七世紀中葉新羅對唐外交策略之嬗變」, 『博物館研究(歷史研究)』 108.
- 陳寅恪, 1941, 「外族盛衰之連環性及外患內政之關係」, 『唐代政治史述論稿』, 上海: 商務印書館.
- 陳寅恪, 2004, 『隋唐制度淵源略論稿 唐代政治史述論稿』, 北京: 三聯書店.
- 韓昇, 1999, 「論新羅的獨立」, 『歐亞學刊』 1.
- 黃約瑟, 1997, 「武則天與朝鮮半島政局」, 『黃約瑟隋唐史論集』, 北京: 中華書局.
- 谷口哲也, 1978, 「唐代前半期蕃將」, 『史朋』 9.
- 植田喜兵成智, 2009, 「百濟·高句麗滅亡後の新羅·唐關係－羅唐戰爭を中心に」, 早稻田大學 碩士學位論文.
- 池內宏, 1930, 「高句麗滅亡後の遺民の叛亂及び唐と新羅との關係」, 『滿鮮史研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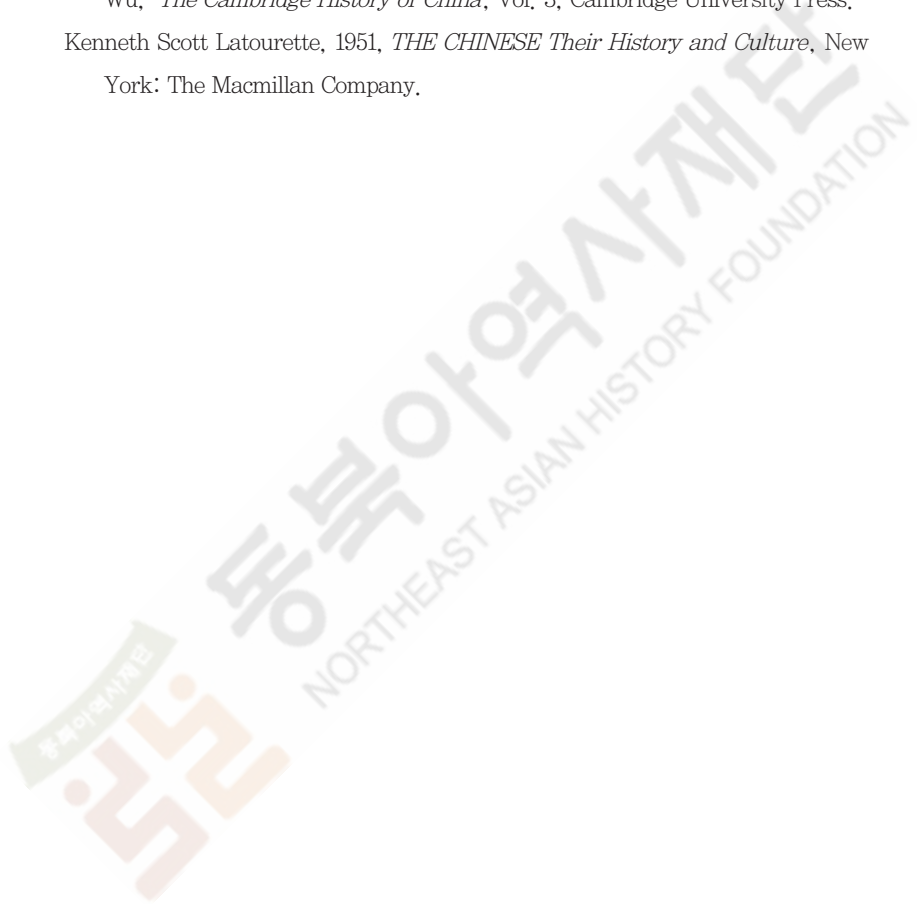
上世2, 東京: 吉川弘文館.

津田左右吉, 1915, 「唐羅交戰地理考」,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 1.

津田左右吉, 1964, 『津田左右吉全集』, 東京: 岩波書店.

Denis Twitchett and Howard J. Wechsler, 1979, “Kao-tsung and the empress Wu,”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3, Cambridge University Press.

Kenneth Scott Latourette, 1951, *THE CHINESE Their History and Culture*,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ABSTRACT]

Circumstances and Silla's Role that Led to the Conclusion
of the Silla–Tang War

Yi, Sanghun

The opinion divides into the end of the war background of the Na–Tang war in domestic academic circles and the foreign countries academic circles. It is necessary to confirm the trend of the Tang Dynasty army turned on for the war period to understand the end of the war background of the war more objective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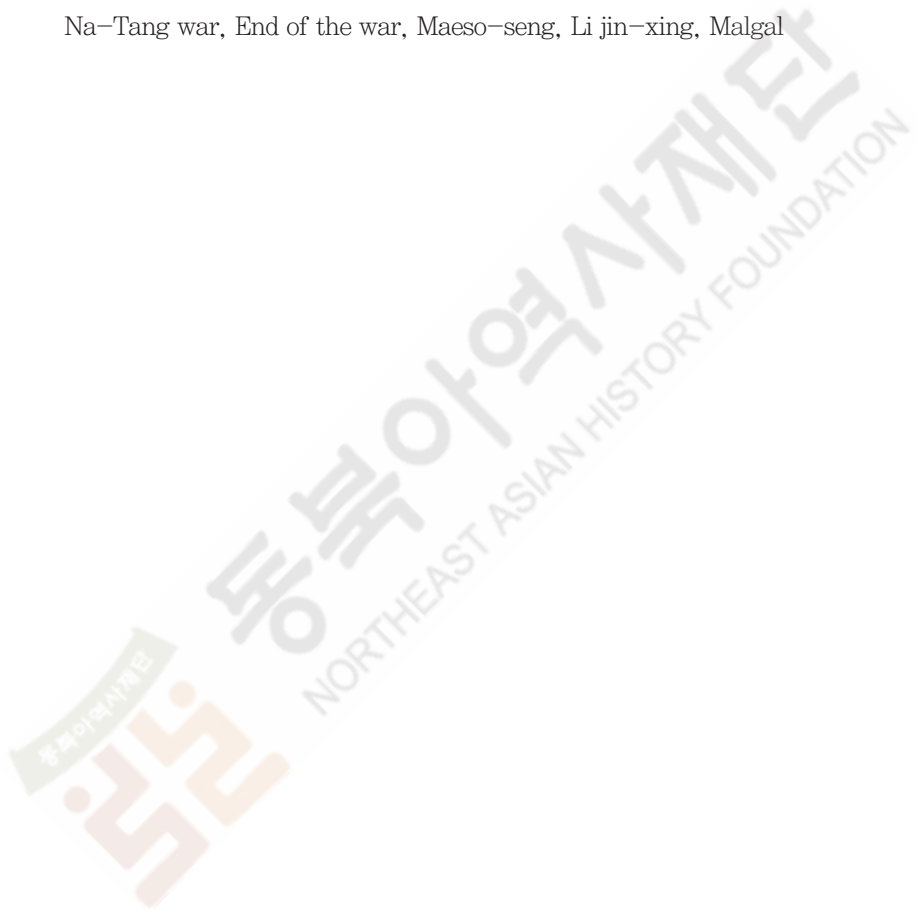
The Tang Dynasty army participated in the Na–Tang war, and it was predicted, and a leading force participated with sending 100,000 people or more in a Chinese east part. Malgal(靺鞨) to participate in the Na–Tang war is not a cavalryman but an infantryman, and it is necessary to see *Li jin-xing*(李謹行) in the general absorbed to an administrative system of Tang Dynasty. Therefore, when *Li jin-xing* moved to the northwest region, a lot of forces in the notheast region did not move.

The center of the military strategy of Tang Dynasty was converted in the northwest region in 676 March, year. Because Maeso–seng(買肖城) battle was generated in 675 September, year, it is time that Tang Dynasty attacked. Therefore, Silla army prevented Tang army by not a simple withdrawal combat but this combat as for Maeso–seng battle. Silla Kingdom extended the borders after it fought, and accomplished the target. However, Tang Dynasty gave up the target, and moved

backward from the South Korea peninsula.

keywords

Na-Tang war, End of the war, Maeso-seng, Li jin-xing, Malgal



1948년 미 공군에 의한 독도 폭격의 전개양상과 군사정책적 배경

김태우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

I. 머리말

대한민국 국가 수립을 불과 두 달여 앞둔 1948년 6월 8일, 독도 인근에서 미역 채취를 하던 한국의 민간어선들이 일군의 비행기들에게 공중폭격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20~30척에 이르는 어선들의 파괴와 함께 수십 명의 한국인 어부들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폭격사건의 생존자들은 국내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폭격의 주체가 미 공군 폭격기들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실제 미 극동공군의 공식발표에 따르면, 이 폭격사건은 오키나와 주둔 미 공군 B-29중폭격기들에 수행된 것이었다. 당시 미 극동공군은 이미 1947년 9월 16일 연합군최고사령부지령(SCAP Instruction, 이하 'SCAPIN') 1778호를 통해 독도를 자신의 공식적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상태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날 독도에 대한 대량폭격연습을 수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듯 독도가 폭격연습장으로 설정된 후 실제 폭격이 수행된 사례는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2년

※ 투고일: 2011년 1월 27일, 심사일: 2011년 5월 31일, 게재 확정일: 2011년 6월 3일.

에도 동일하게 찾아볼 수 있다. 1952년에는 단지 폭격의 희생자가 존재하지 않았을 뿐이다.

지금껏 독도폭격사건에 대한 연구는 몇몇 주요 연구자들을 통해 개별적으로 축적되어 왔다. 홍성근의 논문은 사건 생존자들의 증언, 당대 신문, 연합군 최고사령부지령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사건의 쟁점과 영유권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룬 선도적 연구성과이다. 로브모(Mark S. Lovmo)의 논문은 미 공군 역사연구실(AFHRA)의 독도폭격사건 관련 공군자료를 최초로 발굴하여 소개한 중요한 연구성과이다. 그리고 정병준의 저서는 폭격사건과 관련된 한·미·일 3국의 당대 자료를 방대하게 발굴·인용하며, 사건의 진상뿐만 아니라 그 정치적 함의까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연구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정병준의 저서는 1948년 독도폭격사건이 당대 한국인들의 독도 인식과 대응에 큰 영향을 주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1952년 사건의 경우 미 공군의 독도폭격연습장 지정과 해제 과정에 일본의 정치공작이 긴밀히 작용했음을 세밀하게 증명하고 있다. 방대하고 다양한 문서군에 근거한 정병준의 발견과 해석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매우 결정적인 내용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독도 연구사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성과 중 하나로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¹⁾

이 글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발표되어온 기존의 독도폭격사건 연구들의 축적된 성과들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미 공군 문서와 사진자료 및 그에 근거한 새로운 주장들은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실체를 좀 더 생생히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이 글은 독도폭격사건의 배경·원인과 관련하여 기존에 제시된 적 없는 새로운 해석을 중심으

1) 홍성근, 2001, 「독도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주요 쟁점」, 『정책연구보고서: 2001년도 독도정책자료집』,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독도사랑모임; 홍성근, 2003, 「독도폭격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분석」,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독도연구보전협회; Mark S. Lovmo, 2003,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June 8, 1948 Bombing of Tokto Is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4; 정병준, 2010, 『독도 1947 -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로 사건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이는 “1947년이라는 시점에 왜 독도가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고, 1948년에 이르러서는 왜 대량폭격훈련이 실행되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하나의 해석이다. 기존 연구들은 사건발생 당시 미 공군 자료까지 활용하며 독도폭격사건의 실체를 분석해 내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사건의 역사적 배경과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정병준 또한 당대 일본 자료를 세밀히 분석하여 1952년 폭격연습장의 지정과 해제 과정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일본 정부의 ‘정치공작’에 대해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1947년의 독도 폭격연습장 지정에 대해서는 일본의 로비 가능성에 대한 추론을 제시할 뿐이다.²⁾

이 글은 독도폭격연습장 지정 과정에서 일본의 로비 가능성을 추론하고 있는 기존 연구에 하나의 중요한 해석을 보태고자 한다. 본 논문은 1947~1948년 폭격의 주체인 미국 그 자신이 독도폭격연습장 지정에 매우 중요한 정치·군사적 이해를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는 1952년 폭격연습장 지정 당시와는 달리 1947~1948년의 경우 미국 자신의 이해가 좀 더 강하게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배경에는 일본보다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가 강하게 작용했음을 뜻한다. 당대 미 합동참모본부와 극동군사령부의 다양한 정책문서들은 당시 독도라는 동해의 작은 섬이 왜 군사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 생생히 보여줄 것이다.

2) 정병준은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에서 제작한 「일본의 부속소도: 제IV부(태평양 소도서, 일본해 소도서)」라는 팸플릿을 만들어 독도가 일본령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일이나, 1949년 윌리엄 시볼드의 전문 등을 근거로 하여, 1947년에도 일본 정부의 공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추론한다. 정병준, 2010, 앞의 책, 233~234쪽.

1_ 1948년 독도 폭격의 주체와 전개양상

1) 폭격의 실행주체와 명령주체

1948년 6월 16일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자신의 공식 담화를 통해 미군 비행기의 독도 폭격 사실을 최초로 인정했다. 당시 발표문에 따르면, 폭격을 수행한 비행기는 “오키나와 기지를 출발한 B-29폭격기”들이었다.³⁾ 이 짧은 단서는 폭격의 주체를 추정하는 데 명확한 근거를 제공해준다. 1948년 6월 당시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며 군사작전을 전개한 B-29기 부대는 미 제 15공군(Fifteen Air Force) 93폭격비행단(93rd Bombardment Wing) 산하의 93폭격비행전대(93rd Bombardment Group)뿐이었기 때문이다.⁴⁾

1948년 4월 15일 미 공군 캐슬 공군기지(Castle Air Force Base)에 주둔 중이었던 미 93폭격비행전대는 전략공군사령부(Strategic Air Command)로부터 중요한 야전명령(field order)을 하달받았다. 야전명령 16호로 알려진 이 문서는 93폭격비행전대 전부가 미 극동공군 공격력의 일부가 되기 위해 3개월 동안 임시적으로 일본 오키나와섬으로 이동할 것을 명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같은 극동지역 임무는 세계 특정지역에서의 장거리 폭격, 정찰, 사진촬영, 수중수색, 잠수함 정찰 등과 같은 단순한 군사훈련을 위한 것이었다.⁵⁾

이상과 같은 93폭격비행전대의 오키나와 이동은 전략공군사령부 산하의 전대로는 전례가 없는 최초의 대규모 이동이었다. 전대의 일부 병력들이 극동

3) 『서울신문』 1948년 6월 18일자; 『조선일보』 1948년 6월 18일자.

4) 1948년 5월 93폭격비행전대 소속의 일부 병력이 오키나와에 최초로 들어왔을 때 22 폭격비행전대의 일부 병력들이 가데나기지의 중요 막사들을 사용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93폭격비행전대 나머지 병력들이 모두 오키나와로 이동한 직후 본토로 돌아갔다. “History of the 93d Bombardment Group(VH), Kadena Air Force Base, Okinawa, for the Month of May 1948(이하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May 1948’),” 1948, 5, p. 3; “History of the 93d Bombardment Group(VH), Kadena Air Force Base, Okinawa, for the Month of June 1948(이하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1.

5)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7.



〈사진 1〉 캐슬 공군기지에서 오키나와 이동을 준비하고 있는 93폭격비행전대원들
(출전: “History of Castle Air Force Base and the Ninety-third Bombardment Wing(VH), June 1948”의 첨부문서)

지역에 주둔하며 군사훈련을 수행한 경우는 있었지만, 전대 산하의 328, 329, 330폭격비행대대(bombardment squadron)와 전대에 소속된 모든 보급·정비·행정부서까지 함께 이동한 대규모 훈련은 전례가 없었다. 때문에 93폭격비행전대는 오키나와 이동 전 임무준비에만 수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⁶⁾ 위의 〈사진 1〉은 독도폭격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인 1948년 5월 초 오키나와행 B-29기의 이륙을 준비하고 있는 93폭격비행전대 승무원들의 모습이다.

1948년 5월 9일 14시 93폭격비행전대 소속 B-29기 1828호가 전대 이동을 사전 준비하기 위해 오키나와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다. 이후 5월 23일 B-29기 5대로 구성된 최초 편대의 도착을 시작으로, 3~5대로 구성된 B-29기 편대들이 가데나 기지에 속속 도달하여, 1948년 5월 31일에는 총 25대의 B-29기들이 오키나와에 머무르게 되었다. 이들은 90일의 훈련기간 동안에 21회의 임무

6)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May 1948,” 1948. 5, p. 1;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1.

를 수행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이는 매우 버겁고 빠빠한 훈련일정이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당시 오키나와 주변의 극동지역의 기상은 작전수행을 하는데 최악의 상태였다. 93폭격비행전대원들은 3개월의 임무수행 기간 내내 폭우와 강풍에 시달려야만 했다. 그리고 이 같은 악천후의 지속으로 인해, 93폭격비행전대는 1948년 5월에 배정받은 3개의 임무들 중 단 한 건도 완수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악천후는 비행전대의 장비관리부터 폭격 수행에 이르기까지 활동 전반에 커다란 물질적·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었다.⁷⁾

93폭격비행전대의 내부구성을 살펴보면, 폭격을 직접 수행하는 328, 329, 330폭격비행대대 외에 인사부(S-1), 정보부(S-2), 작전부(S-3), 군수부(S-4)로 구성되어 있었다. 인사부는 병력의 이동과 관리를 담당했고, 정보부(S-2)는 표적 폴더 준비, 임무관련 브리핑 수행, 지도의 확보, 93폭격비행전대 역사 보고서의 준비를 담당했다. 작전부는 예정된 임무수행을 위한 야전명령의 작성과 표적차트 준비를 담당하였다. 군수부는 장비와 보급품의 정비·관리를 맡았다.⁸⁾ 그리고 이 같은 93폭격비행전대 예하 부대들을 인솔한 주요 장교들(1948년 6월 30일자)로는 93폭격비행전대장 쓰리프트(John O. Thrift) 중령, 328폭격비행대대장 츠바이펠(Everett E. Zweifel) 소령, 329폭격비행대대장 앤더슨(Colin E. Anderson) 중령, 330폭격비행대대장 스투어트(Robert H. Stuart) 중령, 작전부장 알렌(Barnett S. Allen) 중령, 정보부장 윌하이트(Roy J. Wilhite) 중위 등이 있었다.⁹⁾ 이들은 사전에 종합적으로 계획된 임무와 야전명령에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극동지역에서의 임무를 성과적으로 수행해 나갔다. 그리고 독도 폭격이 있던 그날도 동일한 임무패턴 속에서 일과는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은 목적과 구성 속에서 1948년 초여름 오키나와로 이동한 93폭격전대원들 중에 과연 누가 독도를 폭격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인 폭

7)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May 1948," 1948, 5, p. 5, 13.

8)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May 1948," 1948, 5, pp. 6~8.

9)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p. 9~10.

격명령을 최초로 하달했던 것일까? 위의 93폭격비행전대 구성에 따르면, 구체적 야전명령의 작성과 표적차트의 준비는 작전부(S-3)에서 진행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독도 폭격의 기획자이자 명령자는 작전부장이었던 알렌 중령이었을까? 아니면 알렌 중령과 같은 극동지역 현지 공군장교들을 훨씬 초월하는 어떤 존재로부터 명령이 하달된 것일까?

1948년 6월 329폭격비행대대의 기록은 명령 주체와 관련된 중요한 단서를 현재의 우리에게 제공한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표적 및 관련 정보를 선정”하는 주체는 미 극동공군사령부(Far East Air Force Headquarters)였다. 극동지역 미 공군의 최고기구이자, 93폭격비행전대가 자신의 이동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 하부로 편제되었던 극동공군사령부가 표적 및 표적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였던 것이다. 기록에 따르면, 전대 작전부의 역할은 극동공군사령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비행코스를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에 불과했다.¹⁰⁾

표적 선정의 주체가 극동공군사령부였다는 사실은 실제 표적 선정의 주체가 그 상층부로부터 나왔을 가능성을 추론케 해준다. 극동공군사령부는 전구사령관인 맥아더(Douglas MacArthur) 미 극동군사령관(연합군최고사령관 겸임)에 의해 면밀히 통제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전구사령관은 자신이 소속된 군과는 별도로 전구 내의 육·해·공군부대에 대한 통합적 지휘권을 갖고 있었다. 특히 1946년 미 합동참모본부는 전구사령관들로 하여금 예하 부대에서 책임 있는 인물을 선정하여 합동참모기구를 운영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지시에 따라 1948년 1월 적격의 해·공군정보장교 1명씩을 배치받아 설치한 기구가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G-2)였다. 그리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남북한 지역의 주요 공군 공격대상을 설정해 주는 기구가 바로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였다.¹¹⁾

10) “History of 329th Bombardment Squadron(VH), 93rd Bombardment Group, 93d Bombardment Wing, Fifteenth Air Force for June 1948(이하 ‘History of 329th Bombardment Squadron for June 1948’),” 1948, 6, p. 8.

11) Robert F. Futrell, 1961, *The United States Air Force in Korea 1950~1953*, Duell, Sloan and Pearce, pp. 43~44.

다시 말해 1940년대 후반 독도가 폭격훈련지로 선정되고 실제 폭격이 수행되기까지의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극동군사령부 정보참모부와 극동군사령관, 심지어 미군의 명령계통상 전구사령관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던 합동참모본부(Joint Chiefs of Staff)의 당대 활동까지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의 2장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겠지만, 당대 독도폭격연습장 설치와 운영은 단순히 극동공군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미군의 전반적 대외정책의 변화 속에서 실행된 것이었다. 독도폭격연습장 선정의 배경에는 미군의 근본적인 극동지역 군사정책 변화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독도폭격연습장 선정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 2장 부분에서 자세히 후술하도록 하겠다.

2) 폭격의 전개양상

독도폭격사건이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난 1948년 6월 15일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사건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아직 미군기의 폭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설령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은 완벽히 우발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했다. 또한 극동공군 산하부대는 기총소사 자체를 실행하지 않는다고 단언하며, '학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B-29기의 조준 기총사격 가능성 자체를 조기에 불식시켰다.¹²⁾

그런데 중간발표 다음 날인 16일, 미 극동공군사령부는 전날의 발표와는 달리 미군 폭격기의 독도 폭격 사실을 갑작스레 최초로 공식 시인하였다. 그리고 폭격의 전개과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중요한 주장을 제시하였다. 첫째, 폭격의 실행주체는 오키나와 기지에서 출발한 B-29폭격기들이다. 둘째, 폭격 30분 전에 정찰기가 6회에 걸쳐 독도 부근을 시찰하고 연습에 무방하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셋째, 정찰기와 폭격기들은 독도 근해의 소어선들을 바닷물로 오판하였다. 넷째, B-29폭격기대는 2만 3천 피트 상공에서 '연

12) 『경향신문』 1948년 6월 16일자; 『조선일보』 1948년 6월 16일자.

습탄'을 투하했으며, 해상에서 아무런 선박도 보지 못하였다. 다섯째, 폭격 30분 후 정찰기 촬영 사진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다수의 작은 배들을 발견하였다.¹³⁾

그런데 이상과 같은 미군의 주장은 당대 폭격사건 생존자들의 주장과 여러 측면에서 어긋난다. 특히 극동공군의 네 번째 주장, 즉 폭격기들이 2만 3천 피트의 '고공'에서 폭탄을 투하했다는 주장과 전날의 중간발표 과정에서 그 발생 가능성조차 부인했던 '기총소사' 진행 여부가 그 대표적 예이다. 사건 발생 직후인 6월 10일 생존자 이완식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비 오는 듯한 기관총 소리가 들렸고, 바위와 배 위에 총알이 비 오듯 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는 극동공군이 애초부터 강하게 부인하였던 비행기 ‘기총소사’ 사실을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게다가 그는 극동공군의 주장과는 달리 폭격기들이 ‘저공’으로 어선을 폭격했다고 주장하며, “두터운 폭탄파편과 기관총알”을 주웠다는 사실을 진술했다.¹⁴⁾ 그는 폭격의 고도(저공폭격)와 기총소사 부분에서 미군과는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6월 10일 또 다른 생존자 김태홍·최춘일·최춘삼은 사망자 김동술이 ‘기총사격’에 의해 생을 마쳤으며, 폭격 후의 정찰비행기에 그려져 있는 “등근 굴레 속의 별”을 보았다고 증언했다.¹⁵⁾ 그들이 증언한 표지는 당시 B-29기 걸면에 그려져 있던 미 공군 표지를 정확히 묘사한 것이었다. 또 다른 생존자 장학상은 “비행기에서는 배[船]를 향하여 총까지 놓았다”라는 발언을 통해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했다.¹⁶⁾ 최만일 또한 “폭탄을 투하하며 기관총으로 쏘았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네 차례 폭격 후 네 개의 발동기가 달린 큰 비행기 한 대가 지나갔다고 증언했다.¹⁷⁾ 발동기 4개 달린 큰 비행기는 당

13) *Stars and Strife*, 1948년 6월 17일자; 『서울신문』 1948년 6월 18일자.

14) 『조선일보』 1948년 6월 12일자.

15) 『경향신문』 1948년 6월 16일자.

16) 『경향신문』 1948년 6월 12일자; 『서울신문』 1948년 6월 12일자; 『동아일보』 1948년 6월 12일자.

17) 『수산경제신문』 1948년 6월 13일자.

시 독도 상공의 B-29기를 정확히 묘사한 것으로서, 사실상 김태홍 등이 진술했던 정찰비행기의 존재에 대해 동일한 주장을 개진한 것이었다.

이상의 생존자들은 폭격 사건 직후 각기 다른 장소에서 상이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진술 내용의 상당 부분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11~12시경 네 차례의 폭격이 있었고, 폭격과 함께 기총소사가 진행되었다고 한목소리로 말하였다. 특히 일관되게 등장하고 있는 기총소사 관련 주장은 당대 미 극동공군사령부의 공식발표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실제 1948년 6월 8일 독도 폭격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전개되었던 것일까? 상충하는 주장 어디쯤에 진실이 존재할까?

1948년 6월 한 달 동안 오키나와 주둔 93폭격비행전대는 여덟 차례의 장거리 폭격임무를 계획하고 수행했다. 여덟 번의 임무 중 네 번이 실제 폭격임무였고, 네 번은 지정된 목표물에 대한 카메라폭격이었다. 1948년 6월 8일의 독도 폭격은 그달에 수행된 임무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제3임무(Mission No.3)의 첫 번째 폭격훈련이었다.¹⁸⁾

이날의 제1표적은 울릉도를 폭격시발점(I.P.)¹⁹⁾으로 하는 “리앙쿠르암[독도]”으로 지정되었고, 제2표적은 아시아 공군기지였으며, 제3표적은 가데나 공군기지였다. 전대는 비행기당 1,000파운드의 파괴폭탄(General Purpose bomb)²⁰⁾ 네 발로 제1표적인 독도를 공격하고, 아시아 공군기지와 가데나 공군기지에 대해서는 실제 폭격이 아닌 카메라폭격만을 진행할 예정이었다.²¹⁾

폭격 준비에서 실행까지의 단계는 B-29중폭격기 편대들의 일상적 수행과

18)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11.

19) 폭격시발점(initial point)이란 “표적을 향한 폭격항정(bomb run)의 시점으로 활용되는 곳으로서, 육안이나 전자기기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지점”을 의미한다. Joint Chief of Staff, 2001, 4, 12(as amended through 19 August 2009),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p. 265.

20) 파괴폭탄(General Purpose Bomb)은 GP폭탄, 보통폭탄, 다목적폭탄 등 다양한 용어로 해석·사용되고 있다. 이 글은 한국공군의 공군교범을 따라 이를 ‘파괴폭탄’이라 호칭한다. 공군본부, 1962, 『공군교범 100-11: 항공용어집(항공작전편)』, 427쪽.

21)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14.

정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즉, 통상적으로 이륙 16시간 전에 기총사수, 무선 통신사, 엔지니어들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브리핑을 한 후 여타 병력들의 도움을 받아 폭탄을 탑재한다. 임무수행 당일에는 아침식사 → 브리핑 → 정거장 집결 → 첫 번째 비행기 최초 엔진 가동 → 활주 → 이륙 → 공중집결 → 폭격 임무 수행 → 공군기지 귀환의 순으로 임무가 진행된다. 아침식사 후에 진행되는 브리핑은 조종사들을 위한 기상 브리핑이다. 그리고 각각의 폭격기들은 1분 시차를 두고 차례로 엔진을 가동하며, 이륙 또한 1분 간격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개별 폭격기들은 이륙 수시간 후 특정지점 상공에서 대대별로 모여 표적으로 나아간다. 독도 폭격 또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²²⁾

93폭격비행전대의 기록에 따르면, 6월 8일 폭격임무에 투입될 비행기는 기상관측기를 포함하여 총 24대였다. 그러나 두 대의 폭격기는 기계적 문제 때문에 이륙에 실패했고, 또 다른 한 대의 비행기는 엔진오일의 부족으로 비행 중 특정지점에서 비행을 중지한 채 09시 56분에 기지로 돌아왔다. 즉 1대의 기상관측기를 포함한 21대의 B-29기가 당일의 폭격작전을 수행했던 것이다. 이 중에서도 작전과정에서 여타 비행기들보다 30분 일찍 이륙하여 기상관측 및 지상과 해상 정찰임무를 수행했던 기상관측기 6402호를 제외하면, 총 20대의 B-29기들이 실제 폭격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²³⁾

가테나 기지에서 1분 간격으로 이륙했던 B-29기들은 가미노시마 북단에서 회합하여 11시 47분에 제1폭격시발점인 울릉도 상공에 도착했다. B-29기들은 대대 형태로 울릉도를 떠났는데, 7대의 B-29기로 선두를 구성한 330대대, 6대의 B-29기로 그 뒤를 엄호하며 낮은 고도에 위치한 328대대, 6대의 비행기로 가장 높은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한 329대대, 그리고 개폐구 고장으로 홀로 비행하며 폭탄을 투하한 1760호 등으로 구성되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총 20대의 비행기들이 폭격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개의 대대는 여타 임무들과 마찬가지로 약 1분 간격으로 자신의 파괴폭탄들을 한꺼번에 표적

22) "History of 329th Bombardment Squadron for June 1948," 1948, 6, p. 8.

23)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p. 14~15.

지점에 쏟아 부었다. 330대대는 11시 58분, 329대대는 12시, 328대대는 12시 1분에 폭격을 수행했다. 생존자들이 증언한 폭격시간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대대별 폭격 과정에서 폭탄 투하에 실패한 두 대의 비행기들이 360도 회전하여 개별적으로 폭탄을 수행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이는 사실상 총 4회—3회의 대대별 폭격과 나머지 비행기들에 의한 개별폭격—의 폭격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 또한 4회의 폭격이 진행되었다는 당대 생존자들의 언론 인터뷰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20대의 B-29기들은 총 76발의 폭탄을 독도 상공에서 투하했다. 폭격의 결과는 평균 오차반경(circular error) 300피트를 기록하며, 매우 성공적으로 폭격훈련을 마친 것으로 평가되었다.²⁴⁾

당대 자료를 통해 볼 때, 실제 독도 폭격 수행과정은 그룹의 제일 선두에 위치한 330대대장 비행기의 폭탄 투하와 함께 순차적으로 폭격이 진행되었으



(사진 2) 악수를 나누는 93폭격비행전대 330폭격비행대대장 스튜어트 중령과 작전부장 알렌 중령

(출전: “History of Castle Air Force Base and the Ninety-third Bombardment Wing(VH), June 1948”의 첨부문서)

24)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15.

리라 짐작할 수 있다. 불과 4일 전 93폭격비행전대의 폭격훈련 수행과정에서 선두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하지 못하는 바람에 대대 전체가 폭격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기록은 이러한 폭격수행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폭격에 실패했던 대대는 목표지점 상공으로 즉시 돌아와 폭격을 다시 수행해야만 했다.²⁵⁾

이 같은 내용은 6월 8일 독도 상공에서의 작전 실행과정에서 구체적 폭격 명령을 하달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첫 번째 폭탄을 투하한 사람이 누구인지 현재 우리에게 알려준다. 최선두에서 그룹의 리더 역할을 담당했던 330폭격비행대대장 스투어트(Robert H. Stuart) 중령이 그 주인공이다.

〈사진 2〉는 본 논문을 통해 처음으로 공개되는 것으로서, 1948년 5월 93폭격비행전대원들이 캐슬 공군기지에서부터 오키나와로 떠나기 직전에 촬영된 것이다. 악수를 나누는 두 인물 중 왼쪽 인물이 6월 8일 독도 상공에서 폭탄 투하를 직접 지시한 스투어트 중령이고, 오른쪽 인물은 독도 폭격과 관련된 구체적 야전명령을 작성하고 표적차트를 준비했던 작전부장 알렌(Barnett Allen) 중령이다. 다시 말해 〈사진 2〉는 독도 폭격과 관련하여 실제 독도 상공에서 폭탄 투하를 직접 명령한 사람과 독도 폭격의 세부작전을 계획한 사람이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으로서, 독도폭격사건과 관련해서는 일면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자료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3) 폭격사건의 쟁점 분석

그러면 이제 다시 1948년 미 극동공군사령부가 최종적으로 제시했던 독도 폭격 양상에 대한 발표자료와 당대 93폭격비행전대의 자료를 비교하며, 폭격과 관련된 논쟁들을 반추해 보도록 하자. 우선 몇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폭격의 주체는 오키나와 주둔 B-29기들이고, 여타 임무들과 마찬가지로 독도 폭격 과정에서도 폭격 30여 분 전에 기상관측기가 사전 정찰활동을 진행했다 것은 분명한 사실로 판단된다. 1948년 6월 임무수행 당시 기상관측기가

25)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13.

투입되지 않은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리고 연습탄을 투하했다는 극동 공군사령부의 발표 내용과는 달리 1,000파운드 파괴폭탄들이 훈련에 사용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93폭격비행전대원들 스스로 국제적 논쟁이 불거진 사건과 관련해, 실제 연습탄이 사용된 사건을 굳이 실탄인 파괴폭탄 76발을 투하했다고 기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²⁶⁾

반면 『93폭격비행전대사』에는 당대 가장 논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까지도 논쟁의 중심에 있는 ‘폭격 고도’ 및 ‘기총소사’와 관련된 진술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사실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그 자체로 현재의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폭격 당일 2만 3천 피트 상공에서 폭격을 수행했다는 주장은 앞서 제시된 6월 16일 극동공군사령부 언론 브리핑 내용 외에는 그를 입증할 자료가 현재로서는 전무하다.

폭격 고도는 당시 폭격기 내에서의 선박 인식 및 기총소사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확실하게 결론짓는 것이 불가능하다. 아마도 고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임무 직후 작성된 임무보고서(mission report)일 텐데, 이 임무보고서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도 폭격 당일의 임무보고서는 의심의 여지없이 작성되었음에 틀림없다. 다만 아닌 이 글의 주요 자료 중 하나인 『93폭격비행전대사』가 이 임무보고서들에 기초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이다.²⁷⁾ 다시 말해 『93폭격비행전대사』는 당시 93폭격비행전대 활동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이면서 일면 대외적인 자료라고 볼 수도 있다. 때문에 해당 문서의 첫 부분에 등장하듯이, “이곳에 포함된 데이터들은 조심스럽게 검열되었고, 관찰 기구에서 평가”²⁸⁾한 자료임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정황은

26) 연습탄 투하 주장에 대해서는 『서울신문』 1948년 6월 18일자를 참조하시오. 파괴 폭탄 76발 투하에 대한 기록은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15를 참조하시오.

27)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4.

28) Roy G. Wilhite, 1948, 6, “Foreword of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93폭격비행전대사』에 기록되지 않은 B-29기들의 폭격 고도에 대해 의구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현재 한국 공군에 복무하고 있는 한 장교는 필자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당일 B-29기들이 독도 상공에서 일제히 고도를 낮추어 폭격을 수행하고, 목표 상공을 지난 후 다시 고도를 높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발언을 하였다. 실제 중폭격기 훈련 과정에서 목표물이 너무 작을 경우 폭격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고도를 대폭 낮추어 폭격을 수행한 후 다시 고도를 높이고는 한다는 것이다.²⁹⁾ 2010년 3월 18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병준 교수와 전화 인터뷰를 수행했다는 권재상 예비역 공군대령의 발언에서도 주의를 기울여 살펴볼 부분이 있다. B-29기 폭격훈련과 관련하여, 권 대령은 기상이 좋은 날 넓은 표적을 향하여 폭탄을 투하할 때 약 1만 5천 피트 고도에서 폭격을 수행하고, 정밀폭격 훈련 시에는 최저 2,500피트, 최고 8,000피트에서 폭탄을 투하한다고 언급했다.³⁰⁾ 즉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이 수행했던 것과 같은 ‘지역폭격’ 수행 시에는 고공에서의 대량폭격을 진행하지만, 아주 작은 목표지점에 대한 정밀폭격 시에는 상당 정도 고도를 낮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1948년 미 극동 공군이 주장한 2만 3천 피트와 2,500~8,000피트는 상당한 고도 차이를 보여 준다.

독도 폭격 시 정밀폭격 수행 가능성과 관련하여 눈여겨볼 만한 것이 당대 미 공군 자료상의 독도 폭격 성과 분석이다. 당대 기록에 따르면 독도 폭격을 수행한 3개 대대의 평균 오차반경(CE)³¹⁾은 300피트에 불과하다. 이는 300피트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면적, 즉 282,600제곱피트(26,254,399제곱미터) 내에 폭탄의 반수가 투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독도 면적의 14%에 불

for June 1948”.

29) 현역 공군장교 ○○○씨와 필자의 개별 인터뷰,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0년 11월 6일, 구술자의 요청에 따라 실명은 밝히지 않기로 하였다.

30) 정병준, 2010, 앞의 책, 222쪽.

31) 오차반경(circular error)은 현재 원형공산오차율(circular error probable)로 호칭되기도 하는 군사용어로서, “미사일 발사체의 반수가 투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원의 반지름”으로 정의된다. Joint Chief of Staff, 2010, 4, 12, *op. cit.*, p. 88.

과한 면적에 폭탄의 반수가 들어갔음을 의미한다.³²⁾ 이 같은 결과는 그들 스스로도 당일의 폭격결과를 “뛰어나다(superior)”라고 평가한 것처럼 굉장히 높은 목표적중률이었다. 이는 폭격 당일 2만 3천 피트보다 훨씬 낮은 상공에서 정밀 폭격이 실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³³⁾ 실제 독도폭격사건이 발생하기 4일 전 동일한 부대에서 수행한 파랄론 드 메디닐라(Farallon De Medinilla) 폭격의 결과를 살펴보면, 22,000~23,000피트 상공에서 수행된 3개 대대의 폭격의 결과 평균 666.6피트의 오차반경을 기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³⁴⁾ 파랄론 드 메디닐라 폭격 당시의 폭격고도는 극동공군이 발표한 독도 폭격 당시의 고도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독도 폭격 당일 93폭격비행전대는 불과 4일 전 폭격작전을 수행한 것과 동일한 고도에서 폭격작전을 수행했지만, 4일 전의 절반도 안 되는 면적에 폭탄의 반수 이상을 적중시켰음을 의미한다. 이는 극동공군이 발표한 독도 폭격고도 23,000피트가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수치임을 의미한다.

2002년 로브모와 인터뷰한 93폭격비행대대 산하 329폭격비행대대의 폭격수로 알려진 깁슨(John Gibson)의 회고도 저공 정밀폭격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짚어볼 만하다. 그는 1948년 여름 3개월간의 오키나와 체류 사실에 대해 회고하며, 1948년 6월 “섬 끝에 위치한 섬 주변의 작은 만”에 폭격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임무수행 동안에 작은 만 내부의 “작은 배들”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누군가 그들이 그곳에서 마약이나 그와 비슷한 유의 것과 관련된

32) 독도의 동도와 서도를 합한 전체면적은 약 독도면적 187,453제곱미터로서, 제곱피트로 환산하면 약 200만 제곱피트(2,017,727.3제곱피트)에 달한다.

33)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15.

34) 1948년 6월 4일 93폭격비행전대 소속의 3개 대대는 각각 300피트(330비행대대, B-29기 3대, 22,500피트 상공에서 폭탄 투하), 700피트(328비행대대, B-29기 7대, 22,500피트 상공에서 폭탄 투하), 1,000피트(329대대, B-29기 7대, 22,000피트 상공에서 폭탄 투하)의 오차반경을 기록했다. 3개 대대는 모두 상이한 고도에서 폭격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1~2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폭격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오차반경을 기록하였다. 특히 독도 폭격 당시와 동일한 7대의 B-29기로 비행한 328과 329비행대대의 경우 훨씬 더 큰 오차반경을 기록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13.

활동을 하고 있다는 무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³⁵⁾

『93폭격비행전대사』에 따르면, 1948년 6월 폭격훈련지로 정해진 표적 중에 바다 한가운데 섬은 독도 외에 제2임무의 파랄론 드 메디닐라 섬과 제7임무의 마우그(Maug) 섬뿐이다. 그런데 북마리아나군도의 작은 산호섬인 파랄론 드 메디닐라와 가파른 절벽으로 구성된 작은 화산섬인 마우그 모두 현재까지 사람이 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진행되지 않는 무인도라는 공통점을 지닌다.³⁶⁾ 다시 말해 상공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배가 조업을 수행하고, 그들의 일부를 품을 수 있는 만이 존재하는 섬은 사실상 독도뿐임을 확증할 수 있다. 김슨이 증언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폭격 사실은 실제 독도 폭격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리고 선박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는 사실은 당일 폭격이 2만 3천 피트보다는 훨씬 낮은 곳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상과 같이 『93폭격비행전대사』에 폭격 고도가 제시되지 않은 반면, 3개 대대의 평균 오차반경이 300피트에 불과하다는 문서상의 기록, 정밀폭격 훈련 시 최저 2,500피트까지 하강한다는 권재상 예비역 공군대령의 증언, 1948년 6월 작전 중 선박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폭격을 수행했다는 김슨의 증언 등은 현재 시점에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비행기들이 저공에서 폭격을 가했다는 생존자들의 일관된 주장 또한 현 시점에서 뚜렷한 근거 없이 무시해버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생존자들의 또 다른 일관되고 통일된 주장, 즉 폭격기들의 ‘기총소사’에 대한 주장이 ‘저공폭격’이라는 폭격방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총소사 여부와 관련된 당대의 유일한 자료는 1948년 6월 『329폭격비행대대사』뿐이다. 이 문서에 따르면, 329폭격비행대대는 6월 한 달 동안 총 772시간 55분의 비행시간을 기록하며, 1,000파운드 폭탄 28발과 500파운드 폭탄

35) Mark S. Lovmo, 2003, *op. cit.*, p. 273.

36) 인터넷 ‘위키피디아’의 ‘Maug Islands’(http://en.wikipedia.org/wiki/Maug_Islands, 2010년 11월 8일 검색)와 ‘Farallon de Medinilla’(http://en.wikipedia.org/wiki/Farallon_de_Medinilla, 2010년 11월 8일 검색) 항목 참조.

110발을 훈련과정에서 사용했다. 반면에 탄약은 단 한 발도 사용하지 않았다 [Ammunition expended: 0 rds(rounds)]. 이 자료는 독도 폭격 과정에서 2번째 편대로 가장 저공에서 비행했던 329폭격비행대대가 단 한 발의 기관총 탄알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당일에 기총소사가 없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자료라고 볼 수 있다.³⁷⁾ 그리고 실제 B-29기에 장착된 기관총은 비행 시 출현 가능한 적기를 쫓아내기 위한 방어적 목적의 무기로서, 독도 근해의 어선들을 향해 기관총을 발사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폭격 직후 시점에 각기 다른 곳에서 다른 면접자들을 대상으로 진술된 생존자들의 ‘통일되고 일관된 구술’ 내용을 데이터에 대한 면밀한 심의를 공언하고 있는 『329폭격비행대대사』만을 근거로 불식시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평가일지 의구심을 가져볼 만하다. 물론 폭탄 투하 과정에서 발생한 수많은 파편들을 기총소사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분산되는 폭탄 파편과 일직선으로 진행되는 기총소사는 그 구분이 어렵지 않다는 점 또한 적시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심지어 6월 10일 이완식은 “폭탄 파편과 기관총알”을 직접 주웠다고 언급하면서 폭탄과 탄환을 구분해서 설명했고, 그와의 인터뷰를 기사화한 『조선일보』는 “저공으로 어선을 폭격하고 기관총까지 쏘다니 참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인들을 향해 읍소하기까지 했다.³⁸⁾

그렇다면 만약 당일 미 공군이 실제 한국 민간어선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폭탄 투하와 기총소사를 실시했다고 ‘가정’한다면, 도대체 왜 이처럼 비인도적인 작전을 진행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훈련 과정에서 타국의 민간어선을 향해 폭격을 가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 현대의 군사교범과 군사윤리에 기초하자면, 집단적 민간선박들의 존재를 확인한 상태에서 폭격훈련을 강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하기조차 힘

37) “History of 329th Bombardment Squadron for June 1948,” 1948, 6, p. 9.

38) 『조선일보』 1948년 6월 12일자.

들다. 그러나 1948년 극동지역이라는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는 이처럼 놀라운 일이 완전히 발생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도 힘들다. 독도폭격사건은 현대인의 시선이 아닌 당대인들의 관점에서 상당 정도 ‘군사문화사적 접근’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329폭격비행대대의 폭격수였던 김슨은 1948년 6월 폭격훈련 수행 중 특정 민간인 선박들을 향해 폭격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폭격 당시 그는 해당 선박의 선원들이 마약과 비슷한 유의 것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다는 무전을 들었던 것 같다고 증언했고, 폭격 후에도 해당 선박들이 불법적 마약운반선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고 발언했다.³⁹⁾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 중 하나는 훈련지역 내에 있는 아시아의 마약상인들에 대한 오폭사건 정도는 문제가 될 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사고가 당대 미 공군 내에서 통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설령 해당 섬 주변의 선박들이 실제 마약운반선이라 할지라도, 미군은 어떤 구체적 증거확보나 법적 절차 없이 선박을 파괴하고 선원들을 죽여버릴 수 없었다. 김슨 또한 당대 미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아시아인, 혹은 일본인에 대한 강한 편견을 은연중에 노출하고 만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인 혹은 아시아인들에 대한 미국의 인종주의적 편견은 현재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미군은 유럽지역에서의 공중폭격 과정에서 공격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밀폭격 정책을 추구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태평양전쟁 과정에서는 소이탄을 사용해 일본 본토의 중요 도시들을 모조리 불태워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로 핵무기를 사용하여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를 초토화시켜버리기도 했다. 이처럼 유럽과 태평양지역에서 상이하게 전개된 미군의 공중폭격 양상은 여러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다우어(John W. Dower), 카메론(Craig M. Cameron), 다카키(Ronald Takaki) 등은 미군의 태평양전쟁에 대해 분석하며 미국인들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주의’를 무차별적 군사작전 양상의 가장

39) Mark S. Lovmo, 2003, *op. cit.*, p. 273.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했다.⁴⁰⁾

또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존린(John A. Lynn)은 태평양 전쟁의 잔혹성을 단순히 인종주의적 관점에서만 분석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진주만 기습이라는 일본의 기만적 행위, 죽음을 불사하는 일본 군인들의 놀라운 전투능력, 미국인 포로들에 대한 끔찍한 잔혹행위, 사이판지역 일본군인들의 97%를 죽음으로 이끈 집단자살의 목격 등의 군사·문화적 제 요소가 태평양지역 미군들에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⁴¹⁾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태평양전쟁기의 인종주의적 관점에 기초한 기존 연구를 비판한 연구서조차 당대 미군이 아시아인들에 대해 매우 강한 편견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독도폭격 사건이 발생한 2년 후에 시작된 한국전쟁에서도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상과 같은 미 공군의 편견이 지속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예컨대 한국전쟁 종료 직후인 1953년 겨울 미 공군의 한 저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포함된 한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었다. “적은 많은 인명의 손실을 견딜 수 있었다. 왜냐하면 동양에는 사람들이 넘쳐 났고, 인명은 명백히 값싼 존재였기 때문이다[He(enemy-인용자) could sustain great loss of human life, for life is plentiful and apparently cheap in the Orient].”⁴²⁾ 제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고 5년 뒤에

40) John W. Dower, 1986,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Pantheon Books; Craig M. Cameron, 1994, *American Samurai: Myth, Imagination, and the Conduct of Battle in the First Marine Division, 1951~195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Ronald Takaki, 1995, *Hiroshima: Why America Dropped the Bomb*,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Ronald Takaki, 2000, *Double Victory: A Multicultural History of America in World War II*, Boston: Back Bay Books.

41) 존린 지음, 이내주 외 옮김, 2006, 『배틀, 전쟁의 문화사』, 청어람미디어(John A. Lynn, 2003, *Battle*, Westview Press), 420~483쪽.

42) A Quarterly Review Staff Study, “The Attack on the Irrigation Dams in North Korea,” James T. Stewart ed., 1957, *Air Power – The Decisive Force in Korea*, D. Van Nostrand Company, p. 183(이 글의 원출처는 다음과 같다. A Quarterly Review Staff Study, Winter 1953/54, “The Attack on the Irrigation Dams in North Korea,” *Air University Quarterly Review* 6).

시작된 한국전쟁 과정에서도 미군은 여전히 아시아인들의 생명을 하찮게 생각하는 강한 인종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의 중간시점에 극동지역에서 발생한 미 공군의 민간인 폭격사건과 관련하여, 만약 미 공군이 민간인들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별문제 없다는 듯이 폭격을 진행했다고 '가정'한다면, 이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당대 미군의 아시아인들에 대한 강한 편견이 중요한 역사적 배경 중 '하나'가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2_ 사건의 근본원인: 미국의 극동지역 군사정책의 변화와 공군력의 강조

1) 미국의 극동지역 대소봉쇄정책 변화: 공군력과 오키나와의 중요성 부각

지금까지 이 글은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주체와 전개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이상과 같이 전개된 독도폭격사건의 근본원인으로서의 미군의 극동지역 군사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군이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선정하고 실제 폭격훈련이 진행되기까지의 과정에는 당대 미군의 여러 가지 현실고려, 구체적으로는 극동지역에서 소련을 봉쇄하는 군사대책의 준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독도가 미 공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최초로 지정되었던 1947년, 극동지역의 미군과 워싱턴의 합동참모본부는 매우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당시 그들을 압박하고 있던 현실은 외형적으로 매우 모순적인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군은 동원해제와 함께 그 병력과 자금의 급속한 축소를 경험하고 있었다. 반면에 전후 미국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로 부상한 소련은 유럽과 극동지역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며 미군을 현실적으로 압박하고 있었다.

대규모 동원해제는 큰 전쟁을 치른 직후의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1945년

8월 미군 병력은 육군 820만 명, 해군 330만 명, 해병대 47만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46년 6월 육군 병력은 이미 180만 명으로 감축되었고, 1948년경에는 1945년 당시의 약 1/15에 불과한 55만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게다가 1945년 당시 900억 달러를 상회하던 미국의 군비지출은 1947년 중반에 이르러 100억 달러 규모로 대폭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전쟁 말기인 1944~1945년 국민총생산(GNP) 중 군사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35~42%에 달했으나, 1947~1948년에 이르러 약 5%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⁴³⁾

이상과 같은 미군의 급속한 축소현상과는 달리, 미국의 새로운 라이벌 소련은 자신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유라시아 대륙에서 직접적 갈등을 양산하고 있었다. 특히 동지중해와 북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소련의 전후기지(postwar bases) 확보 노력이 진행되며, 1946~1947년 근동지역과 동지중해 지역에서 미국과 소련은 일련의 위기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⁴⁴⁾ 이제 미군은 소련과의 갈등관계에서 자신의 축소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재분배하는 일에 몰두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불어 미국은 소련과의 전면전을 상정하여 자신의 제한적 군사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군사계획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리고 그 같은 미국의 계획에서 극동지역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1947~1948년 38이남지역 미군 철수 논쟁은 당시 미국 정부와 군의 군 자원분배에 대한 고심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미 국무부와 군의 갈등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국무부는 한반도의 정치·외교적 중요성을 걱정하며, 미군철수에 미온적이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반면에 한반도 미군철수에 대한 군부의 입장은 확고했다. 군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급속도로 축소된 병력과 무기의 효율적 배분에 대해 고민해야 했다. 그리고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43) 이월덕, 1987,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연구: 1947~1949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23쪽.

44) 1945년 포츠담회담과 런던외상이사회에서 소련이 다르다넬스(Dardanelles)해협에 대한 터키와의 공동관리와 트리폴리타니아(Tripolitania)에 대한 소련 일국 신탁통치를 요구한 것은 그 대표적 예이다.

가시적으로 소련과의 갈등이 진행되고 있던 유럽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궁극적으로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유럽과 중동지역에서는 적극적으로 반격하고, 극동지역에서는 전략적으로 방어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군의 자원분배 방안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다. 더불어 미 군부는 소련과의 전면전에 대비한 장단기 전쟁계획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⁴⁵⁾

소련과의 전면전 상황을 대비한 미군의 구체적 전쟁계획으로는 합동참모본부에서 계획하고 완성한 비상전쟁계획(Emergency War Plan)을 들 수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미군의 최고 지휘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제2차 세계대전 시기부터 존재하다가 1947년 국가안보법에 따라 제도적으로 공식화되었다. 합참의 원래 성격은 자문단에 불과하며, 어떤 명령권도 지니지 못했다. 그러나 그 구성 자체가 육·해·공군의 최고지휘관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전구사령관으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군 작전과 관련하여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⁴⁶⁾

미 합참의 비상전쟁계획은 3년 이내의 가까운 장래에 불가피하게 전쟁을 수행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군사작전과 병력배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조치였다. 비상전쟁계획 수립 작업은 합참 산하 합참전략계획그룹(JSPG)의 전신인 합참전쟁계획위원회(Joint War Plans Committee, JWPC)에서 1946년 3월부터 시작되었다. 처음에 이 작업은 유럽과 극동 등 특정지역에 관한 군사전략과 그것에 수반되는 특수한 군사적 문제점들을 연구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개별적인 연구들을 통칭하여 ‘핀처(Pincher)’라는 암호명으로 불렸다.⁴⁷⁾

45) Elitott V. Converse III, 2005, *Circling the Earth: United States Plans for a Postwar Overseas Military Base System, 1942-1948*, Air University Press,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p. 171.

46) Spencer C. Tucker, ed., 2000,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Vol. I, Santa Barbara, ABC-Clio, pp. 295~296.

47) 김영호, 2001, 「한국전쟁 직전 미국 합참의 비상전쟁계획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논총』 14집,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50~51쪽.

핀처 연구결과물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소련의 궁극적 목적은 세계지배이고, 그 중기적 목적은 유라시아 대륙을 장악하는 것이며, 단기 목적은 그 국경의 안전보장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다. 소련은 3년 이내의 가까운 미래에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련군이 전쟁을 개시한다면 자신의 해군력과 전략공군력의 부족 때문에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동시공격을 펼칠 것이고, 결국 유럽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미군은 소련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전쟁 초기 시점에 유럽과 중동지역에서 즉각 반격에 나서야 하지만, 극동과 태평양지역에서는 ‘전략적 방어’에 돌입해야만 한다. 또한 미군의 공격과 방어는 소련 도심에 핵폭탄과 재래식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장거리비행기’를 통해 주로 진행될 것이다.⁴⁸⁾

이상과 같이 합동참모본부의 비상전쟁계획은 유럽지역 적극공세와 극동지역 전략방어라는 큰 틀 속에서 ‘공군력’으로 소련과의 전면전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미군은 이러한 전쟁계획 하에서 소련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소련 주변부 공군기지 확보 문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합참전쟁계획위원회 기록에 따르면, 1945~1946년 중국 서부지방과 이탈리아의 공군기지들이 미국의 전쟁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공군의 진격으로 인해 중국의 공군기지는 고려대상에서 사라졌고, 이탈리아 또한 소련 공격에 대한 취약성 때문에 합참의 계획에서 삭제되고 말았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합참은 새로운 지역들을 미군 전쟁계획의 주요 거점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1947년 합참은 일본과 류큐열도를 소련의 영향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한 주요 공군기지로 새롭게 선정한 것이다. 더불어 류큐열도에 위치한 오키나와는 미국의 여러 주요 인사들이 극동지역 전략방어의 거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⁴⁹⁾

1947년 6월 16일 합참전쟁기획위원회는 핀처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암호

48) “JWPC 432/7, Tentative Overall Strategic Concept and Estimate of Initial Operations, Short Title: Pincher,” 1946. 6. 18(Elliott V. Converse III, 2005, *op. cit.*, pp. 170~171에서 재인용).

49) Elliott V. Converse III, 2005, *op. cit.*, p. 171.

명 ‘문라이즈(Moonrise)’의 ‘극동지역 비상전쟁계획’을 완성하였다.⁵⁰⁾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문라이즈의 완성 시점이다. 문라이즈는 SCAPIN 1778호(1947년 9월 16일자)가 발표되기 정확히 3개월 전에 완성되었다. 선행연구들을 통해 이미 규명되었듯이, SCAPIN 1778호는 미군의 독도폭격연습장 지정을 최초로 명시한 문서였다.⁵¹⁾ 다시 말해 독도는 합참의 극동지역 비상전쟁계획 완성 후 정확히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미군의 폭격연습장으로 지정되었던 것이다.

문라이즈는 향후 3년 내에 소련이 극동에서 전쟁을 일으킬 경우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에 관하여 상술하고 있다. 문라이즈는 핀치의 연장선상에서 소련과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은 유럽에서는 공세로 나가고 극동에서는 방어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었다. 또한 문라이즈는 베링해협-동해-황해를 잇는 도서방어선을 군사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50년 1월 에치슨(Dean Acheson)의 내셔널프레스 클럽 연설에서 제시된 ‘도서방위선’ 개념이 합참의 극동지역 비상전쟁계획에서 먼저 구체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합참은 문라이즈를 통해 소련의 진격이 수적 열세에 놓인 주한미군에 의해 차단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다. 미국은 남한을 지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증원군을 파견한다고 하더라도 미군의 패배와 한반도로부터의 철수를 궁극적으로 막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일본 주둔 미군 병력을 남한으로 증원시키는 것은 일본의 방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문라이즈는 이상과 같은 예상 속에 전쟁 발발 후 주한미군이 즉시 일본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합참은 알류산열도, 일본 본토, 오키나와에 있는 공군기지들을 기점으로 하여 아시아대륙의 적을 공격한다는 전략적 구상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1948~1949년 미 합참은 핀치의 연장선상에서 브로일러(Broiler), 프롤릭

50) 이하 ‘문라이즈’의 주요 내용은 김영호 논문의 다음 부분을 인용하였다. 김영호, 2001, 앞의 논문, 52~53쪽.

51) 독도를 폭격연습장으로 지정한 SCAPIN 1778호의 내용은 다음의 글에 자세히 제시되어 있다. 정병준, 2010, 앞의 책, 223~224쪽.

(Frolic), 해프문(Halfmoon), 오프태클(Offtackle) 등의 암호명으로 불린 비상전쟁계획을 지속적으로 내놓았다. 이렇듯 비상전쟁계획은 여러 번의 수정을 거치지만, 극동 및 한반도와 관련된 합참의 전략적 발상은 핀치와 문라이즈의 내용을 수정 없이 반영하였다. 이 계획들은 미국이 공군력을 동원하여 적을 공격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공격을 위해 공군기지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오키나와는 미 공군력을 동원하여 아시아 대륙의 적을 공격하기 위한 중심지로 지속적으로 거론되었다. 1948년 6월 미 전략공군 최초로 전대 병력 전체가 오키나와로 이동하여 소련 및 소련 영향력 하의 북한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독도라는 작은 섬에 대량 폭격훈련을 실시했던 배경에는 이상과 같은 당대 미군의 극동지역 대소봉쇄정책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2) 맥아더, 오키나와, 그리고 독도

합동참모본부의 극동지역 군사정책 변화는 궁극적으로 미 극동군사령관인 맥아더를 통해 관철될 사안이었다. 그런데 기존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한국전쟁기 맥아더는 자신의 소신과 합참의 지시가 어긋날 경우 종종 합참의 견해를 무시한 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는 하였다. 1951년 맥아더의 유엔군사령관직 해임의 원인 또한 워싱턴의 지시를 무시한 채 중국으로의 확산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그의 태도에 기인했다. 때문에 극동지역 비상전쟁계획이 완성되었던 1946년부터 독도폭격사건이 발생했던 1948년까지 합참의 계획에 대한 맥아더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맥아더는 독도폭격연습장 선정을 최초 지시한 SCAPIN 1778호의 명령자였을 뿐만 아니라, 폭격사건 당시 육·해·공군 부대들에 대한 통합적 지휘권을 지니고 있었던 전구사령관이었기 때문이다.

1946~1948년 당시 연합군최고사령관(SCAP)이자 미 극동군사령관이었던 맥아더의 가장 큰 임무는 전쟁 적대국이었던 일본의 전후처리 문제였다.⁵²⁾

52) 맥아더는 1945년 4월 태평양사령부 지상군사령관(AFPAF)에 임명되었고, 일본의

1945년 9월 22일 발표된 ‘항복 후 미국의 초기 대일방침(SWNCC 150/4A)’은 ‘비군사화’와 ‘민주화’라는 두 가지 기본방침에 따라 점령개혁이 실시될 것임을 밝히고 있었다. 비군사화는 일본의 전쟁수행능력을 상실케 함으로써 일본이 두 번 다시 미국과 세계의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일본군의 완전한 무장해제, 군사시설과 장비의 파괴, 일본군 조직의 폐지 등이 그 주요한 내용이었다.⁵³⁾

그러나 1947년 냉전의 격화를 계기로 하여 일본의 전력 육성과 배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른바 재군비논쟁이 진행된 것이다. 미국은 1948년 10월 국가안전보장회의 문서 ‘미국의 대일정책에 대한 권고(NSC 13/2)’를 통해 점령 종결 후에도 일본이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가 되도록 일본의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49년 10월에는 일본의 자위력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당시 일본 점령의 최고 책임자였던 맥아더는 일본의 경제부흥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재군비에 대해서는 일본 헌법 제9조와 ‘오키나와’의 공군 요새화를 명분삼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리고 일본의 비무장화를 오키나와 공군력 강화를 통해 보완한다는 생각은 사실상 그 이전시기부터 일관된 맥아더의 대일 군사정책이었다.⁵⁴⁾

맥아더의 주요 과제 중 하나였던 일본의 비무장화는 오키나와의 분리·군사지배, 미군에 의한 전략거점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 맥아더는 1947년 6월 말, 도쿄를 방문한 미국인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오키나와를 미군이 지

무조건항복 직후인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국최고사령관(SCAP)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1946년 4월 현역원수에 임명되어 일본 통치를 담당하였다. 미 태평양사령부는 1947년 1월 1일부로 미 극동군사령부로 개칭되었고, 맥아더의 직임 또한 자연스럽게 미 극동군사령관이 되었다. 이상호, 2007, 「미국 맥아더기념관 소장 한국관련 자료조사 및 해제」, 『해외사료총서 13: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V』, 국사편찬위원회, 457~459쪽.

53)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정영신·미야우치 아키오 옮김, 2008, 『오키나와 현대사』, 논형, 24쪽.

54) 위의 책, 24~25쪽.

배하고 미 공군의 요새로 만들면 비무장국가 일본이 군사적 진공지대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명확하게 밝혔다.⁵⁵⁾ 1947년 6월 합동참모본부는 문라이즈의 완성을 통해 오키나와를 대소봉쇄의 거점으로 확정했고, 같은 시기 맥아더는 오키나와를 일본의 비무장화를 실현시킬 수 있는 중요 방편으로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상과 같은 오키나와 공군력을 활용한 대소봉쇄와 일본 비무장화라는 인식의 접점에서 1947년 9월 연합군최고사령부의 독도폭격연습장 지정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948년 3월 맥아더는 미국 대소봉쇄정책의 이론적 창시자라 할 수 있는 케넌(George F. Kennan)과의 회담 과정에서도 동일한 생각을 보여주었다. 케넌과의 회담에서 맥아더는 태평양의 방어를 위해 알류산열도, 미드웨이, 일본의 위임통치 하에 있는 섬들, 필리핀의 클라크 공군기지, 오키나와를 포함하는 U자 모양의 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키나와로부터 아시아 대륙에 있는 어떤 항구들도 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미국이 오키나와만 확보할 수 있으면 일본 본토에 미군을 주둔시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본 본토가 적의 수중에 들어가지 않는 한 미국은 오키나와로부터 공군력을 동원하여 아시아 대륙에 있는 적의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맥아더는 주장했다.⁵⁶⁾ 오키나와로부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 공군력의 존재는 맥아더의 극동지역 군사정책에서 핵심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1948년 6월 독도폭격사건과 관련된 한 가지 의문점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사건 발생 직후 맥아더, 미 극동군사령부, 극동공군사령부, 제5공군 등이 보여준 사건에 대한 태도의 문제이다. 사건 발생 직후 주한미군정은 독도폭격사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시기적으로 대한민국 국가 수립 직전에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의 중요한 미군 지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한국 우익세력들 또한 독도폭격사건에 예민하게 반응하

55) 위의 책, 23쪽.

56) "Conversation between MacArthur and Kennan, PPS 28/2, 1948. 3. 5"(김영호, 2001, 앞의 논문, 54~55쪽에서 재인용).

며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성명을 너나 할 것 없이 발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⁵⁷⁾ 하지는 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에 주목하며 발 빠른 사건처리와 폭격연습장 해제의 공식적 발표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그러나 맥아더와 극동공군의 반응은 한마디로 시큰둥했다.

폭격사건이 발생하고 불과 8일이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32분, 제5공군은 주한미군사령관에게 “폭격연습을 위해 리앙쿠르암 폭격과 사격장에 대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의 허가를 요청한다”는 전문을 발송하였다. 동일 오전 10시 45분 제5공군사령관은 독도가 제5공군 부대의 9개 폭격연습장 중 하나라고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재통지하였다. 다음 날인 6월 15일 주한미군사령관 하지는 맥아더에게 전문을 발송하여 폭격사건의 정치적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제5공군사령관에게는 “어떠한 폭격연습도 승인을 보류”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였다.⁵⁸⁾

6월 17일 하지는 다시 맥아더에게 전문을 발송하여 장래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지역이 미군기의 폭격이나 총격지역으로 활용되지 않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내 6월 21일에는 동경으로 찾아가 맥아더와 직접 회동하였다. 6월 24일에는 주한미군정장관 윌리엄 딘(William F. Dean)이 맥아더에게 전문을 보내 독도의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해당 지역에 대한 폭격을 중단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이 같은 청원은 6월 28일 하지의 전문을 통해

57) 1948년 6월 15일 대표적 우익청년단체 중 하나인 대동청년단은 “책임자를 공개 처단하는 동시에 손해 보충과 유가족 생활보장을 군정당국에 요망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였고, 1948년 6월 18일 미군정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던 한국민주당까지 “다수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음은 실로 유감천만이다. …… 정중한 陳謝와 아울러 만전의 구제책을 시급히 강구하기를 요망”한다는 공식성명을 발표하였다. 『조선일보』 1948년 6월 16일자; 『서울신문』 1948년 6월 16일자; 『조선일보』 1948년 6월 20일자.

58) “5th Air Force to CG USAFIK, AG 684 Target and Bombing Ranges, 1948,” 1948. 6. 14; “CG 5th Air Force to CG 8th Army, CG USAFIK, AG 684 Target and Bombing Ranges, 1948,” 1948. 6. 14; “CG USAFIK to CINCFE,” 1948. 6. 15; “CG USAFIK to CG Fifth Air Force,” 1948. 6. 15(위의 문서 모두 정병준, 2010, 앞의 책, 188~190쪽에서 재인용).

서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날 6월 28일 제5공군사령부는 독도 폭격연습장을 추가통보 전까지 폐쇄한다고 주한미군사령부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이 또한 “추가통보 전까지” 폭격연습장을 폐쇄한다는 한시적 조건부 통보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⁹⁾

결론적으로 맥아더는 대한민국 국가 수립 직전이라는 시기적 중요성, 한국 내 우익의 미국 비판이라는 정치적 중요성, 한국인들의 주요 어장 중 하나라는 경제적 중요성 등에도 불구하고 독도폭격연습장 폐쇄에 대한 주한미군사령관의 수많은 청원이 있는 후에야 독도연습장에 대한 ‘한시적’ 폐쇄 명령을 하달했던 것이다. 맥아더가 사건의 중대함과 하지의 지속적 폐쇄 요구에도 불구하고 독도연습장을 신속하게 영구폐쇄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해당 지점이 합참의 변화된 대소봉쇄정책과 자신의 오키나와 활용 방안에서 긴요한 지점 중 하나로 인식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독도는 극동지역에서 지리적으로 소련에 가장 근접한 미 공군 연습장 중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오키나와 주둔 미 극동공군이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독도는 오키나와라는 미군의 새로운 거점을 통해 한반도 깊숙한 곳까지 자신의 전략공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최적의 위력 과시 공간이었던 것이다.⁶⁰⁾ 맥아더는 이렇듯 합참과 자신의 새로운 극동지역 군사정책 속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

59) “ZGCG 893(170645/Z), Hodge to CINCFE,” 1948. 6. 17; “CG USAMGIK to CINCFE, Bombing of Liancourt Rocks,” 1948. 6. 24; “John R. Hodge to CINCFE, AG 684 Target and Bombing Ranges, 1948,” 1948. 6. 28; “Warning Notice—Bombing and Gunnery Ranges,” 1948. 6. 28(위의 문서 모두 정병준, 2010, 앞의 책, 191~195쪽에서 재인용).

60) 오키나와 공군력을 활용한 한반도 방어라는 전략은 독도폭격사건 발생 후 정확히 10일 후에 수행된 93폭격비행전대의 부산지역 카메라폭격훈련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 1948년 6월 18일 93폭격비행전대 제6임무(Mission No. 6)의 제1 목표포로 설정되어 있었다. 기상관측선을 포함해 22대의 B-29기가 출격할 예정이었으나, 4대의 B-29기는 기계적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도탈락하고 총 18대만 훈련 작전을 수행하였다. B-29기들은 11시 16분경부터 부산 상공에서 카메라폭격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 후, 14~15시 사이에 오키나와 가테나공군기지로 돌아왔다.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p. 20~21.

를 지니는 독도라는 공간을 몇몇 한국인들의 희생과 경제활동을 이유로 손쉽게 내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맥아더가 자신의 공식성명을 통해 한국인을 달래지 못한 결정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II. 맺음말

지금까지 이 글은 1948년 미 극동공군에 의한 독도 폭격의 전개양상과 군사정책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1948년 4월 중순 93폭격비행전대가 오키나와 이동을 최초로 명령받은 이래 극동지역에서 폭격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 전반을 당대 미 공군 자료를 통해 보여주었다. 더불어 기존 연구의 분석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있던 당대 미군의 극동지역 공군력 활용방안을 검토하며, 1947~1948년 미국이 93폭격비행전대의 임시거점이었던 오키나와라는 공간에 주목하게 된 배경에 대해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당시의 미국이 극동지역 대소봉쇄정책의 일환으로 독도폭격연습장 활용에 적잖은 이해를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논문은 독도폭격사건과 관련된 쟁점을 검토하며, 현시점까지 발굴된 문서로는 미 공군의 저공폭격과 기총소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독도와 같이 작은 표적에 대한 폭격훈련을 진행할 때는 B-29기 편대들이 고도를 대폭 낮추어 정밀폭격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현역 공군장교의 증언, 정병준 교수와의 인터뷰 과정에서 정밀폭격 훈련 시 2,500~8,000피트까지 하강한다고 언급한 권재상 예비역 공군대령의 증언, 300피트에 불과한 당대 미 공군 문서상의 오차반경과 그 연장선상에서 추측할 수 있는 정밀폭격 수행 가능성, 1948년 6월 작전 수행 중 선박의 존재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폭격을 수행했다는 김슨의 증언, 그리고 사건 피해자들의 당대 증언 등은 저공폭격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주요한 근거이다. 더불어 사실상 정밀폭

격 수행 가능성의 연장선상에서,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미 공군의 군사 문화 속에서 민간선박에 대한 기총소사의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완전히 부인할 수 없다고 분석하였다.

사실상 현재까지 본 연구자가 발견한 자료로는 이상과 같은 선에서 1948년 독도폭격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정리·평가할 수밖에 없다. 당시 폭격상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보다 중요한 사료로는 폭격수행 직후 정보부(S-2)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성되었을 「임무보고서」를 꼽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이 자료는 당대 93폭격비행전대의 자료군 속에서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93폭격비행전대사』를 집필한 정보부원들은 분명 이 임무보고서를 보며 자신들의 역사를 집필했을 것이고, 이 자료는 당대에 폐기되지 않았을 경우 여전히 미국의 특정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음에 틀림없다.⁶¹⁾ 더불어 『93폭격비행전대사』에는 93폭격비행전대 산하 제1영상촬영부대(First Motion Picture Unit)가 1948년 6월 전대의 전반적 활동을 담은 약 1만 피트 길이의 필름을 촬영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⁶²⁾ 그리고 이 필름에는 독도 폭격관련 영상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93폭격비행전대의 모든 임무를 영상으로 제작(making motion pictures of the entire missions of the 93d Bombardment Group)” 하는 임무야말로 제1영상촬영부대 소속 2명의 장교와 4명의 사병이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기 때문이다.⁶³⁾ 이는 독도 폭격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 미 공군 문서고에 소장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진실을 향한 학자들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일 것이다.

● 독도폭격사건의 근본원인을 1947~1948년 미군의 극동지역 군사정책의 변화에서 찾고 있는 이 글의 주장은 기존 연구와 사뭇 다른 관점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기존 연구들은

61) 1948년 6월 93폭격비행전대는 전대 정보부(S-2)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며, “임무 수행 후 통합정리된 임무보고서가 작성되어 관련 기구들에 제공되었다”는 설명이 등장한다.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4.

62)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June 1948,” 1948. 6, p. 5.

63) “History of 93d Bombardment Group for May 1948,” 1948. 5, p. 7.

사건의 배경이나 원인을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추적한 나머지, 정작 폭격의 실행주체인 미 공군의 대규모 병력이동 및 폭격훈련의 배경과 목적에는 천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본 연구는 1947~1948년 미군의 극동지역 대소정책의 근본적 변화, 그 연장선상에서 파악 가능한 미 합참의 극동지역 비상전쟁계획, 맥아더의 일본 비군사화 계획 등의 일환으로 워싱턴과 극동지역 미군 사이에 ‘오키나와’와 ‘공군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대규모 동원해제 과정에서 미군은 병력과 물자의 지역별 배분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었고, 소련과의 갈등 촉발 시 극동지역에서는 전략공군과 핵무기라는 압도적 공군력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방어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미군은 한반도의 미 지상군을 철수시킴과 동시에 오키나와 공군력을 대폭 강화하여 극동지역에 대한 방어력을 증진시키고자 했고, 결국 이 같은 구상 속에서 진행된 대규모 군사훈련 과정에서 1948년 6월 8일의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1. 1차자료

가. 맥스웰 공군기지 미공군역사연구실(AFHRA) 소장문서

“History of the 93d Bombardment Group(VH), Kadena Air Force Base, Okinawa, for the Month of May 1948,” 1948. 5.

“History of Castle Air Force Base and the Ninety-third Bombardment Wing(VH), June 1948,” 1948. 6.

“History of the 93d Bombardment Group(VH), Kadena Air Force Base, Okinawa, for the Month of June 1948,” 1948. 6.

“History of 328th Bombardment Squadron(VH), 93rd Bombardment Group, 93d Bombardment Wing, Fifteenth Air Force for June 1948,” 1948. 6.

“History of 329th Bombardment Squadron(VH), 93rd Bombardment Group, 93d Bombardment Wing, Fifteenth Air Force for June 1948,” 1948. 6.

“History of 330th Bombardment Squadron(VH), 93rd Bombardment Group, 93d Bombardment Wing, Fifteenth Air Force for June 1948,” 1948. 6.

나. 국내 신문자료

『경향신문』, 『서울신문』, 『수산경제신문』, 『조선일보』

2. 연구성과

공군본부, 1962, 『공군교범 100-11: 항공용어집(항공작전편)].

김영호, 2001, 「한국전쟁 직전 미국 합참의 비상전쟁계획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과학논총』 14집, 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아라사키 모리테루 지음, 정영신·미야우치 아키오 옮김, 2008, 『오키나와 현대사』, 논형.

이상호, 2007, 「미국 맥아더기념관 소장 한국관련 자료조사 및 해제」, 『해외사료총서 13: 미국소재 한국사 자료 조사보고 V』, 국사편찬위원회.

- 이원덕, 1987, 「주한미군철수에 관한 연구: 1947-1949의 경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병준, 2010, 『독도 1947-전후 독도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 존 린 지음, 이내주 외 옮김, 2006, 『배틀, 전쟁의 문화사』, 청어람미디어(John A. Lynn, *Battle*, Westview Press, 2003).
- 홍성근, 2001, 「독도폭격사건의 진상규명과 주요 쟁점」, 『정책연구보고서: 2001년도 독도정책자료집』,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독도사랑모임.
- 홍성근, 2003, 「독도폭격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분석」,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독도연구보전협회.
- A Quarterly Review Staff Study, 1957, "The Attack on the Irrigation Dams in North Korea," Stewart, James T. ed., *Air Power - The Decisive Force in Korea* -, D. Van Nostrand Company.
- Converse III, Elitott V., 2005, *Circling the Earth: United States Plans for a Postwar Overseas Military Base System, 1942-1948*, Air University Press, Maxwell Air Force Base, Alabama.
- Dower, John W., 1986,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Pantheon Books.
- Joint Chief of Staff, 2001, *Department of Defense Dictionary of Military and Associated Terms*.
- Lovmo, Mark S., 2003,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June 8, 1948 Bombing of Tokto Island,"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Vol. 4.
- Takaki, Ronald, 2000, *Double Victory: A Multicultural History of America in World War II*, Boston: Back Bay Books.
- Takaki, Ronald, 1995, *Hiroshima: Why America Dropped the Bomb*,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Tucker. Spencer C., ed., 2000, *Encyclopedia of the Korean War: A Political, Social and Military History*, Vol. I, Santa Barbara, ABC-Clio.

[ABSTRACT]

Military Backgrounds and Progresses of Bombing of Dokdo Island by the USAF, 1948

Kim, Taewoo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cess and background of the incident of bombing of Dokdo island (Liancourt Rocks) committed by the medium bombers of the United States Air Forces on June 8 1948. Specifically, the aerial bombing was done by B-29s of the 93rd Bombardment Group (BG) that was located in Kaneda air base in Okinawa in Japan. The bombers of the 93BG planed and executed eight times long distance massive bombings during June 1948. The bombing of Dokdo island in June 8 1948 was 'Mission No. 3' that meant third bombing training of the month of the group. According to the records of 93BG, 24 bombers including one weather ship were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 However, due to mechanical difficulties, only 20 B-29s actually fulfilled their duties, 20 bombers dropped a total of 76 general bombs on the target around noontime. And it is still a main point of dispute whether the bombers strafed fishing boats and fisher men during their bombing drill. Although the documents of 93BG shows that the bombers did not use machine guns in their ordinary training missions, some important testimonies of civilian survivors and pilots, and circumstances around the incident also displays possibilities of strafing by machine guns of the B-29s.

This paper also emphasized changes in military policies of the US

armed forces in the Far East and reinforcement plan of the Air Forces in this region as the main reason of the tragic incident in Dokdo island. From 1947 to 1948, the US began to pay attention with the role of the air power in the region of Okinawa in Japan as a part of 'Emergency War Plan' by the Joint Chiefs of Staff and demilitarization plan of Japan by General MacArthur. The US had no choice but to agonize over regional distribution of its troops and supplies in the course of large-scale demobilization after World War II, and the JCS made a plan of defending the Soviet army by using overwhelming air power of the US strategic Air Forces and nuclear weapons in the Far East. To improve their defensive power in the Far East, Washington wanted to withdraw their army troop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drastically reinforce the air power of Okinawa. And actually, the tragic incident of Dokdo island happened in the course of massive military training that was originally planned by the Washington officials in this period.

keywords

Dokdo Island(Liancourt Rocks), Civilian Casualties, United States Air Forces, 93rd Bombardment Group, Okinawa, Air Power, Emergency War Plan, Douglas MacArthur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 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 (A, B, C) (A, B, D) (B, B, C) (B, C, C) (A, C, C)

4)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 (A, C, D) (A, D, D) (C, C, C) (B, B, D) (B, C, D) (C, C, D) (D, D, D)

5)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의 우선 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 1> 1)> (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2호(2011. 6)

초판 1쇄 인쇄 2011년 6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1년 6월 31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